

30 독일통일 총서

연방주 구축 분야

관련 정책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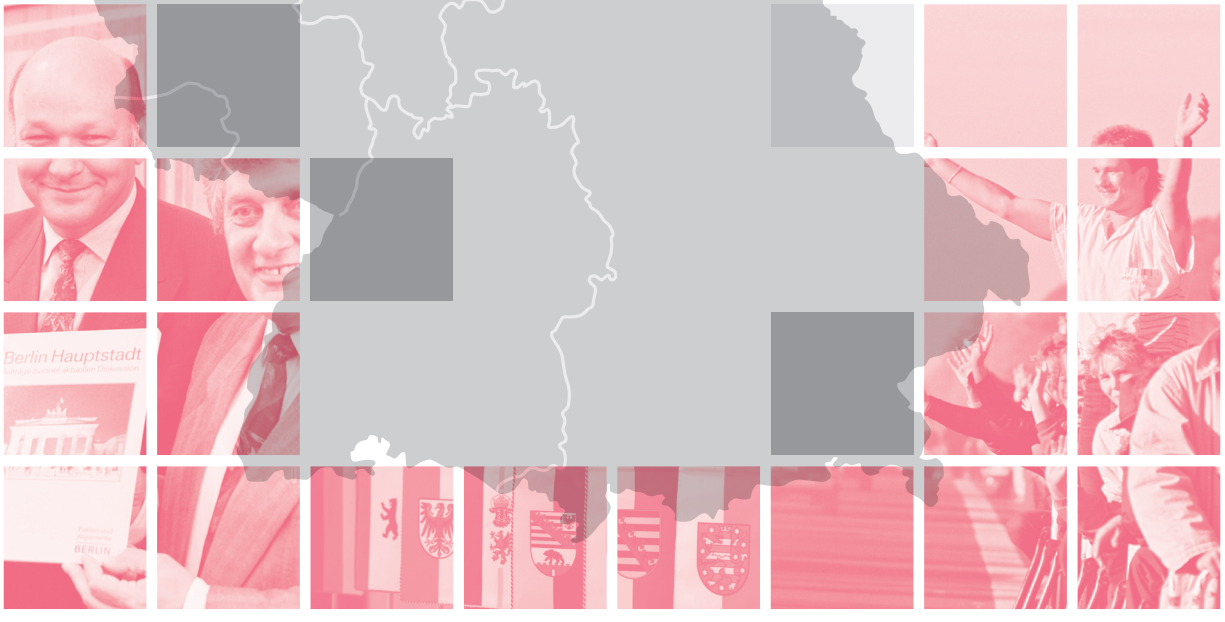


통일부



30 독일통일 총서

연방주 구축 분야 관련 정책문서



독일통일 총서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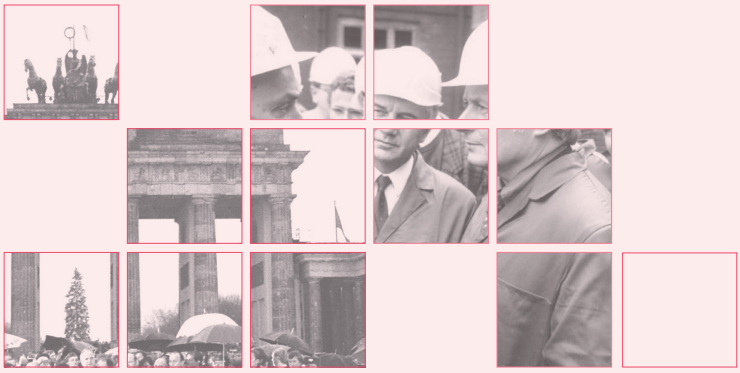
연방주 구축 분야 관련 정책문서

발행일 2019년 2월

발행처 통일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전화 02)2100-5757

디자인·제작 케이앤케이컴
전화 070-4773-7761

CONTENTS



I 독일의 연방주 구축과 한반도통일 이후 행정체제 구축

제1장 서론 12

제2장 독일통일과 신연방주 구축 16

제1절 통일 이전 동서독 행정체제 비교 16

1. 서독 행정체제의 특징 16
2. 동독 행정체제의 특징 25

제2절 통일과정과 신연방주 구축 29

1. 통일 이전의 과정 30
2. 통일 이후 과정 39

제3절 독일 사례가 한국의 통일 문제에 주는 시사점 61

제3장 남북통일 이후 북한지역 행정체제 구축에 대한 기존 연구 현황 64

제1절 독일 사례 연구 현황 65

제2절 남북통일 이후 행정체제 구축 방안 연구 현황 73

1. 시기별 분석 73
2. 주제별 분석 76

제4장 통일 이후 북한지역 행정체제 구축 84
제1절 남북한 행정체제 비교 84
1. 남한의 행정체제 84
2. 북한의 행정체제 93
제2절 통일 이후 북한지역 행정체제의 구축 119
1. 북한지역 행정체제 구축의 원칙 119
2. 북한지역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 122

제5장 결론 145

Ⅱ 정책문서를 통해 본 독일통일과 신연방주

들어가며 156

제1장 신연방주의 구축 159
제1절 행정 단위로서 '주'의 부활 159
제2절 신연방주의 정착 171

제2장 '브란덴부르크주의 길' 174
제1절 브란덴부르크주 발전 경로와 조건 174
1. 브란덴부르크주의 정치 지도자와 정치적 특색 174
2. 경제적 기반 180
3. 사회적 기반 182
제2절 제도적 틀의 확립 186
1. 행정제도의 구축 186
2. 주헌법의 제정 188
3. 민주적 선거의 실현을 위한 선거구 개편 192
4. 지역통합을 위한 시도-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의 통합을 위한 노력 193

CONTENTS

제3장 작센과 작센-안할트주를 중심으로 본 신연방주의 경제 발전 197
제1절 경제 발전 현황과 성장 역동성 197
제2절 경제 발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204
1. 지역 경제의 전통 204
2. 인구 변동과 두뇌 유출 208
3. 정치적 요인–정치적 지속성 209
4. 외적 요인 213
제3절 주정부 정책의 특징 215
1. 예산정책 215
2. 사회복지정책 217
3. 노동시장정책 219
4. 산업정책–산업거점 클러스터 구축 220
5. 주택정책 222

나가며 223

III 연방주 구축 분야 관련 정책문서

문서 목록 228

문서 요약 270
문서 요약(문서번호 1~291) 270

독일어 원문 자료(CD 수록)

표 목차

표 1–1〉 서독 연방제의 특징 19

표 1–2〉 서독 지방행정체제의 특징 24

표 1–3〉 통일 전 동독 관료(국가간부)의 분류 28

표 1–4〉 통일 전 동서독 행정체제의 특징 비교 29

표 1–5〉 주도입법에 따른 신설 주 34

표 1–6〉 통일 이후 연방주(16개) 40

표 1–7〉 통일 직후 신연방주 정부 구성 현황 42

표 1–8〉 독일 연방주의위원회(Föderalismuskommission)가 권고한 이전 대상 연방행정기관 54

표 1–9〉 남북한 지방행정체제 통합 방안 선행 연구 80

표 1–10〉 북한의 지방행정기관 109

표 2–1〉 동서지역 삶의 조건의 균등화–가정 내 가전기기 보유율 198

표 2–2〉 동서지역 삶의 조건의 균등화–거시경제 지표들 199

표 2–3〉 독일 연방주의 주요지표 비교 200

표 2–4〉 신연방주들의 경제 관련 현황(2009년도) 200

표 2–5〉 2009년 역동성 순위 203

표 2–6〉 작센주 매출, 고용 및 수출 207

표 2–7〉 작센–안할트주 매출, 고용 및 수출 207

표 2–8〉 작센 주의회 선거, 선거 참여율 및 정당 비례대표 득표율 210

표 2–9〉 작센 주의회 의석 배분 210

표 2–10〉 작센주 주정부 및 주총리(1대–4대) 211

표 2–11〉 작센–안할트주 주의회 선거, 참여율 및 득표율 211

표 2–12〉 작센–안할트주 주의회 의석 배분 211

표 2–13〉 작센–안할트주 주의회 지역선거구 직선후보 득표율 211

표 2–14〉 작센–안할트주 주정부 및 주총리(1대–4대) 212

표 2–15〉 2005년 각 주(기초자치단체 포함)의 채무 현황 215

CONTENTS

그림 목차

그림 1–1〉 독일 연방행정기관의 체제 22

그림 1–2〉 북한 지방인민위원회 구성과 전문 부서 108

그림 1–3〉 북한 지방행정체제의 이해 109

그림 1–4〉 '관료'의 북한식 개념 112

그림 1–5〉 통일한국 정부조직도 133

그림 2–1〉 1991–2008 신연방주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 비율(%) 202

그림 2–2〉 대학교육을 위한 인구 이동(유입 및 유출 규모, %) 209

그림 2–3〉 3세 이하 아동 중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의 비율 219

독일통일 총서 30

연방주 구축 분야 관련 정책문서



독일의 연방주 구축과 한반도통일 이후 행정체제 구축

양 현 모
(한국행정연구원)



제1장

서론

독일통일은 1990년 10월 3일 동독(독일민주공화국)지역에 5개의 연방주(聯邦州)가 설치되어, 이 연방주가 서독(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실현되었다. 이로써 1949년 정부 수립 이후 40여 년 이상 존재했던 동독이라는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통일 이전 서독에는 11개의 연방주가 있었는데, 통일과 동시에 5개의 연방주가 더해져 독일에는 총 16개의 연방주가 존재하게 되었다. 현재 독일인들은 통일 전 구서독지역에 있었던 연방주를 '구연방주(alte Bundesländer)'라고 부르며 통일과 함께 가입한 5개의 연방주를 '신연방주(neue Bundesländer)'라고 칭하고 있다.

독일의 연방제는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히틀러의 제3제국 시대에 잠시 중단되었다가 서독 정부 수립과 함께 부활되었다. 그러나 동서독 분단 후 서독에서는 연방제가 부활되었던 것과는 달리 동독 사회주의 정권은 연방제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 않았다. '독일 사회주의통일당(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약자 사통당)'[1] 중심의 국정운영과 중앙집권제를 강조하는 동독 사회주의 정권이 권력의 분산을 의미하는 연방제와 지방자치제를 허용할 수는 없었던 것이었다.

1 이후 '사회주의통일당' 또는 약자로 '사통당'으로 표기하기로 함.

그런데 통일을 앞두고 동독에서 주 제도와 지방자치제 부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동독 정부는 시민혁명 이후 사통당이 몰락하고 통일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던 1990년 초 주 제도와 지방자치제 부활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마침내 주를 부활시킬 것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와 동시에 동독에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할 것도 결정하였다.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더 이상 동독의 기존 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동독 국민의 요구와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이는 동독 정부의 자발적인 개혁이 아니라 연방제 부활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통일과 주 제도의 부활에 대해 보다 확실한 결정이 내려진 것은 1990년 3월 18일에 있었던 동독 최초의 민주 총선 이후였다. 총선 이후 들어선 동독의 민주 정부는 동독 국민들의 뜻에 따라 조속한 통일을 결정·추진하였으며, 통일의 방법에 있어서도 주를 신설하여 이 주들이 서독의 기본법 적용지역, 즉 서독으로 가입하는 형식을 선택하였다. 이른바 서독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통일 방법을 선택한 것이었다.

동독의 입법기관인 인민회의(Volkskammer) 역시 인민의 뜻에 따라 관련 법 제정을 서둘렀다. 동독 인민회의는 5월 17일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였으며, 동년 7월 22일 주를 부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위 '주도입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1990년 7월 6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문제를 규정하기 위해 일명 지방재산법(Kommunalvermögensgetz)도 제정하였다.

5개 신연방주 부활 및 통일 이후의 전개·발전과정에 대한 연구는 독일통일 및 통합과정에 대한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독일통일의 과정은 신연방주의 부활과 체제 구축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신연방주 구축은 단순히 통일독일의 정치·행정체제의 구축만이 아니라 통일국가의 골격을 구축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1990년부터 동서독 내부에서 진행되었던 5개 주의 부활 및 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로서, 주요 내용은 신연방주 구축 과정과 내용, 독일 신

연방주 구축 사례에 대한 국내의 연구 실태 및 통일 이후 한반도 체제 구축 방안 등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은 독일통일과 연방주 구축에 대한 연구로서, 제1절에서는 통일 전 동서독 행정체제를 비교·분석했으며, 제2절에서는 통일 이전과 이후 동독지역에서 진행되었던 신연방주 구축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주요 내용은 통일 이전 추진되었던 동독의 관련법 제정 과정 및 내용, 통일 이후 추진되었던 신연방주 헌법 제정 및 행정체제 구축에 관한 것이다. 신연방주 행정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연방, 주, 지방행정체제 구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4절은 독일통일과 연방주 구축 사례가 한반도통일 문제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것이다.

제3장은 독일통일 이후 독일과 한국[2]에서 있었던 통일과 행정체제 구축에 대한 연구 현황에 대한 분석이다. 통일 이후 독일 내부에서는 행정통합 또는 행정이전이라는 주제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모두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에서 진행되었던 신연방주 구축과 동서독 행정통합에 대한 연구였다. 연방주 구축을 포함한 통일독일 행정체제 구축에 대한 연구는 1990년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제2절은 한반도통일 문제에 대한 연구로서, 한반도통일 시 북한지역 행정체제 구축의 방향, 방법, 과제 등에 대한 연구현황 분석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0년 이후에는 독일 사례에 대한 연구가 많았는데, 단순히 사례 연구에 그치지 않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여 한반도통일 이후의 행정체제 구축 방안을 제시하려는 연구도 다수 있었다.

제4장은 한반도통일을 전제로 한 북한지역 행정체제 구축의 과제에 대한 연구이다. 본 장에서는 먼저 남북한 행정체제를 비교·분석하였으며, 통일 이후 북한지역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조직의 재구축을 포함한 중앙행정체제 구축, 지방행정체제 구축, 관료제 통합

[2] 본 연구에서는 '한국', '대한민국', '남한', '우리나라' 등의 용어가 문장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모두 같은 뜻이다.

등의 주제에 대한 단기와 중장기 방안이 구별되어 제시되고 있다.

제5장은 본 연구의 결론이다.

제2장

독일통일과 신연방주 구축

통일 전 동독과 서독은 서로 전혀 다른 행정체제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서독은 연방제와 지방자치제 그리고 직업공무원제 등 전통적인 서구 민주주의 행정체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사회주의 국가였던 동독은 공산당(독일 사회주의통일당)의 영도적(領導的) 지위와 소위 '민주주의 중앙집권주의 원칙'이 강조된 행정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1989년 말 동독의 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 10월 3일 5개의 연방주(聯邦州, Bundesländer) 형식으로 서독 기본법 지역으로 가입하는 형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졌다. 이 장에서는 통일 이전 동서독 행정체제의 차이점과 특징을 살펴본 다음,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에 연방주가 구축되는 과정과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1절 통일 이전 동서독 행정체제 비교

1. 서독 행정체제의 특징

1) 연방제 실시

일반적으로 '서독(West Germany)'이라고 불렸던 '독일연방공화국(Bundesrepublik Deutschland)'에서는 1949년 정부 수립부터 어두웠던 나치

(Nazi) 과거사 청산과 새로운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행정체제의 구축과 국정 운영에서 있어 몇 가지 원칙 또는 정신이 강조되었는데, 이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분권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분권행정이란 국가 권력이 특정 세력 또는 지역에 집중되어서는 안 되며,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서독의 분권행정의 정착 및 구현 노력은 '권력분립' 또는 '법치주의' 등과 같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제도뿐만이 아니라 좀 더 특별한 제도의 도입과 이의 정착에 드러나 있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방제이다.

서독은 그 국명(國名)에서 잘 드러나 있듯이 11개의 연방주(Länder 또는 Bundesländer)[3]로 구성된 연방국가였다. 1949년 정부 수립과 함께 제정된 서독의 기본법(Grundgesetz)[4] 제20조에서도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이며 사회적인 연방국가이다"라고 명시하였다. 연방국가란 국가의 과제 수행에 있어 연방(聯邦)과 지방 국가(州) 간의 역할과 권한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한 국가이다.

서독의 연방제는 사실 독일의 오랜 전통에 기초하고 있었다. 독일의 연방제는 1806년의 라인연합(Rheinbund), 또는 1815년의 독일연합(Deutscher

[3] 독일에서는 '연방주'를 간략하게 '주'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도 필요에 따라 두 용어를 혼용하기로 한다.

[4] 서독에서 '헌법(Verfassung)'이란 용어 대신에 '기본법(Grundgesetz)'이란 용어를 쓰게 된 것은 서독 정부 수립 당시 서독의 정치 지도자들이 서독 정부의 성격을 잠정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즉, 동서독통일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1948년 6월 미국, 영국, 프랑스 및 베네룩스 3국의 외상(外相)이 참가한 런던회담에서 서방 6개국들은 서독 단독정부의 수립을 결의하였고 이를 독일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권고하였다. 이러한 서방의 '권고'에 대하여 독일의 정치 지도자들은 처음에는 서독 단독정부의 수립이 곧 민족 분단의 고착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당시 독일은 세계대전 패전국으로서 서방의 제안을 끝까지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이를 수락하게 되었다. 다만 서독 정부의 수립, 나아가 분단을 '임시적인 것(Provisorium)', 즉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규정하였으며, 특히 '기본법' 146조에 "이 기본법은 독일 민족이 자유로운 결정을 통하여 의결하는 헌법이 발효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잠정적 성격'을 명백히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헌법'이 아닌 '기본법'이 탄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통일 후에도 여전히 '헌법'이 아닌 '기본법'으로 불리고 있다.

Bund) 등에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오랜 전통이 있었으며, 이러한 전통은 1867년에는 22개국으로 결성된 북독일연합(Nord Deutscher Bund)으로 이어졌다. 이 북독일연합이 기초가 되어 1871년에는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O. von Bismarck)에 의해 25개 지방 국가로 구성된 독일제국(Deutsches Reich)이 탄생함으로써 연방제에 의한 최초의 통일국가가 형성되기도 했다(박응격 외 공저, 2001: 396). 이렇듯 연방제는 독일행정의 근간으로서 자리잡았으나, 1933년에 집권한 히틀러 나치정권에 의해 잠시 중단되기도 하였다. 히틀러 독재 정권은 권력의 분점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탄생한 서독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연합국의 도움과 지원으로 연방제를 부활시켰다. 통일 전 서독 11개의 주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니더작센(Niedersachsen),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바이에른(Bayern), 브레멘(Bremen), 서베를린(Westberlin),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 자를란트(Saarland), 함부르크(Hamburg), 헤센(Hessen)이었다.

서독의 11개 주들은 모두 주권을 가진 '국가(Staat)'로서의 위상과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서독 주들은 모두 독자적인 헌법을 보유하였고, 사법부와 행정부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헌법재판소를 비롯하여 고유의 국가기관들도 설치하였다. 대부분의 주는 명칭으로 '주(Land)'라고 표기했으나 일부 주, 예를 들어 바이에른주의 경우 주의 공식 명칭으로 '국가(Staat)'라고 표기하기도 했다.[5] 그러나 명칭과 관계없이 서독 각 주는 독일 국가를 구성하는 단위였으며, 그 자체가 독립적이며 주체적인 국가였다.

서독 기본법에서는 연방과 주의 권한을 분리하여 명시했는데, 특히 제30조에서는 "기본법에서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국가 권력의 행사와 임무 수행

[5] 바이에른주의 공식 명칭은 '자유국가 바이에른(Freistaat Bayern)'이다.

은 각 주(州)의 사항이다"라고 명시함으로써 대부분의 행정권을 주에게 부여하였다. 주가 연방에 앞서 행정의 일차적 주체라는 점을 강조했던 것이다. 다만 서독 주들은 국방, 외교, 화폐 등 법에서 명시한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들 사항은 연방의 고유 권한에 속했다.

표 1-1〉 서독 연방제의 특징

행정의 주체	개수	법적 성격 및 행정체제의 특징
연방(Bund)	1개	국제법상 서독의 국가 주권 대표. 연방헌법기관을 비롯한 연방정부와 연방행정기관 존재. 정치 · 행정의 일차적 책임자는 연방총리. 연방은 국방 · 외교 등에 관한 사항 등 고유 업무 수행.
주(Länder)	11개	공법상 국가의 성격을 띰. 입법 · 사법 · 행정권 보유. 주헌법기관, 주정부 및 주행정기관 존재. 국방 · 외교 · 재정 등을 제외한 입법권과 폭넓은 행정권 행사. 주지사와 주장관과의 협치 강조.

출처: (통일부, 2013: 20) 내용을 일부 수정.

연방제 실시로 인해 설치된 서독 연방의 헌법기관 중 하나는 연방상원의 성격을 가진 연방평의회(Bundesrat)였다. 이곳은 연방 법률이 제정될 때 주들의 의견이 제시되는 곳이었으며, 주 간의 이익과 갈등이 조정되던 곳이었다. 연방평의회는 독일 의회주의, 분권과 합의의 정신이 구현되고 제도화되던 기관이었다. 연방평의회는 각 주를 대표하는 의원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들 의원들은 연방하원인 연방의회(Bundestag) 의원과는 달리 국민들로부터 선출되지 않고 각 주에서 지명되었다.

2) 국정운영에 있어서의 분권과 협의 강조

연방정부 내부의 운영에 있어서도 분권행정의 원칙이 작동했다. 서독의 국가 원수는 연방대통령이었으나, 실제 정치·행정의 책임자는 연방총리(Bundeskanzler)였다. 그렇다고 해서 연방총리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는 아니었다. 연방의 정책과정에서는 '내각원칙'과 '부처원칙' 등으로 인해

연방총리의 권한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내각원칙이란 연방총리 혼자 연방의 주요 정책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각료들이 참여하는 내각회의에서 논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연방총리의 권한과 입지가 제한되거나 축소되기도 하였다. 특히 서독에서는 1949년 정부가 수립된 이후 통일 전까지 총선에서 특정 정당이 과반수 의석으로 승리한 적이 없었으며, 따라서 정부 구성에 있어서도 다수의 정당들로 구성된 연립정부(Koalitionsregierung)가 일반적 형태였다는 점에서[6] 연방총리의 권한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단적인 예로 연방총리와 당적을 달리하는 각료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연방총리의 의견에 반대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였다.

부처원칙이란 '연방총리의 국정운영 기본노선과 내각 결정의 테두리 내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자신의 관할권을 발휘하되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원칙'이다.[7] 서독의 '연방장관(Bundesminister)'의 위상과 역할에 있어 중요한 점은 이들이 단순히 연방총리의 명령 또는 지시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국정운영에 있어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다. 서독 연방장관은 연방총리의 부하가 아니었다. 따라서 연방총리를 비롯해 그 누구도 연방장관에게 명령하거나 지시할 권한이 없었으며 징계할 권한도 없었다. 연방장관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연방총리가 아니라 의회에 대해 책임을 졌다. 연방총리는 연방장관을 해임할 수 있으나, 정치적 구도를 염두에 두고 결정하여야 했다. 서독의 연방장관은 그 위상이 대통령제 국가의 장관은 물론 일본 또는 영국식 내각책임제 국가에서의 장관의 위상보다 높았다(양현모, 2014a: 122).

종합하면 서독의 내각원칙 그리고 부처원칙은 연방정부의 운영에 있어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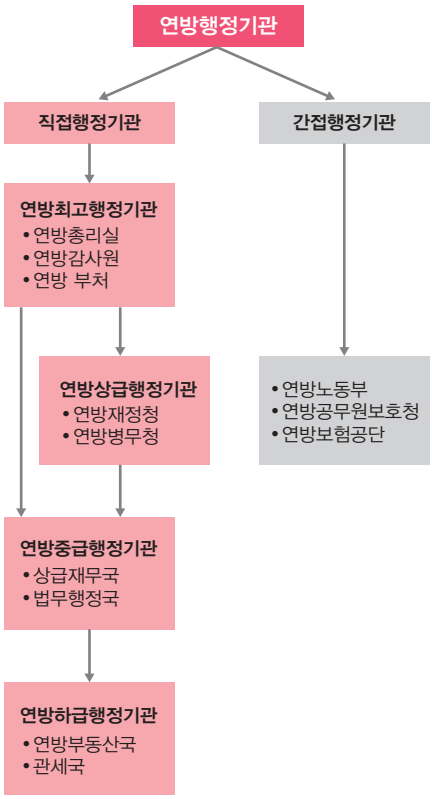
6 통일 이후 현재까지도 특정 정당이 연방하원 의석 과반수를 차지한 적이 없다. 즉, 1949년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연정을 하고 있다.

7 '내각원칙'과 '부처원칙' 외에 '총리원칙(Kanzlerprinzip)'이 있는데, 이 3개의 원칙이 서독 국정운영의 3대 원칙이다. 총리원칙이란 '연방총리가 국정운영의 이념과 정책의 기본노선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원칙'이다.

방총리의 권한과 그 위상, 내각의 기능과 위상, 연방 부처 및 연방장관의 위상 등을 규정한 원칙이었다(양현모, 2014a: 113). 그 핵심 내용은 정책과정에서 연방총리에게 권한이 집중되지 않고 모든 각료에게도 일정한 권한이 부여되어 연방총리와 각료가 협의하여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도록 한 것이었다.

연방행정기관의 형성과 운영에 있어서도 분권과 협의의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즉 연방행정기관의 구성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관료적 체제를 유지하였으나, 각 행정기관이 기관장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으며, 이는 기관의 예산권, 인사권 등에서도 잘 드러나 있었다. 서독의 모든 연방행정기관은 크게 '연방직접행정기관'과 '연방간접행정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연방직접행정기관은 아래 〈그림 1-1〉과 같이 '연방최고행정기관', '연방상급행정기관', '연방중급행정기관', '연방하급행정기관'의 4단계로 나뉘었다. 연방총리실, 연방감사실, 연방감사원, 연방 부처 등 대부분의 헌법기관들이 연방최고행정기관이다(양현모, 2014: 57).

그림 1-1〉 독일 연방행정기관의 체제



출처: (정재각·심익섭·이승철, 2013: 115) 내용을 일부 수정

서독 주행정의 구조와 운영 체제 역시 연방행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주정부(Landesregierung)는 주지사(Ministerpräsident)와 주장관(Landesminister)들로 구성되었다. 각 주의 주지사는 총선 결과에 따라 주의회에서 선출되었으며, 주 정치·행정의 중심이었다. 연방 정치·행정에서 연방총리가 수행하는 역할과 같이 각 주의 주지사는 주의 국정운영 노선을 결정하고 주장관들을 임명하였으며,[8] 주의 국정경영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졌다. 주지

[8] 반면 베를린, 브레멘, 함부르크 등 도시 주의 장관들은 주지사에 의해 임명되지 않고 시의회에서 선출되었다.

사와 주장관과의 관계도 연방총리와 연방장관과의 관계와 유사했다. 주장관 역시 연방장관과 마찬가지로 주지사의 정책노선 안에서 자신의 소관 부처 업무를 독자적으로 추진하였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졌다(양현모, 2014: 88). 주 역시 연방과 동일하게 최고·상급·중급·하급 행정기관들이 구분되어 설치되었다.

3) 지방자치제 실시

연방제와 더불어 서독의 국정운영에서 분권행정의 정신을 잘 보여 주었던 또 하나의 제도는 지방자치제였다. 서독의 지방자치제 역시 역사가 오래되어 1800년도 초 프러시아의 정치가 슈타인(Freiherr vom Stein)의 개혁에 의하여 시작되었다(통일부, 2013: 18). 독일 지방자치제는 연방제와 마찬가지로 바이마르공화국 시절까지 유지되었으나 1933년 나치 히틀러 집권 이후 잠시 중단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49년 서독의 정부 수립과 함께 부활되었다.

서독 각 주는 독자적인 지방자치법을 제정하고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은 '크라이스(Landkreis)', '독립자치시(kreisfreie Stadt)' 그리고 '게마인데(Gemeinde)' 등으로 대부분 동일했다. 크라이스는 한국의 광역자치단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자치단체로서 그 관할 지역에 기초자치단체인 게마인데를 여러 개 두고 있었다(양현모, 2014: 96). 독립자치시는 크라이스에 속하지 않은 주민 수 10만 이상의 도시로서 독립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자치단체였다. 독립자치시는 광역자치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나 규모면에서는 크라이스보다 작았다. 한국의 세종특별시와 같은 광역시라고 할 수 있다. 게마인데는 기초 단위로서 한국의 기초자치단체와 그 성격이 비슷했다(양현모, 2014: 96).

한편 서독의 지방행정에 있어서 자치단체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

던 것은 바로 '관구(Bezirk)'[9]였다(양현모, 2014: 96). 관구는 주 지역을 3~7개로 나눈 것으로서,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은 주의 경우 7개의 관구로 나뉘었으며 반면 지역이 좁은 주의 경우 3개의 관구로 나뉘었다. 각 관구에 설치된 관구청(Bezirksverwalungsamt)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주정부의 지시를 받는 일반 행정 단위로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을 지원하거나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관여된 광역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상 언급한 서독 지방행정체제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아래 〈표 1-2〉와 같다.

표 1-2〉 서독 지방행정체제의 특징

크라이스 (Kreis)	광역자치단체. 기능면에서 한국의 광역자치단체인 도(道)와 비슷해서 지역 내에 여러 기초단체를 두었다. 그러나 규모는 한국보다 작았다.
독립자치시 (kreisfreie Stadt)	한국의 광역시와 성격이 비슷하였으나 인구 10만 명 정도로 규모는 작았다. 한국의 세종특별자치시와 유사한 성격의 자치단체였다.
게마 인데 (Gemeinde)	크라이스 관할 지역의 자치단체, 보통 인구 10만 명 이하로 한국의 기초자치단체와 성격이 비슷했다.
관구 (Bezirk)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며, 주 직속의 행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들을 지원하는 등 광역행정업무를 수행하였다.

출처: (양현모, 2014: 97) 내용을 일부 수정.

4) 직업공무원제 실시

독일은 근대적 관료제를 구축·발전시킨 대표적인 국가이다. 영국과 프랑스 등 주변 국가들보다 통일을 늦게 이루었으며 근대국가로의 전환도 상대적으로 뒤처졌던 독일제국(Deutsches Reich)은 국가발전을 위해 충성심과 애국심 그리고 전문성을 강조하는 특유의 관료제를 구축하였다. 독일제국의 관료제는 이후 바이마르공화국까지도 그 특징과 골격을 유지하였다(양현모, 2015: 56~57).

[9] 국내에서는 이 관구(Bezirk)를 '지역'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으며, 번역하지 않고 독일어 원음으로 '베치르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동서독 분단 이후 서독은 독일 전통적인 관료제를 바탕으로 하는 고유의 인사제도를 발전시켰다. 서독에서는 '공직자(öffentlicher Dienst)'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했는데, 공직자란 정부 및 공공기관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모든 공공 인력을 의미하는 용어였다. 공직자는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 사법부 인력을 모두 포함하며 전통적인 '공무원(Beamten)'뿐만 아니라 정부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계약직원(Tarifbeschäftigte)'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었다(양현모, 2015: 57).

서독의 공직자 중에서도 특히 공무원에게 우선시되는 임무와 역할은 나라와 국민에 대한 헌신과 봉사였다(양현모 2006: 193). 서독 공무원에게는 국민 전체에 대한 충성과 공익을 위해 근무하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또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과 봉사, 정치적 중립 등을 강조하는 직업공무원제를 발전시킨 것이다. 이밖에 서독 공무원에게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전문성이 요구되었으며, 법률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 상급자에 대한 지원 및 자문과 복종의 의무, 공무상 획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의 의무도 부여되었다(정재각·심익섭·이승철, 2013: 223~224).

이러한 의무의 대가로 서독 정부는 공무원에 대한 정년의 보장, 합당한 보수의 지급, 정년퇴직 후의 연금 지급 등 생활과 후생에 대해 책임을 졌다(양현모, 2015: 59). 그러나 서독 공무원에게는 공무원법과 계약에 명시된 권한과 지위 이외에 어떠한 특권도 주어지지 않았다. 공무원을 포함한 서독 공직자의 수는 1990년 통일 직전 약 490만 명(군인 약 20만 명 포함)으로서, 약 6,000만 명에 달하던 당시 서독 인구의 약 7% 수준이었다(양현모, 1997: 34).

2. 동독 행정체제의 특징

1) 사통당(독일 사회주의통일당, SED) 중심의 국정운영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국가기관 또는 행정기관들이 공

산당에 의한 지도와 통제, 감시를 받아야만 한다. 동독(독일민주공화국,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약자 DDR) 역시 외형적으로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분리하는 삼권분립 구조를 취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집권당인 독일 사회주의통일당을 정점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유지하였다. 동독의 모든 국가기관 또는 행정기관 그리고 사회단체들은 사통당의 통제하에 있었으며, 사통당의 결정과 지시를 따라야 했다. 당연히 이들 기관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담보될 수 없었다. 사통당은 동독 체제와 그 운명을 같이했다. 사통당은 1989년 말 시민혁명으로 동독 국가 체제가 흔들리면서 영도적 지위를 박탈당하면서 몰락하였으며, 이로 인해 독일통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2) 민주주의 중앙집권주의 원칙

사통당 일당 독재와 함께 동독 행정체제에서 강조되었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민주주의 중앙집권주의'였다.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란 구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는 물론 현재 북한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정치·행정운영 체제의 원칙이다.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란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들어 있지만 사실상 하급기관은 상급기관에 무조건 복종하고, 지방은 중앙에 무조건 복종하여야 한다는 '중앙집권'의 원칙과 크게 다름이 없다(양현모, 2015: 70). 이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의 원칙하에서는 연방제, 지방자치제 등 분권을 작동 원리로 하는 제도들은 허용될 수 없었다.

그러나 분단 초기부터 동독지역에서 중앙집권 체제가 강조된 것은 아니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소련군이 점령했던 지역(동독지역)에는 독일 행정의 전통이었던 주가 잠시나마 존재했었기 때문이다. 소련 점령군은 이 지역에 작센(Sachsen),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Mecklenburg-Vorpommern), 튜링겐(Thüringen)의 5개 주를 두었으며, 이들 주에게 자치권을 부여하기도 했

다.[10] 사실상 연방제를 유지시켰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오래가지 못했다. 군정이 끝나고 동독 정부가 수립된 이후인 1952년 동독 정부는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여 이들 주를 모두 폐지하고 대신 이 지역에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15개의 관구(Bezirk)를 두었던 것이다. 국가 체제를 기존의 분권 체제에서 중앙집권적인 체제로 전환했던 것이었다.

중앙집권제를 강조했던 동독 정권은 지방자치제도도 인정하지 않았다. 동독 지방행정체제를 보면 관구, 크라이스, 게마인데 등 세 단계로 하여 그 명칭은 서독의 지방행정체제와 유사했다. 그러나 이들은 서독과 같은 주민자치단체가 아니라 중앙의 통제와 지시를 받는 일선 행정기관이었다. 지방인민위원회(Rat)의 책임자인 위원장과 관료들은 형식상 지방의회에서 선출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당에서 지명되었다. 또한 각 지방에는 대의기관인 '시의회(Stadtverordnetenversammlung)' 또는 '게마인데의회(Gemeindevertretung)'가 있었으나, 이들 지방의회 역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의 의회가 아닌 사통당과 중앙의 지시 또는 명령을 받고 이를 형식적으로 통과시키는 기관일 뿐이었다.

3) 국가간부제도

원래 마르크스-레닌 사회주의 이론에 따르면 '직업공무원제도'는 자본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완성 단계에서 타도하여야 할 대상이었다(양현모, 2015: 59). 그러나 동독 정부도 국가 체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행정 인력을 필요로 하였다.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다른 개념을 도입·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바로 '국가간부(Staatsfunktionär)'였다(양현모, 2015: 60). 동독의 국가간부와 서독의 공직자는 서로 대응관계를 이루는 용어로, 동독

[10] 이 5개 주 중 작센-안할트,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튜링겐은 주(Land)였으나 브란덴부르크와 작센은 프로빈즈(Provinz)의 지위에 있었다. 그러나 주와 프로빈즈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통일부, 2013: 135).

의 사통당과 국가기관에서 근무했던 모든 인력을 의미했다.

또한 동독의 기업소, 대중단체 등도 사실상 사통당의 지휘를 받는 국가기관이었기 때문에 이곳의 주요 인력들 역시 국가간부 개념에 속했다. 물론 단순 농장 근로자, 공장의 노동자, 농부 등은 국가간부 계급에 포함되지 않았다(양현모, 2015: 60). 동독의 국가간부 역시 서독의 공직자처럼 광범위한 개념이었으며, 아래 3가지 형태로 세분화할 수 있었다.

표 1-3〉 통일 전 동독 관료(국가간부)의 분류

분류	특징
노멘클라투라(Nomenklatura)	동독 사통당과 국가기관의 고위급 및 특권층 인사
카더(Kader)	동독 사통당과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중간급 간부
기타 국가기관의 종사자 (Mitarbeiter der Staatsorgan)	노멘클라투라와 카더를 제외한 모든 공직자(기업소 간부 등)

출처: (양현모, 2015: 60).

통일 전 동독의 노멘클라투라, 카더 및 일반 국가기관의 종사자들을 모두 국가간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들의 수는 서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일반적으로 동독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민간 영역이 작아 공공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실제 통일 직전 동독 정부가 서독 정부에게 통보했던 국가간부의 수는 200만 명이 넘었는데, 이는 당시 동독의 인구가 약 1,600만 명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수가 서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평가된다(양현모, 2015: 63).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봉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 분야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것이 서독의 공직자에게 부여된 일차적인 임무였다면, 동독 국가간부에게 부여된 임무는 '체제의 유지와 발전'이었다. 특히 체제 유지의 중추 세력인 노멘클라투라와 카더에게는 국민을 감독·감시하며 지도하는 임무가 부여되었다. 이러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들에게는 무엇

보다도 사통당의 명령과 지시에 대한 강한 복종심과 이러한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었다. 이 대가로 동독의 국가간부들은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사회적인 면에서도 특권을 누렸다(양현모, 2015: 63). 이상 내용을 종합해서 통일 전 서독과 동독의 행정체제의 주요 특징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4〉 통일 전 동서독 행정체제의 특징 비교

특징	서독	동독
행정의 일반적 특징	– 서구 민주주의 행정체제 – 분권행정의 강조 – 연방제 실시(11개 주) – 지방자치제 실시	– 사회주의 행정체제 – 민주주의 중앙집권적 행정체제 – 연방제 폐지(15개의 관구로 대체) – 지방자치제 실시 안 함
국정운영에 있어서의 특징	– 연방과 주 행정에 있어 내각원칙, 부서원칙 강조 – 각 행정기관의 독립성, 자율성 강조	– 사통당 중심의 국정운영 – 중앙집권적 행정체제 (각 행정기관의 자율성 불인정)
관료제의 특징	– 직업공무원제도 – 국민에 대한 봉사와 충성 의무 – 연금, 후생 복지 등 이외 특권 없음	– 국가간부제도 – 동독 체제의 유지 · 발전 의무 – 정치 · 사회적 특권 세력

출처: 필자 정리.

제2절 통일과정과 신연방주 구축

독일통일 과정에서 신연방주 체제 구축은 통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지만, 그 토대는 사실상 통일 이전에 이미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 초부터 동서독 간 또는 동서독 내부에서는 통일과 통일 이후의 체제통합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결정이 있었는데, 신연방주 부활도 이때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연방주의 구축과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통일 전부터 동서독 간에는 물론 각 국가 내부에서 진행·결정되었던 관련 논의 및 조치들을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다.

1. 통일 이전의 과정

1) 동독에서의 '주' 부활 결정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동독 사통당의 영도적 지위가 박탈된 이후인 1990년 초부터는 동서독 양국 내부에서는 물론 상호 간에 통일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서독 정부는 1990년 2월 콜(Helmut Kohl) 총리가 소련 당서기장인 고르바초프와의 회담을 통해 독일통일에 합의한 이후부터 통일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는데, 그것은 조속한 통일을 이루는 것이었다. 반면 모드로우(Hans Modrow) 총리를 대표로 하는 동독의 과도기 정부는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서독 정부와 이견을 보이지 않았으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서독과 달리했다.

동독 정부는 서독의 빠른 통일과는 달리 국가연합을 거쳐 독일연방을 구축하는 점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통일국가는 군사적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바르샤바조약기구(WTO) 등 어떠한 군사동맹 기구에도 가입하지 않는 중립국 국가 통일방안을 강조하였다(김영윤·양현모, 2009: 89).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다시 서독 정부에 의해 거부되는 등 동서독 정부 간에는 물론 각 진영의 내부에서도 아직 통일에 대한 확실한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채 다양한 논의들만 진행되고 있었다.

한편 동독 내부에서는 통일 방안에 대한 것 이외에도 동독 체제의 개혁과 통일 이후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그중 중요한 주제 하나가 바로 행정체제의 개편에 관한 것이었다. 통일의 방법과 시기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동독 내부의 개혁과 통일준비 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 중 대표적 주제는 동독에서의 주(州)의 부활과 지방자치제 실시에 관한 것이었는데, 여러 논의 끝에 동독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기본 방향이 결정된 것은 1990년 2월 1일에 있었던 각료회의였다.

여기에서 논의되고 동년 2월 5에 있었던 원탁회의(Runder Tisch)[11]에서 승인된 개혁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동독에서 주가 부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동독 국민의 50% 이상이 주 부활에 찬성한다고 설명하면서, 1990년 2월 말 이전에 주 부활을 위한 기본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통일부, 2013: 첨부 cd 문서번호 103). 동독에서 주의 부활을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이었다.

당시 주 부활에 대해 구체적 실천 방법, 즉 몇 개의 주를 어떠한 방법을 통해 설치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개의 방안이 논의되었다. 첫 번째 안은 기존의 관구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이 지역에 5개의 주를 설치하는 것인데, 기존의 행정구역 경계를 유지하는 방안이었다. 이 방안은 당시의 경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관구만 폐지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방안은 1952년까지 존속되었던 주와 지방자치단체 모두를 그대로 복원시키는 것으로써, 이는 곧 지난 약 40년 동안의 동독 사회주의 지방행정체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방안은 3개의 주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동독지역의 지리적 상황을 고려한 것은 물론 통일 이후 동독지역의 행정력 강화를 위해 가능하면 주의 수를 축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3개의 주를 만들어야 한다는 안이 제시되었다(통일부, 2013: 145~146).

또한 이 회의에서는 동독에서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야 하며,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자치 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도 논의·결정되었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를 위해 1990년 3월 18일 실시될 인민회의 선거 전에 지방자치법 초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결정되었다. 이밖에 동독 각료회의에서는 공무원법의 제정 등을 포함한 관료제의 개혁

[11] 원탁회의는 1989년 동독 정권의 붕괴 현상이 나타날 때 동독의 각 사회 및 정치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국가의 현안 및 진로에 대해 논의했던 단체이다. 이 단체는 처음에 아무런 권한을 가지지 못했으나 당시 인민회의를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정당성이 박탈됨에 따라 점차 입법권을 비롯해 기초행정 단위에서의 조직업무 등 임무를 부여받게 되었다. 원탁회의의 정당성은 선거에 근거하지 않았고 국민의 지지에 근거했던 것이다.

방안에 대한 논의와 결정도 있었다.

이렇듯 1990년 초 동독 내부에서는 정부가 통일의 방안을 확정하기 전에 이미 1952년 폐지되었던 주와 지방자치제의 부활, 공무원제도의 도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 및 결정이 있었다. 동독 정부와 시민사회가 통일 이전에 행정체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려 했던 배경에는 통일 전에 미리 동독사회의 개혁을 추진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통일을 대비하여 동독 행정체제를 서독 행정체제와 동일하게 해 두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일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든 미리 동독도 연방제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공무원제도를 도입하는 등 동독의 행정체제를 서독과 동일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 3월 18일에 있었던 동독 인민회의 선거는 통일 논의에 있어 중요한 선택을 하여야 하는 순간이었다. 동독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민주적으로 실시된 인민회의 의원 선거 전에 동독 내부에서 통일의 방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서독 기본법 제23조와 제146조에 나타난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가의 논의였다.

당시 서독 기본법에는 독일통일 방식으로 두 가지 형태의 방식이 모두 규정되어 있었다. 기본법 제23조에 규정된 통일 방식은 동독이 주권국가로서 소멸되고 그 지역이 서독으로 가입되는 통일 방식으로써, 급격한 통일 방식이자 동시에 비교적 간단한 통일 방식이었다. 소위 서독 체제가 동독 체제를 흡수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서독 기본법 제146조는 또 다른 통일 방식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동서독이 상호 합의하여 새로운 헌법을 제정한 후 통일을 이루는 방식이었다. 이 방식에 따르면 점진적 통일을 전제로 하여 동독과 서독이 대등한 입장에서 시간을 가지고 협상하여 통일독일의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고 그 이후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방식으로 통일을 이룰 경우 동독 국민

은 통일국가 체제에 대해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통일헌법의 규정에 담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 방식에 의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통일 실현의 불확실성도 제기되었다(김영윤·양현모, 2009: 98).

이렇듯 통일의 속도와 방식에 대해 국민적 의견이 나뉘어져 있는 상태에서 동독 국민의 다수는 결국 서독 기본법 제23조에 의한 방식을 택하였다. 동독 국민들은 1990년 3월 18일 있었던 인민회의 의원 선거 당시 신속한 통일, 즉 서독 기본법 제23조에 의한 통일 방식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민당(CDU) 중심의 '독일을 위한 연합(Allianz für Deutschland)'을 다수당으로 선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제23조에 의한 통일 방식을 택했던 것이다.

선거 직전 동독의 여러 정파들은 통일에 대한 다양한 방식에 대해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중 기민당(CDU) 중심의 선거연합인 '독일을 위한 연합'은 서독 기본법 제23조에 따른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다른 거대 정당인 사민당(SPD)은 기본법 제146조에 따른 점진적 통일 방안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선거 전 여론조사에서 점진적 통일 방안을 주장한 사민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선거 결과는 예상 외로 빠른 통일을 주장한 '독일을 위한 선거연합'이 승리한 것이었다.

정리하면 통일 직전 동서독 내부에서는 통일 방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최종적인 결정 요인은 총선에서 표출된 동독 국민들의 의사였다. 동독 국민 다수는 가능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동독이 국가로서 소멸하여 서독에 가입되는 방식의 통일을 선호하였으며, 이러한 방안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정파를 선택했던 것이다.

인민회의 의원 선거 이후 기민당 소속 드 메지에르(Lothar de Maizière)를 총리로 하는 동독의 마지막 정부가 출범하였는데, 이 정부의 주된 임무는 동독 국민의 의사에 따라 조속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독 정부와 협상하여 통일과 통일 이후의 체제통합에 대해 준비하

는 것이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동독의 인민회의 역시 조속한 통일을 원하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동서독통일과 통합에 있어 중요한 법률들을 제정했는데, 그중 통일 후 구동독지역의 행정체제 구축과 관련된 대표적 법률은 1990년 7월 22일 제정된 '독일민주공화국에서의 주 설치에 대한 법(Verfassungsgesetz zur BIidung von Ländern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일명 '주도입법(Ländereinführungsgesetz)'이었다(통일부, 2013: 첨부 cd 문서 번호 41).

이 법의 주요 내용은 1990년 10월 14일을 기해 동독지역에 있는 15개 관구들은 모두 폐지하고, 이 지역에 독립적인 5개의 주를 부활시킨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주 설치 방법은 기존 15개 관구 중 (동)베를린을 제외한 14개 관구 중에 2~3개 관구를 묶어 5개의 주를 설치하고, 수도인 (동)베를린 역시 여타 주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받도록 했다. 이 주도입법에 따라 폐지되는 관구와 그 지역에 설치되는 5개의 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5〉 주도입법에 따른 신설 주

신설되는 주 명칭	기존 관구(폐지되는 관구)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Mecklenburg-Vorpommern)	노이브란덴부르크(Neubrandenburg), 로스토크(Rostock), 슈베린(Schwerin)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포츠담(Potsdam), 프랑크푸르트/오데르(Frankfurt /Oder), 코트부스(Cottbus)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할레(Halle), 막데부르크(Magdeburg)
작센(Sachsen)	드레스덴(Dresden), 칼-마르크스(Karl-Marx-Stadt),[12] 라이프치히(Leipzig)
튜링겐(Thüringen)	에어푸르트(Erfurt), 게라(Gera), 줄(Suhl)

출처: 통일부(2013: 48) 내용을 일부 수정.

원래 주도입법은 1990년 10월 14일 발효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즉 1990

12 칼-마르크스시는 통일 이후 켐니츠(Chemnitz)시로 도시 명칭을 변경하였다.

년 10월 14일을 기해 동독에서 주가 신설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통일이 이보다 빠른 1990년 10월 3일에 실현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법도 1990년 10월 3일 조기 발효되었다. 즉 독일통일은 이 5개 주가 서독 기본법 지역으로 가입(Beitritt)하는 형식으로 실현되었다.

주도입법은 동독지역에 5개의 주를 설치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통일독일 행정체제 구축의 측면에서 볼 때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우선 이 법 제3조에서는 "동독은 권력분립이 보장된 연방국가이다"라고 천명하고 있었으며, "국가권력은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으로 구분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었다. 또한 "동독 주들의 법체제는 자유 민주주의적, 사회적, 경제적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중앙정부의 법체제와 일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었다. 또한 이 법에서는 게마인데와 크라이스 등 동독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었다. 이밖에 이 법의 제6조부터는 동독 지방자치단체와 각 주의 권한과 임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종합하면 동독의 주도입법은 단순히 연방제의 도입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통일을 앞두고 동독의 새로운 국가·행정체제를 새롭게 규정한 헌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 법에 따르면 동독은 더 이상 사회주의 체제 국가가 아니며, 서독과 동일하게 권력분립은 물론 연방제와 지방자치제를 규정하고 있는 서구 민주주의 체제 국가였다.

2) 동독에서의 지방자치제 실시

(1) 지방자치법 제정

언급한 바와 같이 1990년 초부터 동독 내부에서는 주(州) 도입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 실시에 관한 논의도 시작되었는데, 동년 3월 18일에 있었던 인민회의 선거와 동년 5월 6일에 있었던 최초의 자유 지방선거가 있은 후 지방자치제 실시가 더욱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동년 5월 17일 동독 인민회의는 '동독에서의 게마인데와 크라이스의 자치행정에 관

한 법(Gestz der Selbstverwaltung der Gemeinden und Landkreise in der DDR)', 일명 '지방자치법(Kommunalverfassung)'을 제정·공포하였는데, 이로써 5월 6일 지방선거로 구성된 게마인데와 크라이스는 자치단체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통일부, 2013: 첨부 cd 문서번호 38).

이 법은 크게 1부와 2부로 구성되었는데, 제1부는 기초자치단체인 게마인데에 대한 규정이었으며, 제2부는 광역자치단체인 크라이스에 관한 것이었다. 이 법 제1조에서는 '게마인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기초이자 근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항). 또한 "게마인데는 시민의 공동체이며, 자치행정 속에서 주민들의 행복을 담보하고 사회적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제2항). 그러면서 이 법 2조에서 '게마인데는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지역의 모든 사무를 자체의 책임하에 추진하는 것이 권리이자 의무'라고 규정하였다.

이밖에 이 법에서는 게마인데가 자치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남녀평등의 원칙'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파트너십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법에서는 게마인데 주민의 개념과 주민들의 자격과 권리 등과 함께 게마인데에 설치되는 기구 등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즉, 자치단체장과 게마인데의회(Gemeindevertretung)의 선거 방법, 권한, 임무 등도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동독 지방자치법 제2부는 광역자치단체인 크라이스에 대한 규정으로써, 그 내용은 제1부의 내용과 거의 동일했다. 우선 크라이스의 개념과 성격, 집행부와 의회 등 크라이스 기구에 대한 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었다. 다만 게마인데 규정보다 크라이스에 대한 규정에서는 크라이스의 임무, 역할 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동독의 지방자치법 역시 서독의 각 주 지방자치법과 그 내용이 거의 동일했다. 주도입법과 마찬가지로 동독 인민회의는 다가올 통일을 대비해 지방행정체제를 서독과 동일하게 개편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 법은 공포와 동시에 발효되었으며, 통일 이후에도 각

주에서 일정 기간 동안 유지되다가 각 주가 독자적으로 지방자치법을 제정함에 따라 폐기되었다. 통일 이후 각 주는 독자적인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기존의 지방자치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법(일명: 지방재산법) 제정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동독 인민회의는 지방자치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문제를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동독은 모든 자산들을 국유화하고 있었는데,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이들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율적인 활동을 위해서 기존 국유재산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정된 법이 바로 1990년 7월 6일 제정된 '게마인데, 시, 크라이스의 재산에 관한 법(Gesetz über das Vermögen der Gemeinden, Städte und Landkreise)', 일명 '지방재산법(Kommunalvermögensgetz)'이었다.

이 법에서는 지방행정의 임무 수행과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동안의 인민재산, 즉 국유재산이 게마인데, 시, 크라이스 등 지방자치단체로 무상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제1조). 구체적으로 동독의 기존 행정 단위였던 게마인데와 크라이스 소유의 기업, 토지, 부동산 등 재산은 모두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한다고 되어 있었다(제2조). 마찬가지로 이 법에서는 광역행정을 위해 사용될 기업자산, 시설물 등은 광역자치단체인 크라이스의 재산으로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이외 이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다만 공공의 목적을 위한 효과적인 이용과 건전한 재정관리 등이 강조되었다.

3) 동서독 통일조약 체결

동서독 정부는 1990년 5월 18일 화폐·경제·사회통합에 관한 제1차 국가

조약을 체결한 이후 동년 8월 31일에는 제2차 국가조약인 '통일조약(Einigungsvertrag)'을 체결하였다. 전문 및 제9장 45조로 이루어진 통일조약은 동서독통일에 대한 기본 조약으로서, 통일의 방법과 시기(통일의 날)를 비롯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다(통일부, 2013: 첨부 cd 문서번호 20). 특히 이 조약에서는 신연방주 행정체제 구축과 관련되어 아주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제1장(Kapitel I)에서는 1990년 10월 3일을 기해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은 소멸되고 그 지역이 서독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서독)에 가입되며, 동시에 그 지역에는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튜링겐주가 설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1990년 10월 3일을 기해 동독은 소멸되고 5개 주의 형식으로 서독 기본법 지역으로 가입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동베를린은 서베를린과 통합되어 1개의 주가 되며, 동시에 통일독일의 수도가 된다.

신연방주 행정체제의 구축과 관련된 조항은 제5장(Kapitel V, 제13조~제20조)의 내용에 있다. 이 장에는 통일 이후 신연방주에 있는 기존 행정기관의 관할 주체, 구동독 공공 인력의 복권에 대한 사항, 구동독 사법기관 및 행정기관이 내린 결정사항의 효력 유지 문제, 구동독 공공 인력의 법적 문제 등이 규정되어 있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신연방주지역의 기존 행정기관들은 그 지역 주정부의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만약 행정기관의 업무 영역이 주의 경계를 넘어 여러 주들에 분할·귀속될 경우 해당 주들이 공동으로 관할권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행정기관이 여러 산하기관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산하기관들이 각기 여러 지역에 위치해 있을 경우 이들 산하기관들은 위치해 있는 주정부의 지시를 받도록 하였다. 각 주정부가 소관 지역에 있는 행정기관의 해체 또는 기능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였다(제13조 제1항).

그러나 각 주에 있는 기존 행정기관 또는 부속기관의 수행 업무가 주의 업무가 아니고, 연방의 업무일 경우 그 기관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연방최고

행정기관[13] 소속이 된다고 규정하였다. 이들 기관들의 해체 또는 기능 전환 여부 역시 해당 연방최고행정기관이 결정한다고 명시하였다(제13조 제2항). 통일조약에서는 이밖에 통일 이후 각 주의 주지사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각 주의 대변인과 각 관구의 전권위임자들이 주지사의 업무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또한 이 법에는 5개 주의 행정체제 구축에 다른 서독의 연방주들과 연방정부의 행정지원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특히 연방은 '독일통일기금'을 통해 신연방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명시하였다. 이외 이 조약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통일 이후 구동독 공공 인력에 대한 처리 문제, 즉 구동독 공공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규정하였다. 이 조약에 의하면 구동독 공공인력은 통일과 함께 통일독일에 인계된다. 이후 이들은 과도기 규정에 따라 검증을 받게 되고 검증에 탈락한 자는 해임되며, 검증에 합격한 자는 통일독일의 공직자로 재임용된다.

2. 통일 이후 과정

1) 신연방주 정부 구성

독일은 1990년 10월 40여 년간의 분단을 극복하고 마침내 통일을 실현하였다. 동서독은 통일조약을 통해 합의한 바와 같이 구동독지역에 5개의 연방주가 신설되고, 이 주들이 서독 기본법 적용지역에 가입되는 형식으로 통일을 이루었다. 이로써 통일독일은 이전 서독(구서독)의 11개 주에서 신연방주 5개가 더해져 16개 연방주로 구성된 연방국가로 재탄생하였다.

[13] 연방최고행정기관이란 곧 연방 부처를 의미한다.

표 1-6〉 통일 이후 연방주(16개)

	주 명칭	연방평의회 의석수	주도(州都)
구연방주 11개 (49석)	바덴-뷔르템베르크	6	Stuttgart
	바이에른	6	München
	서베를린	4	Berlin(West)
	브레멘	3	Bremen
	함부르크	3	Hamburg
	헤센	4	Wiesbaden
	니더작센	6	Hannover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6	Düsseldorf
	자를란트	3	Saarbrücken
	슐레스비히-홀슈타인	4	Kiel
	라인란트-팔츠	4	Mainz
신연방주 5개 (19석)	브란덴부르크	4	Potsdam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3	Schwerin
	작센	4	Dresden
	작센-안할트	4	Magdeburg
	튜링겐	4	Erfurt

출처: (통일부, 2013: 54) 내용을 일부 수정.

이들 신연방주 간의 경계는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설정했지만, 1952년 이전에 있었던 주 경계와 완전히 일치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각 주에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원할 경우 각 주의 경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각 주 경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자신들이 속할 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1990년 10월 3일 신연방주 형성 이후에 1952년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주로 소속되기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고려해 주는 조치였다(김일무, 1995: 129). 그러나 이 경우 우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의 주민청원을 통해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 주민청원이 지방의회를 통과해야 했다. 이후 주 간의 합의와 조약(국가조약, Staats-vertrag)도 체결하여야 했는데, 사실상 이 과정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경계선 변경은 여러 사례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브란덴부르크주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는 1992년과 1994년 사이에

경계선 변경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여 총 25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상호 교환하였으며, 튜링겐주와 작센주도 상호 조약을 체결하여 튜링겐주에 있던 10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작센주 소속으로 변경시켰다(Bundesministerium des Innern, 1995a: 63).

(1) 주의회 선거 및 정부의 구성

통일과 함께 구동독지역에 5개의 연방주가 들어섰지만 아직 정상적인 행정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지역은 편입지역(Beitrittgebiet) 또는 가입지역라고 불렸다. 신연방주지역에 있었던 구동독 행정체제는 사실상 모두 해체되었지만, 새로운 체제는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태였다. 의회도 구성되지 않았으며, 정부를 비롯한 행정체제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주헌법을 비롯한 법체제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였다. 신연방주 편입 이후 당분간은 제로의 상태였으며, 과도기 체제로 임시 전권자가 임명되어 주 국정운영을 담당하고 있었다.

주 체제의 구축은 주의회 선거와 함께 시작되었다. 5개 주에서의 의회 선거는 1990년 10월 14에 실시되었는데, 이 주의회 선거는 각 주에서 국가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 출발점이 되었다. 각 주의 의회 선거와 함께 5개 신연방주에서는 독일연방공화국의 구성주로서 연방 기본법이 명시한 바와 같이 법치주의, 민주주의,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를 강조하는 국가·행정체제를 구축하여야만 했다.

일반적으로 구연방주에서는 의회 선거일이 각기 달랐으나, 신연방주의 경우 통일 이후 첫 번째 선거였기 때문에 5개의 주에서 일제히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는 각 주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4개 주에서는 신속한 통일을 주장했던 기민당(CDU) 등 보수 성향의 정파들이 승리하였다. 다만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주에서는 신속한 통일보다는 점진적인 통일을 주장했던 사민당(SPD)이 승리하였다. 주의회 선거에서 당선자의 77%는 구동독 시

절의 정치가들이 아닌 신인 정치 엘리트로 채워져 통일독일의 정치무대에서 사실상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 또한 5개 주의회 당선자 총 509명 가운데 단지 1%만이 과거 동독 인민회의 대의원 출신이었으며, 2명은 구서독 출신이었다(정재각·심익섭·이승철, 2013: 134).

선거 후 각 주의 의회에서 치러진 주지사 선거에서 작센(Sachsen)주를 제외한 4개의 주에서는 구동독 출신 정치가가 주지사로 선출되었으며, 작센주에서는 구서독 출신 정치가인 비덴코프(K. Biedenkopf)가 선출되었다. 각 주에서 선출된 주지사는 장관을 임명하면서 정부를 구성하였으며 정부조직도 결정하였다. 각 주의 주지사 및 집권 정당 그리고 정부조직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7〉 통일 직후 신연방주 정부 구성 현황

주 명칭	주지사(소속 정당)	정부조직
브란덴부르크	Mafred Stolpe (사민당, SPD)	내무부, 법무부, 재무부, 노동 · 사회 · 보건 · 여성부, 경제 · 기술부, 교육 · 청소년 · 체육부, 식량 · 농림부, 도시발전 · 주택 · 교통부, 환경 · 자연보호 · 도시계획부, 과학 · 연구 · 문화(10개 부처)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Alfred Gomolka (기민당, CDU)	내무부, 유럽 · 연방 · 법무부, 재무부, 경제부, 농업부, 문화부, 환경부, 사회부(8개 부처)
작센	Kurt Biedenkopf (기민당, CDU)	법무부, 재무부, 문화부, 과학 · 예술부, 내무부, 경제 · 노동부, 환경 · 州발전부, 사회 · 보건 · 가정부, 농림 · 식량부(9개 부처)
작센-안할트	Gerd Gies (기민당, CDU)	내무부, 법무부, 재무부, 노동 · 사회부, 경제 · 기술 · 교통부, 식량 · 농림부, 과학 · 연구부, 환경 · 자연보호부, 연방 · 유럽부, 문화부, 국토이용 · 도시건설 · 주택부(11개 부처)
튜링겐	Josef Duchač (기민당, CDU)	과학 · 예술부, 문화부, 내무부, 환경 · 州계획부, 농림 · 임업부, 사회 · 보건부, 재무부, 법무부, 연방 · 유럽부, 경제 · 교통부(10개 부처)

출처: 통일부, 2013: p.57 내용과 인터넷 자료(www.google.de) 참조하여 필자 작성.

(2) 신연방주 헌법 제정

5개 신연방주에서는 의회 구성과 함께 곧 국가의 근본이 되는 헌법제정

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하여 1992년부터 헌법을 제정하였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와 튜링겐주의 경우 각각 1993년 4월 30일과 동년 9월 25일 의회에서 헌법을 제정하였다. 작센주의 헌법은 1992년 5월 27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작센-안할트주의 헌법은 1992년 7월 16일부터 그리고 브란덴부르크주 헌법은 1992년 8월 20일부터 발효되었다.

이렇듯 각 주의 헌법은 통일 이후 제정되었지만, 사실 그 초안은 대부분 통일 이전에 마련되어 있었다. 통일 이전 동독의 주도입법이 제정될 무렵 당시 관구 소속의 관료들은 향후 설치될 주의 헌법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예를 들어 브란덴부르크주 헌법의 경우 1990년 4월 당시 3개 관구(Bezirk)의 정부대리자들에 의해 논의되어 그 초안이 작성되었다. 통일 이후 새로 구성된 주의회에서는 이전에 만들어진 초안을 기초로 하여 주헌법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마침내 1992년 헌법을 제정했던 것이다. 5개 신연방주 헌법의 구조 및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하였으나 약간의 차이도 보였다. 5개 주 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4]

가) 브란덴부르크

전문과 117조로 구성되어 있었던 브란덴부르크주 헌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1조에 브란덴부르크주는 '독일연방공화국을 구성하는 하나의 주'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브란덴부르크주는 게마인데(기초자치단체)와 게마인데조합(광역자치단체)'으로 구성되며, '주도(州都)는 포츠담(Potsdam)시'라고 명시하고 있었다. 제2조에서는 '브란덴부르크주는 자유·법치·사회적 국가이며, 자연환경과 문화를 보호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민주국가'라는 점도 강조하였다. 또한 '주변국, 특히 폴란드 국민들과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라는 점도 명시하였다. 브란덴부르크지역은 과거 분쟁이 있었던 폴란드와

14 5개 신연방주 헌법 내용은 인터넷(www.google.de) 홈페이지를 통해 분석하였음.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데, 과거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폴란드와의 우호 관계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하겠다.

브란덴부르크 행정체제에 대해서는 주헌법 82조부터 자세히 명시하고 있는데, "주정부는 주지사(Ministerpäsident)와 주장관(Landesminister)으로 구성된다"(제82조)라고 명시하여 연방과 같이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를 취했다. 제83조부터는 주지사의 선출, 임기, 불신임 조건, 정책결정권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주헌법 제97조부터는 지방자치행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지방자치단체 명칭에 있어 다른 주와 차이가 있는 점이 이채롭다. 즉, 다른 주에서는 광역자치단체를 크라이스라고 하는 데 반해 브란덴부르크의 경우 '게마인데조합(Gemeindeverbände)'이라고 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마인데조합의 성격 및 특징은 크라이스와 동일했다.

나)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헌법은 크게 전문을 포함해서 제4편으로 구분되는데, 제1편은 국가형태, 국민의 기본권, 국가목표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편에서는 의회, 정부, 헌법재판소 등 국가조직에 대해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3편은 국가기능에 대한 부분으로서, 법의 제정과 개정, 예산, 행정체제, 지방행정 등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4편은 일종의 부속 문서로서 학생들을 위한 헌법 설명, 과도기 규정, 헌법의 발효 시기 등에 대해 언급하였다.

헌법 제1조에서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는 메클렌부르크와 포어폼메른 두 지역이 공동으로 구성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과거 1952년 이전과는 다르게 메를렌부르크지역과 포어폼메른지역이 합쳐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두 지역의 화합을 강조한 셈이다.

제2조에서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는 공화국이며 사회적 국가이고 자연환경의 보호를 의무로 하고 있으며 법치주의 국가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제3조에는 국민주권, 권력분립, 지방자치제, 선거에서의 자유·평등·비밀·직접의 원칙, 정당과 시민사회 활동 보장 원칙 등 서구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원칙 등이 명시되고 있다. 국가 체제의 구축에 있어 정당 활동 등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활동 보장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특이한 점인데, 이는 주가 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던 구동독의 시민혁명을 계승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역시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의원내각제 정부형태 주로서 주지사는 의회에서 선출되며, 주지사는 주장관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고 주정부의 행정을 책임진다(42조, 43조).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 역시 지방자치제 실시를 헌법에서 명문화하고 있으며(72조), 또한 게마인데와 크라이스는 자율적으로 집행부와 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72조).

다) 작센

작센주의 헌법은 전문과 본문 11편, 부속문서로 구성되었는데, 본문의 경우 제1편은 국가의 기초, 제2편 기본권, 제3편 의회, 제4편 정부(주지사와 주장관), 제5편 입법부, 제6편 사법부, 제7편 행정기관, 제8편 재정, 제9편 교육, 제10편 교회 및 종교 공동체, 제11편 과도기 규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작센주의 헌법에서는 주권재민의 원칙, 삼권분립의 원칙, 국민의 기본권 보장 원칙 등 일반적으로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강조하고 있는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행정체제에 대한 부분에서는 작센주의 주지사는 주의회에서 선출되고 주장관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는 등 행정에 대해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다만 다른 주와는 달리 작센주의 헌법에서는 작센주가 단순히 주가 아니라 '국가'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주지사도 단순히 행정 책임자가 아니라 국가 원수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그 예로서 주의 명칭에서도 작센은 '주(Land)'가 아니라 '국가(Staat)'라

고 하고 있으며, 주지사의 권한에 있어서도 정책결정의 최종적 책임자로서 국정운영의 기본노선을 결정할 뿐 아니라(제63조), 주 소속 모든 법관과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부여되고 있다(제66조). 또한 작센 주지사는 외부로부터 주를 대표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어(제65조), 마치 국가 원수와 같은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 작센주 헌법에는 주지사의 사면권도 명시하고 있다(제67조).

행정에 대해서는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직업공무원 제도의 채택, 지방자치제 실시를 명시하였다. 특이한 점은 작센주는 헌법에 비밀경찰 조직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으며, 정보기관의 경우 의회가 지정한 기관의 통제를 받는다고 명시하였다(제83조). 과거 동독 시절의 반성과 적폐의 청산 차원에서 비밀경찰제 폐지에 대한 조항을 명문화한 것이다.

라) 작센-안할트

작센-안할트의 헌법은 전문 이 외에 본문 4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제1편의 내용은 국가권력의 기초, 제2편은 국민의 기본권, 국가의 임무 및 목표 등이 주요 내용이며, 제3편의 경우 국가·행정체제에 대한 내용으로 입법부, 사업부, 행정부의 형성과 임무·조직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행정체제에 대해서는 공공행정(86조), 지방자치행정(87조), 지방재정의 운영 및 기구(88조, 90조) 등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었다. 주요 내용은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작센-안할트주에서 지방자치제도 실시를 담보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권한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제4편은 과도기 규정 및 헌법 발효 시점에 대한 규정이었다.

마) 튜링겐

튜링겐주 역시 주 명칭을 국가(자유국가 튜링겐)라고 정했으며, 이 점을 헌법에 명문화하였다. 헌법 44조에서는 튜링겐주는 의회 민주국가이며, 사회

적 국가이고, 자연 친화적인 생활환경 보호를 의무로 하는 법치국가라는 점을 규정하였다. 주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하여 명문화하였으며 국가의 목표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튜링겐 헌법에서는 주의 헌법기관으로서 주의회, 주정부, 주헌법재판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기능 및 조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헌법제정 및 개정 절차에 대해서는 주의회 또는 국민투표 등의 규정을 명시하면서 국민에 의한 직접적 결정, 즉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강조하고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5개 신연방주의 모든 헌법에서는 다른 국가의 헌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성격 규정에 있어 의회 민주주의 국가, 사회적 국가, 법치주의 국가임을 규정하였다. 이는 독일 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것이었다. 국가·행정체제에 있어서는 각 주는 고유의 의회, 정부, 헌법재판소를 갖고 있는 주권 '국가'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의회에서 선출되는 주지사가 각료를 임명하는 의원내각제 정부를 표방하고 있었으며, 정부 운영에 있어 연방과 같이 분권과 협의정신을 강조하고 있었다. 특히 각 주는 지방자치제 실시를 명문화하였다. 나아가 5개 신연방주는 모두 자연 보호, 생활기반을 보호하는 것을 의무로 설정하고 있었다. 또한 각 주는 단순히 시장경제 체제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시장경제와 경제생활에 있어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른 사회적 파트너십을 강조하였다.

2) 신연방주 행정체제의 구축

(1) 연방행정체제 구축

통일 전 서독의 기본법에서는 국방(병무 포함), 외교, 우정, 철도, 재정, 관세 등의 업무 분야는 주가 아닌 연방의 행정권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지역에 관련 행정기관을 설치하였다. 또한 통일 후 구동독지역에서는 과거청산 등 기존에는 없었던 행정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연방행정기관들이 신설되었다. 이외 연방의회는 신연방주지역 고용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연방주지역에 있던 일부 연방행정기관들을 신연방주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가) 연방행정기관 설치

① 연방재산관리청(Bundesvermögensamt)

통일 이후 신연방주에서의 연방행정체제 구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치는 연방재산관리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문제였다. 우선 구동독 국유재산의 인수 및 매각을 위한 재산관리 행정기관의 설치가 필요했다. 동독에서는 연방재산 행정에 해당되는 행정기관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 인민군 관할 산림지역을 관리·운영하는 일부 산림기관만이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연방재정부는 1990년 10월 3일 구동독 모든 관구지역에 14개의 연방재산관리청을 설치하였다. 연방재산관리청의 주요 임무는 신연방주지역에 있는 국유재산의 인수 및 매각이었다.

연방재산관리청이 구동독지역에서 수행했던 구체적 임무는 a) 구동독 인민군 소유 부동산과 구동독 인민군 주택의 관리 및 매각, b) 소련군 철수 이후 사용했던 부동산의 관리 및 매각, c) 구인민군 재산의 정리 시 연방정부의 권익 수행, d) 구동독 인민재산의 관리 및 매각(통일조약 제22조 1항 관련), e) 소련군 및 CIS 주둔군에 의해 야기된 피해에 대한 보상, f) 연방기관 근무자용 주택 마련(예: 임대주택용 융자를 통해), g) 더 이상 행정용으로 불필요한 기타 연방부서 소유 부동산의 인수 및 매각 등이다(Bundesministerium des Innern, 1995a: 70).

이러한 임무의 수행을 위해 신연방주에 있던 연방재산관리청에서는 구동독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한 관료들을 채용하였다. 예를 들어 구동독 인민군 소유 임업 분야에서 근무했던 인력을 활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구동독지역에서는 적절한 교육훈련을 받은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

기 때문에 구서독지역에서 많은 인력을 충원하여야 했다. 1993년 당시 신연방주 재산관리청에서 근무했던 인력의 수는 약 4,500명이었다(김일무, 1995: 133).

② 신탁관리청(Treuhandanstalt)

신탁관리청은 1990년 7월 12일 동독 인민회의에서 제정된 법에 의해 신설되었으며, 1990년 10월 3일 통일 이후 통일조약에 따라 통일연방의 행정기관으로 승격되었다(양현모, 2014: 76). 신탁관리청은 구동독지역 인민재산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던 연방재무부 산하기관이었다. 뿐만 아니라 구동독지역인 5개 신연방주와 동베를린 내 국영기업의 사유화·정상화 및 청산, 원소유자에 대한 반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이 외에 정부 국유재산의 반환업무도 수행하였다(양현모, 2014: 76). 그러므로 신탁관리청은 구동독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계를 사회적 시장경제 체계로 변환시키기 위한 중심 기관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김영윤·양현모, 2009: 257~26, 재인용: 양현모, 2014: 76).

③ 연방관세행정청(Zollverwaltung)

연방관세행정청은 통일 전 구서독지역에 설치되어 있던 행정기관이었다. 1990년 7월 1일 동서독 화폐·경제·사회통합이 실시되기 이전 동독에는 관세와 소비세가 없었기 때문에 관련 행정관청도 존재하지 않았다.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기점으로 구동독 내 관세 행정과 소비세 행정에 대한 책임이 연방관세행정청으로 양도되었으며 상당수의 구동독 직원들도 이 기관으로 편입되었다(양현모, 2014: 78). 이후 구동독 직원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더불어 구서독 주로부터의 대대적인 직원 전입, 구서독지역 세관에서의 실무 연수를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문성에 바탕을 둔 빠른 성과 달성이 가능했다. 199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구동독지역에 위치한 여러 연방관세행정청에서 약 8,200명의 직원들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Bundes-

ministerium den Innern, 1995a: 71, 재인용: 양현모, 2014: 78).

④ 연방미해결재산문제처리청(Bundesanstalt für zentrale Dienste und offene Vermögenfragen)

연방미해결재산문제처리청(BADV)은 통일 후 재산법을 시행하고 구동독에서 몰수된 재산의 반환 및 손해배상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는 연방재무부 소속 기관이었다. 연방미해결재산문제처리청은 연방의 최고관청으로 미해결 재산문제 처리에 관한 법과 손해배상법 그리고 국가 보상에 관한 법을 집행하였으며, 보상금 지불을 위해 마련된 손해배상 기금 등 특수 재산을 관리·경영하였다(양현모, 2014: 79).

아울러 과거 국가가 관리했던 재산 가운데 법적 소유자를 찾을 수 없는 것을 사용하거나, 구동독 시절 법적 보호·관리기관에서 담당했던 재산문제를 처리하였다. 또한 계좌 예금액의 지불과 제국 마르크(1924~1948년까지의 독일 제국 화폐 단위)로 표시된 구유가증권의 양도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으며, 구동독 당과 대중조직이 소유했던 재산의 반환 및 손해배상, 보상 신청에 관한 결정, 미해결 재산문제 관련 입법 역시도 관할하였다(양현모, 2014: 79).

연방미해결재산문제처리청은 각 신연방주 대표 1명, 이익단체와 해당 단체 대표 4명 그리고 전문 감정인 4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두었다. 자문단은 재산법 시행 및 연방미해결재산문제처리청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연방미해결재산문제처리청의 본청은 베를린에 위치하였으며, 프랑크푸르트 오더(FrankfurtOder), 에어푸르트(Erfurt), 게라(Gera), 라이프치히(Leipzig), 막데부르크(Magdeburg), 노이브란덴부르크 (Neubrandenburg)에 지사를 두었다(김영윤·양현모, 2009: 275~278, 재인용: 양현모, 2014: 79~80).

⑤ 동독당·대중조직재산검증위원회(Die unabhängige Kommission zur Überfrüfung der Vermögen der Parteien und Massenorganisation der DDR)

동독당·대중조직재산검증위원회(UKPV)는 구동독 시절 존재했던 모든 정당은 물론 그 정당과 관련된 조직 및 법인 그리고 대중조직의 재산을 파악하여 확보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행정기관이었다. 이 기관은 확보된 재산은 이전 관리자나 권리 승계인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으며, 확인 또는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공익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양현모, 2014: 80).

동독당·대중조직재산검증위원회는 연방내무부의 산하 기관이었지만, 업무에 관해서는 독립적으로 활동하였다. 동독당·대중조직재산검증위원회는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정상적인 업무 활동을 위해 독일연방공화국의 형사소송법을 바탕으로 증거수집권(증인 심문, 가택수색과 압수)을 부여받았다. 또한 이 위원회는 중요 회의 때마다 16명의 구성위원 외에 신탁관리청·통일특수과제청·연방내무부 대표 등이 참가하였다.(김영윤·양현모, 2009: 284~287, 재인용: 양현모, 2014: 80).

⑥ 통일범죄중앙수사처(Die zentral Ermittlungsstelle Regierungs– und Vereinigungskriminalität)

통일범죄중앙수사처(ZERV)는 구동독 관료 및 공직자의 형사범죄에 관련한 행위(정부범죄)를 주로 다루는 기관이었다. 구동독 정부 인사에 대한 형사소추와 함께 공직자 범죄 행위, 통일과정에서 발생된 범죄, 특히 그중 경제 분야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였다. 제5조직으로 불리던 정부·통일범죄중앙수사처는 베를린 경찰청의 독자적 형사 조직이었으며, 1991년 9월 1일 설치 후 전국에 걸친 수사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구동독 국경경비대원, 사회주의통일당(SED) 정치국 및 국가안전부 위원들을 대상으로 정부범죄 여부를 수사하였는데, 이 당시 주요 기소 사안은 구동독을 이탈하려던 사람들을 사살하거나 지뢰 설치를 통한 인명피해

였다. 뿐만 아니라 구동독 붕괴 이전인 1989년 11월까지 발생한 불법 행위, 특히 정치적 행위와 관련된 형사소송 절차와 불법적인 우편물 검열 및 도청, 선거 조작, 스포츠 선수의 도핑 등의 사건 등을 수사하였다. 정부범죄 이외에도, 구동독 정당과 대중조직의 불법적 재산 횡령이나 각종 사기행각 등 통일범죄 역시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김영윤·양현모, 2009: 288~290, 재인용: 양현모, 2014: 81).

⑦ 구동독 국가안전부 문서관리청(Die Bundesbeauftragte für die Unterlagen des Staatssicherheitsdienstes der ehemaligen DDR)

구동독 국가안전부 문서관리청(BStU)은 구동독 정부 문서에 대한 관리를 주업무로 하는 정부기관으로, 특히 구동독 국가안전부(MfS 혹은 슈타지-Stasi)의 문서를 주요 관리대상으로 삼았다. 문서 보존의 원칙에 맞게 구동독 국가안전부의 문서를 수집·정리·보관·평가 및 관리하였고, 국가안전부가 생성·보관하는 개인 신상기록에 접근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더불어 정보유출로 인한 개인 인격권의 침해를 예방하는 것 등이 주요 업무였다. 이 외에도 통일 이전 구동독 국가안전부의 모든 행위에 대한 정치적, 역사적, 법적 청산작업을 지원 및 보장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을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베를린에 위치한 본부 이외에도 14개의 지사를 두었다(김영윤·양현모, 2009: 294~299, 재인용: 양현모, 2014: 82).

⑧ 사통당 독재청산재단(Die 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동독 사통당 독재청산재단(이하 청산재단)은 소련 점령지역(SBZ) 및 동독 내 독재의 원인, 역사,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었다. 이들의 주요 업무로는 사통당 독재의 부당성과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사회의 반(反)전체주의적 견해의 확산, 민주주의의 중요성 강조, 동서독 주민들의 상호 통합

증진 및 공고화 등이었다. 청산재단은 그중에서도 구동독 시기 희생자집단의 활동과 소련 점령지역 및 동독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학술연구를 지원하였다. 사통당 독재에 희생되었던 인사들에 대한 상담 및 지원활동, 사통당의 부당한 독재와 비윤리적 만행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작 및 배포, 다양한 행사 개최를 통한 사회적 공론화 작업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사통당에 항거했던 사람들을 찾아 표창하고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의 활동도 병행하였다. 이밖에도 공산주의 독재사(獨裁史)를 연구하고, 연구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지원하였다. 그중 특히 사통당의 독재 등 독일의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기 위하여 학계와의 연계를 통한 후진 연구자 양성 업무 역시 수행하였다(김영윤·양현모, 2009: 304~308, 재인용: 양현모, 2014: 84).

나) 연방행정기관 이전

통일과 함께 독일 내부에서는 신연방주지역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연방 소속의 행정기관들을 신연방주지역에도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그러자 연방의회는 구서독지역에 산재해 있는 연방행정기관 중 일부를 5개 신연방주지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연방행정기관의 신연방주지역 이전은 이 지역을 배려한다는 일종의 정치적 신호이자 동시에 신연방주지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한다는 목적하에 시행되었다(양현모, 2015: 84). 일종의 국토 균형발전 전략 차원에서 추진된 정책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떤 기관을 어떤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지에 관한 사항이 문제로 부상하게 되었고, 이에 연방의회는 독립기구인 '연방주의위원회(Föderalismuskommission)'를 구성, 해결안을 도출함과 동시에 이를 연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15] 1991년 6월 20일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한 연방주의위원회

[15] 구성원은 30명의 위원과 위원장 한 명이었는데, 위원들의 경우 연방의회, 연방평의회 소속이었다. 이 위원회에서는 연방기관의 신연방주 이전문제를 주로 담당하였으며 이와 함께 통일 이후 연방수도의 지위를 상실한 본 (Bonn)시에 유럽연합 기관들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는 약 1년이 지난 1992년 5월 구동독지역을 위해 다수의 연방행정기관 이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는데 이들이 발표한 이전 권고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양현모, 2015: 84~84).

표 1-8〉 독일 연방주의위원회(Föderalismuskommission)가 권고한 이전 대상 연방행정기관

이전 대상 기관	원래 지역	이전 지역	기관의 규모 (인력, 명)
연방보험공단 (Bundesversicherungsanstalt, BfA) 지사	신설 기관	브란덴부르크	1,500
연방유기농업·삼림청(Biologische Bundesanstalt für Land– und Forstwirtschaft) 지청	서베를린		114
연방감사원(Bundesrechnungshof) 지원(支院)	서베를린		100
연방보험공단 (Bundesversicherungsanstalt, BfA) 지사	신설 기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2,000
농업직업조합(Landwirtschaftliche Berufsgenossenschaft)	서베를린		326
독일연방해사청(Bundesamt für Seeschiffahrt und Hydrographie)	함부르크		150
연방환경청(Umweltbundesamt)	서베를린	작센–안할트	837
동부수운·해운감독청(Wasser– und Schiffahrtsdirektion Ost)	서베를린		243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신설 연방시설들과 연방행정기관들은 신연방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Bonn)이 의회 소재지로서의 기능 중 상당 부문을 상실하는 것을 인정한다. ③ 본(Bonn)에 각각의 연방 부처(部處)들과 이에 상응하는 연방시설들로 구성된 제한적인 정치 부문을 형성하려는 의도를 지원한다. ④ 연방정부가 유럽연합 국가들의 시설물들을 본(Bonn)으로 이전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 ⑤ 유럽중앙은행(Europäische Zentralbank)의 소재지를 프랑크푸르트(Frankfurt)시에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강력하게 지지한다(통일부, 2013: 258).

연방행정법원(Bundesverwaltungsgericht)	서베를린, 카를스루에	작센	250
텔레콤중앙센터(Zentrum für Telekommunikation)	서베를린		1,087
직업협동조합(Berufsgenossenschaft)	신설 기관		500
독일통일문서국(Archiv für die Deutsche Einheit)	신설 기관		–
연방노동법원(Bundesarbeitsgericht)	카셀 (Kassel)	튜링겐	140
연방보험공단 (Bundesversicherungsanstalt, BfA) 재활부	서베를린		1,000
연방특허청(Deutsches Patentamt)	서베를린		589
연방수로건설청(Bundesanstalt für Wasserbau)	서베를린		168

출처: (양현모, 2015: 85~86).

연방주의위원회의 상기 권고 사안은 연방의회의 동의 후 대부분 시행에 옮겨졌다. 하지만 일부 계획은 이전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 및 해당 기관이 소속된 도시 정부의 거부로 취소되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 예가 연방행정법원으로, 연방주의위원회는 이를 기존 서베를린시에서 작센(Sachsen)주의 라이프치히(Leipzig)시로 이전할 것을 결정하였지만 서베를린시의 강력한 반대에 결국 실행으로 연결되지는 못하였다(통일부, 2013a: 60).

(2) 주행정체제 구축

신연방주 주행정체제 구축은 1990년 10월 14일 5개 신연방주에서 주의회 선거가 실시된 이후 본격화되었다.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주지사들은 자신이 임명한 각료들과 함께 행정체제 구축 업무를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사안은 신연방주 내 행정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주정부 내 각 부처의 수와 하부조직

의 구조를 결정해야 했고, 설치된 행정기관의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했다(양현모, 2015: 91).

그러나 신연방주에서 기존 서독의 자유 민주주의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었다. 특히 동독시절에는 주가 없었기 때문에 이전의 경험을 활용하거나 기존 조직의 활용도를 벤치마킹할 수도 없었다. 즉 이 작업은 이전 행정체제를 기반으로 한 변화 혹은 개혁 작업이 아니며 완전히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양현모, 2015: 91).

예를 들어 구동독에는 세무서가 필요 없었다. 세금이 국가예산의 재원조달 과정에서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부 기관에서 세금과 유사한 공과금 징수를 담당하던 인력조차 조세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자들이 아니었으며 그 수 또한 적었다. 즉 조세행정체제라고 볼 수 없었다. 조세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물질적 여건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악조건으로 작용했다. 이 때문에 1990년 7월 1일 자 화폐·경제·사회통합과 동시에 구동독 연방주에 설치된 120개 세무 관련 행정체제 구축은 완전 백지상태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양현모, 2014: 92).

행정체제 구축 자체의 문제 외에도 구축 이후 행정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부족했다는 점 역시 신연방주들이 직면한 과제였다. 당시 신연방주에 남아 있었던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구동독 공산 정권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새로운 행정체제 구축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 또한 구동독 출신 행정 인력들은 통일 이후 과거 인권 침해·법치국가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국가보위부 근무 경력 등이 밝혀지는 경우 모두 해고되었다(양현모, 2014: 92).

이러한 이유로 신연방주 행정기관의 인력들은 고위직 간부부터 상당수의 중간 간부들까지 모두 구서독에서 파견 또는 전출된 공무원들로 채워져야만 했다. 특히 조세행정과 같은 신설 분야에서는 장기 전보발령, 단기 파견근무, 공무출장 등을 통한 대대적인 인력지원이 뒤따랐다. 그러나 이러한 인

력지원은 또 다른 문제를 낳았는데, 신연방주 공무원 중 서독 출신 인물들이 점유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구동독 출신 인물들의 불만 역시 함께 상승하였다는 점이다(양현모, 2014: 92).

신연방주들은 체제 구축, 인력관리뿐 아니라 부처의 수와 형태에 관한 사안 역시 해결해야만 했다. 이때 가장 문제가 된 것이 행정기관의 단계 설정이었는데, 즉 3단계와 4단계 구조 중 어떤 형태를 선택할지 결정해야 했던 것이다. 이 결정은 단순 행정조직의 형태뿐 아니라 공직자의 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기에 당시 논쟁사안으로 떠올랐다. 결과적으로 5개 신연방주 중 작센, 작센-안할트, 튜링겐의 3개 주는 구연방주의 일반적 형태인 4단계 구조를 채택하였으며, 인구가 적었던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와 브란덴부르크주는 중급 행정기관이 생략된 3단계 형태를 채택하였다(양현모, 1998: 75). 연방정부처럼 주정부 차원에서도 통일 이후 몇몇 행정기관들이 신설되었는데, 그중 대표적 기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양현모, 2014: 93)

① **미해결재산문제처리청(Landesämter zur Regelung offener Vermögenfragen)**

미해결재산문제처리청은 구소련 점령지역과 동독지역에서 과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몰수, 국유로 전환된 재산(기업, 토지, 건물)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설립된 주정부 산하 기관이었다. 주로 국유전환 재산에 대한 법적 청구를 처리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다. 미해결재산문제처리청은 베를린, 브란덴부르크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그리고 튜링겐주에서는 재무부 소속 기관이었고, 작센과 작센-안할트주에서는 내무부 소속 기관이었다. 이 외에도 주정부의 책임하에 모든 시·군에는 지역관청이 설립되어 미해결 재산문제를 처리토록 하였다(김영윤·양현모, 2009: 279~283, 재인용: 양현모, 2014: 93).

② 정부범죄 태스크포스/검찰 2국(Arbeitsgruppe Regierungskriminalität, Staatsanwaltschaft Ⅱ)

정부범죄 태스크포스/검찰 2국은 베를린주(州)의 검찰기구로, 구동독 공직자, 판사, 군인들이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형사소추 업무를 담당하였다. 통일조약에 규정된 원칙에 의해 베를린 사법부가 중심이 되어 수사를 이어갔다. 정부범죄 태스크포스는 베를린 고등법원 검찰에 설치되어 약 80명의 직원이 근무하였고, 후속 기관 성격의 검찰 2국은 1994년 베를린주(州) 지방법원에 설치되어 약 200명의 검사들이 근무하였다. 특히 이 기관의 경우 기관 업무가 가지는 중요성과 막대한 업무량 등을 이유로 인력의 대부분을 독일 전역에서 2년씩 베를린으로 파견된 지원 검사들로 구성하였다(김영윤·양현모, 2009: 291~293, 재인용: 양현모, 2014: 94).

③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州) 앙케이트위원회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의 '동독에서의 삶, 1989년 이후의 삶-청산과 화해(Leben in der DDR, Leben nach 1989-Aufarbeitung und Versöhnung)' 앙케이트위원회는 동독 과거사와 독일통일의 영향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앙케이트위원회는 1945~1989년까지 독재 희생자의 상황,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州)의 정치 시스템, 동독 북부 3개 관구 주민의 일상생활, 동독의 경제 및 사회시스템, 교육/학문/문화 그리고 통일 전환기의 역사 등과 같은 문제를 다루었다. 한편, 1989년 이후에는 전환기 이전과 이후의 일상생활, 가치 변화와 삶의 가치로서의 노동, 민주주의 요구와 실제, 1989년의 평화적 혁명 후의 엘리트 교체와 같은 문제에 중점을 두었다(김영윤·양현모, 2009: 309~311, 재인용: 양현모, 2014: 94~95).

(3) 지방행정체제의 구축

언급한 바와 같이 동독 정부는 정부 수립 후인 1952년 지방자치제를 폐

지하였다. 그러나 1989년 시민혁명이 일어난 이후 통일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동독 국민들은 통일을 전제로 동독에도 서독과 같은 형태의 지방자치제를 도입하고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다(양현모, 2014: 100). 통일을 앞두고 동독에서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것이다.

지방행정체제 구축은 통일 전인 1990년 5월 6일 동독에서 실시된 지방선거와 동년 동월 17일에 동독 인민회의가 지방자치법을 제정하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통일 전 지방자치법의 제정으로 동독의 크라이스와 게마인데가 지방자치단체의 자격을 획득하였으며(제1조 2항), 단체장을 비롯해서 주민대표(의원)를 주민들의 직선으로 선출하게 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도 독자적으로 자산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재정적 독립권을 갖게 되었다.

지방선거 실시 이후 지방의 정치 엘리트들 역시 교체되었는데, 지방 정치 엘리트의 약 70% 이상이 과거 정치 경험이 없었던 이른바 정치 신인이었다(정재각·심익섭·이승철, 2013: 133). 그러나 이러한 사실의 역설적 측면은 당시 지방 정치 엘리트의 약 30% 정도는 과거 사회주의통일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던 사람들이란 점이다. 개혁이 시작되고 새로운 정치 체제가 구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인사에 대한 전면적 물갈이가 쉽지 않았다는 점을 말해 주고 있다(양현모, 2015: 100).

지방행정체제 구축에 있어 중요한 점은 이미 통일 전에 동독에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통일에 앞서 서독에서 실시하던 지방자치제를 동독에서도 미리 도입했다는 것은 통일 전 단계에서부터 통일 이후 행정체제 재구축을 위한 행위들이 추진되고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또한 통일 직전 거의 모든 행정기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써 공공기관으로는 유일하게 그 기능을 수행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양현모, 2015: 101).

1990년 10월 3일 통일 이후 각 주는 통일 전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폐지하고 다시 독자적인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통일 전 구동독

지방자치법의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형태 역시 구서독 지방자치단체와 거의 동일했다. 각 주가 독자적인 지방자치법을 제정한 시기는 다음과 같다.

- 브란덴부르크: 1993년 10월 15일
-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1994년 2월 18일
- 작센: 1993년 8월 19일
- 작센-안할트: 1993년 10월 5일
- 튜링겐: 1992년 7월 24일

그러나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구동독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심각한 재정난과 함께 행정체제 구축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으며, 특히 능력 있는 행정 인력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 어려움이 증폭되기도 하였다. 이때 구서독 지방자치단체들은 물적·인적·행정적 측면에서 신연방주 지방자치단체들을 지원하였는데, 이들 지원은 구동독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구서독 지방자치단체들은 구동독 지방자치단체들과 자매결연을 채결하여 이들 자매 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적, 행정적 지원은 물론 행정 인력들도 지원하였다. 구서독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지원은 구동독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체제 구축 및 자치제 실현에 있어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이다. 구동서독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실적을 보면 1989년 말 베를린 장벽 붕괴 후부터 1990년 초까지 646개의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이 맺어졌으며, 통일 이후 자매결연은 더욱 활성화되어 1993년 당시 구동서독 자치단체 간 채결된 자매결연 건수는 약 2,000건에 달했다(김학성·최진욱: 2001: 66, 재인용: 양현모 2014: 101).

제3절 독일 사례가 한국의 통일 문제에 주는 시사점

독일통일은 1990년 10월 3일 동독지역에 5개의 연방주가 설치되면서 동시에 이 연방주가 서독에 편입되는 형식으로 실현되었다. 동독이 국가로서 멸망하고 서독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독일통일이 '흡수통일'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독일의 경우 서독의 적극적 흡수통일정책으로 통일이 된 것이 아니며, 국제적 정세의 변화 속에 동독 국민의 체제에 대한 거부와 통일에 대한 열기로 통일된 것이 때문에 흡수통일이라는 말은 꼭 맞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볼 때 동독 체제는 서독에 흡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독이 5개의 연방주 형식으로 서독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통일 이후 구동독의 정치·행정체제는 모두 해체·폐기되었으며, 이 지역에 기존의 서독의 체제가 대체되었다. 따라서 통일독일의 정치·행정체제는 기존 구서독 체제와 특별히 다른 점은 없었다. 연방 차원에서 볼 때 연방대통령, 연방수상, 연방정부, 연방헌법재판소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행정체제에도 커다란 변화가 없었으며, 주를 중심으로 하는 연방제도에도 큰 차이는 없었다. 기존 11개의 연방주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지방자치제도도 기존의 틀 안에서 운영되었다.

그러나 5개의 신생 연방주, 즉 신연방주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 지역에서는 통일 이전부터 큰 변화가 있었다. 동독에서는 1990년 초 통일 이전부터 연방제와 지방자치제 부활을 위한 논의와 준비가 있었으며, 결국 1990년 중반 관련 법들을 제정하였다. 동독 정부와 국민들은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연방제와 지방자치제의 도입을 결정한 것이었다.

통일 이후, 즉 서독 체제로의 편입 이후에는 더 많은 변화가 있었다. 5개 연방주에는 주의회 선거, 주지사 선출, 주헌법 제정 등 정치적 결정을 통한 국가 체제의 구축도 있었지만, 행정수요에 따른 다양한 행정기관의 설치, 공

무원제도의 도입 등 새로운 행정체제의 구축을 위한 과정도 있었다. 독일통일 이후 추진되었던 신연방주 체제 구축은 독일인으로서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운 도전으로서, 이 과정에서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오늘의 독일이 있게 하였다.

한반도가 독일과 같이 통일된다는 보장은 없다. 또한 독일과 같은 통일 방법 및 형태가 한반도통일 방안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 이후 한반도 통일국가의 모습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의 자유와 복지 그리고 행복을 지향하고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통일 이후의 행정체제 구축에 대해 독일 사례는 한반도통일에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한반도통일은 우리 민족의 꿈이자 희망이다. 통일 없이는 평화도 일시적인 평화로 그칠 가능성이 크며 남북 간의 갈등과 대립의 위험은 항시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이 통일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순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분단과 남북한 경제적·사회적 격차 등을 고려할 때 통일 이후의 사회 안정 체제 구축 및 북한지역의 재건은 우리가 희망하고 계획한 것처럼 순조롭게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통일 이후에는 기존 북한 주민들의 대규모 탈북사태, 범죄율의 급격한 증가 등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희망보다는 국민들의 좌절과 분노가 표출되고, 남남갈등, 남북갈등 등도 심각한 수준으로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 단일국가로 재통합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또한 북한지역의 사회적 안정 및 위험 제거, 경제발전 및 민영화 등 통일로 인한 많은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지역 지방자치제 실시 여부 결정, 행정구역 통폐합, 행정기관의 설치 등 행정체제 구축에 따른 여러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한반도통일은 민족의 기쁨

이며 새로운 국가로 향한 희망의 출발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나는 위기의 시기가 될 것이며, 문제들을 해결하여 진정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어려운 여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제3장

남북통일 이후 북한지역 행정체제 구축에 대한 기존 연구 현황

분단국의 통일 이후 행정체제 구축에 대한 학술적 논의와 연구가 시작된 것은 동서독이 통일된 1990년 이후였으며,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처음 시작된 곳도 독일이었다. 독일통일 이후 사회 각 분야에 걸친 체제통합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구동독지역 행정체제 구축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로써 이전에는 없었던 '행정통합(Verwaltungsintegration)'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연구 영역이 탄생하였다.

행정통합이란 분단국 체제통합의 한 분야로서 통일 이후 상이한 두 개의 행정체제가 결합되어 새로운 행정체제로 구축되는 과정 및 현상을 의미한다. 그런데 독일에서 행정통합이란 동서독 행정체제가 결합되어 기존 체제와 전혀 다른 제3의 행정체제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동독 행정체제가 기존 구서독 행정체제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통일은 구동독 체제의 붕괴에 따라 구동독지역이 구서독 헌법 적용지역으로 가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 내부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연구 내용은 주로 통일과 함께 형성된 신연방주가 기존의 구연방주와 동일한 체제로 전환·변화되는 과정 및 문제점 그리고 대안에 관한 것이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남북한통일 이후의 행정통합, 즉 통일 이후 북한지역

행정체제 구축에 관한 논의 및 연구 역시 독일 학계의 연구와 무관하지 않다. 국내의 학자들은 동서독의 행정통합을 분석하면서 그 시사점을 바탕으로 남북한 행정통합 문제에 대해 교훈을 얻으려고 했다. 따라서 독일에서의 연구 방향, 연구 내용, 연구 방법론 등이 국내 행정통합의 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본 장에서는 국내에서 진행된 통일 이후 북한지역 행정체제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 현황 분석에 앞서 우선 독일의 행정통합에 대한 연구 현황부터 알아보기로 한다.

제1절 독일 사례 연구 현황

독일 내에서 동서독 행정통합, 즉 구동독지역에서의 연방제의 형성과 행정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초반이었으며, 이에 대한 대표적인 성과물로 Seibel·Benz·Mäding(1993) 3인의 학자들이 편저한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행정개혁과 행정정책(Verwalungsreform und Verwaltungspolitik im Prozeß der deutschen Einigung)」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 30명이 넘는 독일의 정치·행정학자들은 통일과정에서의 신연방주 형성과 행정체제 구축과 관련된 주요 논제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들은 구동독 체제 붕괴에 따른 신연방주 형성과 서독 체제로의 가입 과정을 여러 각도로 분석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동서독 행정체제의 비교 및 통일 이후 행정통합의 제도화 과정 그리고 이 과정에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그 극복 방안 등이었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독일 슈파이어 행정대학원의 König·Meßmann(1995)이 공저한 「독일에서 행정전환의 조직·인사문제(Organisations- und Personalprobleme der Verwaltungstransformation in Deutschland)」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구동독 행정체제가 통일독일의 행정체제로 전

환되는 과정을 여러 각도로 다루었다. 특히 구동독 사회주의 관료 체제에서 민주주의 관료 체제로의 전환 과정, 구동독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에서 분권주의 행정체제로의 전환 과정 등을 자세히 분석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독일 행정통합의 개념과 특징에 대한 독일 행정학자들 간의 논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중 흥미로운 점은 동서독 행정통합에 대해 학자들 간에도 의견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한 예로 슈파이어(Speyer) 행정대학원 피차스(Rainer Pitschas) 교수는 다른 여러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구동독지역의 행정체제의 변화를 행정통합(Verwaltungsintegr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분석하였다. 그는 독일 통일이 동독의 붕괴에 따른 서독의 '흡수통일'의 성격을 띠고 있고 통일 후 구동독지역에서 구서독의 행정체제를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서독의 행정체제와 비교하여 커다란 차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이 바로 동서독 '행정통합'이라고 강조하였다(Pitschas, 1992: 49).

반면 같은 학교 쾨니히(Klaus König) 교수는 독일의 행정통합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며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순간'의 의미가 강한 '통합(Integration)'이라는 용어보다는 '전환(Transformation)'이라는 용어가 적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따라 행정전환(Verwaltungstransform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König, 1992: 229~245).

이 외에도 독일 내에서의 행정통합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다. 통일을 계기로 동서독 행정체제에 대한 비교연구가 더욱 활발해졌으며, 분권화 개혁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되었다. 특히 구연방주와 신연방주와의 경제적 격차 문제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되었으며, 연방제와 지방자치제 개혁에 관한 연구도 다수 있다. 특히 통일을 계기로 구동독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혁이 추진되면서 독일 전역에 지방자치제에 대한 개혁 열풍이 불었으며, 이를 주제로 한 관련 연구도 활성화되었다.

독일통일과 함께 국내에서도 통합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1990년대 국내에서 독일통일과 행정통합에 대한 연구를 선도적으로 시작했던 기관은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행정학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었다. 한 예로 한국행정연구원(원장 노정연)은 1990년 초반 독일에서 수학한 학자를 초빙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1996년에는 동독의 마지막 총리로서 임기 중 연방제를 도입하여 초기 동서독 행정통합을 주도하였던 드 메지에르(Lothar de Maizière)를 국내로 초청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독일의 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등을 다루었다. 또한 독일 행정통합 연구의 전문가인 지덴토프(Heinrich Siedentoph) 교수도 초청하여 행정통합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역시 독일에서 이 분야에 대해 연구한 학자를 초빙하는 등 연구 체제를 갖추었다.

한편 우리 정부도 독일의 행정통합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발간하였는데, 이의 대표적인 예가 1996년 통일원에서 발간한 「독일통일 6년, 동독재건 6년-분야별 통합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번역서이다. 이 번역서는 독일 행정통합뿐만 아니라 체제통합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한 것이지만,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히 다루고 있다. 특히 이 문서는 독일의 정부문서를 기반으로 하여 행정통합의 과정과 그 쟁점사항을 다루고 있다는 데 그 가치가 있다 하겠다. 또한 여기에는 독일 행정통합에 대한 여러 통계자료, 사례 등도 많이 수록되어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통합에 대한 독일 내 연구 방향과 내용들은 국내 학자들에게도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국내 학자들 중에서 이 분야를 연구한 학자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국내 행정학계에서 북한 및 통일 분야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이 적었던 이유도 있지만, 독일 사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독일어를 이해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 이 분야에 대해 연구하였던 연구자들은 주로 독일에서 유학하였던 학자들로 한정되었는데, 이들은 독일통일 과정 및 이후에 추진되었던 행정통합을

소개하였으며, 그것이 한반도통일 문제에 주는 교훈이나 시사점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국내에서 수행되었던 독일의 행정통합 사례 연구에서 다루어졌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구동독지역 5개 주의 부활 및 독일연방공화국(구서독)으로의 가입 과정, 둘째, 신연방주 행정기관의 설치, 셋째, 동서독 관료제의 통합 및 신연방주에 대한 인력지원, 넷째, 신연방주 지방자치제 실시, 지방행정구역 개편, 동서독 지방 간 교류협력 등 지방행정체제 구축에 관한 것이다. 물론 이들 독일 사례 연구는 순수하게 독일 사례만 다룬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독일 사례의 시사점 및 한반도통일 이후 행정통합의 방향 및 내용에 대한 연구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독일 행정통합의 첫 번째 주제는 동독에서의 연방제 도입, 즉 연방주의 부활과 구서독으로의 가입에 대한 것이다. 동독 정권은 신성로마제국부터 유지해 오던 전통적 연방제를 1952년 폐지한 후 통일이 임박한 1989년 다시 연방제를 부활시켰는데, 이것이 독일 행정통합의 시발점이 된 조치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심익섭(1994)의 「독일통일과 행정통합에 대한 연구」와 양현모(1997)의 「통일독일의 경험이 남북한 체제통합에 주는 교훈-행정통합」 연구는 동독 정권의 붕괴과정에서 추진되었던 연방제 부활 및 구서독으로의 가입 과정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들 연구에서는 통일 이후 신연방주 정부·행정기관의 설치과정 등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이밖에 이들 연구에서는 독일 사례를 시사점으로 하여 한반도통일 이후 북한지역 통치 방안 및 행정조직의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 외에 2013년 통일부에서 발간한 「독일통일 총서 제2권 행정 분야 통합 관련 정책문서」에서는 독일 신연방주 형성을 비롯한 정부·행정체제 구축, 지방행정체제 구축과 같은 내용 등이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독일 베를린(Berlin) 자유대학교 이은정(Eun-Jeong Lee) 교수가 독일 정

부의 정책문서를 기반으로 하여 행정통합을 분석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방주에 기초한 행정구조의 도입에서 연방과 연방주, 기초단체 간의 조세수입 분할 체제의 형성과정이나 연방관청 및 주요 기관의 신연방주로의 이전 또는 신설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앞선 연구들과 달리 독일 정부의 정책문서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신뢰성이 보장되고, 따라서 향후 행정통합의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통일과 구동독지역 연방제의 부활에 관련된 최근의 연구는 정재각·심익섭·이승철(2013)의 「독일의 행정과 공공정책」이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독일 행정체제의 특징과 다양한 정책에 대한 분석·소개이지만, 독일의 통일과정과 연방제의 특징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통일과정에서 제기되었던 통일방식에 대한 논의, 즉 서독 기본법 23조와 146조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고 있다.

독일의 통일과 행정조직의 설치에 관한 주제로는 남현욱(1992)의 「통일에 대비한 행정체제 구축 방안-통일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새 정부조직의 형성을 중심으로」가 선도적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필자는 통일 상황에서 제기될 수 있는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의 조직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도 독일 사례와 독일 정부가 겪은 경험들이 소개되었다. 유사한 연구로 남현욱(2000)의 '통일 전·후 행정수요의 예측과 새로운 행정조직의 형성: 독일 경험의 벤치마킹을 중심으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독일통일 과정에서 행정수요 예측과 한시적 행정조직이 어떻게 설치되고 운영되었는지를 바탕으로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행정수요에 대한 예측과 필요한 한시적 조직과 역할이 제시되었다(양현모, 2014: 48). 또 한상우(2003)의 '통일독일의 행정체제 구축과정'에서는 동서독 행정통합의 환경과 행정통합의 과정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양현모(2014)의 「통일한국의 정부조직 체제 구축 방안」에서도 독일통일과 정부조직의 변화에 대한 내

용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독일 행정통합과 관련된 중심 주제 중 하나는 바로 구동독지역 지방행정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이다. 독일통일이 구동독지역이 5개의 연방주로 전환되어 구서독지역으로 가입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방행정체제의 구축은 행정통합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주제이다. 신연방주 지방자치제 실시, 지방행정구역의 통폐합, 지방재정의 확충, 구동서독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 등이 동서독 행정통합의 세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통일 이후 독일의 구동독지역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안영진(2012)의 '독일의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고찰–구동독을 중심으로'를 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통일 이후 구동독 지방행정구역의 통폐합 과정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밖에 독일 지방의 재정문제를 재정조정제도를 중심으로 분석한 김동건(1995)의 '통일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고찰'도 지방행정체제 구축에 대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지방행정체제 구축의 세부 주제이기도 한 통일과정에서의 동서독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에 관한 주제에 대해서는 남북한 지자체 간 교류협력과 맞물려 비교적 활발한 연구가 있었다. 우선 심익섭(1992)의 '독일통일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역할: 동서독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관계를 중심으로'가 이에 대한 선도적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이후 김경량(1999)의 「독일통일과 동서독 자치단체 간의 역할 및 협력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필자는 통일 이전과 통일과정에서 동서독 지자체 간 교류협력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통일 이후에 추진되었던 구서독 지자체의 구동독지역 행정체제 구축 지원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또한 양현모(2001)의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방안」과 김영윤(2004)의 '동서독 지역 간 교류협력 사례: 도시 간 자매결연', 김학성·최진욱(2001)의 「남북한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에서도 독일통일 이전과 이후 동서독 지방 간 교류협력 사례

가 다루어지고 있다.

독일 행정통합의 세 번째 주제는 관료제 통합에 관한 것이다. 이 관료제 통합에서는 통일 이후 구동독 출신 관료의 인수 및 검증의 과정 및 문제점, 재임용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재임용된 구동독 출신 관료들의 교육과 보수 등도 관료제 통합에 있어 중요한 주제이다. 이밖에 동서독 통합과정에서 있었던 구서독 관료들의 인력지원, 즉 신연방주지역으로의 인력 전출 및 출장에 관한 사항도 중요한 내용이다.

독일통일과 관료제 통합에 대한 선도적 연구로서 박응격(1995)의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정부인력 관리의 과제와 대책」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남북통일 이후 인력 수급 전망에 따른 교육훈련 문제와 선진적 행정문화 정착, 북한 행정 전문가 양성 등의 과제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독일의 사례와 그 시사점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이 연구에서 필자는 독일통일 이후 사법 체제의 개편과 요원 재임용, 대외관계 체제 및 외교관 처리, 군사조직과 군인력 통합 등 구동독 정부 인력의 처리과정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구동독 체제에서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자의 복권·보상 문제도 논의되고 있다.

동서독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관료제 통합을 다룬 또 다른 연구는 박해육(2002)의 '통일 이후 구동독의 행정이행과 인력통합을 위한 인사정책: 남북한통일에 대한 인력통합의 모색'이다. 이 연구에서 필자는 통일 이후 추진되었던 동서독 관료제의 통합, 즉 통일 이후 구동독 관료의 인수, 검증, 재임용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필자는 이 연구를 통해 남북한통일 이후 북한 행정 인력 이전 방법, 북한 관료들에 대한 해고·숙청 방안, 통일국가 공무원제 도입과 교육훈련에 대한 통합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한부영·김병국(2009)의 「통일대비 지방행정 인력 통합에 관한 연구」도 독일의 관료제 통합에 대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연구의 제목과는 달리 독일의 지방 인력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연방과 주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통합문제를 다루었으며 남북통일 이후의 지방행정 인력의 통합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동서독 관료제 통합에 대한 또 다른 국내 연구로서 한국수출입은행(2009)이 독일 연방하원 앙케이트위원회(조사위원회)가 1995년 및 1999년 2차례에 걸쳐 발간한 보고서를 발췌 번역한 「독일통일 실태 보고서(Ⅰ, Ⅱ, Ⅲ)」을 들 수 있다. 이 보고서 제Ⅲ권에서는 독일 각 연방 부처(연방내무부, 연방노동복지부, 국방부) 등의 사례를 들어 통일 이후 구동독 관료들의 편입 과정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특히 이 자료는 독일 연방의회 조사위원회의 자료를 번역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통계자료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그 가치가 있다 하겠다.

동서독통일 이후 관료제 통합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양현모(2015)의 「통일한국 관료시스템 구축 방안」으로서 독일 사례를 비교적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통일 이후 남북한 관료제 통합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관료제 변화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그 시사점을 바탕으로 남북한 관료제 통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 통일 전 동서독 관료제의 비교, 통일 이후 구동독 관료의 전환 내용, 구동독 관료의 교육과 임용, 임용 후 보수제도 등의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으로의 인력지원 효과와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소상히 다루고 있다.

한편 독일 행정통합을 실천적 의미에서보다는 철학적·이론적 차원에서 논의한 연구가 있었는데, 안지호(2011)의 연구는 독일의 사회학자 겔렌(Arnold Gehlen)의 제도론을 중심으로 독일 행정통합의 내적 요인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동서독 간의 행정통합 과정에서 행정문화가 융합되는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즉 동독 관료의 인식 및 행위가 서독 관료의 인식과 행위로 이행되어 가는 과정을 질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이 연구는 비록 이론적·철학적 깊이에서 논의되었지만, 남북한의 행정통합에 주는 실천적 시

사점도 가진다. 즉 행정통합에 문화적 측면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성과 이러한 인식하에 북한 출신 관료들에 대한 재교육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제2절 남북통일 이후 행정체제 구축 방안 연구 현황

1. 시기별 분석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0년 독일통일 이후부터 독일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연구가 시작될 때 국내에서도 독일 사례에 대한 연구와 함께 한반도통일 이후의 행정체제 재구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 연구는 주로 독일의 행정통합 사례를 연구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여 한반도통일 문제에 대한 적용 여부를 타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 시기 국내에서는 소위 '독일식 통일'에 대한 기대 내지는 희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독일 행정통합의 방식과 내용 등이 한반도에 대해 적용되는지의 여부가 주요 쟁점이라고 볼 수 있다.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예상 가능한 한반도통일의 시나리오는 무력통일, 예멘식 합의통일, 남북연합, 연방제 등 과도기 체제 설정, 북한 내부의 체제 변화에 따른 남북한 급진적 통일(독일식 평화통일), 북한 내부의 체제 변화 후 남북한 점진적 통일(과도기 체제 경험)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그런데 당시 주로 연구되던 통일 방식은 북한 내부의 체제변화에 따른 평화적 통일, 즉 독일식 통일 방식을 가정·전제한 것이다. 따라서 행정통합의 기본 원리나 방향 역시 독일과 유사한 형태, 즉 남한의 기존 행정체제에 커다란 변화를 가하지 않고 북한 정부행정을 남한의 체제 형태로 변화시키는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앞에서 언급했던 박응격(1995), 심익섭(1994, 1996), 양현모(1997, 2014, 2015), 남현욱(2000), 박해육(2002), 한부영·김병국(2009) 등의 연구가 대부분 이런 가정과 전제하에 진행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이 당시 연구가 대부분 이러한 가정과 전제하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행정

통합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다른 통일 시나리오를 전제·가정한 행정통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한반도 행정통합의 연구에 있어 중요한 업적 중 하나는 통일한국의 행정체제의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즉 대부분의 연구에서 통일한국의 정부행정체제는 법치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체제를 근간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과 통일 후 직면하게 될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치·사회적 안정을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정부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2000년도에 들어와 한반도통일과 행정통합에 대한 연구 내용도 좀 더 다양해졌다. 이 시기 연구 내용의 다변화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단계적인 통일과 통합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것에 기인한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남쪽에서 주장하는 '남북연합'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후 국내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의 통일과 통합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된 것이다.

학자들은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의 화해 분위기 속에서 비교적 점진적인 통일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에 따라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주로 절충형의 방식이 거론되었다. 이 시기 행정통합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단계적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즉 남북한 행정이 점진적으로 접근하면서 서서히 통합을 완성하는 방향을 제시했던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로는 한부영(2000), 최진욱(2000), 양현모·이준호(2001, 2002)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단계적 통합 방안으로 구체화된 논의가 바로 '과도기적 행정체제'의 구축인데, 이는 갑작스럽게 1국가 1체제가 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남한이 제기한 '남북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을 찾는 과도기적 모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과도기 통일에 대한 접근은 남북이 다방면에 걸쳐 교류·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정치적 결단을 통해 과도기적 통일 형태인 국가연합에 합의하는 방

법을 채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남북연합 체제는 남북한이 대외적으로 각기 주권을 행사하는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는 것이다. 남북은 과도기 통일 형태인 남북연합 공동정부를 형성하고 최종적인 통일을 지향하는데, 이 공동정부의 기구에는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남북연합재판소 등이 제시되었다(양현모·이준호, 2001).

이처럼 남북연합 체제를 전제로 한 점진적 통일, 즉 최종적으로 1국가 1체제 직전의 체제로서 '실질적 통합단계'를 상정한 후속 연구가 이어졌다. 여기서 제시하는 행정통합의 원칙은 첫째, 실질적 행정통합은 법치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 남북한 모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통성을 확보해야 할 것, 둘째, 실질적 행정통합은 남북한 간의 지역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화합적 행정체제가 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내적 통일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 셋째, 실질적 행정통합은 통일 이후 폭발적으로 발생할 통합과제를 수행하고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양현모·이준호, 2002).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 초반까지는 행정통합에 관한 주제가 그다지 큰 관심을 모으지 못했으며 연구도 활성화되지 못했다. 당시 남북관계가 악화되었고 통일문제도 큰 이슈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학계의 연구 역시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소위 '통일대박'의 바람이 불었으며, 이에 정부도 '통일준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통일준비 체제를 갖추면서 남북통일의 모형과 행정통합 방안의 준비 및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독일통일과 유사하게 북한 정권이 급격히 붕괴되고 이후 북한 체제가 남한 체제로 가입하는 방식의 통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이럴 경우를 대비한 행정통합의 방안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단계적이며 점진적 방식의 통일을 상정했던 2000년도의 연구와는 달리 다시 1990년대와 같은 급진적 통일방식에 의해 북한이 남한에 가입되는 통일 시나리오가 가

정된 행정통합의 연구가 시작되었다.

2. 주제별 분석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연구들을 제외하면 그동안 국내의 행정통합 연구에서 주로 전제된 방식은 독일식 통일과 같이 북한 내부의 체제변화에 따른 평화적 통일 방식이다. 즉, 현 북한 정권의 붕괴를 전제로 북한 체제가 남한 체제에 가입하는 행정통합 방식인 것이다. 이럴 경우 한반도통일 이후의 행정통합이란 결국 북한의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행정체제에서 남한의 자유 민주주의 행정체제로의 전환, 공산당 일당독재 행정체제에서 법치행정을 근간으로 하는 행정체제로의 전환,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에서 분권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 구체적인 주제 및 내용은 통일한국의 중앙행정체제 구축, 지방행정체제 구축, 관료제 통합 등이 있다.

1) 중앙행정체제 구축

통일한국의 중앙행정체제 구축 문제를 다룬 대표적인 연구물에는 심익섭(1997), 최진욱(2000), 양현모(2014), 류지성 외(2017) 등이 있다. 류지성의 통일한국 정부 형태에 대한 연구에서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제 등 다양한 정부 형태에 대한 장단점이 소개되고 있으며, 특정 정부 형태를 선택했을 경우의 보완점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연구에서는 통일한국의 정부 형태로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제가 장점이 많아 적절한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치권력에 상응하여 권력을 분점하기 때문에 통일 이후 다양한 정치세력을 대표하고 정치적 타협을 원만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필자는 내각책임제의 경우 정당 간 이합집산과 이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류지성 외, 2017: 78).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통일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 현재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 등을 이유로 통일 이후에도 내각책임제 또는 다른 형태의 정부 형태를 선택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다(양현모, 2014: 236).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대통령제를 선택할 경우의 문제점과 이의 극복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통일한국의 중앙행정체제 구축에 있어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통일시대에 제기될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발전 그리고 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해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일한국의 중앙행정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심익섭은 통일시대를 고려한 정부 기능의 범위, 정치적 반응성과 행정책임·회계책임의 정립, 집행부로서의 정책조정 기능과 사회통합 기능, 부처 조직의 분명한 기준 제시, 집권과 분권, 집중과 분산, 통합과 분화와 같은 사항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심익섭, 1997: 154).

최진욱(2000)은 통일한국의 중앙행정체제 구축에 있어 최우선 과제는 북한지역에 조선로동당 지배구조를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칭)북한행정부, (가칭)신탁관리청 같은 조직을 신설할 것도 제안하였다(최진욱, 2000: 3~4). 또한 이 연구는 행정체제의 구축에서 별도의 행정 부처 신설 등 중앙행정체제의 전면적 개편보다는 각 행정 부처 안에 북한 담당 부서를 국 혹은 과급으로 두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이밖에 양현모는 통일부의 존폐 문제, 체제통합을 위한 중심조직(컨트롤 타워) 설치 방안, 각 부처 통합업무 수행에 관한 조직 설계 방안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신탁관리청을 비롯하여 북한지역 재건사업단, 통합업무 전문 공무원교육원, DMZ 관리청, 민주시민 교육원 등의 기구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양현모, 2014: 245~272). 그러나 이 연구들은 이러한 방안들만 제시하였을 뿐, 이에 대한 세부적인 기능 설계 등 심층적인 대안 제안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2) 지방행정체제 구축

통일 이후 남북한 행정통합에서 중앙행정체제 통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방행정체제의 통합이다. 한반도통일이 남한의 주도로 평화적으로 실현된다는 점을 가정할 때 통일 이후 북한지역은 사실상 통일한국의 지방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통일 이후 중앙행정이 정치적 이유 등 여러 문제로 인해 잘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북한지역 주민들의 행정요구와 기타 행정수요에 반응하면서 그나마 비교적 안정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가 지방행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지방행정체제 통합에 대한 연구는 연구보고서 이외에도 행정학계의 학술 논문 등이 다수 있어 다른 분야보다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통일 이후 지방행정 통합에 대한 연구에서는 초기에는 남북한 지방행정체제의 비교,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통치 방안, 지방자치제 실시 문제 등이 발표되었으나, 점차적으로 지방행정 계층문제, 행정구역 문제, 기관구성 문제,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방안 등과 같은 주제들로 세분화되고 있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통치문제는 북한지역을 다른 지역과 동일한 방식으로 통치할 수 있는가의 질문에서 출발한다. 즉 독일이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을 5개의 연방주로 전환해서 이 지역에 대한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고 국정을 운영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한반도의 북한지역에 대한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의 질문이다. 구체적으로 통일이 실현될 경우 북한지역을 남한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정상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가의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하는 연구자들은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상황을 생각할 때 독일과 동일한 방식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 제3의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그중 한 가지 방법이 통일 이후 과도기를 설정하여 북한지역을 '(가칭)특별행정구'로 선포하고 이 지역의 행정을 전담하는 (가칭)

북한행정원을 설치하는 방안이다. 즉 북한지역의 지방자치제를 일정 기간 유보하면서 긴급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방안이다(양현모, 1997: 114; 최진욱, 2000: 3).

반면 이러한 방안을 반대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통일 이후 북한지역을 특별행정구 등의 이름으로 별도 관리하거나 주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조금이라도 제한하는 것은 통일정신과 국민통합에 어긋난다며 통일 이후 북한지역 주민들의 인권 회복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조속히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최우용·박지현, 2015).

남북한 통일 이후 지방행정체제 통합과 관련하여 지방자치제 실시 문제 이외에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연구 주제는 지방행정의 계층, 구역, 기관의 구성에 관한 것이다. 다수의 연구에서는 북한과 남한의 지방행정을 비교·분석하고 통일한국의 지방행정의 계층과 구역, 행정기관 등에 대한 안이 제시되고 있다. 지방행정의 계층에 있어서는 3계층을 선호하는 주장이 다수이며, 일부에서는 자치 2계층, 행정 1계층도 제시되고 있다.

통일한국의 행정구역의 경우 이북 5도의 부활, 전국 10도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북한의 노동자구 또는 우상화를 위한 행정구역 폐지 등의 합리적 의견도 제시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현재 남한의 읍·면·동의 폐지를 주장하는 다소 의외의 주장도 있다. 통일한국 지방행정기관의 구성에 있어 북한의 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으며, 반대로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외 지방의회는 존속시키되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표 1-9〉 남북한 지방행정체제 통합 방안 선행 연구

연구자	통일 시나리오	계층	구역	기관 구성
김상미(1993)	점진적 통일방안 (민족공동체 3단계 통일방안)	3계층 (자치 2, 행정 1)	– 남한 읍 · 면 · 동 폐지, 시 개수 축소 – 북한 노동자구, 우상화 지명 폐지	– 북한 인민위원회 폐지
민진 외(1996)	독일식 급진적 통일	남한을 기본으로 하되 계층 수 축소	– 남한 인구 규모 기준으로 북한 재편	– 기관대립형 – 단체장, 지방의원 수는 인구 규모 고려 결정
양현모(1997)	독일식 급진적 통일	자치 3계층	– 북한지역 행정구역 통폐합, 5도 환원	– 인민회의 존속, 인민위원회 폐지, 기관장 한시적 임명제
한부영 · 금창호 (1998)	독일식 급진적 통일	자치 2계층	– 북한 5개도 환원	– 기관대립형, 단체장 직선 유보(한시적 임명제)
안재홍(2003)	점진적 통일방안 (민족공동체 3단계 통일방안)	남한을 4계층에서 3계층으로 축소	– 남한 읍 · 면 · 동 폐지 – 북한 노동자구 폐지	– 인민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로 전환
정병일(2008)	합의통일	자치 2계층	– 중앙정부 귀속 후 단계적 변경 시도	– 기관대립형, 기관장 한시적 임명제 – 자문 · 심의 기구로 행정위원회 설치
이승종 · 김대욱 (2011)	독일식 급진적 통일	자치 3계층	– 2특별시(서울, 평양), 10개도(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 기관대립형 – 지방인민회의, 지방인민위원회 존속

출처: (이승종·김대욱, 2011: 271) 내용을 기초로 하여 필자 작성.

지방행정의 통합에서 간과할 수 없는 주제 중 하나는 남북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통일 이전과 이후 동서독 도시 간의 교류협력 사례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여 한반도 통일문제와 남북 지방 간의 교류협력을 연관시켜 연구를 진행해 왔다. 대부분의 연

구는 동서독 도시 간의 교류협력이 통일과 통합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들어 남북 지방 간의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특히 통일 이후 구동서독 지방자치단체 간 추진되었던 교류협력 및 자매결연이 구동독지역 행정체제 구축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들어 남북한 지방 간의 교류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000년 이후 남한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성과와 문제점이 나타나자 이에 대한 연구는 더욱 활성화되었다. 처음에는 독일 사례 연구 및 그 시사점 분석이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면, 점차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 분석, 추진 체제에 대한 분석, 정부와 지방 간의 정책조정에 관한 문제 등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경기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등 남북 지방 간의 교류협력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소속 연구기관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단순히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했던 것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앞에서 언급했던 여러 연구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거버넌스 구축 방안」(김동성, 2011)과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김동성 외, 2017)를 들 수 있다. 이 두 연구에서 연구자는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과정,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정부의 추진 체제 등을 분석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김동성의 2011년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연구의 중점을 두었다면, 2017년 연구에서는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구축 방안에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이 연구에서 필자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이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이를 제한하고 규제하고 있다며 비판하였다. 또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

원·조정업무를 원만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하루 빨리 지방자치단체들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 인정하고 기금 지원의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김동성, 2017: 127).

3) 관료제 통합

한반도통일 이후 관료제 통합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분야의 세부 주제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주제는 북한 출신 관료들을 통일한국의 관료 체제에 흡수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이는 북한 출신 관료들의 재임용 및 해임에 관한 것으로, 단순히 제도적 장치에 끝나지 않고 그 실천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저항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예민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통일 이후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관료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북한 출신 관료들을 검증하고 일부 인력을 해임하여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불만과 저항이 따를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갈등으로 이어져 국민통합을 저해할 수도 있다. 또한 북한 출신 관료들의 검증과 재임용 이외 재임용 이후의 교육, 보수 및 후생 등의 문제도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통일 이후 북한 출신 관료들의 검증과 재임용 방안, 교육 방안은 박응격(1995), 박해육(2002) 한부영·김병국(2009) 등에서는 독일 사례와 함께 연구되었으며, 한국수출입은행(2009)에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다루고 있다.

한편 통일 이후 관료제 통합 연구에서 중요한 사항은 현재 북한의 관료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북한은 우리나라와 달리 당 체제의 사회주의 국가로서 우리의 '공무원'과는 다른 간부 중심의 인사 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며 북한 간부의 채용제도, 교육제도, 근무 형태, 승진 체제 등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성경륭·이선우·최진욱(2000)의 연구는 북한 관료제의 특징에 대해 비교

적 자세히 다루고 있어 후속 연구에 도움이 되고 있다.

남북한 관료제 통합과 관련된 두 번째 연구 주제는 통일과정에서 제기될 인력지원에 관한 것이다(양현모, 2015). 즉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북한지역에 대한 남한 공공 인력의 전출, 출장 등에 관한 사항이다. 독일의 경우 통일을 전후로 구동독지역의 행정체제의 구축과 행정수요에 대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수의 구서독 행정 인력들이 구동독지역으로 전출되거나 또는 장기 출장을 떠나 근무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이런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 효과와 문제점 그리고 준비사항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남북한 관료제 통합에 있어 세 번째 주제는 통일 이후를 대비한 행정 인력의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주제이다(양현모, 1998, 2011). 언급한 바와 같이 통일 이후에는 많은 인력들이 북한지역으로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공공 인력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이와 관련되어 교육내용 및 강사진과 교육시설의 확보 등 통일 대비 행정 인력 양성 체제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제4장

통일 이후 북한지역 행정체제 구축

이 장에서는 우선 남북한 행정체제의 주요 특징을 비교해 보고 한반도통일 이후 북한지역 행정체제의 구축의 원칙과 과제들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제1절 남북한 행정체제 비교

1. 남한의 행정체제

1) 남한 행정체제의 주요 원칙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주요 이념으로 하는 국가로서, 헌법에 국민주권과 권력분립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의회에 의한 행정의 통제 등의 내용도 명시되어 있다.

(1) 국민주권 원칙

우리나라 헌법은 제1장 1조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규정하고 있듯이 국민주권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국민주권 원칙은 국가 운영의 원동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국가권력의 행사에 있어서의 그 정당성 역시 국민에 근거하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

이다.

이러한 국민주권의 원칙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의 보장이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자유를 가진다. 또한 모든 국민은 재산권, 선거권, 공무담임권, 청원권,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부여받는다. 따라서 국가는 주권의 주체인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국가권력이 행사되어야 한다.

(2) 권력분립의 원칙

권력분립은 국가의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할 수 있다. 권력분립 원칙하에서 국가권력은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할되고, 이들 작용은 각각 분리·독립된 별개의 기관에서 담당하게 된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상호 견제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게 된다.

권력분립의 원칙은 단지 삼권분립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중앙과 지방관계에서도 권력분립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스위스 등과 같이 연방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단방제 국가이지만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도 선거법과 지방자치법 틀 안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직선을 통해 단체장을 선출하여 집행부(지방정부)와는 별도로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행정의 주체이다. 또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정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세를 거둘 수 있다.

(3) 의회에 의한 행정통제 원칙

우리나라 행정권은 헌법 제66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대통령을 수

반으로 하는 정부에게' 부여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도 정부의 행정권에 대한 통제권 또는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권한으로 우선 국회의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행정부의 주요 인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권한(헌법 제65조)을 들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헌법 제86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에 대한 건의권(헌법 제63조) 등도 있다.

이외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도 있다(헌법 제61조). 국정감사는 국회가 매년 행정부의 활동에 대해 감사하는 권한으로서, 국회는 매년 2주에 걸쳐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행정관리, 예산의 집행, 공무원의 위법 행위 등 정부와 공무원의 활동에 대해 포괄적으로 감사한다.

중앙과 마찬가지로 지방의 경우도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활동을 통제하고 감사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예산을 심의·확정하고 결산하는 것이다. 또한 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을 가지며(지방자치법 제41조), 이와 관련해 자치단체장과 관계 공무원을 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42조).

2) 중앙행정체제의 특징

대한민국의 행정부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집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수장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된다. 선거 결과 후보자들 중 최다 득표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단임에 한한다. 대통령은 내란 및 외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가능한데, 국회에서 국회의원 2/3 이상의 탄핵 결정이 있은 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의 결정이 있을 경우 탄핵이 결정된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일 뿐만 아니라 국가 원수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내외적으로 대표하여 외국 사절을 맞이하며 외국과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국군 통수권자로서 외국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 이밖에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보존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정부조직, 즉 청와대 조직은 역대 정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에는 대통령실이 있으며, 별도로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국가안보실을 두고 있다. 이외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가 있다. 대통령실에는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이 있는데, 비서실장 산하에는 정무, 국민소통, 민정, 시민사회, 인사 등의 업무가 부여되어 있으며, 정책실장 산하에는 일자리, 경제, 사회, 과학기술 등의 업무가 부여되어 있다. 각 분야의 업무는 수석비서관이 책임지고 있다. 국가안보실에서는 통일, 외교, 안보 업무와 국가위기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조직은 주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각 부처에 전달하고 각 부처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을 확인하며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원만한 국정수행을 위해 관련 행정기관 간의 정책조정 등의 업무도 청와대 조직의 주요 수행 업무이다. 대한민국과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조직의 설치는 필수적이나, 조직 규모가 너무 비대하며 수석비서관들의 권한이 너무 커 오히려 행정 부처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 대통령제의 특이 사항은 미국식 대통령제와는 달리 부통령을 두지 않으며, 대신 국무총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양현모, 2014: 115). 국무총리를 둔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통령제를 '내각책임제 요소가 첨가된 대통령제'라고도 한다. 이외 국무회의를 두고 있다는 것도 내각책임제 요소가 첨가된 대통

령제라고 하는 한 이유이다. 국무회의는 행정부 내 최고의 심의기관으로 행정부 전체 수준에서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헌법기관이다. 헌법 제88조 제2항은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88조 제3항은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면 총리 후보자는 대통령에 의한 최종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한 의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국회는 이를 통해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양현모, 2014: 115).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해임할 때 아무런 제한 없이 해임할 수 있다. 한편 국회는 대통령에게 국무총리의 해임을 건의하거나 일정한 요건하에 탄핵을 소추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국무총리의 임명 및 해임과정에 국회 역시 관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권 집행의 합법성·효율성·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한국 행정체제의 특징 중 하나이다(양현모, 2014: 116).

헌법상 국무총리에게는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 이들에 대한 임명제청권이 부여되어 있는 등 행정부의 2인자로서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무총리는 실질적인 제2인자라기보다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리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질적인 권한은 없고 책임만 지는 자리라는 뜻에서 '방탄총리'라는 용어도 생길 정도였다. 이런 배경에서 최근에는 국무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소위 '책임총리제'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국무총리의 업무를 보좌하는 조직으로서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이 있다.

행정 각부는 행정부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집행기구이다. 정치가이자 동시에 행정가의 성격을 지닌 각부의 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과거 국무총리의 장관 임명 제청권이 실질적으로 보

장되지 않아 명목적인 권한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이 있으나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장관은 국무위원이며 사무통할권, 부령제정권, 법률안 국무회의 제출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양현모, 2015: 105). 장관은 부처 내부의 인사 및 예산 배분에 관한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정책이나 부처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은 물론 합리적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양현모, 2014: 116).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로서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의원내각제 국가에서의 장관과 비교해서 그 권한과 역할이 약한 편이다. 우리나라 장관의 임기는 보장되지 않아 대통령은 언제든지 장관을 해임할 수 있으며, 국회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대통령에게 장관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양현모, 2014: 116).

정부조직에 대한 사항은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어, 조직 개편 시 모든 과정을 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부조직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행정 각부, 감사원, 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한국의 정부조직은 수십 차례의 크고 작은 개편을 겪어 왔다. 기간에 비해 정부조직 개편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 편인데, 특히 새로운 정부의 출범 시기에 정부조직의 개편이 있었다.

한국의 정부조직에는 행정 각부 이외에 '처'와 '청'이 있다. 처는 부와 연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장관 또는 차관급 처장은 사무통할권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권을 가지나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안 제출권이 없고, 표결에 참석하지 않으며, 회의의 출석 및 발언권만을 가지게 된다(양현모 2015: 105). 마지막으로 '청'은 각 부의 소속 기관으로서 독자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차관급인 '청장'은 '처장'과 마찬가지로 소관 기관에 대한 사무통할권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권을 가지지만, 국무회의 구성원은 아니며 출석 및 발언권만을 가진다(양현모 2015: 105).

3) 지방행정체제의 특징

대한민국은 1995년부터 지방자치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능 및 종류를 법정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1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구성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를 위해 제정된 일반법이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에는 특별시·광역시·도 이외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있고, 기초자치단체에는 시·군·구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로 구성된다.

한국 지방자치제 역사가 30년이 넘었으나, 아직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중앙과 비교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미비하며, 재정적 상태도 열악한 편이다. 또한 지방자치제에 대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식과 의식도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선진 국가들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정부패 및 권한 남용 현상은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병폐 중 하나이다.

4) 관료제의 특징

대한민국 이전 전제주의 시대의 관료는 통치자(임금)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통치자가 국가의 정치적 이념을 설정하고 통치 목표를 정하면 관료는 이를 실현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이용규·이성로, 2002: 117 재인용). 과거의 관료가 현대 사회에 와서 공무원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그 지위와 역할 그리고 업무 수행방법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신분이다(헌법 제7조 ①항).

우리나라는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의 신분과 역할을 헌법과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고 공무수행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7조 ②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강조하면서 그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8조 ①항에서도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실적주의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26조는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같은 맥락에서 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여 공무원의 정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나아가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공무원법 제66조)라고 명시하면서 공무원의 집단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및 공무원법 규정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지만 반대로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선거 및 기타 정치적 성향의 운동 등에 공무원을 이용하거나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도 의미한다(박천오, 2011: 31~32). 이렇듯 정치적 중립성이 공무원들에게 강조되며 법으로 규정된 배경에는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② 국민들은 자유선거의 권리가 있고, ③ 정당 간에 균등한 기회의 보장이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행정안전부, 2012: 8).

한국은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실적주의 및 공개성 원칙에 의해 여러 형태 및 단계의 시험을 실시한다. 신규채용은 원칙적으로는 공개경쟁채용으로 이루어지지만, 부가적으로 경력경쟁채용 및 특별채용 등도 있다. 먼저, 공개경쟁채용이란 응시에 있어서 연령, 학력 및 경력 등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 것이다. 과거에는 응시 연령에 대한 제한이 존재했지만 2009년 '공무원 응시연령 상한제'가 폐지되었다(양현모, 2015 109).

반면 경력경쟁채용이란 공개경쟁채용에 의해 충원이 어려운 특정 분야에 대한 유경험자, 전문 지식이나 능력을 가진 인력 등을 채용하기 위한 제도로서 해당 분야의 자격증, 경력 및 학위 등 요건이 충족되는 사람들만 응시가 가능하다. 이 외에 특별채용이 있는데, 이는 자격이 있는 모든 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어 공개적으로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공개경쟁채용과는 달리 경쟁을 제한하고 별도의 선발과정을 통해 신규 인력으로 채용하는 것을 의미한다(양현모, 2015: 109). 이는 융통성을 통해 공개경쟁채용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장점이 있지만(김승태, 2006: 144~146), 한편으로는 청탁 등으로 인한 부정채용의 위험이 있기에 단점도 있다(최무현·김영우·오성호, 2010: 8).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적 지식을 포함해서 전문적·행정적 기술을 배우고 나아가 공직에 필요한 인격 및 인성을 키우기 위한 과정이다. 공무원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

관은 인사혁신처로, 교육 이외에도 공무원 채용과 임용, 후생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각 중앙행정기관도 직무교육과 각 부처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운영하며, 교육기관에서는 신규 채용자,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한다. 대표적인 공무원 교육기관으로는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며 다른 교육기관을 지원하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포함하여 중앙 부처 소속의 교육기관, 지방공무원교육원, 소방학교 등이 있다. 지방의 경우에는 지방행정연수원 및 각 시·도 교육청 소속의 교육기관이 있다(양현모, 2015: 111).

과거 한국 행정문화의 특징으로는 권위주의, 형식주의, 정실주의, 분파주의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되었다. 한국 행정체제에서 이런 부정적인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유교문화, 일제 식민통치의 역사, 독재시대, 군대문화의 잔재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최근에도 위와 같은 정향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양현모, 2015: 115).

2. 북한의 행정체제

북한은 외형적으로는 구소련, 중국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유사한 행정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국가 운영의 실제 모습을 보면 김정은이 사실상 '군주'로서 조선로동당을 수단으로 하여 모든 국가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전제주의 체제와 다름이 없다.

1) 북한 행정체제의 주요 원칙

(1) '수령의 유일적 영도' 원칙

북한은 국가통치의 최고 원칙으로 '수령의 유일적 영도제'를 채택·강조하고 있다. 수령의 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며, 수령의 명령

과 지시에 따라 전 국민이 하나같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김공열, 1993: 49). 즉, 수령이 국가의 '어버이'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북한에서 수령이라 하면 이전에는 김일성만을 지칭했으나, 권력의 세습으로 인해 그의 아들인 김정일과 손자인 김정은 모두 수령의 지위에 있다.

북한에서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노동계급의 당과 국가, 근로단체를 비롯한 프롤레타리아 독재 체계의 모든 조직들과 기구들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받을 때 하나의 정연한 체계를 이루고 수령의 명령, 지시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임으로써 대중지도에서의 유일성과 통일성을 확고히 보장하게 된다(김민 외, 1985)"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령의 유일적 영도 원칙은 김일성 가계의 독재와 세습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논리 또는 그 방안에 불과하다. 김일성 시대에서 시작하여 김정일 시대에 완성된 일가족 세습 체제는 김정은에게 이어져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

(2) 당의 '영도적 역할' 원칙

북한헌법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북한헌법 제11조)"고 명시하고 있으며, 조선로동당 당 규약에서도 조선로동당이 '근로인민대중의 모든 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정치조직'이고 '3부 기관이나 기타 각종 조직들을 영도하는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런 원칙에 따라 북한에서 국가기관의 모든 행위는 당의 지도와 통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즉 북한의 모든 국가기관 또는 행정기관들은 당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야 한다. 북한은 당 제3차 대표자회(2010.9.28.)에서 국가영도 조직으로서 조선로동당의 위상을 강화하여, 국가 최고 정치조직이자 혁명의 참모부인 조선로동당의 국가영도 기능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즉 정치·경제·국방 등 모든 분야에 걸친 당의 지배력을 명문화하였다(양현모, 2014: 121).

북한 조선로동당의 위상과 관련해서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사실상 김일성 일가의 사당(私黨)이라는 점이다. 김정일 사후 김정은 유일영도 체제의 형성을 위해 제4차 당 대표자회(2012.4.11)에서 개정한 당 규약 서문에서는 조선로동당을 김일성과 김정일의 당으로, 주체사상과 함께 김일성-김정일 주의를 유일지도사상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김정은의 영도에 따라 주체혁명의 위업을 달성할 것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40~41).

종합하면 현재 조선로동당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회주의 국가의 완성과 인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북한 체제와 김일성 일가의 권력 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다. 현재 조선로동당은 김정은의 결정과 지시가 각 국기기관과 인민들 생활에서 실제 실행되는가를 감시하고 이의 작동을 위해 활동하는 억압기구이다.

(3)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에 의하면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는 모든 문제 해결에서 개인은 조직에 복종하고 소수는 다수에, 하부는 상부에, 모든 성원과 조직은 중앙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제5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며 운영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민주주의 중앙집권제가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에 있어 최고의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이 당과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에 있어서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중앙기관과 지방기관 간의 활동의 통일성을 보장하며 지방 국가기관들에 대한 중앙기관들의 통일적인 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것(경제법학연구소, 1963: 114)'이라 한다. 나아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가 광범위한 대중의 의사에 기초하고 있으며, 인민대중의 지혜와 지방의 창발성은 중앙의 통일적이며 계획적인 지도에 의해서만 실현 가능하다는 논리를 제

시하고 있다(김공열, 1993: 51).

그러나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은 비단 북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당독재 또는 개인숭배를 정당화하고 공고화하기 위한 논리로 사용되어 왔다. 북한에서도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는 조선로동당의 지휘하에 절대적이며 위계적인 의사결정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틀로서 존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경우 김일성 일가의 유일 체제 구축 및 공고화에 기여해 왔다.

2) 중앙행정체제의 특징

(1) 김일성 일가(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세습 및 전제적 독재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김일성 일가가 대를 이어 집권하고 있는 독재적 전제주의 국가이다. 북한에서 김일성 일가는 곧 국가권력의 원천이며 주요 정책의 결정자이다. 나아가 김일성 일가는 북한사회에서 신과 같은 소위 '최고 존엄'의 위치에 있으며 입법, 사법, 행정체제의 정점에 있다. 따라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제외하고는 국가 및 행정체제를 논할 수 없으며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김일성은 해방 이후 북한 체제를 구축한 장본인으로서 초기에는 수상을 지내다가 1972년부터 국가주석을 지냈다. 1972년 북한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하고 국가주석직을 신설하여 공식적인 국가 원수가 되어 1인 독재 체제를 확립하였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그의 아들 김정일은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하면서 국가주석제를 폐지하였고 자신은 조선로동당 총비서, 국방위원장을 맡아 사실상 국가 원수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자신은 아버지의 직위인 '국가주석'을 계승할 수 없다는 논리였으나, 실제 역할은 그대로 이어받았다. 김정일은 2012년 사망 이후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와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그의 아들 김정은은 김정일 사후에 조선로동당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

위원장이 되어 권력을 세습하였다. 자신의 아버지인 김정일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김정일의 직함인 총비서와 국방위원장직을 계승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명칭만 달랐지 실질적인 위상과 역할은 그의 조부 및 아버지와 사실상 동일했다. 그는 2016년 5월 조선로동당 제1비서직을 폐지하고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취임하였으며, 2016년 6월 29일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국무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

정리하면 북한에서 김일성에서 아들 김정일로 그리고 다시 그의 아들 김정은에게 권력이 세습되었으나, 이들 세 사람의 직위는 모두 달랐다. 김일성은 수상, 국가주석 등의 직위에 있었으며, 김정일은 조선로동당 총비서, 국방위원장 등의 직함을 사용하였다. 그의 아들 김정은은 자신의 조부와 아버지의 직위 대신에 조선로동당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을 역임하다가 현재에는 국무위원장과 조선로동당 위원장의 직함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내부에서는 이런 공식 직함보다는 '경애하는 수령', 지도자 동지 등 수식어가 붙은 여러 호칭들이 사용되었으며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다. 이들 세 사람의 직위들은 비록 그 명칭과 명목상의 역할은 다르더라도 이들은 사실상 당과 군 그리고 정부를 모두 장악한 전제국가의 '군주'이었으며, 현재도 군주로서 군림하고 있다.

(2) 조선로동당

원래 소련, 중국, 베트남, 동독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집권 공산당이 국가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당 내부에서 국가정책의 노선을 두고 치열한 논쟁도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당과 국가의 지도자가 바뀌기도 했으며 때로는 집단 지도 체제가 구축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조선로동당에서는 일반적 사회주의 국가들의 당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북한 조선로동당은 더 이상 국가와 인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이 아니며 내부에서 국가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관도 아

니다. 조선로동당은 김정은을 보호하고 김정은의 지시와 명령이 잘 이행되도록 각 기관과 인민을 지시하며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에 불과하다. 김정은의 명령과 지시가 곧 당의 결정과 지시인 셈이다. 김정은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당으로 전락한 것이다.

현재 북한에서는 모든 국가기관과 행정기관은 당의 통제와 감시를 받는데, 당에 의한 행정의 통제와 감시는 당 기관이 행정기관에 설치되는 방식과 함께 당 관료가 행정관료를 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당의 명령을 받는 검찰과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등 억압기관들도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사회·협동단체를 통제·감시하고 있다. 결국 북한에서 조선로동당은 김정은을 보위하는 조직이자 국가의 모든 기관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조직인 셈이다. 북한 조선로동당의 주요 조직과 그 기능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당대회

북한 조선로동당의 명목상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당대회이다. 당 규약에서는 당대회가 당 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당중앙위원회, 또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이 내린 결정을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그나마 자주 개최되지 않아 1946년 제1차 대회 이후 1980년까지 총 6차례만 소집되었으며, 이후 30년 이상 개최되지 못하다가 2016년 5월 제7차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때 김정은을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결국 당대회는 당의 활동에 있어 사실상 큰 의미가 없으며, 실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추인하는 기능만 수행하는 셈이다. 당대회는 명목상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검사위원회를 조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김정은이 당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을 임명함으로써 중앙위원회가 구성된다.

나) 당중앙위원회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최고 지도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에서 선출된 위원과 후보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이 모두 참여하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당의 주요 문제를 결정한다. 특히 전원회의는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위원회 비서들 및 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를 선출하며, 정무국과 중앙군사위원회를 조직하는 권한도 부여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당중앙위원회는 당의 최고기구로서 당의 모든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이의 이행을 지시·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김정은의 의사로서, 김정은의 의사에 반한 결정과 행동은 생각할 수도 없다. 당중앙위원회는 정치국, 정무국, 검열위원회를 구성하며 산하에 10~20개의 전문 부서를 두고 있다.

① 정치국

정치국은 당대회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내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권력기구로서 당중앙위원회 명의로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② 정무국 및 검열위원회

정무국은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에서 기존 비서국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서, 당의 사업과 그 밖의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집행하는 당내 핵심 조직이다. 정치국 등 중앙당의 다른 조직들이 비상설 회의체 형식을 띠고 있는데 반해, 정무국은 상설기관으로서 북한의 일상 주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김정일은 사망 전에 비서국의 '총비서'로 있었으며, 사망 이후에는 김정은이 제1비서로 있었다.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는 반당·반종파 행위 및 기타 당의 사상에 어긋나는 행위나 당 규율 위반을 추궁하고 관련

사안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③ 전문 부서

정치국, 정무국 등은 북한의 대내외 정책 방향과 주요 인사를 결정하는 중요 조직이지만, 일상의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곳은 당중앙위원회 산하의 전문 '부'이다. 전문 부의 수는 북한의 사정에 따라 다른데, 보통 10~20개 정도이다. 각 부의 권한은 막강해서 각 급 지방당은 물론 인민무력성,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등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들을 포함해 내각과 산하 성(省) 등 모든 행정기관들을 장악하고 있다.

각 부의 존폐 및 위상은 북한 내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장성택 생존 시에는 그가 부장으로 있었던 '행정부'가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졌는데, 그가 처형된 후에는 폐지되었다. 현재에는 '조직지도부'가 가장 막강한 부서로 알려져 있다.[16]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에 탈북한 태영호는 조선로동당 조직지도부의 위상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

> "조직지도부는 전 사회에 대한 장악과 통제, 고위층 간부들에 대한 인사, 검열, 처벌 권한을 가진 최고의 권력기관이다. ... 북한에서 권력서열은 의미가 없다. 박봉주 총리의 권력서열이 서너 번째라고 해도 그는 내각 성원을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없다. ... 내각 성원에 대해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앙당 조직(지도)부 중앙기관담당 부부장이다. 결국 북한을 움직이는 것이 중앙당 조직지도부이고 조직지도부는 각 기관의 당위원회를 통해 전체 기관을

[16] 조선로동당 여러 전문 부서 중 간부부와 군사부는 사실상 조직지도부의 일부 조직이라는 주장이 있다. 조선로동당 소속 간부였던 일부 탈북자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의 간부부, 군사부와 이전에 존재했다가 현재는 폐지된 당생활지도부, 검열부 등은 독립된 조직이라기보다는 조직지도부에 속한 조직이라는 것이다. 현재 조선로동당 간부부 또는 군사부 소속 간부들도 자신들이 조직지도부 소속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조선로동당 조직도를 수정하거나 최소한 이러한 사실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주장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일단 통일부의 공식 자료에 따르기로 한다.

통제한다"(태영호, 2018: 264).

각 부의 경우 부장이 수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일부 예외는 있지만 통상 '부장'은 모두 정치적인 특성을 지닌 사람들로 형식적으로 직위만 가지고 있을 뿐, 실제 조직은 '제1부부장' 또는 '부부장'이 이끌고 있다. 따라서 제1부부장 또는 부부장이 권력의 핵심에 있는 자이며, 이들은 김정은의 지시와 방침을 직접 이행하는 자들이다. 부에 따라서는 제1부부장이 없고 대신 부부장이 조직을 이끄는 경우도 있다. 각 부의 조직은 비서-부장-제1부부장-부부장-과장-책임부원-부원-보조부원 등 수직적으로 설계되어 있다(양현모, 2015: 130).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당 각 부의 과장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이며, 그 아래 책임부원 또는 부원도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④ (3층)서기실

그동안 북한 체제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궁금해했던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김정일과 김정은을 측근에서 보좌하는 조직에 대한 것이었다. 북한의 경우도 하나의 국가 체제를 구축하고 있어 사실상 국가 원수이자 행정의 최고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는 김정은의 업무 수행을 보좌하는 조직이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이러한 조직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김정은의 직무를 보좌하는 기구가 당중앙위원회 (3층)서기실이라고 거론한 바 있으며, 최근 탈북한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태영호도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3층)서기실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 "김정일의 직무실이 있는 (당중앙) 건물이 3층 규모인데 ... 이 청사에서 김정일의 사업을 가장 근접해서 보좌하는 부서를 3층 서기실이라고 한다. ... 굳이 한국으로 치면 당중앙 청사는 청와대이고 3층 서기실은 대통령비서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태영호, 2018: 233).

김정일 시대에 조직된 (3층)서기실은 현재 김정은 시대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북한의 정치·행정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위상도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모든 당과 행정기관에서는 주요 사안은 물론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까지도 김정은에게 보고하고 그 결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모든 보고들이 집결되고 분류되며 요약해서 보고되는 기관이 바로 서기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고에 대한 김정은의 의견과 지시사항 등도 이곳을 통해 하달된다. 김정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사실상 법이요 규범인 북한 체제의 특징을 감안할 때 김정은을 측근에서 보좌하는 서기실이야말로 당과 주요 행정기관의 권한을 초월하는 권한을 가진 조직임에 틀림없다.

⑤ 지방당

당중앙위원회 산하에는 일차적으로 도, 시·군(구역) 당위원회가 존재한다. 다시 그 밑으로 부문당이 있으며 구조 최하층에는 당세포가 존재한다. 각 단위별 당위원회는 자신들의 지역에서 중앙당과 유사한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관할구역 안에서 절대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 이 권력은 주로 당위원회 책임비서에게 집중된다(양현모, 2015: 123~124). 그러나 이러한 권한 행사 역시 '민주주의 중앙집권주의' 원칙에 따라 중앙당의 지도와 통제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지방당의 자율성은 보장될 수 없다. 지방당은 중앙당의 결정과 통제 및 지시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관 또는 행정기관의 당 조직

한편 조선로동당은 중앙과 각 지방에만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모든 기관에도 당 조직(당위원회)을 설치하고 있다. 이들 각 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당 조직은 해당 기관에서 김정은의 개인적 명령은 물론 상

급 당 기관의 지시 및 명령이 이행되도록 하고 있다. 각 기관의 당 조직은 지방당과 마찬가지로 당위원회와 부문당이 있으며 구조 최하층에는 당세포가 존재한다. 북한 내각의 외무성을 예를 들면 외무성 당위원회의 책임비서는 주로 제1부상(副相)이 겸직하는데, 이 인사가 외무성의 실질적 제1인자다. 외무성 당위원회 밑에 각 국별로 부문당, 당세포 등이 조직되어 있는데,

> "만일 각 국의 당원수가 30명 이상이면 각 국 부국장은 세포 비서가 되고, 30명 이상이면 부문당이 되어 부국장이 부문당 비서를 겸직한다"(태영호, 2018: 258).

(3) 중앙행정기관

한국의 중앙행정기관과 비교해 볼 수 있는 북한의 국가기관으로는 국무위원회와 내각을 들 수 있다. 국무위원회는 이전의 국방위원회가 그 명칭을 바꾼 것이며, 내각은 북한 스스로 최고인민회의의 「행정적 집행기관」이자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이라고 칭한다.

가) 국무위원회

국무위원회는 국방위원회란 명칭으로 1972년 12월 채택된 '사회주의 헌법'에 주권의 최고 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 산하 5개 위원회(국방, 대내정책, 대외정책, 사법안전, 경제정책) 중 하나로 설치되었다. 당시 국가 주석(김일성)이 국방위원장을 겸직하였다. 김정일 시대 국방위원회는 그 위상이 높아져 국가의 중요 정책의 수립, 무력과 국방건설에 관한 사업, 국무위원장의 명령 및 국무위원회의 결정·지시·집행의 감독, 국방 부문의 중앙기관 신설 및 폐지 등의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 회의에서 국무위원회로 개칭되었으며, 김정은이 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현재 국무위원회는 이전의 국방위원회와 그 위상과 역할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위원장인 김정은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국가의 무력 일체를 지휘·통솔하며 대내외 사업을 비롯한 국가사업 전반을 지도한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51). 국무위원회는 산하에 인민무력성,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국가체육위원회를 두고 있다.

나) 내각

내각은 북한의 대표적인 행정기관이다. 북한의 내각은 우리의 행정부와 비슷한 성격을 띠는 기관이지만, 주로 당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 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양현모, 2014: 130). 또한 당의 지도·감독을 받기 때문에 그 운영에서의 자율성도 낮은 편이다. 내각은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제정과 함께 '정무원'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1998년 헌법 개정과 함께 다시 '내각'으로 되었다. 내각은 국방 분야를 제외한 주로 행정 및 경제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관할한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53). 북한 내각은 1명의 내각 총리, 약간 명의 부총리, 상(相)과 그 이하 인사들로 구성된다.

내각의 대표적 조직인 성(省)의 책임자인 '상(相)'은 한국의 각 부처 장관급 인사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정치·행정적 위상을 볼 때 한국의 장관과 동급으로 보기는 어렵다. 북한에서 각 성의 간부들은 조선로동당 소속 인사에 비해 그 위상이 낮은 편이다. 게다가 북한에는 내각의 성 이외에 국무위원회 등 주요 기관 산하에도 다수의 '성급(省級)' 기관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급(相級)' 인사는 우리나라 장관보다 그 수가 훨씬 많은 편이다. 다만 북한 내부의 상황에 따라 외무성 등 일부 성의 상은 높은 정치적 위상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각 성에는 수장인 상 밑에 제1부상-부상-국장-부국장-과장-책임부원-부원 등이 있는데, 일부 성의 경우 '과'를 두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 부처에서는 국장 위의 지위로 '총국장'이 있는 경우도 있다. 각 성의 규모는 조금씩 다른데 보통 규모의 경우(예; 금속공업성) 약 300명 정도이며 국가기획

위원회처럼 큰 조직의 경우 직원이 약 1,000명 정도에 이르고 있다(양현모, 2015: 131).

북한의 행정기관의 인사 체제에 있어 흥미로운 사실은 조선로동당과 마찬가지로 제1부상이 상(相)보다 권력 서열은 낮지만 실제 권력은 높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태영호는 자신이 근무했던 외무성을 예로 들어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 "상 아래 1부상이 있고 부장 밑에 1부부장이 있다. 상이나 부장보다 권력 서열은 낮지만 1부상과 1부부장은 김정일의 방침을 직접 집행하는 직책이다. 김정일과 얼마나 자주 대화하고 김정일이 얼마만큼 힘을 주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북한의 권력이다. 국가 행사나 외교활동, 각종 회의에 참가하느라 집무실을 비울 때가 많은 외무상과는 달리, 외무성 1부상은 아침 출근부터 밤 11시 퇴근까지 사무실을 지킨다. 김정일은 성격이 급해 보고 문건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거나 지시할 사항이 있으며 즉시 전화로 1부상을 찾는다" (태영호, 2018: 265).

김정은 집권 이후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있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정일 시대의 실태가 크게 바뀌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다) 기타 중앙행정기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 행정기관의 특징 중 하나로서 내각 이외에도 다수의 상급(相級, 장관급) 또는 그 이상의 위상을 가진 행정기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즉 현재 남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북한의 국가기관 조직도에 나와 있지 않은 다수의 기관들이 상급 또는 그 이상의 위상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군수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제2경제위원회, 식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금수산의사당경리부, 국방 업무 중 핵실험, 미사일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자연연구원, 과학 관련 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 등이 있는데,

이들 기관들은 내각에 속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행정기관으로서 높은 위상과 함께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내각의 총리와 동급이며, 제2자연연구원 원장은 군사칭호 대장으로서 성급기관의 수장인 '상'보다 위상이 높은 편이다. 금수산의사당경리부장은 중앙당 부장보다 그 위상이 높은 편이다. 이밖에 금수산 궁전을 관리하는 기관인 금수산의사당경부, 무역기관인 대성지도국, 모란지도국, 락원지도국, 경흥지도국, 선봉지도국, 대흥지도국, 류성지도국 등은 모두 상급(相級) 기관이다.[17] 이들 기관의 조직 형태도 내각과 비슷하며 규모는 내각의 일부 성보다 크다고 한다(양현모, 2015: 133).

3) 지방행정체제의 특징

현재 북한의 행정구역은 1직할시(평양), 2특별시(남포, 나선), 9도의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다. 9개의 도는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함경남북도의 6개 도 이외, 양강도, 자강도, 강원도이다. 분단 이전과 비교하면 황해도가 황해남북도로 분도(分道) 되었으며, 양강도, 자강도가 신설되었다. 도는 일반적으로 군과 시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도(평안남도, 함경남도)의 경우 구역, 구, 지구가 있는 경우도 있다. 평양직할시와 남포특별시는 군(2개)과 구역(18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선특별시는 지구(2개)로 구성되어 있다.

남한의 기초자치단체격인 시, 군, 구역은 동, 리, 읍, 노동자구로 구성된다. 이 중 비교적 도시화 또는 산업화가 진행된 지역을 행정구역상 '동'이라고 하며, 반대로 산업화가 상대적으로 덜 된 농촌지역을 '리'라고 한다. 노동자구는 '동'보다 산업화가 더 진행된 지역으로 주로 공업단지, 탄전지대, 광산지역, 특수공장지역 등 노동력을 집단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17] 이와 같은 내용은 북한 관료 출신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한 것으로 그 정확성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다만 1인의 증언이 아닌 다수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 담았다.

의미한다.

2017년 현재 북한의 행정구역을 보면 언급한 1직할시, 2특별시, 9도의 광역행정구역에 24개 시, 145개 군, 37개 구역, 2개 구, 5개의 지구의 기초행정구역이 있으며, 이는 다시 145개의 읍, 3,230개의 리, 1,135개의 동과 267개의 노동자구로 나뉘어져 있다(박성열, 2018: 30 재인용).

북한 지방행정기관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도 조선로동당의 '당의 영도적 역할' 원칙이 절대적으로 강조·적용되고 있다. 지방의 각급 당은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기관 및 사회단체에 대한 강력한 지도·감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지방당은 담당 지역의 행정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사회단체 등 모든 기관을 지도·감독하고, 이들 기관 상호 간의 업무를 조정한다. 대한민국에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제' 또는 '지방행정의 자율성' 등의 개념은 북한에서 상상할 수도 없다.

현재 북한의 지방행정기관은 지방인민회의와 지방인민위원회의 2원형 구조로 되어 있다.[18] 지방인민회의는 도·특별시·직할시와 시·구역·군 등에 조직되는 기관으로서 남한의 지방의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임기 4년의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지방의 사업 계획과 예산의 승인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또한 지방인민회의는 지방정부 구성에서 당해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선출하고 소환하며, 당해 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출하고 소환한다(홍승원, 2007: 209~210). 이와 같이 지방인민회의는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지역 당위원회의 결정을 추인하는 기관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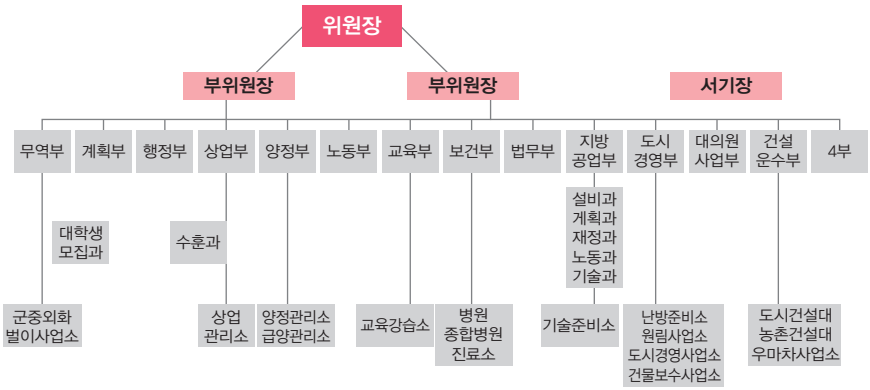
지방인민위원회는 북한 각급 지방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한

18 전직 조선로동당 간부였던 탈북자의 주장에 따르면 각급 '인민위원회'는 2005~2006년 그 명칭도 '행정위원회'로 바꾸었으며 그 조직도 대폭 축소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 북한에서는 각급 인민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인민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통일부의 공식 자료에서도 각급 인민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인민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한다.

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한 기관으로서, 조직 형태도 각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인민위원회는 자치단체가 아니며 당의 명령과 지시를 수행하는 일선 행정기구이다.

도(직할시, 특별시)인민위원회의 경우 위원장과 2명의 부위원장 밑에 보통 10개 정도의 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행정부, 지방공업부, 법무부(재판소, 검찰소, 보위부, 보안부 관련 업무 담당), 상업부(경제, 시장), 계획부, 도시경영부(상하수도, 위생, 환경 등), 노동부, 교육부, 양정부 등이 대표적이다. 각 부는 부장을 수장으로 하며 이하 관료조직 형태 역시 내각과 비슷하다. 위원장은 형식상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출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당에서 지명하는 것이다.

그림 1-2〉 북한 지방인민위원회 구성과 전문 부서



출처: (임도빈·안지호·현주, 2015: 139).

한편 북한의 지방행정기관 중에는 인민위원회에 속해 있지 않고 중앙행정기관(내각)에 속해 있는 행정기관이 있는데, 이들 기관들은 남한의 특별행정기관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도의 농촌경리위원회(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도지구계획위원회(군국가계획부), 건설위원회, 통계국, 협동수산경리위원회, 지방철도국, 체신국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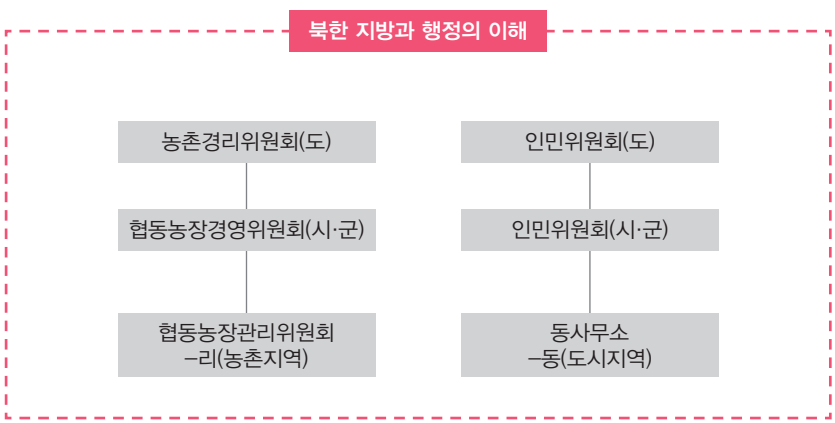
표 1-10〉 북한의 지방행정기관

행정기관명	기능
농촌경리위원회(도, 직할시, 특별시) (협동농장경영위원회, 시·군)	지방의 농업 관련 업무 담당
지구계획위원회 (도, 직할시, 특별시) (국가계획부, 시·군)	인민경제 계획 및 실천에 관한 업무 담당
건설위원회	주택 및 건물 건설 담당
통계국	통계에 관한 업무
협동수산경리위원회	수산업에 관한 업무 담당
지방철도국	철도 및 수송에 관한 업무 담당
체신국	체신, 우편에 관한 업무 담당

자료: (홍승원, 2007: 212~213) 내용을 재정리.

이 중 지방행정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은 농촌경리위원회와 협동농장경영위원회이다. 도 단위의 농촌경리위원회와 군 단위의 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북한이 1960년 초부터 협동농장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통제하기 위해 기존의 농업 관련 업무를 인민위원회에서 분리하여 구축한 농업 행정기관이다. 결국 북한의 지방행정체제는 아래 〈그림 1-3〉과 같이 인민위원회와 협동농장경영위원회로 구분된다.

그림 1-3〉 북한 지방행정체제의 이해



출처: (임도빈·안지호·현주, 2015: 138).

4) 관료제의 특징

(1) 간부 및 일꾼

'관료'의 의미에 있어서도 남북한 간 차이가 존재한다. 남한에서 관료란 공무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 즉 '관직에 있는 자' 또는 '국가로부터 직무상의 권한을 부여받아 공공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양현모, 2015: 119). 그러나 북한에서의 관료란 '낡은 사회에서 지배계급의 리익은 옹호하며 인민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상층 관리'(박상익, 2008a: 61)로, 극히 부정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19]

이처럼 북한에서의 '관료'라는 개념은 남한에서 사용하는 의미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남한의 '관료' 또는 '공무원'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북한식 용어는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과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칭하는 북한의 대표적인 용어로 첫 번째는 '간부(幹部)'를 들 수 있다. 북한에서 간부는 남한과는 달리 '정부인력'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북한에서 모든 간부에 대한 인사는 조선로동당 조직지도부 또는 간부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 간부들은 노동자와 농민과는 별도의 '간부문건'이라는 문서를 가지고 있다. 간부문건은 일종의 신분증명서로서, 간부들의 출생과 성장에 관한 모든 이력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경력 등 개인에 대한 모든 사항이 명기된 문건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간부'와 기타 노동자, 농민과의 구별은 이 간부문건의 소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간부'라는 개념 이외 남한의 '관료'에 해당되는 또 다른 개념으로 '일꾼'을

[19] 참고로 북한에서는 '관료주의'라는 용어도 역시 남한에서보다 훨씬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조선말대사전에서는 관료주의를 '① 착취사회의 봉건제도나 자본주의제도하에서 관료배들이 강권을 휘두르며 인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반인민적인 통치 방법, ② 인민대중들의 의견은 귀담아듣지 않고 이들의 실정을 제대로 알려 하지 않으며 대중의 의사와 어긋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무턱대고 내려 먹이면서 인민들의 리익과는 상반되는 행동을 하며 호령과 욕설로 사업을 배치함으로써 혁명에 손실을 주고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는 유해롭고 낡은 사업 방법이나 작풍'(박상익, 2008a: 61)으로 정의하고 있다.

들 수 있다. 이 개념은 북한 국가 및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의미하며, 앞에서 설명한 광의의 간부와 유사한 개념이라 하겠다. 그런데 '일꾼'이라는 용어는 당 기관 일꾼, 행정 일꾼, 경제기관 일꾼, 교육·문화기관 일꾼, 외곽기관 일꾼 등 일반적으로 특정 분야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칭할 때 자주 사용되고 있다(양현모, 2015: 122).

마지막으로 자주 사용되지는 않지만 북한에서도 '공무원'이라는 용어가 있다. 원래 구소련, 중국,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는 '공무원'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 이론에서는 '행정'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이란 용어는 자본주의 산물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에서 1990년도 이후 인사개혁을 추진하면서 공무원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북한에서도 2000년도 이후 이 용어가 등장하였다.

한 예로 2005년 제정·발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무원자격판정」에서는 '공무원'이라는 용어가 나타나 있다. 이 법률에서 "공무원은 국가기관에서 일정한 행정적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일하는 일꾼이다(제2조)"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공무원 자격 판정의 대상으로 '내각위원회, 성, 중앙기관의 부원 이상 일꾼, 도(직할시)급 기관의 부원 이상 일꾼, 시(구역)·군급 기관의 부원 이상 일꾼, 해당 기관의 부원 이상 일꾼(제5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북한에서는 당과 당 외곽기관 등 당과 관련된 기관이 아닌 행정기관과 기타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를 한정해서 '공무원'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자주 사용하는 개념은 아니며 간부 또는 일꾼 등이 일반적 개념이다.[20]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정리하면 '간부' 또는 '일꾼'이라는 개념이 북한에서 가장 빈번하게 쓰이고 있으며, 이 두 용어가 지니는 의미 또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간부' 또는 '일꾼'이란 조선로동당, 내각과 내각 산하의 각 성, 내각 이외의 국가기관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인력들을 의미한다.

[20] 이밖에 북한에서는 인력의 직업 등에 따라 인테리, 사무원 등의 개념도 있다. 이들 개념도 넓은 의미에서는 '일꾼'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당 일꾼'은 조선로동당 중앙당 또는 지방당에서 근무하는 인력으로서 그 의미가 비교적 간단한 데 비해, '행정 일꾼'은 좀 더 그 범위가 넓다. 우선 내각 등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소의 간부도 사실상 행정 일꾼에 포함된다. 또한 경제기관에서 근무하는 간부들도 분야에 따라 재정 일꾼, 무역 일꾼, 대외 일꾼 등으로 구분되기도 하나 이 역시 행정 일꾼에 속한다. 이밖에 사회문화기관, 각종 직능단체 등에서 책임자급으로 근무하는 인력도 행정 일꾼에 속한다.

그림 1-4〉 '관료'의 북한식 개념



출처: 본문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필자가 구성.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간부(또는 일꾼)에게는 원칙적으로 인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구호에 그칠 뿐이며 실제 북한의 당·군과 행정기관의 간부들은 일반 인민들과는 달리 사회적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양현모, 2015: 127). 간부들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우선적으로 정기적인 배급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인민들은 받을 수도 없는 물품들을 배급받고 있다. 또한 간부의 가족이나 친인척들은 김일성종합대학 등 유명 학교의 입학도 가능하며, 학교 입학 후 대학 생활에서도 우대를 받고 있다.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의 한 탈북

자는 북한에서의 대학교 기숙사 생활을 회상하면서 북한 간부의 특권 행태는 학생 때부터 학습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 "기숙사생으로서 대학 생활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배고픔이었다. ... 기숙사에서는 학생 간부와 일반 학생의 밥 양이 차이가 난다. 대대 간부들은 학부가 줄을 서서 밥 먹는 것을 통제한 뒤 제일 마지막에 밥을 먹는다. 식당 아줌마들이 간부들에게는 밥을 일반 학생의 2배 이상 꾹꾹 눌러 담는다. 하지만 일반 학생들은 큰 불평을 하지 않는다. 북한에서 이런 특권 의식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런 환경에서 배우고 사회에 나가 간부가 되는 김대(김일성대학) 학생들은 졸업 뒤에도 특권을 당연하게 여긴다"(주성하, 2010: 46~47).

간부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 당의 역할은 주도적이며 결정적이다. 간부들의 신규채용, 교육, 배치, 승진 등은 오직 당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북한에서는 당이 소속 간부는 물론 모든 국가기관과 사회단체의 간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군 간부에 대한 인사권도 당이 행사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모든 간부들에 대한 인사권을 당이 행사하기 때문에 개인이 직업을 선택할 권한은 없고 근무지를 결정할 수도 없다. 당이 결정하는 직업을 받아들여야 하며, 당이 결정하는 근무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한국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 공무원같이 국가간부 또는 지방간부의 구분은 없으나, 실제 평양 근무자와 지방 근무자의 위상과 처우에는 큰 차이가 있다.

현재 북한의 당 간부와 행정 간부 중에서 인민이 선호하는 직업은 당연히 당 간부이다. 당 간부는 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며 당연히 사회적 명성과 좋은 처우도 따른다. 따라서 당 간부가 되는 길도 어렵다. 당 간부가 되기 위한 요건은 매우 까다로워 동급의 행정 간부에 비해 성분과 자질이 우수하여야 한다. 학력 또한 중요해서 일반 행정 간부는 대학 졸업자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당 간부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학교를 졸업하여야 한다. 특히 당 간부가 되기 위해서는 주로 김일성종합대학 등 소위 명문대학을 졸업하여야 한다.

북한의 간부 채용 방법도 우리와는 다른데, 그중 하나는 인력 충원을 위한 공개채용 제도 자체가 없다는 점이다. 북한에서 간부 채용을 할 때 당은 우선 중앙과 지방의 각급 당 기관, 국가기관 그리고 사회단체 및 기업소 등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파악하여 충원 계획을 세운 후 해당 기관에서 적임자를 추천할 것을 하달하고, 이들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인사들을 직접 심사하여 최종 적임자를 결정한다. 물론 중앙당 등 중요 기관에서 근무할 자는 당이 직접 물색하여 여러 단계를 걸쳐 결정하기도 한다.

한편 당 간부의 채용에 비해 행정 간부, 즉 행정기관의 일꾼 채용은 그 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은 편이다. 우선 당 간부는 대학교 졸업, 그것도 김일성종합대학 등 소위 일류학교를 졸업하여야 하고 그 출신 성분도 빨치산의 가족 등으로 우수하여야 하지만, 행정 간부의 경우는 직장에 따라 대학 졸업자가 아닌 자, 출신 성분이 보통인 자, 소위 '평민'[21]이 채용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 경우 외국어, IT 등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가진 자들만이 간부로 채용될 수 있다.

일반 성급 행정기관, 예를 들어 외무성에 근무할 일꾼의 채용과정을 보면 중앙당 간부부로부터 채용지침을 받은 외무성 당위원회에서는 각급 학교 또는 사회기관에 있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여러 전형 단계를 걸쳐 검증하여 외무성에서 필요로 하는 인사를 일단 선발한다. 이후 외무성은 이 인사를 중앙당 간부부에 보고·추천하면 중앙당 간부부에서 다시 검증하여 채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외무성에 통보한다. 당 간부 채용 방법과 거의 유사하다 하겠다.

당 간부가 되기 위해서는 예외 없이 우선이 당원이 되어야 하지만 행정기관의 경우 당원이 아닌 자도 채용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간부로 출세하기 위해서는 입당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근무하면서 당원이 되

[21] 북한에서는 개인의 출신 성분이 출세에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데, 소위 우수한 가문 출신이 아닌 평범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을 '평민' 출신이라고 한다(태영호, 2018).

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탈북자 태영호는 당원이 되는 어려움을 이렇게 회고했다.

> "당원이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청년들은 군 복무를 해야 입당이 용이하다. 그리고 입당 후 대학에 가거나 사회로 나간다. 나처럼 유학을 갔다가 대학에 진학한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 거의 10년은 일해야 입당할 수 있다. … 어릴 때부터 승벽심(호승심)이 강했던 내가 남들보다 먼저 노동당에 입당하고 나니 정말 기분이 좋았다. 훗날 나는 입당을 못해 거의 10년째 공생하는 외무성 동료들을 많이 접했다"(태영호, 2018: 438).

행정기관에서 채용되어 근무하다 그 능력을 인정받고 운도 따를 경우 당 기관으로 직장을 옮길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에서 '과장' 등 높은 직위에 있다가도 중앙당의 낮은 직급인 '부원'을 그 직책으로 옮길 수도 있으나, 이는 실제 강등이 아니고 승진인 셈이다.[22]

간부의 채용과 능력검증에 있어 고려되는 것은 학력, 능력, 경력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전문성과 자질도 강조되고 있다. 한 예로 북한의 「공무원자격판정법」 제4조에서는 관료의 자격 판정 기준으로 '국가의 정책과 해당 부문의 법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해당 부문의 전문지식이 있는지 여부, 사업조직 지휘능력 소지 여부, 사업실적 여부, 준법정신 여부, 법적 지식 여부 등'을 들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과학기술 분야의 간부 선발에 있어서 개인의 자질과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김정일 정권 시기만 해도 출신 성분과 당에 대한 충성심

[22] 전 북한공사 태영호의 회고록에는 2015년 김정은의 형 김정철이 영국을 비공식 방문할 때 북한 서기실 예술 담당 부장 장룡식, 당국제부 부원 김주성 이외 문화성 예술교류국장이 선발대로 방문한 사실이 다루어지고 있다. 태영호는 당국제부 부원 김주성의 경력을 설명하면서, "(그는) 외무성 번역국 과장으로 일하다가 당국제부 통역과 부원으로 들어갔다"(태영호, 2018: 281)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구절만 봐도 북한 중앙당 각 부서 직원의 위상이 어떤지 알 수가 있다. 즉 중앙행정기관인 성의 '과장직'을 역임했던 자가 근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덕분으로 중앙당 전문 부서의 말단 직원에 속하는 '부원'이 되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중앙당 전문 부서의 직원의 위상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가장 중요한 간부 선발 요건이었지만,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후에는 개인의 실력이 간부의 선발 요건으로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자유아시아방송, 2014.05.27).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몇 가지 변동사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관료의 선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소는 대상자의 출신 성분이다. 성분이 좋을 경우 당연히 유명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으며, 졸업 후 자연스럽게 간부의 길로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간부 채용에 있어 개인의 성분은 결정적인 요소인 셈이다(양현모, 2015: 137).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의 탈북자는 북한에서 출신 성분이 중요하다는 점을 아래와 같이 증언하고 있다.

> "북한에서 소위 잘 나간다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줄기'라는 말에 빗대어 표현하는데, 첫째가 '백두산 줄기'이다. 이는 김일성과 함께 항일투쟁을 하였던 사람들의 자손을 가리키는 말로, 대다수가 김대(김일성종합대학)를 졸업한다. 둘째로 잘 나간다는 줄기는 '낙동강 줄기'라고 부르며 이들은 6.25전쟁 참전자의 가족이다. 이들 역시 대다수가 간부로 임명된다. 셋째 줄기는 '용남산 줄기'로 김정일의 모교인 김대 졸업생을 의미한다. 용남산은 김대 구내에 있는 나지막한 산이다"(주성하. 2010: 32).

그런데 최근에 간부의 채용에 있어서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부패에 의한 부정 채용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경제적 부가 사회의 최우선 순위가 되면서 부패가 만연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뇌물로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으며, 간부로 채용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출신 탈북자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 "북한에서 간부로 성장하려면 군에 다녀와서, 노동당원이 되고 대학을 나오는 3대 징표를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이제는 군복무 경력이나 노동당원 자격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 이제는 돈만 있으면 노동당원이 되기도 식은 죽 먹기이고 심지어 대학 졸업장도 음성적으로 거래되기도 한다"(주성하, 2010: 182~200).

북한 관료에 대한 교육 역시 모두 당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관료들에 대한 교육과정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을 보면 우선 정규과정에 해당하며 교육기간이 보통 3년에서 길게는 6년이 걸리는 기초과정 또는 기본과정, 주로 재직자 중심의 교육으로 그 기간이 단기과정에 해당하며 몇 개월이 걸리는 강습과정 또는 재직과정 그리고 단기과정으로 직무상 잘못한 행동을 한 자들에 대한 징계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있는 혁명화과정 등 다양하다(현성일, 2006: 131, 재인용 양현모, 2015: 140). 교육기관 역시 당 교육기관, 국가기관 교육, 군 교육기관 등 다양하다.

북한의 경우 전통적인 유교문화 유산, 사회주의 정치·행정체제, 김일성 일가의 전제적 세습 체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행정문화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 번째 특징은 강한 권위주의 현상이다. 북한 관료들의 행태에서 강한 권위주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일차적 배경으로 북한 고유의 정치·행정체제를 들 수 있다(양현모, 2015: 145).

북한 행정문화의 두 번째 특징은 강력한 집단주의 성향인데, 북한 사회주의 헌법(1972년)[23]에도 집단주의에 대한 규범이 공식화되었을 정도로 강조되고 있다(박상익, 2008b: 72). 또한 김일성이 '집단주의가 로동계급의 본질적 특성이며 그러한 원리가 근로자들로 하여금 단합하여 공동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생활의 기초'라고 말할 정도로 당연시되고 있다(박상익, 2009: 10).

북한 행정문화의 세 번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관료의 강한 정치성이다. 북한에서는 당이 모든 국가기관을 지휘·감독하고, 관료들 대부분이 노동당에 가입하고 또한 노동당에 가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치성이 강한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특히 당과 국가기관에서도 관료들의 정치적 감각과 정치적 충성 등을 강조하는 것도 관료의 정치성이 강한 하나의 이유라

[23]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63조에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관료의 부정부패를 들 수 있다. 북한의 관료 체제에서 권력형 비리나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원인을 다양한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해 볼 수 있는데, 최근 성행하고 있는 사경제 활성화와 이에 따라 배금주의, 현금 만능주의 등이 부정부패의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사실상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이며, 반대로 돈만 있으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회이다. 이러한 상황이 고위 간부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토대를 마련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 사회주의의 통제와 폐쇄성, 집단주의 그리고 잔존해 있는 가부장적 문화적 특성들이 융합하여 관료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채원호·손호중·김옥일, 2006: 308).

물론 북한 내부에서도 관료들의 부정부패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비사회주의적 현상과의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경계해야 하는 현상으로 '국가와 사회의 재산을 류용하거나 탐오랑비하는 것, 뢰물행위와 상적 행위를 비롯한 그 외의 여러 부정부패 행위' 등을 지적하고 있다(현웅삼, 2005: 18). 그러나 현재와 같은 현상이 만연해진 이상 관료의 부정부패를 줄이거나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시장화는 관료의 권한을 상승시킴으로써 부정부패를 만연하게 만드는 조건을 제공하며, 다시 관료는 이러한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확대하는 데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박형중·전현준·박영자·윤철기, 2012: 134).

제2절 통일 이후 북한지역 행정체제의 구축

이 절은 한반도통일이 동서독통일과 같은 형태, 즉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될 경우를 가정하여 통일 이후 북한지역 행정체제 구축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통일 국가는 자유 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라는 점을 가정한다.

1. 북한지역 행정체제 구축의 원칙

1) 대한민국의 행정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행정체제 구축

현재 남북한의 행정체제는 상호 이질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자유 민주주의적 행정체제로서 헌법에 권력분립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실제 법에 의한 행정, 국민을 위한 행정,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중국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당(조선로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이다. 그러나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다르게 '수령', 즉 김일성 일가의 세습통치와 더불어 이들을 신격화하는 '유일적 영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지금은 남북한이 서로 다른 행정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통일이 되면 북한지역의 행정체제를 재구축하여 하나의 행정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런데 남북한통일 이후 북한지역 행정체제의 구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은 한반도에서 자유 민주국가,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통일 이후 북한지역 행정체제 구축은 남한 출신 주민들은 물론 북한 출신 주민들이 민주주의 국가의 공통된 기본원리인 민주 복지국가 이념하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현재 남한의 행정체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이를 북한지역으로 확대·적용하는 것이다. 즉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서 남한과는 전혀 다른 제3의 행정체제가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한국의 행정체제가 북한지역에 확대·적용되는 것이다. 통일 이후 북한의 기존 행정체제는 원칙적으로 모두 폐지되어야 하지만, 필요할 경우 북한의 일부 제도 및 기관들은 과도기적으로 존치·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개혁을 동반한 행정체제 구축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일 이후 북한지역 행정체제 구축에 있어서 현실적 방안은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체제가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통일한국의 국가 체제는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지역 행정체제를 남한을 모델로 하여 변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행정제도와 운영방법이 아무런 제한과 변화 없이 북한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행정체제가 많은 장점을 지닌다 하더라도 통일을 계기로 개혁을 추진하여 보다 발전된 체제로 재구축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행정체제의 재구축은 남한 행정체제의 이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 행정체제 재구축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변화이며, 좀 더 발전된 행정체제로의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통일 이후 많은 행정조직이 신설되어야 하며 또한 일부 조직의 경우 해체되기도 할 것이다. 또한 통일과 함께 많은 행정기관이 북한지역으로 지리적 이동을 할 것이다. 즉 통일 이후는 한반도 행정의 대변화의 시기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시기를 이용하여 통일 이후 좀 더 효율적이며 민주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통일을 계기로 북한지역에서는 물론 남한지역에서도 지금의 한국 행정체제보다 더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행정체제, 더 깨끗하고 국민에게 더욱 봉사하는 행정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3) 국민화합과 통합을 지향하는 행정체제 구축

통일이 실현된 이후 국민적 갈등과 대립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통일 이후 여러 행정수요의 대응 과정에서 국민들 간 찬반이 갈리는 사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예로 북한 출신 주민들은 남한지역 주민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통일 후 여러 혜택 및 복지를 기대했으나 이를 원하는 만큼 제공받지 못한다면, 그로 인해 생겨난 불만을 통일정부와 남한 주민들에게 표출하면서 체제통합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남한지역 주민들 역시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북한 출신 주민들에 대한 복지혜택, 지원규모 등이 과도하다고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통일 이후 기대했던 이익들이 자신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경우 북한 출신 주민들을 비난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남북한 주민들 간 갈등이 심각하게 제기될 경우 진정한 통일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 정부가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국민화합과 통합의 추진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남한지역 출신자에 의한 정치·경제·사회적 독점을 피하고, 북한 출신 주민들에게도 새로운 체제에서 희망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남한 출신 주민들에게도 북한 출신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통일의 과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외 정부는 통일 이후 나타날 국민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일에 대한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상세히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구해야 한다. 특히 북한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 등으로 인해 대규모 재정지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지원 규모와 지원 방법 등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2. 북한지역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

북한지역 행정체제 구축을 위해 추진하여야 할 과제를 통일 즉시 추진하여야 할 과제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로 구분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1) 통일 즉시 추진하여야 할 과제

(1) 북한 당 기관 및 국가기관의 인수 및 처리

통일 이후 북한지역 행정체제의 구축에 있어 최우선 과제는 북한지역에서 조선로동당 지배구조를 종식시키는 일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은 어느 사회주의 국가보다도 국가기관에 대한 당의 지배가 강한 체제이다. 따라서 통일 후 새로운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선노동당 중앙당 및 지방당 조직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단체, 공장, 기업소 등에 있는 당 조직을 해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무위원회와 산하 조직인 인민무력성,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등의 기관들과 기타 내각과 내각 산하의 성 등 중요한 국가기관들도 해체되어야 한다. 이밖에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 등 국가기관의 해체도 불가피하다. 다만 통일 이후의 긴급한 행정수요의 충족 등을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부 행정조직 및 지방행정조직의 경우 당분간 존치시킬 필요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 순수 문화예술 관련 기관, 금융기관, 보건기관 등과 같은 이념성이 약하고 주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기관의 경우 존속시키고, 이밖에 학술·체육단체의 경우도 무조건 해체하기보다는 일단 존속시킨 후 북한 체제하에서 수행했던 기능, 향후 존재 필요성 등을 꼼꼼히 따져 그 존폐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존속 결정이 내려진 기관에 대해서는 일부 기능의 변화 및 조직 재설계가 필요하며, 소속 인력의 재배치 조치도 따라야 한다.

북한 기관·단체의 존폐 여부에 대한 결정은 통일한국의 체제통합과 관련된 문제이지만, 한편으로는 행정수요 충족과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통일한국의 정체성과 체제통합을 강조한 나머지 북한의 기관·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해체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모든 기관을 존속시킬 수도 없다. 북한 기관·단체의 존폐 여부의 결정은 각 기관의 성격과 특징, 통일한국에서의 필요성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기관 존폐는 단순히 기관의 존폐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고용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기관이 해체되면 그 기관에서 근무하는 인력도 대부분 해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2) 통일한국 중앙행정체제 구축: 통일한국의 정부조직 개편

통일 이후 중앙행정체제 구축은 북한지역 행정체제 구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통일 후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수요 이외에 남북통합에 따른 과제 및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이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중앙행정체제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통일한국 정부조직 개편의 방향과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통일 이후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며 국무총리제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한다.

가) 청와대 조직의 개편

통일한국에서도 대통령제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통일한국 대통령의 위상과 역할은 현재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통일한국의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기본적으로 현행 헌법 및 정부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다만 통일 이후에는 청와대에 기존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이외 '(가칭)국가통합실'을 설치하여 남북한 체제통합, 국민통합, 북한지역 재건 등 통일 이후 발생되는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통일 이후에는 '국가안보'에 대한 개념 및 정책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국가안보실'을 신설되는 (가칭)국가통합실과 통합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나)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 설치

정부는 위원회 형태의 행정기관을 둘 수 있는데, 위원회는 그 성격에 따라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로 구분된다. 행정위원회는 일반 행정기관과 같이 법률(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반면 자문위원회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설치할 수 있다. 현재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다. 통일 후 이들 위원회 역시 상황 변화에 따라 변화될 수 있겠지만, 일단 기존 상태의 유지를 가정하고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기관은 (가칭)진실과화해위원회와 (가칭)중앙인사위원회이다.

○ (가칭)진실과화해위원회

통일 이후 통일한국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분단 시기 북한정권에 의해 행해졌던 범죄, 특히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유린 관련 범죄를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색출하여 단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범죄의 규명과 책임자 색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정권에 의해 행해진 범죄가 관련 자료들의 부족 등으로 규명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범죄의 책임자들도 여러 방법을 통해 자신의 과거 경력을 은폐할 가능성이 있다. 독일의 경우 구동독 정권책임자 또는 국가안전보위부 직원 등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한 범죄자들이 통일 이후 그들의 과거 신분을 은폐했던 사례가 있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도 이러한 경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 정권에 의해 행해진 중대 범죄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관련자를 색출·처벌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가 적합할 것이며 그 명칭도 진실 규명을 통해 민족화해와 화합을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가칭)진실과화해위원회'가 적당할 것이다. 이밖에 '과거청산추진위원회', '과거사규명위원회' 등도 생각할 수 있다.

(가칭)진실과화해위원회는 특별법에 의한 행정위원회로서 위원장은 장관급이며 1명의 부위원장과 다수의 위원을 둔다.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업무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법률상 독립기관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가칭)진실과화해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진실 규명과 관련자 색출이 명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양현모, 1997: 123). 범죄 행위의 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단죄도 중요하나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가칭)중앙인사위원회

통일 이후 북한으로부터 인수된 관료들을 검증하여 재임용과 복직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가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다. 인사와 관련된 업무는 현재의 인사혁신처 소관이나, 업무의 범위와 독립성 등을 고려할 때 인사혁신처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북한으로부터 인수된 관료의 검증 및 재임용과 복직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는 대통령 소속의 새로운 조직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다.

통일 이후 대통령 소속의 (가칭)중앙인사위원회는 기존에 인사혁신처가 담당하는 업무 이외에 북한 출신 관료의 검증과 재임용, 북한지역 관료제 구축 등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인사기구인 중앙인사위원회는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설치된 바 있었기 때문에 그 운영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대통령 산하 자문위원회 설치

현재 대통령 산하의 자문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등 다수가 있다. 통일 이후 행정수요를 고려할 때 대통령 산하 자문위원회로서 다음과 같은 정부조직의 설치를 예상할 수 있다.

○ (가칭)한반도통합추진위원회

(가칭)한반도통합추진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체제통합 관련 정책행위자들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 체제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 조직은 단순히 자문기관 또는 관련 기관 간의 조정을 위한 기능만이 아닌 통일 이후 체제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 사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마련 등의 기능 또한 수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는 국가의 중요한 문제 및 정책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 통일 이후 (가칭)한반도통합추진위원회가 설치되면 관련 정책행위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다.

특히 (가칭)한반도통합추진위원회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통일 이후 제기되는 여러 유형의 사회갈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국민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다. 통일 후 통일비용의 부담, 북한지역 주민들의 복지 제공 등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인해 사회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 및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자문위원회인 장관급 '(가칭)한반도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화합과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가칭)국가도약발전위원회

통일한국은 동북아에서 새로운 국가의 탄생과 출발을 의미하기도 한다. 통일한국은 기존 대한민국의 위상을 넘어 세계 일류(一流)의 복지 민주국가로서 동북아지역의 평화에 이바지하며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문화국가로 재

도약하여야 한다. 그러나 통일 초기에는 여러 문제들로 인한 난관 또한 있을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심각한 혼란이 예상되며 국제사회, 특히 일본,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의 견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을 상정하였을 때, 통일 이후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가칭)국가도약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도약발전위원회'는 범국가적 기구로서 통일한국의 상황과 환경을 진단하고 국가 위상을 재정립하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또한 국가발전에 필요한 어젠다(Agenda)를 설정하고 이의 실행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분단 시기와는 다른 통일국가로서의 발전전략과 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과 국민에게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조직의 명칭은 '(가칭)국가도약발전위원회' 이외에 '(가칭)대한민국도약위원회' 등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라) 국무총리 산하 행정기관 설치

○ (가칭)국가홍보처

우리나라 역대 대한민국 정부 조직에는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 국정을 홍보하는 정부조직이 설치된 적이 없었다. 관련 정부조직이 국내 정치에 악용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 이후에는 통일국가의 위상을 외국에 홍보하고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통일 이후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설치되는 '(가칭)국가홍보처'는 국가 상황과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 국가발전 어젠다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국내 홍보보다는 주로 국제 홍보에 치중하여 국내 주재 외교관과 외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홍보, 정책홍보 등이 주요 업무이다.

○ (가칭)정부개혁위원회

(가칭)정부개혁위원회는 통일한국의 행정통합 방안, 행정체제 구축 방안

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관으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행정안전부 장관, 인사혁신처 처장 등 관계 부처 기관장과 약간 명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국무총리와 더불어 민간 전문가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도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통일한국의 정부조직 형태를 결정하고 북한지역 행정체제 구축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이 위원회에서는 통일한국 행정체제 구축 이후의 개혁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그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

마) 행정 각부의 변화

통일 이후 특정 행정 부처의 신설 및 해체 그리고 수행 기능의 통폐합을 통한 명칭 변경 등은 통일 이후 정치적·행정적 상황, 정부의 국정목표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정확하게 그 변화를 예측하거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다만 '통일부'의 경우 분단의 산물이며 통일문제와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도 존폐 문제를 논의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 다른 조직의 경우 행정수요의 발생 유무를 따져 그 설치 여부를 예상해 보기로 한다.

○ 통일부의 존폐 결정

우리나라 행정 각부의 하나인 '통일부'는 한반도 분단의 산물이다. 통일부는 1969년 3월 1일 '국토통일원'이란 명칭으로 창설되어 그동안 명칭이 '통일원' 등으로 변경되기도 했으나, 지금까지 통일과 대북정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해 왔다. 통일부 창설의 궁극적 목적은 한반도통일의 실현이다. 따라서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부처의 설치 목적이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가 해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통일 이후 통일부 조직의 존폐를 결정하는 데 있어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통일 이후의 통일부 담당 행정수요의 여부 및 경중이다. 즉 통일 이

후에도 통일부가 존치하여야 할 만큼 관련 업무가 존재하는가, 존재하면 어느 정도 존재하는가의 문제이다. 만약 중요한 행정수요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담당 부처가 존치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통일 직후 정책적인 분석이 결여된 통일부의 무조건적인 해체는 올바른 방안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통일 이후에도 통합을 완성하여야 할 다양한 행정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사례를 보더라도 통일 이후에도 지역의 재건, 체제통합 등 통일과 관련된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독일도 통일 후 아무런 대안 없이 연방내독성을 해체하였으나, 이후에 이 조치가 올바른 판단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양현모, 2017: 79~84).

한반도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재건, 체제통합 등 통일의 완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조직을 설치하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다. 기존의 통일부를 조직과 명칭 그대로 존치시키는 방안이 있을 것이며, 조직은 존치시키되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또한 통일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며, 통일부를 해체하면서 다른 부처(예를 들어 행정안전부)에게 통일의 완성과 관련된 업무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류지성·정재황·양현모·박종철·이철수, 2017: 102).

이러한 여러 방안 중 통일 이후의 환경과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볼 때 통일부의 명칭을 '(가칭)통합부'로 변경하고 체제통합 등 통일의 완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분단시기 대북정책과 통일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통일부로 하여금 그 전문성을 활용하여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안정과 재건 그리고 체제통합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안이다(류지성·정재황·양현모·박종철·이철수, 2017: 102)~103). 다만 이는 일시적인 조치이며 통일한국의 체제가 안정될 경우 결국 (가칭)통합부도 해체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 (가칭)신탁청 설치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사유재산제도를 확립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구축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로서,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국유기업들을 민영화하고, 사유재산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인 (가칭)신탁청의 신설과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도 통일 후 구동독 지역의 경제 체제 전환을 위해 1990년 신탁청(Treuhandanstalt)을 설치하여 1994년까지 운영한 바 있다.

○ (가칭)DMZ 행정청 설치

한반도 비무장지대(DMZ)는 환경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지역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수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통일 이후에는 비무장지대의 지뢰제거와 환경의 보존, 이용에 관한 사항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통일 이후 비무장지대의 환경실태 조사, 매설된 지뢰 탐색 및 제거, 비무장지대 활용 방법 마련 등은 중요한 행정수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행정기관의 설치도 필요할 것이다. 국토교통부 또는 환경부 소속 독립청의 형태로 설치되는 '(가칭)DMZ 행정청'은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국방부 등의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게 된다(류지성·정재황·양현모·박종철·이철수, 2017: 109).

바) 행정 부처 소속 기관 설치

통일 이후 각 부처에 소속되어 독자적 업무를 처리하는 조직에 대해 알아본다.

○ (가칭)민주시민교육단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그동안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아온 주민들에게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적응해서 살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

고 이해시키는 것은 정부가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통일 이후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사회갈등에 적응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설치·운영되는 교육부 산하 (가칭)민주시민교육단은 통일 후 북한 주민이 새로운 체제에서 무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또한 (가칭)민주시민교육단은 통일 후 북한 지역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사회적 갈등, 체제 부적응 문제, 열등감의 심리를 치유하고 그들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업무도 수행하는 기관이다.

○ (가칭)행정조직정비단

행정안전부 소속 '(가칭)행정조직정비단'은 북한 당 기관, 국가기관 및 각종 사회단체의 해체 및 재구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설치되는 기관이다. (가칭)행정조직정비단은 북한의 당, 국무위원회, 내각 등 국가기관은 물론 지방행정조직과 각종 사회단체의 해체와 그 후속 조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것이다. 이밖에 새로운 행정조직의 신설에 관한 문제도 (가칭)행정조직정비단이 담당할 것이다. (가칭)정부개혁위원회 활동도 지원한다.

○ (가칭)행정인력지원단

'(가칭)행정인력지원단'은 남한지역 공무원의 북한지역 파견·전출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 행정체제 구축과정에서 많은 남한 출신 공무원을 필요로 할 것이며, 따라서 공무원들이 북한지역으로 전출 또는 파견되어 근무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언급한 (가칭)중앙인사위원회 또는 인사혁신처에 설치되는 이 조직은 여러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을 모집하여 북한지역에 파견·전출시키는 업무를 담당한다. 나아가 이들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후생 등에 관한 업무도 수행한다.

○ (가칭)북부특별경찰청

통일 후 북한지역에서 수행되어야 할 임무 중 기본적이며 우선적인 임무는 치안유지 및 안전 체계의 구축과 치안 및 경찰 관련 체제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지역의 사회혼란과 무질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통일한국의 발전을 장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통일 자체도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청장 직속으로 '(가칭)북부특별경찰청'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가칭)북부특별경찰청은 치안 및 범죄예방 활동과 함께 북한의 인민보안성 등 치안 및 경찰조직을 인수하여 전면 개편하는 업무도 수행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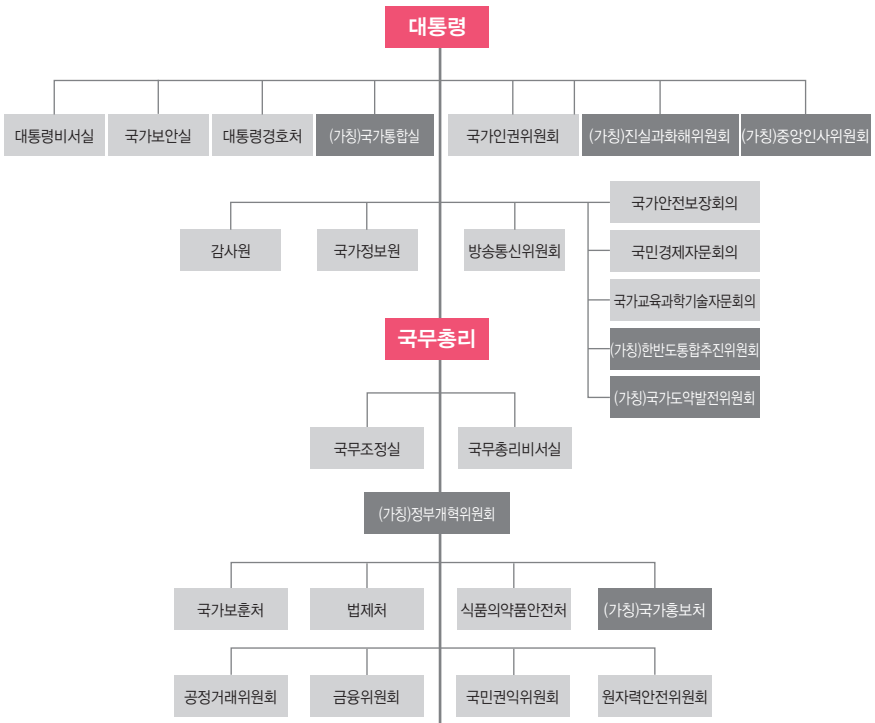
○ (가칭)군통합단

군통합(military integration)이란 분단국가의 군대가 통일 후 동일의 조직 및 운영 체제로 개편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동서독통일 이후 동서독 군(軍)이 하나의 체제로 개편된 것이 대표적 군통합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한반도의 경우 군통합이란 북한 인민군 부대와 무기 체제를 해체하고 통일한국의 군 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통일 이후 설치되는 국방부 소속 '(가칭)군통합단'은 북한인민군 부대와 무기 체제 해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사) 기타 부처 소속기관 설치

앞에서 언급한 기관 이외에 통일 후 문화재청에 '(가칭)문화재조사단', 농축산식품부에 '(가칭)식량지원단' 등의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통일 후 북한지역 환경 상태를 조사하고 개선시키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에 '(가칭)환경개선단'의 설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018년 7월 현재 문재인 정부 정부조직을 토대로 통일 이후 신설될 행정기관을 포함하는 정부조직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5〉 통일한국 정부조직도



기획재정부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가칭)신탁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외교부	
(가칭)통합부			법무부	경찰청
국방부	병무청/방위사업체		행정안전부	경찰청/소방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보건복지부	
환경부	기상청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가칭)DMZ행정청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필자 작성.

(3)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예를 들어 세무행정을 위한 세무서, 병무행정을 위한 병무청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통일 이후에는 그동안 북한에서는 없었던 행정수요의 발생으로 북한지역에 이러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구동독에서는 세무행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기관이 설치되지 않았으나, 통일 이후 행정수요의 발생에 따라 신연방주에 설치된 바 있다. 이밖에 신탁청, 병무청, 기상청, 산림청, 소방청 등 언급한 중앙행정기관들도 북한지역에 관련 지청(支廳)을 등을 설치해 행정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겠다.

(4) 지방행정체제의 구축

본 연구에서 언급한 방안에 따라 통일이 될 경우 현재의 북한지역은 통일한국의 '지방'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한국 지방행정체제 구축이란 결국 통일 이후 현재의 북한지역 행정체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축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 행정체제 구축 방안의 하나로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이 지역을 '(가칭)특별행정구'로 지정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 안정을 추진하는 한편 재건 및 체제전환 정책을 수행하는 방안이 있다. 이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가칭)특별행정원'을 설치하여야 하며, 북한지역에 대한 지방자치제 실시를 일정 기간 동안 유보하여야 한다. 두 번째 방안은 북한지역에 대해 (가칭)특별행정구로 설정하지는 않지만, 완전한 지방자치제를 유보하고 대신 대통령이 지방행정 책임자를 임명하여 지방의 행정관리와 안정화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1995년 이전 남한에서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의 체제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 방안은, 통일 즉시 북한지역에서 한반도 남한지역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현재의 남북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들 방안들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방안은 통일 이후 즉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며, 세 번째 사항인 지방자치제의 실현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다.

가) 제1안: '(가칭)특별행정원'의 설치 및 운영 검토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방안은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통일 당시의 한반도의 어려운 상황, 특히 북한지역의 불안정한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 중 하나가 바로 북한지역을 (가칭)특별행정구로 지정하는 방안이다. 특히 이 안은 남북한통일이 급격하게 실현될 때 그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 중 하나이다. (가칭)특별행정원은 (가칭)특별행정구의 행정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의 정부조직으로서, 북한지역의 안정화를 추진하면서 재건 및 체제전환 업무를 담당한다. 즉 (가칭)특별행정구의 정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가칭)특별행정원을 통한 (가칭)특별행정구의 행정관리 방안은 다른 방안보다 지역 내 안정을 확보하면서 통일국가의 행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남북통일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통일을 맞이했을 경우 북한지역의 안정과 체제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장점이 있다(양현모, 2016: 156). 통일 이후에는 북한 주민들의 대규모 탈북이 예상되며, 이런 상황에서 탈북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이런 의미에서도 (가칭)특별행정원의 설치는 그 실효성이 높다 하겠다.

(가칭)특별행정원은 특별행정구가 존립할 때까지만 설치되는 일시적인 정부조직인데, 그 존속 기간은 북한지역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에 달려 있다. 즉 북한지역의 상태 호전도, 남북한 정치, 경제, 사회적 격차 해소도에 따라 그 존속 기간이 결정될 것이다.

이 방안은 여러 장점 및 설치의 불가피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지역 주민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이 방안은 북한 주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잠시 박탈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이 방안이 실행되면 통일 전 북한 독재 체제에서 인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고 통일 후 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 살아갈 (가칭)특별행정구 주민들이 또 다른 형

태의 '식민지'하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양현모, 1997: 116). 특히 이 방안은 통일의 정신과 그 의의에 위반된다는 점에서 채택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이 방안을 채택할 경우에는 통일 전부터 남북한 정부 간 충분한 협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북한 주민의 동의도 얻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가칭)특별행정원 운영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불만과 요구 사항 등을 특별히 수렴하여야 할 것이다.

나) 지방행정 책임자 임명제를 통한 지방행정체제 구축

그렇다면 통일 후 (가칭)특별행정원을 설치하지 않고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북한지역에 정상적인 행정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할 필요도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지방행정기관인 '도청', '시청', '군청'을 설치하고 각급 행정기관 책임자를 임명하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경우 선출직 의원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일정 부분 불완전한 절반의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우리나라도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 당시 지방자치제 실시가 요구되었지만 여러 여건이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절충안으로 시행했던 제도이며, 또한 1995년 완전한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 과도기적으로 시행했던 제도이기도 하다(양현모, 2014: 279).

(5) 북한 출신 관료의 인수 및 감축

통일이 되면 북한 출신 관료들에 대한 해임 및 재임용권은 통일정부가 행사하게 되며, 이들 인력에 대한 해임 등 일련의 조치는 불가피하다. 북한 관료들의 임용 절차, 자질, 교육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통일 이후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새로운 체제구축과 통합의 완성을 위해서도 이들 인력에 대한 정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출신이라고 해서 모든 관료들을 통일 즉시 해임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아무리 이들이 기본적으로 자유 민주주의 행정을 담당하기에

는 부적절하더라도 북한지역의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북한의 사정에 밝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통일 후 북한 출신 관료를 모두 해임한다면 이들의 반발로 인해 사회갈등과 혼란이 야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 북한 출신 모든 관료들을 해임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질이 부족하거나 근무할 기관이 없는 일부 인력들만을 해임시켜야 할 것이다. 즉 북한 출신 관료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통일한국의 관료로서 근무할 수 없는 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자들은 해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 체제에서 인권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들도 색출해서 해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면 북한 체제에서 주민들의 인권탄압 등 범죄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단죄는 필요할 것이다. 과거청산의 방법과 그 강도 등은 통일 당시 상황과 통일국가의 정책기조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인수된 관료의 전력을 조사하여 심각한 범죄 행위를 한 관료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양현모, 2015: 267).

종합하면 통일 후에는 북한 출신 관료들의 고용관계를 재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즉 인수된 북한 관료들을 대상으로 여러 단계의 심사와 검증을 실시하여 자질과 경력 면에서 통일한국의 관료로서 근무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해 해임하는 조치를 내려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독일의 사례를 참조하여 북한 관료 해임 요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통일한국의 관료로 근무하기에는 자질과 능력이 크게 부족한 자
- 북한 재직 시 부정부패 행위를 한 자
- 북한 재직 시 주민탄압 및 인권유린에 관여한 자

그러나 북한 출신 관료에 대한 해임 조치는 엄격한 심사와 검증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며 일시에 많은 인력에 대한 해임은 피해야 한다. 북한 출신

관료들에 대한 검증의 방법과 절차 등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해임 여부는 당사자는 물론 가족의 생계 그리고 국민통합의 성패가 달린 사항인 만큼 심사권자의 임의적인 판단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개인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상황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검증과정이 끝난 후 재임용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정부조직인 '(가칭)중앙인사위원회'에서 하여야 한다. (가칭)중앙인사위원회 최종 결정이 있은 후 당사자는 (가칭)중앙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그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까지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북한 출신 관료에 대한 해임도 중요하지만 해임당한 자들에 대한 조치도 중요하다. 해임된 관료 중에서 범죄 행위로 인해 해임당한 경우가 아닐 경우 직업교육을 통해 재취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실업수당도 지급하여야 한다.

(6) 북한지역에 대한 행정지원 인력의 투입

한반도통일 후 북한지역의 재건과 체제통합을 위해서는 많은 유능한 인력이 필요하며, 특히 정부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인력은 북한 내부, 즉 북한 출신 인력만으로 충당될 수 없으며, 남한의 많은 인력들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에는 북한지역의 재건과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남한의 많은 행정 인력이 북한지역으로 투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행정지원 인력'이란 통일 후 북한지역에서 근무하기 위해 남한에서 파견·전출되는 공공 인력을 의미하는데, '통일행정 인력'이라고 칭할 수도 있다. 이들 인력들은 일정 기간 동안 북한지역의 행정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는데,[24] 인력의 적정 규모는 통일 당시의 남북한 상황, 특히 북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열악한 상황 및 여러 행정수요를 생각해 볼 때 적지

[24] 사법·입법부에 근무할 인력은 사법부와 입법부에서 각각 선발하여 투입하며, 군 병력 역시 국방부가 중심이 되어 투입한다.

않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공무원 이외의 공공 인력(준 정부기구 인력 등)을 포함하면 그 인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한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 등에서 선발되어 투입된 요원들은 북한지역에서 지역 재건 및 체제전환 등 다양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행정지원 인력'은 통일한국의 안정화와 후유증 극복은 물론 내부통합을 완성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정지원 인력의 성공적인 역할 수행은 정부의 세밀한 사전 준비와 함께 파견·전출되는 행정 인력들이 투철한 민족적 사명감과 함께 자신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였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반대로 정부의 준비과정 없이 투입되거나 이들이 투입되어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 통일 후 국민통합을 지연시키고 통일한국의 재건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 통일 이후 행정 인력의 파견 및 전출에 앞서 그 후유증과 문제점을 예상하여야 하며 그 대비책도 강구하여야 한다.

우선 북한지역으로 파견·전출되는 행정 인력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다. 특히 이들은 생소한 지역에서 남한과는 다른 제도와 문화하에서 근무하여야 하고 또한 일정한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느끼는 이질감과 압박감은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클 것이다.

독일도 통일 직후 구동독지역으로 파견·전출된 구서독 관료들 가운데 변화한 환경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북한지역으로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지시키는 것은 물론, 환경 적응을 위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밖에 행정지원 인력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신변보호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여야 한다. 북한에 파견·전출되는 인력들은 북한지역에서 근무하는 동안 여러 이유로 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파견, 전출되는 남한 출신 행정지원 인력이 겪게 될

가장 큰 문제는 북한 관료 혹은 북한 주민과의 갈등 문제일 것이다. 70년 이상의 남북 분단으로 인한 문화적 차이는 물론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북한 출신 관료 또는 주민과의 갈등은 이들이 겪어야 할 필연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갈등관리와 예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여야 한다.

통일 후 북한지역의 열악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전출·파견되는 인력들에 대한 유인책 또한 필요하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자원(自願)해서 파견·전출을 희망하는 인력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인력 확보를 위한 유인책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파견·전출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지원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여야 한다. 북한지역에 투입되는 인력들에 대해 과도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경우 관료들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게 되며, 인센티브를 바라고 북한지역으로 투입되기를 희망하는 인력이 많아지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한 인력의 파견·전출과 관련해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는 통일 전 남한의 인력을 파견·전출하는 것에 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통일 당시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통일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북한 정부가 선도적으로 남한 정부에게 인력의 파견·전출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통일 전 남북 공공 인력의 교류 및 교차 근무는 여러 장점도 있지만 일부 예민한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결정하여야 한다.

(7) 남북한 지방 간 자매결연 및 지원

통일 후 북한지역에 행정체제가 일단 구축되더라도 자유주의 행정체제로서 완벽하게 작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물론 남한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NGO 등은 북한지역에 위치한 행정기관을 여러 형태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통일 후 북한지역 지방행정체제를 조속히 구축하기 위해서 남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재정지원, 인력지원, 행정노하우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 후 구동독 지방행정체제의 구축과정에서 서독에 있는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구동독 지방자치단체들과 자매결연을 하고 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독일의 경우, 자매결연 파트너의 선택에 있어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연방정부의 간섭 없이 정치적, 역사적,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매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선택하였다.

우리의 경우도 남북이 지방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하고 이들 자매결연을 매개체로 하여 교류를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독일과 같이 파트너 지역을 지역 자체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경우 북한은 지방자치의 경험이 전혀 없고 남한도 지방자치의 경험이 짧기 때문에 자매결연에 있어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총괄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가 남북한 지방 간 자매결연을 연결해 줄 경우 남북지역의 역사성, 지리적 입지 조건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중장기 추진과제

(1) 북한지역 지방자치제 실시

한반도통일 이후 북한지역 행정체제 구축에 있어 일차적으로 등장하는 주제는 바로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이다. 즉 통일 직후 북한지역에도 남한지역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 기간 지방자치제를 유예하여 어느 정도 그 가능성을 확인한 후에 실시할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통일 후 북한지역에도 즉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것은 한반도 전역에 동일한 행정체제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통일의 의의에 부합되는 것이다. 또한 북한지역의 민주화, 북한 주민의 정치의식 함양 등 통일한국의 정치·행정 발전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조치라고 판단된다. 통일 후 북한지역에도 지방자

치제가 도입·실시된다면 북한지역의 행정수요를 자체적으로 충족한다는 의미를 넘어 한반도통일이 완성된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행정수요의 충족과 행정통합을 넘어서 북한지역의 민주주의의 정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통일 후 북한지역에도 지방자치제가 도입되어 실시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과연 통일 즉시 북한지역에서 지방자치제를 성공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통일 후 북한지역에서 성공적인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를 뒷받침하는 환경 및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의 재정적 능력은 물론 주민들의 정치·행정적인 의식, 참여의식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2) 지방행정구역 개편

현재 북한의 행정구역은 1특별시, 2직할시, 9도[25]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통일 이후에는 북한의 9개 도의 유지 또는 전환의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북한지역에 있는 9개 도의 전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분단 이전 형태, 즉 황해도,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의 5개 도(道)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원래의 행정구역으로 개편함으로써 그동안의 분단을 청산한다는 의미가 강하게 나타난 방안으로서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 후 이 방법을 택했다. 독일의 경우 통일 후 구동독에 존재하였던 15개 관구(Bezirk)를 폐지하고 5개의 주를 부활시키는 등 행정구역을 분단 이전의 상태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비록 5개 주의 경계는 1952년 이전에 존재했던 주 간의 경계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5개 주의 부활은 과거청산 측면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현재 북한의 지방행정구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으로, 북한의 9

[25] 북한의 광역행정구역은 평양특별시, 남포직할시, 개성직할시, 평안남도,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황해남도, 황해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강원도이다.

개 도를 비롯해 기타 행정구역을 그대로 인정하는 방안이다. 북한 체제가 비록 인위적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였지만 그동안 북한 주민들이 이 변경된 체제하에 적응하여 살아왔으며, 도는 물론 군·읍·리의 경계설정 사안은 주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도 변경하지 않는 방안이다.

셋째, 분단 이전의 5도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9도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도 아닌 제3의 방안을 택하는 방법이다. 통일 당시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쳐 현실성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다.

위의 3가지 방안 중 유력시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방안은 첫 번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도 단위 행정구역을 분단 이전의 평북, 평남, 함북, 함남, 황해도의 5개 도로 개편하는 방안이다.[26] 이 방안은 통일 정통성의 확립이나 한국행정의 전통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긍정적인 조치로 판단되나, 오랜 기간 동안 이 지역에서 살아왔던 주민의 반발을 초래하고 행정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행정구역 개편, 특히 이북 5도의 부활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조직과는 달리 행정구역 및 행정계층의 경우 주민의 경제·사회·문화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개편 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행정계층 통합, 행정 단위별 인구편차 축소 등도 역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3) 북한 출신 관료 공무원 재임용 및 충원

통일 후 북한 출신 관료들에 대한 개별심사가 마무리되면 여러 심사와 검증을 통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통일한국의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26] 현재 남한에 이북 5도 위원회가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 방안을 유력시 볼 수 있는 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현재 남한의 공무원법이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규정을 남한 출신 공직자와 동등하게 적용시켜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이란 국가행정의 담당자로서 국민들에게 공공행정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사람만이 임용되어야 한다는 점, 공무원은 한번 임용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 등을 염두에 둘 때 북한 출신 관료의 통일한국 공무원 재임용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양현모, 1998: 125).

우선 이들을 공무원으로 임용한다고 해도 일정 기간 동안 수습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수습 기간은 관료의 직급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약 2년 정도의 수습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 통일한국의 공무원으로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편 검증에 통과되었다고 해서 모두 통일한국의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공기업 등으로 임용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북한에서의 관료는 그 개념이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공공기관의 임직원, 기업소 직원 등도 모두 '행정 일꾼'으로서 관료의 개념에 포함되기 때문에 통일 이후 북한 출신 관료의 재임용에 있어 이런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인수된 공직자의 재임용과 더불어 시행되어야 할 것은 새로운 인력의 충원이다. 즉, 북한 출신 인력, 특히 젊은이를 대상으로 일정한 채용 절차를 마련하여 공직에 입문토록 하는 것이다. 북한지역의 안정과 체제통합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지역 주민에게 통일국가의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북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 인력의 충원은 빠른 세대교체를 가능하게 한다는 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양현모, 1998: 126).

제5장

결론

남북한통일 시나리오 및 통일국가의 모습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된 국가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복지국가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즉 통일이 중요하지만 무조건적인 통일이 아니라 남북한 국민 모두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통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무력을 동원하여 달성한 통일이라거나, 통일된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라면 이러한 통일은 무의미한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이 반드시 독일과 같은 과정과 방식으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을 것이며, 또한 그러한 방식이 올바른 방식인지도 확신하기 어렵다. 그러나 통일이 동서독 국민의 뜻에 따라 평화적으로 실현되었으며, 독일통일 이후 통일국가가 자유 민주주의와 복지를 지향하는 모범적인 선진국가로 발전하였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독일통일 과정에서 특히 주목할 사항은 동서독 국민들이 통일의 환상만을 가지고 통일과정을 방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동서독 국민들은 통일이 가시화되자 통일 이후의 행정체제 구축을 위해 준비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던 것이다. 특히 동독 국민들은 독일통일의 주역으로서 통일의 실현은 물론 통일 이후의 행정체제 구축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었다.

통일 전부터 동독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었던 연방주 구축에 관한 사항 역시 이러한 차원에서 진행되고 결정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동서독통일 이후 신연방주 구축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그 시사점을 참조하여 한반도통일 이후 북한지역 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신연방주 구축 사례의 경우 통일 이전 동독지역에서 있었던 연방제와 지방자치제 부활에 대한 논의 및 결정 과정을 분석하였다. 또한 독일통일 이후 신연방주에서의 헌법 제정과 과정, 각 주 헌법의 주요 내용, 연방행정기관의 신설, 행정수요로 인한 행정기관의 변화, 행정기관의 이전 등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한반도통일 이후 북한지역 행정체제 구축에 참조하였다.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한반도통일 이후 새로운 통일국가 체제 구축에 있어 가장 시급한 사항은 북한지역 행정체제 구축에 관한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구서독과 달리 연방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이 연방제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과 동시에 새롭게 연방제를 채택하여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북한의 경우 그동안 대남통일정책의 하나로 연방제를 주장하였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방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상 한반도 통일국가에서 연방제를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한반도통일 이후 북한지역 지방행정체제 구축에 있어 일차적으로 제기될 주제는 바로 지방자치제 실시에 관한 것이다. 북한지역에서의 지방자치제 실시 여부는 북한지역 정당의 활동, 선거제도 확립 등 정치과정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은 물론 행정조직의 설치와도 깊게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독일의 사례와 같이 한반도의 경우도 통일 직후 북한지역에도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북한지역의 민주화와 남북한 국민통합 그리고 북한 주민의 정치의식 향상 등 여러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일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

으로는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서도 남한과 같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살펴볼 때 통일과 동시에 북한지역에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실태가 일부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통일 직후 북한지역 지방자치제 실시 가능성은 낮다. 통일이 실현될 때까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여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지는 모르지만, 현재의 문제점과 그 낙후성을 생각할 때 통일 직후 북한지역 지방자치제 실시 가능성은 크지 않다.

따라서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행정개혁을 통해 남한 지방자치제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통일준비의 하나이다. 만약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통일이 될 때 북한지역의 지방자치 실시 시기가 지연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그 절충안의 하나로 정부가 지방의 행정책임자를 지명하되, 지방의회는 유지시키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완전한 지방자치제는 아니지만 절반의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통일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급격히 이루어졌을 경우 혹은 북한의 상황이 현재와 같이 매우 열악한 상황하에 통일이 실현될 경우 앞에서 언급한 지방자치제는 물론 절반의 지방자치제도 시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북한지역을 (가칭)특별행정구로 설정하는 동시에 특별행정기구(가칭 특별행정원)를 설치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다.

북한지역을 (가칭)특별행정구로 설정하고 여기에 (가칭)특별행정원을 설치할 경우 통일 후 북한지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대량 탈북자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은 북한지역을 따로 관리하여 주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방안이다. 특히 남북통일은 북한 주민의 인권회복과 행복 추구권의 부여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의가 있는데, 이 방안은 통일의 의의와 당위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통일 후 북한지역 행정체제 구축에 있어 염두에 두어야 할 두 번째 사항은 가급적 과도기 기간을 짧게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한반도에서 통일이 달성되더라도 북한지역에 통일정부가 주도하는 행정체제가 즉각적으로 구축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대신에 일정 기간 북한의 기존 행정체제가 존속되면서 소수의 관료들만 교체되는 과도기적 형태의 정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즉, 통일 이후에도 북한지역에는 통일 이전의 북한 지방행정체제가 일시적으로 지속되어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등 지방행정기관이 유지되며 기타 행정기관들도 대부분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다만 정치·행정 책임자들만 교체되지만 이들에는 구체제 인사들이 일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독일의 경우도 동서독통일 이후 신연방주가 설치되었으나, 주지사가 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동독 정치인들이 주전권자라는 직함으로 행정책임자로서의 임시 역할을 수행하였다. 행정의 연속성과 긴급한 행정수요의 충족이라는 점에서 볼 때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이들의 정통성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었고, 소양과 과거 전력 등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한편 이들 입장에서 보면 과도기 행정책임자로서 동기부여, 책임감, 사기 등도 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 과도기는 사실상 행정공백의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통일 이후 만약 과도기가 장시간 계속될 경우 통일 후 사회 안전체제의 구축, 민생 체제 구축 등 통일정부가 역동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개혁에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구체제의 인사 중 일부는 체제개혁에 반대하면서 지역과 주민 간 갈등을 유발시킬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남북한통일 시 가능하면 과도기 기간을 최대한 짧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지역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통일 후에는 북한지역의 행정구역 재설정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지방행정구역의 명칭과 지명의 개편에 대한 주장도 제기될 것이다. 행정구역 개편 및 통폐합, 지명의 변경 등에 대해 일부 사항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것들도 있을

것이다. 노동자구와 같이 임의적으로 형성된 행정구역, 지역 주민의 실제 생활영역과는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못하는 행정구역 등은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산주의 사상 고취와 김일성 가계의 우상화에 관련된 지명도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가운데 급격하게 추진되는 행정구역 개편은 해당 지역 마을에서 생활했던 북한 주민의 반대로 행정업무의 혼란 또는 마비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통일에 따른 즉각적인 행정구역 개편의 추진은 주민의 반발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행정업무의 혼란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북 5도의 부활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거쳐야 한다.

통일 이후 안정적인 북한지역 행정체제 구축을 위해 유념해야 할 나머지 요소는 행정체제 구축에 요구되는 중앙정부와 남한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대한 사항이다. 독일의 경우 통일과 신연방주 구축과정에서 연방정부는 물론 구서독 주정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과 협력이 있었다. 만약 이러한 협력과 지원이 없었다면 신연방주 구축과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실현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독일 사례를 비추어 볼 때 통일 이후 행정체제 구축에 있어 중앙정부와 남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필수적일 것이다.

참고 문헌

〈국내 문헌〉

경제법학연구소. (196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사회제도」. 동경: 일본평론사.

김경량. (1999). 「독일통일과 동서독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및 협력에 관한 조사연구」. 강원: 강원개발연구원.

김공열. (1993). 「북한관료제론」. 서울: 대영문화사.

김동건. (1995). '통일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고찰'. 행정논총. 33(2). 2133–2158.

김동성. (2011).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거버넌스 구축 방안」. 경기: 경기개발원구원.

김동성 외. (2017).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경기: 경기연구원.

김상미. (1993). '남북한 지방행정체제의 비교분석과 개편방안'. 「지방행정연구」. 8(1). 1017–1048.

김승태. (2006). '공무원 채용시험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현대사회와 행정」. 16(2). 133–181.

김영윤. (2004) '동서독지역 간 교류협력 사례: 도시 간 자매결연'. 2004년 통일문제연구협의회 정기총회 및 공동의장·운영위원 워크숍 자료집.

김영윤·양현모. (2009). 「독일, 통일에서 통합으로–문답으로 알아보는 독일통일」. 서울: 통일부.

김영희·김병욱. (2008). '사회적 신분에 따른 북한관료들의 사경제활동 연구: 관계자본의 축적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50(2). 223–266.

김일무. (1995). 「독일통일과 남북한통일」. 서울: 대왕사.

김학성·최진욱. (2001). 「남북한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남현욱. (1992). 「통일에 대비한 행정체제 구축방안–통일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새 정부조직의 형성을 중심으로 –」.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_____. (2000). '통일 전·후 행정수요의 예측과 새로운 행정조직의 형성: 독일경험의 벤치마킹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0년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447–457.

류지성·정재황·양현모·박종철·이철수. (2017). 「통일 이후 국가형태 및 정부조직에 관한 법제적 연구」.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민진·오희완·홍관희. (1996). 「통일 이후의 한국의 행정조직 및 지방행정체제의 설계」.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박상익. (2008a). '북한 관료문화의 형성과 그 특성'. 「통일문제연구」. 19(1). 303–352.

_____. (2008b). '북한 관료문화의 특성: '주체 관료문화'. 「북한학연구」. 4(1). 57–95.

_____. (2009). '선군시대의 관료문화'. 「북한연구학회」. 13(1). 1–33.

박성열. (2018). 남북한 지방행정체제의 현황과 비교, 그리고 통합방향 고찰. 「한국행정학회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집」. 21–46.

박응격. (1995).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정부 인력관리의 과제와 대책」.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박응격 외 공저. (2001). 「독일연방정부론」. 서울: 백산자료원.

박정진. (2011). '북한의 인사이동과 조직행동의 변화분석: 제3차 당대표자대회 전후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14(3). 81–141.

박해육. (2002). '통일 이후 구동독의 행정이행과 인력통합을 위한 인사정책: 남북한통일에 대한 인력통합의 모색'. 「한국행정연구」. 11(4). 176–207.
박형중·전현준·박영자·윤철기. (2012). 「북한 부패 실태와 반부패 전략: 국제협력의 모색」. 서울: 통일연구원.
성경륭·이선우·최진욱. (2000). 「북한의 관료제 및 인사제도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심익섭. (1992). '독일통일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역할: 동·서독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5(4). 263–287.
_____. (1994). 「독일통일과 행정통합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_____. (1996). '통일국가의 정부 체계 구축 방안'. 민주평통통일정책포럼 자료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_____. (1997). '통일한국에 대비한 행정체제 통합방안'. 「한독사회과학논총」. 7. 145–166.
안영진. (2012). '독일의 지방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고찰–구동독을 중심으로'. 「국토지리학회지」. 46(4). 445–456.
안지호. (2011). '독일 행정통합의 재고찰: 겔렌(Arnold Gehlen)의 제도론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9(4). 193–215.
양현모. (1997). 「통일독일의 경험이 남북한 체제통합에 주는 교훈–행정통합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_____. (1998). 「통일행정요원 양성 및 관리방안」.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_____. (2001).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교류협력사업 추진방안」.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_____. (2006). 「독일정부론」. 서울: 대영문화사.
_____. (2011). 「통일 대비 정부인력 양성방안」.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_____. (2014). 「통일한국의 정부조직 체계 구축방안」.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_____. (2014a). '독일 국정운영의 기본 이념: 분권과 합의정신'.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2집 1호. 111–137.
_____. (2015). 「통일 한국 관료시스템 구축 방안」.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_____. (2016). 「통일시대 각 부처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연구(1): 국무총리(실)의 역할과 임무」.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_____. (2017). 「통일시대 각 부처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연구(2): 통일부의 존폐 및 기능·조직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양현모·이준호. (2001). 「남북연합의 정부·행정체제 구축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양현모·최진욱·이준호. (2002).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행정통합의 과제」. 서울: 통일연구원.
이승종·김대욱. (2011). '남북한 지방행정체제의 통합방안'. 「행정논총」. 49(2). 267–294.
이용규·이성로. (2002). '관료와 규제개혁: 공익이론의 적용가능성'. 「행정논총」. 40(2). 111–133.
임도빈·안지호·현주. (2015). '북한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연구: 지방인민위원회와 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3(4). 133–157.
정재각·심익섭·이승철. (2013). 「독일의 행정과 공공정책」. 서울: 대영문화사.
정병일. (2007). '남북한 지방행정체제의 통합방안모색: 남북한 지방행정체제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10(1). 141–158.
주성하. (2010). 「주성하 기자의 북한 바로보기」. 서울: 경천.
채원호·손호중·김옥일. (2006). '북한 관료부패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 북한 이탈주민의

인지도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3(1). 297–321.
최무현·김영우·오성호. (2010). 「지방공무원 채용제도에 대한 현황과 개선방향: 지방공무원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한국조직학회 공동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최우용·박지현. (2015). '북한의 지방행정체제와 통일 후 지방자치제의 정착방안에 관한 시론'. 「동아법학」. 66호. 365–386.
최진욱. (1999). 「북한의 인사행정」.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_____. (2000). 「남북한 행정통합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_____. (2010). '북한의 인사행정제도: 원칙, 기준, 운영실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1–19.
태영호. (2018). 「3층 서기실의 암호」. 서울: 기파랑
통일부. (2013). 「독일통일 총서 2, 행정 분야 통합 관련 정책문서」.
_____. (2013a). 「독일통일 총서 3, 구동독지역 재건 특임관 분야 관련 정책문서」.
통일원. (1996). 「독일통일 6년, 동독재건 6년–분야별 통합성과와 향후과제」.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북한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한국수출입은행. (2009). 「독일통일 실태 보고서(Ⅰ, Ⅱ, Ⅲ). 독일 연방하원앙케이트위원회 보고서」.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한부영. (2000). '통일한국에서의 행정통합 방안'.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자료집」. 429–430.
한부영·김병국. (2009). 「통일 대비 남북한 지방행정인력 통합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상우. (2003). '통일독일의 행정체제 구축과정'. 「한국정책과학학회 동계학술대회 자료집」. 61–86.
홍승원. (2007). 「새로 편 북한체제론」. 서울: 한국학술정보(주).
행정안전부. (2012).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 서울: 행정안전부.
현성일. (2006). 「북한의 국가전략과 간부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자유아시아방송. (2014). 북, 과학기술자 채용 '충성심보다 실력'. 5월 27일.

〈외국 문헌〉

Bundesministerium den Innern. (1995a). Materialien zur Deutschen Einheit und zum Aufbau in den neuen Bundesländern.

Bundesministerium den Innern. (1995b). Anhang zu Materialien zur Deutschen Einheit und zum Aufbau in den neuen Bundesländern.

König, Klaus(1992). "Zur Transformation einer Realsozialistischen Verwaltung in eine Klassisch–europäische Verwaltung", in: Verwaltungsarchiv. pp.229–245.

König, Klaus / Meßmann, Volker. (1995). Organisation– und Personalprobleme der Ver–waltungstransformation in Deutschland, Baden–Baden.

Pitschas, Rainer. (1992). "Verwaltungsintegration in den neuen Bundesländern?", in: Neue Justiz, Heft 2. pp.42–56.

Seibel, Wolfgang/Benz, Arther/Mäding, Heirich. (Hrsg. 1993). Verwaltungsreform und Verwaltungspolitik im Prozeß der deutschen Einigungt. Baden-Baden.

김민 외. (1985).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9: 령도체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 편. (1992). 「조선말대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현웅삼. (2005).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주요기능'. 「정치법률연구」. 12(4).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기타 문헌〉

강성철·김판석·이종수·진재구·최근열. (2014). 「새인사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강은길. (2009). '공무원과 공무원제도'. 「정치법률연구」. 29.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김창문·양원규. (2005). '한국관료문화의 이론적 고찰'.「영남정치학회보」. 16. 55-75.

박천오. (201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미와 인식'.「행정논총」. 49(4). 25-50.

윤주명. (2001). '시민참여와 행정의 대응성: 인터넷 시민참여에 대한 도시정부의 반응을 중심으로'.「한국지방자치학회보」. 13(2). 143-163.

최순영·조임곤. (2014). '개방형 임용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평가'.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3(1). 1-30.

최진욱. (2002). 「현대북한행정론」. 경기: 인간사랑.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4). 「2014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2018). 「2018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2000).「CSC 정책연구보고서: 북한의 관료제 및 인사제도 연구」. 서울: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행정안전부. (2017). 「2017 행정자치 통계연보」.

_____. (2017).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독일통일 총서 30

연방주 구축 분야 관련 정책문서



정책문서를 통해 본 독일통일과 신연방주

이은정, 에버하드 홀트만
(독일 베를린 자유대)



들어가며

독일통일은 동독의 '주'들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기로 한 결정에 의해 형식적 절차가 결정되었다. 그것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통일 이전에 이미 동독에 '주' 단위의 행정 체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실제로 현재 구동독지역에 존재하는 다섯 개의 새로운 연방주는 1990년 초, 동독의 과도개혁 정부가 도입 결정을 내린 후에 구성된 것이다. 과도개혁 정부는 통일된 독일의 정치 체제가 연방제의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동독지역에도 그에 걸맞은 행정 단위를 만들어야만 한다고 보았다. 1990년 초 통일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독의 언론과 여론은 자연스럽게 행정 단위로서의 연방주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동독 행정제도의 개편이 이미 기정사실이 된 것이다. 그것은 나아가 당시 동독 주민들이 동독의 모든 제도를 거부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새로 구축된 5개 주의 명칭은 브란덴부르크, 튜링겐, 작센, 작센-안할트,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이었다. 통일 이후 신연방주로 불리는 5개의 연방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동독지역은 오랫동안 '편입지역/가입지역(Beitrittgebiet)'이라고 불렸다. 이러한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통일 초기 단계에, 개별 신연방주의 독자적인 성격, 즉 개별 지방별로 다르게 진행되었던 통일의 속도나 지역의 특성과 같은 부분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5개의 신연방주들은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원칙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칙하에서 완전히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인 생활환경을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았었다. 이러한 과제는 각 지역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완전히 새로운 역사적인 것이었다. 40

년 동안 정착된 삶의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쉬운 과제는 아니었다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구동독지역에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주체는 5개 신연방주의 주정부와 주의회였다. 지방선거를 통해 구성된 5개 주정부와 주의회들의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은 동일하지 않았다. 이들 5개 주들은 통일 이후 상이하게 발전했다. '독일통일 총서' 프로젝트의 틀에서 신연방주의 구축·발전을 이해하기 위해 5개의 상이한 발전 경로를 개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브란덴부르크주의 발전 경로를 비교적 자세히 조사하고, 이어 작센과 작센-안할트주를 중심으로 신연방주간의 발전 경로를 비교해 보는 방식을 선택했다.

독일통일 이후 체제전환 과정에서 브란덴부르크주의 발전은 다른 신연방주들과 분명히 차별되는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브란덴부르크주의 발전 경로를 '브란덴부르크의 길(Brandenburger Weg)'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브란덴부르크의 발전 경로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보다 통일 직후부터 브란덴부르크주의 주정부가 만프레드 슈톨페와 마티아스 플라첵 두 명의 주총리를 중심으로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합하는 합의지향적 화해정책 스타일 혹은 합의 민주주의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실현했었기 때문이다. 브란덴부르크주의 정치, 사회적 분위기는 다른 신연방주보다 더 조화롭고 합의적이었으며 타협과 협상을 용이하게 만드는 분위기였다. 이러한 정치적 실험은 브란덴부르크주의 초기 건설단계에서 있었던 주헌법의 도입을 둘러싼 논쟁, 의회에서의 논쟁, 연정 구성 시의 논의, 정부 및 행정 조직의 재편성 과정, 과거청산, 교육정책, 인사 정책 등에서뿐만 아니라 공고화와 안정적 단계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통일독일의 체제전환 과정이 갖고 있는 고유한 역동성을 잘 볼 수 있다.

작센주와 작센-안할트주를 비교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두 신연방주가 체제변혁의 과제를 서로 상이한 경로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작센이 구동독지

역의 긍정적 모델 지방으로 인식되는 반면, 작센-안할트에게는 오랫동안 구 동독지역의 5개 신연방주 중에서 가장 발전이 더딘 지역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두 신연방주의 비교에서 예시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발전과정에서 두 지역의 강점과 약점으로 인해 성공적으로 발전을 이룩한 분야와 낙후된 분야가 체제전환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일정하게 유지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통일 이후 체제전환 초기에 존재했던 지역의 차이가 변화하지 않은 채 계속 존재한다는 식의 '체제전환 과정의 철칙'과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작센주와 작센-안할트주의 발전 경로 비교를 위해 두 개 주의 발전 경로를 전체적으로 보여줄 수는 물론 없다. 이 장에서 우리는 먼저 주정부 정책의 핵심 분야에 집중했다. 특히 이 지역에서 민주적이고, 법치국가적이고, 연방주의적 성격을 가진 국가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지방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상, 법적 조건, 행정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두 지방의 공공재정의 특징과 단독정부나 다양한 연립정부의 형태로 구성되었던 정부의 특성과 효과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체제가 정착되면서 민영화된 경제, 노동, 고용 분야에서의 발전 경로를 조사했다. 예산정책, 지역 구조 발전정책, 노동 및 고용시장정책, 주택정책과 함께 유동적인 상황 전개 속에서 시장과 국가를 연결하고 통일과의 연관성하에서 밀도 있고 집중적으로 취해진 부문별 정책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1]

[1] 5개의 신연방주에서 통일 초기부터 2010년까지 20년 동안 작성된 정책문서의 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 각 연방주에서 만들어진 문서의 양은 연방정부가 작성한 문서의 양과 비교해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 권에 수록된 문서들은 주로 연방주의 핵심적인 정책과 프로그램들의 초안(Entwürfe)과 결정(Beschlüsse)에 대한 것들만 선별한 것이다. 다른 모든 종류의 문서(Dokumentensorten)들로 예를 들어, 정책조치(Maßnahmen)의 생성과 그것들의 연관성, 배경에 대해 잘 알려주는 제안, 단신, 논평, 서신 왕래, 초기구상이나 회의기록 형태의 문건들은 방대한 문서의 양 때문에 고려하지 못했다.

제1장

신연방주의 구축

제1절 행정 단위로서 '주'의 부활[2]

독일 행정구조의 기본원칙인 연방주의는 그 기원이 중세 신성로마제국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독일 역사의 산물이다. 1871년 비스마르크에 의해 최초로 독일통일이 이루어지고 독일제국이 건설된 후에도 연방주의의 전통은 이어졌다. 독일에서 최초의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던 바이마르공화국의 정치 체제 또한 연방제에 기초한 지방분권 체제를 유지하였다. 1933년에 들어선 나치 정권만 지방분권 체제를 폐지하고 중앙집권적 행정 체계를 구축했었다. 1949년에 건국된 서독의 공식 명칭이 독일연방공화국인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지역에서는 연방제가 다시 복원되었다. 반면에 동독지역에서는 연방제가 부활되지 않고, 중앙집권적 행정구조가 구축되었다.

4대 승전연합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을 분할 점령할 때 기존 행정지역의 경계에 따라 점령지역을 나누었다. 그 결과 메클렌부르크, 프로이센, 안할트, 튜링겐과 작센 등의 지역이 소련군의 점령하에 놓이게 되었다. 소련 점령군은 이 지역을 Land인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튜링겐, 작센-안할트

[2] 이 장은 '독일통일 총서 2권의 II, 제2장, 1절, 이질적 행정구역제도의 통일을 위한 준비'의 내용을 일부 인용한 것임.

그리고 Provinz인 브란덴부르크, 작센 등 5개의 행정 단위로 재구성하였다.[3] 란트(Land)와 프로빈즈(Provinz)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브란덴부르크와 작센 또한 1947년부터 Land의 지위를 받았다. 그리고 1944년에 막데부르크와 할레/메어제부르크 Pronvinz로 구분되었던 행정 단위가 1947년에 작센-안할트 Land로 통합되었다.[4] 그러나 소련군 점령지역에 존재하였던 Land의 행정 단위는 1949년에 동독 국가가 건립된 후에 1952년까지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존재하였다.

1952년 4월 11일에 동독의 사회주의통일당(사통당,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정치국은 기존의 란트(Land)를 베치르크(Bezirk)로 분할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1952년 7월 12일 2차 전당대회에서 사통당은 '사회주의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인민회의가 '동독 주들의 국가기관의 작업방식과 구조를 더욱 민주화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기를 추천하였다.[5] 그리고 1952년 7월 23일에 인민회의에서 '황제 시기에 만들어진 주정부가 존재하는 주 단위의 행정 체계'는 더 이상 새로운 과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Land 대신에 Bezirk를 도입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6] 동독의 지도부는 이러한 결정을 내린 이유를 경제적인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새로이 도입된 Bezirk 제도는 중앙집권적으로 통제된 계획경제 시스템에 적합한 것이었다.

그 결과 동독의 모든 행정 체계가 철저히 중앙집권적으로 구성되게 되었다. '민주적 사회주의'로 규정된 이 체계에는 권력분립이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국가정당이었던 사통당의 통제하에 있었다. 동독의 정치적 위계질서는 사통당이 주도하며 연방주의적 구조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업단체의 자

3 동독 주둔 소련군 사령부 명령 6호(1945년 7월 9일).

4 동독 주둔 소련군 통계법 46호(1947년 2월 25일).

5 사통당 2차 전당대회 보고서, p.841.

6 동독 법령집 1952년 99호.

율성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것은 일종의 명령구조였다고 할 수 있다.[7] 동독 국가 기구 내의 모든 중요한 지위는 사통당 당원이 점령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직책을 겸직하는 경우도 있었다. 에리히 호네커의 경우 국가위원회의 위원장, 즉 일종의 국가 원수이며 동시에 사통당 당수 그리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였다. 동독의 국가구조는 중앙집권적인 통제구조였고, 이 구조는 비교적 효과적으로 작동했다.

1961년 8월 베를린 장벽이 만들어지기 이전까지는 동독을 떠나 서독으로 넘어가는 것이 손쉬웠고 위험 부담이 높은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장벽이 세워진 이후 동독은 더욱 강력한 통제국가가 되었다. 동독 주민들은 교회와 같은 제한된 영역에서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1989년 평화적 혁명이 일어났을 때 다양한 형태의 정치활동과 '원탁회의'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은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경이로운 것이었다.

동독의 모든 영역은 사통당에 의해 지배되었다. 지역 단위에서 사통당은 행정기구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동독의 국가구조에서 사통당의 지배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엄격한 통제와 감시 체계였다. 경찰과 모든 통제기구의 중요한 지위는 당 간부가 차지했었다. 동독 사통당 지배하의 마지막 수상으로 과도개혁 1기의 정부를 이끌었던 한스 모도로우는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원탁회의'도 개선안을 제출하였었다. 그러나 사통당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구조를 최종적으로 타파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로타 드 메지에르의 과도개혁 2기 정부에서 비로소 실현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지방자치행정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독의 중앙집권적인 통제구조하에서 지방자치 행정을 담당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이 양성될 수 없었고, 그에

[7] 신연방주의 주행정-연방정치교육원의 자료(문서번호 279).

대한 지식도 축적될 수 없었다. 그것은 통일과정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1989년 가을 동독의 체제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 저항운동이 최고조에 달하였을 때 동독 정부가 해체한 주(Land)를 부활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 논의의 초점은 더 이상 '주' 제도의 부활 여부가 아니라 새로이 만들어질 주의 형태와 수에 관한 것이었다. 이 시기에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동독 주민들의 50%가 1952년과 같은 '주' 행정 단위가 다시 도입되는 것을 찬성하였다고 1990년 2월 1일에 열린 장관회의에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 때는 '주' 행정 단위가 폐지된 이후 4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던 시기였다. 주민들에게 '주'라는 행정 단위에 대한 기억은 이미 상실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를 도입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 이유는 무엇보다 동독 체제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었다. 1990년 초 한스 모드로우가 이끄는 동독 정부에서 '주'를 다시 도입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논의는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90년 2월 1일에 열린 동독 정부의 장관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행정개혁을 추진하기로 결정이 내려진 이후 '주'를 재도입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었다.[8]

모드로우 정부는 주를 재도입하는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개혁을 위한 정부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정부에 제출한 제안서를 통해 행정구역의 재편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다.[9]

- 자연적인 조건에 의해 만들어진 지역의 경계(산, 평야, 강)
- 지역의 경제구조

8 동독 행정개혁 실행을 위한 조치 및 기본원칙과 목표(문서번호 2), 동독 행정개혁을 위한 기본원칙 및 목표와 조치-정부 위원회 및 지역 평의회 심의(문서번호 3).

9 동독 행정개혁 실행을 위한 조치 및 기본원칙과 목표(문서번호 2), 동독 행정개혁을 위한 기본원칙 및 목표와 조치-정부 위원회 및 지역 평의회 심의(문서번호 3).

- 역사적으로 형성된 지배구조
- 주민들의 향토적 특성(언어, 생활습관, 풍습)
- 주민들의 정서적 귀속의식
- 정치적, 행정적으로 성공적인 단위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러나 민주적인 정치 체제하에서 영토 문제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만 한다는 점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독일의 역사에서는 영토 변경 문제가 국민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되었던 예가 없지 않았다. 이미 1920년에 작센-코부르크 공국이 바이에른주에 편입되었을 때도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였던 경험이 있었다.

1990년 2월 1일 동독 과도정부의 장관회의에서 내려진 행정구역 개편의 기본원칙과 시행에 관한 행정결정이 1990년 2월 5일 '원탁회의'에서 승인된 후 행정구역 개편작업이 시작되었다. 2월 5일의 회의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구성과 행정구역의 개편을 통해 시·군의 위상을 강화하고 '주'를 도입하는 문제, 지역의회의 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결정기구와 지역의회를 분리하는 문제 그리고 행정직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1990년 2월 16일에 '주'의 재건에 관한 공개회의가 개최되었다. 2월 16일의 회의에서는 1952년식의 '주' 행정 단위를 재도입하는 문제와 1952년 이후 38년 동안 동독을 지배하였던 행정구역 구조의 폐지, 특정지역에서의 주민투표 실시 여부, 새로이 도입될 '주' 행정 단위의 성격-연방국가 그리고 새로이 도입될 주의 수도를 결정하는 것 등이 논의되었다. 시 단위의 행정구조에 관해서는 1990년 5월 6일의 기초자치단체 선거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고, 그때까지는 기존의 행정 단위를 존속시키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기초자치단체의 의회구조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적인 명령이나 지시를 내리지 않으며, 1990년 5월 6일의 기초자치단체 선거를 통

해 지방행정과 의회를 분리하고 그 후에는 선출된 지방의회의 의원이 행정전문 부서의 장이 될 수 없도록 하였다. 동독의 과도정부는 1990년 2월 9일에 이러한 결정사항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각 분야별 테스크 포스라고 할 수 있는 실무그룹을 구성하였다.[10] 그것은 아래와 같이 네 분야에 구성되었다.

- 기초자치단체 행정과 소유권
- 행정지역의 관할구역 계획과 지도 체계
- 행정구역 개편: 주(Land) 단위, 시(Stadt) 단위, 구(Stadtbezirk) 단위, 군(Kreis), 읍/면(Gemeinde) 등 행정구역
- 행정조직의 구조

1990년 2월 9일의 내각회의에서는 란트크라이스(Landkreis)의 경우 100,000명의 주민, 게마인데(Gemeinde)는 약 8,000명의 주민으로 규모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 나왔다.[11] 이 회의에서는 지자체에 자치행정 구조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물적 자원과 지자체의 헌법의 도입 문제와 함께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 각 지역 평의회의 결정권을 확대할 필요성, 행정기관과 평의회를 구분할 필요성,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공무원 신분을 보장할 필요성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의 국가의 역할 대폭 축소와 지자체의 경제적 책임 확대(지자체 소유재산 반환)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이 회의에서 동독의 행정 전문가였던 헴펠(Hempel) 교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특별히 지적하였다.

- 지자체의 행정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더 자세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라고 말할 때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베치르크인가 아니면 그보다 하부 단위

[10] 동독 행정개혁을 위한 기본원칙 및 목표와 조치-정부 위원회 및 지역 평의회 심의(문서번호 3).

[11] 동독 행정개혁을 위한 기본원칙 및 목표와 조치-정부 위원회 및 지역 평의회 심의(문서번호 3).

인 크라이스를 말하는가?

- 서독의 경우 행정개혁에 관한 논의가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을 두고 진행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논의를 통해 진행되었다. 서독에서의 경험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서독에는 시장경제 체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교육, 보건시스템, 스포츠시설 등과 같은 분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자체가 정부에 의해 지원을 받는 보조금경제(Subventionswirtschaft)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 동독의 지자체는 자립할 준비가 아직 안 되었다. 특히 물질적, 기술적 문제, 재정적 문제 그리고 인적인 전제조건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염려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서독의 연방제와 유사한 형태의 지자체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미 행정개혁의 최종적인 목표로 규정된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 제기가 신중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로스토크 지역의 당 비서가 2월 9일의 모임에서 1990년 3월 18일에 시행될 인민회의 선거가 있지만 아직까지 선거법도 없고 선거규칙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한탄하면서, (구체제 지배세력에 의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임명된' 인민회의와 평의회 구성원들이 선거를 준비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을 통해 1990년 초 과도기 동독의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1990년 2월 동독의 각료회의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결정이 내려지고 각 주제에 관한 실무그룹이 구성되어 실질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개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무엇보다 장관회의의 결정과 상관없이 일반 여론과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행정개혁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1990년 초 과도정부하의 동독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 주는 현상

이었다. 동독 공산당의 독재 체제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국가기구의 '강제적 권위'가 이미 모두 상실된 상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이 만들어질 사회에 대한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던 시기가 바로 1990년 초 과도기 동독의 현실이었다. 과도기 동독의 정부는 행정개혁에 관한 무성한 논의 속에서 개혁의 방향을 잡기 위해 행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 위원회를 통해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 초 원탁회의와 장관회의에 제출된 전문가들의 의견은 빠른 시일 내에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 무질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논의를 종결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전문가들은 동독의 행정구역 개편에 관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12]

유형 1: 기존의 14개 광역시 베치르크(Bezirk) 행정 단위를 그룹으로 묶어서 1952년 이전에 동독에 존재하였던 5개의 주 단위 행정구역으로 개편한다. 이 방안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이 방안은 행정구역 개편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 1952년에 동독 정부가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합리적으로 고려하였던 지역구조와 행정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가기구와 당기구가 사회를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만들었던 장치 중에서 베치르크(Bezirk)제도만 폐지하는 것이다.
- 기존의 행정구역 간의 경계를 유지하되 일부 경계지역의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에 따라 경계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 여기서 탄생할 5개의 주가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면 각 주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연방회의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12] 동독 행정개혁 실행을 위한 조치 및 기본원칙과 목표(문서번호 2), 동독 행정개혁을 위한 기본원칙 및 목표와 조치-정부 위원회 및 지역 평의회 심의(문서번호 3).

유형 2: 1952년까지 존속되었던 주 단위의 행정구역과 시/군/읍/면의 기초단체를 모두 부활시킨다.

- 이 방안은 1952년 이전에 존재하였던 기초단체까지 복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기초단체의 수가 많이 감소될 수 있다.
- 새로이 구성될 민주적인 정치 체제하에서는 국가기구가 더 이상 전체 사회를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 기초단체들이 자체적으로 민주적 절차를 거쳐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의결기구, 즉 기초단체의 의회를 구성해야 하므로 기초단체의 크기를 너무 작게 두면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40년 동안 지속된 공산 지배의 틀을 극복하고 민주적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1952년 이전의 행정구역과 구조를 복원시킬 필요가 있다.
- 이렇게 해서 형성된 5개 주의 규모가 여전히 작기 때문에 통일된 연방회의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유형 3: 동독의 영토를 자연적 지형과 경제적 조건, 역사적 전통 그리고 주민들의 귀속 의식을 고려하여 3개 주로 행정구역을 재편한다.

- 이렇게 주 단위의 행정구역을 완전히 새롭게 구성하여 앞으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보았다.
- 동독지역에 3개의 주가 만들어진다면 연방회의에서 이들의 정치적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
- 새로이 구성될 3개의 주는 메클렌부르크, 브란덴부르크, 작센-튜링겐 등이다.
- 이들 세 지역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공동체를 구성했던 경험이 있거나 작센-튜링겐처럼 자연적 조건에 의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지역이다.

1990년 초부터 동독 내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던 행정구역의 개편에 관한 논의는 5월 17일에 열린 인민회의에서 자방자치단체법이 통과되면서 종결되었다.[13] 이 법에 의해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에 관한 규정과 행정 체계가 규정되고 지자체 간의 협력관계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기존의 독일연방공화국의 행정 체계에 부합하는 구조가 마련되었다. 이 법에 의거해서 역사적 전통에 따라 1952년까지 존재하였던 5개 주가 다시 도입되면서, 동독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시 단위의 행정구역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1952년의 지역 경계가 그대로 존속된 것은 아니다. 역사적 전통과 경제적 조건을 반영하여 주민투표를 통해 경계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동독의 과도개혁 정부에서 지역과 지방을 관할하던 부처의 장관이었던 만프레드 프라이스는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새로이 도입할 지방자치법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 제도는 권력을 탈중앙집권화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인 조치이다. 그것은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법치국가를 실현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법률의 틀 내에서 자기 책임하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 5월 6일에 실시된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통해 거의 40년 동안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던 동독 사회에 자치행정을 담당할 지방의회가 도입되었고, 이들은 각 지역 공동체 주민의 일상적인 삶과 관련된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 지방자치행정 체계의 도입은 동독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그때까지 이루어진 행정개혁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었다."[14]

지방자치단체가 신설되면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문제로 등장한 것이 지자체의 재산과 관련된 것이었다. 동독의 경우 모든 재산이 국유화되었기 때문

13 동독의 게마인데와 란트크라이스의 자치행정에 관한 법(기초단체법)(문서번호 11).

14 동독 최고인민회의 토론–게마인데와 란트크라이스의 자치행정에 관한 법(문서번호 10)

에 그중에서 어느 부분이 지자체의 재산으로 이전되어야 할지 법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독의 인민회의는 1990년 7월 6일에 이와 관련된 법률을 통과시켰다.[15] 이 법을 통해 지자체로 재산을 이전하는 절차가 규정되었으며, 지자체의 단체장과 의회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 두었다. 지자체에 이전된 재산에는 기업 토지 등의 부동산이 포함되었다. 나아가 지자체는 교통기관, 전기, 수도, 극장, 박물관, 병원과 같은 시설의 소유주가 되었다.

이어 1990년 7월 22일에 동독 최고인민회의는 새로운 행정 단위로서 주의 도입을 위한 법을 통과시켰다.[16] 이 법은 1장에서 1990년 10월 14일 자로 동독의 5개 주가 독일연방공화국의 일원으로 가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주의 구성을 위한 기초는 동독에 존재하였던 베치르크(Bezirk)를 그룹으로 묶어서 분류하며, 역사적 전통과 경제적 조건을 고려하여 기존의 행정구역과 달리 새로운 주로 편입되는 지역이 명시되었다. 기존의 행정구역 간의 경계를 변경하는 문제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지자체 중에서 1952년 7월 22일 이전의 행정 단위를 부활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에 대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고 그것을 주의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하도록 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주 단위의 행정구역 내에서 고립된 섬과 같은 지역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동독의 국유재산 중에서 지역 단위, 즉 베치르크(Bezirk)에 속했던 재산은 각 주에 이전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 법을 통해 베를린이 특별시로서 독립적인 주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받았다.

1990년 8월 29일에 체결된 동서독 간의 통일조약에는 그때까지 동독에서 진행된 지방자치를 위한 행정기관 개편작업이 반영되었다. 통일조약 13조에는

15 기초자치단체, 도시, 광역자치단체 재산법(지방자치단체 재산법)(문서번호 13).

16 독일민주공화국 내 주 설립에 관한 헌법(주도입법)(문서번호 14).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1항: 통일조약 3조에 언급된 (신연방과 베를린) 지역에 있는 행정기관은 그 지역의 주정부의 지시를 받는다. 업무 영역이 주의 경계를 넘어 여러 주에 해당되는 기관의 경우 그에 해당하는 주들이 공동으로 권한을 갖는다. 행정기관이 여러 부속기관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부속기관들이 각기 다른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 각 부속기관은 그것이 위치한 지방정부의 관할로 분류된다. 주정부는 각 기관들의 해체 또는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1990년 7월 20일에 제정된 주도입법 22조는 그대로 유지한다.[17]
- 2항: 1항 첫 문장에 언급된 기관 또는 부속기관 중에 가입이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 담당한 업무가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연방이 담당할 업무였을 경우 그 기관은 그에 해당하는 연방관청에 소속된다. 그리고 연방관청은 이 기관을 넘겨받고 청산하는 작업을 담당한다.
- 3항: 1항과 2항에서 언급된 기관에는 1. 문화, 교육, 학문 그리고 스포츠와 관련된 기관, 2. 방송국도 포함된다.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는 국가가 관장하지 않은 영역이 거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개혁 통합과정에서 처리되어야 할 업무량이 아주 많았다. 통일조약 14조에는 신연방주들의 이런 어려움을 감안하여 서독의 다른 연방주들이 신연방주에서 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통일조약 14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2항: 연방정부와 다른 주들은 (새로이 가입한 지역의) 주 행정을 건설

[17] 1990년 7월 20일에 발효된 주도입법 22조: 기관과 인력의 이전문제. '주'의 도입과 함께 행정기관과 다른 공공 행정 또는 사법 기구들은 법률에 따라 각 '주'가 관장해야 할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새로이 구성될 '주'에서 관할하게 된다. 기관의 업무가 주의 소관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인력 또한 주의 소관으로 이전된다.

하는 데 도움을 준다.

- 3항: (서독의) 주들과 연방은 최대한 1991년 6월 30일까지 일정한 분야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인적으로) 행정적인 도움을 준다. 이러한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서독의) 주와 연방에서 공무원이 파견된 경우 그는 파견된 기간 동안 그 기관에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4항: 연방에서 (신연방주에) 특정 업무 처리를 위해 도움을 줄 경우 연방은 그 업무의 처리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제공한다.

제2절 신연방주의 정착

통일 이후 신연방주의 기본정책은 동독지역이 독일연방공화국, 즉 서독의 기본법 23조에 의거 독일연방에 가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통일과정에 의해 이미 큰 틀이 결정되었다. 그리고 1990년 경제·화폐·사회통합에 근거하여 진행된 제도이전 과정과 그리고 1990년 10월 3일 최종적인 정치적 통합과정에서 구연방(서독)의 모든 법질서가 거의 어떤 가감도 없이 구동독지역에 이식되었다. 신연방주에는 서독에 있던 모든 법과 제도가 구동독지역, 즉 신연방지역에서도 적용되어야 할 체제 형태로 결정·전이되었는데 이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이 포함된다.

- 기본법과 권력분립, 의회 민주주의
- 지방자치 등을 위한 사회적이며 연방주의적 법치국가
- 상호부조의 원칙에 따르는 사회적 파트너십을 사적 경제행위와 연결시키는, 소위 말하는 라인 자본주의

이러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구동독지역에서 새로운 정치 질서, 경제적 혁신, 사회변동을 창조하기 위한 구조적 조건이 명확하게 만들어졌다.

구동독지역의 체제전환 초기에 이전된 서독의 제도는 구동독지역의 발전에 일정한 틀을 부여하였다. 구동독지역으로부터 이전된 법규, 조직형태, 행정 구조는 전통적 법치국가의 법 개념에 비춰볼 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며 독일연방 전체에 공동으로 해당되는 통일적인 체제였다. 물론 구동독의 조선업을 위한 특별지원과 같은 특별법의 제정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동독 재건을 위한 공통과업으로서 구동독지역의 건설을 위한 프로그램인 '신연방지역 건설(Aufbau Ost)' 혹은 독일통일기금과 같은 연방과 구서독에 의해 이루어진 재정이전 정책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연방정부의 정책은 모두 새롭게 편입된 구동독지역의 5개 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러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균형 잡힌 발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신연방주들은 1995년부터 기본법 107조에 의거한 수평적인 연방주 간의 균형재정분배 원칙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18]

구동독지역의 체제전환을 살펴보면 좁은 의미에서 통일과 관련되어 제정된 연방입법들이 모든 신연방주를 단일한 형태로 재구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방정부에서 구동독지역 관련 작업을 담당하던 사람들은 사유재산문제, 농업의 민영화문제, 주택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과정에서 각 지방의 특성 또는 지역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할 여유가 없었다. 사실 1990년 초 연방정부에서 신연방주 관련 정책을 담당하던 어느 누구도 구동독지역을 위해 특별히 맞추어진 해결책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은 신연방주를 마치 하나의 단위인 것처럼 취급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연방주들은 서로 상이한 발전 경로를 겪었다.

1990년 10월 14일에 새롭게 태어난 구동독지역의 신연방주들은 그들에게 제공된 책임권한을 활용하여 독자적으로 주헌법, 헌법재판소, 행정 체계

18 독일 연방제의 기본원칙과 연방주 간의 균형재정분배에 관해서는 독일통일 총서 2권 행정 분야 참조.

(Landesverwaltungen)와 기초자치단체 규정, 광역자치단체 규정, 고유한 재정법(Finanzgesetze)을 도입하였고 이러한 법적, 제도적 기반은 신연방주들이 각자의 특수성을 갖는 데 기여하였다. 이렇게 해서 새로 태어난 구동독의 신연방주들은 기존의 서독 기본법의 골격을 이루는 연방주의 원칙에 따라 각자의 특수한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렇게 해서 구동독지역에서 이루어진 2차 제도 구축은 각 주가 독자적 양식을 가진 연방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제도적인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다. 구동독지역 각 지방에 만들어진 새로운 지방 공공기관들은 스스로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할 뿐 아니라, 이러한 상이한 특수성을 통하여 정치 및 행정 분야에 있는 행위자들에게 각기 상이한 '행위 공간'을 제공하였다.

지방자치 행정기관의 도입을 통해 구동독지역에도 창조성과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었다. 그러나 신연방주에 존재하는 이러한 자유공간의 내적 형태는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초자치단체 규정 및 광역자치단체 규정을 도입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신연방주에서 서로 상이한 결정과정을 거쳐 도입한 지방행정의 하부구조의 차이로 인해 구동독지역이 서로 다른 발전과정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거기에는 단순히 제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우리가 한 지역의 역사적 '유산'이라고 부르는 다양한 조건들이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과거의 유산들은 심각한 환경 파괴나 산업의 황폐화로 남은 폐허 등과 같은 형태로 지역의 경제와 정치의 재탄생을 계속 방해하거나 지역 산업생산의 성장을 선도하는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제2장

‘브란덴부르크주의 길’

제1절 브란덴부르크주 발전 경로와 조건

1. 브란덴부르크주의 정치 지도자와 정치적 특색

브란덴부르크주는 구동독지역의 신연방주들 중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성공적으로 발전한 주에 속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회통합의 차원에서는 가장 성공한 경우로 간주된다. 그 중요한 이유가 ‘브란덴부르크주 노선’이라 불리는 화해를 추구하는 기본적인 정치노선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잘 실천될 수 있었던 원인은 브란덴부르크주가 두 명의 뛰어난 정치가를 1대와 2대 주총리로 두었기 때문이라고 일반적으로 평가된다. 만프레드 슈톨페(Manfred Stolpe)와 마티아스 플라첵(Matthias Platzeck)이 바로 그들이다.

1990년 10월 14일 주의회 선거에서 브란덴부르크주의 첫 총리로 선출되어 1990년 11월 1일부터 2002년 6월 26일까지 총리직을 수행했던 슈톨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시작을 실현하였다: 분단 시절 동독에서 목사직을 수행하던 슈톨페는 이미 1960년부터 동서독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는 동독에서 교회가 고유한 자주성을 갖고 동시에 전 독일 교회와 정신적으로 연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독일통일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했던 사람이다. 나아가 그는

브란덴부르크주뿐 아니라 다른 동독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 기대주였다. 1994년의 연방대통령 선거 때 일부 의원들은 그가 리하르트 폰 바이체커(Richard von Weizsäckers)의 후임자로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슈톨페는 약 12년가량 브란덴부르크주 정치를 주도하였다. 물론 그도 통일 이후, 전체 구동독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브란덴부르크주의 발전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실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오랫동안 브란덴부르크주 정치의 전면에 있었다는 사실은 그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신뢰가 얼마나 컸던가를 잘 보여 주는 것이다.

브란덴부르크주의 경우 인민 소유 국영기업의 민영화로부터 시작된 경제붕괴는 유권자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러일으킬 요소가 충분하였다. 그러나 슈톨페는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1996년까지 제공된 연방정부의 노동시장 지원정책에 힘입어 실업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었으나, 그 후에도 경제적 탈산업화로 인한 실업의 증가 문제는 지속적으로 주정부가 해결해야만 하는 큰 과제로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톨페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체제개혁을 통한 체제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신뢰감을 주는 데 성공하였다. 그 이유는 슈톨페가 브란덴부르크주의 사회부 장관 레기네 힐데브란트(Regine Hildebrand)와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합리적인 정치인의 이미지를 가진 슈톨페가 조정자 역할을 했다면, 정열적인 사회복지정책의 대변자인 힐데브란트 장관이 체제전환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함으로써 주민들이 브란덴부르크주의 주정부가 자신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레기네 힐데브란트는 지방의 세 수입이 적은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연방정부와 다른 연방주의 재정적 지

원을 통해서 재정문제의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연방정부와 각을 세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슈톨페의 후임 총리인 마티아스 플라첵은 2002년 주지사로 취임하였다. 그가 취임할 당시 브란덴부르크주의 재정은 극도로 높은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경제 발전은 정체되거나 부분적으로는 퇴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플라첵은 주지사로 취임하기 전 다양한 분야에서 10년간 쌓은 정치적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생의학적 제어학 분야의 석사 학위를 갖고 있고, 환경위생 전문가인 그는 1988년 4월 포츠담의 시민단체인 '환경보호 및 도시개선 공동위원회'를 창설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었다. 이 단체는 1989년 11월 환경운동단체의 상위 조직인 Liga의 창립에 참여한 창립 멤버가 되었는데 단체의 대변인으로 플라첵을 임명하였다. 그는 1990년 동독의 중앙 원탁회의에도 참석했다. 그리고 플라첵은 동독의 녹색당 소속 장관으로 한스 모드로우(Hans Modrow) 내각에 참가하여 무임소 장관도 역임했다. 1990년 3월 18일에 있었던 동독 최고인민회의 자유총선거에서 그는 무소속으로 당선되었다. 이어 최고인민회의가 시작되었을 때 그는 연합90/녹색당으로 이뤄진 원내 대표 단체의 사무총장이 되었다. 플라첵은 1990년 10월, 브란덴부르크주 주의회 선거에서 녹색당 연합90(Bündnis 90)의 비례대표로 주의회에 진출했으며, 1990년 11월 22일 슈톨페 총리로부터 브란덴부르크주의 환경·자연보호·공간관리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슈톨페의 비밀경찰(슈타지, Stasi) 연관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을 때, 슈톨페의 입장을 옹호했던 그는 녹색당 연합90의 원내 교섭 단체 대표인 귄터 눅(Günter Nook)과 갈등을 겪으면서 녹색당 연합90에서 탈당했다. 이후 무소속 장관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했다. 1995년 6월 6일 플라첵은 사민당에 입당하여, 1998년 6월 브란덴부르크주 지구당 대표가 되었고, 1999년 12월 8일에는 전 독일 사민당의 당수가 되었다.

브란덴부르크주 환경 장관으로서 플라첵은 브란덴부르크주 영토의 40%

를 자연 및 산림보호구역으로 바꾸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1995년 9월 독일-폴란드 국립공원이 'Unteres Odertal' 지역에 만들어질 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97년 여름 오더강 지역에 홍수가 났을 때 환경장관인 그가 TV 매체에 자주 등장하였고 이를 통해 그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게 되었다. 언론인과 홍수 피해 관련 자원봉사자들로부터 그는 독일의 소설가 테오도르 슈토름(Theodor Storm)의 작품 '백마를 탄 기사(der Schimmelreiter)'에 나오는 제방감독관으로 불리었고, 2002년 엘베강 홍수 때에는 유능한 위기 관리자로 인정받았다. 그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키리츠-루피너 들판에 군사훈련장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운동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의 대중적 인기가 더욱 높아졌다.

만프레드 슈톨페와 마티아스 플라첵으로 이어지는 브란덴부르크주 건립 초기 두 주총리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은 정치가들이었다. 그들은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대 세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합의지향적 화해 정책을 취할 수 있었다. 그것은 브란덴부르크주의 주헌법 제정 과정에서 분명히 볼 수 있다. 브란덴부르크주는 주헌법을 국민투표를 통해 제정한 유일한 신연방주이다. 주헌법의 초안을 만들 때부터 광범위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헌법의 제정 과정이 정부 법률 전문가들의 독점적인 영역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오히려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 구성된 기본법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정치가, 전문가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모든 세력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나아가 브란덴부르크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정부 엘리트와 지도자급 행정전문가 차원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행정기관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의 움직임이 브란덴부르크주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주정부는 동부 독일의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했던 브란덴부르크지역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잠재적 역량에 대한 확신을 강

화하기 위한 정책을 모색했다.

이와 관련해 만프레드 슈톨페(Stolpe)가 2010년 3월 18일에 메르키쉐 알게마이네(Märkische Allgemeine, 일간지)에 기고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통일된 독일에서 브란덴부르크주의 재건을 위해 나는 서독으로부터는 필요한 것과 유용한 것들을 물려받고, 동독으로부터는 의미 있는 것을 보존하려 했다. 새로운 동부 독일은 서독 것의 완전한 복제도 아니며 지금까지 갖고 있던 것들이 완전히 파괴된 것도 아니다." 만프레드 슈톨페의 이런 기본적인 시각이 브란덴부르크주의 정치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실제로 브란덴부르크주에서는 지도층급에서의 엘리트가 교체되고 중간급과 하위직의 구조 재편성이 있었지만, 소위 말하는 전면적인 엘리트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에 작센주의 경우 서독의 행정조직과 정치문화에 적응하고 융합되기 위해 대대적인 엘리트 교체를 추진했었다.

브란덴부르크주에서는 행정 인력과 주요 행위자들이 상층부 그룹 차원뿐만 아니라 중간급과 하위 부문에서도 자체 충원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교수, 당서기 그리고 심지어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포츠담지역 당서기장까지 통일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 결과 브란덴부르크주의 정치, 사회적 분위기는 다른 구동독지역보다 더 조화롭고 합의적이었으며, 타협과 협상이 쉽게 이루어지는 분위기였다. 이러한 소위 브란덴부르크주 고유의 방식은 브란덴부르크주의 초기 건설단계에서 있었던 헌법을 둘러싼 논쟁, 의회에서의 논쟁, 사민당과 기민당의 연정 구성 시의 논의, 주정부 및 행정 조직의 재편성 과정, 과거청산, 교육정책, 인사 정책 등에서뿐만 아니라 공고화와 안정화 단계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만프레드 슈톨페 주총리는 1997년 8월 20일 자 정부 성명에서 "우리 주를 미래에도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고, 동시에 인간다운 사회라는 의미에서 살만한 곳으로 유지하기 위해 어떤 중심 사상을 우리 정치의 근간으로 삼아야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브란덴부르

크주 정치의 방향을 처음부터 특징지은 연대감, 지역성 그리고 혁신역량과 같은 사유를 기반으로 브란덴부르크주만의 고유한 노선으로 채택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브란덴부르크주의 기본 노선에서 말하는 연대란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으며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에 대한 의무감도 느끼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거기에는 취약 계층이 강자의 연대적 도움을 필요로 하며, 다음 세대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도 포함된다. 지역성이란 브란덴부르크주가 갖고 있는 다양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서로 일체감을 보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변화하는 유럽의 일원으로 맞아야 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경제와 사회에서의 혁신 및 혁신 달성을 위한 준비 자세가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하였다.[19]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마티아스 플라첵(Matthias Platzeck)은 2010년 9월 5일 기조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아주 특색 있는 길을 걸어왔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브란덴부르크주의 노선(Brandenburger Weg)'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언론에서는 그것을 아주 일방적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우리 주와 우리의 여건에 맞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독자적인 브란덴부르크주의 정치 스타일이었다. 그것은 시장만능주의적이고 보수적인 개념으로부터 확실히 구별되는 정책이다. 오늘날 다시 한번 흑-황 노선(Schwarz-Gelb, 기민당/자민당 보수정당 연립정부의 정치노선)으로부터의 내용적 구분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고유한 브란덴부르크주의 노선을 일관되게 발전시키고 새롭게 조정함으로써 가장 설득력 있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20]

19 만프레드 슈톨페 주총리의 1997년 8월 20일 자 정부 성명.

20 마티아스 플라첵(Matthias Platzeck)의 2010년 9월 5일 기조연설.

2. 경제적 기반

브란덴부르크주의 경제 발전은 통일 이후 적지 않은 굴곡을 겪었다. 우선 1992년부터 1996년까지는 성장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시기 브란덴부르크주의 총생산, 성장률은 전체 독일뿐 아니라 다른 구동독지역의 성장률보다 높았다. 그 이후 경제가 가시적으로 확인될 정도로 후퇴하였다. 거기에는 통일 초기 높은 수준에 달하였던 건설 부분 생산이 감소한 것이 한몫을 하였다. 그리고 전체 독일의 경기발전 상황이 브란덴부르크주의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한 것도 다른 중요한 이유이다. 지난 10여 년간의 초반기 절반 동안, 2004년을 제외하고는 경기가 계속적으로 침체하였다. 2006~2007년이 되어서야 전체 독일의 경제회복에 힘입어 브란덴부르크주에서도 경제 발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 회복 과정은 경제 분야에 대한 생산성 비교(생산인구 1인당 부가가치 창출 수준)를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 통일 이후의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였던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거기에는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춘 설비의 투자와 고용 인원의 감축이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2000년 초반 산업 생산성의 성장률은 감소되었으나 독일의 일반적인 경기 호황과 함께 브란덴부르크주 경제의 고용 인원 1인당 부가가치도 상승하였다.

한편, 브란덴부르크주의 생산 인력의 규모는 1991년부터 1995년까지 118,000명이 줄어들어 1,075,200명이 되었다. 주요한 고용 분야로 간주되어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정규직 일자리, 자영업, 시간제 고용직 등 세 분야에서 1995~2005년 사이 고용 규모가 상당한 수준으로 변화되었다.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정규직 일자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측면에서나, 절대 규모에서나 모두 줄어든 반면, 동시에 자영업과 시간제 고용의 분야는 증가하였다.

1995~2005년 사이 계속 낮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면서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정규직 일자리는 23.3%가량 줄어들어 689,900개 정도였다. 전체 고

용 규모에서 정규직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84.8%에서 69.2%로 내려갔다. 이 시기에 전체 고용 규모는 6.1%가량 줄어들었고 총 1,009,700개 수준을 보여 정규직 일자리의 변동보다 적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1995~2009년 사이 브란덴부르크주의 자영업 종사자의 규모는 82,100명에서 129,600명으로 늘어나 58%의 증가율을 보였다. 자영업 종사자 규모는 특히 1990년대 초반 5년간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05년 이후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동력이 눈에 띄게 약해졌다. 전체 고용인구 중에서 자영업자 비율(Selbständigenquote)은 1995년 7.6%에서 12.3%로 올라갔다. 구동독지역 북동지역 주들을 비교하자면 브란덴부르크주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2009년 자영업이 생겨나는 주된 분야는 서비스 분야였다. 상업, 민영화된 공공 서비스업, 공공 및 민영 서비스업이 주를 이뤘다. 하르츠개혁, 독일의 실업자 보험제도 개혁의 결과로 단기적인 임시직 그리고 기간제 일자리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2000년부터 2009년 사이 그 규모가 43.9% 증가하여 100,200명이 이러한 기간제 계약을 맺고 근무하였다. 2006~2009년 사이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종신직, 정규직 일자리가 처음으로 4.6% 증가하였고(규모는 738,200개) 2002년의 수준을 회복하였다. 이 시기 전체 고용 규모도 4.2%가 증가된 1,056,900개로 성장하였다.

브란덴부르크주에서 발견되는 고용 관련 특징은, 생활 근거지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비율이 비교적 낮아서 멀리 이동하여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이다. 2009년 브란덴부르크주의 일자리 밀도는 취업 연령기에 있는 매 1천 명당 437개의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일자리를 보유함으로써 구동독지역의 신연방주 전체적 상황보다 매우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브란덴부르크주 주민이 일자리를 구했는데, 그 원인은 2009년의 경우 250,000명의 브란덴부르크주 주민이 다른 연방주에서 근무하였고, 그 가운데 177,000명이 베를린에서 근무한 것이 보여 주듯이 각 개인들의 이동성 때문이었다.

특히 다른 신연방주와 비교할 때, 브란덴부르크주의 기초자치단체들이 많은 경우 베를린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위한 일종의 잠자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베를린과 직접 맞닿아 있다는 지리적 특성이 가져온 결과이다. 결국 브란덴부르크주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그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여 얻은 소득을 주거지에서 소비하는 삶의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 지역의 세원을 충당할 수 있었다.

그렇게 브란덴부르크주의 많은 지역이 대도시 베를린의 위성지역이 되었지만 브란덴부르크주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것이 고용밀도 상승효과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인구밀도가 비교적 높은 베를린 주변 지역에서의 2006년 일자리 밀도는 생산인구 1천 명당 406명으로 다른 외곽지역과 비교해서 높은 편도 아니다. 베를린이 브란덴부르크주의 한가운데에 있고, 이 대도시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2008년 중반 무렵 주거지역 외의 지역에서 근무하는 브란덴부르크주 주민 가운데 70%가 베를린에서 근무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2009년에는 주거지역 외의 지역에서 근무하는 브란덴부르크주 주민의 규모가 1990년과 비교할 때 거의 두 배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9년 타지방에서 근무하는 주민의 비율이 28.8%에 달하여 전체 연방주들 간의 비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거주지 취업자와 근무지 취업자 간의 고용밀도의 차이로 인하여 브란덴부르크주가 갖고 있는 출퇴근 주로서의 의미가 더욱 강화된 것이다. 이처럼 타지방에서, 특히 연방주의 경계를 넘어서 출퇴근하는 주민들 덕에 브란덴부르크주는 다른 신연방주의 주민이 주거지에서 근무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

3. 사회적 기반

브란덴부르크주의 역사를 집필한 페터-미하엘 한(Peter-Michael Hahn)은 최근 100년의 역사에서 "브란덴부르크주 주민들은 세 번 그들의 삶이 근

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경험했고 그때마다 새로운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가치구조를 도입해야 했다"라고 말한다. 물론 이러한 변화들은 항상 다양하고 큰 기대를 동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브란덴부르크주뿐만 아니라 구동독의 신연방주에서는 2009년 현재 1989/1990년의 "변혁 이후 명확하게 개선된 물질적 환경에서 어렵지 않은 삶의 양식을 희망했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변혁의 이상적이고 정치적인 가치평가는 서독의 관찰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뒤편으로 사라졌다"고 평가한다.[21]

이러한 평가는 우리에게 구동독지역에서 변혁 이후 일반 주민의 기대치가 높았었고 그러한 기대가 신속하게 충족되지 못했을 때 느끼는 실망감 역시 아주 높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기대치가 아주 높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점진적으로 삶의 질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 특히 서부 독일지역의 연방주들과 비교하여 완전히 동등한 수준에 오르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990년 이후의 변혁의 성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는 구동독지역의 주민들이 다른 동유럽 국가의 주민들보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브란덴부르크주의 주민들에게서도 관찰할 수 있다.

실제 1990년 이후의 브란덴부르크주의 발전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경제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분명한 성과들이 있고 그에 대한 평가 또한 아주 긍정적이다. 그것은 합리적인 행정구조, 인프라 구축, 경제의 성장, 10.7% 이하의 실업률, 경쟁력 있는 대학 및 연구단지의 구축,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 소련군의 평화로운 철수 등이다. 2010년 10월 26일 브란덴부르크주 의회에서 행한 의회 창설 20주년 기념식에서 의회 의장 군터 프리치(Gunter Fritsch)는 "변혁의 분위기, 복잡한 재건과정을 우리 모두 완수하고 일상을 회복하였다." 라고 말하였다. 그에 따르면, 브란덴부르크주가 만프레드 슈톨

[21] Hahn, Peter-Michael: Geschichte Brandenburgs. München 2009, p.120.

페 총리하에서 20년 내에 실업과 산업의 붕괴, 대규모 인구 유출 문제로 갈등하던 '작은 동독'에서 하나의 역동적인 도시로 변모할 수 있었다. 물론 '변혁(Wende)' 20년이 지난 현재 모든 어려움이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돌이켜 볼 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연설의 요지였다.[22]

물론 브란덴부르크주도 1990년 이후 지속되는 출생률 감소, 증가하는 인구고령화 추세와 함께 타지방으로의 인구 유출과 같은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다른 구동독지역의 신연방주 또한 동일하게 겪고 있는 것이지만 2010년 브란덴부르크주 정치교육센터에서 나온 크리스티아네 뷔흐너(Christiane Büchner)와 요헨 프란츠케(Jochen Franzke)의 저서 '브란덴부르크주(Das Land Brandenburg)'를 보면 브란덴부르크주는 독일의 어떤 지방보다도 심각한 인구 유출 문제를 겪고 있다.

1991년 이후 브란덴부르크주는 250만 명의 인구 가운데 86만 명이 유출되었다. 이러한 인구 유출은 1990년대 중반까지 베를린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을 통해 보충되었다. 그러나 1997년 이후 베를린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2001~2002년 처음으로 인구 유출이 유입을 압도하였다. 특히 도시 주변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젊은 여성 인구가 대규모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잘 양성된 유능한 직업 인력이 고향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해 베를린 주변, 혹은 독일의 서부, 혹은 남부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터전을 찾고 있다. 여기에 출산율 감소와 증가하는 평균 수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령화 문제 또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1990~2002년 사이 브란덴부르크주의 65세 이상 인구의 수가 40% 증가하였다. 전체 인구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12%에서 17%로 올라갔다. 이러한 경향이 계속 유지된다면 2030년에는 50%가량으로 증가할 것이다.

[22] 군터 프리치(Gunter Fritsch)가 2010년 10월 26일 브란덴부르크주 의회에서 행한 의회 창설 20주년 기념식 연설.

마티아스 플라첵은 이러한 인구문제를 다루기 위해 주정부 차원에서 테스크포스 '인구변동(demographische Entwicklung)'팀을 설치하였다. 나아가 인구 구조의 변화와 경제 발전을 분리하여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플라첵 정부는 주정부 차원에서 15개의 성장 거점을 지정하여 이들이 해당지역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핵심적인 엔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 투자지원, 수출경제 콘셉트 지원, 학계와 경제계 사이의 지식 교환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 수립 지원 및 전문 인력 보장을 위한 지원 계획 등이 세워졌다.

지금까지 이룬 성과에도 불구하고 브란덴부르크주는 여전히 경제구조가 취약한 지역에 해당된다. 1제곱킬로미터당 86명이 거주하고 있어 인구밀도 또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1제곱킬로미터당 연방주 전체의 평균 인구는 230명이다. 매우 적은 자체 재정 및 세수입 조달 능력으로 인하여 브란덴부르크주는 여전히 계속 연방주 간의 재정균형협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연방주 간의 균형재정분배원칙이 지속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이유는 독일연방공화국의 헌법인 기본법 72조에서 보장하는 전체 연방주에서 동등한 생활조건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목표가 근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사회적 법치국가로서의 독일연방공화국이 규정한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인 기본 틀이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불협화음들을 사전에 차단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한 제도들을 유지하기 위해 드는 높은 비용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조화로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였다는 의미에서 높은 비용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제도적 틀의 확립

1. 행정제도의 구축

브란덴부르크주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은 통일 이전인 1990년 2월 중순에 코트부스, 프랑크푸르트-오더 그리고 포츠담의 평의회에서 '세 개 지역을 포괄하는 브란덴부르크주의 건립'에 관한 논의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한 기본 원칙을 만들기 위해 세 개의 평의회가 공동의 협력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원탁회의에 전문가 10인을 선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 사회 전반적인 대표 인사를 포괄하는 이 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정부 대변인 3인
- 구역행정당국 내부 담당 대표들
- 인민회의 대표
- 시민운동 대표
- 각종 협의회 대표
- 소수 민족 대표
- 행정 전문가
- 옵서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총리, 고위 공무원

이 협력위원회는 1990년 2월 28일에 그 첫 회의를 시작하여 1990년 10월까지 브란덴부르크주의 행정적, 구조적 토대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거기에는 헌법을 준비하는 것까지 포함하였다. 이 위원회는 1990년 8월에 약 150쪽에 달하는 브란덴부르크주 발전 방안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준비 과정에서 당시 교회협의회 의장이었던 만프레드 슈톨페가 동독과 서독 사이의 통일협약 협상을 위한 실무위원회의 대표로 지명되었고, 그가 이어 새로이 도입될 브란덴부르크주의 첫 주총리 후보로 떠오른 것이다.

1990년 3월 18일의 선거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과도정부의 주도하에 진행된 행정개혁 준비작업은 지속적으로 서독의 공무원들에 의해 자문을 받으면서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해서 서독이 동독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행정원조'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새로운 행정구조의 구축에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비난하는 행정 전문가들도 있었다. 실제 많은 수의 공무원이 서독에서 동독/신연방주로 파견되었고, 이들이 동독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모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통일조약을 통해서 서독의 법률이 신연방지역에 그대로 적용되며 동독의 법률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결정이 이미 내려진 상태에서 신연방지역의 정치인과 행정가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구연방주인 서독에서 실행되던 행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서독으로부터 인적, 물적 지원을 받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브란덴부르크 주 총리 만프레드 슈톨페는 1990년 12월 6일에 의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브란덴부르크주에서 효과적인 공공행정의 구조를 완성하기 위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와 공무원 교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이 연설에서 슈톨페는 나아가 주정부가 새로운 행정 체계, 그중에서 사법행정 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40년 동안 공산당의 지배하에서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었던 경험을 한 주민들에게 공정한 사법제도하에서는 모든 판사와 검사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법치국가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사법제도의 구축과 함께 새로운 행정제도의 구축을 위해 중요한 사항으로 슈톨페가 제시한 것이 공무원의 재교육 문제이다. 새로운 행정 체계에서 근무할 공무원을 적절하게 선발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교육연수를 받게 하여 새로운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

다고 약속하였다. 실제로 1990년 10월 3일 독일통일과 함께 신연방지역에 형식적으로는 각 주에 지자체의 행정 틀이 도입되기는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제도가 갖추어지기까지는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

2. 주헌법의 제정

1990년 전반기에 동독의 과도정부는 주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작업의 틀에서 주헌법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작업도 진행했다. 1990년 4월과 9월에 브란덴부르크 주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제안서의 초안과 제2차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과도개혁기 동독에서 진행된 주헌법 제정과 관련된 논의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 새로운 브란덴부르크주의 헌법은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의 원칙에 입각한다.
- 평화적 혁명이 가져다준 기회를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 환경과 자연 보호 문제와 같은 주제들을 포함한다.
-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주민이 모두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줄 의무를 갖는다.

주헌법을 도입하기까지는 먼저 헌법 제정을 준비하기 위한 주의회와 함께 주정부가 구성되어야만 했다. 주의회와 주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회 선거법은 1990년 7월 22일 동독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의결되었다.[23] 그리고 통일 직후인 1990년 10월 14일 브란덴부르크주의 주민들은 첫 번째 주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를 치렀다. 이 선거에는 브란덴

[23] 동독 주민들에게 1990년은 선거의 해였다. 3월에 동독 최고인민회의 선거, 5월에 지방선거, 10월에는 주의회 선거 그리고 12월에는 연방의회 선거까지 총 4번의 선거를 치렀다. 여기에서 당시 동독의 체제전환이 얼마나 급격히 진행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부르크주의 총 유권자 1,955,403명 중 1,312,120명이 참여해서 67.1%의 투표율을 보였다.

- 높은 무효표의 비율: 선거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유권자의 27%만이 본인이 두 개의 투표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 총 13개의 정당이 참여-6개 정당 원내 진출(독일 선거법에 의해 5% 이상의 의석을 획득한 정당만 원내에 진출)
  - 제1당-사민당(38.2%)
  - 제2당-기민당(29.5%)
  - 제3당-PDS 민사당(13.4%)
  - 제4당-녹색당(9.3%)
  - 제5당-자민당(6.6%)

10월 14일의 선거 결과에 의거하여 사민당이 내각을 구성할 임무를 부여받았고 녹색당과 자민당을 포함한 3개 정당의 연정협상을 시작하였다. 10월 26일 연립내각 구성이 결정되었고, 11월 1일 주의회 회의에서 만프레드 슈톨페가 주총리로 선출되었다. 독일에서 신호등 연정으로 불리는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의 연정에는 다양한 경력을 소유한 전문가와 시민 환경 운동가들이 참여하였다.

새로이 선출된 주의회와 주정부가 해결할 가장 급선무는 주헌법 도입을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었다. 주헌법을 제정하는 것은 앞으로 새로운 연방주로서 브란덴부르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과제였다. 이것은 신연방지역의 모든 주가 우선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였다.

브란덴부르크주의 경우 헌법 초안을 위한 작업이 이미 통일 이전에 시작되었으며, 주정부가 구성된 이후에는 이 작업을 소수의 법률 전문가에게 위임하지 않고 광범위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논의가 진행되었다. 1991년 1월 30일에 개최된 회의에서는 15명의 주의회 의원과 원내 교섭 단체가 추천

하는 15명의 인사를 포함한 주헌법제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를 통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든 그룹이 헌법 논의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원래의 의도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었다. 이렇게 구성된 헌법위원회는 1991년 5월 30일까지 헌법의 초안을 마련하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이들이 마련한 초안은 다시 공개적으로 토론되었고 거기서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운 수정안을 만드는 작업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1차 헌법위원회에는 2개의 하위 부서가 있었고, 1991년 12월 13일 헌법의 최종안을 제출할 때까지 48차례의 회의를 가졌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개토론회가 개최되어 400건 이상의 수정을 위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1차 헌법위원회에서 가장 격렬하게 논의되었던 것은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의 합병과 관련한 문제였다. 당시에는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의 합병이 현실적인 문제로 부상한 것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하나의 가능성으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실제로 제기되었을 때 브란덴부르크주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내리도록 만들어야 할지에 관해 헌법위원회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합의한 안은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의 합병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 양 주 간의 협약이 주의회에서 비준되기 전에 주민투표에 의해 동의를 구해야 한다.
- 이 투표에는 유권자의 2/3가 참여해야 한다.
-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합병에 찬성해야 한다.

1차 헌법위원회에서 이러한 장치를 도입하여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의 합병이 시도된다고 하더라도 넘기 쉽지 않은 장애물이 만들어졌다.

브란덴부르크주 의회는 1991년 12월 19일 1차 헌법위원회의 초안에 관해 논의하고 그것을 기초로 제헌작업을 담당할 2차 헌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차 헌법위원회에는 1차 헌법위원회에 속하였던 15명의 주의회 의원이 포함되었다. 2차 헌법위원회에서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주정책의 기본방향을 두고 격렬한 논의가 있었다. 그중 가장 많은 논란을 야기한 주제는

- 동독에서 허용되었지만 서독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낙태법을 유지하는 문제
- 선거법에 의해 5% 이상 득표한 정당만 원내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 제한장치의 완화
-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주민투표제도 요소의 강화

등으로 각 정당과 사회적 집단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들이었다.

더욱이 사회주의통일당의 후신인 민주사회당이 요구하던 사항, 국민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과 같은 경우 사회주의적 색채가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이라는 기민당의 반발로 인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노동권에 대한 민사당의 요구를 주정부의 차원에서 주의 의무로 보장한다는 조항을 포함하여 제출할 헌법안에 관한 의회의 심의가 1992년 4월 14일에 열렸고, 이 회의에서 의외로 대다수의 찬성에 의해 헌법이 의결되었다. 주헌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민투표가 1992년 6월 14일에 열렸고, 이 투표에서 투표자의 94%가 찬성하여 1992년 8월 21일 주의회에 의해 주헌법이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신연방주에서의 헌법 도입과 관련된 논의는 각 주마다 차이를 보인다. 브란덴부르크주의 헌법 도입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 편이었다. 그 외에 작센-안할트주의 경우도 브란덴부르크와 비슷한 과정을 거쳐 헌법을 도입하였다. 튜링겐주와 같은 경우에는 훨씬 늦게 헌법을 도입하였다.

주헌법의 기본적인 틀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신연방주의 헌

법 논의에서 눈에 띄는 것은 헌법에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로서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환과 같은 제도를 포함하려는 움직임이었다. 그를 위한 모델은 1990년 개정된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의 헌법이었다. 이 헌법에는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서 주민 2만 명의 서명을 통해 주민이 법률을 발의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신연방주의 주헌법 논의에서 등장한 직접 민주주의 요소의 강화에 대한 의지는 이미 통일 이전의 과도기 동독 인민회의의 입법과정에 반영되었다. 1990년 5월 17일에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법의 경우 주민발의, 주민투표의 제도를 포함하였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이 도입된 신연방주의 헌법에 반영되었다.

브란덴부르크주 헌법의 75조에는 "법안은 주의회, 주정부 그리고 주민청원을 통해 발의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어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보다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를 강화하였다. 연방과는 달리 다른 주에서도 이런 요소를 도입한 경우가 적지 않다. 주민들이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세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주민발의: 20,000명의 서명
- 주민소환: 80,000명의 서명
- 주민투표: 필요한 다수

3. 민주적 선거의 실현을 위한 선거구 개편

민주적 선거의 실현을 보장하는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어떠한 체제전환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체제통합과 체제전환을 위해서는 민주적 행정 체계의 구축과 민주적 정치제도의 구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체제전환 과정에서 선거구 개편 또는 편성 작업은 또한 간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독일의 신연방주지역의 주민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던 시기는 바이마

르공화국이 존재하였던 1920년대로 한정될 뿐이다. 그러나 1990년 이 지역의 주민들은 여러 차례 민주적 선거를 치렀고 그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제기된 경우가 전혀 없었다. 같은 시기에 체제전환을 경험한 동유럽의 민주주의를 논의할 때 많은 학자들이 '고장난 민주주의'라고 칭하는 것을 고려하면 신연방지역에서의 이러한 정치 발전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맥락에서 이미 안정되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한 서독의 존재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물어볼 수 있을 것이다.

신연방주의 선거구 개편은 통일 이전 1990년 7월 22일에 동독 인민회의에서 이루어졌다. 이 법의 3조에서는 각 주의회의 의원수가 그리고 4조에서는 주의회 선거를 위한 선거구의 크기가 규정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 선거구의 크기는 유권자 60,000명을 기준으로 하며
- 각 선거구는 60,000명보다 25% 많거나 적을 수 있다

동독 인민회의에서 결정한 이 법은 통일 이후에 각 신연방주의 주의회 선거법으로 전환되었다.

선거구의 경우 통일 이후 지속되는 인구 변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조정되어야만 했다. 브란덴부르크주의 경우 베를린 주변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다른 지방의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선거구 조정의 폭이 아주 컸다고 주정부가 주의회에 보고하였다.

4. 지역통합을 위한 시도-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의 통합을 위한 노력

통일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정지역의 개편작업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경우는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의 지역을 하나의 행정 단위로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 정부가 많은 심혈을 기울였던 이 정책은 궁극적으로 1996년의 주민투표에서 부결되었다. 베를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경제 단위를 만들고자 했던 정치권의 의도는 통일조약 5조에 이미

반영되었었다. 이 조항에는 통일 이후 헌법 개정문제를 다루면서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지역의 경우 통합과 같은 행정관할 구역의 개편 가능성에 관해서 기본법 29조에 어긋나더라도 두 지역의 합의에 의해 통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다시 말해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의 통합에 관한 결정을 연방의회나 연방회의(상원)의 동의 없이 이 지역의 유권자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의 정치가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1991년부터 두 지역의 통합을 추진하였다.

통합을 위해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 정부는 1996년 5월 5일에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까지 약 5년 동안 준비하였다. 이 준비과정 중에서 중요했던 단계를 보면

- 1991년 2월: 베를린 시의회에서 두 지역의 합병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정
- 1991년 2월 29일: 두 지역의 합병을 위한 양 정부의 공동위원회가 구성되어 합병을 위한 기본원칙을 1992년 말까지 만들기로 합의
- 1992년 12월 5일: 공동위원회에서 1999년에 합병을 실현하기 위한 초안을 제출. 1993년 가을에 합병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1994년 가을 또는 늦어도 1995년 초에 주민투표를 실행하기로 계획
- 1993년 12월 12일, 19일: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정부에서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
- 1993년 12월: 재정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통합조약의 작성 실패
- 1994년 3월 18일: 연방회의(상원)에서 두 지역이 통합할 경우 과도기에 재정적 지원을 약속
- 1994년 6월: 공동위원회에서 통합조약의 초안을 작성
- 1995년 2월: 브란덴부르크주 의회에서 통합에 관한 협상을 지속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
- 1995년 4월 27일: 에버하드 딥켄 베를린 시장과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

덴부르크주 총리가 통합조약에 서명

- 1995년 6월 22일: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 의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으로 통합조약 승인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통합을 찬성하는 그룹과 반대하는 그룹 사이에 많은 토론이 있었다. 합병을 찬성하는 그룹은 사회민주당(SPD), 기독교민주당(CDU), 경영자협회, 노조연합 그리고 반대하는 그룹은 브란덴부르크 사민당 평의회, 공공노조, 민주사회당(PDS), 브란덴부르크 녹색당 등이었다.

찬성하는 그룹의 논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유리
- 두 지역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할 일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향상
- 연방과 유럽연합에서 비중이 높아짐
- 공동으로 지역개발을 계획하는 것이 가능해짐
- 도시와 시골 지역에서 주민에게 현대적이면서 주민과 더욱 밀접한 행정서비스 제공
- 통합을 통해 연방 전체에서 통일과 개혁 프로젝트의 실험장이 될 수 있다.
- 역사적으로 하나의 지역

이에 반해 통합을 반대하는 그룹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합을 거부하였다.

- 연방 전체의 새로운 개편만이 균형 잡힌 지역 구조를 보장
- 모든 문제는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간의 협정과 행정협정을 통해 해결 가능

- 교육문제의 경우 아직 통합할 수 있을 만큼 상황이 좋은 것이 아님
- 베를린의 각 구의 경우 재정적으로 스스로 설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며, 통합 후에 브란덴부르크의 지역들이 베를린을 위한 특별규칙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모두 서로가 상대방이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음
- 수도 이전, 행정 개혁 그리고 통합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 하는 것이 베를린에 쓸데없는 큰 부담을 줄 수 있음.

1996년 5월 5일에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에서 동시에 실시된 두 지역의 통합에 관한 주민투표의 결과를 보면 베를린에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중에는 53.4%가 찬성한 반면 브란덴부르크에서는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62.7%가 반대표를 던졌다. 특기할 것은 베를린의 경우에도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유권자들의 투표결과 또한 완전히 상이하였다는 것이다(서베를린 58.7% 찬성, 동베를린 44.5% 찬성). 서베를린지역의 주민들이 대부분 통합을 찬성한 반면 브란덴부르크와 동베를린에서는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졌다.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의 통합을 위한 첫 번째 시도가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실현되지 못했지만 두 정부의 정치가들은 오랫동안 통합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었다. 주민투표로 인해 통합이 무산되었던 1996년 11월에 딥켄 시장과 슈톨페 주총리는 통합이 무산되었다고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의 협력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다시 통합을 위한 시도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를 통합하려는 구체적인 시도는 없다. 행정적인 통합이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베를린-브란덴부르크-신공항 프로젝트가 보여 주듯 두 지역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기 때문에 교통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분야에서 협조하는 틀이 갖추어졌다.

제3장

작센과 작센-안할트주를 중심으로 본 신연방주의 경제 발전

제1절 경제 발전 현황과 성장 역동성

1990년 통일 이후 5개의 신연방주들은 연방제의 틀하에서 각자의 고유한 방식으로 발전했다. 2018년 현재 신연방주들의 발전 현황을 분석해 보면 이들 간에 유사점과 차이점이 공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특히 경제, 노동시장, 공공재정에 관한 통계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신연방지역 전체 경제의 발전 상황을 보여 주는 중요한 지표는 국가가 전 국민에게 균등한 생활조건을 보장해 주어야만 한다는 독일 기본법에 명시된 정치적 의무가 비교적 잘 수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1인당 실질소득과 주민 가정의 시설, 설비의 경우 지역 간의 격차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동독지역의 1인당 평균 경제소비력의 경우 2010년에 서독지역 주민 1인당 평균 경제소비력의 80~85%에 달했다. 통일 20주년이었던 2010년에 독일에서는 더 이상 동서 간의 차이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지역 간의 격차를 이야기하려면 오히려 남북의 격차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그래도 구동독지역의 5개 신연방주들의 상황과 서독지역의 연방주들의 상황이 완전히 균등해졌다고 할 수는 없다. 구동독지역의 실업률은 서독지역에 비해 여전히 높고, 노동 생산성과 임금, 소비율은 2010년까지도 서독지

역의 80% 수준에 정체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경제학자 미하엘 부르다(Michael Burda) 교수는 평균을 상회하는 구동독지역 산업규모 성장과 연관지어 "구동독의 산업붕괴 현상이 멈춰졌고 개발 단계로 접어들었다"라는 평가를 내렸다.[24]

표 2-1〉 동서지역 삶의 조건의 균등화-가정 내 가전기기 보유율

(단위 : %)

	1993	1998	2007
소비재	동/서	동/서	동/서
개인용 자동차	66/74	71/76	72/78
전화시설	49/97	94/97	95/96
휴대전화	–	11/11	82/82
개인용 컴퓨터	16/22	36/43	70/73
인터넷망	–	5/9	56/61
텔레비전	96/95	98/95	97/96
영상녹화기(캠코더)	36/48	61/63	71/69
냉장고	95/95	99/99	99/99
전자레인지	15/41	41/53	68/69
식기세척기	3/38	26/49	54/64
세탁기	91/88	94/91	99/95(2006)
전기포트	2/24	14/33	22/44

출처: 독일경제연구소, 퀼른 2009; 전 가재도구 조사

[24] C. Burda, Wirtschaft in Ostdeutschland im 21 Jahrhundert, in: APUZ 30-31/2010, p.26.

표 2-2〉 동서지역 삶의 조건의 균등화-거시경제 지표들

(단위 : 서독지역 대비 %)

	소비력	시간당 명목 임금	근로자 평균 임금	노동 생산성 (시간당)	노동 생산성 (근로자 1인당)	1인당 총생산	실업률	취업률
1991	62	k.A.	57	k.A.	45	43	165	137
1992	67	k.A.	68	k.A.	57	50	225	121
1995	78	k.A.	80	k.A.	72	67	163	108
1998	80	73	81	68	74	67	186	107
2000	81	74	81	70	76	67	221	104
2002	81	75	81	74	79	69	226	102
2004	80	76	81	74	79	70	214	100
2006	80	77	82	74	79	70	188	103
2008	k.A.	79	82	76	79	71	204	104

k.A.= 정보가 제시되지 않음.

출처: 연방통계청, 지방의 국민경제 통계; 연방노동청.

1990년 이후 신연방주들의 발전은 각 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입지조건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이 그대로 반영된다. 2009년과 2010년에 작성된 지역별 입지조건 및 경쟁력에 관한 비교조사를 바탕으로 작센주와 작센-안할트주를 직접 비교해 보면[25] 작센주가 경제력, 재정안정도, 실업률, 공공 부분 고용률, 무역규모 등 주요 지표에서 작센-안할트주뿐만 아니라 다른 신연방주들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독지역의 연방주들과 비교하면 구동독지역의 신연방주들의 주요 지표가 2010년에도 여전히 뒤처진 것을 볼 수 있다. 절대적인 수치로만 본다면 신연방주들은 고용률, 소득 수준에서 서독지역의 연방주들보다 훨씬 낮다. 이는 구동독지역의 신연방주들이 동독 체제의 경제가 붕괴된 이후, 경제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더디게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25] 2009/2010 연방주의 입지경쟁력: 수입-고용-안전(문서번호 270).

표 2-3〉 독일 연방주의 주요지표 비교

	순위	점수				
		총계	노동시장	복지수준	체제	입지
바이에른	1	64.9	18.9	16.2	19.1	10.7
바덴-뷔르템베르크	2	64.3	19.0	16.0	18.4	10.9
함부르크	3	62.5	14.1	21.2	16.3	10.9
헤센	4	58.5	15.0	16.6	16.9	10.1
라인란트-팔츠	5	54.7	16.3	12.5	16.1	9.8
슐레스비히-홀슈타인	6	51.1	14.5	12.4	14.2	10.0
니더작센	7	50.1	13.1	12.2	14.9	9.9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8	49.5	11.9	14.3	13.3	10.1
자를란트	9	47.1	12.0	12.3	13.7	9.1
브레멘	10	46.5	8.1	15.4	12.6	10.4
튜링겐	11	45.8	12.0	8.0	16.1	9.6
작센	12	44.1	10.6	8.4	15.2	9.9
브란덴부르크	13	43.6	11.5	8.8	14.1	9.3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14	40.1	9.0	7.6	14.1	9.4
작센-안할트	15	39.3	8.8	7.9	13.2	9.5
베를린	16	37.8	5.4	10.1	11.8	10.5
평균		50.0	12.5	12.5	15.0	10.0

출처: 쾰른 독일경제연구소, 신사회적 시장경제 운동(Initiative Neue Soziale Marktwirtschaft)

2009년도 각 지역의 개인 구매력, 부채 등의 정보를 포함, 지역 발전 현황을 조사하면 소득과 같은 복지 척도의 측면에서 신연방주들의 평균치가 서독지역 연방주들의 평균치보다 낮다.

표 2-4〉 신연방주들의 경제 관련 현황(2009년도)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작센-안할트	작센	튜링겐	베를린을 제외한 신연방주
면적(km^2)	891	29,480	23,185	20,447	18,418	16,172	107,703
인구(1,000당)[1]	3,425	2,530	1,673	2,398	4,205	2,278	13,084
주의 비율(%)		19.3	12.8	18.3	32.1	17.4	100.0
인구밀도(사람수/km^2)[1]	3,844	86	72	117	228	141	121
2008년 국내총생산[2] 물가변동분 조정 (전년 대비 변화율. 단위: %)	1.6	1.0	1.2	1.8	0.9	1.0	1.1

각 물가에서 (단위: 10억 유로)	87.5	54.9	35.9	53.8	95.1	49.8	289.6
1인당총생산(각 물가에서), (단위: 유로)	25,554	21,721	21,439	22,427	22,620	21,875	22,130
생산인구 1인당, (단위: 유로)	53,418	52,473	48,982	52,790	48,518	48,491	50,040
2008년도 제조업 총부가가치 생산액[2] 물가변동분 조정 (전년 대비 변화율 단위: %)	1.8	4.4	5.7	4.8	2.7	3.4	3.8
2008년도 총부가가치 생산액[2] 물가에서(단위: 10억 유로)	78.5	49.3	32.2	48.2	85.3	44.7	259.7
– 농업, 임업, 어업	0.1	0.9	0.8	0.9	0.9	0.6	4.1
– 제조업(건설업 제외)	12.0	10.1	4.9	12.3	21.0	12.1	60.4
– 그 가운데 제조업 비율	9.9	7.8	4.2	10.4	17.9	10.6	50.9
– 건설업	2.5	2.6	1.7	2.9	5.2	2.7	15.1
– 무역, 요식숙박업, 교통	12.3	9.3	6.4	9.4	13.2	6.7	45.1
– 금융, 임대, 서비스	27.0	13.4	8.3	10.1	23.0	10.8	65.6
– 공공, 민간 서비스업	24.5	12.9	10.1	12.7	22.0	11.8	69.4
2007 경제활동 비율[3]	74.3	79.8	79.2	78.0	78.8	78.8	77.9
근무지에서의 취업자, 단위: 천 명[2]	1,637	1,046	733	1,019	1,963	1,029	5,789
실업자[4][5]	245,250	178,137	128,243	180,914	302,924	149,779	1,185,247
실업률[4][5] – 당월 실업률	14.5	13.2	14.6	14.5	14.0	12.5	13.9
– 작년 동월 실업률	14.5	13.9	15.0	14.9	13.6	12.0	13.9
단기노동자[4][5]							47,900
제공 일자리 수[4][5]	32,338	15,641	14,028	16,069	25,129	14,282	117,487
사회보험 가입 정규 근로자[4][5]	1,096,000	720,500	501,000	731,600	1,368,000	715,700	5,133,000
등록된 **직업교육훈련 신청자**[4][5]	8,257	7,183	5,391	6,715	12,402	7,389	47,337
등록된 **직업훈련 자리수**[4][5]	5,016	5,680	5,150	5,881	9,085	6,145	36,957
영업신고[6]	637,116	541,196	346,317	486,591	941,673	504,880	3,457,773
2008년도 영업신고	41,143	23,464	14,588	16,622	39,526	18,007	153,350
2008년도 신규창업 건수	36,508	19,060	12,219	14,315	33,398	14,871	130,371
폐업신고[6]	472,621	369,024	243,059	351,282	645,574	362,286	2,443,846
2008년도 폐업신고	31,974	21,773	14,091	16,944	36,696	17,635	139,113
지원프로그램 **투자지원 대출 프로그램(ERP)/** **자산성 대출 프로그램(EKH)**[7] – 확약금액(단위: 백만 유로)	2,019	8,858	7,973	8,895	14,359	9,941	52,045
지역 자체지원[8](창업) – 확약금액(단위: 백만 유로)	1,602	6,892	3,759	7,672	9,988	5,845	35,759

1) 바덴-뷔르템베르크 통계청: 주 VGR(총 국민경제 산출) 조사 분과(기준일: 2008.06.30, 베를린주: 전체 도시)

2) 바덴-뷔르템베르크 통계청: 주 VGR(총 국민경제 산출) 조사 분과, 산출 기준일: 2009. 2, 베를린주: 전체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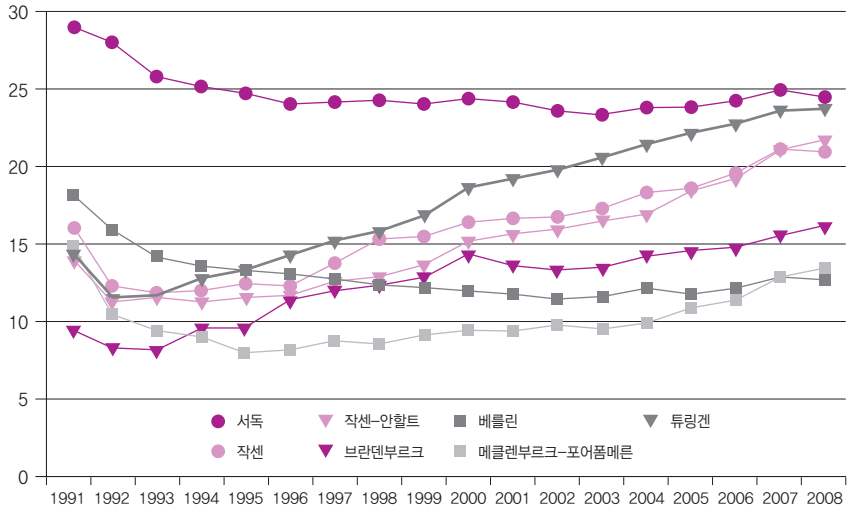
3) 연방통계청, 2007년도 인구센서스, 15~16세 각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비율, 베를린을 포함한 구동독지역

4) 연방노동청, 2009년 4월 기준(사회보험가입 정규 근로자: 2009년 2월 기준 추산: 단기 노동자: 2008년 12월: 직업교육 시장: 2009년 4월)
5) 베를린을 포함한 구동독지역, 민간 총경제활동 인구 대비 실업률
6) 연방통계청, 2008년 12월 기준, 1991년부터, 1995년부터는 베를린 동부만 포함, 1996년부터는 베를린 전체 자료
7) 연방경제부, 2008년 12월 31일 기준, 1990년 이후의 ERP 및 EHK 확약(포기, 삭감, 철회 공제 이후의 순 확약금액), 베를린을 포함한 구동독지역, 자료 안내: 구동독지역 ERP 대출, 1997년부터 EHK 고려: 약 317,000건의 확약, 대출 규모 약 390억 유로
8) 연방경제수입통계청, 1991년 1월~2008년 12월, 유럽지역개발기금(EFRE) 공동 파이낸싱(베를린주; 전체 도시)
출처: 2009 독일통일보고서.

그러나 경제 발전의 추세는 단순히 절대적인 수치의 비교만으로는 알 수 없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발전 경향을 보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성장을 위한 잠재력과 역동성을 보아야만 한다. 이와 관련해 연방정부가 발행한 2009년 독일통일보고서에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2008년 튜링겐주의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창출 비율이 23.7%로 서독지역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작센주와 작센-안할트주도 21%와 21.7%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그림 2-1〉 1991-2008 신연방주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 비율(%)

(단위 : %)



총부가가치에서 제조업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은 경제성장의 역동성을 보여 주는 지표이다. 위의 그래프는 작센-안할트주와 튜링겐주의 경제가 1992년 이후 성장 단계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실제로 2005~2008년 사이 구동독지역 신연방주들의 제조업 분야 부가가치 창출 비중이 22.9% 증가했다. 반면 서독지역에서는 13.2% 증가하였다. 금속 전자산업의 고용인력 규모가 구동독지역에서는 9.1% 증가한 반면, 서독지역의 경우는 2.9%가 증가했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지역별 경제성장의 역동성을 분석한 결과를 우리가 특히 주시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과 함께 작센-안할트주는 통일독일의 모든 연방주 가운데 역동성을 보유한 3개 지방에 포함된다. 작센, 튜링겐, 베를린이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력과 복지의 절대적 수준의 비교에서 16개 연방주 가운데 15위였던 작센-안할트주가 성장 역동성 비교에서는 1위를 차지하였다.

표 2-5〉 2009년 역동성 순위

	순위	점수				
		총계	노동시장	주택상황	체제	입지
작센-안할트	1	59.1	15.5	17.3	15.4	10.9
브란덴부르크	2	56.2	16.0	14.1	16.3	9.8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3	55.3	16.2	10.8	18.0	10.3
작센	4	55.0	14.5	14.5	16.1	9.9
튜링겐	5	54.9	14.7	14.6	16.1	9.5
베를린	6	52.3	15.0	9.3	17.2	10.9
바이에른	7	50.5	11.5	15.4	14.9	8.8
바덴-뷔르템베르크	8	50.2	10.2	16.0	13.4	10.6
브레멘	9	49.6	13.2	13.3	14.0	9.2
니더작센	10	47.4	11.4	12.6	14.6	8.9
헤센	11	46.6	9.1	11.7	16.2	9.5
라인란트-팔츠	12	46.5	11.0	12.6	13.6	9.3
슐레스비히-홀슈타인	13	45.9	11.4	10.0	14.0	10.5
함부르크	14	45.6	12.6	6.4	15.7	10.9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15	42.9	10.2	9.4	12.8	10.5
자를란트	16	41.7	7.5	12.0	11.7	10.5
평균		50.0	12.5	12.5	15.0	10.0

2009년도 작센-안할트주의 경제지수를 보면 2005년에서 2008년까지 3년 동안 생산성과 세금지출 능력(Steuerkraft)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성장을 주도한 분야는 바이엘, 토탈, 다우 화학과 같은 강력한 화학 산업과 함께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많은 기업이 정착했었다. 비터펠트(Bitterfeld) 지방의 Solar Valley, Qcell, 막데부르크시의 풍력발전산업회사 ENERCON 등이 그런 예이다. 독일 전역에서 가장 높은 성장 역동성을 보이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작센-안할트주는 발전 현황에 대한 절대적인 수치 비교에서는 15위를 기록하였다. 소비연구회의 조사에 따르면 작센-안할트의 1인당 구매력은 2009년까지도 15,548유로로 연방의 평균 18,946유로보다 분명히 떨어졌다. 작센주의 경우 2009년도 성장 역동성은 16개 연방주 가운데 4위를 기록하였지만, 절대적 수치를 기준으로 경제지표를 비교하면 12위를 기록하였다. 신연방주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결과였다.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에 작센주는 수출이 6.2% 증가했고, 1인당 소득은 7.4% 증가했다. 2010년의 역동성 비교에서 베를린을 포함한 모든 신연방주들이 상위권 6개 순서에 모여 있었다는 사실은 이들이 경제적 낙후성을 극복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절대적인 수치로 드러난 경제지표는 구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의 삶의 조건을 균등한 수준으로 만드는 과제가 완료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26]

제2절 경제 발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1. 지역 경제의 전통

통일과 체제전환 과정을 거치면서, 독일연방공화국의 새로운 일원이 된

[26] 2009 연방주 순위: 작센주의 강점/약점의 특성(문서번호 268), 2009 연방주 순위: 작센-안할트주의 강점/약점의 특성(문서번호 269), 일곱 번째 연방주 순위: 연방주 비교-누가 가장 최고로 경영했는가?(문서번호 277).

신연방주 전역에 연방 차원의 단일한 법적, 제도적 규정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 이후 신연방주들 간에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는 고유한 발전 경로가 만들어졌다. 이것은 주어진 법적 제도와 장치, 조직과 기관의 기본적인 틀 속에서 주요 행위자가 대안적 혹은 다른 행위 선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특히 1990년대 초, 신연방주 단위에서 제2차 제도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1990년 10월 3일 이후 신연방주들은 그들에게 제공된 책임권한을 활용하여 독자적으로 주헌법, 헌법재판소, 독자적인 주행정 체제와 기초자치단체 규정, 광역자치단체 규정, 재정법(Finanzgesetze)을 도입했다.[27] 신연방주의 틀에서 이루어진 2차 제도적 기관의 신설은 각 주가 독자적 양식을 가진 형태로 발전해 나가는 데 필요한 제도적인 시작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 특수성을 바탕으로 정치 및 행정 분야의 주요 행위자들이 자신들만의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다.[28] 작센주, 작센-안할트주뿐 아니라 구동독지역의 모든 신연방주의 주요 행위자들은 새로운 연방주를 구축하기 위한 자신들의 '청사진'을 갖고 있었다.[29]

신연방주의 발전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제도적 틀의 구축 외에도 체제전환과 같은 급격한 변동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 그대로 남아 있는 특별한 '전통'이었다. 동독 건국 이전부터 지역의 특성을 규정해 온 문화전통과 함께, 동독 체제하에서 발생한 심각한 환경오염, 산업의 황폐화로 인

27 작센-안할트의 기초자치단체 규정, 작센-안할트의 광역자치단체 규정(문서번호 170), '행정개혁' 보고서: 작센-안할트 행정의 새로운 조직화를 위한 제언(문서번호 187), 18차 지역대표자 회의, 자치행정 10년의 경험: 설문조사 결과(문서번호 228), 지방자치단체 개혁을 위한 세 번째 잠정 규정(문서번호 235), 지방자체단체의 자치행정 강화를 위한 규정(문서번호 242), 행정공동체의 지속발전 및 기초단체의 행정력 강화를 위한 법(문서번호 249), 기초자치단체를 행정공동체로 분류하기 위한 2차 규정(문서번호 254), 행정구역 개편법(문서번호 256).

28 작센주(州)의 기초자치단체 규정(문서번호 157).

29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이, 마침내 ... 좋은 결과로?-작센-안할트의 체제 및 기능 개혁(문서번호 272).

해 폐허가 된 지역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통일 이후 신연방주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새롭게 구축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역의 혁신 능력은 특수 전문산업, 경제적 전문기술 역량의 집중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30] 1990년 이전에 각 지역에 형성된 경제적 조건의 특성과 노동자들의 기술적 숙련도가 통일 이후 신연방주의 발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작센주와 작센-안할트주의 발전과정에서도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경제적, 문화적 '전통' 또는 '유산'이 지역의 혁신능력과 경제적, 사회문화적 복구에 중요한 영향을 준 것을 볼 수 있다. 동부 독일 은행연합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역사적으로 성장한 핵심산업이 작센주와 작센-안할트주의 경제 발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31] 작센지역은 이미 18세기에 섬유기계가 발명되었던 전통적인 산업공단 지역이다. 19세기 중반에는 캠니츠에 독일에서 처음으로 기계생산 공장이 설립된 후 여러 곳에 기계설비 제조공장이 들어섰다. 2차 세계대전까지 작센지역은 독일의 중요한 산업공단으로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다. 분단 이후에도 작센지역의 생산품은 사회주의권 국가들로 형성된 코메콘 교역권 내에서 선두의 지위를 차지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서독에서는 시장을 상실했다. 통일 이후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으로 인해 작센지역의 공단도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했다. 1991년에 13만 4천 명의 근로자가 있었지만, 1999년에는 불과 3만 2천 명의 근로자만이 남았을 정도로 1990년대 작센지역의 경제는 급격한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그러나 1997년 이후 작센주의 경제가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1997년에서 2007년 사이에 기계설비 분야의 판매량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작센주에는 2007년 현

30 InfoPort 3/2010, p.7.

31 Ostdeutscher Bankenverband e.V., Bankenblick Maschinen-/Anlagenbau, 2009년 2월호, p.6.

재 449개의 기계설비 제조 업체가 있으며, 구동독지역의 기계설비 판매량의 45%가 이 지역에 이루어졌다. 구동독지역에서 기계설비 제조 분야에 종사하는 전체 인력의 43%가 작센지역에서 근무했다.

표 2-6〉 작센주 매출, 고용 및 수출

	매출(10억 유로)	고용(명)	수출 비율(%)
1991	2.8	134,359	27.2
1995	2.7	34,915	24.3
1998	3.3	32,188	29.6
2001	4.3	34,111	37.3
2004	5.0	34,088	41.8
2007	6.6	38,535	43.5

출처: 작센 지방통계청/독일기계, 지방건설시설협회(VDMA Ost).

작센-안할트주는 1989년까지 동독 중공업의 핵심적인 지역이었다. 대규모 금속 및 제련 산업단지가 주축을 이루었던 이 지역의 경제는 통일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산 인력을 대거 감축해야만 했다. 기계설비 분야에 근무하던 인력이 1991년 8만 명에서 1998년에는 약 1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이 지역의 기계설비산업은 계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건설, 건설자재, 공구설비, 기중기, 대체에너지 설비 등이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표 2-7〉 작센-안할트주 매출, 고용 및 수출

	매출(10억 유로)	고용(명)	수출 비율(%)
1991	1.9	80,576	35.0
1995	1.2	15,309	25.7
1998	1.1	10,536	26.5
2001	1.1	11,144	22.2
2004	1.2	10,580	29.3
2007	2.0	14,100	34.1

출처: 작센 지방통계청/독일기계, 지방건설시설협회(VDMA Ost).

2. 인구 변동과 두뇌 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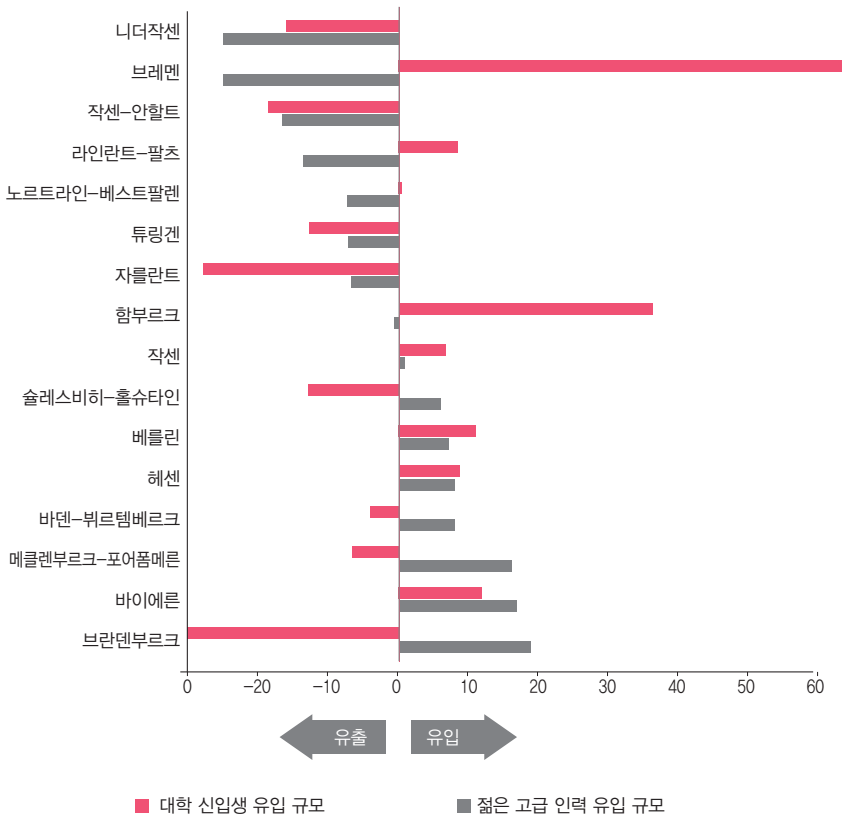
주정부 차원의 정책을 통해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요인들을 조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런 요인들이 대부분 지역 경제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또한 사실이다.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의 신연방주들은 인구 유출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작센-안할트주의 경우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통일 이후 유능한 젊은 여성 인력이 평균 이상으로 많이 구동독지역을 떠나 서독과 외국으로 이동했다. 젊고 유능한 여성이 농촌지역을 떠나는 현상은 물론 구동독지역뿐만 아니라 서독지역의 농촌을 포함, 산업사회의 대부분의 농촌지역이 겪는 문제이다. 이로 인해 농촌지역에 남겨진 젊은 남자들이 결혼 상대를 찾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서도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와 같은 정책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했다. 구동독지역의 인구 유출 문제는 통일 이후 체제전환과 함께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통일과 직접 연관된 문제로 인식되었다. 더욱이 구동독지역의 농촌지역에 남은 젊은 남성들 사이에 극도의 외국인 혐오 경향과 함께 극우적인 성향의 단체에 합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구동독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출이 지역사회에 사회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동독지역의 젊고 유능한 인재가 새로운 기회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신연방주들의 젊은이들 중의 많은 수가 구동독지역이 아닌 서독지역에 있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으로 드러난다〈그림 2-2〉. 작센-안할트주의 경우 아주 적은 수의 타지역 출신 신입생이 이 지역의 대학에 입학하는 반면, 이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중의 많은 수가 타지역의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독일 전역에 등록한 대학 신입생의 숫자를 통해 유입과 유출을 비교하면, 작센-안할트주의 상대적인 대학 신입생 규모가 2008년도에도 -19%였다. 젊은 고급 인력이 상대적으

로 좋은 기회를 찾아 이동하는 것 또한 구동독지역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다. 서독지역의 니더작센, 브레멘, 라인란트-팔츠 등과 같은 연방주들도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구 이동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통일로 인한 체제전환의 결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그림 2-2〉 대학교육을 위한 인구 이동(유입 및 유출 규모, %)



출처: 연방통계청(bundes statistisches Amt), 미시지표(Microzensus; IWH의 분석, 기술자료), 쿌른경제연구소, 특별호(IWH Sonderheft) 1/2009, p.140에서 발췌.

3. 정치적 요인-정치적 지속성

통일 이후 신연방주들이 자체적인 제도와 틀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정치

적 요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이미 위에서 언급했다. 특정한 정치적 요건이 신연방주의 발전에 특히 유리하거나 또는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규정할 수는 없다. 작센주와 작센-안할트주의 발전 경로를 비교하면 적어도 통일 이후 초기 10년간은 정치적 지속성을 보여 주었던 작센주가 그렇지 않은 작센-안할트주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달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센주는 통일 이후 기민당(CDU)이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서독의 정치인이었던 쿠어트 비덴코프가 연속으로 주총리직을 수행했다. 반면에 작센-안할트주는 1990년 이후 주의회 선거에서 기민당, 사민당, 민사당이 돌아가면서 승리했었다.

표 2-8〉 작센 주의회 선거, 선거 참여율 및 정당 비례대표 득표율

(단위 : %)

선거일	참여율	사민당	기민당	녹색당	자민당	민사당	기타	기타당	
2004.09.19	59.6	9.8	41.1	5.1	5.9	23.6	14.5	극우당	9.2
1999.09.19	61.1	10.3	56.9	2.6	1.1	22.2	6.5	공화당	1.5
1994.09.11	58.4	16.6	88.1	4.1	1.7	16.5	2.9	공화당	1.3
1990.10.14	72.6	19.1	53.8	5.8	5.3	10.2	6.0	농민당	3.6

1990년의 경우 녹색당, 신포럼(neues Forum), 연합녹색당(Bündnis-Grüne) 합산.

표 2-9〉 작센 주의회 의석 배분

선거일	총의석수	사민당	기민당	녹색당	자민당	민사당	기타	기타당		회기
2004.09.19	124	13	55	6	7	31	12	극우당	12	4
1999.09.19	120	14	76	–	–	30	–			3
1994.09.11	120	22	77	–	–	21	–			2
1990.10.14	160	32	92	10	9	17	–			1

표 2-10〉 작센주 주정부 및 주총리(1대-4대)

회기	주총리	집권당
4	슈탄로브 틸리히(Stanlow Tillich(기민당, CDU)), 게오르크 밀브란트(Georg Milbrandt(기민당, CDU))	기민당, 사민당 공동
3	게오르크 밀브란트(Georg Milbrandt(기민당, CDU)) 쿠어트 비덴코프(Kurt Biedenkopf(기민당, CDU))	기민당 단독
2	쿠어트 비덴코프(Kurt Biedenkopf(기민당, CDU))	기민당 단독
1	쿠어트 비덴코프(Kurt Biedenkopf(기민당, CDU))	기민당 단독

표 2-11〉 작센-안할트주 주의회 선거, 참여율 및 득표율

(단위 : %)

선거일	참여율	사민당	기민당	녹색당	자민당	민사당	기타	기타당	
2006.03.26	44.4	21.4	36.2	3.6	6.7	24.1	8.1	독일농민당	3.0
2002.04.21	56.6	20.0	37.0	2.0	13.3	20.4	7.1	우국당	4.5
1998.04.26	71.5	35.9	22.0	3.2	4.2	19.6	15.0	신우파	12.8
1994.06.26	54.8	34.0	34.4	5.1	3.6	19.9	3.1	공화당	1.4
1990.10.14	65.1	26.0	39.0	5.3	13.5	12.0	4.2	농민당	1.7

1990년의 경우 녹색당, 신포럼(neues Forum), 연합녹색당(Bündnis-Grüne) 합산.

표 2-12〉 작센-안할트주 주의회 의석 배분

선거일	총의석수	사민당	기민당	녹색당	자민당	민사당	기타당	기타당 득표율		회기
2006.03.26	97	24	40	–	7	26				5
2002.04.21	115	25	48	–	17	25				4
1998.04.26	116	47	28	–	–	25	16	농민당	16	3
1994.06.26	99	36	37	5	–	21				2
1990.10.14	106	27	48	5	14	12				1

표 2-13〉 작센-안할트주 주의회 지역선거구 직선후보 득표율

(단위 : %)

선거일	사민당	기민당	녹색당	자민당	민사당	기타	기타당 득표율	
2006.03.26	23.4	35.6	4.4	7.6	25.2	3.9	식별 안됨	1.3
2002.04.21	21.3	38.2	2.1	13.1	21.0	4.3	우국당	3.2
1998.04.26	39.4	27.0	3.2	6.0	23.3	1.0	공화당	0.1
1994.06.26	32.3	35.1	6.8	3.8	20.5	1.4	공화당	0.5
1990.10.14	24.6	40.8	6.6	12.4	12.0	4.2	농민당	2.0

1990년의 경우 녹색당, 신포럼(neues Forum), 연합녹색당(Bündnis-Grüne) 합산.

표 2-14〉 작센-안할트주 주정부 및 주총리(1대-4대)

회기	주총리	집권여당
5	볼프강 뵈머(Wolfgang Böhmer(기민당))	기민당, 사민당 공동
4	볼프강 뵈머(Wolfgang Böhmer(기민당))	기민당, 자민당 공동
3	라인하르트 회프너(Reinhard Höppner(사민당))	사민당 단독
2	라인하르트 회프너(Reinhard Höppner(사민당))	사민당, 녹색당 공동
1	크리스토프 바그너(Christoph Bargner) 바이마르 뮌히(Weimer Münch) 게어트 기스(Gerd Gies(기민당))	기민당, 자민당 공동

통일 직후 12년 동안 계속 집권했던 작센주 주총리 쿠어트 비덴코프는 작센주의 정치적 안정성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반면에 작센-안할트주의 경우 통일 직후 치러진 초대 주의회 선거 때부터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정부 구성에 실패했다. 선거를 치른 지 1년 반 후인 1991년 7월 4일에 초대 주총리인 게어트 기스(Gerd Gies, CDU)가 사퇴했다. 그러는 사이에 여섯 명의 장관이 교체되었고, 원내 교섭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9명의 무소속 의원이 주의회에서 활동했다. 1994년까지 12명의 기민당(CDU), 사민당, 자민당, 민사당 의원이 탈당했고, 단명의 소수-그룹이 여러 개 형성되었다. 작센-안할트주 주의회의 첫 번째 회기는 사람들의 눈에 '위기의 연속이며, 그로 인해 논란의 여지가 없는 정치적 성과도 퇴색'되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32]

작센-안할트주의 초대 주의회가 겪었던 문제들이 이후 두 차례 소수 정부가 구성되면서 해결되었는지에 관해서는 독일 학계에서도 명확한 평가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8년 동안 사민당 소수 정부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정치의 지속성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소수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지를 얻기 위해 민사당과 공조하는 문제로 인해 사민당 내의 갈등이 심해져서 정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없었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에 사민당의 소수 정부가 민사당과 공조를 취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의회정치

[32]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1993년 12월 3일 자.

가 확립될 수 있었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33]

작센-안할트주에서 사민당의 소수 정부가 민사당과 공조하는 기간 동안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대신 주정부의 부채가 증가했다. 독일의 정치학자들이 신연방주들 중에서 작센주 주정부가 성공적으로 지방발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낮은 부채율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작센-안할트주는 지방발전에 성공하지 못한 사례가 되어야 한다. 실제로 신연방주의 비교연구에서 작센-안할트주는 오랫동안 실패한 지방발전의 사례로 간주되었다. 특히 1990년대 작센-안할트주 주정부의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공공예산의 부채율이 아주 높아졌다는 점은 지방정치의 주요 행위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문제가 결국 지방발전의 성공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 주는 증거로 간주되었다. 지역별 성장 역동성 평가에서 작센-안할트주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은 이 평가에 물론 반영되지 않았다.

작센주와 작센-안할트주 외에 브란덴부르크주의 사례를 포함하면 정치적 지속성과 지방발전 간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5개 신연방주들 가운데 브란덴부르크주가 가장 높은 정치적 지속성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란덴부르크주는 경제 발전의 비교에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와 함께 신연방주의 하위그룹에 속한다.

4. 외적 요인

신연방주들의 경제 발전은 나아가 대규모 산업단지의 정착과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다. 특히 통일 이후 초기 경제 발전 과정에서 기

[33] Sabine Kropp, Regieren in Koalitionen, Handlungsmuster und Entscheidungsbildung in deutschen Länderregierungen, Wiesbaden 2001, p.218.

업단지의 정착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규모 산업단지의 유치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그 외에 지역 전체에 다양한 형태로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초대 신연방주 특임관이었던 요하네스 루데비히가 1990년대 초에 구동독지역의 발전을 위해 엄청난 규모의 재원을 투자할 때, 각 지역마다 하나씩 대기업을 세울 수 있게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34]

1990년대에 신연방주의 주정부들은 대규모 기업과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서로 경쟁했다. 이 과정에서 작센주가 특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작센주에는 드레스덴과 라이프치히를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단지가 자리잡았다. 작센-안할트주는 1990년대 중반부터 비터펠트-볼펜 지역에 태양광 에너지 단지를 유치했지만, 2010년 이후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려서 2018년 현재 비터펠트-볼펜 태양광 산업단지 자체가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다.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신연방주들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주정부의 정치적 성향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기업의 대표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되는 기업 전략이 단기적인 선거 사이클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에 의해 주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구동독지역의 대표적인 대도시인 라이프치히와 드레스덴과 주변 지역이 제공하는 높은 삶의 질이 작센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34 독일통일 총서 4권 구동독지역 인프라 재건 분야, 요하네스 루데비히 인터뷰 참조.

제3절 주정부 정책의 특징

1. 예산정책

작센주와 작센-안할트주의 경제 발전을 비교하면서 1990년대 작센주가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 주정부의 예산정책이다. 작센주의 경우 부채가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예산정책의 포커스를 맞추었다. 1990년대 이후 독일에서는 재정 적자로 인한 부채의 증가는 이자 부담의 증가로 인해 더 많은 재정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공공기관의 부채에 대해 학계와 정치권 모두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했었다. 작센주는 1990년대 초반부터 새로운 부채 증가를 엄격히 제한하는 예산정책을 펼쳤다. 작센주의 부채 수준은 1994년, 2005년 모두 서독지역 연방주들의 평균 부채 수준보다 낮았다〈표 2-15〉. 1994년 서독지역 연방주들의 평균적인 부채 수준은 1인당 5,899마르크였고, 작센주는 1인당 4,261마르크였다.

표 2-15〉 2005년 각 주(기초자치단체 포함)의 채무 현황

	1인당 부채 (유로)			부채 수준 비율 (국민총생산에서의 비율, %)		
	주	기초자치단체	총계	주	기초자치단체	총계
바덴-뷔르템베르크	3,685	604	4,289	12.0	2.0	13.9
바이에른	2,853	1,177	3,030	5.7	3.6	9.3
베를린	16,919	–	16,919	72.1	–	72.1
브란덴부르크	6,607	653	7,260	35.2	3.5	38.7
브레멘	18,564	–	18,564	50.3	–	50.3
함부르크	12,173	–	12,173	26.5	–	26.5
헤센	4,962	1,308	6,270	15.3	4.0	19.3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6,290	1,161	7,451	34.4	6.4	40.8
니더작센	5,977	951	6,928	25.4	4.0	29.4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6,032	1,344	7,376	22.3	5.0	27.2
라인란트-팔츠	6,069	1,161	7,230	25.3	4.8	30.1
자를란트	7,698	845	8,543	29.5	3.2	32.7

작센	2,822	1,170	3,992	14.1	5.8	19.9
작센-안할트	7,740	1,325	9,065	39.9	6.8	46.8
슐레스비히-홀슈타인	7,390	853	8,247	30.3	3.5	33.8
튜링겐	6,418	1,197	7,615	33.7	6.3	40.0
연방의 부채(언론추산)	–	–	10,582	–	–	38.9

출처: 연방 통계청, 자체 계산.

작센주는 1995년 말 이후부터 독일 전체의 연방주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의 1인당 부채를 가지고 있다. 바이에른주만 1995년 이후 줄곧 작센주보다 낮은 부채를 안고 있다. 반면, 작센-안할트주의 예산정책은 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았었다. 작센-안할트주의 1인당 인건비 지출은 통일 직후부터 작센주보다 높았고, 주민 1인당 순 채무 증가율도 1992년 이후 줄곧 작센주보다 높았다. 작센-안할트주의 순 채무 비율은 1993년부터 1995년 사이 작센주의 두 배가 되었다. 작센-안할트주의 재정 적자가 증가하는 중요한 원인은 높은 인건비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2003년에 작센-안할트주의 주민이 1인당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비율이 전체 연방주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2008년에는 작센-안할트주의 부채가 1인당 8,300유로로, 자를란트를 제외하면 독일 전체 연방주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35] 독일의 연구자들 중에는 주정부의 재정 적자와 주정부의 정치적 성향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 통일 이후 작센주와 작센-안할트주만 비교하면 그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독일 현대사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런 명제가 성립되기 어렵다. 기민당이 오랫동안 집권했던 연방주 또한 재정 적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통일 당시 서독의 연방주들 또한 재정 적자로 인한 부채 증가와 이

35 신연방주(州)의 재정충당 및 재정문제(문서번호 233), 부채 모니터링-재정위기로부터 지속성으로의 이동(문서번호 263), 2009 공공재정 연간보고서: 작센, 작센-안할트주(州) 보고서(문서번호 265).

자 지출의 증가로 인한 예산부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서독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주총리를 역임했던 작센주 주총리 쿠어트 비덴코프는 재정 적자가 증가하면 예산부담으로 인해 주정부가 정책을 실행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었기 때문에, 작센주에서 긴축 예산정책을 실시했었다. 반면 다른 신연방주들은 연방정부가 통일 당시 제시한 경제성장의 비전에 따라 예산정책을 세웠다. 통일 직후 연방정부는 구동독 지역이 신속하게 경제 성장을 이룩할 것이며, 경제성장으로 인해 증가하게 될 조세수입으로 통일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통일비용은 주머닛돈으로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바탕으로, 1990년 7월 1일 화폐통합과 함께 출범한 '독일통일기금'에 통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의 3분의 1은 동독(신연방주들)이 부채를 얻는 방식으로 충당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연대협약'의 협상과정에서도 연방정부와 서독지역의 연방주들은 신연방주들에게 예산정책에서 부채 허용 범위를 잘 활용하라고 종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재정정책의 경험이 전혀 없는 신연방주의 정치인들은 자본시장을 통해 지출해야 할 예산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36]

2. 사회복지정책

작센주와 작센-안할트주 간의 예산정책의 차이는 사회복지정책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일반적으로 긴축 재정과 사회복지정책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다. 긴축 재정을 실행하면 사회복지정책의 실행이 어려워지고, 반대로 사회복지정책을 확대하면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독일통일 이후 통합과 체제전환 과정에서도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노인복지시설과 함께 사회

[36] Wolfgang Renzsch, Der Haushalt des Landes Sachsen-Anhalt, Everhard Holtmann (Hrsg.), Landespolitik in Sachsen-Anhalt. Ein Handbuch, Magdeburg 2006, p.107+117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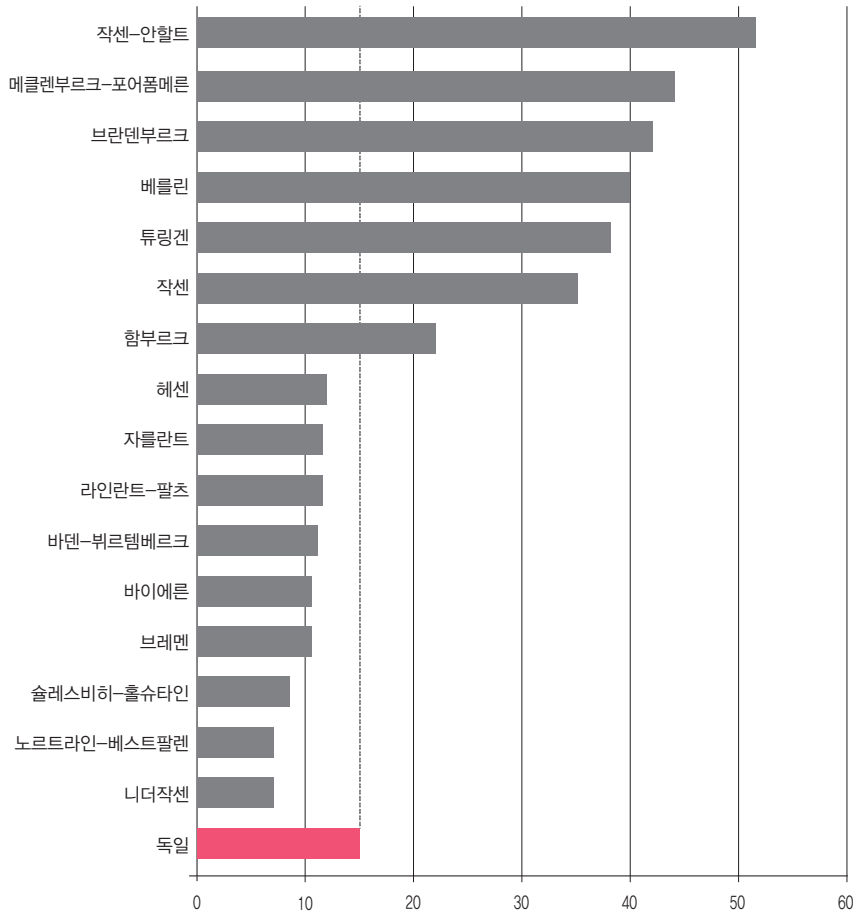
복지정책의 중요한 두 축을 이루는 탁아시설의 보급 현황도 그런 사례 중의 하나이다.

작센-안할트주의 주정부는 동독 체제하에서 보장되었던 충분한 탁아시설과 유치원의 보급 수준을 통일 이후에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다. 탁아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당연히 주정부 재정에 부담이 된다. 그것은 작센-안할트주의 재정 적자가 클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이유이다. 반면에 작센주 주정부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분야도 긴축 재정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탁아시설과 유치원이 많이 폐쇄되었다. 그 결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긴축 재정을 실시하지 않은 작센-안할트주의 경우 2008년에도 3세 이하 유아의 52%가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었던 반면 작센주는 그 수치가 35%도 되지 않았다. 탁아시설의 보급률은 작센-안할트주가 독일 전체 연방주 가운데 가장 높았다.[37] 3세 미만 아동 중 보육시설에 다니는 경우의 비율은 2008년에 작센-안할트주가 가장 높고, 이어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가 44%, 브란덴부르크주가 43%였다〈그림 2-3〉. 2009년의 독일통일보고서를 보면, 구동독지역의 신연방주들만이 새로 도입된 아동보육법이 추구하는 아동보육시설 보급률 35%의 목표를 달성한 것을 알 수 있다.

[37] 동독지역 경제의 혁신적 능력 분야, 생산 네트워크, 중점 전문 분야(BMVBW 연구)(문서번호 250)

그림 2-3〉 3세 이하 아동 중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의 비율

(단위 : %)



3. 노동시장정책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의 탈산업화 문제로 인해 실업률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공적 비용을 통해 지원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과 산업경제정책이 정책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 독일 전역에 균등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외에도 주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노동시장정

책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38] 경제 성장과 노동시장이 밀접한 연결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의 신연방주들 간의 노동정책에 관한 비교연구를 통해 주정부가 취하는 노동시장정책이 경제 성장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훨씬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주정부의 정치적 성향과 산업정책, 행정의 효율성도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시장정책의 방점을 사회정책적인 측면에 둘 수도 있고, 구조적, 정책적 측면에 둘 수도 있다. 작센-안할트주의 노동시장정책은 사회정책적인 요소가 강한 반면, 작센주는 구조정책적 요소가 강하다. 이러한 차이가 두 신연방주를 구성하는 정당의 정치적 성향에서 나온다고 하기는 어렵다. 신연방주 중에 기민당이 여당인 튜링겐주, 서독지역의 연방주 중에서도 바덴-뷔르템베르크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가 작센-안할트주와 유사한 노동시장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민당의 의회 의석 점유율이 1% 높아질 때마다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지출 규모도 10유로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그것은 주정부의 정치적 성향과 노동시장정책이 일정한 연관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39]

4. 산업정책-산업거점 클러스터 구축

신연방주의 경제 발전 경로 조사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거점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산업거점이란 한 지역에 특정 분야 또는 기술 영역의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 기업

38 Bertelsmann Stiftung(편), die Bundesländer im Fokus 2007. Aktive Arbeitsmarkt- und Beschäftigungspolitik, Gütersloh 2007, p.7 참조.

39 회복과정에 있는 작센-안할트-작센-안할트 개발경로의 경제적 내구성(문서번호 217), 2008 작센주(州) '구동독지역 재건(Aufbau Ost)' 프로그램 성과보고서(문서번호 261), 작센-안할트주(州) '구동독지역 재건' 프로그램 성과보고서(문서번호 262), 2009 연방주 순위: 작센주의 강점/약점의 특성(문서번호 268), 2009 연방주 순위: 작센-안할트주의 강점/약점의 특성(문서번호 269).

과 연구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특허권의 수를 늘리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과 같이 혁신적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산업거점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는 2000년대 초반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신연방주들은 정치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부흥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 요원하기만 한 것으로 보일 때였다. 이 시기에 작센-안할트주의 대도시인 할레에 소재한 경제연구소가 경제성장 거점의 구축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기존의 지역적 네트워크 관계와 가치창출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장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할레 경제연구소는 경고하기도 했다.[40]

경제성장 핵심 거점의 구축 상황을 보면 작센주가 2010년까지 총 16개의 산업거점을 구축했다. 반면에 작센-안할트주에는 총 3개의 산업거점이 존재했다. 구동독지역 전체를 보면 튜링겐주의 예나지역에 광학 및 전자산업 단지가 있고, 에어푸르트와 비터펠트-볼펜, 프랑크푸르트-오더 지역에 태양열 대체 에너지 산업단지, 드레스덴에 있는 마이크로 전자산업, 작센-안할트 남쪽에 위치한 화학산업, 막데부르크와 로스토크에 위치한 풍력발전 기술, 베를린에 위치한 의료기술단지, 드레스덴-츠비카우-라이프치히 지역의 자동차 산업단지 등이 있다. 독일 전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부품의 12%가 구동독지역에서 생산된다.[41] 이러한 새로운 산업거점 구축은 역사적으로 성장한 전통적인 산업지역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신연방주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중점산업 분야는 대부분 그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특성화되었던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였다.

40 동독지역 경제의 혁신적 능력 분야, 생산 네트워크, 중점 전문 분야(BMVBW 연구)(문서번호 250).

41 2009년 독일통일보고서 p.10.

5. 주택정책

인간다운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속한다. 작센-안할트주의 주헌법 40조, 작센주 주헌법 7조에는 주택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와 기초자치단체는 주택건설지원을 통하여 기존의 주거공간을 보존하며, 다른 적절한 조치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적절한 조건에 맞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42]

주택정책은 위에서 설명한 다양한 정책적인 요소들이 모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이다. 한편으로는 거시정책적인 규정 이전의 틀에서 통일 이전 서독에 존재하던 법규정과 지원 프로그램이 그대로 구동독지역에도 적용되게 되었다. 반면에 이런 법규정의 일부는 신연방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과 문제의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 결과 기존의 연방법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만 했다. 나아가 신연방주와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실무 차원에서 비형식적인 방법으로 기존 법령의 규정을 주어진 문제와 수요에 맞추어서 유연하게 해석하고 조정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주택 영역에서 지역별로 상이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1991~1994년 사이에 작센-안할트주의 할레와 작센주의 드레스덴에서 주택 분야 지원정책 사례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1990년대 초반 주택문제를 담당하던 행정 관료와 정책 실무 담당자들의 유연한 적응능력을 잘 볼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주택건설 지원 대상자와 이익단체, 국가정책 행위자와 지방정책 행위자 간에 협력을 실험하는 것도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43]

---

42 작센-안할트주 주헌법 40조 제1항.

43 경직성과 적응 유연성 사이-체제 붕괴와 이익조정 상황에서 1991-1994 작센-안할트와 작센의 주택정책 지원 프로그램 실행(문서번호 215).

나가며

독일통일 이전에 동독 과도개혁 정부에 의해 도입된 5개의 주 단위의 행정기구는 통일과 함께 구동독지역의 체제전환 작업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신연방주가 되었다. 통일 당시 신연방주들은 제도적으로는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연방 차원에서 기본적인 제도와 체제가 이미 정립되어 있는 상태였고, 5개의 신연방주 모두 서부 독일지역의 연방주들로부터 재정과 인력을 지원받았다. 체제전환과 함께 진행된 이 지역의 경제적 붕괴 또한 5개의 신연방주에서 유사한 영향을 미쳤다. 축적된 자본의 부재, 생산된 물품의 전통적인 판매시장이었던 동유럽의 경제적 붕괴, 세계시장에서의 낮은 경쟁력, 미미한 경제적 혁신역량 등과 같은 단어들이 체제전환기 구동독지역의 5개 신연방주의 경제적 상황을 일반적으로 특징짓던 공통적인 단어였다. 그러나 1990년대 제도적인 체제전환과 경제적인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구동독지역의 신연방주들은 경제적인 성장 역동성을 지닌 지역이 되었고 지역경제를 이끄는 산업거점이 구축될 수 있었다.

통일 이후 5개의 신연방주들은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전통에 따라 각기 상이한 발전 경로를 거쳤다. 경제적, 사회적 발전 수준도 그에 따라 서로 차이점을 보인다. 작센주와 작센-안할트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연방주들의 발전과정에서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지역에 존재하는 내생적인 발전 잠재력이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발전 잠재력은 특히 생산입지로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독일의 경우 19세기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산업전통이 통일 이후 신연방주의 발전과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지역 내에 존재하는 성장 잠재

력은 특히 정치적 역량, 기업가적 능동성과 결합되는 지역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는 지역 발전에서 지방정부의 정치적 역량과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 항상 강조된다. 통일과정에서 관찰된 신연방주의 발전 경로를 보면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치적 역량의 성격을 규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확고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역 경제의 성패에 따라 정치적 역량의 존재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인과관계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통일과정에서 구동독지역의 5개 신연방주들이 연방주의의 원칙에 따라 많은 영역에서 독자적인 정책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그에 대한 책임 또한 졌어야만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에 따라 5개의 신연방주들이 독자적인 발전 경로를 선택할 수 있었다. 통일 이후 2010년까지도 작센주가 지역 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에서 작센-안할트주보다 앞선 데에는 작센지역이 역사적으로 산업지역이었다는 전통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작센주의 주정부를 구성한 정책 결정권자들이 1990년대 초부터 부채 관리에 초점을 맞춘 긴축 예산정책을 선택했던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적절한 규모의 부채 관리를 통해 경제지원 정책이 장기적으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작센-안할트주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작센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었던 경제 발전 수준을 만회하는 데 성공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이 평균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개발 역동성이 있었기 때문이고, 동시에 1990년대 말 이후 작센-안할트주의 주정부의 정치적 역량이 이런 잠재력이 효과를 드러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결국 긴축 예산정책을 선택한 작센주의 정책 결정자와 사회구조의 개선을 위한 복지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던 작센-안할트주의 정책 결정자들도 시기와 조건에 따라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5개 신연방주들 중에서 경제 발전에 가장 성공한 것으로 알려진 작센주와 경험적인 조사에서 가장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작센-안할트주의 사례가 보여 주는 것은 무엇보다 통일된 독일의 기본법에 명시된 연방주의 원칙이 통일과정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다.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은 연방주의 원칙에 따라 구동독지역에 구축된 5개의 신연방주들이 독자적인 길을 갈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보장했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범해진 정치적인 오류의 결과를 연방주 차원에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 주었다. 지방분권적 정치구조로 인해 '구동독'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5개의 신연방주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적 정체성이 형성되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구동독지역에 신속하게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과정에 중요하게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독일통일 총서 30

연방주 구축 분야 관련 정책문서



연방주 구축 분야 관련 정책문서

독일 베를린 자유대 한국학과 통일연구팀



문서 목록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	'국가연합' 구상 초안–호스트 엠케, 사민당	1990년 1월 30일	서독 연방의회 사민당 원내 부대표 호스트 엠케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51
2	동독 행정개혁 실행을 위한 조치 및 기본원칙과 목표	1990년 2월 1일	동독 내각위원회	Bundesarchiv, BArch, DC 20–I/3/2904, 12. Sitzung des MR vom 1. Febr. 1990
3	동독 행정개혁을 위한 기본 원칙 및 목표와 조치–정부 위원회 및 지역 평의회 심의	1990년 2월 9일	동독 내각위원회, '행정개혁' 정부 위원회 사무관 두덱 박사 인솔하의 업무팀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401 Nr. 24510
4	연방정부 수상 헬무트 콜과 연방주의 주총리들 간의 회의–동독과의 협상과 연방정부와 연방주 간의 재정적 부담에 관한 논의	1990년 2월 15일	서독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총리 요하네스 라우 외 각 주 대표, 헬무트 콜 수상, 자이터스 수상청장, 연방정부 각 부처 장관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185 S. 834f (digitale Edition)
5	동독의 지역 재편성에 대한 보고서	1990년 2월 19일	칼하인츠 블라쉬케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401 Nr. 24509
6	구동독지역 언론에서 다뤄진 서독의 행정지원	1990년 2월 22일–10월 11일	라우지처 신문, 매르키셰–오더 신문	Dieter Grunow. Verwaltungstransformation zwischen politischer Opportunität und administrativer Rationalität. Bielefeld 1996.
7	연방정부 수상청과 각 주정부의 총리실 대표단과의 회의	1990년 3월 2일	연방수상청, 연방수상청장 자이터스, 각 연방주 총리실장, 연방정부 외무장관 킹켈, 경제 차관 폰뷰어젠 외 다른 연방정부 차관들	Bundesarchiv, BArch/B 136/29247, 122 – 14020 Mi 1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8	브란덴부르크주의 초기 상황에 대한 분석과 포츠담, 코트부스, 프랑크푸르트-오더 세 구역의 브란덴부르크주의 재건 참여 비율	1990년 5월	브란덴부르크주 준비를 위한 조정위원회, 포츠담, 프랑크푸르트-오더, 코트부스 구역위원회의 직원들, 전문가, 원탁회의 대리자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401 Nr. 21433
9	주 재편을 포함한 동독 내 주 신설에 관한 법 제안을 위한 결의문	1990년 5월 2일	동독 내각위원회	Bundesarchiv, DC 20-I/3/2947, 4. Sitzung des MR vom 2. Mai 1990
10	동독 최고인민회의 토론-게마인데와 란트크라이스의 자치행정에 관한 법	1990년 5월 10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0. Wahlperiode, 6. Tagung
11	동독의 게마인데와 란트크라이스의 자치행정에 관한 법(기초단체법)	1990년 5월 17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Gesetzblatt der DDR 1990 I/28, S. 255ff
12	통일된 독일의 연방국가적 질서를 위한 연방주들의 기본 입장	1990년 7월 5일	주총리회의, 주총리회의 의장 요하네스 라우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342 und 342A
13	기초자치단체, 도시, 광역자치단체 재산법(지방자치단체 재산법)	1990년 7월 6일	동독 최고인민회의, 동독 기초자치단체, 동독 광역자치단체	Gesetzbla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rlin, den 20. Juli 1990, Teil I, Nr. 42, Seiten 660-661.
14	독일민주공화국 내 주 설립에 관한 헌법(주도입법)	1990년 7월 22일	동독 인민회의, 제10차 임기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0. Wahlperiode, Drucksache Nr. 84 a
15	통일조약-제37조 교육	1990년 8월 31일	서독 정부, 동독 정부	BGBl. II, S. 885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6	독일통일에 관한 동독과 서독 간의 조약(통일조약)–발췌: 연방주, 행정 체계 구축과 공공직에 관한 규정	1990년 8월 31일	서독, 동독	Rechtsportal des Bundesministeriums der Justiz, http://www.gesetze-im-internet.de/einigvtr/EinigVtr.pdf (Stand 08.06.2018)
17	3개 구역(Bezirk)의 대표들에 의해 수정된 주헌법 초안	1990년 9월	코트부스, 프랑크푸르트-오더, 포츠담 구역의 정부대리자들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401 Nr. 22897
18	베를린 행정 통합을 위한 기본 틀	1990년 9월 14일	베를린주, 서베를린 시장 에리히 페촐트, 동베를린 시장 토마스 크뤼거	Schreiben der Senatsverwaltung für Inneres/Magistratsverwaltung für Inneres.
19	신연방주의 환경행정 구축 및 동독 환경부의 기구와 시설의 인계–동독 환경부, 연방환경부 및 신설된 동독 주 대표들 간의 회의	1990년 9월 20일	동독 환경부, 서독 환경부, 신연방주 환경 관련 부서 대표	Bundesarchiv, BArch/DK 5/4338
20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튜링겐주 및 동베를린지역의 일반교육학교 재정비를 위한 기본 원칙 및 권고	1990년 9월 26일	공동교육위원회	Sekretariat der Ständigen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ok. sc101, Typoskript,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 (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225–228
21	브란덴부르크주 환경 상황–동독 환경부 작성 자료	1990년 9월 26일	동독 환경부	Bundesarchiv, BArch/DK 5–4339
22	베를린 주법의 단일화에 관한 법	1990년 9월 28일	베를린 국회의사당, 베를린 구의회 회의	Archiv der Berliner Senatsverwaltung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Forschung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3	동독에서 취득한 교사 자격의 인정에 관한 임시 기본 원칙	1990년 10월 5일	각 연방주의 교육부 장관 및 교육부 위원	Beschluss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om 05.10.1990. Aus dem Archivraum der Berliner Senatsverwaltung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Forschung.
24	교사자격시험과 교사 자격의 상호 인정	1990년 10월 5일	각 연방주의 교육부 장관 및 교육부 위원	Beschluss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om 5. 10. 1990
25	시민교육/교육 · 문화/교육 및 청소년을 위한 베를린 시의회 회의록	1990년 10월 10일	시민교육 · 교육, 문화 · 교육 및 청소년을 위한 베를린 시의회, 쥐빌레 폴크홀츠 위원, 학교, 직업교육 및 스포츠 행정처	Archiv der Berliner Senatsverwaltung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Forschung
26	베를린의 통합이 학교에 미치는 영향	1990년 10월 12일	학교, 직업교육 및 스포츠 위원회, 교육행정관리, 모든 공립 및 사립학교, 각 관할지역의 학교감독 교육공무원, 관할지역의 구청, 민중교육 부서	Rundschreiben V Nr. 102/1990. Archiv der Berliner Senatsverwaltung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Forschung.
27	신연방주 주정부 방송담당관 회의–신연방주 방송위원회와 방송 담당 특임관 선출	1990년 10월 15일	신연방주 방송담당관, 방송 담당 특임관	Tichy, Roland; Dietl, Sylvia (Hrsg.): Deutschland einig Rundfunkland? Eine Dokumentation zur Wiedervereinigung des deutschen Rundfunksystems 1989–1991, München 2000, S. 245–246
28	브란덴부르크 주의회와 주정부의 업무 능력을 일시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	1990년 11월 1일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Gesetz– und Verordnungblatt Brandenburg 1990 S. 2ff
29	동베를린 시행정부 해체 후 전(全) 베를린 중앙행정의 인력 문제	1990년 11월 22일	서베를린 시장 에리히 페촐트, 동베를린 시장 토마스 크뤼거	Senatsverwaltung für Inneres – V C 3; Magistratsverwaltung für Inneres, V
30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 간에 체결된 포괄적 협력에 관한 협정	1990년 11월 27일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	Landesarchiv Nordrhein–Westfalen; MBl. NW. 1991 S. 283.
31	동독 출신의 판사와 검사의 재임용에 대한 브란덴부르크주 결정 기준	1990년 11월 29일	브란덴부르크 주법무부, 판사선출위원회, 검사임명위원회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600 Nr. 190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32	1990년 12월 6일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의 정부 성명	1990년 12월 6일	브란덴부르크 주총리실,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Staatskanzlei der Landesregierung Brandenburg, https://www.brandenburg.de/media/1168/regerkl_rung_90.pdf (Stand 18.07.2018)
33	베치르크(동독의 광역행정구역으로 한국의 도에 해당: 역주)와 지자체 수준의 행정조직	1991년	위르겐 슈퇴르첼 교수	Stölzel, Jürgen: Verwaltungsorganisation auf Bezirks– und Kommunalebene – Grundprobleme der bezirklichen und kommunalen Neuorganisation. in: Rainer Pitschas (Hrsg.), Rechtsve:reinheitlichung und Verwaltungsreform in den neuen Länder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chriften des WIÖD Bd. 12, Königswinter 1991„ S. 134 ff.
34	가입지역 내 연방공무원 조직에 대한 검증 청구(BGBBBBewAnfV)	1991년 1월 9일	연방내무부	http://www.buzer.de/gesetz/5026
35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법원구조법 초안	1991년 1월 16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총리 고몰카,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법무 장관 보른	Landtag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107
36	사회, 건강, 노동 업무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 간의 행정협약을 위한 초안	1991년 1월 23일	브란덴부르크주 노동 · 건강 · 사회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노동 · 사회 · 건강 · 여성부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600 Nr. 203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37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법원구조법 의결 권고	1991년 1월 30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법사위원회,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법사위원회장 부스케 기민당 의원,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법무부 장관 보른	Landtag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130
38	작센-안할트 주정부에 의한 문화사업의 지원-작센-안할트 주의회 제안서 및 결의방안	1991년 2월 15일	작센-안할트 주의회, 문화미디어상임위원회, 내무상임위원회, 녹색당, 민사당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n 1/190, 1/208 und 1/502
39	문화 프로젝트의 지원 제안에 관한 작센-안할트 주의회 첫 번째 심의	1991년 2월 21일	작센-안할트 주총리 대리 브루너, 작센-안할트 주의회 의원 다수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10, S. 484-491
40	신연방주의 재정 구조	1991년 3월 1일	함부르크 경제연구소 울리케 데니히	Wirtschaftsdienst (Zeitschrift für Wirtschaftspolitik), 1991, Heft 3, S. 125-131
41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택정책에 관한 주의회의 논의	1991년 4월 10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내무 장관 게오르크 디데리히,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Landtagsdokumentation Mecklenburg-Vorpommern, Plenarprotokoll 1/16, S. 678-690
42	사법 영역(Rechtspflege)에서의 협력을 위한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 간의 행정협정 초안	1991년 4월 12일	브란덴부르크주 법무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법무부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600 Nr. 203
43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판사법 초안	1991년 4월 18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총리 고몰카,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법무 장관 보른	Landtag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347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44	인민군 군부대 지역의 이용에 대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의회의 토론	1991년 4월 25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의원 골트벡, 링스토르프, 틸, 볼링거, 클로스터만, 프리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국방 장관 슈톨텐베르크	Landtagsdokumentation Mecklenburg-Vorpommern, Plenarprotokoll 1/19, S. 817-822
45	신연방주의 행정 발전	1991년 5월 1일	라이너 피챠스 교수	Deutsches Verwaltungsblatt, 106. Jahrgang, Heft 9, S. 457-466 (Aufsatz auf Basis eines Vortrags des Verfassers auf dem vom Wissenschaftlichen Institut Öffentlicher Dienst e.V. im Dezember 1990 veranstalteten Symposium in Dresden zur Rechtsvereinheitlichung und Verwaltungsreform in den neuen Ländern).
46	튜링겐주 행정법원법의 실행에 관한 법	1991년 5월 14일	튜링겐 주총리 두착, 튜링겐 주의회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334
47	연방교통계획에 철도노선을 포함시키는 것에 관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의 제안	1991년 5월 15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기민당 대표 에크하르트 레베르크	Landtagsdokumentation Mecklenburg-Vorpommern, Drucksache 1/402 (neu)
48	연방교통계획에 철도노선을 포함시키는 것에 관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의 제안에 대한 토론	1991년 5월 16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경제 장관 콘라트-미하엘 레멘트, 문화부 장관 오스발트 부츠케, 노동보건부 장관 클라우스 골레어트,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의원 다수	Landtagsdokumentation Mecklenburg-Vorpommern, Plenarprotokoll 1/21, S. 910-915
49	주택정책과 임대료 규정에 대한 주의회의 질의에 대한 작센주 내무 장관의 답변	1991년 5월 16일	작센 주의회, 작센주 좌파/민사당 원내대표 클라우스 바틀, 작센주 내무 장관 루돌프 크라우제	Landtagsdokumentation Sachsen, Drucksache 1/400
50	튜링겐주 판사와 검사 인적사항 조사지와 관련된 질의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	1991년 5월 23일	튜링겐주 법무부, 튜링겐 주의회 의원 뷰히너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365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51	자방자치단체 시, 게마인데와 란트크라이스로 국유재산을 이전하는 것에 관한 질문과 답변	1991년 6월	신탁관리청	Treuhandanstalt
52	브란덴부르크 방송규정–법안에 대한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심의	1991년 6월 12일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각 정당 대표, 주정부 총리실장 린데 차관	Landtag Brandenburg, Plenarprotokoll 1/19 (S. 1459–1467)
53	통일조약 37조 규정에 의거 동독법에 따라 이수한 교사자격 인정	1991년 6월 14일	독일연방공화국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 회의 사무국	Beschlusssammlung der Kultusministerkonferenz, Beschluss Nr. 428.1
54	작센주 환경행정의 구축–작센 주의회 질의에 대한 작센주 환경부 장관의 답변	1991년 6월 17일	작센 주의회, 작센주 환경부 장관 바이제, 작센 주의회 의원 요하네스 게어라흐	Sächsisch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467
55	신연방주를 위한 행정 인력 지원(니더작센과 작센–안할트주 간의 협력)	1991년 6월 18일	니더작센주 내무부 행정청	Niedersächsisches Ministerialblatt, Nr. 21/91
56	작센주 학교법–작센 주의회 제2차 법안 심의	1991년 6월 22일	작센 주의회	Plenarprotokoll Sächsischer Landtag, 1. Wahlperiode, 21. Sitzung
57	브란덴부르크주 판사 및 검사 채용을 위한 인적검사 질문지	날짜 미상–1991년경	브란덴부르크주 법무부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600 Nr. 190
58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와 노르트라인–베르트팔렌 주정부 간 교육 및 스포츠 분야에 있어 행정적 협력에 대한 협정 초안(보고서 및 토의)	1991년 7월 3일	브란덴부르크주 문화부 차관 베쉬,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회 학교 및 직업교육위원회	Parlamentsdokumentation Landtag Nordrhein–Westalen, Ausschußprotokoll 11/299, 15–26
59	작센주 학교법(SchulG)	1991년 7월 3일	작센 주총리 쿠어트 비덴코프, 작센주 문화부 차관 볼프강 노박	Sächsisches Gesetz– und Verordnungsblatt Nr. 15/1991 – Ausgabetag: 9. Juli 1991
60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명예판사의 비밀경찰 연루 여부 검토에 대한 주의회의 결정	1991년 7월 3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법사위원회,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사민당, 좌파당/민사당 의원, 법사위원회장 부스케 의원,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Landtag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625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61	신연방주의 행정구축–연방의회 원내 사민당의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1991년 7월 10일	연방내무부, 연방의회 사민당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916
62	서독에서 파견되어 브란덴부르크에서 근무 중인 행정요원 명단 표(1991년 6월 15일 현재)	1991년 7월 15일	토마스 빌라쉑	Willaschek, Thomas: Die Gesetzgeb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am Beispiel Brandenburg. Hamburg 2007.
63	연방주 정부와 베를린 시정부에 의한 환경 피해 책임의 면제	1990년 7월 25일	신탁관리청 법무국장, 신탁관리청 환경보호 · 오염토지관리국장	Treuhandanstalt (Hrsg.). Dokumentation 1990–1994, Band 9, S. 391–394. Berlin: Treuhandanstalt 1994
64	통일독일의 방송에 관한 연방주 간의 조약	1991년 8월 31일	연방주 주총리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Brandenburg, 2. Jahrgang, Nr. 42, S. 580 ff
65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법조인에 대한 수사	1991년 9월 4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민사당 의원 그람코프,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법무 장관 보른	Landtag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718
66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 간 교육 및 스포츠 분야에 있어 행정적 협력에 대한 합의	1991년 9월 13일	교육 · 청소년 · 스포츠부 장관 마리아네 비어틀러, 문화부 장관 한스 슈비어	Schreiben (Vermerk: 11/851) des Chefs der Staatskanzlei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Wolfgang Clement an Landtagspräsidentin Ingeborg Friebe
67	튜링겐주의 문화 현황에 관한 질의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	1991년 9월 17일	튜링겐 주의회 사민당, 튜링겐 주정부 학술 · 예술부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696
68	튜링겐 행정구역 개혁의 준비–주의회 민사당 디틀 의원의 질의에 대한 튜링겐 내무부 장관의 답변	1991년 9월 26일	튜링겐주 내무부 장관, 튜링겐 주의회 의원 디틀	Landtag Thüringen, Parlamentsprotokoll 1/30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69	인민군 군부대 부지의 원소유자 반환에 관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내무위원회의 보고 및 의결 권고	1991년 9월 26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내무위원회장 헤르만 볼링거	Landtagsdokumentation Mecklenburg-Vorpommern, Drucksache 1/768
70	학력 동등성 인정-(대학교, 교회 양성교육기관, 전문대학교 및 공업전문대학교 학위)	1991년 10월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	Sekretariat der Ständigen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71	신연방지역의 판사 및 검사에 대한 검토-신문보도 및 도표	1991년 10월 6일	서베를린 일간지 타게스슈피겔 기자 프랑크 파바써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600 Nr. 190
72	인민군 군부대 사용지의 원소유자 반환 문제에 대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의회 총회	1991년 10월 16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내무위원회장 헤르만 볼링거,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내무 장관 게오르크 디데리히,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의원 링스토르프, 그람코프, 골트벡	Landtagsdokumentation Mecklenburg-Vorpommern, Plenarprotokoll 1/33, S. 1453-1456
73	발전소와 전력 공급망의 소유권에 관한 주의회의 질문에 대한 튜링겐주 경제기술부 장관의 답변	1991년 10월 18일	튜링겐 주의회, 튜링겐주 경제부 차관 데틀레프 킬머, 튜링겐 주의회 사민당 의원 크리스티네 루돌프	Landtagsdokumentation Thüringen, Drucksache 1/814
74	튜링겐 헌법수호법	1991년 10월 29일	튜링겐 주의회 의장, 튜링겐주 내무부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Thüringen 1991 Nr. 24, S. 527-533
75	튜링겐주의 사법 구축 사례	1991년 11월	라인란트-팔츠주 법무부, 튜링겐주 법무부	Neue Justiz 11/1991, S. 475-478
76	1991년도 신연방주 행정 및 사법제도 구축을 위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지원 보고	1991년 11월 15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총리 요하네스 라우	Landtag Nordrhein-Westfalen, 11. Wahlperiode, Vorlage 11/879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77	'1992년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문화예술센터 재정 및 직원 업무에 관한 연방회의 발의'에 관한 심의	1991년 11월 28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좌파-민사당 의원 하이데-말리스 라우텐슐레거,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Parlamentsarchiv des Landtag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36, S. 1741-1743
78	신연방주의 수도 공급과 하수시설의 구조적 발전-연방정부와 신연방주들의 경제부와 환경부의 공동 선언	1991년 12월 4일	연방경제부, 연방환경부, 연방내무부, 신연방경제부, 신연방환경부	Mitteilung der Kommissio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Zustand der Umwelt in den sechs neuen Bundesländern. KOM(1998) 33, vom 2.2.1998. Katalognummer CB-CO-98-033-DE-C.
79	1991년도 신연방주 행정 및 사법제도 구축을 위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지원-추가보고서	1991년 12월 5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총리실장 볼프강 클레멘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회 사민당 의원 그래츠 외 다수 의원	Landtag Nordrhein-Westfalen, 11. Wahlperiode, Hauptausschu ß , Ausschu ß protokoll 11/436, S. 14-20
80	1991년 가을 현재 신연방주의 사회 분위기와 문제점	1991년 12월 10일	연방경제부, 알렌스바흐 인구문제연구소	Institut für Demoskopie Allensbach. Probleme und Stimmungslage der Bevölker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ine aktuelle Bestandsaufnahme im Herbst 1991.
81	문화시설의 지원-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문화상임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1991년 12월 13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좌파/민사당,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문화상임위원회	Parlamentsarchiv des Landtag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1137
82	신연방주와 베를린 도로건설계획촉진법(도로계획촉진법)	1991년 12월 16일	연방정부	Bundesgesetzblatt, Teil I, 1991, Nr. 65, S. 2174-2176
83	제3차 베를린 주법의 단일화법	1991년 12월 19일	베를린 의회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Berlin. 47. Jahrgang Nr. 57, 31.12. 1991
84	신연방주 헌법 초안	1992년	요하네스 룩스 박사	Neue Justiz – NJ 1992, S. 147-151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85	전직 동독 판사의 베를린시 판사직 지원	1992년	베를린 고등행정법원, 베를린주	Deutsch-Deutsche Rechts-Zeitschrift 1992, S. 304; http://www.gesetze-im-internet.de/bundesrecht/drig/gesamt.pdf
86	신연방주 내 대학구조 재구성에 대한 학술자문회의 권고에 대한 보고	1992년 1월 15일	연방교육 · 학술부 장관 라이너 오트레프	Muszynski, Bernhard (Hrsg.) – Wissenschaftstransfer in Deutschland – Erfahrungen und Perspektiven bei der Integration der gesamtdeutschen Hochschullandschaft, 1993, Leske + Budrich, Opladen, S. 333-351
87	전력 공급망에 관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의회 총회 토론	1992년 1월 15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의원 이데, 게어로프, 브란트	Landtagsdokumentation Mecklenburg-Vorpommern, Plenarprotokoll 1/40, S. 1986-1988
88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가 작성한 북부독일방송에 관한 법 초안-발췌	1992년 1월 20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 북독일방송사 NDR	Landtag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1260
89	신연방주지역의 신문언론의 발전 전망과 구조 적응 문제-연방내무부에 제출된 연구보고서(발췌)	1991년 10월, 1992년 2월	연방내무부, 하노버 음대 신문방송연구소 베아테 슈나이더 교수	Schneider, Beate: Strukturen, Anpassungsprobleme und Entwicklungschancen der Presse auf dem Gebiet der neuen Bundesländer (einschl. des Gebiets des frühen Berlin-Ost), Forschungsbericht für den Bundesminister des Innern, Band I und Kurzfassung. Hannover und Leipzig 1992.
90	브란덴부르크주 임대인 현황에 대한 보고서 제출 제안에 관한 주의회 총회	1992년 2월 13일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브란덴부르크주 주택건설교통부 장관 요헨 볼프, 브란덴부르크주 의원 다수	Landtagsdokumentation Brandenburg, Plenarprotokoll 1/39, S. 2877-2883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91	신연방주 및 베를린의 대학구조 변화에 대해–대학총장단회의 결정	1992년 2월 18일	대학총장단회의	Hochschulrektorenkonferenz, Entschlie ß ung des 166. Plenums, in: Arbeitsbericht 1992, Bonn, S. 39–44,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 (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S. 316–319
92	헤센–튜링겐 공동 저축금고협회 설립에 관한 협약	1992년 3월 10일	헤센 주총리 한스 아이헬, 튜링겐 주총리 베른하르트 포겔	HessGVBl. I S. 190, ThürGVBl. S. 291
93	브란덴부르크주 석탄과 에너지정책 현황에 관한 주의회의 토론	1992년 3월 11일	브란덴부르크주 경제기술부 장관 발터 히르헤,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의원 다수	Landtagsdokumentation Brandenburg, Plenarprotokoll 1/40, S. 2940–2951
94	전화통신에 관한 브란덴부르크 주의회의 논의	1992년 3월 11일	브란덴부르크주 경제기술부 장관 발터 히르헤, 브란덴부르크주 주택건설교통부 장관 요헨 볼프,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의원 다수	Landtagsdokumentation Brandenburg, Plenarprotokoll 1/40, S. 2932–2940
95	작센주 법원조직법	1992년 3월 31일	작센 주정부, 작센 주의회	Sächsisch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1630
96	작센주 내 대학 관련 분야 및 대학교 구조에 대한 법안(작센대학구조법–SächsHStrG)	1992년 4월 10일	작센 주총리 쿠어트 비덴코프, 작센주 학술 · 예술부 장관 한스 요아힘 마이어	Sächsisches Gesetz– und Verordnungsblatt, Nr. 16/1992 – Ausgabetag: 08.05.1992
97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산업에 관한 주의회의 토론	1992년 4월 10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경제 장관 콘라트–미하엘 레멘트,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의원 쉐링어, 벡만, 자이델, 카스너, 이데	Landtagsdokumentation Mecklenburg–Vorpommern, Plenarprotokoll 1/50, S. 2544–2551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98	'우리 주를 위한 헌법'–1992년 6월 14일 브란덴부르크주 주민투표를 위한 홍보자료	1994년 4월 22일	브란덴부르크 주정치교육센터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000 Nr. 42
99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의 도로법 초안	1992년 4월 30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총리 베른트 자이테,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의장 라이너 프라흐틀	Landtagsdokumentation Mecklenburg–Vorpommern, Drucksache 1/1770
100	브란덴부르크주 주정부의 에너지정책 기본 원칙	1992년 5월 4일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Landtagsdokumentation Brandenburg, Drucksache 1/969
101	튜링겐주 지방법원의 업무 영역에 관한 규정	1992년 5월 5일	튜링겐주 법무 장관 옌취, 튜링겐 주총리 포겔, 튜링겐 주의회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Thüringen, 1992, Nr. 11, 25.05.1992, S. 187
102	브란덴부르크 재건 프로그램–4.91장 문화	1992년 5월 7일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주 학술 · 연구 · 문화부 장관 힌리히 엔델라인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103	브란덴부르크주 에너지정책 기본 원칙에 관한 주의회 토론	1992년 5월 13일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브란덴부르크주 경제기술부 장관 발터 히르헤,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의원 하버만, 쾨르버, 마르코프, 지베르트, 노케	Landtagsdokumentation Brandenburg, Plenarprotokoll 1/46, S. 3284–3292
104	신연방주의 기초단체 행정구역 개혁	1992년 5월 15일	독일행정지, 베르너 호페, 베른하트 스튜어	Hoppe, Werner / Stüer, Bernhard in: Deutsches Verwaltungsblatt 107 Jahrgang, Heft 10, 15.05.1992
105	브란덴부르크 법무부의 새로운 재건을 위한 업무 보고	1992년 5월	브란덴부르크주 법무부 차관 라이너 파우펠	Faupel, Rainer: Der Neuaufbau der Justiz in Brandenburg. Baden–Baden 1992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06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도로법 초안에 대한 주의회의 심의	1992년 6월 3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경제 장관 콘라트-미하엘 레멘트,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의원 자이델, 게어로프, 카스너	Landtagsdokumentation Mecklenburg-Vorpommern, Plenarprotokoll 1/54, S. 2807-2810
107	주의회 총회 회의록 1/34, 43, 45 그리고 신문기사	1991년 – 1992년	사민당, 기민당, 민사당-좌파당 연합, 자민당, 연합90, 타게스슈피겔, PNN 뉴스, 베를린 일간지 베를리너 모르겐포스트	Landtag Brandenburg,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e 1/ 34 vom 19. Dezember 1991, 1/ 43 vom 25. März 1992 und 1/ 45 vom 14. April 1992; sowie Landtag Brandenburg Pressstelle: Zusammenstellung vom 04. März 1992 (Zum internen Gebrauch).
108	교사 자격시험의 상호 인정에 관한 신연방주 간의 협정	1992년 6월 26일	구동독지역의 교육부 장관 및 교육부 위원	Beschluss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om 26.96.1992 KMK Erg.- Lfg. 75 September 1993
109	연방교통계획에서 작센주 교통망 향상을 위한 주의회 제안	1992년 7월 1일	작센-안할트 주의회, 작센-안할트 주의회 기민당 원내 대표 헤르베르트 골리아쉬, 작센-안할트주 교통부 장관 귄터 크라우제, 작센-안할트 주의회 의장 에리히 일트겐, 작센-안할트주 경제노동부 장관 칼 요젭 쇼머	Landtagsdokumentation Sachsen, Drucksache 1/2010
110	브란덴부르크 재건 프로그램-목차	1992년 7월 1일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총리실 및 모든 부서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111	브란덴부르크 재건 프로그램-1장 브란덴부르크주의 현황	1992년 7월 1일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총리실 및 모든 부서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12	브란덴부르크 재건 프로그램–2장 주 정책의 일반적 목표와 제도적 토대	1992년 7월 1일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총리실 및 모든 부서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113	브란덴부르크 재건 프로그램–3장 주 개발과 지역개발계획(Raumordnung)	1992년 7월 1일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주 환경부 장관 마티아스 플라첵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114	브란덴부르크 재건 프로그램–4장 노동	1992년 7월 1일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 주 노동 · 사회 · 건강 · 여성부 장관 레기네 힐데브란트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115	브란덴부르크 재건 프로그램–4.2장 경제	1992년 7월 1일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주 경제기술부 장관 발터 히르헤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116	브란덴부르크 재건 프로그램–4.3장 농업경제	1992년 7월 1일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주 농림식품부 장관 에드빈 치머만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117	브란덴부르크 재건 프로그램–4.41장 자연 보호	1992년 7월 1일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주 환경부 장관 마티아스 플라첵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118	브란덴부르크 재건 프로그램–4.42장 수자원경제	1992년 7월 1일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주 환경부 장관 마티아스 플라첵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119	브란덴부르크 재건 프로그램–4.43장 쓰레기 처리, 독성 쓰레기, 토양 보호	1992년 7월 1일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주 환경부 장관 마티아스 플라첵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120	브란덴부르크 재건 프로그램–4.44장 대기 보호	1992년 7월 1일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주 환경부 장관 마티아스 플라첵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21	브란덴부르크 재건 프로그램–4.5장 건설 및 주택	1992년 7월 1일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주 주택건설교통부 장관 요헨 볼프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122	브란덴부르크 재건 프로그램–4.6장 교통	1992년 7월 1일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주 주택건설교통부 장관 요헨 볼프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123	브란덴부르크 재건 프로그램–4.71장 교육 부문	1992년 7월 1일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주 교육 · 청소년 · 스포츠부 장관 마리아네 비어틀러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124	브란덴부르크 재건 프로그램–4.72장 학술과 연구	1992년 7월 1일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주 학술 · 연구 · 문화부 장관 힌리히 엔델라인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125	브란덴부르크 연방주 재건 프로그램–4.8장 보건 분야	1992년 7월 1일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주 노동 · 사회 · 건강 · 여성부 장관 레기네 힐데브란트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126	브란덴부르크 재건 프로그램–4.82장 사회	1992년 7월 1일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주 노동 · 사회 · 건강 · 여성부 장관 레기네 힐데브란트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127	브란덴부르크 재건 프로그램–4.83장 여성	1992년 7월 1일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주 노동 · 사회 · 건강 · 여성부 장관 레기네 힐데브란트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128	브란덴부르크 재건 프로그램–5장 정부와 행정	1992년 7월 1일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주 내무 장관 알빈 칠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29	신연방주 방송규정–독과점위원회 1990/1991년도 9차 평가서(발췌)	1992년 7월 13일	독과점위원회, 연방정부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2. Wahlperiode, Drucksache 12/3031
130	법무부의 재편과 브란덴부르크주에 계속 위치하고 있는 법원의 소재지에 대한 구상	날짜 미상–1992년 7, 8월경	브란덴부르크주 법무부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600 Nr. 170
131	연방정부와 베를린 시정부 간 협력 조약(수도조약)	1992년 8월 25일	연방정부, 베를린시 정부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s Landes Berlin
132	브란덴부르크 재건 프로그램–6장 재정	1992년 8월 25일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주 재무 장관 클라우스–디터 퀴바허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133	작센주 문화기반 구조 현황 및 예술가들에 관한 질의–주정부의 답변	1992년 9월 17일	작센 주의회 사민당, 작센 주정부	Parlamentsarchiv des Sächsischen Landtags, 1. Wahlperiode, Drucksache 1/2123
134	신탁관리청에 의한 농경지 매각–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연방회의에 제출한 의결 제안	1992년 10월 27일	연방회의, 브란덴부르크주, 신탁관리청	Parlamentsarchiv des Bundesrates, 12. Wahlperiode, Bundesrat Drucksache 736/92
135	브란덴부르크 신문법–브란덴부르크 주의회 1차 심의	1992년 10월 28일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브란덴부르크주 학술연구문화부 장관 에더라인,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발터, 티어제, 비스키, 리츠만, 베트슈타트 의원	Landtag Brandenburg, 1.Wahlperiode, Plenarprotokoll 1/55
136	작센–안할트주의 문화 인프라 및 예술가–주의회의 질의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	1992년 10월 29일	작센–안할트 주의회, 작센–안할트 주의회 사민당, 작센–안할트 주정부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1963
137	작센–안할트주 헌법재판소법 초안	1992년 11월 2일	작센–안할트 주총리 뮌히, 작센–안할트주 법무부, 작센–안할트 주의회	Landtag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1980
138	국영농지의 매각–연방정부, 신연방주 농림부 장관, 신탁관리청, 소련군 점령지/동독 재산문제위원회(볼–페이퍼)	1992년 11월 16일	연방정부, 수상청 정무 장관, 신연방주 농림 장관, 신탁관리청, '소련군 점령지역/동독 재산문제위원회'	Deutscher Bundestag, 12. Wahlperiode, Drucksache 12/7588, Anlage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39	브란덴부르크 재건 프로그램–4.92장 체육	1992년 11월 20일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주 교육 · 청소년 · 스포츠부 장관 마리아네 비어틀러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140	튜링겐의 변호사 현황	1992년 11월 30일	튜링겐 주의회, 튜링겐 주의회 사민당 의원 바이, 튜링겐주 법무부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1762
141	신연방주에서의 실업	1992년 12월 1일	연방경제부, 알렌스바흐 인구문제연구소	Institut für Demoskopie Allensbach. Arbeitslosigkeit in den neuen Bundesländern. Allensbach am Bodensee 1992.
142	튜링겐지역의 법집행 현황	1992년 12월 2일	튜링겐 주의회, 튜링겐 주의회 사민당 의원 바이, 튜링겐주 법무부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1776
143	동부 저축금고협회 설립에 관한 협약	1992년 12월 17일	브란덴부르크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작센주, 작센–안할트주	Ostdeutscher Sparkassenverband; https://www.osv-online.de/fileadmin/osv/dateien/verband/OSV_Staatsvertrag_Lesefassung-26-05-09.pdf
144	기본법 23조의 구조항과 신조항	1949년 5월 24일, 1992년 12월 25일	독일연방공화국	Bundesgesetzblatt (Gesetz zur Änderung des Grundgesetzes vom 21.12.1992, BGBl. I, S. 2086)
145	라우지츠지역의 구조전환에 관한 브란덴부르크 주의회의 토론	1993년 1월 20일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브란덴부르크주 경제기술부 장관 발터 히르헤, 브란덴부르크주 환경부 장관 마티아스 플라첵, 브란덴부르크주 노동 · 사회 · 건강 · 여성부 장관 레기네 힐데브란트,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의원 라이헤, 노케, 크레츠머, 지베르트, 마르코프	Landtagsdokumentation Brandenburg, Plenarprotokoll 1/61, S. 4619–4636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46	신연방주 출신 지원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튜링겐의 규정(튜링겐 자격요건 규정)	1993년 2월 2일	튜링겐주 내무부, 연방내무부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Thüringen 1993 Nr.7, S. 173-174
147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의 문화기반 유지를 위한 제안에 대한 주의회 심의	1993년 2월 11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사민당 의원 지그프리드 프리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문화부 장관 슈테피 슈노어,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의원 다수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70, S. 3996-4001
148	동독의 공공행정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특별해고 사유-헌재 판결	1993년 3월 2일	연방헌법재판소(소장 헤르촉, 판사 죌너, 판사 퀼링)	Europäische Grundrechte-Zeitschrift. 1993. S. 208-209
149	튜링겐 판사법	1993년 3월	튜링겐 주총리 포겔, 튜링겐 주정부, 튜링겐주 법무 장관 옌취, 튜링겐 주의회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2024
150	독일을 위한 연대협약/연방수상과 연방주 총리 정당과 원내 대표들의 연석회의	1993년 3월 16일	연방정부, 주정부, 국민정당의 당수, 연방의회 원내 대표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Nr. 22/S. 185; Treuhandanstalt (Hrsg.). Dokumentation 1990-1994, Band 11, S. 594-644. Berlin: Treuhandanstalt 1994, 16.03.1993
151	튜링겐주 사회법원법 초안	1993년 3월 18일	튜링겐 주의회, 튜링겐 주총리 베른하르트 포겔	Thüringer Landtag, Parlamentsdokumentation, 1. Wahlperiode: Drucksache 1/2090
152	작센-안할트주 주거공간 및 도시건설에 관한 질의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	1993년 3월 23일	작센-안할트주 건설부, 작센-안할트 주의회	Landtagsdokumentation Sachsen-Anhalt, Drucksache 1/2435
153	신연방주 그리고 통일독일에서 학술과 연구 기반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고-A장. 신연방주 대학 분야의 재구성	1993년 3월 24일	연방의회, 연방정부	Parlamentsdokumentation Bundestag, Drucksache 12/4629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54	신연방주 그리고 통일독일에서 학술과 연구 기반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고– B장. 신연방주 대학 외 연구 분야의 재구성	1993년 3월 24일	연방의회, 연방정부	Parlamentsdokumentation Bundestag, Drucksache 12/4629
155	튜링겐주의 임시 주법에 의거한 개별 부서의 소관 업무 영역	1993년 4월 7일	튜링겐 주정부 및 부처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Thüringen 1993 Nr. 13, S. 245–259
156	브란덴부르크주 사법 체계의 새로운 규정	1993년 4월 20일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Landtag Brandenburg, 1. Wahlperiode, Drucksache 1/1900
157	작센주(州)의 기초자치단체 규정	1993년 4월 21일	작센 주의회	Sächsisches Gesetz– und Verordnungsblatt. Herausgegeben von der Sächsischen Staatskanzlei. Nr. 18/1993, Dresden, 30. April 1993.
158	동독에서 이수한 교직과정의 인정에 관한 협정	1993년 5월 7일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	Beschluss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om 07.05.1993. KMK Erg.–Lfg. 79. September 1994.
159	작센–안할트지역의 주거에 관한 주의회의 토론	1993년 5월 13일	작센–안할트주 교통부 장관 대레, 작센–안할트 주의회 의원 다수	Landtagsdokumentation Sachsen–Anhalt, Plenarprotokoll 1/47, S. 5477–5487
160	브란덴부르크 언론법	1993년 5월 13일	브란덴부르크주,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Brandenburg Teil I – Nr. 10 vom 17. Mai 1993
161	튜링겐 사법 체계의 전환 및 법원설립법 시행령, 법원구조법 시행령–주정부 초안	1993년 5월 25일	튜링겐 주총리 포겔, 튜링겐 주정부, 튜링겐 주의회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2268
162	신연방주 경제 성장 지원과 경제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투자간소화법	1993년 6월 23일	브란덴부르크주, 베를린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Bundesgesetzblatt, Teil I, 1993; S. 944, 982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63	작센주의 대중교통 수단 현황에 관한 질의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	1993년 7월 6일	작센 주의회, 작센주 경제노동부 장관 칼 요젭 쇼머, 작센 주의회 녹색당 원내 대표 대리 클라우스 가버	Landtagsdokumentation Sachsen, Drucksache 1/3210
164	행정구역개혁법	1993년 7월 13일	작센-안할트 주의회	Gesetz- und Verordnungsblatt des Landes Sachsen-Anhalt, Nr. 31/1993, ausgegeben am 20. Juli 1993, S. 352-356.
165	튜링겐주 학교법(ThürSchulG)	1993년 8월 6일	튜링겐 주의회 의장 고트프리트 뮐러, 튜링겐 주의회 부의장 페터 박하우스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Thüringen, Nr. 21 – Ausgabetag: 12. August 1993
166	튜링겐의 란트크라이스와 크라이스가 없는 시의 개편에 관한 법 (튜링겐 구역개혁법-ThürNGG)	1993년 8월 16일	튜링겐 주의회, 튜링겐주 내무부	Juris-Gesetzesdokumentation Thüringen
167	튜링겐 게마인데와 란트크라이스 규정(튜링겐 기초단체령-ThürKO)	1993년 8월 16일	튜링겐 주의회, 튜링겐주 내무부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Thüringen 1993, Nr. 23, S. 501
168	주택 소유권에 관한 브란덴부르크 주의회의 토론	1993년 9월 29일	브란덴부르크주 주택건설교통부 장관 하르트무트 마이어,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의원 다수	Landtagsdokumentation Brandenburg, Plenarprotokoll 1/76, S. 6077-6092
169	교육-학술노조의 요구사항-'동서독지역에서의 교직 평등을 위하여'	1993년 10월	교원노조	Gewerkschaft Erziehung und Wissenschaft. Oktober 1993. Aus dem Archivraum der Berliner Senatsverwaltung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Forschung.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70	작센-안할트의 기초자치단체 규정, 작센-안할트의 광역자치단체 규정	1993년 10월 5일	작센-안할트 주의회	Gemeindeordnung,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Sachsen-Anhalt, 4. Jahrgang, Nr.43/1993, ausgegeben am 11.10. 1993, Seiten 568-597. Landkreisordnung,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Sachsen-Anhalt, 4. Jahrgang, Nr.43/1993, ausgegeben am 11.10. 1993, Seiten 598-611.
171	작센-안할트주의 관광산업 발전에 관한 질의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	1993년 11월 3일	작센-안할트주 경제 · 기술 · 교통부, 작센-안할트 주의회 기민당 및 자민당	Landtagsdokumentation Sachsen-Anhalt, Drucksache 1/3142
172	브란덴부르크주의 치안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주정부의 첫 번째 보고서	1993년 11월 15일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브란덴부르크주 사법부, 내무부, 노동 · 복지 · 건강 · 여성부, 교육 · 청소년 · 체육부, 도시개발 · 주택 · 교통부, 학술 · 연구 · 문화부	Landtag Brandenburg, 1. Wahlperiode, Drucksache 1/ 2476
173	동독 슈타지를 위한 활동에 대한 근무법적 판단을 위한 평가 기준에 대한 초안	1994년 1월	브란덴부르크주 내무부,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내무위원회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600 Nr. 191
174	기초단체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튜링겐의 법(튜링겐 조치법-ThürMaßnG)	1994년 1월 3일	튜링겐 주의회, 튜링겐주 내무부	Juris-Gesetzesdokumentation Thüringen; https://www.juris.de/jportal/prev/jlr-KomGRefGTHpP1 (Stand: 19.07.2018)
175	소련군 서부군단의 부대시설의 관리 및 매각에 관한 제안-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총회 토론	1994년 1월 26일	브란덴부르크주 재무 장관 클라우스-디터 퀴바허,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의원 다수	Landtagsdokumentation Brandenburg, Plenarprotokoll 1/85, S. 6901-6913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76	주거정책에 대한 질의에 대한 튜링겐 주정부의 답변	1994년 2월 3일	튜링겐주 내무부 차관 리페르트, 튜링겐 주의회 기민당	Landtagsdokumentation Thüringen, Drucksache 1/3065
177	독일통일과 동부 재건에 관한 자료	1994년 2월 4일	연방정부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 DIP, Drucksache 12/6854
178	동독 사법부에 근무했던 판검사 재교육 및 이와 관련된 행정 협약	1994년 2월 8일	연방의회, 연방정부, 주 사법행정기관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6854. (Materialien zur Deutschen Einheit und zum Aufbau in den neuen Bundesländern, Anhang Nr. 37) S. 338–340
179	1991–1994년 사이 연방정부가 신연방주의 법치국가 체계 구축을 위해 지원한 프로그램 개요	1994년 2월 8일	서독, 신연방주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2280. S. 382
180	연방정부의 통지: 독일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	1994년 2월 8일	신연방주, 신연방주 주정부 사법 행정부	Deutscher Bundestag. 12. Wahlperiode. Drucksache 12/6854, S. 324–329
181	브란덴부르크주 1994 유아–청소년 보고서	1994년 2월 22일	브란덴부르크주 교육 · 청소년 · 체육부	Landtag Brandenburg, 1. Wahlperiode, Drucksache 1/2788
182	라우지츠지역의 갈탄 탄광 보존을 위한 정부 성명에 대한 브란덴부르크 주의회의 토론	1994년 3월 3일	브란덴부르크주 경제기술부 장관 발터 히르헤,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의원 다수	Landtagsdokumentation Brandenburg, Plenarprotokoll 1/88, S. 7204–7217
183	튜링겐 고궁 및 정원재단법	1994년 3월 10일	튜링겐 주정부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en Freistaat Thüringen, 1994, Nr. 9, S. 265, 284–287, Ausgabetag 17.03.1994
184	신연방지역 에너지 공급에 관한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토론	1994년 3월 24일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브란덴부르크주 경제기술부 장관 발터 히르헤,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의원 발터, 티어제, 비스키, 리츠만, 베트슈타트	Landtagsdokumentation Brandenburg, Plenarprotokoll 1/90, S. 7424–7429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85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문화예술 및 예술가 현황-주의회 질의에 대한 정부 답변	1994년 4월 12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사민당 의원,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정부 문화부	Parlamentsarchiv des Landtag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4308
186	정부 의회입지 배분과 관련한 베를린/본 법	1994년 4월 26일	연방의회, 수도 베를린, 연방시 본, 본 지역, 연방정부	Bundesgesetzblatt, Teil I, 1994, Nr. 27, S. 918-921
187	'행정개혁' 보고서: 작센-안할트 행정의 새로운 조직화를 위한 제언	1994년 5월	작센-안할트 주의회, 앙케이트위원회	Landtag von Sachsen-Anhalt, Bericht der Enquete-Kommission „Verwaltungsreform", Magdeburg, Mai 1994.
188	슈톨페 조사위원회 보고자료 1/3	1994년 5월 30일	브란덴부르크 조사위원회 1/3,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부의장 라이하르트 차르넥코프,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Landtag Brandenburg, 1. Wahlperiode, Drucksache 1/3009
189	소련군 서부군단 부대 시설 및 부지 매각법-브란덴부르크주령	1994년 6월 3일	브란덴부르크주, 서독, 소련군 서부군단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Brandenburg, Teil I, 1994, Nr. 13, 08.06.1994, S. 170-171
190	튜링겐 문화의 발전에 관한 질의에 대한 주정부 문화 장관의 답변	1994년 6월 9일	튜링겐 주의회 사민당, 튜링겐 주정부 학술 · 예술부	Landtag Thüringen; http://www.parldok.thueringen.de/ParlDok/dokument/10765/die-entwicklung-der-kulturlandschaft-in-th%C3%BCringen.pdf, abgerufen am 30.03.2016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91	토지개발 및 공개입찰 관련 문제의 검토를 위한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조사위원회 1/5의 (보완된) 부분 및 중간보고서	1994년 6월 14일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조사위원회 1/5 사민당 페터 무살라 의원, 브란덴부르크주 전 주택 · 건설 · 교통부 장관 요헨 볼프, 도시건설 · 주택 · 교통을 위한 브란덴부르크 주개발회사(LEG), 부동산 판매업자 악셀 힐페르트	Landtag Brandenburg, 1. Wahlperiode, Drucksache 1/3012
192	신연방주지역의 행정 재건	1994년 6월 17일	클라우스-헨닝 로젠, 연방내무부	Das Parlament, 17.06.1994, S. 10
193	연방의회 총회 토론: 독일통일과 동부 재건 상황에 관한 자료	1994년 6월 23일	연방의회, 연방의회 다수 의원, 연방정부, 연방정무부, 연방수상청장 프리드리히 볼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 DIP, Plenarprotokoll 12/235
194	수도재정지원조약	1994년 6월 30일	연방정부, 베를린주	Landesregierung Berlin; http://www.berlin.de/imperia/md/content/rbm-skzl/hauptstadtvertraege/hauptstadtfinanzierungsvertrag_940630.pdf?start&ts=1108638354&file=hauptstadtfinanzierungsvertrag_940630.pdf
195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헌법재판소법	1994년 7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Mecklenburg-Vorpommern, 1994, S. 734
196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첫 선거회기에 대한 각 부서 관련 평가 (1990-1994)	1994년 7월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의 모든 해당 부서, 할슈텐베르크 교수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1100 Nr. 411
197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첫 선거회기에 대한 각 부서 관련 평가(1990-1994)-도입	1994년 7월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의 모든 해당 부서, 할슈텐베르크 교수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1100 Nr. 411
198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첫 선거회기에 대한 각 부서 관련 평가(1990-1994)-기본법의 법적 · 제도적 기본 근거	1994년 7월	브란덴부르크주 내무부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1100 Nr. 411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199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첫 선거회기에 대한 각 부서 관련 평가(1990–1994)–주 개발의 목적	1994년 7월	브란덴부르크주 총리실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1100 Nr. 411
200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첫 선거회기에 대한 각 부서 관련 평가(1990–1994)–재정정책적 여건(Finanzpolitischer Rahmen)	1994년 7월	브란덴부르크주 재정부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1100 Nr. 411
201	주택정책 전문가 위원회: 신연방주의 주택정책(연방정부의뢰평가보고서)	1994년 10월 15일	연방정부, 건설은행, 은행 관련 기관, 관련 위원회 위원	Gutachten der Expertenkommission Wohnungspolitik vom 15. Oktober 1994. Keine Ortsangabe. Erstellt im Auftrag der Bundesregierung.
202	1994년 11월 18일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의 정부 성명	1994년 11월 18일	브란덴부르크 주총리실,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Staatskanzlei der Landesregierung Brandenburg. https://www.brandenburg.de/media/1168/regierungserklaerung94.pdf (Stand 18.07.2018)
203	변혁 중인 도시들–신연방주에서의 지방자치행정 5년	1995년	독일도시협회	DST (Deutscher Städtetag) Beiträge zur Kommunalpolitik, Reihe A, Heft 21, S. 55–70.
204	동독 출신 인력의 검증을 위한 브란덴부르크 주의 고등 교육 기관의 조치	1995년 2월 22일	포츠담대학의 인사위원회	Rektorat der Universität Potsdam (Hrsg.). Dokumentation zur personellen Erneuerung der Universität Potsdam. Potsdam 1995
205	브란덴부르크주의 행정 재건 4년	1995년 3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내무부 부국장 하인츠 쾨스터링, 브란덴부르크주	Verwaltungsrundschau. Zeitschrift für Verwaltung in Praxis und Wissenschaft. 41. Jahrgang. Köln, 1995. S. 83–90
206	노동재판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를 위한 법률 초안–노동재판–노동신속화법	날짜 미상–1995년 중반 추정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노동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회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600 Nr. 208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07	1990/1991 동독 판사 재교육 비용 분담에 관한 행정 협정	1995년 7월 8일	서독,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바이에른주, 베를린주, 브레멘 자유 한자시, 함부르크 자유 한자시, 헤센주, 니더작센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라인란트-팔츠주, 자를란트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2280. S. 327-329
208	독일통일 5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바라본 생태환경 개선 및 발전에 관한 보고서	1995년 9월 1일	연방환경부	Eine Information des Bundesumweltministeriums, Nr. 9/1995.
209	동부 재건-가야 할 길의 나머지 반-현황과 전망-신연방주 발전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고	1995년 9월 29일	연방정부, 연방의회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 DIP, Drucksache 13/2489
210	독일통일 이후 5년-일자리 창출 및 보전 그리고 친환경적 발전의 장려를 위한 신연방주 내 기존 잠재력의 활용[직업교육 부분 발췌]-연방의회 민주사회당(PDS)의 대정부 주요질문에 대한 연방정부 답변	1995년 11월 28일	연방의회, 연방의회 민사당, 연방정부	Parlamentsdokumentation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3123
211	동독지역의 새로운 연구 환경-그 특징 및 신연방주 경제에 대한 영향	1996년	베르너 메스케, 학술연구학회	Meske, Werner: Die neue ostdeutsche Forschungslandschaft. Besonderheiten und Konsequenzen für die Wirtschaft der neuen Länder, in: Greif, Siegfried, Hubert Laitko und Heinrich Parthey (Hrsg.). Wissenschaftsforschung. Jahrbuch 1996/1997. Berlin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12	신연방주 재무 장관의 '6개 명제' 보고서	1996년 3월 29일, 4월 1일	5개 신연방주 재무 장관	Sechs-Thesen-Papier der ostdeutschen Finanzminister zur wirtschaftlichen und finanzpolitischen Situation der neuen Bundesländer, o.O. 1996; Interner Bericht der Finanzminister vom 29. März/1. April 1996.
213	장벽과 동서독 경계선의 대지를 원소유주에게 매매하는 것에 관한 법(장벽대지법(Mauergrundstückgesetz)-장벽법(MauerG))	1996년 7월 15일	연방의회, 연방회의	Mauergrundstücksgesetz vom 15. Juli 1996 (BGBl. I, S. 980).
214	작센주의 대중교통 수단 현황에 관한 질의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	1996년 10월 16일	작센-안할트주 주택 · 도시건설 · 교통부, 작센-안할트 주의회	Landtagsdokumentation Sachsen-Anhalt, Drucksache 2/2761
215	경직성과 적응 유연성 사이-체제 붕괴와 이익조정 상황에서 1991-1994 작센-안할트와 작센의 주택정책 지원 프로그램 실행	1997년	작가 딕 마이젤, 작센주와 작센-안할트주 지자체	Dirk Meisel: Zwischen Restriktion und Anpassungsflexibilität. Die kommunale Implementation wohnungspolitischer Förderprogramme 1991-1994 in Sachsen-Anhalt und Sachsen im Kontext von Umbruch und Interessenvermittlung. Opladen: Leske + Budrich, 1997, Seiten 11-13 und 273-301.
216	기본 지침에 따른 주 행정구조의 재건	1997년	슈파이어 독일행정대학 정부학, 공공법, 행정학과 교수 클라우스 쾨니히	H. Wollmann et al., Transformation der politisch-administrativen Strukturen in Ostdeutschland. Wiesbaden 1997, S. 223-253
217	회복과정에 있는 작센-안할트-작센-안할트 개발경로의 경제적 내구성	1997년 1월	위탁자 경제부, 할레경제연구소 소속자가 연구 책임 담당	Sonderausgabe von Wirtschaft im Wandel,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 1977.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18	교통정책에 관한 작센-안할트 주의회의 회의	1997년 2월 17일	작센-안할트주 주택 · 도시건설 · 교통부 장관 위르겐 하이어, 작센-안할트 주의회 의원 다수	Landtagsdokumentation Sachsen-Anhalt, Plenarprotokoll 2/56, S. 4167-4184
219	브란덴부르크 역사 건축물 보호를 위하여	1997년 7월 24일	브란덴부르크주 학술 · 연구 · 문화부	Landtag Brandenburg, 2. Wahlperiode, Drucksache 2/4307
220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사통당 독재 잔재 극복'/ 조사위원회 중간보고서-'역사 청산과 사통당 독재 결과 청산을 위한 독립적 공공 연방재단 설립'에 관한 중간 보고	1997년 9월 25일	조사위원회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사통당 독재 잔재 극복'	Materialien der Enquete-Kommission "Überwindung der Folgen der SED-Diktatur im Prozeß der deutschen Einheit". S. 60-75.
221	1997년 고용전략 연간보고서	1998년 5월 26일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브란덴부르크주 노동 · 사회 · 건강 · 가족부, 브란덴부르크주 기술과학부	Landtag Brandenburg, 2. Wahlperiode, Drucksache 2/5322
222	국회의원 검증을 위한 튜링겐 법	1998년 6월 26일	튜링겐 주의회	Thüringisches Gesetz- und Verordnungsblatt GVBl 1998, S. 205
223	작센 세무행정 기구의 구축을 위한 지원에 관한 보고	1998년 7월 1일	작센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바이에른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Oberfinanzdirektion Chemnitz, O 1002 - 59/2-St 11
224	1998 유아-청소년 보고서: 1권, I 장(Band 1, Teil I)	1998년 9월 16일	브란덴부르크주 교육 · 청소년 · 체육부	Landtag Brandenburg, 2. Wahlperiode, Drucksache 2/5664
225	대정부 질의: 1998년 12월 16일의 작센 정부와 '신연방주' 내각위원회의 회의	1998년 12월 9일	연방의회, 신연방주 특임관 롤프 슈바니츠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 DIP, Plenarprotokoll 14/13
226	미래를 보장한다. 지방 단위 수준에서의 발전모델 개발을 위한 심층 연구	1999년	작센-안할트 내무부 장관에 의해 구성된 연구팀	Herausgeber des Untersuchungsberichts ist das Ministerium des Innern des Landes Sachsen-Anhalt, Magdeburg.
227	신연방주의 국가부채 문제	1999년 2월 1일	작센-안할트주 재무부 차관보 칼-페터 샥만-팔리스, 작센-안할트주 재무부 국장 마르틴 쉬넬팅	Wirtschaftsdienst (Zeitschrift für Wirtschaftspolitik), 1999, Heft 2, S. 100-106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28	18차 지역대표자 회의, 자치행정 10년의 경험: 설문조사 결과	1999년 4월 26일	작센-안할트의 광역자치단체이사회의(Kreisvorstandskonferenz)	Eine Veröffentlichung der Kreisvorstandskonferenz, die am 26. April 1999 in Salzwedel stattgefunden hatte.
229	브란덴부르크주 도시개발부 1994-1999년의 결산	날짜 미상-1999년 중반 추정	브란덴부르크주 도시개발 · 주택 · 교통부	Ministerium für Stadtentwicklung, Wohnen und Verkehr des Landes Brandenburg (Hrsg.). 1999(?)
230	헌법 104a조 4항에 따라 도시건설조치를 위해 연방이 연방주에게 재정지원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행정협의(VV-도시건설촉진 1999)	1999년 7월 28일	연방 교통 · 건설 · 도시개발부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Bau und Stadtentwicklung – Programm zur Städtebauförderung: http://www.staedtebaufoerderung.info/nn_1087344/StBauF/DE/UeberDieStBF/RechtlicheGrundlagen/RechtlicheGrundlage__node.html?__nnn=true
231	1997년-2000년 사이 신연방주를 위한 세금 감면 주요 내역	1999년 8월 13일	연방정부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4/1500, Übersicht 9, S. 9
232	동독의 화학 삼각지대-모범적 기능을 가진 산업단지 사례인가?	1999년 12월	통일 관련 특임청	Wissenschaftszentrum Berlin, WZB-Mitteilungen 86, Dezember 1999, S. 13-16.
233	신연방주(州)의 재정충당 및 재정문제	2001년	연방 건설, 공간, 지역개발부 위탁, 헬무트 자이츠가 연구	Helmut Seitz, Finanzierung und Finanzprobleme der neuen Länder. Informationen zur Raumentwicklung, Heft 2/3,2001, S. 109-118.
234	거래세 수입의 분배 기준-최종안	2001년	연방의회, 사민당, 녹색당, 민사당 원내 교섭 단체	Deutscher Bundestag, 14. Wahlperiode, Drucksache 14/6577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35	지방자치단체 개혁을 위한 세 번째 잠정 규정	2001년 10월 26일	작센-안할트 주의회	Drittes Vorschaltgesetz,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Sachsen-Anhalt, 12. Jahrgang, Nummer 47, ausgegeben am 1. November 2001. Gesetz zur Stärkung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Sachsen-Anhalt, Nummer 42, ausgegeben am 12. August 2002.
236	생활/윤리/종교 과목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2001년 12월 1일	연방헌법재판소, 브란덴부르크주, 개신교 교회, 가톨릭 교회, 연방의회 의원 279명	Evangelischer Pressedienst, epd-Dokumentation Nr. 52 (17. Dezember 2001)
237	10년간의 논쟁에 대한 연대기	2001년 12월 10일	브란덴부르크주, 개신교 교회, 개신교 공보, 가톨릭 교회	Evangelischer Pressedienst, epd-Dokumentation Nr. 52 (17. Dezember 2001)
238	연방과 연방주 간의 재정균형배분에 관한 법(재정균형배분법-FAG)	2001년 12월 20일	연방정부, 연방재무부, 연방주	Bundesgesetzblatt I 2001, S. 3955, 3956
239	연방법무부의 동독 판사와 검사 인수	2001년	연방법무부	Wichmann, Klaus und Thomas, Jürgen. 2001. Rechtspolitik für die Deutsche Einheit: Der Beitrag des Bundesministeriums der Justiz zu Rechtseinheit und Wiedergutmachung. Köln: Bundesanzeiger-Verlag. S. 68-74
240	1995-2001 경제 발전 결산/작센-안할트	2002년 3월	작센-안할트주 수상청 보고서	Staatskanzlei Sachsen-Anhalt. Magdeburg, 2002.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41	유럽연합의 확장에 대한 주의 준비를 위한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의 두 번째 보고서	2002년 6월 19일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브란덴부르크주 경제 · 유럽연합업무부 외 관련된 다른 부서들	Landtag Brandenburg, 3. Wahlperiode, Drucksache 3/4505
242	지방자체단체의 자치행정 강화를 위한 규정	2002년 8월 7일	작센-안할트 주의회	Drittes Vorschaltgesetz,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Sachsen-Anhalt, 12. Jahrgang, Nummer 47, ausgegeben am 1. November 2001. Gesetz zur Stärkung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Sachsen-Anhalt, Nummer 42, ausgegeben am 12. August 2002.
243	베를린시와 브란덴부르크주 공동방송국의 설립에 관한 국가조약법-브란덴부르크 주의회 1차 심의	2002년 9월 4일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베를린 시정부	Landtag Brandenburg. 3. Wahlperiode. Plenarprotokoll 3/61
244	연대협약-재건을 위한 적절한 지원 수단의 활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3년	요아힘 라그니츠의 논문, 할레 경제연구소	Joachim Ragnitz, Solidarpakt: Aufbaugerechte Verwendung der Mittel noch nicht gewährleistet. Wirtschaft im Wandel 16/2003, S. 473-478.
245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주의회에 제출한 1994~1999년의 유럽연합 지원회기 기간에 실시한 주의 프로그램 '브란덴부르크의 전문성 신장 및 노동(Qualifizierung und Arbeit für Brandenburg)'에 대한 보고서	2003년 1월 8일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브란덴부르크주 노동 · 사회 · 건강 · 가족부	Landtag Brandenburg, 3. Wahlperiode, Drucksache 3/5293
246	독일 토지관리공사의 자연 보호 구역 양도	2003년 5월 26일	연방토지관리공사	Verlinkter Beitrag de Internet-BRAFONA, Ausgabe 5, Mai/Juni 2003, Rubrik „Forstliche Betriebswirtschaft/ Marketing", Seite 13.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47	'동부급여'는 합헌–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2003년 7월 17일	연방헌법재판소	Bundesverfassungsgericht. Pressemitteilung Nr. 52/2003 vom 17. Juli 2003
248	제2차 발전 보고서: 구동독지역 경제 발전에 관한 경제연구소 보고	2003년 11월	독일경제연구소, 키일대학교 부속 세계경제연구소,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 경제문제연구소, 유럽 경제연구센터	Forschungsauftrag des Bundesministeriums der Finanzen
249	행정공동체의 지속발전 및 기초단체의 행정력 강화를 위한 법	2003년 11월 13일	작센–안할트 주의회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Sachsen–Anhalt, 14. Jahrgang, Nummer 41, S. 318–321, ausgegeben am 19. November 2003, Magdeburg.
250	동독지역 경제의 혁신적 능력 분야, 생산 네트워크, 중점전문 분야(BMVBW 연구)	2004년	할레 경제연구소, 연방 교통, 건설, 주택부	Anlage des IWH zur gemeinsamen Presseerklärung mit dem BMVBW am 2. November 2004.
251	브란덴부르크주 도시개발 · 주택 · 교통부 1999–2004년 보고서	2004년 5월	브란덴부르크주 도시개발 · 주택 · 교통부	Ministerium für Stadtentwicklung, Wohnen und Verkehr des Landes Brandenburg (Hrsg.). 2004
252	프랑크푸르트–오더의 반도체 공장 투자계획의 준비 및 실현에서 주정부의 책임 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3/3의 결정 권고 및 보고	2004년 8월 18일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조사위원회 3/3 하인츠 비에트체 의원, 브란덴부르크주 전 경제 장관 퓌어니스, 프랑크푸르트 오더 반도체물리학연구소	Landtag Brandenburg, 3. Wahlperiode, Drucksache 3/ 7770
253	브란덴부르크 주개발회사 적자 해명에 관한 주의회 조사위원회 3/2의 결정 권고 및 보고서	2004년 8월 23일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조사위원회 3/2 디터 헬름 의원, 도시건설 · 주택 · 교통을 위한 브란덴부르크 주개발회사(LEG)	Land Brandenburg, 3. Wahlperiode, Drucksache 3/7777
254	기초자치단체를 행정공동체로 분류하기 위한 2차 규정	2004년 9월 8일	작센–안할트주 내무부	Jeweils abgedruckt im Gesetz– und Verordnungsblatt von Sachsen–Anhalt.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55	죽음의 경계선에서 생명의 띠로: 철의 장막이 그린벨트로 바뀌다	2004년 9월 9일	세계자연보전연맹, 연방 자연보호청	Pressemitteilung des Bundesamtes für Naturschutz, http://www.bfn.de/pm_44_20040.html, 23.11.2010
256	행정구역개편법	2005년 11월 11일	작센-안할트주 내무부	Jeweils abgedruckt im Gesetz- und Verordnungsblatt von Sachsen-Anhalt.
257	'하르츠(작센-안할트주)' 국립공원에 관한 법	2005년 12월 20일	작센-안할트 주의회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Sachsen-Anhalt. 16. Jahrgang. Ausgegeben in Magdeburg am 30. Dezember 2005. Nummer 68.
258	보건제도에 있어서 시스템 변경을 위한 도전 과제 및 경험적 지식	2007년 기준	브란덴부르크 일반 지역의료보험조합(AOK) 제1 위원장 베른트 그리거	Archiv der AOK Berlin
259	인구변동의 조건하에서 튜링겐주 농촌지역의 기초단체 게마인데-모니터링 체제의 최종 보고서	2007년 4월 30일	튜링겐주 건설교통부(제2국: 도시건설, 주택건설, 공간질서와 지역계획)	Thüringer Ministerium für Bau, Landesentwicklung und Verkehr: http://www.thueringen.de/imperia/md/content/tmbv/monitoring_abschlussbericht.pdf
260	사통당 독재에 대한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의 구상	2007년 11월 8일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브란덴부르크주 교육 · 청소년 · 체육부, 학술 · 연구 · 문화부, 법무부, 내무부, 포츠담 현대사연구소	Landtag Brandenburg, 4. Wahlperiode, Drucksache 4/ 5325
261	2008 작센주(州) '구동독지역 재건(Aufbau Ost)' 프로그램 성과보고서	2008년	작센주 재무부	Fortschrittsbericht „Aufbau Ost" des Freistaates Sachsen für das Jahr 2008, herausgeben vom Sächsischen Staatsministerium der Finanzen, Dresden.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62	작센-안할트주(州) '구동독지역 재건' 프로그램 성과보고서	2008년	작센-안할트 주정부	Regierung des Landes Sachsen-Anhalt, Ministerium der Finanzen (Hrsg.), Magdeburg 2009; https://mf.sachsen-anhalt.de/fileadmin/Bibliothek/Politik_und_Verwaltung/MF/Dokumente/Fortschrittsbericht/FB_2008.pdf
263	부채 모니터링-재정 위기로부터 지속성으로의 이동	2008년	베르텔스만 재단	Bertelsmann-Stiftung (Hrsg.): Schuldenmonitor. Von der Haushaltsnotlage zur Nachhaltigkeit.
264	신연방주에 대한 경제지원	2008년	요아힘 라그니츠	Joachim Ragnitz, Wirtschaftsförderung in den neuen Ländern. Gesellschaft – Wirtschaft – Politik, Heft 1/2008, S. 53-64.
265	2009 공공재정 연간보고서: 작센, 작센-안할트주(州) 보고서	2008년	볼프강 푀어스터, 울프 마이어-릭스	Wolfgang Förster, Länderbericht Sachsen 2008, S. 152-160. Ulf Meyer-Rix, Länderbericht Sachsen-Anhalt 2008, S. 162-164. Beide Artikel in: Martin Junkernheinrich, Stefan Korioth, Thomas Lenk, Henrik Scheller, Matthias Woisin (Hrsg.): Jahrbuch für öffentliche Finanzen. Berlin: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266	2008년도 작센주 동부 재건 성과 보고서	2008년 1월 1일	작센주 재무부	Sächsisches Staatsministerium der Finanzen; http://www.lsf.sachsen.de/download/fortschrittsbericht_aufbau_ost_2008.pdf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67	브란덴부르크의 정부 엘리트	2008년 3월 15일	포츠담대학 경제사회학부 디르크 아르네 하이옌	Heyen, Dirk Arne: Regierungseliten in Brandenburg im Zeitverlauf –Zu der Frage der Ost–West–Herkunft und dem sozioprofessionellen Hintergrund der Kabinettsmitglieder (von 1990 bis heute). Universität Potsdam, Wirtschafts– und Sozialwissenschaftliche Fakultät, 2007/08
268	2009 연방주 순위: 작센주의 강점/약점의 특성(새로운 사회적 시장경제를 위한 이니셔티브(Initiative neue soziale Marktwirtschaft))	2009년	이니셔티브 '새로운 사회시장경제', 쾰른 독일경제자문, 경제전문지 '경제주간'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Köln Consult GmbH (https://www.iwconsult.de/fileadmin/user_upload/downloads/public/pdfs/sachsen.pdf (Stand: 07.05.2018))
269	2009 연방주 순위: 작센–안할트주의 강점/약점의 특성(새로운 사회적 시장경제를 위한 이니셔티브(Initiative neue soziale Marktwirtschaft))	2009년	이니셔티브 '새로운 사회시장경제', 쾰른 독일경제자문, 경제전문지 '경제주간'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Köln Consult GmbH (https://www.iwconsult.de/fileadmin/user_upload/downloads/public/pdfs/sachsen–anhalt.pdf(Stand: 07.05.2018))
270	2009/2010 연방주의 입지 경쟁력: 수입–고용–안전	2009년–2010년	베르텔스만 재단	Bertelsmann–Stiftung (Hrsg.): Die Bundesländer im Standortwettbewerb 2009/2010, Einkommen – Beschäftigung – Sicherheit; 2010; https://www.bertelsmann–stiftung.de/de/publikationen/publikation/did/die–bundeslaender–im–standortwettbewerb–20092010/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71	기초자치단체와 재정	2009년	작센 주정부, 작센주 재무부	Staatsministerium der Finanzen, Freistaat Sachsen, Hrsg.: Die Gemeinden und ihre Finanzen 2009, Dresden 2009, 8. Auflage (insgesamt 105 Seiten).
272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이 마침내 ... 좋은 결과로?– 작센–안할트의 체제 및 기능 개혁	2009년	베른트 크레겔의 논문집 수록 논문	Bernd Kregel, Was lange währt, wird endlich … gut? Struktur– und Funktionalreform in Sachsen–Anhalt. In: Sabine Mecking und Janbernd Oebbecke, Hrsg., Zwischen Effizienz und Legitimität. Kommunale Gebiets– und Funktionalreform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historischer und aktueller Perspektive. Paderborn, 2009, Ferdinand Schöningh Verlag, S. 22fff.
273	브란덴부르크 사회간접자본건설부가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총리실에 제출한 보고서	2009년 3월 20일	사회간접자본 · 농업경제부,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총리실	Ministerium für Infrastruktur des Landes Brandenburg
274	2009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의 문화 개발 콘셉트에 대한 보고서	2009년 4월 30일	브란덴부르크주 학술 · 연구 · 문화부	Landtag Brandenburg, 4. Wahlperiode, Drucksache 4/7524
275	인구 통계적 변화: 신연방주를 고려한 정책 제안	2009년 6월	연방 교통 · 건설 · 도시개발부, 베를린 인구발전연구소	Berlin–Institut für Bevölkerung und Entwicklung (Hrsg.). Berlin, 2009. (https://www.berlin–institut.org/fileadmin/user_upload/Studien/Demografischer_Wandel.pdf (Stand: 17.04.2018))
276	브란덴부르크 과거청산담당관법(BbgAufarbBG)	2009년 7월 7일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공산독재의 청산을 위한 브란덴부르크주 특임관	Brandenburgisches Vorschriftensystem (BRAVORS)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77	일곱 번째 연방주 순위: 연방주 비교–누가 가장 최고로 경영했는가?	2009년 12월	이니셔티브 '새로운 사회시장경제', 쾰른 독일경제자문, 경제전문지 '경제주간'	IW Consult GmbH Köln, http:77www.iwconsult.de; www.bundeslaenderranking.de
278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이전 지출에 관한 개요와 이러한 이전 지출이 경제 발전과 각 주정부 재정 및 지역자치단체 재정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	2010년	할레 경제연구소 토마스 렌크 및 마티나 쿤체, 신연방주와 구연방주, 지자체	Lenk, Thomas und Kunze Martina. 2010.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 (Hrsg.). 20 Jahre Deutsche Einheit – Von der Transformation zur europäischen Integration. Tagungsband. Halle (Saale): IWH–Sonderheft. S. 401–416
279	신연방주의 주행정–연방정치교육원의 자료	2010년 1월 1일	연방정치교육원, 만프레드 클루트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Manfred Kluth; http://www.bpb.de/geschichte/deutsche–einheit/lange–wege–der–deutschen–einheit/47200/verwaltung–der–laender?p=all (Stand: 19.07.2018)
280	제11차 의원법 개정법(동독 슈타지 관련 여부 검증)–브란덴부르크주	2010년 1월 21일	브란덴부르크주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Brandenburg, 21. Jahrgang, Nummer 3
281	'브란덴부르크주에서의 사통당 독재 잔재의 극복 및 역사 청산과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앙케이트위원회 설치	2010년 3월 9일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기민당, 자민당, 연합 90/녹색당 원내 교섭 단체	Landtag Brandenburg, 5. Wahlperiode, Drucksache 5/554
282	1952년 동독의 주 폐지와 중앙집권적 통일국가의 형성–브란덴부르크의 사례	2010년 10월 15일	하랄트 엥글러,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 역사 하우스	Wei ß , Peter Ulrich. Vortrag im Haus der Brandenburgisch–Preu ß ische Geschichte Potsdam am 15.10.2010
283	브란덴부르크에서의 평화 혁명과 민주화 과정–주재건 20주년을 맞이하여 페터 울리히 바이스 강연	2010년 10월 15일	페터 울리히 바이스, 포츠담 시간역사 연구센터,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 역사 하우스	Engler, Harald. Vortrag im Haus der Brandenburgisch–Preu ß ische Geschichte Potsdam am 15.10.2010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84	2020년도까지 신연방주의 예산의 변화	2011년 4월 11일	슈트트가르트 대학교 아힘 힐데브란트	Wirtschaftsdienst (Zeitschrift für Wirtschaftspolitik), 2011, Heft 4, S. 244–248
285	사회통일민주당 평가를 위한 브란덴부르크 앙케이트 위원회(EK 5/1)–인물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의견서(뤼디거/카텐후센)	2011년 6월 1일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기셀라 뤼디거, 한스–크리스티안 카텐후젠	Parlamentsdokumentationssystem Brandenburg (https://www.parlamentsdokumentation.brandenburg.de/parladoku/w5/drs/ab_8500/8500_13.pdf (abgerufen: 26.07.2011))
286	작센주 문화재 보호 20년, 1990–2010–작센주 내무부 보고서	2011년 8월 15일	작센주 내무부	http://www.bauen–wohnen.sachsen.de/download/Bauen_und_Wohnen/Kabinettsbericht_Text_15–8–2011%281%29.pdf; http://www.bauen–wohnen.sachsen.de/download/Bauen_und_Wohnen/Anlagen_Kabinettsbericht_20–06–2011.pdf, abgerufen am 07.06.2016
287	총회의 토론: 독일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11년 연례보고서; 신연방주 차관	2011년 12월 16일	연방의회, 연방정부, 연방내무부, 신연방주 특임 차관 크리스토프 베르크너, 연방의회 의원 다수	Deutscher Bundestag, Plenarprotokoll 17/150
288	2013년에서 2017년까지 갈탄 채굴지역 정화비용 규정에 관한 4차 보완 행정합의 (갈탄 채굴지역 정화 행정합의)	2012년 10월 9일	연방재부무, 연방환경부, 신연방주 재무부, 신연방주 경제부	Bundesanzeiger, BAnz AT 07.03.2013 B4

문서	제목	날짜	담당자/기관	출처
289	갈탄 채굴지역 정비에 관한 행정협약 체결 20년–연방–주 사업소의 증인들의 인터뷰 및 보고서	2012년 11월	갈탄 채굴지역 정화 연방–주–사업소, 연방환경부, 연방재무부, 신탁관리청, 신연방주 주정부	Bund–Länder–Geschäftsstelle für die Braunkohlesanierung (Hrsg.). 20 Jahre Verwaltungsabkommen Braunkohlesanierung – Gesichter und Geschichten der Braunkohlesanierung. Berlin 2012
290	앙케이트위원회 최종보고서 5/1 브란덴부르크주에서 역사를 청산하고 사통당 독재의 결과를 극복하면서 민주적 법치국가로 이전하는 과제의 해결–'미디어와 의견의 다원성"(발췌)	2014년 3월 6일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앙케이트 위원회	Landtag Brandenburg. Schriften des Landtages Brandenburg Heft 5/2015. http://www.landtag.brandenburg.de/media_fast/5701/Schriftenreihe_5_2014_Internet.pdf (Stand 18.04.2016)
291	1989년 이후 브란덴부르크지역 농업의 체제전환 및 소유권전환 과정–앙케이트위원회 5/1 최종보고서 발췌	2014년 3월 14일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앙케이트 위원회 5/1	Landtag Brandenburg. Schriften des Landtages Brandenburg Heft 5/2015. http://www.landtag.brandenburg.de/media_fast/5701/Schriftenreihe_5_2014_Internet.pdf (Stand 18.4.2016)

문서 요약

문서 요약(문서번호 1~291)

문서 번호 1

‘국가연합’ 구상 초안-호스트 엠케, 사민당

1990년 1월 30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연방의회 사민당 원내 부대표 호스트 엠케

내용_

이 문서는 사민당 원내 부대표인 호스트 엠케가 동서독 간의 국가연합과 관련된 정치적 입장을 정리해 사민당 원내 대표에게 제출한 것으로, 동독의 사민당과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유럽 평화질서는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준비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대국들이 유럽 전체의 안보를 보장함으로써 동맹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단계적으로 화폐·경제·사회공동체를 도입해서 동서독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삶의 질을 보장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모든 영역에서 협력하는 것이 앞으로 가장 본질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베를린의 위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며, 기존 유럽의 경계를 존중할 것이다. 잠재적으로 공동기구가 만들어지고 이를 위한 인적 구성과 업무 분야에 관한 제안을 제출할 것이다. 국가연합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새로운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유지하도록 한다.

출처_ Archiv Bundesstiftung zur Aufarbeitung der SED-Diktatur, Vorlass Meckel, Akte 651

문서 번호 2

동독 행정개혁 실행을 위한 조치 및 기본원칙과 목표

1990년 2월 1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내용_

이 문서는 베를린 장벽의 개방 직후인 11월 13일에 한스 모드로우를 새로운 위원장으로 선출한 동독 내각위원회가 행정개혁의 실행을 위해 결정한 첫 번째 조치, 기본원칙, 목표이다. 이것은 11월 17일에 정부 성명으로 발표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개선의 틀에서 관료주의적, 중앙집중적 행정구조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자 한다. 행정개혁은 헌법, 경제, 사법개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 핵심은 지방자치행정의 구축이다. 새로운 지방행정 업무, 소유권, 재정, 권한 등은 지방헌법을 통해 정착될 것이다. 나아가 행정구역도 개편해서 시, 군의 위상을 원칙적으로 높이며 동시에 주 단위의 행정구역을 구축할 것이다. 그에 따라 국가행정의 기능과 업무가 새로 규정될 것이다. 국가적인 의결, 행정 절차는 국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각 행정 단위마다 분명히 구분되게

만들 것이다. 행정개혁의 모든 조치들은 사회적인 영향을 검토하고, 실무자, 학자, 지방기구와 행정의 대표, 사회세력들과 함께 토론할 것이다. 실시될 행정개혁의 첫 번째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행정 구축, 행정구역 개편, 행정기구와 정치적 집행기구 간의 분리, 법률 규정.

출처_ Bundesarchiv, BArch, DC 20-I/3/2904, 12. Sitzung des MR vom 1. Febr. 1990

문서 번호 3

동독 행정개혁을 위한 기본 원칙 및 목표와 조치-정부 위원회 및 지역 평의회 심의

1990년 2월 9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행정개혁' 정부 위원회 사무관 두덱 박사 인솔하의 업무팀

내용_

이 문서는 과도개혁기 동독 정부가 실시하려는 행정개혁의 기본 원칙과 목표에 대해 동독 내각위원회가 심의한 것이다. 행정개혁은 1989년 11월 17일에 정부 성명을 통해 공표되었고, 2월 1일 내각회의에서 심의되었고, 2월 5일에 원탁회의를 통해 의결되었다. 이 개혁은 동독 국가, 사회의 민주적 개혁의 틀에서 관료주의적, 중앙집권적 행정구조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개혁은 헌법, 경제, 사법 개혁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행정개혁의 핵심은 지방자치를 살리는 것이다.

나아가 동독의 행정 영역 개혁을 통해 시, 군 단위뿐만 아니라 주 단위의 행정구역을 도입한다. 그에 따라 국가행정도 새롭게 결정되어야만 한다. 국가행정 절차는 행정 단계에 따라 주민친화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다. 모든 행정개혁 조치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 검토하고 실무 담당자와 학자, 기초단체 대표들 및 사회그룹들과 협의하에 진행한다.

행정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 행정의 조직(Herausbildung), 주조직 재건과정의 변화, 지방회의(Räte) 결정권의 확대와 국가기구가 갖고 있는 경제 주도 역할의 명확한 축소.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401 Nr. 24510

문서 번호 4

연방정부 수상 헬무트 콜과 연방주의 주총리들 간의 회의-동독과의 협상과 연방정부와 연방주 간의 재정적 부담에 관한 논의

1990년 2월 15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총리 요하네스 라우 외 각 주 대표, 헬무트 콜 수상, 자이터스 수상청장, 연방정부 각 부처 장관

내용_

이 문서는 1990년 2월 초에 헬무트 콜 수상과 각 연방주의 주지사들이 참석하여 동독의 변화에 관해 논의한 회의의 기록이다. 이 회의에서는 특히 두 개의 주제가 논의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동독의 변화, 동독과의 협상 현황, 연방주의 참여: 콜 수상은 동독과의 협력에 관하여 보고하면서 이 과정에 연방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기를 원하였다. 연방정부와 각 연방주들은 승전연합국과의 협상은 전적으로 연방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과제라는 점에 합의하였다. 연방수상청장은 화폐통합에 관한 동독과의 협상에 연방주들이 제한적으로만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에 반해 연방주의 대표들은 화폐통합에 관한 협상에 연방주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2. 연방과 연방주 간의 재정 관계: 동독으로부터 밀려오는 동독 이탈주민들을 임시로 수용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해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에 이견이 존재하였다. 연방정부의 재무 장관 바이겔은 동독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연방정부가 일방적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에 대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주지사 요하네스 라우는 동독 이탈주민들을 임시로 수용하는 문제로 인해 연방주들이 얼마나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지 설명하였다. 바이겔 장관의 제안에 따라 연방과 연방주 실무그룹을 구성하여 재정문제의 해결점을 찾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특히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동독의 변화로 인해 발생할 비용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바이겔 장관은 동독 이탈주민들의 수용과 관련하여 연방정부가 1990년에 5억 마르크를 지원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출처_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185 S. 834f (digitale Edition)

문서 번호 5

동독의 지역 재편성에 대한 보고서

1990년 2월 19일

담당자 / 기관_ 칼하인츠 블라쉬케

내용_

이 문서는 과도개혁기 동독의 행정개혁을 위한 제안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89년 가을의 혁명적 변화 과정에서 1952년 해체되었던 행정 단위로서 주 제도의 재도입이 다시 힘을 받았다. 단일한 독일 연방국가의 범위에서 동독지역에 동일한 국가 질서를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연방주의 원칙의 실행과 함께 주의 재설립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연방제의 국가 질서를 수립하고 지역 재편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해결방안이 제시되었다: 소규모 해결방안, 중간적 해결방안, 대규모 해결방안.
저자는 주 제도의 재도입을 바탕으로 하는 행정개혁은 역사적인 기회이며 동독 사회가 이런 중요한 결정을 실행에 옮길 용기를 가져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401 Nr. 24509

문서 번호 6

구동독지역 언론에서 다뤄진 서독의 행정지원

1990년 2월 22일–10월 11일

담당자 / 기관_ 라우지처 신문, 매르키셰-오더 신문

내용_

여기서 발췌된 신문기사들은 서독 출신 행정지원 인력과 파견 행정 공무원에 대한 동독인, 특히 브란덴부르크인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많은 동독인들은 서독 행정 인력의 투입을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서독 행정 인력에 대해 불쾌감을 갖고 있었다.

출처_ Dieter Grunow. Verwaltungstransformation zwischen politischer Opportunität und administrativer Rationalität. Bielefeld 1996.

문서 번호 7

연방정부 수상청과 각 주정부의 총리실 대표단과의 회의

1990년 3월 2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수상청, 연방수상청장 자이터스, 각 연방주 총리실장, 연방정부 외무 장관 킹켈, 경제 차관 폰뷰어젠 외 다른 연방정부 차관들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부 수상청장 자이터스가 각 연방주를 대표하는 주정부 총리실장들에게 동독과의 협상에 관해서 그리고 경제화폐공동체를 설립하는 것에 관련하여 보고한 회의록이다. 이 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화폐공동체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1990년 3월 18일에 있을 동독 최고인민회의 선거 이후에 논의하기로 하였다. 연방주들은 승전연합국과의 회의, 즉 2+4 회의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협상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나아가 각 부처의 차관들이 동독과 진행되고 있는 협상에 관해서 보고하였다.

(동독과 서독이 경제화폐공동체를 만드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방정부의 수상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전문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각 담당 부처가 동독의 해당 부처와 직접 협상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상청은 전체적인 조정을 담당하였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B 136/29247, 122 – 14020 Mi 1

문서 번호 8

브란덴부르크주의 초기 상황에 대한 분석과 포츠담, 코트부스, 프랑크푸르트-오더 세 구역의 브란덴부르크주의 재건 참여 비율

1990년 5월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준비를 위한 조정위원회, 포츠담, 프랑크푸르트-오더, 코트부스 구역위원회의 직원들, 전문가, 원탁회의 대리자

내용_

이 자료는 각 구역의 통계 담당 부서가 공동으로 작성한 브란덴부르크주의 초기 상황 자료를 요약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 분석은 구동독에서 앞으로 있을 주의 형태(Länderbildung) 논의에 관한 하나의 양식을 제시한다. 중요한 관심사는 앞으로의 주 조직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3개 구역의 비율과 위치(Positionen)에 대한 규정이다. 이 분석은 본질적으로 1988년 현 상태에 대한 분석(Ist-Zustandsanalyse)이다. 오차(Abweichungen)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분석은 1988년의 현황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다. 앞으로 브란덴부르크주는 3개의 구역으

로 나뉘고, 6개의 시, 38개의 군, 1,762개의 게마인데로 구성된다. 142,000명의 주민이 사는 포츠담시가 가장 큰 도시이다. 주의 영토는 28,000제곱킬로미터로, 통일된 독일의 연방주 중에서 5번째로 크다. 이 지역에서는 동독 산업 총생산의 18.9%, 에너지 경제의 50%가 생산되었다. 농업 생산량은 동독의 평균 수준 이하이다. 교통망도 마찬가지로 평균 수준 이하로 구축되었다.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401 Nr. 21433

문서 번호 9

주 재편을 포함한 동독 내 주 신설에 관한 법 제안을 위한 결의문

1990년 5월 2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내각위원회

내용_

이 문서는 자유총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 최고인민회의가 동독을 5개 주로 분할한다는 제안을 포함한 동독 내 주 신설을 위한 법(주도입법)에 관한 제안을 만장일치로 수락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입법을 위해 입법위원회를 구성한다.
- 주 소속에 관한 주민 결정 실시
- 예정된 주 신설을 위해 각 시의회는 자기 책임하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I. 동독 내 주 신설을 위한 법에 관한 원칙(주도입법)

a) 관할 영역 구분 입법 관할: 독일 국가의 연방적 성격을 보호하고 강조하기 위함. 입법에 관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관할 영역이 목록화되었다.

b) 행정 구분: 서독 기본법의 원칙에 따라 지방정부들은 국가 업무 해결을 위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

c) 지방정부의 재정적 토대 확보

d) 지방정부 차원의 정부 시스템의 법적 토대: 기본법 제20조, 제28조: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II. 주 신설에 관한 제안

a) 주 신설에 관한 기준과 관점

– 주민의 고향 및 지역적 연관성(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정체성)

– 주민 수, 면적, 경제적 합목적성, 주의 경쟁력

– 기존 기능적, 조직적 관계

b) 주 신설 원칙에 관한 두 가지 방법
- 1946~1952년까지의 주 형식을 근거로
- 시 영토를 통합
c) 5개 주 모델: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브란덴부르크주, 작센- 안할트주, 작센주, 튜링겐주

III. 주 설립을 위한 일정 제안: 정부 위원회는 주 설립을 위한 개별 단계의 실행을 위해 일정을 제안한다.

출처_ Bundesarchiv, DC 20-I/3/2947, 4. Sitzung des MR vom 2. Mai 1990

문서 번호 10

동독 최고인민회의 토론-게마인데와 란트크라이스의 자치행정에 관한 법

1990년 5월 10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내용_
이 문서는 동독의 내각회의가 제출한 기초단체법에 관해 최고인민회의에서 토론한 것이다. 이 논의에서는 이 법의 도입이 '권력의 탈중앙집권화를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라는 주장도 있었고, 기초단체의 자치행정으로의 이행은 '이미 시작된 행정개혁의 핵심'이며, '기초단체법을 통해 두 개의 독일 국가의 통일과정이 더욱 진척될 것'이라는 설명도 있었다. 이 법안은 반대표 없이 한 표의 기권만으로 통과되었다.

출처_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0. Wahlperiode, 6. Tagung

문서 번호 11

동독의 게마인데와 란트크라이스의 자치행정에 관한 법(기초단체법)

1990년 5월 17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최고인민회의가 1990년 5월 17일에 도입한 기초단체법이다. 그 주요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부: 기초단체로서의 게마인데 규정

– 게마인데는 지역단체이다. 이 법에서 말하는 게마인데는 주변 지역인 크라이스를 갖고 있는 소규모의 시(Stadt)와 군(Gemeinde) 그리고 크라이스가 없는 대규모 시(Stadt)를 의미한다.
– 자치행정: 게마인데는 지역 공동체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자치적으로 규정하고 그와 관련된 법을 결정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재정 자원의 확보
– 공동체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주민제안, 주민결정 그리고 주민투표
– 게마인데의 평의회는 주민대표 기관이며 게마인데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게마인데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책임진다.
– 지역 단체장(주민대표-기초단체장): 게마인데 평의회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겸 게마인데 행정의 수장
– 예산권
– 직접적인 경제활동과 경제활동에 참여
– 감사

- 2부: 지역 단체 란트크라이스 규정

– 란트크라이스는 지방자치 행정의 기본원칙에 따라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적인 문제를 관장한다. 란트크라이스는 법률의 틀 내에서 자체적인 책임하에 게마인데의 영역을 넘어서는 과제를 담당한다.
– 란트크라이스의 조직으로는 크라이스 의회(Kriestag)와 란트라트(Landrat)가 있다.
– 크라이스 의회: 주민대표 기관으로 란트크라이스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 위원회: 크라이스 의회는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상설위원회 또는 임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의사결정권을 갖기도 하며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 란트라트: 크라이스 행정의 수장으로 크라이스위원회의 위원장이다.
– 크라이스의 경제
– 감사

- 3부: 과도기 규정과 최종 규정

– 장관회의는 이 법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그리고 인민회의는 게마인데와 란트크라이스의 자치행정의 실현을 위한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

출처_ Gesetzblatt der DDR 1990 I/28. S. 255ff

문서 번호 12

통일된 독일의 연방국가적 질서를 위한 연방주들의 기본 입장

1990년 7월 5일

담당자 / 기관_ 주총리회의, 주총리회의 의장 요하네스 라우

내용_

서독의 연방주들을 대표하여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의 주총리 요하네스 라우가 헬무트 콜 연방정부 수상에게 '통일독일에서의 연방국가 질서를 위한 연방주들의 기본입장'을 전달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방주들은 헌법에 규정된 지위에 따라 독일통일 과정에서 연방과 동등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통일과정은 중앙집권적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된 독일은 더욱 강력하게 연방제적인 성격을 갖는 국가가 되어야만 한다. 그를 위해서 연방주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한다:

1) 통일독일의 국가 명칭에 연방국가 원칙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해야만 한다.

2) 통일된 독일의 연방과 연방주 간 재정 관계는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되어야만 할 것이다. 1994/1995년까지는 동독지역의 연방주들이 연방국가의 재정균형배분 체계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없다.

3) 입법권의 제한 문제와 관련된 기본법(헌법)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4) 외교 관계에 관한 기본법 조항의 개정을 제안한다.

5) 서독 연방주들의 절대적인 다수는 동독지역에 도입된 5개의 주들을 고려하여 연방회의의 적절한 의석 배분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출처_ Küsters, Hanns Jürgen / Hofmann, Daniel. 1998 Deutsche Einheit. Sonderedition aus den Akten des Bundeskanzleramtes 1989/1990. München: Oldenbourg Nr. 342 und 342A

문서 번호 13

기초자치단체, 도시, 광역자치단체 재산법(지방자치단체 재산법)

1990년 7월 6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최고인민회의, 동독 기초자치단체, 동독 광역자치단체

내용_

- 동독에는 개인 소유물이 거의 없었다. 민주화 이후 지방 기본법이 통과되면서 무엇이 기초자치단체의 소유이고, 광역자치단체의 소유인지, 혹은 개인 소유인지 규정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명확히 하는 소유 권리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했다.

- 이러한 측면에서 법에는 공공 업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자치단체, 시, 광역자치단체 기관에 인민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었다. 공공 교육기관의 기숙사에 대한 내용은 제외되었다.
- 법은 특별히, 어떤 재산이 이전될 수 있는가에 대해 규정하는데 예를 들어 기업, 토지, 부동산을 이전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에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구분되었다. 그들은 교통기관, 전기, 수도와 같은 기초기관, 극장, 박물관, 병원 등과 같은 지방기업, 지방기관의 소유주가 되었다(§6).
-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이전 절차는 명문화되었고 시장과 주의회의 이의제기가 고려된다(§8).
- 지방재산의 종류와 이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는데 즉,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수익목적의 이용, 효과적인 공공 영향, 재정관리 등이 보장되었고 공공 목적이 강조되었다(§5).
- 법은 민간회사, 민간인, 그들의 유족이 공공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와 관련된 특별규정을 포함하고 있다(§4).

출처_ Gesetzblatt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Berlin, den 20. Juli 1990, Teil I, Nr. 42, Seiten 660-661.

문서 번호 14

독일민주공화국 내 주 설립에 관한 헌법(주도입법)

1990년 7월 22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인민회의, 제10차 임기

내용_

- 동독은 중앙집중적 단일국가였다. 동독에는 전통적인 행정 단위 체제로 구, 광역군, 시가 있었다. 이러한 체제는 연방공화국(서독)의 연방주의 체제로 인해 변화되어야 하는데 과거의 전통적인 단위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 1990년 10월 14일 구동독이 서독 편입지역이 되면서 5개 주제도가 도입되었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브란덴부르크, 작센-안할트, 작센, 튜링겐. 시군의 행정영역 교체 등을 통해 행정구역의 변화가 있었다; 광역자치단체가 없는 시가 신설되었다. 주 경제의 변경을 위해 해당 주 사이에 국가조약이 필요했다.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주민설문조사 실시, 기초자치단체대표자회의/시대표자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절차가 초반에 만들어졌다(§2).
- 베를린은 주로서의 권한을 받았다. 이는 동-서 베를린의 통합을 가져왔다(§1, 2절).

- 상기 법은 공화국, 주, 광역단체, 기초단체 간의 책임소재를 규정했다(§8, §9). 연방과 주의 재정주권에 대한 사항도 규정되었다(§19).
- 구동독에서 활용되던 지역 단위로서 구(Bezirke)의 재산은 원래의 소유주였던 주(Land) 단위로 이전되었다(§21). 그러나 국가 신탁관리청에서 소유물을 사용하는 것은 연방 입법권한의 대상이었다(§11).

출처_ Volkskammer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10. Wahlperiode, Drucksache Nr. 84 a

문서 번호 15

통일조약-제37조 교육

1990년 8월 31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정부, 동독 정부

내용_

통일조약 제37조는 기본적으로 동독에서 취득한 대학 학위, 시험성적 및 자격증을 서독의 자격증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다.
이 규정을 근거로 주교육문화장관회의에서 교사임용 시험과 대학교 입학자격을 위한 경과 규정 및 학교제도의 새로운 구성을 위한 규정을 제정해야만 한다.

출처_ BGBl. II, S. 885

문서 번호 16

독일통일에 관한 동독과 서독 간의 조약(통일조약)-발췌: 연방주, 행정 체계 구축과 공공직에 관한 규정

1990년 8월 31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동독

내용_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는 것을 문서화한 통일조약이 동독과 서독 간에 체결되었다. 이 조약에는 다른 여러 가지 사안들과 함께 연방주의 지위, 행정 체계의 구축 그리고 공공 업무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었다. 공공 행정과 관련된 것으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제1조 (1항):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그리고 튜링겐주는 연방주로서 독일연방공화국의 일원이 된다. 이들 연방주의 구조와 경계는 1990년 7월 22일에 발효된 '주도입법'에 의해 결정된 것을 따른다.
제4조 (3항): 각 주는 (연방회의에서) 최소한 3개의 의석을 갖는다. 주민 수가 이백만 명이 넘는 주는 4개의 의석을, 육백만 명이 넘는 주는 5개 그리고 주민 수가 칠백만 명이 넘는 주는 6개의 의석을 갖는다.
제5조: (통일이 실현된 후) 2년 내에 헌법 문제, 특히 연방정부와 연방주 간의 관계에 관한 문제를 재검토해야만 한다.
제7조 (2항): 가입지역에서 징수한 세금은 독일 기본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서 연방과 연방주 그리고 기초단체 사이에 분배된다.
제7조 (3항): 가입지역에 대해서는 1990년 12월 31일까지 연방주 간의 재정균형배분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세의 경우 규정된 배분율에 따라 분배된다.
제7조 (5항): 신연방주들이 필요로 하는 일반 재원은 '독일통일기금'을 통해서 제공된다.
제13조 (1항과 2항): 신연방지역에 소재한 행정관청과 기타 공공행정 또는 사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그 지역의 주정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연방헌법의 규정에 따라 연방정부가 담당하는 업무를 관장해 온 기관은 해당 연방관청에 소속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기관의 해체 또는 이전이 결정된다.
제15조 (1항): (동독지역이 독일연방공화국의 일원으로) 가입한 날부터 주총리가 선출될 때까지는 신연방주의 주대표와 광역단체 베치르크를 대표하는 정부 전권위임자들이 정부의 책임을 담당한다.
제15조 (2항): 서독의 연방주와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의) 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행정지원을 제공한다.
제21조 (1항과 2항): 동독 정부의 행정재산은 일반적으로 연방정부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그러나 1989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연방주와 기초단체에서 관할되는 업무를 위해 사용되었던 재산은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에 따라 연방주와 기초단체에 귀속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 행정기관에 귀속된다.
제22조 (1항): 농업과 임업 분야의 재산과 토지를 포함한 공공 금융재산 중에 신탁법에 따라 기초단체에 양도되지 않는 것은 연방정부의 신탁관리를 받게 된다. 이 재산은 연방정부와 신연방주 간에 분배된다. 연방주들은 이것을 다시 기초단체에게 배분해 주어야 한다.
부록 I(예산과 재정: '독일통일기금' 도입에 관한 법; 연방과 연방주 간의 재정배분에 관한 법; 게마인데재정개혁법; 세금배분법 등의 규정)
부록 I (공공 업무): 연방공무원법; 공무원급여법; 연방급여법 등에 관한 규정
공공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인의 법적 지위 1(1항과 2항): 공공행정기관의 고용관계는 존속된다. 그 외의 고용관계는 1990년 10월 3일 자로 일단 정지된다(대기수당 70% 지급). 이들을 위해 재연수와 직업교육조치가 제공된다. 이들의 경우 6개월 이내 다른 행정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고용관계가 소멸된다.

출처_ Rechtsportal des Bundesministeriums der Justiz, http://www.gesetze-im-internet.de/einigvtr/EinigVtr.pdf (Stand 08.06.2018)

문서 번호 17

3개 구역(Bezirk)의 대표들에 의해 수정된 주헌법 초안

1990년 9월

담당자 / 기관_ 코트부스, 프랑크푸르트-오더, 포츠담 구역의 정부대리자들

내용_

이 문서는 통일과 함께 독일연방공화국의 새로운 연방주가 될 브란덴부르크주 헌법 초안을 브란덴부르크주 3개 베치르크의 대표들이 수정한 것이다. 브란덴부르크주의 헌법은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과 다른 연방주의 주헌법 그리고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국가라는 기본원칙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0년 4월 첫 번째 초안이 작성되었다. 수정된 헌법 초안에는 현재의 발전 상황과 앞으로의 해야 할 일이 다루어졌다. 또한, 환경과 자연 보호 문제도 고려되었다. 소유권과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보호와 책임 개념이 강조되었다. 또한 누구에게나 적절한 주거와 노동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권리는 소송 가능한 요구(Anspruch)로서의 의미가 아닌 사회적 임대법(das Mietrecht)과 노동 및 사회법(ein Arbeits-und Sozialrecht)을 발전시킬 국가적 의무 차원에서의 권리를 의미한다.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401 Nr. 22897

문서 번호 18

베를린 행정 통합을 위한 기본 틀

1990년 9월 14일

담당자 / 기관_ 베를린주, 서베를린 시장 에리히 페촐트, 동베를린 시장 토마스 크뤼거

내용_

이 문서는 베를린 행정통합 문제를 다루게 될 1990년 9월 18일 회의를 위해 서베를린 시정부와 동베를린 시정부가 제출한 베를린 행정통합을 위한 기본 틀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수도 베를린은 역량을 갖춘, 친시민적이며 예산에 맞는 단일 행정을 필요로 한다. 동독-행정은 해체되어야 하며, 기존 행정 직원들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베를린은 신연방주들의 모델이 될 수 있다.
- 체계적이지는 않아도 다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1990년 9월 25일까지 구(Stadtbezirke)에 관한 규정을 제출해야 한다.
- 1990년 10월 2일까지 동베를린 시청의 하급기관들에 대한 규정을 도입한다.
- 동베를린 시청의 행정과 관련된 규정은 1990년 9월 3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 1990년 10월 3일에서야 여러 가지 결정을 위한 충분한 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1990년 10월 3일 이전까지 내려질 수 없을 것이다. 한 기관이 연방정부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주정부에 속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이를 정리하는 관청(Clearing-Stelle)이 설치될 계획이다.
- 1990년 10월 2일까지 사법 관청에 관한 제안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경찰과 소방서, 주정부 거주지 등록청(Landeseinwohneramt)에 관한 제안서는 1990년 9월 25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 행정통합에 관한 결정 기간: 1990년 10월 3일~1991년 1월 2일
- 노동시장의 상황이 나빠져서는 안 된다.
- 국가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관들은 해체되어야 한다.
- 인사와 예산에 관한 사안은 앞으로 중앙에서 처리한다.
- 특별히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동베를린 직원들은 최대 3년간 현 직무를 지속할 수 있다.
- 해고를 통해 얻은 예산 절감액의 절반은 신규 채용을 위해 각 구에 전달된다.
- 분야별 기관에 대한 결정은 내년도에 결정될 수 있다. 특히 문화 기관들은 민간사업자에게 맡긴다.
- 1990년 9월 30일까지 어떠한 교육 조치가 실시될지를 공고한다.
- 베를린의 모든 교육 기관들은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출한다.
- 행정기관들의 내부 교육기관들은 동베를린지역에 집중한다.
- 연방노동청은 행정 이외의 활동을 준비한다. 이를 위해 1990년 10월 16일까지 제안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의 시행정부와 베를린의 대학들은 1990년 10월 16일까지 대학 졸업자들의 후속 교육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한다.
- 56세 이상의 여성과 58세 이상의 남성들은 과도기연금(Altersübergangsgeld, 조기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는 행정 통합에 기여한다.
- 노동 및 수입 조건은 단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 모든 직원들은 통합된 베를린의 주행정부에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서베를린에 근무지를 갖는 동베를린 출신 직원들은 동베를린 기준의 임금(Ost-Tarif)을 받게 된다.
- 동베를린 시행정부에서는 신규채용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 신 동베를린 노동자 협회는 곧 서베를린과 통합된다.
- 공공 근무에 관한 베를린의 임금지급 체계는 곧 통합된다.

출처_ Schreiben der Senatsverwaltung für Inneres/Magistratsverwaltung für Inneres.

문서 번호 19

신연방주의 환경행정 구축 및 동독 환경부의 기구와 시설의 인계-동독 환경부, 연방환경부 및 신설된 동독 주 대표들 간의 회의

1990년 9월 20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환경부, 서독 환경부, 신연방주 환경 관련 부서 대표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환경부와 서독 연방환경부, 동독에 신설된 주의 환경 관련 부서 대표들이 모여 환경행정의 이양 업무에 관해 논의한 회의의 기록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 환경부 차관은 동독 환경부가 1990년 8월 1일에 발표한 '동독 주들의 환경행정 구축을 위한 제안'을 언급하면서 환경행정 구조의 구축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하였다. 통일조약에 따르면 동독 주들에서의 환경행정 시설은 해당 지역의 주정부가 관할하게 되며 그 권한은 1990년 12월 15일 자로 이양되어야 한다. 통일 이후 신연방주에 제대로 작동하는 환경 부서가 구축될 때까지 그 업무는 연방주특임관과 주총리가 연방환경부와 상호 협조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각 주의 대표들은 환경행정 구축 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K 5/4338

문서 번호 20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튜링겐주 및 동베를린지역의 일반교육학교 재정비를 위한 기본 원칙 및 권고

1990년 9월 26일

담당자 / 기관_ 공동교육위원회

내용_

이 문서는 동서독 공동교육위원회가 구동독지역에 신설될 신연방주의 학교제도를 재정비

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제안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의 학교제도는 8학년 과정을 이수하면 학교교육을 마칠 수 있었다. 통일된 이후 신연방주에서는 이 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 신연방주에서는 모든 학생이 최소한 9년, 최대 10년간의 의무교육을 보장받아야만 한다. 그것은 다시 말해 모든 학생들이 최소한 중등교육기관인 하웁트슐레를 이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등교육 1단계의 수학능력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독 정부가 시작한 학교 형태의 다원화 작업은 통일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며, 그에 따라 상이한 졸업장이 주어진다.
동독의 과도기 개혁 정부가 동독의 학교, 대학교 그리고 전문대학 입학자격 취득 조건을 서독의 체계에 상응하도록 개정하여 동서독의 대학 입학 예정자들이 동등한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은 특히 환영할만한 것이다. 그러나 교사양성의 경우 아직 2단계로 이루어진 서독의 모델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가 남아 있다. 이 점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_ Sekretariat der Ständigen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Dok. sc101, Typoskript,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 (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225-228

문서 번호 21

브란덴부르크주 환경 상황-동독 환경부 작성 자료

1990년 9월 26일

담당자 / 기관_ 동독 환경부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환경부가 통일 직전에 브란덴부르크지역의 환경 현황에 관해 작성한 자료이다. 여기에는 유해물질에 의한 대기오염, 갈탄채굴의 영향,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장, 정화시설 건축, 이미 시작됐거나 필요한 생태환경적 조치, 동서독 환경 프로젝트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브란덴부르크주에서 생태환경적으로 가장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은 코트부스처럼 갈탄의 채굴과 제조가 이루어졌던 곳과 발전소가 있었던 지역, 철광산업이 있었던 포츠담과 오더강 유역 프랑크푸르트 지역, 화학공단이 있었던 비텐베르크, 구벤 지역이다. 산업기지가 없었던 지역에서는 대규모 가축사육 시설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했다. 또한 쓰레기 하치장과 특수폐기물 하치장 및 군사시설이 있었던 지역의 오염도 심각했다. 한편 브란덴부르크주에

는 286개의 자연 보호 및 자연경관 보호 지역이 자연적인 생태환경 체계를 보존하고 있다.
심각한 대기오염은 특히 난방을 위해 갈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했다. 그로 인해 1989년에 54.5%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다. 갈탄 채굴로 인해 심각한 생태환경적 변형이 일어나기도 한다. 25개 마을, 4,400개의 주택이 이전되어야만 했다. 하천과 호수 또한 유해물질로 심각하게 오염되었다. 그것은 대부분이 농업에서 발생하는 폐수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생산구조를 변경하고 필터시설을 도입했다. 나아가 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서독의 법규와 행정명령을 수용하면, 공장에 필터시설과 하수처리를 확대해야만 한다.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문제는 시장경제적 원칙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해결될 것이다. 연방환경부와 1990년 6월 26일 다양한 지원조치를 합의하였다.

출처_ Bundesarchiv, BArch/DK 5-4339

문서 번호 22

베를린 주법의 단일화에 관한 법

1990년 9월 28일

담당자 / 기관_ 베를린 국회의사당, 베를린 구의회 회의

내용_
이 법에 따라 베를린 주법이 통일되면서 (구서)베를린 주법이 일부 소수 지역을 제외하고 구동베를린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구동베를린에 적용될 구서베를린의 학교, 직업교육 및 스포츠에 관한 주법 및 규정은 본법 부록 II, IX장에 나열되어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교사양성법, 전제조건 포함
- 베를린 학교법, 전제조건 포함
- 베를린주의 스포츠 장려법
- 전공과 관련된 전문대학 입학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규정
- 국립 베를린 공과대학의 졸업시험에 관한 규정
- 야간 일반학교, 전문고등학교, 일반대학교 입학자격 취득을 위한 시민대학 및 전문대학의 선택과정에 관한 규정

다음의 동독 법규범은 학교제도에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 통일 사회주의 교육법
- 통일 사회주의 교육법에 대한 집행규정(학교제도)
- 통일 사회주의 교육법에 대한 집행규정(교육의무규정)

출처_ Archiv der Berliner Senatsverwaltung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Forschung

문서 번호 23

동독에서 취득한 교사 자격의 인정에 관한 임시 기본 원칙

1990년 10월 5일

담당자 / 기관_ 각 연방주의 교육부 장관 및 교육부 위원

내용_

이 문서는 통일 직후 주교육문화장관협의회가 동독에서 취득한 교사 자격의 인정에 관한 통일된 처리 절차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 합의한 임시 기본 원칙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동독에 소재한 대학교에서 2개 또는 3개 교직과정 과목을 이수한 교사의 교사 자격의 경우, 서독과 서베를린에서 이 교사가 이수한 과목이 해당 교직을 위해 허용될 경우, 1차 국가고시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 종합기술고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는 실업학교 교직, 직업학교 교직 그리고 중등교육 1단계 교직을 위한 수습근무로 편입된다. 특정한 학문적 소양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김나지움 및 중등교육 2단계 교직을 위한 수습근무를 시작할 수 있다.
- 수습기간은 2차 국가고시에 응시하면서 종료된다. 이 기간은 수업 경험을 고려하여 단축될 수 있다.
- 구서독지역 및 구서베를린에서 취득한 교사 자격증은 구동독지역에서 인정된다.

출처_ Beschluss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om 05.10.1990. Aus dem Archivraum der Berliner Senatsverwaltung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Forschung.

문서 번호 24

교사자격시험과 교사 자격의 상호 인정

1990년 10월 5일

담당자 / 기관_ 각 연방주의 교육부 장관 및 교육부 위원

내용_

이 문서는 통일 직후 각 연방주의 교육부 대표들이 교사 자격의 상호 인정과 교사자격시험에 관해 합의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교직 및 교사 자격을 위한 1차 국가고시는 부록 1에 나와 있는 소위 학기 수에 따라 기본적으로 상호 인정된다.
- 예외적으로 추가 성과를 달성했을 경우에 한해서 인정이 가능하다. 즉, 해당 연방주의 요구 조건과 비교했을 때 부록 2에 나와 있는 요구되는 시험 수준에 못 미치는 학업 및 시험 영역을 보충해야 한다.
- 예외적 경우는 다음에 해당한다.

a) 교직의 불일치(학교 형태/종류 및 학급 단계)
b) 최소 2개 교직과정 과목 미이수
c) 학교 형태 또는 학급 단계에서 해당 과목의 부재
d) 1차 교사자격증시험의 인정을 위한 의무사항 불이행

- 협정은 1990년 10월 15일 발효된다.

출처_ Beschluss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om 5. 10. 1990

문서 번호 25

시민교육/교육·문화/교육 및 청소년을 위한 베를린 시의회 회의록

1990년 10월 10일

담당자 / 기관_ 시민교육·교육, 문화·교육 및 청소년을 위한 베를린 시의회, 쥐빌레 폴크홀츠 위원, 학교, 직업교육 및 스포츠 행정처

내용_

이 문서는 통일 직후 열린 베를린 시의회의 1차 공동회의 회의록이다. 이 회의에는 동서베를린의 23개 행정구역의 대표들이 모두 참석해서 통일된 베를린의 교육 체계와 교육 행정의 통합에 관해 논의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통합된 학교법이 1991년 8월 1일부터 발효되고, 베를린 전역에 적용되므로, 구동베를린 학교제도의 구조적 전환과정이 최대한 빨리 종결되어야 한다.
- 구동독지역에서 김나지움과 게잠트슐레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 반면 직업학교와 실

업학교에 대한 수요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구동독에서 구서독 학교로의 무방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구동독지역에 최대한 빨리 김나지움과 게잠트슐레의 이중기관을 설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일반 종합기술고등학교의 중등교육 1단계를 김나지움 또는 게잠트슐레로 전환하거나, 상급 고등학교를 김나지움으로 그리고 종합기술고등학교를 게잠트슐레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 제안은 구서베를린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학생의 약 30%가 김나지움의 상급과정에 진학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직업학교 또는 실업학교를 설립하는 것 또한 허용된다.
- 초등교육의 경우 주거지에서 가까운 광범위한 기초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
- 학교제도의 빠른 전환과정을 준비하기 위해 늦어도 1991년 3월/4월까지 중앙관리본부 및 각 행정구역의 대표들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에서 수립한 계획서를 각 행정구역에 송부할 예정이다. 어떤 학교 형태를 어디에 설립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은 최종적으로 관할구역에서 내린다.
- 관할구역의 결정이 높은 지지도를 얻기 위해 동료, 교사 및 부모 간의 상세하고 광범위한 토론이 필요하다.
- 구동독지역의 교사 및 학교감독 교육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계속교육 및 향상교육은 늦어도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사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감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구서독 교사들이 구동독 교사들에게 수업관찰을 위한 학급방문 또는 워크숍과 같은 정보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출처_ Archiv der Berliner Senatsverwaltung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Forschung

문서 번호 26

베를린의 통합이 학교에 미치는 영향

1990년 10월 12일

담당자 / 기관_ 학교, 직업교육 및 스포츠 위원회, 교육행정관리, 모든 공립 및 사립학교, 각 관할지역의 학교감독 교육공무원, 관할지역의 구청, 민중교육 부서

내용_

이 문서는 베를린 시정부의 교육부가 통일 직후에 발행한 회람으로 통일된 베를린의 학교 및 교육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통일조약이 발효되면서 23개의 관할지역을 포함한 통일된 베를린이 탄생되었다.
- 구서베를린의 시의회와 구동베를린의 시대표회의는 베를린 주법의 유효 영역에 관한 법을 동시에 통과시켰다.

- 이에 따라 (구서베를린) 학교법은 구동베를린지역에서 1991년 8월 1일로부터 적용되게 된다. 그때까지는 동베를린 시대표회의가 9월에 의결한 학교법이 적용된다.
- 계속교육과정(국가고시 포함)을 통해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

출처_ Rundschreiben V Nr. 102/1990. Archiv der Berliner Senatsverwaltung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Forschung.

문서 번호 27

신연방주 주정부 방송담당관 회의-신연방주 방송위원회와 방송 담당 특임관 선출

1990년 10월 15일

담당자 / 기관_ 신연방주 방송담당관, 방송 담당 특임관

내용_

이 문서는 구동독지역에 세워진 신연방주들의 방송담당관들의 회의 결과이다. 이 회의를 통해 방송이사회의 구성원과 방송 담당 특임관이 선출되었다.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회의에서는 방송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과 국가조약에 의해 방송제도 전환 준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신연방주의 방송담당관들은 뮬펜젤 씨를 방송 담당 특임관으로 선출하고 그에게 활동계획을 방송이사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사회의 선출은 신연방주의 정부와 의회가 구성된 후에 행정부가 의회에 선출될 사람들을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의하였다. 주정부들이 제출한 명단이 정부 추천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차후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았다.

정부가 방송국을 관리감독하는 행정령과 관련하여 주정부가 결정할 법적 조치의 권한을 넘어서는 영역에 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하였다. 나아가 방송제도의 전환과 방송국의 해체에 대한 주정부 간의 조약을 위해 감사원과 경제 회계사에 의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도 합의하였다.

출처_ Tichy, Roland; Dietl, Sylvia (Hrsg.): Deutschland einig Rundfunkland? Eine Dokumentation zur Wiedervereinigung des deutschen Rundfunksystems 1989-1991, München 2000, S. 245-246

문서 번호 28

브란덴부르크 주의회와 주정부의 업무 능력을 일시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

1990년 11월 1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내용_

이 법은 브란덴부르크 주헌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될 때까지의 과도기에 주의회와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의 기능을 규정한다.

1장은 주의회와 의원, 주행정, 위원회 등의 기본 기능을 규정한다.

2장은 주정부의 과제와 기능을 규정하고 주총리의 선출, 주총리의 권한, 주정부의 장관, 임기 등을 규정한다.

3장은 입법절차와 행정령, 공고 등을 규정한다.

4장은 재정문제와 주예산의 책정, 회계감사, 주감사원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브란덴부르크주는 헌법의 제정을 위해 주의회에서 헌법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하였다. 이 위원회는 1991년 6월 30일까지 의결할 수 있는 헌법안을 제출하는 과제를 받았다.

출처_ Gesetz- und Verordnungblatt Brandenburg 1990 S. 2ff

문서 번호 29

동베를린 시행정부 해체 후 전(全) 베를린 중앙행정의 인력 문제

1990년 11월 22일

담당자 / 기관_ 서베를린 시장 에리히 페촐트, 동베를린 시장 토마스 크뤼거

내용_

이 문서는 1990년 11월 27일 서베를린 시청과 동베를린 시청으로 구성된 전 베를린 주정부 회의에서 논의될 행정 인력 처리 문제에 관한 보고서로 2개의 부록이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동베를린의 시행정부는 1990년 5월 6일 지자체 선거 이후 구조가 재편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과도기만을 위한 것이다.
- 동베를린 시청의 행정부들은 통일조약의 규정에 따라 해체되어야 한다. 시의회와 전기청(Elektroamt, 직원 32명), 인민소유기업(VEB)의 본사(1979년 설립) 소속 직업교육소(직원 39명)도 해체를 권고한다.
- 베를린 의회 행정은 1991년 시의회 행정부 소속 직원 5명을 통해 확대되었다. 서베를린 시행정부는 동베를린의 직원 3,741명을 인수하였다. (동) 감사청의 직원들을 인수한다.
- 해당 직원들에게 즉시 해당 내용을 전달한다.

출처_ Senatsverwaltung für Inneres - V C 3; Magistratsverwaltung für Inneres, V

문서 번호 30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 간에 체결된 포괄적 협력에 관한 협정

1990년 11월 27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

내용_

브란덴부르크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들은 조약을 통해 '주정책 중에 해당되는 모든 영역에서 파트너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1. 공동으로 관심을 갖는 문제에 대해 상호 자문하고 협의하며 정보 교환
2. 학문과 다른 영역에서 인력과 사절단을 교환
3. 기존 시설의 공동이용과 양쪽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공동기구의 창설
4. 자매결연 사업의 지원

협력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두 주정부는 각 6명의 대표로 구성되는 협력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양쪽 주총리실의 실장이 번갈아가며 맡는다.

이 조약은 4년 동안 효력을 발휘한다. 두 정부의 합의하에 조약이 2년씩 연장될 수 있다.

출처_ Landesarchiv Nordrhein-Westfalen; MBl. NW. 1991 S. 283.

문서 번호 31

동독 출신의 판사와 검사의 재임용에 대한 브란덴부르크주 결정 기준

1990년 11월 29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법무부, 판사선출위원회, 검사임명위원회

내용_

이 문서는 신연방주의 하나인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구동독 출신으로 판사, 검사에 지원할 경우, 지원자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가 자유주의, 민주주의, 연방주의, 사회적, 생태적인 지향을 갖고 있는 법치국가를 형성하는 데 적합한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내려질 때 채용된다고 규정한 것이다.

채용되지 않는 경우는 지원자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경우이다:
- 국가보위부, 비밀경찰의 비공식요원
- 사회주의통일당의 지구당 이상 기관의 지도위원
- 국가전선 조직의 고급 간부
- 동독 고등법원의 검사, 지역 법원장, 지역 검사장, 지방법원 또는 다른 상급 법률기관의 간부급 지도자 등과 같은 지위 보유
- 이런 직위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동독의 정치적 자유화를 위해 기여한 것이 분명하면 예외 규정을 적용해서 임명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600 Nr. 190

문서 번호 32

1990년 12월 6일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의 정부 성명

1990년 12월 6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총리실,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내용_

이 문서는 통일과 함께 새로 구축된 신연방주 브란덴부르크의 초대 주총리로 선출된 만프레드 슈톨페가 발표한 정부 성명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브란덴부르크가 민주적으로 다시 부활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 동시에 우리는 독재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와 동시에 중앙집중적 계획경제 체제를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두 개의 커다란 과제를 동시에 떠안고 놀라워하고 있다. 우리 주의 주민들이 자신감과 자존감을 다시 회복하게 해 주고 주민들의 삶이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정치적인 과제이다. 이를 위해 주정부는 임기 동안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 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구축, 주택건설 촉진, 농업경제의 재편, 친환경적 개선, 교통 체제의 친환경적, 사회적 구축, 첨단 에너지정책, 문화예술의 지원, 문화유산의 보존, 공영방송의 보장, 적극적인 경제 구조정책, 노인과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갈등예방 및 치안확충, 효과적인 행정구조 구축, 재정 능력의 확보 등.

브란덴부르크주는 다른 신연방주들과 함께 연방 차원에서 새로운 음색과 화음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유럽연합에서도 그 목소리를 낼 것이다. 특히 베를린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를 비롯해 서독지역의 연방주에서 파견되어 우리 주의 행정기구에서 도움을 준 많은 행정공무원들에게도 감사한다.

출처_ Staatskanzlei der Landesregierung Brandenburg, https://www.brandenburg.de/media/1168/regerkl_rung_90.pdf (Stand 18.07.2018)

문서 번호 33

베치르크(동독의 광역행정구역으로 한국의 도에 해당: 역주)와 지자체 수준의 행정조직

1991년

담당자 / 기관_ 위르겐 슈퇴르첼 교수

내용_

이 문서는 동독 행정구역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문제에 관한 분석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동독 행정의 중앙집권적 구축의 문제점들은 모든 면에 있어 영향력을 미친 SED의 병렬 구조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다.
- 보고자와 신고 체제는 동독 행정에 엄청난 부담 요소로 작용하였다.
- 행정교육과 행정법은 동독에서 그 역할을 거의 하지 못했다.
- 법적 불확신: 동독에는 서독법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았으며, 동독법이 부분적으로는 유효하였고, 주정부의 입법이 재건되었다.
- 직무 수반 재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법학, 경영학, 내부 행정 조직

재건 조직 구축

- 1990년 5월 17일 자 지자체 헌법을 통해 지자체는 독립되었다.
- 쾰른 행정단순화 자치센터와 라이프치히 행정조직 연구소, 연방 지자체 최고협회 연합(신연방주 지역)은 업무 및 행정 계획을 구상하였다.
- 수평적으로는 청(Amt)들이, 수직적으로는 급(Ebene)들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
- 전문적으로 공통된 업무들은 통합되어야 했다.

지자체 협력 조직

- 구연방주에 존재하는 다양한 구조들은 1966년부터 기간별로 상이하게 효력을 나타낸 행정개혁에 기인한다. 비강제적인 통일의 원칙은 신연방주지역에서도 고려될 것이다.
- 지자체 헌법(주지자체법(Landeskommunalgesetze)을 통한 해체 시까지 유효) 제31조는 인근 지역 간의 행정 공동체 구성을 가능케 하고 있다.
- 행정 공동체들은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를 조직하고, 합리적인 의사소통 통로를 구축해야 하며, 교육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적용

- 목표: 업무 효율성 제고, 친서민적 행정, 업무 조건의 개선
- 중앙 저장소에 통합된 자료들은 지자체들이 직접적으로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컴퓨터를 비롯한 기자재가 너무 오래되었다.

행정 경제의 개선

- 지자체들은 재정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재정 부족을 해결할 재정 창출원을 마련해야 한다.
- 행정 사업을 더욱 비즈니스적인 면에 초점을 맞춰 실행; 행정은 관청으로서의 업무만이

아닌, 서비스 업무를 창출해 내야 한다.

- 비용은 정확하고 투명하게 산출되어야 한다. 지자체 간 비교와 비용 산출을 통해 도출된 수치들은 더욱 고려되어야 한다.

신연방주지역의 일반 중간기관 설치

- 협력 관리, 상급 행정관청, 감독 및 통제 관청, 계획 관청, 이의 제기 관청으로서의 지방행정청
- 지방 행정청들은 독립과 중앙주의를 지양해야 하며, 법적 감독과 분야별 감독을 실현해야 한다.

출처_ Stölzel, Jürgen: Verwaltungsorganisation auf Bezirks- und Kommunalebene -Grundprobleme der bezirklichen und kommunalen Neuorganisation. in: Rainer Pitschas (Hrsg.), Rechtsve:reinheitlichung und Verwaltungsreform in den neuen Länder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Schriften des WIÖD Bd. 12, Königswinter 1991„ S. 134 ff.

문서 번호 34

가입지역 내 연방공무원 조직에 대한 검증 청구(BGBBBBewAnfV)

1991년 1월 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내무부

내용_

이 문서는 1990년 9월 23일 자 법 제1조와 관련된 1990년 8월 31일 자 통일조약 부록 I XIX 장 A부 III절 3번 e를 근거로 한 연방내무부 장관의 법령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조 검증의 형태

- 지원자는 공공 행정에서 적합성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
- 그에 적합한 교육 및 직업 교육 이력이 고려될 수 있다.

제2조 검증 기간

- 검증 기간은 문서에 명시된 바대로 단순직과 중간직, 관리직, 고위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제3조 연령

- 수습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데 필요한 최소 연령은 상이한 이력을 고려해 문서에 명시된 연령이 적용된다.

출처_ http://www.buzer.de/gesetz/5026

문서 번호 35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법원구조법 초안

1991년 1월 16일

담당자 / 기관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총리 고몰카,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법무 장관 보른

내용_

이 문서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의 주정부가 준비한 법원구조법 초안이다. 신연방주에서도 독일헌법인 기본법과 통일조약에 따라 법원과 검찰을 구축해야만 했다. 그러나 온전한 사법 체계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물자가 얼마나 신속하게 준비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법 체계 구축 작업을 2단계로 나누어서 먼저 법원구조법을 도입해서 기획작업을 담당하도록 하고, 차후에 실행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법원구조법에 따라서 법원의 수와 법원이 세워질 지역 등이 언급되었다.

출처_ Landtag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107

문서 번호 36

사회, 건강, 노동 업무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 간의 행정협약을 위한 초안

1991년 1월 23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노동·건강·사회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노동·사회·건강·여성부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간의 행정협약 초안이다. 양측은 1990년 11월 27일에 포괄적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서로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기로 협의했다. 이 협약의 목표는 독일 기본법에 명시된 것처럼, 모든 독일인들에게 동등한 삶의 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양측은 헌법에서 요구하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정책, 건강정책, 사회 및 가정정책, 노동보호정책 및 노동 및 사회법행정 판결 등의 분야에서 긴밀하고 신뢰있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여성정책 또한 양측의 협력 분야에 포함되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합의되었다.

- 정기적인 장관과 차관급 회의
- 실무 부처 및 관공서 기관 간의 정보 교환
- 자매결연 체결 및 브란덴부르크주 주정부 행정 인력의 연수를 위해 노르트라인-베스트

팔렌주 전문가 또는 전직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두 개의 업무책상을 준비
- 공무원의 연수 지원
- 노동시장, 노동 보호, 노동법원, 보건문제 등에서의 협력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600 Nr. 203

문서 번호 37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법원구조법 의결 권고

1991년 1월 30일

담당자 / 기관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법사위원회,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법사위원회장 부스케 기민당 의원,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법무부 장관 보른

내용_

이 문서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의회 법사위원회가 법원구조법 초안을 검토한 후 법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본회의에 권고하는 문서이다. 신연방주에서도 독일헌법인 기본법과 통일조약에 따라 법원과 검찰을 구축해야만 했다. 그러나 온전한 사법 체계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물자가 얼마나 신속하게 준비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법 체계 구축 작업을 2단계로 나누어서 먼저 법원구조법을 도입해서 기획작업을 담당하도록 하고, 차후에 실행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법원구조법에는 따라서 법원의 수와 법원이 세워질 지역 등이 언급되었다. 주의회의 법사위원회는 나아가 법무부를 도입하고, 노동법, 사회법 영역에서는 연방정부 및 유럽과의 관계도 관장하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출처_ Landtag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130

문서 번호 38

작센-안할트 주정부에 의한 문화사업의 지원-작센-안할트 주의회 제안서 및 결의 방안

1991년 2월 15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 주의회, 문화미디어상임위원회, 내무상임위원회, 녹색당, 민사당

내용_

이 문서는 통일 직후 작센-안할트 주의회의 녹색당과 민사당 의원들이 주정부에게 공익을

위한 문화사업, 문화시설 및 문화협회를 지원하고 주행정을 통해 재정을 지원할 것을 제안한 것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심의 내용이다. 두 정당은 이런 제안을 제출한 이유가 작센-안할트의 경기가 악화되면서 문화 기반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민사당은 나아가 동독 체제가 붕괴된 이후 신연방지역에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예술가를 위해 과도기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을 심의한 상임위원회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정하였다:

- 예술가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그들이 자기 영역과 연관된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게 도와준다.
- 적어도 막데부르크, 데사우, 할레와 같은 대도시에는 예술가들을 위해 필요한 작업 전시 및 공연 공간을 개발하기 위한 초기비용을 주정부가 지원한다.
- 모든 공공건설 공사에서는 건축비용의 2%를 공공공간에 예술을 설치하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것을 규정한다.
- 문화사업, 문화협회 및 개별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분화된 지원지침을 마련한다.
- 작센-안할트주의 문화적 발전과 관련된 모든 예산문제를 위해 문화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자문회의의 구성원은 문화와 관련된 사람들이 포함되어야만 한다.
- 기초자치단체들에게 문화정책과 관련된 책임을 맡기를 호소한다.

출처_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n 1/190, 1/208 und 1/502

문서 번호 39

문화 프로젝트의 지원 제안에 관한 작센-안할트 주의회 첫 번째 심의

1991년 2월 21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 주총리 대리 브루너, 작센-안할트 주의회 의원 다수

내용_

이 문서는 작센-안할트 주의회에 제출된 문화 프로젝트의 지원 제안에 관해 심의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정부의 연방유럽문제 담당 장관은 작센-안할트 정부의 예산안에 980만 마르크가 공익협회와 단체들의 문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책정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문화 프로젝트와 펠로우십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를 통해 공모하기 위한 규정은 현재 해당 기관 간에 조율 중이다. 연방정부는 문화구조 지원 프로그램의 틀에서 일정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다.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해당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나아가 연방정부와 함께 연방 차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주정부의 입

장에서는 작센-안할트지역의 문화적 생활이 단순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정도로 활짝 꽃을 피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녹색당의 쉐플레 의원은 작센-안할트주의 문화 시설에 관해 고민을 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고 비판하였다. 왜냐하면 문화 영역의 붕괴가 이미 1990년 초에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동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정책이 시작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것이다. 쉐플레 의원은 작은 협회와 개별적인 예술가들이 집세와 전기세 정도는 지불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한 지원이 가능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작센-안할트주가 서독의 연방주들로부터 영원히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기민당의 크놀레 의원은 작센-안할트는 원래 문화가 번성한 지역이었다고 강조하였다. 바흐, 베토벤, 모차르트, 헨델이 자주 이 지역에 왔었다고 하였다. 동독 체제하에서 문화가 전적으로 사회주의통일당의 선전물로 전락하였다. 45년간의 공산독재는 12년간의 나치 체제보다 더 많은 해악을 가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의 문화 체제가 아직도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존속되지 못하도록 주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민사당의 슈스터 의원은 녹색당과 민사당이 제안한 것은 문화 프로젝트를 위한 과도기 규정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기민당이 주도하는 할레시의 시의회는 예술가들에게 아틀리에를 상업공간에 해당하는 월세가 아니라 거주공간에 제공하는 비용으로 조정해야만 한다고 보았다.
자민당의 브라이텐본 의원은 문화가 경제적 정당성의 요구에 희생되지 않아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문화예술은 숨쉬는 공기와 같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였다. 사민당의 큔 의원은 문화적 인프라 구조가 기업의 생산기지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쉐플레 의원의 의견에 대해 반박하였다. 큔 의원은 사회를 민주적으로 개혁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문화생활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하였다.

출처_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10, S. 484-491

문서 번호 40

신연방주의 재정 구조

1991년 3월 1일

담당자 / 기관_ 함부르크 경제연구소 울리케 데니히

내용_

이 문서는 경제정책분석지인 Wirtschaftsdienst에 1991년에 실린 논문으로 화폐통합과 통

일 이후 구동독지역이 겪은 재정구조의 본질적인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재정구조를 비교적 신속하게 시장경제적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를 위해서는 외적 조건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야만 하고 경제안정화 정책을 어느 정도는 포기해야만 한다. 시장경제적 제도와 법률을 신속하게 한꺼번에 수용하는 것, 사경제가 담당하던 은행 기능을 시장경제적 경험을 가진 기존의 은행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 새로운 업무를 기존의 전문가들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 금융과 자본 업무를 일시적으로 기존의 시장을 통해 담당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건이 불리할 경우 신속한 구조전환을 실현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신속하고 형식적인 구조전환이 국민경제의 질을 높이는 데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재정경제적인 경쟁 구조 조정과 경쟁 개선을 방해할 수 있다. 더욱이 구동독지역의 재정 체계를 전환하면서 독일연방공화국의 공공 부채가 증가하고 과도정치적인 구조가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 은행 간의 경쟁이 정치적 간섭이 없이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는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것이다.

출처_ Wirtschaftsdienst (Zeitschrift für Wirtschaftspolitik), 1991, Heft 3, S. 125-131

문서 번호 41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택정책에 관한 주의회의 논의

1991년 4월 10일

담당자 / 기관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내무 장관 게오르크 디데리히,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의회에서 주택경제 현황에 관해 논의한 회의 기록이다. 주정부의 내무 장관은 동독 체제의 파산한 경제정책으로 인해 주택사정이 악화되었고, 주택경제 또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정책은 건설붐을 통해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보았다. 그를 위해 국가가 주택정책을 추진해야만 할 뿐만 아니라 민영화도 계속 추진해야만 한다고 했다. 동시에 주거비를 통해 집세 상승률이 사회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 토론에 참가한 주의회 의원들은 연방정부의 주택정책과 그에 대한 주정부의 입장이 주택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질문했다. 나아가 민간 주택 소유자를 위한 지원, 집세 인상, 주택경제에서 구채무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Mecklenburg-Vorpommern, Plenarprotokoll 1/16, S. 678-690

문서 번호 42

사법 영역(Rechtspflege)에서의 협력을 위한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 간의 행정협정 초안

1991년 4월 12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법무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법무부

내용_

이 문서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가 브란덴부르크주의 사법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한 행정협약 초안이다. 행정협약의 근거는 1990년 11월 27일 양측의 주정부가 체결한 포괄적인 협력을 위한 협정이다. 이 협정에 따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브란덴부르크주의 사법 체계 구축을 위해 향후 4년 동안 사법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원해 주기로 합의했다. 특히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법무부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 행정업무: 법무부 구축, 법원과 검찰의 재조직, 등기소 지원, 인도적인 교도소 구축, 법안 및 행정명령 작성 등
- 인력지원: 사법 인력의 파견(법무부 공무원, 판사, 검사, 법무사 등)
- 재교육 및 연수: 매년 60명의 사법연수, 70명의 법무사, 30명의 중급 공무원, 교도관
- 자매결연: 집중적인 경험과 정보의 교환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600 Nr. 203

문서 번호 43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판사법 초안

1991년 4월 18일

담당자 / 기관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총리 고몰카,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법무 장관 보른

내용_

이 문서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정부가 독일의 헌법인 기본법 98조 3항에 따라 판사의 지위를 규정하기 위해 도입하게 된 법의 초안이다. 통일 직후 신연방주에 법치국가적 원칙에 입각한 사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주 시급한 과제였다. 이 법은 연방 판사법의 규정을 보완하고, 동시에 다른 연방주들의 판사법과 보조를 맞추면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의 필요에 맞게 작성한 것이다. 주의회의 법무위원회의 청문회를 거쳐서 법무부를 도입하기로 하고, 유럽과 연방정부와 관련된 문제도 법무부에서 관할하도록 했다. 이런 결정이 판사와 검사의 입장을 배려한 것이라고 했다. 판사선발위원회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위원

회에 참가할 동질적인 판사집단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아가 좋은 사법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다른 연방주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결정해야만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법무 장관의 경우 주의회에서 질의응답에 응해야만 하지만, 판사선발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이 조직은 주의회에서 질의응답에 응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도 이 기구를 도입하지 않기로 한 하나의 이유였다. 그래서 바이에른,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자를란트 등과 같은 연방주들도 판사선발위원회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의 주지사는 주의회 의장에게 이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출처_ Landtag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347

문서 번호 44

인민군 군부대 지역의 이용에 대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의회의 토론

1991년 4월 25일

담당자 / 기관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의원 골트벡, 링스토르프, 틸, 볼링거, 클로스터만, 프리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국방 장관 슈톨텐베르크

내용_

이 문서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의회에서 동독의 인민군 군부대 지역의 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제안에 관해 토론한 것이다. 자민당은 주정부가 연방정부와 합의해 인민군 군부대 지역의 활용을 위한 법적인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사민당은 주정부가 연방회의와 합의하에 통일조약 21조를 새로 협상할 것을 요구했다. 분단 이전부터 군대에 소속되지 않았던 인민군 군부대 부지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와 기초자치단체 또는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민당은 인민군 군부대 부지를 일괄적으로 반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연방군이 그 부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자민당의 의원들 또한 군축과 군부대의 폐지에는 동의했다. 사민당은 자체적인 제안을 통해 통일조약은 짧은 시간 내에 성급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일조약 21조의 경우 인민군 부지를 연방의 재산으로 규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로 인해 인민군 군부대 부지의 많은 부분이 연방의 재산으로 귀속되었다는 것이다. 분단 시기에 동독은 서독에 비해 열 배나 많은 산림지역을 군용지로 사용했다고 한다. 기민당의 볼링거 의원은 통일조약 21조가 인민군 군부대 부지에도 해당된다고 보는 해석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보다 오히려 재정자산을 규정한 통일조약 22조에 따라 처리해야만 한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민당과 녹색당의 제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Mecklenburg-Vorpommern, Plenarprotokoll 1/19, S. 817-822

문서 번호 45

신연방주의 행정 발전

1991년 5월 1일

담당자 / 기관_ 라이너 피챠스 교수

내용_

이 문서는 통일 이후 신연방주 행정 체계 구축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점검하는 자료이다.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포함되어 있다.

I. 통일과정에서의 행정 정책과 행정 개혁:

통일은 비교 가능한 전례가 없는 제도적 쇄신의 과정이다.

1. 개혁의 문제: 동독의 관료주의는 스스로 법을 존중하지 않았다.

2. 행정 개혁: 혼란스럽게 진행되는 새로운 행정 체계의 구축

3. 업무와 조직, 예산에 관한 비판을 통한 행정 개혁: 단순히 서독의 시스템을 인수해서는 안 된다.

4. 행정 인력의 역할: 과거의 지도 간부들이 활용되어야 한다.

5. 헌법에 대한 제고: 헌법의 문제로서의 행정 개혁: 행정 개혁을 위해 어떠한 행정 규정들이 헌법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기본법 제83조)?

II. 문제 중심의 업무 정책의 결과로서의 행정 변화

1. 발전 과제로서의 사회적 문제 상황

2. 경제적 통일: 주정부 기업연합 감독청 설립, 경제 행정의 민영화, 토지 취득 및 허가 가속화(1990년 1월부터 8월 말까지 약 16만 8천 건의 영업 허가)

3. 통일된 독일의 복지 개혁: 지역 계획협회, 창업자 센터, 테크노파크, 경제 진흥협회, 고용지원 및 교육 협회, 고용창출조치, 사회복지 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건설, 노후보장, 의료보험

III. 구조 조정을 통한 행정 개혁

1. 안보 행정의 재구축: 법적 구속성과 분리의 원칙(치안과 질서 행정, 경찰과 국방의 분리)

2. 업무 수행의 조율: 환경 보호와 같은 신규 업무

3. '중간관청(Mittelbehörden)'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장(Regierungspräsident)' 도입

IV. 지자체 행정 개혁: 결정 역량 분배

1. 개혁에 대한 근본적 물음: 개혁의 과제는 무엇이고, 어떠한 형태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2. 군(Kreis)에 관한 갈등: 군과 읍, 구(Gemeinde)는 자치시의 경우 통합된다.

V. 행정 개혁 대상으로서의 관청 조직

1. 관료주의 조직의 개혁: 동독 행정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아직 멀었다.

2.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예-작센주의 '주시스템 계획'

3. 과제로서의 조직 및 인력 개혁: 단계적 개혁

VI. 예산 통제: 계획과 조직/인력, 예산은 연계 실행되어야 한다.

1. 계획 실행-예산-인력: 인력 감축
2. 연계의 한계: 모든 긴축 계획이 실행 가능한 것은 아니다.
3. 비용에 대한 의식: 지표, 계획 예산, 경험적 지원 연구

출처_ Deutsches Verwaltungsblatt. 106. Jahrgang. Heft 9. S. 457-466 (Aufsatz auf Basis eines Vortrags des Verfassers auf dem vom Wissenschaftlichen Institut Öffentlicher Dienst e.V. im Dezember 1990 veranstalteten Symposium in Dresden zur Rechtsvereinheitlichung und Verwaltungsreform in den neuen Ländern).

문서 번호 46

튜링겐주 행정법원법의 실행에 관한 법

1991년 5월 14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 주총리 두착, 튜링겐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튜링겐주 주정부가 행정기구의 업무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한 법의 초안이다. 통일조약과 화폐경제사회통합조약에 의해 연방법의 대부분이 구동독지역에 적용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신연방지역의 업무와 결정권 또한 헌법적인 차원에서 기본법이 정하는 일반적인 것만 규정되었을 뿐이다. 통일 이후 신연방주들은 법치국가적인 행정구조를 구축해야하는 과제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와 관련해 연방주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행정비용, 업무영역 등에 관련된 법안도 마련해야만 했다. 튜링겐 주정부는 이와 관련해 14개의 법안을 마련했다. 이들은 공공행정에서 연방주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것이었다.

출처_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334

문서 번호 47

연방교통계획에 철도노선을 포함시키는 것에 관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의 제안

1991년 5월 15일

담당자 / 기관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기민당 대표 에크하르트 레베르크

내용_

이 문서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의 기민당이 주정부에게 듀커로프-우제돔-슈비네뮌데 철도노선을 연방교통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 노선은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될 때까지 동포메른지역을 위한 중요한 교통연결망이었다. 그러나 전쟁 후에 배상문제로 철도가 철거되었고, 동독 체제하에서 이 지역은 소외지역이 되었다. 이 제안은 이 지역을 경제적으로 다시 활성화하려는 희망을 담고 있는 것이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Mecklenburg-Vorpommern, Drucksache 1/402 (neu)

문서 번호 48

연방교통계획에 철도노선을 포함시키는 것에 관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의 제안에 대한 토론

1991년 5월 16일

담당자 / 기관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경제 장관 콘라트-미하엘 레멘트, 문화부 장관 오스발트 부츠케, 노동보건부 장관 클라우스 골레어트,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의원 다수

내용_

이 문서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에서 듀커로프-우제돔-슈비네뮌데 철도노선을 연방교통계획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에 대해 토론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민당의 리만 의원은 동포메른지역은 베를린에서 이 지역까지 연결되는 직통노선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독 정부에 의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폴란드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철도노선을 건설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경제부 장관은 철도노선의 건설이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며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제안과 함께 주정부는 이 지역 주민들의 청원서도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독일제국철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노선을 건설하기 위해 5억 5천만 DM이 소요되고, 교량 건설을 위해 3천만 DM이 추가될 것이라고 했다.

사민당과 좌파/민사당은 이 제안에 반대했다. 그 이유는 다른 노선의 건설이 더 시급하다

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안은 경제상임위원회에 다시 회부되었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Mecklenburg-Vorpommern, Plenarprotokoll 1/21, S. 910-915

문서 번호 49

주택정책과 임대료 규정에 대한 주의회의 질의에 대한 작센주 내무 장관의 답변

1991년 5월 16일

담당자 / 기관_ 작센 주의회, 작센주 좌파/민사당 원내 대표 클라우스 바틀, 작센주 내무 장관 루돌프 크라우제

내용_

이 문서는 작센주 주의회 좌파/민사당이 제출한 주택정책에 대한 질문에 내무 장관이 답변한 것이다. 이 질의를 발언한 클라우스 바텔 의원은 주택정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사회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내무 장관 크라우스는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작센주의 주헌법에 모든 주민들이 주거를 보장받을 권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보아야만 한다. 먼저 주택은 사회적 요소를 가진 것이지만 동시에 일종의 경제적 자산이기도 하다. 지금 현재 주택의 상황이 열악한 이유는 40년 동안 동독의 지배 체제에서 찾아야만 한다. 통일조약에는 임대료 인상률의 최대치는 소득발전 수준을 고려해서 허용되어야만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해 임대료 기본규정과 관리비 세입자 부담에 관한 규정을 이미 도입했다. 통일조약에는 나아가 기초자치단체가 자신의 재산으로 귀속된 국유주택을 민영화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기초자치단체들이 국유주택의 민영화작업을 돕기 위해 주정부 차원에서 자문그룹을 구성했다. 주정부는 나아가 1991년에 2,580채의 사회주택의 지원과 6,430채의 개인 소유 주택을 위한 지원을 완료했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Sachsen, Drucksache 1/400

문서 번호 50

튜링겐주 판사와 검사 인적사항 조사지와 관련된 질의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

1991년 5월 23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주 법무부, 튜링겐 주의회 의원 뷰히너

내용_

이 문서는 튜링겐주 주의회 뷰히너 의원이 1991년 4월 19일에 판사, 검사의 인적사항 조사와 관련해 제출한 질의에 대해 법무 장관이 답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정부는 주민번호를 폐지하려는 모든 노력을 지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인적 관계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 인적사항 조사지에 주민번호를 기입할 것을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공기관의 인사담당 부서의 과제는 기본법에 따라 자유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사람들만 공공기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선별해야만 한다. 그와 관련해 지원자의 배우자 또는 약혼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파트너에 관한 정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정부는 인적사항 조사에 이와 관련된 질문을 포함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다. 배우자, 파트너에 관한 질문 중, 특히 그들이 비밀경찰과 연루되었었는지에 관한 질문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다른 몇 가지 질문은 비밀유지와 관련된 것이다. 인적사항 조사지에는 나아가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다. 판사 및 검사선발위원회에서 거쳐야 할 특수한 절차 때문에라도 주정부 차원에서 먼저 그런 검토를 통해 판사와 검사를 선발해야만 한다.

출처_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365

문서 번호 51

자방자치단체 시, 게마인데와 란트크라이스로 국유재산을 이전하는 것에 관한 질문과 답변

1991년 6월

담당자 / 기관_ 신탁관리청

내용_

이 문서는 1991년에 신탁청이 작성·배포한 자료로 지방자치단체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정리한 것이다. 그 목차는 다음과 같다:

I. 신탁관리청과 공유재산 또는 토지와의 관계는?
II. 신탁관리청 관리하의 재산과 정부의 신탁재산 중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귀속되는 것은?
III. 1991년 3월,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어떤 완화 조치가 내려졌는가?
IV. 과거의 지방자치단체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V. 신탁관리청의 결정 범위
VI. 용수관리와 에너지 공급

여기에 소개된 지방자치단체로 국유재산을 이전하여 공유화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

의 선별 기준은 신탁청에 제출된 수많은 질문들의 일람표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과 공유재산 이전을 위한 규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한 이유로 텍스트에 관련 법조항이나 규정의 숫자를 괄호에 넣어 표기했다.

출처_ Treuhandanstalt

문서 번호 52

브란덴부르크 방송규정-법안에 대한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심의

1991년 6월 12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각 정당 대표, 주정부 총리실장 린데 차관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 주의회가 브란덴부르크방송에 관한 법안을 심의한 기록이다. 이 회의에서는 의회의 사민당 , 자민당, 녹색당과 민사당이 제출한 브란덴부르크 방송법안과 함께 사민당, 자민당, 녹색당이 제출한 브란덴부르크 방송규정 도입을 위한 준비규정안도 논의되었다.
사민당의 비어틀러 의원은 새로운 방송구조에 대한 대안으로 브란덴부르크주가 자체적으로 방송사를 설립하는 것 또는 베를린시와 공동으로 또는 북동부지역 공동으로 방송사를 설립하는 방안이 있다고 하였다. 비어틀러 의원은 두 번째 방안은 미디어 정책적으로 보거나 미디어 경제성을 볼 때 브란덴부르크주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특히 포츠담-바벨스베르크 지역에 자리한 미디어생산센터의 존재를 위협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브란덴부르크주가 자체적으로 방송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사민당의 발터 의원은 브란덴부르크방송법은 서부독일방송(WDR)법과 아주 유사하다고 비판하였다. WDR은 사민당이 지배하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방송사이다. 그는 브란덴부르크주가 자체적으로 방송사를 운영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보았다. 나아가 ARD-프로그램 중에서 브란덴부르크방송이 담당할 분량도 아주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민당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베를린시와 공동으로 방송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하였다.
자민당의 지베르트 의원은 통일조약에 따라 1991년 12월 31일까지 동독방송 과도규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시간적 압력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개인적으로는 작센-안할트주와 브란덴부르크주가 공동으로 방송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이런 시간적 압력을 고

려할 때 브란덴부르크 방송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법안 때문에 베를린시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와 협상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민사당의 비스키 의원은 신연방주 방송 담당 특임관의 강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비판하면서 미디어의 종사자들이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녹색당의 로이터 의원은 준비규정안을 보면 다른 주들과 공동으로 방송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며, 반면 브란덴부르크방송법은 단독으로 방송사를 설립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였다. 브란덴부르크주가 기민당이 지배하는 다른 신연방주들의 결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린데 차관은 주요한 사항들을 정리한 후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베를린시와 협력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하였다. 이 법안은 주의회 전문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출처_ Landtag Brandenburg, Plenarprotokoll 1/19 (S. 1459-1467)

문서 번호 53

통일조약 37조 규정에 의거 동독법에 따라 이수한 교사자격 인정

1991년 6월 14일

담당자 / 기관_ 독일연방공화국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 회의 사무국

내용_

이 문서는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협회의 사무국이 통일조약 37조에 의거해서 동독에서 합법적으로 획득한 교사자격을 인정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연방지역의 기존의 교사들의 교사자격 인정은 각 주의 청소년담당국과 해당 관청이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관청은 교사들이 동독에서 이수한 교사양성교육의 입학자격, 내용, 기관 그리고 졸업시험 등이 유효규정에 부합하며, 이론과 실습을 포함한 연수과정을 이수하였고 교사직 직업경력을 통해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켰을 경우 그것을 근거로 국가가 공인하는 교사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3년 이상의 교사직을 수행한 직업경력은 6개월간의 보충 연수과정을 이수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와 상관없이 구동독지역에서 취득한 교사직의 호칭은 독일 전역에서 사용될 수 있다.

출처_ Beschlusssammlung der Kultusministerkonferenz, Beschluss Nr. 428.1

문서 번호 54

작센주 환경행정의 구축–작센 주의회 질의에 대한 작센주 환경부 장관의 답변

1991년 6월 17일

담당자 / 기관_ 작센 주의회, 작센주 환경부 장관 바이제, 작센 주의회 의원 요하네스 게어라흐

내용_

이 문서는 작센 주의회 사민당의 게어라흐 의원이 작센주의 환경행정 구축에 관해 질의한 것에 대한 주정부 환경부의 답변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작센주의 장래 환경행정을 위한 환경전문 행정의 구축을 위한 총괄적인 방안이 마련되었다. 거기에는 5개의 환경관청과 하부 특별관청으로 노동보호관청을 도입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동시에 1991년 예산에 이들 관청의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908명을 채용하는 비용이 반영되었다.

관청의 담당 업무는 주 차원의 최고관청으로 환경부가 있고, 주정부의 산하기관으로 환경노동보호 및 지질청이 있고, 그 아래 하부 행정기관을 두게 된다. 인력과 관련하여 모든 영역을 위한 통일된 업무규정은 아직 도입되지 못했거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도로건설계획과 관련된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입법과 관련하여 연방회의에서 작센주의 입장은 아직 논의 중이다.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절차에서 어떻게든 지역의 이해를 반영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출처_ Sächsisch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467

문서 번호 55

신연방주를 위한 행정 인력 지원(니더작센과 작센-안할트주 간의 협력)

1991년 6월 18일

담당자 / 기관_ 니더작센주 내무부 행정청

내용_

서독의 연방주가 자매결연을 통해 신연방주의 행정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는 통일조약에 따라 서독의 니더작센주는 작센-안할트주의 주행정 체계 구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인력을 파견하였다. 이 작업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작센-안할트주의 주총리실 실장과 니더작센주의 협력업무 담당관이 주관하였다. 인력파견 요청이 결정되는 과정은 구체적인 파견요청이 오면 재정적인 부담 문제, 필요성 그리고 시급성에 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결정이 해당 부서로 전달되었다. 각 부처는 인사규정에 따라 결정하였다. 행정 인력 지원은 1992년 말까지 이루어졌다. 이 문서에서는 행정 인력 지원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볼 수 있다:
- 신연방지역에서 임시 단기적으로 투입된 인력을 통한 행정지원
- 신연방지역으로 근무지를 바꾸는 것을 통한 행정지원
- 공공기관에 근무하지 않거나 이미 정년퇴직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 행정지원
- 추가 비용에 보상(Aufwandentschaedigung)
- 보충인력
- 행정지원 인력을 위한 지출을 예산에 반영
- 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파견수당 등에 대한 비용 보전
- 신연방주로 전근된 사람들의 급여 차액의 보상을 위한 비용 보전

출처_ Niedersächsisches Ministerialblatt, Nr. 21/91

문서 번호 56

작센주 학교법-작센 주의회 제2차 법안 심의

1991년 6월 22일

담당자 / 기관_ 작센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작센주 학교법 제정을 위해 주의회에서 열린 2차 심의회의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제2차 법안심의에 앞서, 특히 학교위원회에서는 일반 시민의 견해와 요구가 많이 제시된 바 있다. 야당에서는 정부의 정보 관련 정책과 학교법안 작성 실무단의 업무가 불투명하게 이루어진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일반 시민의 요구와는 무관하게 일을 추진한다는 점, 특히 법안에 종합학교(Gesamtschule)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비판이 가해졌다. 주총리 비덴코프는 종합학교 모델은 작센주에 고려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했는데, 그 이유는 이 모델이 대규모의 포화밀집 주거지역이 존재하는 지역에서만 적절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나아가 기초지자체의 재원으로 유아원(Horte)의 재정을 충당한다고 하는 임시 방안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그럴 경우 대부분의 유아원들이 곧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주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되었다.

이와 달리 학교에 학부모와 학생의 공동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율이 이루어진 것과 환경교육과 성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출처_ Plenarprotokoll Sächsischer Landtag, 1. Wahlperiode, 21. Sitzung

문서 번호 57

브란덴부르크주 판사 및 검사 채용을 위한 인적검사 질문지

날짜 미상 – 1991년경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법무부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주의 판사, 검사 채용을 위해 작성해야만 하는 인적검사 질문지이다. 27개의 상세한 질문으로 구성된 질문지는 슈타지 관련 행위에 대한 검증을 위한 판단 준거를 담고 있는 초안으로 1994년 1월에 만들어진 준거를 재차 제시한다. 이를 통해 심사를 요청한 개인이 동독에서 행했던 행위를 재임용에서 고려하는 것이 판사선발위원회의 목적이다.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600 Nr. 190

문서 번호 58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와 노르트라인-베르트팔렌 주정부 간 교육 및 스포츠 분야에 있어 행정적 협력에 대한 협정 초안(보고서 및 토의)

1991년 7월 3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문화부 차관 베쉬,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회 학교 및 직업교육위원회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가 교육과 체육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작성한 협정서의 초안이다. 브란덴부르크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주정부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모든 행정 분야에서 협력했다. 여기에는 특히 당시 브란덴부르크 주지사였던 만프레드 슈톨페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지사 요하네스 라우의 개인적인 친분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협약의 목표는 브란덴부르크주의 교육 및 스포츠 분야를 확충 재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및 그에 대한 행정협조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은 전문가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지속적인 인적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공무원을 브란덴부르크주로 파견하거나 출장 보낼 수도 있다. 나아가 브란덴부르크주 학교 및 스포츠행정 부서 직원과 관리자들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견학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도 계획되었다. 브란덴부르크주의 교사들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학교로 초청하는 사업은 이후 시점에나 가능한 것으로 연기되었다. 이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 교원이 부족했던 반면, 브란덴부르크주에는 교원 인력이 넘치기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교육행사들의 문호가 브란덴부르크주의 교육자 대표들에게 개방되며, 브란덴부르크주의 교육청 공무원 및 학교장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 학술회의도 개최한다.
이 협력의 또 다른 중점 사항은 브란덴부르크주 계속교육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교육학적이자 조직운영적인 지원과 학교 간의 자매결연 지원사업이다. 이 협약은 총 4년간 유효하며 양측의 교육부는 매년 협력을 위한 실무안을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브란덴부르크주의 교육제도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복사본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와 관련해 브란덴부르크주에 의해 요청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며, 사전에 준비된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출처_ Parlamentsdokumentation Landtag Nordrhein-Westalen, Ausschußprotokoll 11/299, 15-26

문서 번호 59

작센주 학교법(SchulG)

1991년 7월 3일

담당자 / 기관_ 작센 주총리 쿠어트 비덴코프, 작센주 문화부 차관 볼프강 노박

내용_
작센주 학교법은 동 연방주 내 공립학교들의 구조와 기능을 규율하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와 직업학교, 특수학교와 [성인대상의 중고등학교 등을 포함한] 특별학교가 포함된다. 이 외에도 학교운영 주체, 교육의 의무 및 교사,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공동협의회에 대해서도 규정되었다. 독일 내에서도 특수한 사항으로서, 작센주의 학교법은 특히 라우지츠 지역에 거주하는 독일 내 소수민족인 소르벤(Sorben)족 출신 학생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법에서는 어떠한 학교 형태에서 어떠한 교과수업이 이루어지고 몇 년의 학기 이수 후에 어떠한 종류의 이수자격이 취득될 것인지를 일반적으로 규율한다.
종교교과가 정규교과로 도입되었는데, 교육 권한을 지닌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그 대신 윤리교과를 배우도록 할 수 있다. 만 14세가 넘게 되면 학생은 스스로 그중 어느 교과를 배울지 선택할 권리가 생긴다.
수업교과의 내용과 종류, 범위 그리고 학교규칙 및 시험규칙에 대해서는 (작센주) 문화부의 책임으로 정한다. 가족교육, 성교육 및 환경교육은 전 교과에 포괄적인 내용으로 포함되어 교육이 이루어진다.
최상급 학교감독청에 대한 자문을 위해 각각의 학교 형태를 대표하는 교사 및 학부모, 대

학 교원 및 종교단체 그리고 노동조합 등의 대표들로 이루어진 주교육자문단(Landesbildungsrat)을 설립한다.
마지막으로 동 법은 종합기술고등학교(POS)나 확대일반고등학교(EOS)들은 다른 학교 형태로 전환되어지기 전까지 그대로 운영될 수 있음을 규정한다.

출처_ Sächsisches Gesetz- und Verordnungsblatt Nr. 15/1991 - Ausgabetag: 9. Juli 1991

문서 번호 60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명예판사의 비밀경찰 연루 여부 검토에 대한 주의회의 결정

1991년 7월 3일

담당자 / 기관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법사위원회,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사민당, 좌파당/민사당 의원, 법사위원회장 부스케 의원,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의 명예판사 임명과정에서 비밀경찰 연루 여부를 검토해야만 한다는 사민당의 제안을 주의회 법무위원회에서 검토한 보고서와 의결권고안을 포함하고 있다. 사민당은 제안 설명에서 비밀경찰에 연루되었던 사람이 동독 공산독재 희생자의 사면과 복권법에 대한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모든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주의회가 이에 대해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야만 한다고 했다. 법무위원회는 의결권고안을 통해 이 제안이 채택되어 사면 및 복권법에 해당할 수 있는 재판에서는 비밀경찰에 연루되었던 사람들이 명예판사로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해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주의회는 법원장과 재판장이 제출한 비밀경찰과 연루되지 않았었다는 선서의 진실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출처_ Landtag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625

문서 번호 61

신연방주의 행정구축-연방의회 원내 사민당의 질의에 대한 연방정부의 답변

1991년 7월 1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내무부, 연방의회 사민당

내용_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에서 잘 운영될 수 있는 공공행정 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사민당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신연방주 행정기관이 필요로 하는 유능한 인력에 대한 수요와 서독의 구연방주 행정기관 출신 직원 중에 신연방주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지원자들 간의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기 위해 연방내무부는 베를린에 공동인력거래소를 설치하였다. 이 거래소에는 1991년 7월 현재 신연방주로부터 700개의 문의가 들어왔고 약 1,300개의 지원서가 서독의 구연방주로부터 제출되었다.

구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면서 200개가 넘는 기관(철도, 우편과 국방을 포함하면 400개가 넘는 기관), 560,000명이 넘는 직원이 연방정부에 인계되었다. 인력 파견을 통해 신연방지역의 연방행정기구에서 근무하는 서독 출신의 연방 직원은 1991년 5월 현재 7,568명이었다(이들 서독 출신 직원의 부처별, 조직별 분포에 대한 표 포함).

신연방지역의 인력 수요로 인해 소요되는 재정비용을 위해 연방정부가 제공한 재정지원의 규모는 1990년에서 1992년 사이에 약 9억 마르크였다.

연방예산에는 1990년에 서독의 연방 직원과 이미 정년퇴직한 연방 직원의 파견을 위해서 4천만 마르크를 출장비, 고향 방문비, 추가지출 비용의 보상금 명목으로 책정하였다. 1991년에는 이를 위해 1억 3천만 마르크가 배정되었다.

능력 있는 우수한 인력을 서독에서 영입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신연방지역의 기초단체에 인건비 보조금을 제공하였다. 이를 위해 1990년에 1천만 마르크가 제공되었다. 1991년과 1992년에는 매년 1억 마르크가 책정되었다.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원 급여와 연금의 도입은 급여-과도기 규정을 통해 정해졌다.

(이 문서는 나아가 연방과 각 연방주가 제공한 행정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916

문서 번호 62

서독에서 파견되어 브란덴부르크에서 근무 중인 행정요원 명단 표(1991년 6월 15일 현재)

1991년 7월 15일

담당자 / 기관_ 토마스 빌라쉑

내용_

행정 체계의 상위 영역에서 근무 중인 서독 출신 행정요원의 비율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낮

아진다. 책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는 매우 높은 빈도로 행정 경험이 없는 동독인이 아닌,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갖고 있는 '서독인'에 의해 채워졌다. 행정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이와 함께 분야의 특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출처_ Willaschek, Thomas: Die Gesetzgeb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am Beispiel Brandenburg. Hamburg 2007.

문서 번호 63

연방주 정부와 베를린 시정부에 의한 환경 피해 책임의 면제

1990년 7월 25일

담당자 / 기관_ 신탁관리청 법무국장, 신탁관리청 환경보호·오염토지관리국장

내용_

신탁관리청 소속 기업의 상황에 대한 이 서신은 소위 말하는 '면제신청서'의 문제를 언급한다. 동독 환경기본법 I조, 4항 3번 문항에 따르면 신연방주의 해당 관청이 상업 목적의 토지와 시설을 취득한 사람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오염된 토지에서 발생하는 환경 피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줄 수 있다. 단 해당 환경오염이 1990년 7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로 제한되었다.

이러한 책임면제 조항의 목표는 오염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기업의 민영화에서 오염 처리 비용으로 인해 기업의 민영화가 방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 문제를 담당하는 해당 기관은 각 주마다 차이가 있다. 일부에서는 기초단체가 담당하고 일부 주에서는 연방주의 최고위 관청에서 관할한다. 해당 관청은 신청자의 이해관계와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두고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고려해야만 한다. 그러나 오염토지의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이 자동적으로 면제되지는 않는다.

출처_ Treuhandanstalt (Hrsg.). Dokumentation 1990-1994, Band 9, S. 391-394. Berlin: Treuhandanstalt 1994

문서 번호 64

통일독일의 방송에 관한 연방주 간의 조약

1991년 8월 3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주 주총리

내용_

이 문서는 미디어를 포함한 모든 문화정책을 각 주정부의 관할 영역으로 규정한 독일의 연방주의 원칙하에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과 서독지역의 연방주들의 미디어법을 통일하기 위하여 체결된 연방주들 간의 국가조약이다. 이것은 서독 연방주들 간에 체결된 기존의 국가조약의 대부분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조. 방송조약-민영방송과 공영방송으로 구분된 이중 체계를 구축한다.
제2조. ARD 조약-전독일공영방송 ARD 규정에 따라 연방주의 방송사가 모두 함께 제1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구축한다.
제3조. ZDF 조약. 제2 공영방송사인 ZDF에는 모든 연방주가 참가하여 지분을 갖는다. 이 조항에는 ZDF의 업무, 조직, 재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4조. 시청료 조약. 이 조항은 시청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기와 시청료 납부 의무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
제5조. 방송사재정조약. 이 조항은 시청료의 규모와 시청료를 통해 각 지역 방송사의 재정을 충원하는 것과 ARD에 참가한 방송사 간의 재정배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6조. 문자화면조약. 공영방송망을 통한 문자화면 전송과 이용에 관한 내용
제7조. 과도규정, 선포, 발효일
제8조. 조약의 해지

출처_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Brandenburg, 2. Jahrgang, Nr. 42, S. 580 ff

문서 번호 65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법조인에 대한 수사

1991년 9월 4일

담당자 / 기관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민사당 의원 그람코프,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법무 장관 보른

내용_

이 문서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의 법조인에 대한 조사에 관해 주의회 민사당의 그람코프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 주정부가 답변한 것이다. 답변의 핵심은 현직 판사와 검사들에 대한 검토는 통일조약을 통해 결정된 합법적인 업무이며, 판사 또는 검사가 법치국가에서 새로운 과제를 담당하기에 적절한 인물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를 위해 지금까지의 경력을 검토하고, 그들이 주관했던 재판을 검토한다고 했다. 판사나 검사가 형사법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만 그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도 법적으로 피의사실이 드러나서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법치국가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한다. 국가기구가 선입견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출처_ Landtag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718

문서 번호 66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 간 교육 및 스포츠 분야에 있어 행정적 협력에 대한 합의

1991년 9월 13일

담당자 / 기관_ 교육·청소년·스포츠부 장관 마리아네 비어틀러, 문화부 장관 한스 슈비어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가 교육 및 스포츠 전 분야에 걸쳐 브란덴부르크주 내 해당 분야의 확충 및 재구성을 목표로 정보 교환, 자문 및 교육연수 및 기타 협력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체결한 협력 합의서이다. 이 합의는 4년간 유효하며 두 차례에 걸쳐 2년씩 연장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합의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양측의 문화부 장관과 차관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는다. 각 문화부의 부서 및 하위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환한다. 또한 임시적인 인력 지원이나 교육 및 스포츠 행정 확충에 필요한 물자의 지원을 통해 행정적 지원을 한다.

양측은 브란덴부르크주 교육 부문 대표자들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소재 교육기관 및 (교육청이나 주문화교육장관청 등의) 다양한 행정단계 기관에 초청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브란덴부르크주 교육 부문 대표자들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열리는 추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계속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행정 합의를 근거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안에 있어 브란덴부르크주의 교육·청소년·스포츠부는 계획서에 구체적으로 필요 사항과 예상 일시 및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기재한다.

출처_ Schreiben (Vermerk: 11/851) des Chefs der Staatskanzlei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Wolfgang Clement an Landtagspräsidentin Ingeborg Friebe

문서 번호 67

튜링겐주의 문화 현황에 관한 질의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

1991년 9월 17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 주의회 사민당, 튜링겐 주정부 학술·예술부

내용_

이 문서는 튜링겐주의 문화 현황에 관한 사민당의 질의와 그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민당의 질의의 핵심: 튜링겐은 독일에서도 문화유산이 가장 풍부하고 다양한 지역에 속하며, 이런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보존하는 것이 주정부의 의무이다. 적극적인 문화정책을 실현하는 것은 나아가 경제진흥을 위한 구조정책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독일 통일로 인한 급격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 때문에 문화예술에 종사하던 많은 사람들이 직업적, 사회적 기반을 상실했고 이들의 장래가 아주 불확실하다는 것도 예견할 수 있다. 주정부가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들을 주정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지 묻는다. 나아가 24개의 질문을 함께 제출한다.

주정부의 답변: 튜링겐주에는 예를 들어 8개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있고, 수많은 음악학교가 있다. 그리고 1,000개가 넘는 공공 도서관이 있고,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튜링겐지역에는 서독지역에서와는 달리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줄여 주는 문화 인프라가 존재한다.

이런 기반을 유지·보존하기 위해서는 신연방지역의 문화정책을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이 연장되어야만 하지만 문화 영역에서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튜링겐주 문화정책의 기본 입장은 기초자치단체가 문화정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정부는 기초자치단체가 맡은 문화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도움을 주는 것으로 그 역할이 제한된다. 튜링겐 주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문화 관련 업무 재정 분담 비율은 서독 연방주들의 경험을 통해 정해진 것과 동일하게 1:2로 정하기로 한다. 튜링겐주의 의회는 문화정책을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상황에서 주정부가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업무 재정을 더 많이 지원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결정해야만 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주정부가 요구한 문화정책 방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출처_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696

문서 번호 68

튜링겐 행정구역 개혁의 준비-주의회 민사당 디틀 의원의 질의에 대한 튜링겐 내무부 장관의 답변

1991년 9월 26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주 내무부 장관, 튜링겐 주의회 의원 디틀

내용_

신연방주의 튜링겐주 내무부 장관은 행정구역 개혁을 위한 준비 상황과 튜링겐의 기능개혁의 구상과 관련된 주의회 디틀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튜링겐주에는 이미 자발적으로 형성된 85개의 행정단위체가 존재한다.

행정구역의 개혁을 위한 중요한 준비 단계는 군의회와 크라이스의회에 진출한 각 정당의 대표들과 논의하는 것이다.

게마인데의 경우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새로운 구조로 통합되거나 또는 기존에 존재하는 규모가 큰 게마인데로 병합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피치 못할 경우에만 차후에 상급관청의 지시를 통해 소규모 게마인데를 행정공동체로 병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다.

행정구역 개혁이 완결되면 곧 기능 개혁에 착수할 것이다. 기능 개혁을 통해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행정 업무를 적합하게 재분배하고 행정 관청의 조직도 그에 적합하게 새로이 구성되어 행정 업무의 합리화를 실현하도록 할 것이다.

출처_ Landtag Thüringen, Parlamentsprotokoll 1/30

문서 번호 69

인민군 군부대 부지의 원소유자 반환에 관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내무위원회의 보고 및 의결 권고

1991년 9월 26일

담당자 / 기관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내무위원회장 헤르만 볼링거

내용_

이 문서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국방부에게 인민군 군부대에 귀속되었던 토지 이용 문제를 가능하면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해야만 한다는 주의회 사민당의 제안에 대한 주의회 내무위원회의 보고와 의결 권고를 포함하고 있다. 인민군 군부대 부지를 신속하게 원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제적으로 이용, 또는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지역으로 분류·처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사민당의 제안 중에서 통일조약 21조를 재협상해야만 한다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민당은 통일조약의 협상주체였던 동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통일조약의 재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Mecklenburg-Vorpommern, Drucksache 1/768

문서 번호 70

학력 동등성 인정-(대학교, 교회 양성교육기관, 전문대학교 및 공업전문대학교 학위)

1991년 10월

담당자 / 기관_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

내용_

이 문서는 동독에서 취득한 대학 졸업을 포함한 학력의 동등성 인정을 위한 관할권 규정에 대한 독일연방공화국 주 사이의 협정 그리고 학력의 동등성 인정을 위한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 의결이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통일조약 제37조 제1항을 바탕으로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는 구동독에서 취득한 학력의 평가를 실행하였다. 여기에서 참작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국립 그리고 국가가 공인한 대학에서 직접 수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수학하여 취득한 예술 석사를 포함한 석사 자격
- 대학 범주에 속한 목사 양성교육기관의 졸업
- 전문대학 및 공업전문대학 졸업

평가는 구동독에서 서독에 흡수·통합되기 전까지 그리고 뒤이어 양성교육 체제 전환 전에 과도기 동안 이수하였거나 또는 1993년 말까지 이수가 진행 중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동등성 인정을 위한 관할권은 주 협약을 통하여 규정한다.

통일조약 제37조의 맥락에서 본 동등성 인정은 비교 가능한 형식적 자격 수준의 인정뿐만 아니라 독일 학력과 더불어 구동독에서 이수한 학력에 있어 교재의 충분한 동등성을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학력 평가는 구동독과 구서독 간 통합과정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한다.

학력 평가에 있어 통일된 분류가 불가능했던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그룹이 구성되었다.

사례그룹 1

최종 학력이 이미 1990년 10월 3일 이전부터 기본법이 유효했던 구서독지역의 종합대학 또는 그 종합대학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는 단과대학에서 이수되었던 최종 학력과 동등하다.

사례그룹 2

최종 학력이 이미 1990년 10월 3일 이전부터 기본법이 유효했던 구서독지역의 종합대학 또는 그 종합대학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는 단과대학에서 이수되었던 최종 학력과 동등하다. 그러나 양성교육은 직접적으로 동독의 경제 및 사회 체제에 맞추어져 있었으므로, 학업내용을 고려해 보면 체제와 관련하여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사례그룹 3

최종 학력이 전문대학에서 이수하였던 학력과 동등하다.

사례그룹 4

최종 학력이 전문대학 졸업과 동등하다. 그러나 양성교육은 직접적으로 동독의 경제 및 사

회 체제에 맞추어져 있었으므로, 학업 내용을 고려해 보면 체제와 관련하여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2.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브레멘, 함부르크, 헤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자를란트, 작센, 작센-안할트, 슐레스비히-홀슈타인, 튜링겐주는 다음과 같이 협정하였다.

1조

담당자는 동독에서 취득한 학력을 대학 졸업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과 관련된 통일조약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 학력을 이수한 교육시설이 설립되어 있는(있었던) 조약체결 주의 대학제도 담당 장관/시정부 의원이다. 이는 동독이 서독에 흡수·통합된 이후 구동독지역에서 이수하였던 또는 1993년 12월 31일까지도 여전히 이수 중인 학력에 대하여서도 유효하다.

2조

조약체결 주 중 한 곳에서 실행된 동등성 인정은 다른 모든 조약체결 주에서도 유효하다.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에서 조약체결 주의 교육 및 문화/과학부 장관/시정부 의원의 의결을 통해 통일된 평가방식을 보장한다.

3조

본 협약은 조약체결 주 중 마지막 주(州)가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 사무총장에게 최종적으로 동의서를 제출한 당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 사무총장은 이 시점을 조약체결 주들에게 통지한다.

출처_ Sekretariat der Ständigen Konferenz der Kultusminister der Länder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문서 번호 71

신연방지역의 판사 및 검사에 대한 검토-신문보도 및 도표

1991년 10월 6일

담당자 / 기관_ 서베를린 일간지 타게스슈피겔 기자 프랑크 파바써

내용_

작센을 제외하면, 신연방에서 슈타지 연루에 대한 검증 절차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1991년 중반 무렵의 상황을 보면 작센은 새로운 인력으로 흡수된 동독 출신 인력의 64.5%에 대한 검증을 마쳤다. 베를린의 경우에는 동독 출신의 판사는 전혀 재임용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브란덴부르크뿐 아니라 튜링겐도 슈타지 연루 검증 업무에서는 낮은 수준을 보인다. 상기 두 신연방주에서 높은 수준의 슈타지 연루 검증작업이 이뤄진 것은 이 두 신연

방주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600 Nr. 190

문서 번호 72

인민군 군부대 사용지의 원소유자 반환 문제에 대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의회 총회

1991년 10월 16일

담당자 / 기관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내무위원회장 헤르만 볼링거,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내무 장관 게오르크 디데리히,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의원 링스토르프, 그람코프, 골트벡

내용_

이 문서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의회 총회에서 인민군 군부대 사용지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문제에 관해 토론한 것이다. 사민당의 링스토르프 의원은 상임위원회를 통해 제출된 의결 권고안이 사민당이 원래 제안했던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연방의회가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연방주와 베를린에 약 50만 헥타르의 군용지가 연방에 귀속되었다. 연방정부의 국방부가 그중의 일부를 반환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연방정부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한 제스처로만 보여질 뿐이다. 인민군의 군용지는 원래 신연방주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으로 간주해야만 하기 때문에 연방정부로부터 그것을 반환받을 때 댓가를 지불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링스토르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의결 권고안을 개정해서 군용지를 무상으로 반환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기민당과 자민당은 그의 제안이 기존의 의결 권고안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 결과 사민당의 개정 제안은 거부되었고, 의결 권고안이 그대로 통과되었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Mecklenburg-Vorpommern, Plenarprotokoll 1/33, S. 1453-1456

문서 번호 73

발전소와 전력 공급망의 소유권에 관한 주의회의 질문에 대한 튜링겐주 경제기술부 장관의 답변

1991년 10월 18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 주의회, 튜링겐주 경제부 차관 데틀레프 킬머, 튜링겐 주의회 사민당 의원 크리스티네 루돌프

내용_

이 문서는 튜링겐주의 전력 공급망과 발전소의 소유 관계에 대해 주의회의 루돌프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주정부 경제기술부 장관의 답변이다. 질문의 핵심은 1. 1950년 이전 튜링겐주 전력 공급망과 발전소의 소유주는 누구였는가, 2. 경우에 따라서 주정부가 신탁관리청에 소유권 반환을 신청할 의사가 있는가, 3. 전력 공급 체계의 독점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시장 경쟁에 바탕을 둔 모델이 더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다. 그에 대해 주정부 경제기술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신연방주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해 놓았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지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정부는 현재 튜링겐주가 어느 선까지 소유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그러나 동독 체제하에 작동하던 구조를 다시 작동시킬 생각은 없고, 민간 회사가 전력 공급망 구축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강력한 경쟁원칙에 입각한 전력 공급 구조질서를 개발하는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국제적으로도 제대로 된 경험이 거의 축적되어 있지 않다. 신연방주들이 현재 직면한 경제문제, 환경문제를 고려할 때 그런 모험적인 질서구조를 튜링겐주에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Thüringen, Drucksache 1/814

문서 번호 74

튜링겐 헌법수호법

1991년 10월 29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 주의회 의장, 튜링겐주 내무부

내용_

튜링겐은 헌법수호법을 도입하고 튜링겐주 헌법수호청을 설치하였다. 헌법수호청의 직속 상급기관은 내무부이다.

튜링겐주 헌법수호청의 업무는 해당 기관들이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을 방어하고 연방과 연방주의 존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주헌법수호청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해당 집단이 모르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필요로 한다.
구동독의 비밀경찰 또는 국가안전부의 상근직원 또는 비공식 요원, 동독 무장기구의 장교 그리고 사회주의통일당의 상근직원은 원칙적으로 헌법수호청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이 법에는 나아가 헌법수호청의 권한, 업무규정, 의회에 의한 통제 등에 대해 자세한 규정이 포함되었다.)

출처_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Thüringen 1991 Nr. 24, S. 527-533

문서 번호 75

튀링겐주의 사법 구축 사례

1991년 11월

담당자 / 기관_ 라인란트-팔츠주 법무부, 튀링겐주 법무부

내용_

이 문서는 튀링겐주의 사법제도 구축에 관한 것으로 법치국가 원칙에 입각한 사법제도와 사법행정의 구축과 마음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내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설명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구연방주와 신연방주 간의 자매결연을 통해 헤센주와 더불어 라인란트-팔츠주를 튀링겐주와 연결한다.
- 사법 구축 지원에 필요한 인력 문제

- 튀링겐주 법조인들과의 제1차 접촉: 1990년 초 라인란트-팔츠 사법부가 튀링겐주 전문 법조인 전원에게 제공한 정보 세미나. 주제: 독일연방공화국의 연방적 재건, 사법권, 사법 조직, 검찰의 지위, 행정 사법권, 사법 기구로서의 변호사, 자율 사법권의 절차.
- 1990년 7월 1일 자 경제, 화폐, 사회통합 발효 후 재교육 조치 확대
- '튀링겐주 교육을 위한 정치-상담 위원회' 설치. 본 위원회는 현 튀링겐 사법부의 전신이었던 '사법 하부 위원회' 등을 교육하였다.
- 1990년 10월부터 라인란트-팔츠주의 공무원 100여 명, 헤센주의 공무원 80여 명, 바이에른주의 공무원 20여 명이 튀링겐주로 파견되었다.

- 튀링겐주의 판사와 검사 검증

- 라인란트-팔츠주의 판사와 검사들은 여러 판사선출 및 검찰임명위원회의 대표직을 맡았으며, 검증 기준을 마련하였다.

- 기능하는 토지대장의 필요성

- 토지대장 담당 부서를 주 사법 행정부로 편입
- 토지 등기 신청 처리를 위한 인력 부족: 긴급 조치로 사법보좌관 한 명과 중간 직급의 공무원 한 명 이상으로 구성된 실무단을 튜링겐주의 부동산 담당부로 파견.

• 구부동산담당부 직원의 교육과 재교육: 토지대장법 및 토지대장절차법의 입문 및 기초 코스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출처_ Neue Justiz 11/1991. S. 475-478

문서 번호 76

1991년도 신연방주 행정 및 사법제도 구축을 위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지원 보고

1991년 11월 15일

담당자 / 기관_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총리 요하네스 라우

내용_

이 문서는 요하네스 라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주총리가 신연방주의 행정과 사법제도 구축을 위해 1991년도에 지원한 내역에 관해 제출한 보고서이다. 주총리는 이 보고서를 주의회의 모든 상임위원회와 모든 의원들에게 제공해 달라고 부탁했다. 법무부와 관련된 부분에 관해 주정부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브란덴부르크주에 법치국가 원칙에 부합하는 사법 체계 구축 작업은 1991년 1월 28일에 보고한 독일 프로그램 이후 더욱 집중적으로 지원되었다. 우선 행정 인력의 구축을 위한 지원에 관해 보고했다. 인력 지원을 위해 지출된 금액이 2천 4백만 DM이다. 이어 자문비용, 재교육 및 연수를 위한 비용이 보고되었다. 브란덴부르크주와의 협력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나아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와의 협력에 관해서도 설명되었다. 앞으로의 협력도 지금까지와 유사한 규모로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5개의 부록에는 자매결연을 맺은 사법기관의 목록이 나와 있다.

출처_ Landtag Nordrhein-Westfalen, 11. Wahlperiode, Vorlage 11/879

문서 번호 77

'1992년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문화예술센터 재정 및 직원 업무에 관한 연방회의 발의'에 관한 심의

1991년 11월 28일

담당자 / 기관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좌파-민사당 의원 하이데-말리스 라우텐슐레거,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에서 문화정책을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에 관한 제안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좌파-민사당의 하이데-말리스 라우텐슐레거 의원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가 연방정부가 1992년에도 1991년과 동일한 수준의 문화예산을 지원할 것을 연방회의를 통해 제안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문화 영역에서 현황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일상적인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에 대해 기민당의 프리더 엘레 의원은 연방정부가 담당해야 할 부분은 이미 충분히 지원하였으므로 연방주들이 책임져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민사당의 발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발언하였다. 사민당의 지그프리드 프리제 의원은 연방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이미 1992년의 예산 삭감을 결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사민당이 연방의회에 1992년에서 1994년 사이에 결정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문화예산을 제안하였지만 그것이 관철되지 못했다고 강조하였다. 그래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의 사민당은 좌파-민사당의 발의에 동의한다고 하였다. 오스발트 뷰츠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문화부 장관은 그에 대해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가 신연방주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받았다고 설명하였다. 좌파-민사당의 제안이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출처_ Parlamentsarchiv des Landtag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36, S. 1741-1743

문서 번호 78

신연방주의 수도 공급과 하수시설의 구조적 발전-연방정부와 신연방주들의 경제부와 환경부의 공동 선언

1991년 12월 4일

담당자 / 기관_ 연방경제부, 연방환경부, 연방내무부, 신연방경제부, 신연방환경부

내용_

이 문서는 신연방주들의 환경부, 경제부 장관들과 연방정부의 환경부, 경제부, 내무부 장관들이 1991년 12월 4일에 구동독지역의 상수도 공급과 하수시설에 관해 논의한 후, 11개 조항을 공동으로 채택한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상수도 공급을 포함한 공공 인프라 구조의 신속한 구축은 경제 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1991년 4월에 열린 신연방주 환경부장관회의에서 상하수도의 민영화를 위한 실무그룹

을 구성했다. 실무그룹을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공개경쟁을 통한 입찰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많은 수의 기업들이 경제적, 기술적으로 붕괴되는 것은 막도록 한다. 신연방주의 상수도 공급과 하수처리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 규모는 1,000억 DM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과 공공기업들은 동등하게 공공보조금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주정부의 지원 기준을 그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 동독의 상하수도 공사의 재산을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으로 전환하는 작업은 신탁관리청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한다. 앞으로 상수도와 하수도 사업장의 운영 형태는 상하수도를 함께 연계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키도록 한다.

출처_ Mitteilung der Kommissio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Zustand der Umwelt in den sechs neuen Bundesländern. KOM(1998) 33, vom 2.2.1998. Katalognummer CB-CO-98-033-DE-C.

문서 번호 79

1991년도 신연방주 행정 및 사법제도 구축을 위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지원-추가보고서

1991년 12월 5일

담당자 / 기관_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총리실장 볼프강 클레멘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회 사민당 의원 그래츠 외 다수 의원

내용_

이 문서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총리실 실장 클레멘트가 주의회에 보고한 것으로, 통일된 독일 전역에 동일한 삶의 조건을 실현하기 위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주정부가 1991년에 기여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가 주로 지원한 곳은 브란덴부르크주이지만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과 작센주도 지원했다고 한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기관은 브란덴부르크주의 사법 영역과 세무행정이다. 신연방주 공무 인력 700명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에서 연수를 받았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와 브란덴부르크주에서 1991년에 진행될 연수와 재교육에는 1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하게 될 것이다.

출처_ Landtag Nordrhein-Westfalen, 11. Wahlperiode, Hauptausschuß, Ausschußprotokoll 11/436, S. 14-20

문서 번호 80

1991년 가을 현재 신연방주의 사회 분위기와 문제점

1991년 12월 1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경제부, 알렌스바흐 인구문제연구소

내용_

이 문서는 알렌스바흐 인구문제연구소가 연방경제부의 용역을 받아서 신연방주의 사회적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한 연구 결과이다. 이것은 1,116명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노동시장과 시장경제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대표적인 연구이다. 그에 따르면 통일 이후 신연방주의 사회적 분위기는 나빠졌다가, 이제 다시 서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체제전환 과정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의 상황이 좋아지고 있고 건설업이 호황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_ Institut für Demoskopie Allensbach. Probleme und Stimmungslage der Bevölkerung in den neuen Bundesländern. Eine aktuelle Bestandsaufnahme im Herbst 1991.

문서 번호 81

문화시설의 지원-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문화상임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1991년 12월 13일

담당자 / 기관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좌파/민사당,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문화상임위원회

내용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의 좌파-민사당은 주정부의 문화부가 문화시설을 시장경제적 시각에서 구조전환하는 과정에서 자문해 주고 그를 위한 재정을 부담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의회의 재정상임위원회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에 대해 문화상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것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제안서의 내용을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출처_ Parlamentsarchiv des Landtag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1137

문서 번호 82

신연방주와 베를린 도로건설계획촉진법(도로계획촉진법)

1991년 12월 1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내용_

독일통일 당시 독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던 도로건설계획법은 20년까지 걸리는 장기적인 대규모 사업을 기획하고 그것을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야만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도입된 이 법은 신연방주의 도로건설을 위한 계획 기간을 단축하여 가능한 한 신속한 시일 내에 도로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도로를 보수하고 새로운 도로를 구축하는 건설사업은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도 있다. 나아가 이 조치를 통해 연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독일 전역에 동등한 삶의 질을 만들어야 한다는 헌법이 정한 의무를 실천에 옮길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은 신연방지역과 베를린에 있는 모든 연방도로(철도, 도로, 수로)에 적용되었다. 나아가 공항과 전철, 지하철 등 철로를 이용하는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도 적용되었다. 이 법은 특히 연방교통 장관에게 모든 연방도로의 노선을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도로의 노선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작업이 훨씬 가속화될 수 있었다. 이 법을 통해 형식적인 공간질서 검토 절차가 생략되고 계획확정 절차가 가속화되었다. 그것은 계획을 공고하고 그에 대한 각 부서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기간을 도입하거나 또는 그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통해서 계획확정 결정 대신에 건축조치의 근거로서 특별한 전제조건하에서 계획을 허가함으로써 그리고 행정법원의 절차를 한 단계로 단축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1, Nr. 65, S. 2174-2176

문서 번호 83

제3차 베를린 주법의 단일화법

1991년 12월 19일

담당자 / 기관_ 베를린 의회

내용_

이 법에 따라 주공무원법, 공무원의 자격 인정에 관한 법 및 기타 규정들이 동베를린지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동독 체제하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했던 교사들은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다.

- 법에 의거하여 동독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 및 다른 동독의 공무원들은 '수습 공무원'으로 임명된다.

- 교사들은 자격 인정을 위해 수습기간 동안에 교직 외에 보충 과정을 이수하여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 자격 인정 여부는 최고 관할 관청에서 결정한다.

출처_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Berlin. 47. Jahrgang Nr. 57, 31.12. 1991

문서 번호 84

신연방주 헌법 초안

1992년

담당자 / 기관_ 요하네스 룩스 박사

내용_

이 문서는 신연방주의 헌법 도입에 관한 논의에 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신연방주별로 논의에 큰 차이가 있다-브란덴부르크와 작센-안할트주의 경우 헌법을 1992년 여름까지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튜링겐주에서는 아직까지 합의점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 헌법 논의의 중점 내용-기본 권리와 국가적 목표

- 지방의 기본 권리는 기본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 그러나 기본법에 따라 통과된 주헌법은 일반적으로 기본법의 기본 권리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유효하다는 내용으로 제한된다.
-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기본 권리 외에 헌법 초안 중 대부분은 일차적으로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주어야만 하는 '국가적 목표'를 내포하고 있다.
- 기본 권리들은 방어를 위한 권리만이 아닌, 행동과 참여적 권리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 결정에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국민 투표적 요소

- 대부분의 주에서는 국민 투표가 계획되고 있다. 신연방주 헌법의 근본적인 모범이 된 것은 1990년 슐레스비히-홀슈타인의 헌법이다. 이 헌법은 정치적 의사 형성 중 법을 통해 정해져야 할 특정 대상들과 유권자 2만 명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문제에 관한 국민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
- 브란덴부르크주와 작센-안할트주의 헌법 초안은 우선적으로 법을 통해 좀 더 자세히 결정되어야만 하는 특정 문제들에 관한 국민 참여를 계획하고 있다.
- 국민 투표적 요소들은 의회와 정부로부터 외면받는 특정 문제들에 관한 국민 논의의 활성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
- 그렇기 때문에 청원권 개혁이 이러한 목적을 훌륭히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대리인을 통한 국민 권리의 실천
- 의회와 정부의 관계
- 학교와 헌법
- 지방 헌법 재판

출처_ Neue Justiz – NJ 1992, S. 147-151

문서 번호 85

전직 동독 판사의 베를린시 판사직 지원

1992년

담당자 / 기관_ 베를린 고등행정법원, 베를린주

내용_

이 문서는 베를린시의 판사직에 지원했다가 거절당한 동독의 전직 판사였던 사람이 제출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이다. 판결의 근거는 베를린시가 독일판사법을 적용하는 특수한 방식이었다. 베를린시에서 적용되는 독일판사법 적용의 특수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베를린시 독일 판사법 적용의 특수성

- 판사 임명을 위한 전제조건: 동독법에 따라 직업 판사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들은 베를린시에서 수습 판사로만 임명될 수 있으며, 과거에 베를린 시구법원(Stadtbezirkgericht) 혹은 시법원(Stadtgericht)에서 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을 경우 판결권(rechtsprechende Gewalt)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베를린시의 특수성: 사법제도와 법원조직이 완전히 새로 구축될 때까지 신연방주와는 달리 동베를린의 시구(Stadtbezirke)로 기존 법원제도를 확대
- 규정의 목적: 기존 주거 및 활동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판사직 수행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과거 동베를린지역에 투입된 판사들의 이익을 고려

출처_ Deutsch-Deutsche Rechts-Zeitschrift 1992, S. 304; http://www.gesetze-im-internet.de/bundesrecht/drig/gesamt.pdf

문서 번호 86

신연방주 내 대학구조 재구성에 대한 학술자문회의 권고에 대한 보고

1992년 1월 15일

담당자 / 기관_ 연방교육·학술부 장관 라이너 오트레프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의회 교육학술상임위원회의 질의에 대해 연방정부의 교육학술부 장관이 보고한 것이다. 교육부 장관은 1992년 1월에 제출된 이 보고서에서 학술자문회의가 동독의 대학구조 개혁을 위해 제출한 권고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학술자문회의는 연방정부의 요청으로 9개의 실무단을 구성해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었다. 추가로 통신대학 교육을 평가하기 위한 실무단도 구성되었다. 동독에는 1989/1990년도에 54개 대학교들과 24,500명의 학자들 그리고 127,000명의 대학생들이 있었다. 당시에는 외국의 전문서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연구 기기, 컴퓨터 및 통신 수단은 낙후되어 있었다. 연구 공간은 협소했으며 건물의 상태도 열악했다.

연방교육부 장관은 보고서에서 다양한 학과의 현황과 신연방주의 대학교육 현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그는 신연방주들의 앞으로 설립될 전문대학교가 이 지역의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사범대학교들의 장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신연방주들은 그 사이에 자체적인 대학교법을 제정하였고 학술자문회의의 자문에 부응하여 인적 쇄신 및 학과의 쇄신을 위해 대학구조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나아가 대학 및 연구 개혁 프로그램(HEP)에 의해 제공되는 재정지원에 힘입어, 새로운 학과를 설립할 교수를 초빙하고, 담당 강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들 대학의 대학교수 초빙 공고에 서독지역뿐만 아니라 해외대학의 학자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학술자문회의의 자문 내용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학술자문회의의 의견은 방향 설정에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술자문회의의 평가에 신연방지역의 대학교들이 갖는 장점들을 어떻게 대학수업에 반영할 것인지 그리고 그 성과를 독일 전체 대학에 어떻게 유익하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은 유감스럽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제는 앞으로 대학교들이 각자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_ Muszynski, Bernhard (Hrsg.) – Wissenschaftstransfer in Deutschland – Erfahrungen und Perspektiven bei der Integration der gesamtdeutschen Hochschullandschaft, 1993, Leske + Budrich, Opladen, S. 333-351

문서 번호 87

전력 공급망에 관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의회 총회 토론

1992년 1월 15일

담당자 / 기관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의원 이데, 게어로프, 브란트

내용_

이 문서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의회에서 전력 공급망에 관해 토론한 기록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민당의 이데 의원은 발언을 통해 주의회의 재무위원회는 주정부가 전력 공급망의 소유권 문제를 검토하고 1991년 3월 31일까지 중간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내무위원회 또한 주정부가 소유권 문제를 분명히 정리해야만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법무위원회는 주정부가 즉시 소유권을 행사해야만 한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사민당의 클라우스 게어로프 의원은 주정부가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정부가 자신의 권리를 강력하게 관철시켜야만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의 재산을 확실히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주정부가 이런 기회에 대해 단순히 조사·검토만 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주정부의 경제 장관은 지금까지 팔짱 끼고 구경하는 관객일 뿐이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기민당의 브란트 의원은 기존의 상황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그것은 경제부에서 계속 진행시켜야만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Mecklenburg-Vorpommern, Plenarprotokoll 1/40, S. 1986-1988

문서 번호 88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가 작성한 북부독일방송에 관한 법 초안-발췌

1992년 1월 20일

담당자 / 기관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 북독일방송사 NDR

내용_

이 문서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정부가 NDR과 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법으로 승인해 주기를 주의회에 요청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조약을 통해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가 서독지역의 니더작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함부르크주가 운영하는 NDR방송사에 참여하는 것을 확인한다. 슈베린시에 NDR의 지역방송국이 세워지고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지역 프로그램이 일정한 방영시간을 받게

되고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지역의 지방 라디오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된다. NDR의 기구는 국가조약을 통해 규정되며 거기에는 이 기구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 주의 사회조직과 단체들에 관한 내용도 포함된다.

출처_ Landtag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1260

문서 번호 89

신연방주지역의 신문언론의 발전 전망과 구조 적응 문제-연방내무부에 제출된 연구보고서(발췌)

1991년 10월, 1992년 2월

담당자 / 기관_ 연방내무부, 하노버 음대 신문방송연구소 베아테 슈나이더 교수

내용_

이 문서는 하노버대학 신문방송연구소 베아테 슈나이더 교수가 연방정부 내무부의 의뢰로 작성한 신연방주의 신문 발전에 관한 보고서이다. 변혁이 시작된 후 동독지역 출판사들의 경제적 상황, 신문의 내용, 신문 경제적 상황 등을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장벽이 붕괴된 직후 서독의 대형 출판사들은 기존의 동독 신문과 협력 관계를 구축·확대하고자 했다. 1989년 말 이후 동독의 신문들은 사통당의 검열과 통제로부터 벗어났다. 사통당의 신문들은 국가재산으로 분류되어 신탁관리청에 의해 관리되었다. 이 신문들은 대개 지역에서 발행되었고 발행 부수가 많은 편이었다. 이들 사통당 신문들은 1990년 말에 이미 매각되었다. 예를 들어 켐니츠시의 '프라이에 프레세'는 라인란트-팔츠주에 소재한 '메디엔 우니온'에, 할레시의 '미틀도이체 차이퉁'은 듀퐁-사우베르크출판사에 의해 인수되었다. 1990년 12월에 신탁관리청은 다른 10개의 신문의 매각 공고를 낼 것이다. 그 금액은 15억 마르크 정도로 독일 신문 역사에서 가장 거대 규모의 신문매각이 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이 신문들은 예외 없이 모두 서독지역의 거대 출판사에 의해 인수되었다. 그것은 신탁관리청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수상실에서는 정책적으로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동독지역의 신문들 중에서 '노이에스 도이칠란트지'만 사통당의 후신인 민사당의 소유로 남아 있게 되었다. 사통당의 신문이 아니었던 모든 신문들도 예외 없이 서독지역의 대형 출판사에 의해 인수되었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도시에 있는 출판사들 또는 자매도시의 출판사들이 동독에서 변혁이 시작된 직후부터 동독지역을 위한 지역판을 발행하여 신문배포 영역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슈퍼 일루'와 같은 신연방지역만을 위한 잡지가 개발·발행되기도 하였다. 이제는 신연방지역에 많은 수의 신문사가 세워졌다. 그들 중 몇 개의 회사는 100% 서독 출판사의 자회사이고, 다른

신문사들도 서독 출판사와 연결되어 있다. 이들 회사들은 신연방주를 위한 공적 투자지원금을 받았다.

출처_ Schneider, Beate: Strukturen, Anpassungsprobleme und Entwicklungschancen der Presse auf dem Gebiet der neuen Bundesländer (einschl. des Gebiets des frühen Berlin-Ost), Forschungsbericht für den Bundesminister des Innern. Band I und Kurzfassung. Hannover und Leipzig 1992.

문서 번호 90

브란덴부르크주 임대인 현황에 대한 보고서 제출 제안에 관한 주의회 총회

1992년 2월 13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브란덴부르크주 주택건설교통부 장관 요헨 볼프, 브란덴부르크주 의원 다수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주 주의회의 모든 정당들이 함께 주정부에게 1992년 8월 1일까지 임대인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트무트 마이어 사민당 의원은 통일조약에 모든 임대료는 소득의 변화에 맞추어서 변경할 수 있다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 후 1991년 10월 1일 자로 기본 임대료와 관리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임대료가 너무 높은지 아니면 너무 낮은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은 통계청을 통해 임대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 통계자료를 통해서만 주택과 임대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브란덴부르크주의 도시개발, 주택, 교통부 장관 요헨 볼프는 나아가 이 보고를 통해 전달된 데이터를 연방정부와 구채무 문제에 관한 협상을 진행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기민당의 라인펠트 의원은 기민당이 기초자치단체의 주택 민영화 작업과 개인주택 소유자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당의 노이만 의원은 이번 토론을 계기로 주민들에게 주택 현황을 알리고 기본 임대료의 인상이 없이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Brandenburg, Plenarprotokoll 1/39, S. 2877-2883

문서 번호 91

신연방주 및 베를린의 대학구조 변화에 대해-대학총장단회의 결정

1992년 2월 18일

담당자 / 기관_ 대학총장단회의

내용_

이 문서는 대학총장단회의가 1992년 초 신연방주의 대학과 연구자들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평가·작성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연방지역의 대학 외 연구기관은 통일조약에 따라 1991년도 말까지 해산 후 구조조정을 거쳐야만 했다. 대학 외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 중 단지 2,000명만이 대학교로 자리를 옮길 수 있었고, 나머지 11,000명은 앞으로도 계속 대학 외부에서 연구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신연방주들은 대부분 앞으로 법제정을 통해서 대학교 형태를 결정해야 한다. 전공구조 및 직위의 수요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도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다. 때로는 대학구조위원회 및 임용위원회 간의 통합결정에 대한 대학과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교직원들의 슈타지 관련 인적 사항을 보여 주는 문서가 아직 1년 이상 전달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신연방주들에서는 60%까지 기존 직위의 해제가 이루어졌다. 많은 경우 대학 외 연구기관 소속 학자들의 선발 과정에 대학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신연방지역의 대학생 수가 1990년 가을부터 15.2% 정도 증가하였다. 독일연구재단(DFG)은 1991년도에 총 1억 1,850만 마르크에 달하는 재원을 신연방지역 학자들의 연구 프로젝트에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연방연구·기술부는 1991년도에 총 1억 200만 마르크에 달하는 재원을 신연방지역 대학교 연구팀이 주도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지출한다고 발표했다. 신연방지역에서의 강의는 서독지역 및 해외로부터 초빙되는 학자를 통해 보장되었다. 교과계획은 크게 조정되었고 신규 전공과정이 개발되었다. 법학, 경제학, 사회과학 및 인문과학의 구조조정이 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총장단회의는 신연방지역의 대학교들의 기능에 있어 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문서에는 그런 문제점이 자세히 열거되어 있다.

출처_ Hochschulrektorenkonferenz, Entschließung des 166. Plenums, in: Arbeitsbericht 1992, Bonn, S. 39-44, entnommen aus: Fuchs, Hans-Werner und Lutz R. Reuter. 1995. Bildungspolitik seit der Wende. Dokumente zum Umbau des ostdeutschen Bildungssystems (1989-1994). Opladen: Leske + Budrich, S. 316-319

문서 번호 92

헤센-튜링겐 공동 저축금고협회 설립에 관한 협약

1992년 3월 10일

담당자 / 기관_ 헤센 주총리 한스 아이헬, 튜링겐 주총리 베른하르트 포겔

내용_

이 문서는 신연방주의 하나인 튜링겐주와 서독의 헤센주가 공동으로 저축은행을 설립하기로 합의한 협약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헤센주와 튜링겐주는 두 연방주의 주민과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저축금고(Sparkasse)의 지역 금고협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헤센-튜링겐주 공동의 저축금고협의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기구의 목적은 튜링겐주의 저축금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두 연방주의 개발기회를 증대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공동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 조약은 저축금고, 지로구좌협회, 공동의 주립은행, 주택은행과 보험을 포괄한다.

계약의 당사자인 두 연방주는 헤센의 저축금고협회와 지로구좌협회가 튜링겐지역의 저축금고와 그 협회를 받아들여서 헤센-튜링겐 공동의 기구로 존속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 협회의 명칭은 헤센-튜링겐 저축금고 및 지로구좌협회이다. 이 협회는 비영리목적의 단체이다. 이 협회는 저축금고를 통제하기 위해 운영 부서 외에 감사 부서를 둔다. 이 기구에 대한 주정부의 감독은 헤센과 튜링겐 주정부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며, 저축금고에 대한 최종적인 감독권 또한 양쪽 주정부가 갖고 있다.

헤센 주립은행은 헤센-튜링겐-지로구좌센터로 개칭된다. 이 은행의 지주는 헤센과 튜링겐주의 저축금고협회와 지로구좌협회이다.

헤센과 튜링겐주는 각 주의 특수한 조건으로 인해 예외적인 규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동일한 저축금고법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것과는 별도로 두 연방주의 감독원이 각 지역의 저축금고를 관리감독한다. 그리고 두 기관은 상호 정보를 교환한다.

출처_ HessGVBl. I S. 190, ThürGVBl. S. 291

문서 번호 93

브란덴부르크주 석탄과 에너지정책 현황에 관한 주의회의 토론

1992년 3월 11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경제기술부 장관 발터 히르헤,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의원 다수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주 주의회에서 라우지츠지역의 갈탄광산에 관해 토론한 기록이다. 이 핵심적인 토론 내용은 동독이 붕괴된 이후 이 지역의 광산업이 쇠락했다는 것이다. 기민당의 크레취머 의원은 갈탄광산 생산량이 1억 9천 5백만 톤에서 1989년에 1억 1천 6백 8십만 톤으로 감소되었다고 했다. 갈탄광산의 용량이 60%로 감축되었다고 한다. 그 결과 광

부들이 대량 해고되었다. 몇 개의 갈탄광산은 이미 폐쇄되었다. 주의회 의원들은 주정부가 라우지츠의 갈탄광산의 장래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질문했다. 갈탄이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데에 주의회 의원들 간의 합의가 존재했다. 주정부는 2000년까지 6천만 톤의 갈탄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의원들은 서독지역의 석탄 생산은 지원되는 반면, 신연방지역에서는 환경오염 비용까지도 지불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브란덴부르크주 경제 장관 발터 히르헤는 법적으로 연방정부가 환경오염 제거 비용을 담당해야만 한다고 본다고 발언했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Brandenburg, Plenarprotokoll 1/40, S. 2940-2951

문서 번호 94

전화통신에 관한 브란덴부르크 주의회의 논의

1992년 3월 11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경제기술부 장관 발터 히르헤, 브란덴부르크주 주택건설교통부 장관 요헨 볼프,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의원 다수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 주의회에서 통일 이후 2년이 지난 현재 브란덴부르크지역의 전화통신 현황에 관해 논의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녹색당의 노케 의원은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주 불만족스럽고 열악하다고 평가했다. 동부독일지역은 서부에 비해 한참 뒤떨어져 있고, 전화통신을 책임지는 연방우편은 중앙집권 국가적인 구조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사민당의 쾨르버 의원은 연방우편의 자회사인 브란덴부르크텔레콤을 잠재력이 있는 기업으로 평가하면서 지금까지 이룬 성과를 칭찬했다. 1997년까지 브란덴부르크지역의 전화통신 인프라 구조가 서독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브란덴부르크주 도시개발 장관은 쾨르버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현대적인 전화통신 인프라 구조가 경제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전화통신 영역의 민영화문제를 언급했다. 볼프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정부 내에서도 아직 합의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Brandenburg, Plenarprotokoll 1/40, S. 2932-2940

문서 번호 95

작센주 법원조직법

1992년 3월 31일

담당자 / 기관_ 작센 주정부, 작센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작센주가 도입한 법원조직법이다. 통일조약에 따라 신연방주에서는 통일 후 과도기간 동안 동독의 법원조직이 그대로 운영되게 되었다. 동시에 신연방주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독일연방공화국의 기준에 맞는 법원 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1992년 7월 1일까지 행정, 금융, 노동 분야의 전문 법원의 구축이 완료되어야만 했다. 동독의 각 지방에 있던 형사법원과 민사법원은 해체되고 1993년 1월 1일까지 삼단계 법원구조의 구축을 완료해야만 했다.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배분은 작센주의 행정구조를 배려하도록 했다. 사법 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법안은 신속하게 의결되어야만 했다.
법원의 설립과 관련해 역사적으로 형성된 지역, 행정·경제·교통 구조, 시민과의 소통, 인력 상황, 건물 등과 함께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야만 했다.

출처_ Sächsisch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1630

문서 번호 96

작센주 내 대학 관련 분야 및 대학교 구조에 대한 법안(작센대학구조법-SächsHStrG)

1992년 4월 10일

담당자 / 기관_ 작센 주총리 쿠어트 비덴코프, 작센주 학술·예술부 장관 한스 요아힘 마이어

내용_

이 문서는 1991년 7월 25일에 도입된 작센주 고등교육개혁법에서 다루지 못한 새로운 구조에 관한 법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기관은 대학, 전문대학, 예술대학 등 세 개의 형태가 있다. 독립적인 교육대학은 일반대학으로 통합한다. 대학이 설립될 지역은 고등교육개혁법을 통해서 결정되었다. 학술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의 선발에 관한 규정도 이미 정해졌다. 해체될 학술기관의 인력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출처_ Sächsisches Gesetz- und Verordnungsblatt, Nr. 16/1992 - Ausgabetag: 08.05.1992

문서 번호 97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산업에 관한 주의회의 토론

1992년 4월 10일

담당자 / 기관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경제 장관 콘라트-미하엘 레멘트,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의원 쉐링어, 벡만, 자이델, 카스너, 이데

내용_

이 문서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의회가 지역경제 문제에 관해 논의한 것이다. 이 토론을 제안한 민사당 쉐링어 의원이 먼저 구동독지역에서 탈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 과정은 독일통일이 이루어진 과정 및 방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었다. 시장 중심의 구조전환이 사회 경제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는 탈산업화와 그로 인한 일자리의 상실을 막기 위한 경제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특히 민영화가 어려운 기업을 해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탁관리청에 회생국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의 기업들이 무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소련지역으로 수출을 보장해 주는 수출융자보장금을 1991년 수준으로 계속 유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하엘 레멘트 경제 장관은 쉐링어 의원이 제안한 몇 가지 사항은 동의한다고 했다. 특히 신탁관리청이 기업의 회생을 돕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나 신탁관리청의 베를린 본부에 회생국을 별도로 설치하자는 제안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사민당의 벡만 의원은 경제정책은 구조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만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했다. 나아가 적극적인 산업정책은 여전히 머릿속에 남아 있는 장벽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Mecklenburg-Vorpommern, Plenarprotokoll 1/50, S. 2544-2551

문서 번호 98

'우리 주를 위한 헌법'- 1992년 6월 14일 브란덴부르크주 주민투표를 위한 홍보자료

1994년 4월 22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정치교육센터

내용_

브란덴부르크 주정치교육센터에 의해 1992년 발행된 자료는 1992년 4월 14일, 1년 이상 의회 안팎의 토론을 거친 후 3차 회의에서 압도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 기본법 초안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정보용 자료이다. 여기에는 브란덴부르크주의 민주적 기본법이 나오기까지의 이전 역사, 의회의 의견 차이 속에서 기본법 초안이 논의된 과정, 기본법 전문, 결정법 등의 내용이 자세하고 체계적인 양식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000 Nr. 42

문서 번호 99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의 도로법 초안

1992년 4월 30일

담당자 / 기관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총리 베른트 자이테,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의장 라이너 프라흐틀

내용_

이 문서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가 소개한 도로법 초안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법안은 1974년에 제정된 동독의 도로법이 더 이상 현대적인 도로행정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법이 도입될 때까지는 동독의 도로법이 계속 적용된다.

이 법은 도로건설, 이용, 계획, 도로교통법 위반과 연방주와 연방정부의 다양한 권한과 책임 등의 중요한 문제를 모두 다루고 있다. 초안의 제안 설명을 보면 자체적인 도로법을 통해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도 연방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도로의 건설과 유지를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공공도로 건설과 관련된 법적 규정을 도입하는 것은 주의회가 담당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 주정부 관할 영토 내의 모든 공공도로를 위한 법적 규정을 통일하고자 노력했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Mecklenburg-Vorpommern, Drucksache 1/1770

문서 번호 100

브란덴부르크주 주정부의 에너지정책 기본 원칙

1992년 5월 4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작성한 에너지정책의 기본 원칙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기본 원칙의 목적은 갈탄에 전적으로 의지했던 동독의 에너지정책으로 인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에너지 활용 문제를 국가적으로 정한 틀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친환경적으로 획득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대체 에너지의 개발도 여기에 포함된다.

에너지정책의 기본 원칙은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경제구조 개선은 사회적인 측면을 배려해야만 한다. 특히 갈탄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일자리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야만 한다.

주정부는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를 위해 브란덴부르크 에너지공사를 설립할 것이다. 나아가 기초자치단체들이 에너지공급 회사를 설립할 경우 지원할 수도 있다. 가능하면 신속하게 도시가스를 지하가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갈탄생산이 가지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고려해 환경문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계속 활용하기로 한다.

전력생산에 갈탄을 이용하는 것은 이미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에, 전력생산을 위해 갈탄 탄광을 4개까지 유지한다. 이들 탄광의 회생을 위한 계획과 갈탄탄광지역을 녹지대로 전환하는 계획에 관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Brandenburg, Drucksache 1/969

문서 번호 101

튜링겐주 지방법원의 업무 영역에 관한 규정

1992년 5월 5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주 법무 장관 옌취, 튜링겐 주총리 포겔, 튜링겐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통일조약에 합의된 조항에 따라 튜링겐 주정부가 1992년 5월 5일에 도입한 지방법원의 업무 영역에 관한 규정이다.

출처_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Thüringen, 1992, Nr. 11, 25.05.1992, S. 187

문서 번호 102

브란덴부르크 재건 프로그램-4.9I장 문화

1992년 5월 7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주 학술·연구·문화부 장관 힌리히 엔델라인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주 재건 프로그램 중 문화정책에 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 12월 6일의 정부 성명에서 만프레드 슈톨페 주총리는 예술과 문화에 대한 지원은 주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브란덴부르크주는 독일에서 풍부한 문화환경을 갖고 있는 주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주정부의 문화부는 주총리의 이러한 취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화정책 목표와 중점사항을 발표했다: 시와 면 단위 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예술과 문화를 지원, 예술가 지원, 브란덴부르크에 있는 문화유산의 적극적 보호 및 유지,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공동의 고성 및 정원관리 재단의 신설, 브란덴부르크와 프라이리히트뮤젠의 역사기념물을 위한 종합적 콘셉트의 마련, 적극적인 미디어정책, 바벨스베르크의 미디어단지의 건설,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공동의 예술 아카데미 신설, 문화교류센터의 신설 및 운영, 사회문화 활동 기관의 신설, 소수자문화의 유지 및 지원, 소수자인 소르벤 문화 유지의 지원, 도서관 운영, 역사물 네트워크, 음악학교 네트워크, 박물관.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문서 번호 103

브란덴부르크주 에너지정책 기본 원칙에 관한 주의회 토론

1992년 5월 13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브란덴부르크주 경제기술부 장관 발터 히르헤,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의원 하버만, 쾨르버, 마르코프, 지베르트, 노케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 주의회가 주정부의 에너지정책 기본 원칙에 대해 토론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정부의 발터 히르헤 경제 장관은 에너지정책과 환경정책이 긴밀하게 연관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 기본 원칙은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1. 친환경적 에너지 획득 및 절약, 2. 에너지 생산의 다변화, 3. 에너지산업의 사회적 구조조정. 그는 브란덴부르크주가

2000년에 6천만 톤의 갈탄을 생산할 것이고, 갈탄은 앞으로도 브란덴부르크주의 에너지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에너지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2000년에는 현재 갈탄산업에 종사하는 40,000명 중에서 절반 정도만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주정부가 작성한 기본 원칙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기민당의 하버만 의원과 민사당의 마르코프 의원은 기본 원칙이 사회적인 구조조정을 실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확실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르코프 의원은 나아가 기본 원칙에는 연방정부가 환경오염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자민당의 지베르트 의원은 그에 대해 기본 원칙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앞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응수했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Brandenburg, Plenarprotokoll 1/46, S. 3284–3292

문서 번호 104

신연방주의 기초단체 행정구역 개혁

1992년 5월 15일

담당자 / 기관_ 독일행정지, 베르너 호페, 베른하트 스튜어

내용_
이 문서는 독일 행정지(Das Deutsche Verwaltungsblatt)에 발표된 신연방지역의 행정 체계 구축과 관련된 분석 논문이다. 신연방주의 문제와 현황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출처_ Hoppe, Werner / Stüer, Bernhard in: Deutsches Verwaltungsblatt 107 Jahrgang, Heft 10, 15.05.1992

문서 번호 105

브란덴부르크 법무부의 새로운 재건을 위한 업무 보고

1992년 5월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법무부 차관 라이너 파우펠

내용_
1992년 중반에 작성된 이 자료는 브란덴부르크 법무부 재건과정에 대한 자세한 업무진

행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 1. 인적 현황과 인원 채용의 기본 원칙, 자매주인 서독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와 기타 다른 주로부터의 지원, 2. 재판관과 검사: 인적 평가, 새로운 채용, 전문성 신장, 3. 법무원(Rechtpfleger), 집행자(Strafvollzugsbedienstete), 기타 법무 인력(sonstiges Justizpersonal), 새로운 검찰 조직, 등기소의 재통합, 업무 영역의 변경, 자발적 재판권을 가진 토지 등기소의 검사, 법원의 새로운 조직 등. 무엇보다 상기 보고서는 브란덴부르크주의 지역법원의 업무 성과, 브란덴부르크주의 항소심 및 상고 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행정법원, 재정법원 및 사회법원의 1992~1998년의 업무 성과에 대해 보고한다.

출처_ Faupel, Rainer: Der Neuaufbau der Justiz in Brandenburg. Baden-Baden 1992

문서 번호 106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도로법 초안에 대한 주의회의 심의

1992년 6월 3일

담당자 / 기관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경제 장관 콘라트-미하엘 레멘트,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의원 자이델, 게어로프, 카스너

내용_

이 문서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에서 도로법 초안을 심의한 것이다. 그때까지는 동독의 도로법이 유효했었다. 새로운 도로법을 통해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의 도로규정도 연방국도법에 부합하게 되었다. 동독의 도로규정은 낙후했을 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와 시민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기준에 반하는 것이었다. 이 법안 초안은 서독지역 연방주의 도로법을 모델로 하며, 경제 성장을 위한 조건으로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반해 주의회의 야당 소속 카스너 의원은 이 법 초안은 서독지역 연방주들의 교통정책도 제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Mecklenburg-Vorpommern, Plenarprotokoll 1/54, S. 2807-2810

문서 번호 107

주의회 총회 회의록 1/34, 43, 45 그리고 신문기사

1991년-1992년

담당자 / 기관_ 사민당, 기민당, 민사당-좌파당 연합, 자민당, 연합90, 타게스슈피겔, PNN

뉴스, 베를린 일간지 베를리너 모르겐포스트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주 헌법 초안에 관한 주의회 총회 회의록과 신문기사를 모은 것이다. 이 자료를 통해 여러 차례 열린 주의회에서 집중적이고 격렬한 논의과정을 거쳐 주헌법이 탄생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일부 내용이 독일 기본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민당은 6월 14일 주민투표에 회부된 헌법을 거부한 반면, 다른 정당들은 모든 정당이 합의하에 제안된 초안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였다. 최종적으로 민사당 원내 교섭 단체 13명의 의원이 3차 회의에서 동의하였다. 주헌법에 대한 논쟁은 합의 민주주의의 성격을 여실히 보여 준다.

출처_ Landtag Brandenburg,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e 1/ 34 vom 19. Dezember 1991, 1/ 43 vom 25. März 1992 und 1/ 45 vom 14. April 1992; sowie Landtag Brandenburg Pressstelle: Zusammenstellung vom 04. März 1992 (Zum internen Gebrauch).

문서 번호 108

교사 자격시험의 상호 인정에 관한 신연방주 간의 협정

1992년 6월 26일

담당자 / 기관_ 구동독지역의 교육부 장관 및 교육부 위원

내용_

이 문서는 통일 이후 신연방주의 교육부 장관들이 교사 자격시험을 상호 인정하기로 합의한 협정문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연방주 및 베를린에서 1990년 10월 3일 이전에 교사교육을 받기 시작하고, 개정된 주법에 따라 졸업 시험을 치른 경우 1990년 10월 5일에 발효된 '교사 자격증 시험과 교사 자격의 상호 인정'에 관한 협약에 정한 규정에 따라 1차 및 2차 교사 자격증 시험을 그대로 인정한다. 졸업 시험의 형식적인 명칭 개정된 주법의 실질적인 규정이 최종적인 결정을 위한 원칙이 된다.
각 신연방주에서 제정한 교사 양성 규정에 관한 개요는 이 문서의 부록에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대학교 및 종합대학교는 이미 1991년 여름 학기부터 서독지역 대학의 학업규정 및 체계적인 학교제도에 적응함으로써 서독지역의 구연방주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시작하였다.

출처_ Beschluss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om 26.96.1992
KMK Erg.- Lfg. 75 September 1993

문서 번호 109

연방교통계획에서 작센주 교통망 향상을 위한 주의회 제안

1992년 7월 1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 주의회, 작센-안할트 주의회 기민당 원내 대표 헤르베르트 골리아쉬, 작센-안할트주 교통부 장관 귄터 크라우제, 작센-안할트 주의회 의장 에리히 일트겐, 작센-안할트주 경제노동부 장관 칼 요젭 쇼머

내용_

이 문서는 작센 주의회의 기민당이 연방교통계획에서 작센의 교통망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한 제안과 그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제안에서 중요한 것은 작센주의 철도망 개선과 수요계획에서 아직 충분히 배려되지 못한 조치들을 취하기 위해 국도와 관련된 재정지원금을 73억 DM으로 증대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여객교통과 화물교통이 작센주의 철도와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언급되었다. 동시에 기존의 계획에는 유럽의 중심에 있는 작센이 교통망에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한 입장 표명에서 작센의 주정부는 연방교통계획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철도, 전철, 공항, 수로 화물수송센터 등과 관련해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할 개별적인 사업에 관해 설명했다. 도로건설에 관한 설명도 첨부되었다. 73억 DM의 재원의 정확한 사용처에 관해 설명하였다. 여기에는 독일통일 프로젝트와 고속도로와 국도건설이 포함되었다. 16억 DM의 재정부족으로 인해 다른 영역의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작센주 도로행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1. 연방교통계획에서 신연방주를 위한 비율 확대
2. 작센주를 위한 배분율 증대
3. 동부재건 프로그램을 1992년 이후에도 지속
4. 지역의 인프라 구조 조치를 위해 고속도로 확장사업의 보류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Sachsen, Drucksache 1/2010

문서 번호 110

브란덴부르크 재건 프로그램-목차

1992년 7월 1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총리실 및 모든 부서

내용_

500페이지에 달하는 이 프로그램은 2년째 집권하고 있는 주정부가 브란덴부르크주를 통합된 유럽의 미래를 주도해 가는 지역의 하나로 개발하는 데 필요한 초석을 쌓았다는 것을 매우 상세하고 광범위하게 보여 준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주정부가 주의 미래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기본법 가치에 부합하는 사회적 법치국가 건설을 보장하고 그에 적합한 기관을 신설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총리의 머리말과 주정부의 결정사항에 대한 서술에 이어 1장에서는 브란덴부르크주의 초기 상황에 대한 총괄적 평가와 함께 효율적 재건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회간접자본, 법적, 사회적 취약점에 대한 본질적인 묘사가 가감 없이 제시된다. 2장에서는 주정부 정책의 일반적인 목표와 그것의 제도적 토대에 대해 다루어진다. 이어 3장에서는 지방계획과 지역개발계획이 제시된다. 이러한 브란덴부르크의 주 개발 프로그램과 더불어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공동의 개발구상에 대해서 묘사된다. 4장은 재건구상의 핵심을 다룬다. 여기에서는 9개의 정책 분야에 의거해 브란덴부르크주가 달성한 재건 상황에 대한 내용이 서술된다. 이러한 목표가 복잡하고 다층적이며 장기적인 과정이긴 하지만, 브란덴부르크주의 정치적, 경제적 환경의 근원적인 변화를 위한 각 관련 부서의 기본적 구상도 함께 다루어진다. 또한 미래에 사회 복지국가의 형태로 구체화될 민주적 목표와 함께 법률적, 사회적 규정의 필요성(Regelungsbedarf)이 논의된다. 이와 같은 목표를 가진 재건을 위해서는 역시 적절한 기관 및 행정구조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5장에서는 이러한 행정 콘셉트와 효과적인 법적 프로그램에 대해 다뤄진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브란덴부르크주 재건을 위한 재정 콘셉트가 다루어진다.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문서 번호 111

브란덴부르크 재건 프로그램-1장 브란덴부르크주의 현황

1992년 7월 1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총리실 및 모든 부서

내용_

1990년 10월 14일 선출되어 11월 1일 공식 업무를 시작한 주의회와 주정부는 큰 책임을 떠맡게 되었다. 연방의 대규모 지원은 첫 자유선거에 의해 선출된 구동독-정부가 재건업무에 착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화폐 및 경제통합(die Währungs- und Wirtschaftseinheit)은 그러한 통합이 가져올 상품 및 재화 공급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수혜를 누릴 수 있게 하였다. 동독의 서독 체제 편입(Beitritt)과 통일조약(Einigungsvertrag)으로 인해 브란덴부르크주에 단일한 법적 체계와 연방공화국의 기본법 질서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조건

이 브란덴부르크주에 하나의 법치주의적 사법기관과 행정 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상당히 장기적인 과제에 착수한다는 것과 남용되어 악화된 국토를 재개발하고 건설하는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총괄적인 상황 평가 보고는 주의 개발부진 상황과 장애요소를 26개 분야로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는데 개발을 통해 만회해야 하는 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문서 번호 112

브란덴부르크 재건 프로그램-2장 주 정책의 일반적 목표와 제도적 토대

1992년 7월 1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총리실 및 모든 부서

내용_

일반적인 내용이 제시되는 본 장은 구동독 재건 프로그램의 개요를 설명하는데 6개의 핵심적인 중점 요소를 통해 전체 주 정책에 대한 개략적 설명을 제시한다. 이러한 부분은 사안에 따라 하나의 관할 부서를 넘어서는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을 경우, 하나의 관할 부서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일반적 내용은 각 분야 프로그램 내용으로 구성된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발전적 논의를 위해 적절한 내용으로 맞춰진다. 이러한 내용은 각 부서의 내용을 조정하는 단계에서 추가로 논의될 수 있다. 첫 단계부터 주의 정책 조치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상적 활동과 병행되는 하나의 콘셉트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했다. 그것의 목표는 4장에서 제시된 개별적 활동에서 자세히 세분화되어 제시되었다.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문서 번호 113

브란덴부르크 재건 프로그램-3장 주 개발과 지역개발계획(Raumordnung)

1992년 7월 1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주 환경부 장관 마티아스 플라첵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주의 지역개발계획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지역개발과 관련된 연방법을 통해 신연방주의 개발계획을 세우기 위한 기본적인 틀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 특히 건축공사 감리(Bauleitung), 소위 분야별 계획(교통건설, 자연과 농업 보호 그리고 환경 보호와 같은) 그리고 지역개발계획(Raumordnung)과 국토계획(Landesplanung)에 대한 원칙법(Rahmenrecht)이 그것이다. 상세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연방법들로 인해 주민들이 이제 겨우 극복한 줄 알았던 중앙 집중적 계획경제 체제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염려는 기우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주정부가 추진하는 개발 프로그램이 요약 설명되었다.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문서 번호 114

브란덴부르크 재건 프로그램-4장 노동

1992년 7월 1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주 노동·사회·건강·여성부 장관 레기네 힐데브란트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작성한 재건 프로그램에 관한 보고서의 일부로 노동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주정부의 노동/사회/건강/여성부(MASFG)는 향후 주의 경제 및 체제정책과 연계된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일자리 안정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향을 주려고 한다. 또한 기업 유치를 위한 환경을 개선하고, 각 개인이 새롭게 변화된 노동환경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정부는 일련의 노동정책적 조치를 계획하였다: 즉각 시행 프로그램(Sofortprogramm), 고용창출을 위한 주 프로그램(ABM-Landesprogramm), ABM을 위한 유럽사회기금 프로그램(ESFProgramm für ABM), 실업자 프로젝트, 문제그룹(Problemegruppen)을 위한 프로그램,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체제 및 노동 관련 주의 에이전시(LASA). 주정부는 또한 공동 과제로 실행되고 있는 '구동독 재건 프로젝트(Aufbau Ost)' 차원에서 체제 지원 프로그램으로 '실업 대신 노동(Arbeit statt Arbeitslosigkeit)'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향후 3년간 50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적으로 창출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또한 브란덴부르크는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기적 프로그램과 노동 보호 및 안전기술청의 신설(Behörden für Arbeitsschutz und Sicherheitstechnik)을 계획하였다.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문서 번호 115

브란덴부르크 재건 프로그램-4.2장 경제

1992년 7월 1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주 경제기술부 장관 발터 히르헤

내용_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작성한 재건 프로그램에 관한 보고서의 일부로 경제 재건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과정에서 1990년 7월 1일 화폐, 경제, 사회통합 조약이 효력을 발휘한 후 구동독에 매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 발생하였다. 40년간 지속된 계획경제 체제에 의하여 파괴되었던 국민경제가 어떠한 보호조치도 없이 하루아침에 국제적인 경쟁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그 결과는 잘 알려져 있다: 해외뿐 아니라 국내 매출의 급격한 감소, 생산중단, 일자리의 대규모 상실. 체제전환 과정은 여러 사회 분야에서 많은 문제를 동반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은 경제적 문제와는 견줄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브란덴부르크주의 경제/중기업/기술부는 1990년 11월 말 업무를 시작하였다. 대규모 붕괴를 최소화하고 퇴보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일반적 목표는 경제를 역동적인 성장의 길로 이동시키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가능한 한 많은 경쟁 능력을 키우고, 궁극적으로 미래를 보장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경제 분야와 관련된 모든 정책 결정권자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였다. 경제부의 역할은 이를 위한 적절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브란덴부르크와 다른 신연방주들은 체제변화와 생산 증가에 대한 압박에 놓여 있었고 여전히 지금도 그러한 압박 가운데 있다. 이러한 압박은 구연방(서독)이 수십 년에 걸쳐 이룬 것을 빠른 시간적 템포를 통해 신속히 만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브란덴부르크와 구동독의 경제정책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였다. 그들이 직면한 상황은 1948년 구서독과 연방이 극복해야 했던 상황과는 제한적으로만 비교가 가능한 것이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다음과 같다. 지난 2년간 구동독에서는 급속하게 전체 고용 규모가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경제 분야의 변혁이 이뤄졌다; 1차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감소 규모는 1988년 이후 브란덴부르크에서 대략 50만 명 수준으로,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브란덴부르크주가 설립된 현재, 브란덴부르크의 경제는 4개의 핵심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효율적인 기업구조, 퇴보하고 있는 전문 분야 구조, 비균형적 지역 구조, 낙후된 사회간접자본 상황이 그러한 네 가지 문제이다. 이는 곧 브란덴부르크주가 사회적으로 고사해 가는 체제전환 과정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중기업/기술부는 즉각적 및 중장기적 경제 정책 조치를 위한 기본 콘셉트를 구상하였다. 그러한 조치들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일자리를 원하는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고 창출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일반적 목표들에 따라 경제정책을 실행하는 영역에서 다양한 중점 사항이 다음과 같은 콘셉트로 제시되었다. 그것은 지역적 체제 콘셉트, 기술정책적 프로그램, 경제친화적 기술연구정책, 중기업정책, 에너지 산업 프로그램, 석탄, 수출경

제, 전환, 신탁관리청, 소유 규정이다.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문서 번호 116

브란덴부르크 재건 프로그램-4.3장 농업경제

1992년 7월 1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주 농림식품부 장관 에드빈 치머만

내용_

브란덴부르크의 전체 생산인구 가운데 25%가 통일 이전에 38개의 면 단위 가운데 16개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였다. 2년이 지난 지금의 변화된 상황에서 강력한 체제 적응 정책이 시작되었다:

- 1989년 말부터 1992년 3월까지 농업에 종사하는 인원의 규모가 180,000명으로 줄어들었다.
- 1989년 말 이후부터 가축보유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소의 경우에는 이전의 62%, 젖소의 경우는 이전의 58%, 돼지의 경우에는 38%로 줄어들었다.
- 1989년 말, 브란덴부르크에서 140만 헥타르(주 면적의 49.3%)가 농업적으로 이용되었다. 토지이용 체제가 통일 이후 급격히 변화되었다. 1991/1992년 사이 대략 14만 헥타르의 면적(13.9%)에 대한 사용이 중단되었고 10만 헥타르의 산림지는 더 이상 이용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브란덴부르크주의 농업정책적 책임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었는데 왜냐하면

- 시장 및 가격정책이 유럽공동체(EG)의 업무 영역 범위에 있었고
- 1992년 통과된 유럽공동체 농업개혁(EG-Agrarreform)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과 관련된 직접지급금(Direktzahlungen)의 큰 규모가 유럽공동체의 업무 범위에 있었고 유럽공동체의 재정을 통해 보장되었다.
- 공동의 프로젝트 '농업 체제 및 해변 보호 체제 개선(Verbesserung der Agrarstruktur und des Küstenschutzes)'을 통한 전환과정 조치가 완료된 후 체제정책적 조치가 연방/지방 공동의 지원정책 조치에 따라 60대 40의 재정 비율로 추진되어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주정부는 소위 '브란덴부르크의 길' 정책 범위에서 농업 관련 재건정책을 계획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농업, 식량경제, 삼림경제의 범위에서 요구되는 시스템 및 체제변화를 8개의 중점사항으로 정리하고 있다: 법적 형태의 면에서 어떠한 불리함도 없는 다양한 기업 체제에 대한 지원, 창업과 관련하여 브란덴부르크 농업인을 위한 기회균등 원칙을 극대화하여 보장, 농촌지역의 자연 자원을 입지 조건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토착 경제 생산품의 적극적 가공 및 시장판매화를 위한 체제 마련, 농촌지역의 기능을 계속 유지, 삼림경제, 식품감시/수의학 분야, 농업 및 식품 분야 연구.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은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한 분야로 분류되며 유럽공동체의 농업개혁 프로그램의 실행을 강조한다. 이러한 농업 관련 정책은 또한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한 윤곽을 제시하고, 가장 중요한 조치들을 언급하고 그것을 위한 재정에 대해 설명한다.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문서 번호 117

브란덴부르크 재건 프로그램-4.4I장 자연 보호

1992년 7월 1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주 환경부 장관 마티아스 플라첵

내용_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작성한 재건 프로그램에 관한 보고서의 일부로 환경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브란덴부르크의 자연 상황은 두 가지의 극단적 상태로 특징지어진다. 우선 자연물질, 식물, 동물의 심각한 위기로 인한 커다란 물리적 환경의 문제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여전히 풍부한 자연 및 자연 친화적 생태 체제와 보호 가치가 높은 자연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자원은 전체 유럽 차원에서도 매우 큰 중요성을 갖고 있다. 브란덴부르크주에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자연적, 자연 친화적 생태시스템과 생태 공간은 큰 자연 보호 가치를 갖고 있다. 여기에 살고 있는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은 자연 보호 상황을 개선해야 하는 유리한 기본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일조약의 결정에 따라 브란덴부르크주는 늦어도 1992년 7월 30일까지 연방자연법의 실행에 필요한 법적 토대를 갖추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의무조항에 따라 브란덴부르크주는 자연 보호 및 산림관리를 위한 브란덴부르크법을 통과시켰고, 1992년 6월 30일 법이 발효되었다. 이러한 법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 내에서 자연환경을 소중히 하고 건강하게 하는 보편적 관심을 경제 발전, 개선된 인프라 체제 구축이라는 부분, 더 나아가 도시개발 영역의 확장과도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연 보호와 자연환경 관리라는 국가의 과제에 대해 주목하기 위해 브란덴부르크주는 자연보호관리청(Naturschutzverwaltung)을 새롭게 조직하였다. 그리고 자연 보호, 환경관리, 주의 '조류 보호 분과(Riezer See)'와 자연보호국(Naturschutzstationen)을 새롭게 신설하였다. 이러한 조치들

은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브란덴부르크 자연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청(Landesanstalt für Großschutzgebiete)을 도입하는 것이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 257개의 프로젝트가 지원되었다. 이를 위해 3천 5백 80만 마르크가 면 단위 자치지역, 면 단위 지역 연합체, 공공 단체, 연합체,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금으로 제공되었다. 이러한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자연 및 환경 조건과 브란덴부르크의 생활 조건이 매우 분명하게 개선되었다. 대규모 면적을 다시 자연화하는 조치, 자연경관 보호 조치, 산림자원 요소(마을의 연못, 우물, 울타리, 오래된 길)를 관리하거나 복원하는 조치, 환경교육 프로젝트, 보호지역에서의 휴양 및 여행을 용이하게 하는 프로젝트 등이 지원의 핵심이 되었다.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문서 번호 118

브란덴부르크 재건 프로그램-4.42장 수자원경제

1992년 7월 1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주 환경부 장관 마티아스 플라첵

내용_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작성한 재건 프로그램에 관한 보고서의 일부로 수자원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 전체에서 중앙관리식 상수도 공급 체계의 보급률은 1991년 당시 92% 수준이었다. 대도시들의 경우에는 100%의 거주자가 중앙관리식 상수도 체계에 연결되어 있는 반면, 몇몇 지방의 경우에는 60% 아래의 수준을 보였다. 여타 운영자에 의해 가동 중인 520개의 상수도 시설이 있었고 그 가운데 316개는 물 공급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시설을 통해 10만여 명의 브란덴부르크 주민이 수돗물을 공급받았다. 258개의 공급 체계에서 식수로서 허용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는 수준의 오염물질이 발견되었다. 특히 문제는 박테리아 오염 기준의 초과, 높은 철 성분, 망간 성분 함유, 초산염 및 아초산염, 암모니아 수치 초과 등에 있다. 다른 신연방주와 동일하게 브란덴부르크주는 이전에 중앙에서 관리되었던 인민 소유의 상수도 및 하수도 기업(WAB)을 지방 운영으로 전환하고 조직을 단순하게 하는 과제를 수행하여야 했다.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문서 번호 119

브란덴부르크 재건 프로그램-4.43장 쓰레기 처리, 독성 쓰레기, 토양 보호

1992년 7월 1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주 환경부 장관 마티아스 플라첵

내용_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작성한 재건 프로그램에 관한 보고서의 일부로 쓰레기 처리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택단지 쓰레기 처리 분야에서 구동독에서 발생하는 양은 서독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원자재를 부주의하게 관리하는 것, 큰 포장재료 쓰레기를 부주의하게 관리하는 것에 있었다. 구동독의 외화 부족은 반대로 높은 수준의 2차 자원 경제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것은 물론 새로운 조건에서는 매우 비경제적인 것이다. 동독에서는 서독에서 1970년대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던 쓰레기 처리 시설, 특히 쓰레기 매립지역을 신설하는 것을 무시하였다. 이러한 시설은 환경오염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우 필요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브란덴부르크는 쓰레기 처리, 독성 쓰레기, 토양 보호의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에 중점을 두었다: 토양을 덮는 방식의 매립 프로그램, 폐쇄 프로그램, 개조 및 단련 프로그램, 주택단지 쓰레기 처리를 위한 목적단체의 신설, 쓰레기 소각에 대한 엄격한 관리, 쓰레기 배출 억제, 베를린 주택단지 쓰레기 유입의 억제, 특별 쓰레기 처리 회사 설립, 기업적인 쓰레기 관리 콘셉트의 수립 및 시행.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문서 번호 120

브란덴부르크 재건 프로그램-4.44장 대기 보호

1992년 7월 1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주 환경부 장관 마티아스 플라첵

내용_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작성한 재건 프로그램에 관한 보고서의 일부로 대기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전 정권에서는 경제적 생산성뿐 아니라 에너지 생산성도 참혹할 정도로 낮았다. 이러한 엄청난 에너지 소비는 거대한 환경오염을 유발시켰다”라고 만프레드 슈톨페 총리는 1990년 12월 6일의 정부 성명에서 언급하였다. 1989년의 대규모 오염물질 수치 비교 결과가 보여

주는 것은, 동독의 대기오염은 1제곱킬로미터당 이산화황과 먼지의 수준이 10~12로 나타나 같은 시기의 서독보다 높았다. 브란덴부르크주의 경우 1989/1990년에 85~90%의 대기오염 물질이 이전의 코트부스에 있었던 산업시설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거기에는 발전소, 석탄 채취 광산, 광업(Kokereien), 연탄공장, 난방공장이 밀집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브란덴부르크 주정부는 대기보호정책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에 중점을 두었다: 에너지 절약, 이성적인 에너지 소비, 전력생산을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의 단계적 축소를 통해 안전하고 환경을 해치지 않는 에너지정책 추진. 이러한 정책에 해당하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주택단지 관련 조치, 지역 관련 조치, 에너지 관련 조치, 생산 관련 조치.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문서 번호 121

브란덴부르크 재건 프로그램-4.5장 건설 및 주택

1992년 7월 1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주 주택건설교통부 장관 요헨 볼프

내용_

이 문서는 주거정책에 관한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의 기본방침을 설명하는 것이다. 주정부는 광범위한 주택단지 및 도시개발 프로그램을 입안하였다. 그것을 통해 수년 내에 브란덴부르크를 생활할만한 가치가 있는 매력적인 연방주로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브란덴부르크의 모든 지역에서 균등한 생활 수준을 창조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브란덴부르크는 도시개발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 조치에 중점을 두었다: 도시재개발 영역에서 도시계획상의 보수조치, 도시계획상의 기념물 보호, 도시계획상의 모델 수립, 개발 조치, 포츠담의 수도화 정책. 주택 분야에서는 현대화, 좋은 상태 유지, 주택건설 지원을 위한 즉각적이고 중기적인 프로그램 추진이 중점 사항으로 고려되었다.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문서 번호 122

브란덴부르크 재건 프로그램-4.6장 교통

1992년 7월 1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주 주택건설교통부 장관 요헨 볼프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작성한 재건 프로그램에 관한 보고서의 일부로 교통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통정책적 개발 조치에서는 사회적이고 환경친화적 교통정책이 16개의 분야에서 다루어졌다. 그러한 정책의 기본 목표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교통량 억제, 교통 연계, 교통로 확장.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문서 번호 123

브란덴부르크 재건 프로그램-4.7장 교육 부문

1992년 7월 1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주 교육·청소년·스포츠부 장관 마리아네 비어틀러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발표한 브란덴부르크 재건 프로그램 중에서 교육과 관련된 주정부의 기본 방향을 발췌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새로운 학교구조의 구축 사업에는 유럽의 교육정책 개발 경향과 연계, 종합학교(Gesamtschulen)를 도입, 인문계의 고등반(Oberstufen)의 신설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문계 고등학교와 직업학교의 신설은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며 그것은 지역의 학교발전 정책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대학입학 자격시험(아비투어) 준비과정을 포함하는 학교교육과 직업교육 체계의 발전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학교를 연계하는 직업교육 체제가 구축해야만 한다. 이러한 직업교육 체제는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 체제하에서 학교가 경제적 진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지식과 능력의 개발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Lebenslanges Lernen)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기술세계에서 계속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전제조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교육은 경제적 성공과 같이 개인의 발전 및 직업적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학교 내부 영역에서 개별 아동 지원은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휴머니

즘에 입각한 아동을 위한 좋은 학교 형성은 학교생활의 포괄적인 민주화의 범위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학교는 부모와 교육자가 참여하고 적극적인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 밖 보호는 우리 주에 있는 여성들에게 기본법에 의거하여 남녀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능성을 열어 주는 전제조건 가운데 하나이다.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문서 번호 124

브란덴부르크 재건 프로그램-4.72장 학술과 연구

1992년 7월 1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주 학술·연구·문화부 장관 힌리히 엔델라인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발표한 정부정책의 기본입장에 관한 설명 중에서 학술과 연구 분야에 관한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정부는 작은 규모의 거점으로 이루어진 다수의 지역에 고등교육기관 관련 시설의 집중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지역화된 고등교육기관 발전 방안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어쩔 수 없이 베를린과 베를린 주변의 지역을 강화시키고 브란덴부르크주의 지역들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지역화 전략과 학술자문회의(Wissenschaftsrat)가 제출한 권고안에 따라,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의 학술연구문화부는 주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브란덴부르크 고등교육기관법에 명시된 프랑크푸르트-오더대학, 코트부스기술대학, 포츠담대학을 설립하였다. 이 법에 따라 브란덴부르크, 에버스발데(Eberswalde), 라우지츠(Lausitz, 코트부스/젠프텐베르크 소재), 포츠담, 빌다우(Wildau) 전문대학교들도 설립하였다. 포츠담-바벨스베르크에 있는 영화 및 미디어 전문대학교 또한 브란덴부르크 고등교육기관법에 의거하여 새로운 구조를 갖추게 된다. 대학 외부의 연구기관을 재건하려는 계획과 연관하여 교육, 연구, 개발 기관의 긴밀한 연계를 추구하는 네트워크가 생겨났다. 이를 통하여 브란덴부르크주의 교육 인프라가 강력한 면모를 갖추었고, 각 지역의 사회적 발달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유럽 및 동유럽을 연결하는 브란덴부르크의 연결기능(Brückenfunktion)이 중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문서 번호 125

브란덴부르크 연방주 재건 프로그램-4.8장 보건 분야

1992년 7월 1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주 노동·사회·건강·여성부 장관 레기네 힐데브란트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작성한 보고서이다. 주정부는 정부 성명에서 그들의 보건정책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서 보건정책의 중점 사항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a. 건축 측면에서 의료 기술의 최신화 추구

b. 건강 분야 종사자의 전문성 및 동기의 극대화, 상이한 전공 분야 의사들 사이의 긴밀한 협력

c. 건강한 생활 조건의 지원

d. 임산부, 아동, 성인에 대해 사전 보호 조치를 법적으로 보장

e. 유능한 실력을 갖춘 비상 의료 지원 제공을 보장

f. 유전성 질병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보장

g. 실행 중인 심리보건법의 보장

h. 종합병원의 건축적 보수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문서 번호 126

브란덴부르크 재건 프로그램-4.82장 사회

1992년 7월 1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주 노동·사회·건강·여성부 장관 레기네 힐데브란트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 방침을 설명한 정부 성명서이다. 이 서문에서 주정부는 고령자, 은퇴자,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자에 대한 돌봄 체계를 새롭게 구성하고, 고령자가 적절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주정부는 다음과 같은 정책 조치 및 프로그램을 입안하였다:

a. 고령자정책: 적합한 가격의 주거공간을 창출, 활발한 투자를 통해 고령자 양로원을 신설, 보살핌이 필요한 자와 그들의 가족과 이웃, 친구를 전체 지역이 책임지는 탈중앙적 서비스 제공, 접근성과 이용성이 뛰어난 공공 생활 기관과 의료지원 기관 설치

b. 비정주자정책: 전체 지역을 담당하는 공공지원 기관 신설
c. 장애인정책: 장애발생 미연 방지, 장애상황 악화 방지, 장애 결과의 최소화; 종합적인 보호, 장애인의 사회적 삶 적극 참여 지원, 독립적 삶의 지원
d. 난민 신청자와 난민: 난민에 대한 편견 해소, 난민에 대한 불안감 해소, 난민 신청자와 난민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주거 및 보호의 제공
e. 외국인 정책: 외국인 거주의 경제 및 사회생활 참여를 지원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문서 번호 127

브란덴부르크 재건 프로그램-4.83장 여성

1992년 7월 1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주 노동·사회·건강·여성부 장관 레기네 힐데브란트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작성한 재건 프로그램에 관한 보고서의 일부로 여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엄마와 아빠가 직업생활과 가정생활, 자녀양육을 적절히 잘 조화할 수 있는 여건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추진하는 경제지원을 위한 조치들은 그러한 방향을 지향하고 있으며 또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이 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정부는 1990년 12월 6일의 정부 성명에서 여성정책의 핵심 목적과 주된 전략을 설명하였다. 다음과 같은 정책적 조치를 통해 주정부 부처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평균 이상으로 높은 여성 실업률 해소, 노동시장에서 구직 기회를 개선; 여성의 직업적 재능 및 전문성 지원; 사회적 인프라 체제의 구축, 특히 아동보육기관, 종일학교의 확대; 여성지원 기관(여성의 집) 증설, 여성센터, 임산부 상담센터의 증설.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문서 번호 128

브란덴부르크 재건 프로그램-5장 정부와 행정

1992년 7월 1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주 내무 장관 알빈 칠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작성한 재건 프로그램에 관한 보고서의 일부로 정부 구조와 행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 10월 독일통일 이후 브란덴부르크 정부와 행정은 행정조직 체계의 면에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새로운 행정조직 체계는 두 가지 중요한 방향을 지향하였다: 기본법 83조에 명시되어 있는, 각 주가 추구해야 할 의무인 연방주의적 행정 체제 구축 지원과 기본법 28조에 있는 기본법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 자치행정의 보장이 그러한 두 가지 방향이다. 이와 함께 브란덴부르크가 갖고 있는 농촌적 체제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넓은 면적과 낮은 인구밀도, 작은 규모의 면이 흩어져 있는 지역 구조와 다양한 도시들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도시의 중심에는 독일의 수도가 위치하고 있는 상황. 브란덴부르크 행정 체제의 새로운 구축은 두 가지 방향으로 추구되었다: a. 연방주로서 필요한 관공서 체계를 가능한 한 빨리 입안하고 실행해야 한다. b. 동시에 행정적 업무를 즉시 실행해야 한다. 이러한 업무가 브란덴부르크의 주민들이 시급히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주정부는 행정 체계 구축정책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은 것에 중점을 두었다: a. 2단계의 주 행정 체제 구축 b. 주의 하위 행정부서로서 광역시(Kreis) 체계 신설 c. 주 상위관청의 신설 d. 주 하위기관으로서 주회의(Landrat) 신설 e. 지역적 조정 및 연합

지방 자치행정의 범위에서 다음을 추구하였다: a. 지방자치단체 규칙(Amtverfassung)의 제정 b. 광역 단위 구역개혁 c. 지방차지단체 규정의 재정리 d. 지방 개발정책 및 건설계획 수립.

공공안정 분야에서는 다음을 추구하였다: a. 경찰: 경찰 직무에 대한 법적 토대의 재규정. 경찰을 위한 조직법적 규정의 재규정. 연방법의 편찬 내용의 이용, 특히 형사소송법(StPO). 이를 위해 경찰직무법 및 기본보호법의 경찰위험방지법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요구되었다: 기본법수호청의 직원에 대한 적절한 양성 및 계속 교육; 새로운 기본법을 위한 의회 자문 요구.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문서 번호 129

신연방주 방송 규정-독과점위원회 1990/1991년도 9차 평가서(발췌)

1992년 7월 13일

담당자 / 기관_ 독과점위원회, 연방정부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부가 연방의회에 제출한 독과점위원회 보고서 중 신연방주의 방송 규정을 다루고 있는 제5장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조약 36조에 따라 구동독지역에서 기존 방송사의 행정 업무는 방송 담당 특임관과 방송이사회가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특임관과 이사회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신연방주 방송의 기본 구조와 규정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독일연방주의 원칙에 따르면 지상파 주파수와 같은 송신망과 관련된 것은 연방주가 관리·감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연방지역에서는 주 단위의 방송구조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송신망을 제3자에게 배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다른 방송사가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었다. 통일조약에 따르면 신연방주들이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이중 체계를 도입해야만 하는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연방주들의 방송 규정을 보면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모두 그런 의무조항을 도입하였다. 라디오방송의 재편과 관련하여 다양한 모델이 논의되었다. 1991년 7월 4/5일에 연방주 총리들은 일단은 RIAS 1, DLF와 동베를린 방송 DS-Kultur를 통합하여 ARD와 ZDF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경우 1990년 12월부터 이미 신연방지역에서 ARD와 ZDF의 시청이 가능해졌고, 새로이 도입된 DFF방송도 시청할 수 있다. 신연방주에 민영방송이 아직 설립되지 못했지만 위성 안테나를 통해 그리고 서독의 송신국을 통해 신연방지역에서도 서독지역의 민영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고, 이들은 이미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라디오 프로그램의 경우 공영방송이 확고하게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와 관련하여 라디오 주파수 배분을 통해 제약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출처_ Parlaments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12. Wahlperiode, Drucksache 12/3031

문서 번호 130 법무부의 재편과 브란덴부르크주에 계속 위치하고 있는 법원의 소재지에 대한 구상

날짜 미상–1992년 7, 8월경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법무부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주 법무부가 작성한 것으로 법원 소재지에 대한 계획안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법원 체계와 관련된 법원기본법(GVG)에 부합하는 법원 체계를 준비하기 위하여 지방법원(Kreisgerichte)과 행정법원(Ämtergerichte)의 수가 축소되어야 한다. 법무부는 1993년 1월 1일부터 행정재판권 및 재정재판권의 독립성 확보를 보장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으며 1994년부터 재판권의 재체계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에 소재하는 법원(주고등법원, 주고등행정법원, 행정법원 4개의 지방법원, 4개의 행정법원)의 위치에 대한 결정은 다음과 같은 준거에 부합하여야 한다: 시민에 근접해 있어야 하는 시민 근접성, 주의 개발정책적 체제 및 지역정책적 관점에서 적절한 주변 환경을 갖고 있는가의 여부.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600 Nr. 170

문서 번호 131

연방정부와 베를린시 정부 간 협력 조약(수도조약)

1992년 8월 25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베를린시 정부

내용_

이 문서는 일명 수도조약으로 불리는 것으로 베를린을 독일연방공화국의 수도로 만들기 위해 연방정부와 베를린시 정부 간에 체결된 조약이다. 그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 파트너의 협력

- 긴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협력
- 수도 기능을 갖춘 지역의 개발, 헌법기관과 관청, 주거시설, 대사관, 인프라와 문화 교육시설 그리고 상호적인 시설물의 이용 허용

제2조: 공동위원회

- 상근 대표와 회원으로 이루어지는 상임위원회 구성
- 의결사항은 합의를 통해 도출된다.
- 자체적인 회칙을 갖춘 상임위원회와 사무국

제3조: 브란덴부르크주와의 협력

- 브란덴부르크주와의 협력에 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회칙을 통해 명시한다.

출처_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s Landes Berlin

문서 번호 132

브란덴부르크 재건 프로그램-6장 재정

1992년 8월 25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주 재무 장관 클라우스-디터 퀴바허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작성한 재건 프로그램에 관한 보고서의 일부로 재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신연방의 재건을 위한 재정 콘셉트를 다음과 같은 중점사항으로 전달한다: a. 면 단위 지역을 포함한 신연방의 재정적 상황과 예상되는 1996년까지의 상황, b. 부채의 상황, c. 독일 재정규정의 재규정화의 필요성, d. 재정원칙 재규정화에 대한 요구, e. 신연방의 요구에 대한 수탁자, f. 브란덴부르크 재건을 위한 재정 충당 방안, g. 예산 위기 상황의 극복 및 완화를 위한 연방주 자치단체의 의무, h. 생활 수준을 균등하게 해야 하는 요구. 이에 덧붙여 7개의 구성을 갖고 있다. 거기에는 공공 영역의 부채 상황, 1995년까지 발생 가능한 이자 지출분, 면 단위 지역을 포함한 신연방의 재정 상황 분석, 1991~1996년까지의 재정 상황 예상 추이, '독일통일기금'의 전개 과정, 독일통일을 위한 재정 충당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포함되어 있다.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문서 번호 133

작센주 문화기반 구조 현황 및 예술가들에 관한 질의-주정부의 답변

1992년 9월 17일

담당자 / 기관_ 작센 주의회 사민당, 작센 주정부

내용_

이 문서는 작센 주의회 사민당이 주정부의 문화정책 기본입장에 관해 질의한 것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을 포함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민당은 작센주의 문화적 기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주정부가 취한 조치와 재정문제에 관해 질의하였다. 주정부가 제출한 문화정책의 기본입장은 재무부와 협의되지 않는 것으로 단순히 주정부가 생각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일 뿐이었으며, 문화재단은 여전히 설립되지 않았고 문화 부분에서 많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에 대해 주정부는 작센주는 동독이 붕괴된 후 동독지역에 있었던 문화시설의 60%를 넘겨받았다. 주정부는 주헌법에 명시된 것에 따라 문화, 예술, 학문 및 스포츠 진흥을 위한 책

임이 있고 모든 주민들에게 그를 위한 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통일조약에는 문화가 분단 시기에 동서독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독일 민족의 단일성을 지속적으로 인지시켜 주는 기반이었다고 명시되어 있다. 나아가 연방정부는 신연방지역의 문화 기반의 과도기 재정을 위해 문화재 보호, 문화기반 진흥, 문화시설 보존 등의 특별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원만으로는 문화 영역에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의 지원은 점차 감소되어서 1993년 12월 31일 자로 지원이 종료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예술극장, 박물관의 폐관, 오케스트라의 해체 등 문화적 서비스가 대폭 감축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1991~1992년의 주정부 예산에서 문화정책을 위한 지출과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표를 통해 설명되었다.
작센 주정부는 연방정부가 문화정책을 위한 과도기 재정 지원을 삭감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 그것은 통일조약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현재 작센 주정부는 연방정부가 과도기 재정 지원을 지속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를 위해 문화시설의 조직 구조와 성과 구조에 대한 검토와 현황 조사를 실행했다. 그를 통해 얻은 결론은 주정부가 제대로된 문화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적어도 1992년 이후 최소한 2년 동안은 1992년과 동일한 수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은 주정부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미래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약속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출처_ Parlamentsarchiv des Sächsischen Landtags, 1. Wahlperiode, Drucksache 1/2123

문서 번호 134

신탁관리청에 의한 농경지 매각-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연방회의에 제출한 의결제안

1992년 10월 27일

담당자 / 기관_ 연방회의, 브란덴부르크주, 신탁관리청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신탁관리청에 의한 국유지 매각과 관련해 신연방주의 입장을 연방회의에 제출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연방주에서의 국유지 매각은 소유권을 반환받는 사람과 새로이 획득한 사람을 위해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토지 이용 관계에 대한 신속한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신탁청에 의한 토지매각은 신연방주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 즉각적인 임차 기간을 12년으로 정한다. 지역에 거주하는 새로운 소유주를 위한 매입 모델을 개발하고, 기존의 소유권 반환 프로그램을 수정한다.

1992년 6월 19일에 열린 연방정부와 연방주의 농림부 장관 특별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기본 원칙에 합의하였고, 그것은 1992년 10월 2일에 열린 연방주농림부장관회의에서 승인되었다. 임시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소유권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긴장을 완화하고 토지시장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 기존의 반환 프로그램은 마을의 사회적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1949년의 소유 관계를 근거로 소유권을 결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적절한 것이 아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그동안 들인 노력이 이런 프로그램에도 반영되어야만 한다.

출처_ Parlamentsarchiv des Bundesrates, 12. Wahlperiode, Bundesrat Drucksache 736/92

문서 번호 135

브란덴부르크 신문법-브란덴부르크 주의회 1차 심의

1992년 10월 28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브란덴부르크주 학술연구문화부 장관 에더라인,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발터, 티어제, 비스키, 리츠만, 베트슈타트 의원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의원들이 신문법 초안에 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제출한 새로운 신문법 초안은 민주주의와 신문의 권리를 보호하며 독일연방공화국 내에서도 가장 현대적인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단지 2조, 4조, 9조에 경우 이견이 있다. 특히 4조의 경우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출판인과 편집자가 전횡하지 못하도록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브란덴부르크주의 미디어 발전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조항이 될 수도 있다. 2조에 언급된 신문 배급의 중립성 보장을 통해 신문잡지 유통 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만 한다. 9조에 언급된 신문사의 소유권과 지분 관계를 공개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이 초안을 전문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에 모든 의원들이 동의하였다.

출처_ Landtag Brandenburg, 1.Wahlperiode, Plenarprotokoll 1/55

문서 번호 136

작센-안할트주의 문화 인프라 및 예술가-주의회의 질의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

1992년 10월 29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 주의회, 작센-안할트 주의회 사민당, 작센-안할트 주정부

내용_

이 문서는 작센-안할트 주의회의 사민당이 문화정책의 기본 원칙, 과제 및 성과에 대해 질의한 것에 대해 주정부가 답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정부는 문화정책에서도 권위주의적으로 위에서 명령하고 아래에서 무조건 따르는 것은 이제 종료되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문화정책의 우선순위와 강조점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했다. 더 중요한 것은 문화정책의 중요한 행위자인 기초자치단체와 기타 민간단체들의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주정부 차원에서 간섭하거나 명령을 내리고, 문화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를 기획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작센-안할트주의 문화지원 기본원칙은 1991년 가을에 도입되었다.

가장 큰 과제는 작센-안할트주의 문화 자원을 유지·보존하는 것이다. 작센-안할트주에는 특히 수많은 문화재 및 문화시설, 수많은 예술극장과 박물관, 공공 도서관,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훌륭한 음악학교들이 있다. 구조적으로 열악한 지역에는 통일조약에 합의된 연방정부의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기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업을 위해 연방정부가 1991년에 9억 마르크, 1992년에 7억 8천만 마르크, 1993년에 3억 1천만 마르크를 지원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가 더 많이 지원해 주어야만 할 것이다. 서독지역의 경우 문화정책을 위한 재원의 65%를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지만, 신연방주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신연방주의 재정은 1995년경에 비로소 서독지역 기초자치단체 재정 수준의 30%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1년에 작센-안할트주에서는 문화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891개의 사업이 착수되었고, 이를 위해 5천만 마르크의 연방 재원과 2천만 마르크의 주정부 재원이 투자되었다.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한 재원의 비중은 1992년에 47.6%이다.

출처_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1963

문서 번호 137

작센-안할트주 헌법재판소법 초안

1992년 11월 2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 주총리 뮌히, 작센-안할트주 법무부, 작센-안할트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작센-안할트 주정부가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초안이다.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시설, 재판 절차 및 관할 영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서독지역의 연방주들이 이미 오랫동안 시행해 온 연방주 헌법재판소의 기본 원칙을 수용한 것이다.

출처_ Landtag von Sachsen-Anhalt, 1. Wahlperiode, Drucksache 1/1980

문서 번호 138

국영농지의 매각-연방정부, 신연방주 농림부 장관, 신탁관리청, 소련군 점령지/동독 재산문제위원회(볼-페이퍼)

1992년 11월 1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수상청 정무 장관, 신연방주 농림 장관, 신탁관리청, '소련군 점령지역/동독 재산문제위원회'

내용_

이 문서는 신연방지역의 농업 구조의 발전과 토지개혁으로 소유권을 박탈당한 원소유자의 권리를 복원 또는 보상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면서 동독의 국유지를 매각하는 정책을 설명하는 소위 말하는 볼-페이퍼이다. 이 문서는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여당이 구성한 '소련군 점령지/동독 재산문제'위원회, 연방정부, 신탁관리청, 신연방주의 농림부 장관들이 회의한 결과이다. 이 페이퍼는 3단계의 구조전환 과정이 설명되어 있다.

1단계: 신탁청에 의한 12년간의 임차, 임차계약 파트너의 선정은 적절한 이용 방안의 제출 여부에 따라, 의무적인 자체 운영의 경우 우선순위는 a) 원소유자와 지역에 거주하는 새로운 소유자, b) 협동농장-후속기업, c),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새 소유자, 농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

2단계: 토지매입 및 주거지역 프로그램, 토지매입 과정에서 특정 토지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분명히 결론지어 진 것, 보유할 수 있는 토지의 상한선, 매입 토지의 20년간 판매 금지, 주거지역 프로그램은 50헥타르 이하의 면적을 경영하는 사업체에게 제공, 1단계의 임차인에게 토지 구입의 우선권 부여, 소유권 반환 권리를 갖지 못한 원소유자들은 토지를 장기적으로 현재의 경작자에게 임대한다는 조건에서 구입 허용.

3단계, 나머지 토지를 신탁관리청을 통해 매각.

출처_ Deutscher Bundestag, 12. Wahlperiode, Drucksache 12/7588, Anlage

문서 번호 139

브란덴부르크 재건 프로그램-4.92장 체육

1992년 11월 20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브란덴부르크주 교육·청소년·스포츠부 장관 마리아네 비어틀러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작성한 재건 프로그램에 관한 보고서의 일부로 체육진흥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에 위치한 체육시설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것을 지원할 것입니다. 생활체육은 사회의 발달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발적 의지로 기록 스포츠를 행하기를 원한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체육은 개인의 발달 및 건강한 삶의 유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라고 주정부는 정부 성명에서 체육정책의 기본 원칙과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정부는 체육정책 콘셉트의 중점 목표를 다음과 같은 사항에 두었다: 주 및 지방자치단체 영역에서 체육의 활성화; 적절한 지원 및 체육 발달을 위한 여건 마련; 자유롭고 자기 책임적 체육 활동의 보장; 체육활동 장소 건설 지원, 공공체육 협회의 활동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관리; 공공지원 체육 시설의 장기적 사용을 보장.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100, Nr. 412-413

문서 번호 140

튜링겐의 변호사 현황

1992년 11월 30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 주의회, 튜링겐 주의회 사민당 의원 바이, 튜링겐주 법무부

내용_

이 문서는 튜링겐 주의회 사민당 소속 바이 의원이 튜링겐지역에 변경된 사법 체계의 수요에 부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의 변호사가 있는지에 관해 질의한 것에 대해 주정부가 답변한 것이다. 바이 의원은 9개의 질문을 제출했다. 그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서류에 대한 검토를 통해 통일 직후 에어푸르트, 게라, 줄 지역에 96명의 변호사가 인계된 것을 알 수 있다. 튜링겐 법무부의 서류에는 1989년 10월 1일에서 1990년 10월 3일 사이에 동독 법무 장관이 266명의 변호사의 허가를 내어 준 것으로 나와 있다. 그들은 동독에서 법학 디플롬을 취득한 법률가들이다. 266명 중에서 31명은 판사 또는 검사로 근무

했다. 1990년 10월 3일 이후 동독에서 교육받은 191명의 법조인들이 튜링겐 법무 장관에 의해 변호사 허가를 받았다. 1990년 10월 3일 이후 15명의 전직 판사와 24명의 전직 검사가 변호사 허가를 받았다. 그들 중에서 10명의 전직 판사와 21명의 전직 검사들은 과거 경력 검토 절차를 통하지 않았다. 1992년 10월 1일부터 1992년 10월 30일 사이에 서독지역에서 온 법조인 219명이 튜링겐주 법무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그 결과 튜링겐지역에는 1992년 10월 30일 현재 총 629명의 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출처_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1762

문서 번호 141

신연방주에서의 실업

1992년 12월 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경제부, 알렌스바흐 인구문제연구소

내용_

이 문서는 알렌스바흐 인구문제연구소가 연방경제부의 위탁을 받아서 신연방지역의 실업에 관해서 조사한 결과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연방주의 실업은 경제 구조 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실질적인 실업률은 공식적으로 알려진 실업률보다 훨씬 높으며 신연방지역의 주민들은 실업으로 인해 삶의 안전장치를 상실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다. 신연방지역의 주민들은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경제의 구조 조정이 훨씬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며 대량 실업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기대하였었다. 그러나 이제는 실업자들의 다수가 오랜 시간 동안 실업자로 남아 있을 확률이 높다고 본다. 이 연구는 641가정의 1,014명과의 인터뷰 그리고 19,0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주민들의 태도와 실업이 실업자 본인과 그 가족에게 어떤 심리적, 육체적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것이다. 특히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대상 중에 2/3가 여성이었다.

출처_ Institut für Demoskopie Allensbach. Arbeitslosigkeit in den neuen Bundesländern. Allensbach am Bodensee 1992.

문서 번호 142

튜링겐지역의 법집행 현황

1992년 12월 2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 주의회, 튜링겐 주의회 사민당 의원 바이, 튜링겐주 법무부

내용_

이 문서는 튜링겐 주의회 사민당 소속 바이 의원이 튜링겐주의 법집행 현황에 관해 질의한 것에 대해 주정부 법무부가 답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법집행을 담당할 인력은 총 501명 중에 1992년 11월 1일 현재 373.5명이 채용되었다. 통일조약이 허용하는 조항, 동독 체제하에서 이미 법집행을 담당했던 인력, 특히 법원 사무직원들로 하여금 법집행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로 한 것을 튜링겐주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법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인력의 60%는 동독에서 법원 사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충원될 것이다. 튜링겐주에는 1992년 11월 1일 현재 동독에서 교육받고 법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총 105명이다. 그중 4명은 판사와 검사선발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과거 경력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53명은 서독지역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서독지역과 비교할 때 훨씬 더 많은 업무량과 함께 법집행 분야에서도 서독지역과의 큰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를 위해 신연방지역 출신 지원자를 교육하거나 서독지역에 근무하는 사람을 전보 발령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출처_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1776

문서 번호 143

동부 저축금고협회 설립에 관한 협약

1992년 12월 17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작센주, 작센-안할트주

내용_

이 문서는 1992년 12월 17일에 브란덴부르크, 작센, 작센-안할트,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등 4개의 신연방주가 체결한 저축금고협의회에 관한 조약문이다.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저축금고 동부협의회의 회원은 이 협약을 체결한 신연방주의 저축금고와 지역금고들이다. 본 협의회는 공법에 따른 법인체로 협의회의 기관으로는 총회와 이사회 그리고 사무총장단이 있다.

협의회는 저축금고를 지원하고 저축금고 및 감독기구를 자문해 주며, 저축금고 조직을 관

할하는 기구를 도와주고 회원조직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이 협의회는 각 연방주에 개별적으로 자문기구를 둔다. 이 기구는 총회와 이사회에서 발언권을 갖고 제안권도 갖는다. 협의회는 개별적인 연방주에 직접 연관되는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그에 관해 미리 해당 연방주에 통보하여야만 한다. 협의회는 나아가 감독하기 위한 부서를 둔다. 그리고 협의회는 각 연방주의 감독을 받는다. 각 연방주의 감사원은 공동으로 협의회의 예산과 회계를 검토한다. 나아가 조약을 체결한 연방주들은 통일된 저축금고법을 도입·발전시키기로 하였다. 이 합의문은 모든 주들이 승인서를 제출하면 효력을 발휘하며 그 기간은 제한되지 않는다.

출처_ Ostdeutscher Sparkassenverband; https://www.osv-online.de/fileadmin/osv/dateien/verband/OSV_Staatsvertrag_Lesefassung-26-05-09.pdf

문서 번호 144

기본법 23조의 구조항과 신조항

1949년 5월 24일, 1992년 12월 25일

담당자 / 기관_ 독일연방공화국

내용_

이 문서는 독일통일로 인해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법 23조가 변화된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1949년에 제정된 기본법의 원조항에는 독일연방공화국에 다른 지역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한 시점부터 해당 지역에서 기본법이 발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통일 이후 기본법의 23조에서 이 항목은 삭제되었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Gesetz zur Änderung des Grundgesetzes vom 21.12.1992, BGBl. I, S. 2086)

문서 번호 145

라우지츠지역의 구조전환에 관한 브란덴부르크 주의회의 토론

1993년 1월 20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브란덴부르크주 경제기술부 장관 발터 히르헤, 브란덴부르크주 환경부 장관 마티아스 플라첵, 브란덴부르크주 노동·사회·건강·여성부 장관 레기네 힐데브란트,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의원 라이헤, 노케, 크레츠머, 지베르트, 마르코프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 주의회에서 갈탄 탄광 지역인 라우지츠시의 구조전환 및 장래에 관해 논의한 것이다. 주의회의 모든 정당들은 갈탄 생산을 비롯해 기계공업, 화학, 유리, 섬유산업도 지원하고, 갈탄 탄광 지역의 녹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만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는 모두 동의했다. 그러나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슈테판 라이히는 에너지 공급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방출을 감축시키는 것과 같은 환경 보호 조치 간의 조화를 이루는 문제를 부각시켰다. 나아가 서독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단일적인 에너지 공급 구조를 신연방지역으로 그대로 확대하는 것을 경고하면서 신연방지역을 위한 전력공사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균터 노케는 그에 반대하면서 에너지 체계를 탈중앙집중적으로 만들고 독점구조로부터 벗어나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갈탄 채굴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더 이상 경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갈탄 채굴을 지원하는 것에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칼 하인츠 크레츠머는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갈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를 통해 갈탄에 집중된 단일구조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시설과 문화시설의 다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힐데브란트 장관은 그런 다양한 방안을 듣고 코멘트했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Brandenburg, Plenarprotokoll 1/61, S. 4619-4636

문서 번호 146

신연방주 출신 지원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튜링겐의 규정(튜링겐 자격요건 규정)

1993년 2월 2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주 내무부, 연방내무부

내용_

이 규정은 신연방주지역에서 학교와 대학 또는 직업교육을 이수하고 1990년 10월 3일 이전에 공무원으로 임명되지 않았던 신연방주의 공공직 지원자의 자격 요건을 규정한다.

지원자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견습기간의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하다:

1. 공공 행정직에서 검증된 경우
2. 견습기간을 마친 경우
3. 연령 조건을 충족할 경우
4. 재교육 조치에 참여할 의지를 이미 표시한 경우

이 규정에는 이 외의 자세한 내용이 나열되어 있다.

출처_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Thüringen 1993 Nr.7, S. 173-174

문서 번호 147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의 문화기반 유지를 위한 제안에 대한 주의회 심의

1993년 2월 11일

담당자 / 기관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사민당 의원 지그프리드 프리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문화부 장관 슈테피 슈노어,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의원 다수

내용_

이 문서는 문화정책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감축되던 1993년에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에서 문화기반 전반과 그 전망에 관해 논의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민당의 지그프리드 프리제 의원에 따르면 지금 현재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지역에 문화기반이 그나마 남아 있는 이유는 연방정부에서 막대한 재원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1994년에도 이런 재정지원이 계속될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연방정부의 내무부는 신연방주 주정부들에게 앞으로 계속 지원받기 원하는 프로그램과 사업의 목록을 제안하라고 요구했고, 브란덴부르크 주정부는 이미 6개, 작센은 12개, 작센-안할트는 5개, 튜링겐은 7개를 제안한 데 반해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은 고작 2개를 제안했다. 프리제 의원은 2개의 제안만을 제출했다는 사실은 주정부가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미 만들어진 정책도 주정부 문화부에 의해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슈테피 슈노어 문화부 장관은 프리제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가 2개의 제안이 아니라 8개의 방안을 신청하였고, 주정부의 문화정책 안을 폐기하지도 않았다고 하였다.

좌파/민사당의 하이데 말리스 라우텐슐레거 의원은 주정부의 문화정책에 비교적 만족한다고 발언하였다. 자민당의 발터 골드벡 의원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에는 13개의 예술극장, 7개의 심포니 오케스트라, 31개의 음악학교, 37개의 영화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개의 문화센터, 244개의 청소년센터, 33개의 시민대학, 391개의 도서관, 1,300개의 궁전 및 정원, 43개의 기념관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국가보조가 민간 이니셔티브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자민당의 입장이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의 문화가 독일 전체의 문화라는 점에 대해서는 연방의회에서도 분명히 하였으며, 문화와 관련된 것은 지방정부의 고유 영역이라는 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가 문화와 관련된 정책을 지원하는 것은 중앙집권주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기민당의 제신 의원은 문화 영역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선발하는 것은 행정부의 업무이지 의회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다. 나아가 문화와 예술의 지원은 문화부와 재무부만이 관할할 문제도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사회부와 경제부, 심지어 환경부도 문화진흥을 위해 기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은 주민 일인당 문화를 위한 지출을 보면 서쪽의 연방주 평균보다 훨씬 높다.

출처_ Parlamentsarchiv des Landtage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Plenarprotokoll 1/70, S. 3996-4001

문서 번호 148

동독의 공공행정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특별해고 사유-헌재 판결

1993년 3월 2일

담당자 / 기관_ 연방헌법재판소(소장 헤르촉, 판사 죌너, 판사 퀼링)

내용_

이 문서는 신연방주의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동독 체제하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경력 때문에 해고된 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한 것에 대한 판결이다. 헌법재판소의 제1 심의부의 판결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원고는 신연방주지역의 공공행정에서 근무하고 있다.
- 원고는 가입지역 공공행정에서 1992년 10월 2일까지로 정해진 특별해고 규정이 법적으로 199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것에 반대하고 있다(통일조약; 1990년 9월 23일의 동의법-BGBl. II S. 885).
- 전문 교육 혹은 개인적 적합성, 수요 등의 부족 혹은 기존 기관의 해체로 인한 일반해고(통일조약, XIX 장, A권, III장, 1번 4문)
- 이를 이유로 원고의 근로 계약은 1992년 10월 3일 후 무효화되었다.
- 원고는 기본법 제2조 1항과 제5조 3항, 제12조 1항, 제3조 1항, 제12조 1항의 규정 훼손을 근거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연방행정재판소법 제90조 2항 2문에 의거 자신의 항소가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원고는 노동법원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법제 구제절차를 모두 마치지 않았다(연방헌법재판소법 제90조 2항 1문).
- 결정형식: “위헌소송은 결정에 도달하지 않았다.”

출처_ Europäische Grundrechte-Zeitschrift. 1993. S. 208-209

문서 번호 149

튜링겐 판사법

1993년 3월

담당자 / 기관_ 튜링겐 주총리 포겔, 튜링겐 주정부, 튜링겐주 법무 장관 옌취, 튜링겐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튜링겐주의 판사 임용에 관한 규정이다. 이 법이 도입됨으로써 주정부의 공무원 신분을 가지게 되는 판사에게 적용되는 연방판사법이 보완되었다.

출처_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2024

문서 번호 150

독일을 위한 연대협약/연방수상과 연방주 총리 정당과 원내 대표들의 연석회의

1993년 3월 1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주정부, 국민정당의 당수, 연방의회 원내 대표

내용_

연대협약은 통일된 독일이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를 위해 연방과 연방주 간에 합의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독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동력의 강화를 이룩하는 것에 주로 관심을 가졌고, 신연방주는 주로 경제력을 강화하는 것에 관심을 보였다. 연대협약의 주요 골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연방-연방주 간에 새로운 재정 배분: 558억 마르크 규모의 재정이전을 추가로 도입
- 신탁관리청이 환경오염과 산업핵심시설을 확보·개선할 수 있도록 융자 틀을 확대
- 철도개혁
- 주택건설 강화
- 재건은행의 자본을 300억에서 600억 마르크로 증액

연방의 과제(사회적 규정, 사회경제 영역에서 연대정책을 악용하는 것을 척결, 세금보조의 감축 등)

- 연대세의 도입

출처_ Presse- und Informationsamt der Bundesregierung, Nr. 22/S. 185; Treuhandanstalt (Hrsg.). Dokumentation 1990-1994, Band 11, S. 594-644. Berlin: Treuhandanstalt 1994, 16.03.1993

문서 번호 151

튜링겐주 사회법원법 초안

1993년 3월 18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 주의회, 튜링겐 주총리 베른하르트 포겔

내용_

이 문서는 튜링겐주에 사회법원을 설치하는 것에 관한 법안이다. 통일조약에는 가능하면 신속하게 신연방주에 독일연방공화국의 사법 체계를 구축한다고 합의하였다. 그리고 독일연방공화국의 사회법에 따르면 사회법원은 연방주의 고유한 관할 영역이다. 이 법안은 사회법원이 설립될 지역과 관할지역을 규정한다. 나아가 개별 사회법원의 관할업무, 판사임용 및 공무원 임용 그리고 법원 외의 장소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 등에 관해 규정하였다.

출처_ Thüringer Landtag, Parlamentsdokumentation, 1. Wahlperiode: Drucksache 1/2090

문서 번호 152

작센-안할트주 주거공간 및 도시건설에 관한 질의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

1993년 3월 23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주 건설부, 작센-안할트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작센-안할트주의 주거공간 현황에 대한 주의회의 질문에 대해 주정부가 제출한 자세한 현황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거공간의 현황과 관련하여 동독 지배 체제 40년 동안 잘못된 주택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심각한 문제를 고려해야만 한다. 도심지역의 주거공간은 거의 폐허가 되거나 비어 있고, 변두리 지역의 아파트촌은 획일적이며 목욕탕과 주택 내부의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있다. 주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주거 분야에서의 시장경제적 전환은 심각한 사회적 충격이 없이 비교적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99,011채의 주택 개량을 위해 1991년과 1992년에 3억 4천 970만 DM의 지원금이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연방지역의 주택 수준을 서독지역의 기준에 맞추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조약에는 주택 임대료의 상승은 소득 변화를 고려해야만 한다고 합의했을 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서로 연동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1990년 10월 3일 이전에 건축을 시작했지만 그때까지 완공되지 않았던 주택의 임대료 수준을 정하는 것

을 두고 논란이 있다.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정부도 그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Sachsen-Anhalt, Drucksache 1/2435

문서 번호 153

신연방주 그리고 통일독일에서 학술과 연구 기반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고-A장. 신연방주 대학 분야의 재구성

1993년 3월 24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연방정부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의회의 요구에 따라 연방정부가 제출한 통일 후 학술연구 기반의 강화에 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보고서는 구동독지역의 학술연구 부문 전환과정이 서술되었다. 이 지역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연구에 대해서는 1993년도 여름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신연방지역 대학교들의 구조조정 목표는 국제적 학문 수준에 맞추고 대학 외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을 대학 내로 통합시킴으로써 기초 연구를 강화하는 것에 있다. 또한 긴급하게 시설 개선 및 보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대형 설비 및 컴퓨터 그리고 서적들을 구비할 수 있어야 한다. 신연방주 주정부들과 해당 대학교들은 독일의 학술조직 체계로 통합되었다. 나아가 각 주별로 대학교법을 제정하였고, 대학교의 소재지를 확정하는 한편 전문대학교의 토대를 기초했다. 신연방주에 신설된 대학구조위원회들은 각 주에 소재한 대학교들의 구조와 발전을 위한 자문을 해 준다. 연방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대학교 제반환경의 구조변화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1991년도 7월에 시작된 신연방주 내 대학 및 연구 개혁 프로그램(HEP)을 소개하였다.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신연방주의 학술연구 지원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로서 1996년도 말까지 24억 3백만 마르크에 달하는 재원이 배정되었다. 여기에 포함된 학술 연구자 통합 프로그램(WIP)에 따라 현재 1,920명의 학자가 지원을 받는다. 이 보고서에 첨부된 부록에서는 개별 전공 분야들에 대한 학술자문회의의 자문 내용의 요약을 읽을 수 있다.

출처_ Parlamentsdokumentation Bundestag, Drucksache 12/4629

문서 번호 154

신연방주 그리고 통일독일에서 학술과 연구 기반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고-B장. 신연방주 대학 외 연구 분야의 재구성

1993년 3월 24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연방정부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의회의 요구에 따라 연방정부가 제출한 통일 후 학술연구 기반의 강화에 관한 보고서 중 대학 외 연구기관에 관해 기술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도 여름에 이미 서독의 연방정부와 연방주들, 학술 단체들 및 연방 연구·기술부는 동독지역에서의 학술 연구 부문의 재편성에 대해 논의를 나눈 바 있다. 그때 학술자문회의에 동독지역 대학 외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도 요청하였다. 통일 이후 동독 학술원 산하 연구기관들을 1991년 12월 31일 자로 모두 폐쇄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통일 직후인 1990년 10월 11일에 연방정부의 연구·기술부는 '통일독일에서 연구·개발 부문의 전망(신연방주들에 대한 8개항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학자들은 국제적 학문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며, 몇 가지 연구 및 기술 분야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특히 대학 외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 역량을 대학교 내로 통합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평가했었다. 당시 학술자문회의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학술 및 연구 부문의 문화적이자 경제적 역할에 대한 설명이 있다. 학술자문회의는 연구 분야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또 연구 체계를 경쟁력 있게 재건해야 한다고 권했고, 그와 관련하여 7개의 기본 원칙을 설명하였다. 나아가 2,000명의 학자들을 대학교들로 통합시키고 나머지 11,000명의 연구자들은 대학 외 연구기관들에서 연구할 수 있게 하라고 권고하였다. 대학교들의 신설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1991년 7월 11일에 도입된 신연방주를 위한 대학개혁 프로그램(HEP)이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와 연방주들의 합의하에 도입된 것으로 1992년도에 총 24억 3천만 마르크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연방정부와 연방주들은 1992년 1월 1일부로 총 108개의 연구기관들을 설립하였다. 그 리스트는 이 보고서의 부록으로 포함되어 있다.

출처_ Parlamentsdokumentation Bundestag, Drucksache 12/4629

문서 번호 155

튜링겐주의 임시 주법에 의거한 개별 부서의 소관 업무 영역

1993년 4월 7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 주정부 및 부처

내용_

이 법은 튜링겐 주정부 각 부처의 소관 업무 영역을 규정한다:

01. 튜링겐 주정부
02. 튜링겐 주총리실
03. 튜링겐주 내무부
04. 튜링겐주 문화부
05. 튜링겐주 법무부
06. 튜링겐주 경제교통부
07. 튜링겐주 사회보건부
08. 튜링겐주 농업임업부
09. 튜링겐주 환경도시계획부
10. 튜링겐주 연방과 유럽문제부
11. 튜링겐주 학문예술부

출처_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Thüringen 1993 Nr. 13, S. 245-259

문서 번호 156

브란덴부르크주 사법 체계의 새로운 규정

1993년 4월 20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주 주정부가 도입한 사법 체계에 관한 새 규정이다. 신연방주들은 통일조약에 따라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서독지역의 연방주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사법 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이 법이 도입되면서 브란덴부르크주도 노동법원, 사회법원, 행정법원, 금융법원 등 독자적인 전문 법원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일반 사법의 영역에서는 동독 체제하에서 구축된 법원 체계를 한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법안이 도입되면서 법원의 관할 구역이 재편되고 그에 필요한 과도규정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_ Landtag Brandenburg, 1. Wahlperiode, Drucksache 1/1900

문서 번호 157

작센주(州)의 기초자치단체 규정

1993년 4월 21일

담당자 / 기관_ 작센 주의회

내용_

- 130여 개 이상의 조항에는 작센주의 기초자치단체 설립, 단체의 권리 그리고 의무에 대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다.
-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기초자치단체의 주민과 시민(여기에는 소수자의 언어, 문화의 지원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15.4).
- 기초자치단체 의회
- 기초자치단체장
- 기초자치단체의 직원과 임명된 직원
- 예산규정
- 기초자치단체의 재산
- 법적 감독

출처_ Sächsisches Gesetz- und Verordnungsblatt. Herausgegeben von der Sächsischen Staatskanzlei. Nr. 18/1993, Dresden, 30. April 1993.

문서 번호 158

동독에서 이수한 교직과정의 인정에 관한 협정

1993년 5월 7일

담당자 / 기관_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

내용_

이 문서는 성공적인 통합의 달성을 위해 연방주의 교육부 장관들이 합의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독 체제에서 이수한 교사양성 과정은 각 연방주에서 유효한 정규과정 또는 각 법적 규정에 따라 부록I에서와 같이 연방급여규정 A호봉군으로 분류한다. 이는 동독 체제에서 양성교육을 마치고 신연방주 및 베를린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사에 한하여 적용된다. 해당 교사의 경우, 특정한 전제조건에 따라 수습근무 및 2차 국가고시를 교사 활동 증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증명확인 절차는 각 주법에 따라 실시된다. 증명확인 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a) 일반 공무원법의 전제조건, b) 2차 급여

경과규정 취득을 위한 시험을 이수, 국가시민 교육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는 배제, c) 최소 총 3-4년의 재직기간에 대한 증명, d) 50세 미만
여기에서 언급된 증명확인 절차와 관련한 방식 및 기준은 이 문서의 부록2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증명확인 절차는 최고 관할 관청에서 a) 인사 기록, b) 교사 보습교육 참여 증명 및 c) 적합한 공무원에 의한 전문적 평가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심사 결과의 소견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수업 참관과 개별 면담이 필수적이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만 한다: a) 중기 수업계획 제출, b) 수업 및 교육과 관련된 성과 및 능력, c) 필요시 더 높은 지위에서의 성과 및 능력, d) 수업 방문 후의 면담 평가, e) 일반적인 인격 및 자질, f) 기타 요소, 특히 의무의식.
신연방주에서 활동하지 않는 교사들도 1990년 10월 5일에 체결된 '구동독지역에서 취득한 교사 자격의 인정에 관한 임시적 기본 원칙'에 따라 교사 자격을 인정받는다.

출처_ Beschluss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om 07.05.1993.
KMK Erg.-Lfg. 79. September 1994.

문서 번호 159

작센-안할트지역의 주거에 관한 주의회의 토론

1993년 5월 13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주 교통부 장관 대레, 작센-안할트 주의회 의원 다수

내용_
이 문서는 작센-안할트주 주의회 민사당이 주거 현황에 관해 질문한 것에 대해 주정부가 답변한 것이다. 이 질문의 주요 골자는 무엇보다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 주택개량, 주거 보조비 규정 등에 관한 것이었다. 민사당은 작센-안할트 주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 주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많은 주택이 위생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이 홈리스가 될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주거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영화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융자금을 얻은 사람들은 융자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의 가격이 급격하게 인상해서 매입할 수도 없다고 했다.
다른 정당의 대변인들도 민사당의 지적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만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기존의 주택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의견이 갈렸다. 일부는 기존의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다른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이 잘못된 주택정책에 있다고 보았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Sachsen-Anhalt, Plenarprotokoll 1/47, S. 5477-5487

문서 번호 160

브란덴부르크 언론법

1993년 5월 13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주가 도입한 언론법이다. 프러시아 때부터 동독을 거쳐서 이 지역에 신문법이 도입된 것은 처음이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조 2항은 "신문의 자유는 헌법을 통해서만 직접 제한되거나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이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어떤 특별조치도 금지된다"고 하였다. 신문의 활동은 출판사의 허가와 같은 어떤 인가사항에 종속되어서도 안 된다. 신문 도매상의 중립성은 보장되어야만 한다. 신문은 보도와 비판을 통해 개별적이거나 공적인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 4조에서는 신문의 내적 자유를 설명하며 "어떤 편집자도 그가 동의하지 않는 의견을 수용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되며, … 필자가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그 내용이 본질적으로 수정되지 않는 글을 그의 이름으로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5조에 따르면 해당 관공서는 언론인들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하여야만 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소유권, 지분 관계, 편집자의 자격 요건 등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_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Brandenburg Teil I – Nr. 10 vom 17. Mai 1993

문서 번호 161

튜링겐 사법 체계의 전환 및 법원설립법 시행령, 법원구조법 시행령-주정부 초안

1993년 5월 25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 주총리 포겔, 튜링겐 주정부, 튜링겐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튜링겐주 사법구조를 기존의 서독지역 연방주에서 실행되고 있는 사법구조와 유사한 형태로 전환한다는 시행령이다. 법원의 구조, 법원 소재지 및 법원의 관할 구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_ Thüringer Landtag, 1. Wahlperiode, Drucksache 1/2268

문서 번호 162

신연방주 경제 성장 지원과 경제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투자간소화법

1993년 6월 23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베를린주,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내용_

통일 이후 각 지역 간에는 경제력과 경제 성장 지원 능력에서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 5개 주의 주정부와 기초단체가 중요한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 1998년부터 4년간 매년 총 66억 마르크의 재정지원을 보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3; S. 944, 982

문서 번호 163

작센주의 대중교통 수단 현황에 관한 질의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

1993년 7월 6일

담당자 / 기관_ 작센 주의회, 작센주 경제노동부 장관 칼 요젭 쇼머, 작센 주의회 녹색당 원내대표 대리 클라우스 가버

내용_

이 문서는 작센 주의회 녹색당이 대중교통 수단에 관해 질의한 것에 대해 주정부가 답변한 것이다. 녹색당은 작센주의 철도개혁의 틀에서 대중교통을 위한 법적, 재정적, 조직적 조건을 일반적으로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중교통은 교통정책과 사회정책에서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 특히 대도시와 인구집중지역에서 대중교통 수단을 확대하고 개인 승용차의 이용률을 감소시켜야만 한다. 농촌지역에는 기본적인 이동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교통망이 마련되어야 한다. 모든 지역에 적절한 교통망을 제공할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 1992년과 1993년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에 약 10억 DM을 투자할 것이다: 대중교통 노선망과 서비스의 개선, 새로운 전차와 버스의 구입, 정류소 및 정비소의 건설, 학생, 대학생, 장애인을 위한 인하요금 적용.

작센주에는 대중교통망이 비교적 전체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편이다. 통일 이후 1990년에서 1992년 사이 대중교통의 이용 승객 수가 40% 감소했다. 대중교통 요금은 1990년에서 1993년 사이에 지방 전철은 1킬로미터당 약 300% 인상되었고, 시내교통 요금은 약 800% 인상되었다. 1990년 이후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에 전환이 있었다.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수요를 높이기 위해 요금연맹과 교통연맹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주정부에 기획팀이

구성되었다. 승용차의 과도한 이용을 대체할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 대중교통 수단을 위해 2000년까지 약 10억 DM이 매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Sachsen, Drucksache 1/3210

문서 번호 164

행정구역개혁법

1993년 7월 13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 주의회

내용_

- 본 법은 작센-안할트주의 광역자치단체 재정비와 자치시의 설립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 본 법은 토지 소유권을 광역자치단체로 이전하는 과정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다(§25).
- 주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역시 광역자치단체 내에 있는 저축은행(Sparkasse)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다. 늦어도 1997년 1월 1일까지 저축은행은 하나의 단일한 은행으로 통합되어야 했다.

출처_ Gesetz- und Verordnungsblatt des Landes Sachsen-Anhalt, Nr. 31/1993, ausgegeben am 20. Juli 1993, S. 352-356.

문서 번호 165

튜링겐주 학교법(ThürSchulG)

1993년 8월 6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 주의회 의장 고트프리트 뮐러, 튜링겐 주의회 부의장 페터 박하우스

내용_

이 문서는 튜링겐주 학교법으로 튜링겐주 내 다양한 형태의 학교, 직업학교 및 특수학교와 [성인 대상의 중고등학교 등을 포함한] 특별학교의 구조와 기능을 규율한다. 그 외에도 이 법은 학교운영 주체, 교육의 의무 및 교사, 학생 및 학부모 공동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한다. 이 법은 어떠한 학교 형태에서 어떠한 교과 수업이 이루어지고 몇 년의 학기 이수 후에 어떠한 종류의 이수 자격이 취득될 것인지를 일반적으로 규정한다.

튜링겐주에서는 종교 과목과 윤리 과목이 정규 교과목으로 도입되었다. 만 14세가 넘게 되면 학생은 스스로 종교 과목과 윤리 과목 중 어느 쪽을 배울지 선택할 권리가 생긴다. 교과 과목의 내용과 종류, 범위 그리고 학교 규칙 및 시험 규칙에 대해서는 튜링겐주 교육문화부가 책임지고 결정한다. 성교육은 전 교과에 포괄적인 내용으로 반영되어 교육이 이루어진다.
주정부의 문화부를 자문해 주기 위해 주 차원의 학교자문회의(Landesschulbeirat)를 설립한다. 이 기구는 각각의 학교 형태를 대표하는 교사 및 학부모, 유치원 교사 및 특수학교 교원, 학생 및 사립학교들 및 그 외 교육 부문에서 활동하는 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출처_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Thüringen, Nr. 21 – Ausgabetag: 12. August 1993

문서 번호 166

튜링겐의 란트크라이스와 크라이스가 없는 시의 개편에 관한 법(튜링겐 구역개혁법-ThürNGG)

1993년 8월 16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 주의회, 튜링겐주 내무부

내용_
튜링겐주는 이 법을 통해 1994년 기초단체 선거부터 행정구역이 다음과 같이 개편되었다:
- 란트크라이스로는 아익스펠트, 노드하우젠, 바르트부르크-크라이스, 운스트루트-하이니히-크라이스, 슈말칼덴-마이닝겐, 고타, 좀머르다, 힐트부르크하우젠, 일름-크라이스, 바이마르-란트, 존넨베르크, 슈바르자-크라이스, 홀즈란트-크라이스, 자알에-오르라-크라이스, 그라이즈와 알텐부르크 등이 있다.
- 크라이스가 없는 대규모 시의 지위를 갖는 도시로는 에어푸르트, 예나, 줄 그리고 바이마르 등이 있다.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통합된 게마인데의 법적인 후속 기관은 게마인데가 병합된 도시이다. 구역(Ortsteil)도 지역법을 도입할 수 있다. 병합 이전에 게마인데에 적용되었던 법률은 법적인 규정에 따라 구역의 법률로서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이 법으로 인해 크라이스의 지위를 상실한 게마인데는 1993년부터 기초단체 재정균형배분의 틀에서 5년간 투자를 위한 특별지원을 받는다. 지원 금액은 매년 1백만 마르크와 주민 1인당 18마르크가 추가된다. 구조적으로 취약한 게마인데에 대해서 나아가 4백 5십만 마르크가 추가로 지원된다.

출처_ Juris-Gesetzesdokumentation Thüringen

문서 번호 167

튜링겐 게마인데와 란트크라이스 규정(튜링겐 기초단체령-ThürKO)

1993년 8월 16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 주의회, 튜링겐주 내무부

내용_

튜링겐 기초단체령(ThürKO)은 튜링겐주의 게마인데와 란트크라이스의 자치행정의 기본적인 특징과 권리 그리고 의무를 규정한다.

게마인데는 민주국가의 기반을 이룬다. 게마인데의 주권에는 해당 지역과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이 포함된다.

게마인데는 자치행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일한 란트크라이스에 속한 이웃 게마인데와 행정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

란트크라이스는 지역단위체로서 크라이스의 영역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에서 기초단체를 초월하는 문제를 다룰 수 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의 틀 내에서 자체적인 책임하에서 이루어진다.

(이 법에는 나아가 게마인데 규정, 행정 예산과 관련된 자세한 규정이 포함되었다.)

출처_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Thüringen 1993, Nr. 23, S. 501

문서 번호 168

주택 소유권에 관한 브란덴부르크 주의회의 토론

1993년 9월 29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주택건설교통부 장관 하르트무트 마이어,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의원 다수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주 자민당의 제안으로 주택소유권에 관해 주의회에서 토론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민당은 주택회사, 기초자치단체 및 주정부가 주택의 민영화작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은 브란덴부르크주 내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데에 의견이 일치했다. 주택을 민간인에게 매각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도 기민당, 자민당, 사민당 모두 동의했다. 그러나 민사당은 민영화보다 사회주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사당도 주택을 구입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민영화를 강제 조항으로 도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했다. 동시에 브란덴부르크주의 주택정책과 관련해서 더욱 중요한 문제는 구채무지원법이며,

그를 통해 주택기업들이 구채무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설명했다. 구채무 청산을 위한 지원금은 부분 탕감, 이자 지원 등이 포함되며, 이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기업경영 또는 민영화 계획을 제출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채무탕감 지원을 받기 위해서 민영화를 강제 규정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주택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아가 어떤 주택과 건물이 민영화하기에 적절한 건물인지 결정해야만 한다고 했다. 브란덴부르크주의 현재 주택 상황을 고려하면 주정부가 가능하면 신속하게 세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주택건설정책을 도입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영화과정에서도 세입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어야만 한다고 했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Brandenburg, Plenarprotokoll 1/76, S. 6077-6092

문서 번호 169

교육-학술노조의 요구사항-'동서독지역에서의 교직 평등을 위하여'

1993년 10월

담당자 / 기관_ 교원노조

내용_

교원노조는 연방정부가 1993년 8월 3일에 마련한 구동독 및 구서독지역 교사들의 차등 평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교사 급여 변경에 관한 법초안에 반대하며, 동독 양성교육을 받은 교육 인력의 평등을 요구한다.

- 교원노조에 따르면 본 법 초안은 1993년 5월 7일 그라이프스발트에서 체결된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 의결안과 중요한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는다.
- 의결안은 이전까지 논란이 되었던 교사집단, 특히 저학년 교사들의 지위 및 급여 평등화를 제안한 반면, 본 법 초안은 저학년 교사들의 등급을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의 제안보다 한 단계 낮은 급여그룹만큼 하향 조정하여 초등교사의 차등 대우를 정착시키려고 한다.
- 이는 신연방주의 교사들 사이에서 불만과 불쾌함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구동독 양성교육을 이수한 교사들이 구서독 교사들뿐만 아니라 구동독지역에서 양성교육을 받고 있는 후진 교육 인력에 비해서도 낮은 급여그룹으로 분류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교원노조는 일반학교 교사, 특수학교 교사 및 직업학교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사그룹에 대한 요구 사항을 요약문으로 정리하였다.
- 한 가지 예로 일반 종합기술고등학교의 저학년 교사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들은 2차 급여 경과규정에 따라 급여그룹 A10으로 분류되는 반면, 구연방주의 초등학교 교

사들은 일반적으로 급여그룹 A12로 분류된다. 교육 및 문화 관련 주정부 장관회의의 제안에 따라 해당 교육 인력은 급여그룹 A11/12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법 초안은 해당 교육 인력을 계속해서 급여그룹 A10으로 분류할 것을 지시한다. 교원노조는 해당 교사그룹을 위해 장기적으로 급여그룹 A12의 초등학교 교육 인력과의 동등화 그리고 단기적으로 급여그룹 A11의 지위를 요구한다.

출처_ Gewerkschaft Erziehung und Wissenschaft. Oktober 1993. Aus dem Archivraum der Berliner Senatsverwaltung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Forschung.

문서 번호 170

작센-안할트의 기초자치단체 규정, 작센-안할트의 광역자치단체 규정

1993년 10월 5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 주의회

내용_

- 이 기초자치단체 규정은 작센주의 규정과 매우 비슷하지만 더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154개의 조항으로 구성). 여기에는 주민 투표의 절차와 주민 청원, 주민 요구 그리고 그것의 다음 단계인 주민 결정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여기에는 주민 청원 내지 결정이 유효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에 대해 결정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없는지, 결정하기 위해 최소한 몇 명의 주민들이 서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24-26). 이를 통해 기초지방자치를 위한 근간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것이 지방선거법의 관련 부분을 규정한다.
- 광역자치단체 규정은 주민들과 시민들, 광역단체의 조직(의회) 그리고 의회의 구성원(주 상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출처_ Gemeindeordnung,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Sachsen-Anhalt, 4. Jahrgang, Nr.43/1993, ausgegeben am 11.10. 1993, Seiten 568-597.
Landkreisordnung,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Sachsen-Anhalt, 4. Jahrgang, Nr.43/1993, ausgegeben am 11.10. 1993, Seiten 598-611.

문서 번호 171

작센-안할트주의 관광산업 발전에 관한 질의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

1993년 11월 3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주 경제·기술·교통부, 작센-안할트 주의회 기민당 및 자민당

내용_

이 문서는 작센-안할트 주정부가 관광산업에 관해 제출된 질의에 대해 답변한 것이다. 주정부는 답변서의 서두에 관광산업이 경제적으로 갖는 의미를 강조하였다. 나아가 관광산업은 어둡고 우울한 산업지역이라는 작센-안할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깨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먼저 언급했다. 이 답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관광산업의 인프라를 장기적으로 서독지역의 연방주 수준에 맞추는 것이 목표이다. 그것은 관광수입이 국내 총생산의 5%를 차지할 정도로 관광산업이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광을 위한 교통 인프라는 서독의 수준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주정부의 답변에는 민간 펜션, 노동조합의 연수원, 기업의 연수원, 요양원, 새로이 창립된 여행산업연맹의 수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주정부는 1994년 전반기까지 관광산업 진흥 방안을 작성할 것이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Sachsen-Anhalt, Drucksache 1/3142

문서 번호 172

브란덴부르크주의 치안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주정부의 첫 번째 보고서

1993년 11월 15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브란덴부르크주 사법부, 내무부, 노동·복지·건강·여성부, 교육·청소년·체육부, 도시개발·주택·교통부, 학술·연구·문화부

내용_

이 보고서는 내부 안전과 평화를 특별한 방식으로 다루는 주정부의 정치 분야의 조치들에 대해 묘사한다:

노동/복지/건강/여성부(MASGF): 사회보장시스템(sozialer Leistungssysteme)의 보장, 청년실업문제 해결, 외국인 및 이민정책의 배타성 철폐.

교육/청소년/체육부(MBJS): 법의식 및 사회발전을 위한 조치들. 추가적인 종일학교의 설립. 왜 전일제 학교의 수가 증가했는가? 자기지원 이니셔티브(Selbsthilfinitiative) 강화, 청소년 여가 기관의 강화, 학교체육과 작업공동체, 스포츠 그룹, 청소년 폭력.

도시개발/주택/교통부(MSWV): 인간이 생활할 만한 주거 공간.

내무부(MI): 경찰의 범죄와의 전쟁(Polizei Kriminalitäsbekäpfung) 확대, 기술적 의사소

통 가능성의 개선, 확실한 난민 및 이주정책을 위한 헌법 보호의 확대?
사법부(MdJ), 도시개발/주택/교통부(MSWV): 교통 안전의 증가.

출처_ Landtag Brandenburg, 1. Wahlperiode, Drucksache 1/ 2476

문서 번호 173

동독 슈타지를 위한 활동에 대한 근무법적 판단을 위한 평가 기준에 대한 초안

1994년 1월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내무부,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내무위원회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주 주정부의 내무부가 동독 비밀경찰로 활동한 사람의 채용문제에 관해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작성해서 주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먼저 주의회가 브란덴부르크주의 내적 평화와 안전을 위해 슈타지 활동에 대한 검증과정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고, 주정부가 그에 답변하기 위해 작성한 초안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조약에 따라 모든 공직자들은 민주적 행정기구에서 활동하기 위한 결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결격 사유를 검증하기 위한 기준은 투명하며 모두가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검토를 요한다. 모두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600 Nr. 191

문서 번호 174

기초단체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튜링겐의 법(튜링겐 조치법 -ThürMaßnG)

1994년 1월 3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 주의회, 튜링겐주 내무부

내용_

이 조치는 1993년 8월 16일에 도입된 튜링겐의 행정구역개편법을 통해 현실화된 행정 개혁과 행정구역 개혁의 구체적인 실현 방법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당 게마인데와 시, 란트크라이스는 행정 체계 구축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해야 한다. 행정 인력은 새로운 란트크라이스에 의해 인수된다. 행정기구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주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새로운 란트크라이스는 기존의 란트크라이스 예산안을 근거로 1994년부터 새로운 관할 지역 전체의 예산 운영을 담당한다.
튜링겐의 재정균형배분법에 의해 규정된 조항은 1995년 1월 1일부터 새로이 구성된 지역에도 적용된다.
이 실행령은 나아가 새로이 구성된 란트크라이스로 권리와 의무를 인계하는 문제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출처_ Juris-Gesetzesdokumentation Thüringen; https://www.juris.de/jportal/prev/jlr-KomGRefGTHpP1 (Stand: 19.07.2018)

문서 번호 175

소련군 서부군단의 부대시설의 관리 및 매각에 관한 제안-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총회 토론

1994년 1월 26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재무 장관 클라우스-디터 퀴바허,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의원 다수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 주의회가 소련군 시설의 활용, 특히 소련군 서부군단이 철수함으로써 비게 되는 군 시설의 활용문제에 관해 논의한 것이다. 브란덴부르크 주정부는 1년 전에 서부군단 군 시설 부지 50,000헥타르를 무상으로 이전해 주겠다는 연방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브란덴부르크주 재무 장관은 이와 관련해 연방정부와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연방정부가 심각하게 오염된 대지의 0.8%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재무 장관은 군대 부지들이 앞으로 투자유치, 상업시설, 주택건설, 노동시장을 위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군부대 용지를 개발하기 위한 토지회사를 설립해서 소련군 서부군단의 군 용지를 다른 토지들과는 별도로 특별 재산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했다. 그는 나아가 이들 군 용지의 개발을 위해 2억 마르크의 크레디트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주의회 소속 다른 발표자들은 이 과정에서 재무 장관에게 너무 많은 결정권이 집중된 반면, 의회에 의한 통제와 감시에 아주 적은 비중이 주어졌다고 비난했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Brandenburg, Plenarprotokoll 1/85, S. 6901-6913

문서 번호 176

주거정책에 대한 질의에 대한 튜링겐 주정부의 답변

1994년 2월 3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주 내무부 차관 리페르트, 튜링겐 주의회 기민당

내용_

이 문서는 튜링겐주 주의회가 주택건설정책에 관해 질의한 것에 대해 주정부 건설부에서 답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부는 답변에서 주택건설은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했다. 특히 동독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후유증으로 인해 주택건설 분야에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가 아주 많다. 주택의 상태는 서독지역과 비교해서 열악하며, 자가주택 소유의 비율도 33%로, 서독지역의 39%보다 훨씬 낮다. 주택 내에 화장실과 목욕탕 등 위생 시설과 난방 시설이 안 갖추어진 곳도 많다. 동독 당국이 도시 변두리 지역에 집중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면서 도심에 있는 역사적인 구건물은 폐허화되거나 비어 있다. 1990년 말 튜링겐주에 주택의 총수는 110만 채이며, 현재 10만 채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990년에 주택의 개량과 현대화를 위해 900억 마르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정부는 나아가 주택건설을 위한 대지 문제, 설계와 허가 절차 등을 설명했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Thüringen, Drucksache 1/3065

문서 번호 177

독일통일과 동부 재건에 관한 자료

1994년 2월 4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내용_

연방정부는 연방의회에 독일통일 현황과 동부 재건에 대해 610쪽짜리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자료를 통해 통일이 되었을 당시의 상황과 1993년 6월 30일까지의 동부 재건의 결과를 볼 수 있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 DIP, Drucksache 12/6854

문서 번호 178

동독 사법부에 근무했던 판검사 재교육 및 이와 관련된 행정 협약

1994년 2월 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연방정부, 주 사법행정기관

내용_

1990년 9월 이래 주정부 행정기관들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에 조율된 계획에 따라 동독 출신의 판사를 위한 직무 병행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1992년 이래 주정부와 베를린 주정부는 인수된 판검사들을 위해 초지역적 재교육 학회를 제공하고 있다.

- 베를린: 인수된 판검사들을 위한 실체법 및 절차법에 관한 주 1회 교육
- 브란덴부르크

– 독일 판사아카데미의 재교육 학회

– 인수된 판검사들을 위한 콜로키움: 일상적 직무의 이론 및 실무에 관한 문제를 선배, 동료들과 토론하는 장

- 메클렌부르크-포르폼메른

– 민법 및 행정법: 노이브란덴부르크(Neubrandenburg) 구법원과 슈베린(Schwerin) 및 로스토크(Rostock)의 입문 과정

– 형법 및 형사소송법: 형사 판검사를 위한 기초 과정

– 1992년에는 민형사법 분야의 세부 주제에 관한 9개 주 자체 재교육 코스로 9개의 학회가 개최

- 작센: 1991년 바이에른주와 바덴-뷔르템베르크(Badem-Württemberg)주의 협력하에 기초 과정이 제공
- 작센-안할트: 주 내부적 재교육 조치(선배 및 은퇴 판사와 함께하는 실무 중심의 주간 행사)
- 튜링겐

– 1991: 바이에른주, 헤센주와 라인란트-팔츠주와 같은 파트너 주와 기본 재교육 및 주 자체 재교육 행사

– 1992: 속성교육

출처_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2/6854. (Materialien zur Deutschen Einheit und zum Aufbau in den neuen Bundesländern, Anhang Nr. 37) S. 338-340

문서 번호 179

1991-1994년 사이 연방정부가 신연방주의 법치국가 체계 구축을 위해 지원한 프로그램 개요

1994년 2월 8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신연방주

내용_

1991년부터 1994년까지 법치국가 구축을 위해 아래의 예산이 각 주에 지급되었다:

- 인력 프로그램 지출액 총 271,358 독일 마르크

–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인력 프로그램을 위해 지출된 예산은 구연방주와 신연방주, 베를린주 간에 합의된 행정 협정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었다

- 컴퓨터 프로그램 지출액 총 26,132 독일 마르크

출처_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2280. S. 382

문서 번호 180

연방정부의 통지: 독일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

1994년 2월 8일

담당자 / 기관_ 신연방주, 신연방주 주정부 사법 행정부

내용_

제3장 첨부문서 21~25번(국가, 헌법, 사법과 재판)

인력 확대

- 주정부 사법 행정부의 인력은 대규모로 확대되었다. 이에 관해 브란덴부르크주와 작센주, 작센-안할트주는 1990년 10월 3일부터 1993년 1월 1일까지의 신규 인력 채용 내용을 문서로 요약해 제출한다.
- 보고에 따르면 작센주의 사법부에서는 인력 확대의 폭이 매우 좁았다; 그러나 작센-안할트주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났다.

사법 분야의 사무 공간(부처와 소속 업무 분야)

- 주정부 사법 행정부들이 필요로 하는 사무 공간 역시 대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 신규 건축 조치와 더불어 건물의 매입 및 임대와 같은 투자 모델이 실행되었다.
- 1990년 10월 3일부터 1993년 12월 1일까지의 사무 공간 변화 내역에 관해 브란덴부르크주와 작센주, 작센-안할트주는 그 내용을 문서로 요약해 제출한다.

투자 지출

- 주정부 사법 행정부를 위해 대규모 투자가 실행되었다; 추가적인 투자 확대가 계획 중

이다.

- 브란덴부르크주와 작센주, 작센-안할트주는 그 내용을 문서로 요약해 제출한다.

컴퓨터(EDV) 장비

- 신연방주들은 주정부 사법 행정부의 컴퓨터 장비를 광범위하게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베를린을 제외한 모든 신연방주 주정부는 이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제출한다.

토지대장청에 관한 현황

- 베를린을 제외한 모든 신연방주 주정부는 토지대장청의 인력 및 사무 공간의 변화에 관한 내용을 문서로 제출한다.
-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와 작센-안할트주에서는 토지대장청(Grundbuchämter)과 토지등기소(Katasterämter)가 통합되었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에서는 여전히 분산되어 있는 토지대장청들을 지역법원에 지역별로 편입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12. Wahlperiode. Drucksache 12/6854, S. 324-329

문서 번호 181

브란덴부르크주 1994 유아-청소년 보고서

1994년 2월 22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교육·청소년·체육부

내용_

브란덴부르크주의 첫 번째 유아-청소년 보고서의 다음 부분은 지난 3년간(1990-1993)의 청소년지원시스템(Jugendhilfesystem)의 발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그때까지 이루어진 청소년 지원 관련 재건 상황(Aufbaustand)에 대해 기술되어 있고 차기 연도를 위한 전망이 제시되어 있다. 청소년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도입부에 묘사되어 있다.

출처_ Landtag Brandenburg, 1. Wahlperiode, Drucksache 1/2788

문서 번호 182

라우지츠지역의 갈탄 탄광 보존을 위한 정부 성명에 대한 브란덴부르크 주의회의 토론

1994년 3월 3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경제기술부 장관 발터 히르헤,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의원 다수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발표한 라우지츠의 갈탄 탄광 보존을 위한 성명에 대해 주의회에서 토론한 것이다. 주정부의 경제 장관이 성명을 통해 라우지츠지역 갈탄 탄광의 생산계획 및 경영을 위한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통일조약의 과도기 규정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주정부의 입장에서는 라우지츠지역 탄광들에 대해 친환경성 검사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라우지츠 갈탄생산 회사가 그런 검사작업을 진행할 수는 있다. 경제 장관 히르헤는 나아가 라우지츠 갈탄생산 회사가 컨소시엄에 매각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업의 민영화과정에서 주정부가 회사의 이사회에 소속되어 주정부의 이해관계를 대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Brandenburg, Plenarprotokoll 1/88, S. 7204-7217

문서 번호 183

튜링겐 고궁 및 정원재단법

1994년 3월 10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 주정부

내용_

이 문서는 튜링겐주의 고궁 및 정원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으로 일명 고궁 및 정원재단법으로 불린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법은 제2조에서 재단의 목적이 재단을 통해 역사적, 예술사적, 문화재 보호와 풍광 보호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문화유적의 관리라고 명시되어 있다.

재단의 기구는 재단 이사회와 이사장으로 구성된다. 재단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을 결정하는 재단 이사회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실무그룹과 전문가자문위원회의 도움을 받는다. 기초자치단체 실무그룹을 통해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인지되게 된다. 튜링겐 고궁 및 정원재단은 법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색채를 강하게 띤다. 전문가자문위원회는 전문가위원회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재단의 다른 모든 기구들을 자문해 주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이 법에는 일단 고궁과 정원을 포함하여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유적들 30개를 재단의 소유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재단의 관리대상이 될 수 있는 문화유적의 수가 제한된 것은 아니다. 재단의 목적에 따르면 그리고 재단과 튜링겐의 문화재보호청 간의 밀접한 협력 관계를 명시한 일련의 규정에 따르며 문화재단은

문화재와 예술품들이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또는 예술사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특별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문화재와 예술품들을 재단의 소유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안의 부록에는 튜링겐 7개 지역에 재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주정부 소유물의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_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en Freistaat Thüringen, 1994, Nr. 9, S. 265, 284-287, Ausgabetag 17.03.1994

문서 번호 184

신연방지역 에너지 공급에 관한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토론

1994년 3월 24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브란덴부르크주 경제기술부 장관 발터 히르헤,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의원 발터, 티어제, 비스키, 리츠만, 베트슈타트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 주의회에서 신연방지역의 에너지 공급 분야의 민영화 협상에 관해 논의한 것이다. 베를린-니더작센으로 이어지는 에너지 공급 노선은 유럽의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만 이용하고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의 에너지 공급은 서독지역의 에너지 회사가 아니라 대부분 라우지츠지역의 갈탄 채굴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나아가 프라이에후펜시에 있는 갈탄 연탄공장의 폐쇄를 막아야만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Brandenburg, Plenarprotokoll 1/90, S. 7424-7429

문서 번호 185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문화예술 및 예술가 현황-주의회 질의에 대한 정부 답변

1994년 4월 12일

담당자 / 기관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사민당 의원,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정부 문화부

내용_
이 문서는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지역의 문화예술 현황에 관한 주의회의 회의에 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민당은 정부의 문화정책이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의 지역 정체성을 새로이 구축하고 민주적 사고를 정착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1992년 5월 6일과 1993년 1월 20일에 발표된 정부 성명에서는 문화와 관련된 주제가 마치 부수적인 것처럼 간단히 언급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가 기본 원칙과 발전계획 및 구체적 방안, 재정조달,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제도적 지원 방향, 문화예술 현황 그리고 국내적, 국제적 협력 등에 관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를 요구하였다.
그에 대해 주정부는 국가가 문화예술을 계획하거나 규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줄 수 있을 뿐이라고 답하였다. 이를 위해 주정부는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며, 특히 1995년 1월 1일 자로 연방정부로부터 제공되는 과도기 지원이 종료되고 1995년 1월 1일 자로 연방주들 간의 재정균형배분의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면 그러한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예술의 경우 거의 전 분야에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폴란드 접경지역의 경우 문화재와 기념물의 보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하였다. 1991년에 도입한 문화정책은 과도기 정책의 지침이지만 확대된 문화정책을 도입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주 소유의 시설로 박물관과 슈베린의 아카이브, 기념물관리청, 외에 궁전, 예술극장 등 다양한 문화적 건물이 속한다. 나아가 통일조약에 따른 지원과 문화기반 유지와 문화재 보호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문화부에서 관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주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예술극장과 박물관, 음악학교에 대한 제도적 지원, 문화예술 영역의 프로젝트 지원 및 문화재 보호 사업 등이다.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인원은 총 228명이라고 하였다.

출처_ Parlamentsarchiv des Landtags Mecklenburg-Vorpommern, 1. Wahlperiode, Drucksache 1/4308

문서 번호 186

정부 의회입지 배분과 관련한 베를린/본 법

1994년 4월 2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수도 베를린, 연방시 본, 본 지역, 연방정부

내용_
연방수도 베를린과 연방시 본 간의 업무 분할
- 연방정부의 핵심 영역은 베를린으로 이전, 특히 연방의회와 연방정부

- 본에 남는 분야: 교육, 학술, 문화, 연구 그리고 기술, 전기통신, 환경, 보건, 식품, 농업과 산림, 개발도상국 경제 협력, 국방
- 부처의 이전 이후 본에 남은 부처 공무원을 위한 적절한 보상
- 모든 부처는 본과 베를린에 본청 또는 외청을 둔다
- 여러 개의 연방관청과 재단, 연구소 단체가 본으로 이전

출처_ Bundesgesetzblatt, Teil I, 1994, Nr. 27, S. 918-921

문서 번호 187

'행정개혁' 보고서: 작센-안할트 행정의 새로운 조직화를 위한 제언

1994년 5월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 주의회, 앙케이트위원회

내용_

- 작센-안할트의 주의회는 능률적이고 시민에 친근한 행정을 위한 기준을 개발하고 현재의 행정 체계를 검토해 새로운 조직화를 위한 제언을 제출하게 될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대체로 위원회는 '더 작은 국가' 그리고 대신 '더 많은 지방자치행정'을 실현할 것을 제안했는데, 여기서 업무수행의 민영화 역시 토론되었다.
- 위원회는 현대적인 새로운 행정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출하고 검토 대상 분야들에 대한 총 136개의 구체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출처_ Landtag von Sachsen-Anhalt, Bericht der Enquete-Kommission „Verwaltungsreform", Magdeburg, Mai 1994.

문서 번호 188

슈톨페 조사위원회 보고자료 1/3

1994년 5월 30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조사위원회 1/3,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부의장 라이하르트 차르넥코프,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내용_

일부 언론 매체에 의해 만프레드 슈톨페가 동독의 슈타지와 접촉이 있었다는 것이 보도된 후, 브란덴부르크 주의회는 1992년 2월 12일 기민당 원내 교섭 단체 소속 의원 20명의 발의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총리뿐 아니라 52명 이상의 증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총 151시간에 걸친 27회의 공개 심문을 실시하였고, 35개에 달하는 서류 자료를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조사위원회는 압도적으로 슈톨페가 슈타지의 공식요원이었거나 비공식요원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동시에 확실한 것은 그가 슈타지의 양해에 따라 의도적으로 슈타지 요원의 공통적인 '활동규칙(Spielregel)'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회 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그러나 소위 말하는 1994년 5월의 협력했다는 비판에 대한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 슈톨페를 부담으로부터 해방시켰는데 신호등 연정은 그에 대한 평가를 1994년 초에 이미 중단하였다.

출처_ Landtag Brandenburg, 1. Wahlperiode, Drucksache 1/3009

문서 번호 189

소련군 서부군단 부대 시설 및 부지 매각법-브란덴부르크주령

1994년 6월 3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서독, 소련군 서부군단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부가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에 무상으로 이양한 소련군 서부군단의 군부대 부지의 이용에 관한 규정이다. 그에 따라 군부대 부지 및 시설은 주정부의 재무부가 특별 재산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군부대 부지는 주택공급,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등 다양한 목적에 부합하게 이용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에 따라 주정부는 토지개발과 관리를 위해 주정부가 소유하는 민간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이 법에는 이 회사의 운영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_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Brandenburg, Teil I, 1994, Nr. 13, 08.06.1994, S. 170-171

문서 번호 190

튜링겐 문화의 발전에 관한 질의에 대한 주정부 문화 장관의 답변

1994년 6월 9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 주의회 사민당, 튜링겐 주정부 학술·예술부

내용_

이 문서는 튜링겐의 문화 발전과 관련하여 주의회의 자민당이 제출한 34개의 질문에 주정부가 답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튜링겐주 헌법의 전문 첫 문장은 이 지역의 주민들이 문화적 자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헌법을 만들었다고 쓰여 있다. 주정부는 풍부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그것을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을 중요한 두 개의 과제로 받아들였고, 통일 이후 문화의 기본적인 틀이 붕괴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통일조약의 35조가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조항에 따라 연방정부는 1991년에서 1993년 사이에 튜링겐주의 문화 영역에만 2억 6천 8백만 마르크를 지원했다. 튜링겐 주정부는 문화 영역의 재정부담이 얼마나 높을 것인지 일찍이 알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었다. 현재 튜링겐 주정부는 문화 관련 예산의 50%를 부담하고 있다. 주정부는 특히 문화유산의 관리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자치단체들을 도와주고 있다.

통일 이후 몰수된 동독 대중 정당의 재산 2억 5천만 마르크 중에서 튜링겐주에 배분된 금액은 3천 9백만 마르크이다. 이 금약은 튜링겐 주정부가 예상했던 4천 9백만 마르크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다.

원칙적으로 연방정부가 신연방주의 문화를 위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어느 한 시점에서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주정부는 제도적 교류를 통해, 또 매년 작성되는 통계자료를 통해 튜링겐주의 문화 인프라에 관한 전체적인 정보를 얻고 있다. 문화행정 직원의 교육 및 연수는 기초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업무이다. 1999년에 유럽 문화 수도로 지정된 바이마르시의 행사 준비를 위해 주정부의 문화부와 바이마르시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자문회의를 구성했다.

이 문서에는 튜링겐주가 문화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사업과 유럽 연합을 통해 지원받는 문화사업의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_ Landtag Thüringen; http://www.parldok.thueringen.de/ParlDok/dokument/10765/die-entwicklung-der-kulturlandschaft-in-th%C3%BCringen.pdf, abgerufen am 30.03.2016

문서 번호 191

토지개발 및 공개입찰 관련 문제의 검토를 위한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조사위원회 1/5의 (보완된) 부분 및 중간보고서

1994년 6월 14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조사위원회 1/5 사민당 페터 무샬라 의원, 브란덴부르크주 전 주택·건설·교통부 장관 요헨 볼프, 도시건설·주택·교통을 위한 브란덴부르크 주개발회사(LEG), 부동산 판매업자 악셀 힐페르트

내용_

이 문서는 1993년 9월 21일 브란덴부르크주 주의회의 기민당의 발의로 설치된 토지개발 관련 부정 문제를 검토한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이다. 조사위원회는 전 도시개발/주택/교통부 장관 요헨 볼프(Jochen Wolf, 사민당)와 같은 부의 직원, 브란덴부르크주의 도시건설/주택/교통을 위한 주개발회사(LEG)의 직원에 대해 제기된 비판, 토지 관련 업무와 공공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행동하였다는 비판이 얼마나 맞는지 조사했다.

출처_ Landtag Brandenburg, 1. Wahlperiode, Drucksache 1/3012

문서 번호 192

신연방주지역의 행정 재건

1994년 6월 17일

담당자 / 기관_ 클라우스-헨닝 로젠, 연방내무부

내용_

신연방주지역 행정 분야의 인력 지원

긴급 자가 구제를 위한 지원

- 구서독 출신의 인력 파견을 통해 신연방주지역의 행정 재건을 대규모로 지원하였다.
- 구서독 출신의 공무원들이 신연방주지역에서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관심을 보이거나, 신연방주지역의 새로운 관직에 부임하지 않으려는 사례가 있었다. 몇몇 구서독 출신의 공무원들은 업무를 너무 완벽히 처리하려는 경향이 심해 업무 처리 속도가 느렸으며, 관리직에는 구동독 출신의 공무원들이 매우 적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평가해 볼 때, 협력은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자치 행정 구축

- 구서독 측의 지원이 없었다면 구동독의 행정은 지금처럼 신속히 재건될 수 없었을 것이다.
- 과거의 구동독 엘리트들은 새로운 행정 재건에 참여할 수 없었다.
- 1992년 구동독 행정에서 근무한 직원 수는 총 170만 명에 달했다. 이 중 3만 5천 명이

구서독 출신이었다.

직급 강등

- 구동독 행정의 인력은 과잉 상태였다.
- 구동독 행정 인력의 대부분이 인수되었다.
- 몇몇 구동독 행정 인력들은 과거보다 낮은 직급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
- 구동독에서 시민 한 명당 배정된 인력은 구서독과 비교해 여전히 1/3이나 높다.

자매결연

- 연방정부는 4,200개의 관청을 재건하였다. 이를 위해 신연방주지역에서 약 420,000명의 직원들이 인수되었다.
- 구연방주들은 자매결연을 통해 8,500명의 직원을 파견하였다.

동서 간 활발한 교류

- 초기에 맺어진 지자체 자매결연은 40개였으며, 현재는 2,000여 개로 확대되었다.
- 10,000명의 구서독 출신 공무원들은 구동독 지자체로 파견되었다.
- 연방정부는 신연방주지역으로 파견된 구서독 공무원들의 낮아진 수입을 보충해 주었다. 이를 위해 1994년에는 1억 7천만 독일 마르크가, 1993년에는 1억 8,100만 독일 마르크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 연방정부는 자체 직업교육 기관을 통해 1992년 1만여 명의 젊은이들을 교육하였다.

출처_ Das Parlament. 17.06.1994. S. 10

문서 번호 193

연방의회 총회 토론: 독일통일과 동부 재건 상황에 관한 자료

1994년 6월 23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연방의회 다수 의원, 연방정부, 연방정무부, 연방수상청장 프리디리히 볼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주 주정부의 내무부가 동독 비밀경찰로 활동한 사람의 채용문제에 관해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주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먼저 주의회가 브란덴부르크주의 내적 평화와 안전을 위해 슈타지 활동에 대한 검증과정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고, 주정부가 그에 답변하기 위해 작성한 초안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조약에 따라 모든 공직자들은 민주적 행정기구에서 활동하기 위한 결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결격 사유를 검증하기 위한 기준은 투명하며 모두가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검토를 요한다. 모두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문서는 연방정부가 통일 이후 처음으로 제출한 광범위한 독일통일보고서를 두고, 연방총회에서 있었던 독일통일과 동부지역 재건에 관한 토론의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민당의 요하네스 니시 의원은 1994년 한 해만 해도 신연방주를 위해 175억 마르크라는 엄청난 재정지원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통일은 40년 동안 이어진 사회주의 체제의 잔재가 모두 제거된 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신연방지역은 유럽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보여 주는 지역이다. 구동독은 콜 수상이 약속한 번영하는 풍요로운 지역으로 큰 걸음을 나아갔다.
볼프강 티어제 사민당 의원: 정부는 구동독 주민의 신뢰를 악용하고 있다. 동독에서 40년 동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병적인 낙관주의를 견디어 왔는데' 이제 다시 그런 상황을 견디라고 한다. 지금 상황은 최악이지, 그것이 아니라고 억지를 부릴 필요가 없다. 7~8%의 경제성장률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아야만 한다. 경제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다. 구동독지역의 일자리 중에 53%가 4년 사이에 사라졌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 DIP, Plenarprotokoll 12/235

문서 번호 194

수도재정지원조약

1994년 6월 3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베를린주

내용_

수도 기능의 수행에 관한 연방정부와 연방 수도 베를린의 협력 내용
-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베를린은 사회 기반시설과 문화 그리고 특별 부담을 위해 13억 마르크의 지원금을 받는다.
- 연방정부는 베를린시의 교통 프로젝트에 약 10억 마르크를 제공하고 동참한다.
- 1996년부터 1999년: 베를린의 특별 부담을 위해 6천만 마르크를 일회적으로 지원하고 문화를 위해 6천만 마르크를 지원
- 문화 분야에 베를린과 연방에서 각 3명씩 지명하는 자문회의를 구성하며, 자문회의의 의결은 만장일치로 한다.

출처_ Landesregierung Berlin; http://www.berlin.de/imperia/md/content/rbm-skzl/hauptstadtvertraege/hauptstadtfinanzierungsvertrag_940630.pdf?start&ts=1108638354&file=hauptstadtfinanzierungsvertrag_940630.pdf

문서 번호 195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헌법재판소법

1994일 7월

담당자 / 기관_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정부,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주의회

내용_

이 법은 1994년 7월 19일에 도입된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 주헌법재판소에 관한 법이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업무 영역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은 1995년 12월 20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출처_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Mecklenburg-Vorpommern, 1994, S. 734

문서 번호 196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첫 선거회기에 대한 각 부서 관련 평가(1990-1994)

1994년 7월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의 모든 해당 부서, 할슈텐베르크 교수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1993년 11월 29일 내각회의를 통해 주정부의 조직 구축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결정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1994년 7월에 할슈텐베르크(Halstenberg) 교수가 최종적으로 묶어서 주의회에 제출했다. 첫 회기 간의 각 부서의 업무 성과는 25개의 정책 영역으로 구분되어 자세하게 잘 정리되었다. 이러한 보고서는 정부가 구성되어 1992년 재건 프로그램이 본격 시작된 후 각 부서의 다양한 발전 상황과 1994년 현재의 해결 과제에 대하여 보여 준다. 이를 넘어 할슈텐베르크 교수는 다음 선거회기에서 지방정책으로 실행될 내용에 대한 새로운 조망을 제시한다.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1100 Nr. 411

문서 번호 197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첫 선거회기에 대한 각 부서 관련 평가(1990-1994)-도입

1994년 7월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의 모든 해당 부서, 할슈텐베르크 교수

내용_

할슈텐베르크 교수는 이 자료를 통하여 주정부가 완료한 계획과 재건 프로그램, 1차 회계연도 내에 완료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계획을 11개 정책 분야의 사항으로 제시하였다. 단일한 법적, 기본법적 질서, 경제통합, 사회적 안정은 이미 이룩되었다. 사회간접자본은 계속 추가적이며 효과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브란덴부르크에서 주 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공동체 감정(Gemeinschaftsgefühl)이 빠르게 생겨나고 있다. 브란덴부르크주는 통합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정치적 통합을 빠르게 성장시켰다. 주의 정책은 주민의 이익과 필요에 기반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주정부는 또한 계속적으로 주민 친화적 행정 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규모 지역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작은 부속 지역의 이익과 관심 또한 동등한 수준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익과 관심이 세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주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면 단위 지역의 다양한 관계를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 주 전체 지역을 포함하는 주 계획이 우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개발 계획이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 1,800개의 지방 건설계획 초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1100 Nr. 411

문서 번호 198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첫 선거회기에 대한 각 부서 관련 평가(1990-1994)-기본법의 법적·제도적 기본 근거

1994년 7월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내무부

내용_

브란덴부르크주의 기본법은 1992년 8월 21일 주민 결정을 통해 수용되었다. 주 기본법에 담겨있는 기본권들은 1차적으로 국가 폭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공간을 지킨다. 급격한 사회적·정치적 변혁의 상황에서 브란덴부르크주에 있는 개인의 사회적 안정을 위해 주정부가 노력하는 것이 주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하나의 포괄적인 지역 및 행정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 1991년 12월 31일 통과된 브란덴부르크주 공공기관 규정(Amtordnung)에 따라 브란덴부르크주 관공서의 설치 및 업무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기본법 공간이 창조되었다. 1993년 12월 16일에는 광역단위지역신구획법(Kreisneugliederungesgesetz)이 통과되었다.

이를 통해 성과 있는 광역 단위의 행정을 위한 결정적 토대가 구축되었다.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1100 Nr. 411

문서 번호 199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첫 선거회기에 대한 각 부서 관련 평가(1990-1994)-주 개발의 목적

1994년 7월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총리실

내용_

주 계획법 마련을 위한 도입법(Vorschaltgesetz)의 통과를 통하여 주 개발의 기본 토대를 창조하는 것, 주 개발을 위한 공간질서적 구상에 대해 합의하는 것, 브란덴부르크와 베를린의 주 병합에 대한 공동의 주 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1100 Nr. 411

문서 번호 200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첫 선거회기에 대한 각 부서 관련 평가(1990-1994)-재정정책적 여건(Finanzpolitischer Rahmen)

1994년 7월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재정부

내용_

재정부는 상기 보고서에서 솔직하고 냉철한 상황총괄평가 결과를 보여 준다:
첫 번째, 집중적인 재정정책이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는 대규모 공공 투자를 통해 새로운 경제 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요구되는 재정적 도전을 완수하기 위해서이다. 1993~1997년의 계획 시기에 300억 마르크가 투자 목적으로 주에 의해 준비되었다. 적극적 투자 노력에서 가장 중요한 중점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현대화된 국민경제의 재건을 통한 경제지원, 주택의 개보수 및 현대화, 추가적인 건설 활동(도로, 다리, 대학, 전문대학, 법원, 브란덴부르크의 법집행기관의 신설). 브란덴부르크의 경제 거점으로서의 특성 강화. 그러나 이런 투자지향적 재정정책은 높은 부채증가율(110억 마르크)과 1인당 부채(7,000마르크)를

가져왔다.
두 번째, 재정균형을 위한 조치는 성공적이었다:
a. '독일통일'기금의 마련(230억 마르크)
b. 공동의 과업 구동독 재건 프로젝트(Aufschwung Ost), (240억 마르크)
c. 지방 차원의 통합적 투자(15억 마르크), 1995년부터 신연방의 재정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연방의 재정안정화 프로그램
세 번째, 부채 상환이 추진되어야 한다. 순 부채가 59억 마르크에서 30억 마르크로 줄어들면, 1인당 신규 순 부채가 연간 1,300마르크에서 1,200마르크로 줄어들 것이다.
네 번째, 브란덴부르크의 국내 총생산(Bruttoinlandprodukt)이 1992년 5.2%로 성장하였다. 1993년과 1994년에는 비슷한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은 매우 좋은 출발 수준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력적인 성장 동력을 통한 것이 아니다. 경제 체제 변화 및 체제 개발에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얻은 결과들은 대체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a. 지역의 경제지원 도움을 통해: 300억 마르크가 넘는 투자 약속이 생겼고 이를 통해 23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b. 1993년 중반까지 브란덴부르크주는 52,500개의 제조업 등록 건수가 있었다. 중기업에만 170억 마르크가 투자되었다. 이를 통해 16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유지되거나 창출될 것이다.
다섯 번째, 지역의 경제 성장에 장애가 되는 문제 분야는 다음과 같다: 금속산업, 농업, 광산업, 임금 수준과 생산성 사이의 차이, 경쟁력 있는 제품의 부족, 어렵거나 잘못된 시장 진입, 불명확한 소유권문제
여섯 번째, 재정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앞으로의 재정규모(Finanzausstattung)에 맞춰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보조금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일곱 번째, 효율적인 주 행정 체제가 구축되었다. 브란덴부르크는 신연방주에서 가장 슬림한(schlangkeste) 주 행정 체제를 갖고 있다. 독자적 세 수입이 증가되어야 한다. 23%의 세금경감 비율이 1995년의 재정균형원칙에 따라 올라가야 한다. 인건비 지출이 계속 줄어들어야 한다.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1100 Nr. 411

문서 번호 201

주택정책 전문가 위원회: 신연방주의 주택정책(연방정부의뢰평가보고서)
1994년 10월 15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건설은행, 은행 관련 기관, 관련 위원회 위원

내용_

- 특별평가서의 요약본으로 출판되었다.
- 주택경제의 빠른 발달에도 불구 신연방에는 막대한 수요가 존재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주안점은 민영화에 있다.

-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안되었다:

– 임대료 수준에 관한 더 많은 유연성(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특별주택임대료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 신연방 주택의 시장가치, 임대료 수준의 조사 절차 개선
–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반환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투자에 대한 지원 실시
– 반환절차, 주택신축허가 절차의 신속 처리
– 세법의 개정

출처_ Gutachten der Expertenkommission Wohnungspolitik vom 15. Oktober 1994. Keine Ortsangabe. Erstellt im Auftrag der Bundesregierung.

문서 번호 202

1994년 11월 18일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의 정부 성명

1994년 11월 18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총리실, 브란덴부르크 주총리 만프레드 슈톨페

내용_

만프레드 슈톨페 총리는 정부 성명에서 앞으로 다가올 5년간의 주 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하였다.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미래를 지향하는 새로운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하는 것이 언급되었다. 주정부는 브란덴부르크주의 실업률을 10% 아래로 낮출 것이다. 이러한 의욕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정부는 주정부 프로그램 'Qualifizierung und Arbeit für Brandenburg'를 계속 도입할 것이다. 또한 실업률을 낮추고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 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그러한 정책을 위해 전체 주를 대상으로 한 조정적이고 통합적인 주택단지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출처_ Staatskanzlei der Landesregierung Brandenburg. https://www.brandenburg.de/media/1168/regierungserklaerung94.pdf (Stand 18.07.2018)

문서 번호 203

변혁 중인 도시들–신연방주에서의 지방자치행정 5년

1995년

담당자 / 기관_ 독일도시협회

내용_

- 1990년 1월 31일, 독일도시협회 의장단은 '독일위원회'를 결성하기로 결정했다. 이 위원회는 구동독 도시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초기 5년간 이뤄진 협력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 보고서에는 도시의 현 상황 진단과 요구 발견에 대한 내용이 있다. 협력은 제휴를 통해 지원되었는데 그것은 주로 초기 단계의 다음 사항에 적용되는 것이다:

– 물적 지원 조직
– 상담
– 계속교육 기회 제공
– 경험 교환
– 독일도시연구소를 통한 연구와 서비스

- 보고서에는 이러한 중점 사항의 실질적인 이행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협력을 통해 얻은 경험은 특히 다음의 세 가지 영역에서 상담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예산 및 행정의 안정
– 단위 지역 종류의 변경
– 구 단위 자치구역의 재구획

- 1993년부터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한 내용이 상담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출처_ DST (Deutscher Städtetag) Beiträge zur Kommunalpolitik, Reihe A, Heft 21, S. 55–70.

문서 번호 204

동독 출신 인력의 검증을 위한 브란덴부르크주의 고등 교육 기관의 조치

1995월 2월 22일

담당자 / 기관_ 포츠담대학의 인사위원회

내용_

상기 조사의 목적은 개인의 정치적 의견(politische Einstellungen)이 아닌 개인이 슈타지를 위해 활동한 적이 있는지 혹은 학교의 다른 직원 혹은 학생에게 개인적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데 있다. 브란덴부르크의주의 고등 교육기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단계의 절차를 시행하였다: 포츠담교육대학에 설치되어 있던 마르크시즘-레닌주의의 분과를 폐지하였고, 교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나머지 인력에 대한 통합적 검사를 실시하였다.

출처_ Rektorat der Universität Potsdam (Hrsg.). Dokumentation zur personellen Erneuerung der Universität Potsdam. Potsdam 1995

문서 번호 205

브란덴부르크주의 행정 재건 4년

1995년 3월

담당자 / 기관_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내무부 부국장 하인츠 쾨스터링, 브란덴부르크주

내용_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내무부 부국장이었던 저자는 체계화되고 간결한 논문에서 1990~1994년 4년 동안의 브란덴부르크 행정 재건 과정을 지켜본 증인으로서 성취된 일에 대한 평가를 내렸다. 핵심적인 질문은 서독의 모델, 특히 파트너 주였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모델에 입각하여 브란덴부르크주 행정 재건이 완수되었는가 아니면 브란덴부르크가 다른 혹은 하나의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걸어갔는가에 있다. 저자의 평가에 따르면 브란덴부르크주의 행정 체계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모델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브란덴부르크에 적합하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많은 부분을 브란덴부르크가 수용하였다.

출처_ Verwaltungsrundschau. Zeitschrift für Verwaltung in Praxis und Wissenschaft. 41. Jahrgang. Köln, 1995. S. 83-90

문서 번호 206

노동재판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를 위한 법률 초안-노동재판-노동신속화법

날짜 미상–1995년 중반 추정

담당자 / 기관_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노동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회

내용_

1990년 이후 노동재판이 필요한 건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많은 분쟁사건의 분쟁기간이 매우 길어짐에 따라, 노동재판 절차의 신속 처리를 위해 가능한 합리화조치를 취하여도 여전히 필요로 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출된 법안을 통해 노동재판 절차를 신속화할 수 있다.

출처_ Brandenburgisches Landeshauptarchiv, Rep. 1600 Nr. 208

문서 번호 207

1990/1991 동독 판사 재교육 비용 분담에 관한 행정 협정

1995년 7월 8일

담당자 / 기관_ 서독,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바이에른주, 베를린주, 브레멘 자유 한자시, 함부르크 자유 한자시, 헤센주, 니더작센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라인란트-팔츠주, 자를란트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내용_

서독 정부와 주정부들은 동독 출신의 판사 재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협정을 체결한다:

- 일반 코스와 속성 코스의 실행(행정법, 재정법,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 교육 비용은 원칙적으로 교육을 주최하는 주정부가 부담한다. 경우에 따라,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 교육 비용을 분담한다. 연방정부는 강사비의 절반을 부담한다.
- 주정부들은 연방정부에 1990년도분은 1990년 10월 1일까지, 1992년도분은 1991년 2월 15일까지 예상 비용에 대해 알린다.
- 행정 협정에 관한 보충 내용

- 형사법 분야의 과정은 가입 지역 출신의 판검사 및 앞으로 인수되게 될 판검사들을 위해 실시될 예정이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2280. S. 327-329

문서 번호 208

독일통일 5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바라본 생태환경 개선 및 발전에 관한 보고서

1995년 9월 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환경부

내용_

이 문서는 통일 5주년을 기념해서 신연방주의 환경 현황을 평가 분석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출발 상황

신연방주들은 극심한 환경 부담을 안고 있다. 40년 동안 지속되었던 동독의 계획경제는 자연자원의 무분별한 사용과 남용으로 인해 환경을 극도로 파괴시켰다. 동독의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단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구조적인 조정이 시행되지 않았었다. 환경 파괴가 심각한 영역에는 다음과 같은 분야가 속한다: 하천 시스템, 하수 처리, 지하수 공급, 대기오염, 쓰레기 처리, 산업 폐기물, 광업 폐기물, 군사 폐기물, 농업, 인류 건강에 대한 영향.

2. 개혁과 통일 이후 현대적 환경 보호 인프라 구조의 구축

- 1990년부터 1992년까지 긴급 원조 제공
- 환경 부담 감소를 위한 투자 프로그램
- 1,192개의 작은 프로젝트를 위해 6천 8백만 6천 DM 투입
- 유럽부흥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 ERP), 약 50억 DM
- 동부 재건 투자장려법(IfG), 66억 DM,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신연방주와 (동)베를린을 위한 연방 재정 지원금
- 유럽(EC)구조기금, 1991년부터 1993년까지, 30억 ECU, 신연방주와 (동)베를린을 위한 재정 지원금
- 유럽(EC)환경장려프로그램 LIFE,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총 4억 ECU, 편입지역에서의 혁신적 기술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

3. 전망

신연방지역의 환경문제를 많이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 및 공기 정화의 수준을 독일 전역에서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는 헌법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태학적 개선 및 발전의 분야에서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 환경 인프라의 구축 및 확장, 생산 제조업 분야의 현대화, 에너지의 공급, 대체 에너지원의 개발 및 에너지의 절약 그리고 특히 지속적인 환경 부담의 감소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중요한 것은 생태학적 개선 노력을 계속하면서 지금까지 달성한 것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출처_ Eine Information des Bundesumweltministeriums, Nr. 9/1995.

문서 번호 209

동부 재건-가야 할 길의 나머지 반-현황과 전망-신연방주 발전에 대한 연방정부의 보고

1995년 9월 2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연방의회

내용_

연방정부는 33쪽의 보고서를 통해 독일통일 현황과 동부 재건에 관해 연방의회에 보고하였다.

통일이 된 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신연방지역 건설이 완성되기까지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부 재건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긍정적이다. 신연방지역의 법적, 조직적 통합은 거의 완결되었다. 그에 반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경제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는 아직 달성되지 않았다. 1994년의 경제 성장률이 6.5% 그리고 1995년에는 8%로 신연방지역은 세계의 성장지역 중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에 속한다. 이러한 발전이 완만한 가격 인상률에 의해 동반되었다.

전체 독일의 국내 총생산에서 신연방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의 7.2%에서 1994년에 10.4%로 상승하였다. 그것은 몇 년이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매년 3%씩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활동 인구 일인당 국내 총생산을 근거로 산출한 전체 경제의 생산성은 1994년에 서독의 53% 수준이었다. 이것이 1991년에는 31%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신연방지역 경제의 자체적인 성취력은 여전히 낮다. 1991년과 1994년 사이에 연방과 주, 지자체, 유럽연합 그리고 사회보장보험의 예산에서 약 4,750억 마르크가 신연방주에 제공되었다. 신연방주는 1995년부터 개편된 연방주 간의 균형재정배분을 통해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게 되었다.

신연방지역 성장의 받침은 지속적으로 높은 투자의 역동성이다. 1991년에서 920억 마르크가 투자된 이래 신연방주의 시설 투자는 1995년에 2,100억 마르크에 달하였다. 그중에 1,700억 마르크는 외국에서 온 기업투자였다.

몇 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신연방주에 넓게 포진한 중소기업층이 형성되었다. 그것은 480,000명의 자영업자와-그중에 약 3분의 1이 여성-3백 2십만 명의 종업원 수가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 DIP, Drucksache 13/2489

문서 번호 210

독일통일 이후 5년-일자리 창출 및 보전 그리고 친환경적 발전의 장려를 위한 신연방주 내 기존 잠재력의 활용[직업교육 부분 발췌]-연방의회 민주사회당(PDS)의 대정부 주요질문에 대한 연방정부 답변

1995년 11월 2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연방의회 민사당, 연방정부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의회에서 민사당이 신연방주에서 이루어지는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제출한 질의에 대해 연방정부가 제출한 답변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조약에 의거하여, 과거 동독에서 취득했거나 국가적으로 공인된 직업교육 수료증 및 능력증명은 통일 이후 신연방주에서도 계속 유효하다. 연방노동청(BA)은 연방직업교육연구원과 공동으로 동독 내 직업교육 필요 직업군과 서독의 직업군을 서로 비교하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동독 체제하에서 인민 소유 산업체(VEI)에 소속되었던 마이스터('VE'-Meister)들은 자영업적 수공업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신연방주들 내 중산층 경제를 신속하게 재건하기 위해 인민 소유 산업체(VEI) 소속 마이스터('VE'-Meister)들은 다른 마이스터와 동등하게 자영업적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

1994년도 2월부터는 사회복지 부문에 있어 적응능력 평가가 직장 내에서 시행되었다. 이 평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업무 분야에 종사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직업교육 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동시에 신연방에서는 동독 체제에서 상업 및 기업경영 전문학교를 졸업한 전문 직업군에 대한 적응능력 평가가 시행되었다. 이 외에도 '자격능력-능력계발-관리' 프로젝트(QUEM)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변화 중인 신연방주들 내에서 자격능력을 시장경제식으로 변경하고 이에 적응시키는 데 지원을 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신연방주에서는 1994년 말에 총 1,040,853명의 근로자가 실업 상태였다. 그중 213,127명은 직업교육을 마치지 못한 상태였고 827,726명은 직업교육 수료자였다. 후자 중 38,477명은 대학 졸업자였고 7,891명은 전문대 졸업자 그리고 65,780명은 전문학교 졸업자였다.

출처_ Parlamentsdokumentation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3/3123

문서 번호 211

동독지역의 새로운 연구 환경-그 특징 및 신연방주 경제에 대한 영향

1996년

담당자 / 기관_ 베르너 메스케, 학술연구학회

내용_

이 문서는 1996년에 발표된 논문으로 신연방지역의 연구 환경 변화가 경제에 준 영향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연방지역 경제의 변환에 있어 신기술이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신연방지역의 체제 변화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대부분 독일 사회 내부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동·서독지역의 삶의 질을 균등화하는 문제는 1950년대 말 프랑스령이었던 자를란트지역을 서독의 연방주로 통합했던 경험과 비교할 만하다.
구동독지역의 생산 연구 분야의 역량이 많이 와해되었다. 특히 서독에 이미 유사한 것이 존재하는 분야에서는 그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심지어 기계설비 생산과 같이 동독의 산업생산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분야까지도 서독의 경쟁 회사들이 정치적, 경제적 압력을 행사해서 폐쇄하도록 만들었다. 그런 조치가 취해진 이유가 완전 고용이나 높은 경제성장보다 경제적인 생산 효율성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었다. 생산 연구 분야의 인력 이동 또한 아주 높았다. 통일 당시와 비교할 때 구동독지역 경제에서 약 20에서 25%의 연구·개발 부문 인력이 감소하였다. 대학 외 연구기관에서는 약 3분의 1 정도의 감축이 일어났다. 대학교들에서는 약 60%까지 인력 감원이 이루어졌다. 대학의 중간 연구층에서 절반 정도의 인력 감축이 되었다. 구동독지역의 연구·개발 부문에 남아 있는 연구인력의 80%는 500명 이하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중 40%는 심지어 100명 이하를 고용하는 회사에 근무한다. 통상적으로 취약한 자본적 토대 및 시장적 위치 때문에 이들은 고도의 투자를 요하는 생산품에 창의성을 발휘하거나 이를 실현할 능력을 쌓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독지역의 연구소들은 대부분 서독지역 기업들의 용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서독지역의 시장도 정체를 겪고 있다. 그로 인해 구동독지역 기업의 연구의 상당한 부분은 공적 지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구동독지역에 경쟁력 있는 지역 혁신 체제를 건설하는 것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출처_ Meske, Werner: Die neue ostdeutsche Forschungslandschaft. Besonderheiten und Konsequenzen für die Wirtschaft der neuen Länder, in: Greif, Siegfried, Hubert Laitko und Heinrich Parthey (Hrsg.). Wissenschaftsforschung. Jahrbuch 1996/1997. Berlin

문서 번호 212

신연방주 재무 장관의 '6개 명제' 보고서

1996년 3월 29일, 4월 1일

담당자 / 기관_ 5개 신연방주 재무 장관

내용_

이 문서는 통일 이후 신연방주 발전 상황을 분석하여, 1999년부터 경제정책적 지원 조치를 동결할 수 있다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견해에 대한 논의에 대한 보고서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무 장관은 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구동독 재건 프로그램(Aufbau Ost)'을 통

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 서독 경제와의 격차는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 예산 상황에 대한 5개의 표를 통해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예산 규모, 세수입, 인건비 지출, 투자 지출, 순채무 비율, 주와 기초자치단체 지역의 부채에 대해 다루었다.

출처_ Sechs-Thesen-Papier der ostdeutschen Finanzminister zur wirtschaftlichen und finanzpolitischen Situation der neuen Bundesländer, o.O. 1996; Interner Bericht der Finanzminister vom 29. März/1. April 1996.

문서 번호 213

장벽과 동서독 경계선의 대지를 원소유주에게 매매하는 것에 관한 법(장벽대지법(Mauergrundstückgesetz)-장벽법(MauerG))

1996년 7월 15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연방회의

내용_

이 문서는 분단으로 인해 경계지역으로 동독 정부에 의해 수용되었던 토지에 관한 법이다. 일명 장벽법으로 불리는 이 법을 통해 경계지역의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매입: 원소유주 또는 그의 권리 승계인은 과거에 개인의 소유였지만 이제 연방의 소유가 된 장벽과 동서독 경계선의 대지를 계약 체결 시점 시장 가격의 25%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다. 단, 연방에서 해당 대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급하게 사용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 공익을 위한 사용: 연방에서 본 대지를 공공 목적을 위해 급하게 사용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매입신청을 거절한다.
3. 신청기한: 재매입 신청서는 1997년 1월 31일 전에 자산가치가 속한 관할구역의 주 재무부에 제출한다.
4. 기금: 통일조약 제3조에서 명시한 지역에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목적을 장려하기 위한 기금이 조성된다. 기금은 본 법에 의거하여 승계인에 대한 급부 및 부대비용을 공제한 장벽과 동서독 경계선의 대지에 대한 양도 수입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

출처_ Mauergrundstücksgesetz vom 15. Juli 1996 (BGBl. I, S. 980).

문서 번호 214

작센주의 대중교통 수단 현황에 관한 질의에 대한 주정부의 답변

1996년 10월 16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주 주택·도시건설·교통부, 작센-안할트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작센-안할트 주의회의 사민당이 다양한 교통 프로젝트의 건설 현황과 재정조달 문제에 관해 질의한 것에 대해 주정부가 제출한 답변이다. 특히 '독일통일 교통 프로젝트'의 현황에 대해 질문이 집중되었다. 교통 프로젝트는 근거리, 국도, 지방도로, 지역도로, 수로, 자전거도로, 항로 등의 모든 공공교통을 포함한다. 그 외에 기획 권한의 소재에 관해 질의했다. 주정부의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통정책은 원칙적으로 수요, 도시개발 및 주민들의 삶의 조건을 고려한다. 작센-안할트의 교통정책은 주민 참여를 통해 이루지는 모범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통계표와 목록을 통해 자세히 답변했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Sachsen-Anhalt, Drucksache 2/2761

문서 번호 215

경직성과 적응 유연성 사이-체제 붕괴와 이익조정 상황에서 1991-1994 작센-안할트와 작센의 주택정책 지원 프로그램 실행

1997년

담당자 / 기관_ 작가 딕 마이젤, 작센주와 작센-안할트주 지자체

내용_

- 주거문제는 해결을 필요로 하는 가장 긴급한 과제에 속한다. 할레와 같은 몇몇의 도시들은 건축 자재가 너무 낡아 긴급한 국가지원 프로그램을 필요로 했다. 이 문건에서는 서두에 이어 '결과에 대한 고찰 그리고 설명 가능성'이라는 책의 장에서 2개의 균형 도시라고 할 수 있는 할레와 드레스덴의 주택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다룬다. 체제, 실행상의 문제들 그리고 행위자들(Akteure)에 대해 기술되어 있고 행위자와 결정자들의 반응에 대한 내용도 다루어졌다.

출처_ Dirk Meisel: Zwischen Restriktion und Anpassungsflexibilität. Die kommunale Implementation wohnungspolitischer Förderprogramme 1991-1994 in Sachsen-Anhalt und Sachsen im Kontext von Umbruch und Interessenvermittlung. Opladen: Leske + Budrich, 1997, Seiten 11-13 und 273-301.

문서 번호 216

기본 지침에 따른 주 행정구조의 재건

1997년

담당자 / 기관_ 슈파이어 독일행정대학 정부학, 공공법, 행정학과 교수 클라우스 쾨니히

내용_

1. 행정 전환과 통합

1.1 행정 전환의 계획

- 신연방주지역의 행정 전환은 광범위하고 민주적인 체제 전환의 일부였다.
- 국가의 권력 독점이 문제 되지 않았다.

1.2 행정의 비중앙화

1.2.1 연방화: 연방화는 통일을 위한 기본 조건이었으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동독 정부의 최우선 목표였다.

1.2.2 지자체화: 동독의 지역 행정은 현대적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1990년의 지자체 헌법은 그 실효성을 입증하였다.

2. 주정부의 조직

2.1 부(Ministerium): 특히 부(주당 평균 9개의 부)의 재건은 전임 기관이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었다.

2.2 주총리실 (Staatskanzlei): 새로운 주총리실을 위해 구연방주에서 각 70명의 직원이 파견됨(니더작센주, 1990년 79명, 헤센주, 1991년 81명). 주정부 간 자매결연은 양자적 혹은 다자적으로 체결되었다.

3. 부속 관청의 조직

3.1 종합 관청

3.1.1 지역 행정청(Regierungspräsidium): 지역 행정청(현장-업무)들을 통해 주의회(Landrat)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단계 주정부 행정이 지속적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

3.1.2 주정부 행정청: 튜링겐주의 주정부 행정청은 거의 모든 주정부의 부들을 관할하고 있었으며, 2단계와 3단계 간의 다리 역할을 하였다.

3.1.3 중간 단계의 포기: 메클렌부르크-포르폼메른주와 브란덴부르크주에서는 민심과 재정을 이유로 2단계 행정이 구축되었다.

3.2 특별 관청

- 메클렌부르크-포르폼메른주에서는 두 개의 특별 관청이 설치되었다.
- 브란덴부르크주에서는 상급 주정부 관청과 하급 특별 관청들에 과도한 업무가 주어졌다.

4. 행정 관청들의 내부 조직

4.1 일반: 구서독의 모델(관리자급, 부서 및 국의 구조)

4.2 주정부 총리실: 3개 부-I. 중앙 부서; II. 주 사안; III. 홍보 업무

5. 행정의 현대화

5.1 구동독의 유산과 모범 사례: 구동독의 행정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변혁기부터의 전환 과정은 현대화로 간주된다. 시간적 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사전 준비도 없었다. 계속 유지된 것은 신탁관리청뿐이었다.
5.2 독립성과 혁신: 신연방주들의 행정은 구서독적일 뿐만 아니라, 프로이센적이며, 유럽적이기도 하다. 실험을 감행할 시간은 없었으나, 구서독지역에서보다는 개선의 여지가 많았다.

출처_ H. Wollmann et al., Transformation der politisch-administrativen Strukturen in Ostdeutschland. Wiesbaden 1997, S. 223-253

문서 번호 217

회복과정에 있는 작센-안할트-작센-안할트 개발경로의 경제적 내구성

1997년 1월

담당자 / 기관_ 위탁자 경제부, 할레경제연구소 소속자가 연구 책임 담당

내용_

이 문서는 경제, 화폐, 사회통합 6년이 지난 시점에서 통일된 독일의 경제와 관련하여 작센-안할트가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분석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경제적 회복과정, 체제변화의 내구성
- 추진된 경제정책의 결과
- 공간 체제, 잠재력
- 적응 및 혁신 능력
- 수요 잠재력

• 지금까지의 경제적 성과가 매우 컸지만, 다른 주와 비교할 때 작센-안할트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다(일반적인 1인당 국민 총소득면에서 구동독 평균보다 3.1% 낮은 수준임). 이러한 경제적 성과들은 다양한 부문과 지역에 대한 조사와 도표들을 통해 분석되었다. 분야별로 구획화된 개입이 문제였는데, 이는 선택적인 체제 수립 정책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기반 확대가 중요하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자기자본 비율 강화를 통해 기반 여건 조성을 지원하거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상담 인프라 체제를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투자촉진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New German Länder Industrial Investment Council)는 서독기업이나 외국계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연계하여 특정한 지역을 위한 투자자를 관리해야 한다.
'책임감 있는' 임금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몇몇 분야에서 가치 창출 수준보다 임

금이 더 높다"는 사실은 구동독 회복과정이 갖고 있는 취약성을 보여준다(p.35).

출처_ Sonderausgabe von Wirtschaft im Wandel,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 1977.

문서 번호 218

교통정책에 관한 작센-안할트 주의회의 회의

1997년 2월 17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주 주택·도시건설·교통부 장관 위르겐 하이어, 작센-안할트 주의회 의원 다수

내용_

이 문서는 작센-안할트 주의회의 기민당이 통일 이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장애 요인에 대한 질의에 대한 주정부 교통부의 답변이다. 기민당은 주정부의 교통 프로젝트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연방정부가 진행하는 '독일통일 교통 프로젝트'를 위한 재원이 부족한 것은 주정부의 책임이라고 하였다. 작센-안할트주에는 주정부가 관리하는 국도가 너무 부족하고 근거리 대중교통에 대한 책임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들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정부 교통부 장관은 연방정부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자신은 교통정책의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일자리 창출, 장기적으로 경제에 이익을 주는 것 및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사민당의 의원은 그와 관련해 주정부의 교통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야당인 기민당이 교통정책 방안이 구식이며, 교통정책이 무책임한 투자정책으로 변질되었다고 비난했다.

출처_ Landtagsdokumentation Sachsen-Anhalt, Plenarprotokoll 2/56, S. 4167-4184

문서 번호 219

브란덴부르크 역사 건축물 보호를 위하여

1997년 7월 24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학술·연구·문화부

내용_

주정부의 문화정책의 기본원칙, 중점사항, 전망, 문화 분야의 발전상황(Entwicklungsstand)과 전망: 극장, 음악, 조형예술, 사회문화, 문화적 교육, 문학, 도서관, 기록보관소, 박물관, 문화재 보호, 기념 추모지. 다른 문화적 과제의 발전 상황과 전망: 소르벤인(Sorben)지역 문화예술협회 지원, 문화 투자 프로그램과 지원 프로그램의 혼합.

출처_ Landtag Brandenburg, 2. Wahlperiode, Drucksache 2/4307

문서 번호 220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사통당 독재 잔재 극복'/조사위원회 중간보고서-'역사 청산과 사통당 독재 결과 청산을 위한 독립적 공공 연방재단 설립'에 관한 중간 보고

1997년 9월 25일

담당자 / 기관_ 조사위원회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사통당 독재 잔재 극복'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의회의 조사위원회가 연방법을 제정하여 사통당 독재 정권의 탄생, 역사, 결과의 종합적인 청산, 민주적 정치문화, 독일의 내적 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 공영 연방재단을 설립할 것을 연방의회에 권고한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단에 관한 세부사항

- 재단의 소재지
- 재원 조달
- 재단 조직
- 사업 분야

출처_ Materialien der Enquete-Kommission „Überwindung der Folgen der SED-Diktatur im Prozeß der deutschen Einheit". S. 60-75.

문서 번호 221

1997년 고용전략 연간보고서

1998년 5월 26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브란덴부르크주 노동·사회·건강·가족부,

브란덴부르크주 기술과학부

내용_

1996년 시작된 일자리 전략이 1997년에도 3개 분야에서 계속 진행되었다:

- 부서 감독

콘셉트와 프로그램의 입안(예를 들어 여행업, 환경정책), 제안들의 설명, 주택단지 계획이나 건설 허가 등을 결정 단계에서 신속하게 처리, 여성이 많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에 이르기까지 주정부 부서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을 통해 우선적으로 경제개발을 위한 조건들이 창출되거나 개선되어야 한다.

- 사례가 될 만한 프로젝트들을 갖고 있는 중점 분야들

우선 14개의 중점 분야가 선정되었다. 그것들은 개별적 모델 프로젝트들의 실행, 고용효과의 최적화를 기대하게 하는 것들이다. 그러한 행동 분야들은 '성장 동력으로서 지식과 기술 이전', '미디어 경제 분야 및 원격 통신 업무(Telearbeit)', '불법고용근절'이다.

- 일자리 전략의 지역화

일자리 전략의 실행을 위해 지역들은 각종 조치/프로젝트의 결정과정에서 고용의 확대와 연계하여야 한다. 지역적 특성, 지역적 필요성, 지역적 잠재력에 대한 지식이 프로젝트를 명확히 식별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현장에서 혹은 주정부와의 대화에서 접착력 상실을 피하기 위해 판단 및 결정과정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지역 프로젝트를 지원해야 한다.

출처_ Landtag Brandenburg, 2. Wahlperiode, Drucksache 2/5322

문서 번호 222

국회의원 검증을 위한 튜링겐 법

1998년 6월 26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 주의회

내용_

이 법안은 튜링겐 주의회 의원들의 동독 슈타지 관련 여부 검증을 규정한다.
예전 검증과는 별도로 의원들은 자발적인 동의 없이 검증을 받게 된다.
이를 위해 주의회 대표회에서 위원회가 설치된다.
검증 절차가 기술된다.
검증 결과 주의회 의원의 동독 슈타지 협력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의원의 의석은 박탈된다고 주의회에서 의결한다.

출처_ Thüringisches Gesetz- und Verordnungsblatt GVBl 1998, S. 205

문서 번호 223

작센 세무행정 기구의 구축을 위한 지원에 관한 보고

1998년 7월 1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바이에른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내용_

이 문서는 신연방주 튜링겐의 세무행정 기구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행정 지원을 제공한 바이에른주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최종 결과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는 세무행정 기구의 구축을 위해 서독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의 현황과 채용된 공무원 그리고 업무연수에 관한 자료까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출처_ Oberfinanzdirektion Chemnitz, O 1002 - 59/2-St 11

문서 번호 224

1998 유아-청소년 보고서: 1권, I장(Band 1, Teil I)

1998년 9월 16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교육·청소년·체육부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주 주정부가 작성한 것으로 유아청소년정책을 다루며, 다양한 관할 부서를 포괄하는 행위영역(Handlungsfelder)과 프로그램, 조치들에서 주정부의 청소년 정책의 중점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브란덴부르크주의 농촌지역 젊은이들의 생활 환경과 전망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 폭력과 외국인 혐오 정서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 소녀와 젊은 여성들의 차별 해소 및 기회균등 지원 조치, 농촌개발의 지원, 가족정책, 학교정책, 문화정책, 교통정책, 스포츠 지원, 건강정책.

출처_ Landtag Brandenburg, 2. Wahlperiode, Drucksache 2/5664

문서 번호 225

대정부 질의: 1998년 12월 16일의 작센 정부와 '신연방주' 내각위원회의 회의

1998년 12월 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신연방주 특임관 롤프 슈바니츠

내용_

연방정부의 신연방주 특임관 롤프 슈바니츠(사민당)의 입장 표명:
수상이 앞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신연방주를 방문하여 주정부의 대표들과 만날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모임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지역의 문제, 특히 경제 상황과 노동정책의 상황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첫 번째 모임은 작센 주정부와의 모임이 될 것이다.
이 모임은 1998년 12월 16일 드레스덴에서 열릴 것이다.
총회의에서 이 주제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출처_ Archiv des Deutschen Bundestages – DIP, Plenarprotokoll 14/13

문서 번호 226

미래를 보장한다. 지방 단위 수준에서의 발전모델 개발을 위한 심층 연구

1999년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 내무부 장관에 의해 구성된 연구팀

내용_

- 통일 후 10년이 지난 1999년 3월, 내무부 장관은 하나의 연구팀을 구성하여 지금까지 구현된 지방자치의 발달과정을 연구하고, 더 나은 발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모델 개발을 위탁했다.
- 1990년 이래로 성공적인 것과 함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문제들은 연구와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1999년까지 1/3의 기초자치단체에 단 1개의 학교만 있었다.
- 이 연구팀은 기초자치단체와의 수차례 만남을 통해 현재 상황을 토론하고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특별 보고서 작성을 부탁했다.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한 1개 프로젝트팀이 있었다. 또 다양한 자료들이 논의되었고 이것은 연구팀의 보고서를 위한 밑그림을 제공했다. 다른 연방주의 발전 현황과의 비교는 문제를 예측하고 미래상을 계획하는 데 적절히 기여하였다(주정부 설문조사, p.38ff).
- 연구 결과에는 광역자치단체의 노력과 이를 통한 개선을 위한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_ Herausgeber des Untersuchungsberichts ist das Ministerium des Innern des Landes Sachsen-Anhalt, Magdeburg.

문서 번호 227

신연방주의 국가부채 문제

1999년 2월 1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주 재무부 차관보 칼-페터 샤만-팔리스, 작센-안할트주 재무부 국장 마르틴 쉬넬팅

내용_

이 문서는 킬의 세계경제연구소의 경제 분석지인 '경제 서비스'에 발표된 것으로 신연방주의 부채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신연방주의 조세수입은 지출보다 적다. 그렇기 때문에 신연방주 정부들은 긴축 재정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로 인해 구동독지역의 경제가 서독의 경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이 더욱 요원해졌을 뿐만 아니라 예산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신연방주의 부채가 급증하여 그것을 신연방주 주민 일인당으로 나누어 보면 서독의 수준에 이미 육박하였다. 그래서 1995년부터 신연방주에서 새로운 부채의 규모를 감소하는 정책이 실시되었다. 특히 장기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과제가 감소하였다. 신연방주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제대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오랜 기간 동안 서독의 연방주로부터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다.

서독의 지방자치단체들은 1997년에 국민 총생산의 18.4%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 반면에 구동독 지자체의 부채는 이 지역 국민 총생산의 약 31%에 달하였다. 그리고 1992년 이후 서독의 지자체의 수입이 지출보다 높은 반면 구동독의 지자체는 수입보다 더 많이 지출하였다. 구동독의 지자체들은 공공 예산을 투입하여 인프라 구조를 개선해서 지역경제의 힘으로 서독의 수준에 올라설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이런 과정이 완결된 후에야 구동독지역의 부채 수준이 안정화될 것이다. 이것은 해결하기 쉬운 과제는 아니다. 특히 구동독지역의 인프라 시설은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낙후되었다.

1992년부터 1997년 사이에 구동독지역의 지자체에 서독의 지자체에서보다 일인당 평균 2.2배 많은 재원이 투자되었다. 건설투자만 해도 주민 일인당 서독보다 197%가 많은 공공 재정이 투자되었다. 1992년에서 1997년 사이에 신연방주의 공공 재정의 77%가 부채에 의해 충당되었다. 반면 서독은 단지 25%만이 부채로 충당되었다. 이 정도의 막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구동독의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 가능한 구조를 강화했어야만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구동독지역의 경제 성장은 초기에만 9%에 달했고, 그 후로는 2%로 감소하였다.

출처_ Wirtschaftsdienst (Zeitschrift für Wirtschaftspolitik), 1999, Heft 2, S. 100-106

문서 번호 228

18차 지역대표자 회의, 자치행정 10년의 경험: 설문조사 결과

1999년 4월 26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의 광역자치단체이사회의(Kreisvorstandskonferenz)

내용_

- 이 본문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다음의 4개 질문에 대한 응답이 제시되었다.

1. 1990년, 지방자치행정이 도입되었을 때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가?
2. 지난 수년간, 무엇이 가장 큰 성공이고 또 무엇이 가장 큰 실망이었는가?
3. 오늘의 작센-안할트의 지방자치행정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
4. 1999년 지방자치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희망사항은 무엇인가?

- 이러한 질문에 많은 광역자치단체들로부터 구체적이고 명백한 대답들이 제시되었다. 새로운 가능성과 함께 무엇보다도 재정적 문제가 언급되었는데, 그러한 문제는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자치행정을 필요한 수준으로 수행하는 것을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든다.
-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우선적으로 거론되었다:

- 인프라 체제의 개선
- 경제발전을 위한 조치들
- 목표가 분명한 재정지원, 재원은 직접 광역자치단체로 가야한다.

출처_ Eine Veröffentlichung der Kreisvorstandskonferenz, die am 26. April 1999 in Salzwedel stattgefunden hatte.

문서 번호 229

브란덴부르크주 도시개발부 1994-1999년의 결산

날짜 미상-1999년 중반 추정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도시개발·주택·교통부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주 주정부의 도시개발부가 작성한 결산 보고서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4~1999년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는 이후에 언급될 지원 프로그램 범위에서 도시 건설지원 및 도시개발을 위해 20억 마르크가량을 지원하였다. 그 가운데 3천 4백 50만 마르크는 유럽지역개발기금(EFRE)에서 제공된 것이다.

- 1994~1998년 주택건설지원에서 허가된 규모: 67.5억 마르크. 지원기금은 80%가량이 이자

가 붙는 값을 수 있는 대출이다(주택건설기금).

1997년 이후 대출(Darlehen)이 주어졌다.

- 철도개인교통수단(SPNV): 연방의 지역화 재정으로부터 1996~1999년 24.2억 마르크가 지원됨. 공공개인교통수단(ÖPNV): 1994~1999년 4억 4천 6백만 마르크가 주 재정으로부터 경상 운영보조로 지원되었다. 1994~1999년 자동차 및 체제 프로그램으로 7억 8천 5백만 마르크가 투자적 지원금으로 지출되었다, 그 가운데 6천 3백만 8천 마르크가 주로부터, 7억 2천 1백만 2천 마르크가 연방으로부터 제공되었다.
- 1994~1999년: 총 74억 9천 7백만 3천 마르크(지방자치단체의 거리 제외) (기준: 1999년 6월 30일-건설재정, 기업, 유지, 계획의 총합). 그 가운데: 고속도로: 766km 38억 5백만 7천 마르크. 연방도로: 2,774km 1억 9천 2백만 5천 마르크. 주 도로 5,801km 14억 9천 9백만 1천 마르크

출처_ Ministerium für Stadtentwicklung, Wohnen und Verkehr des Landes Brandenburg (Hrsg.). 1999(?)

문서 번호 230

헌법 104a조 4항에 따라 도시건설조치를 위해 연방이 연방주에게 재정지원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행정협의(VV-도시건설촉진 1999)

1999년 7월 28일

담당자 / 기관_ 연방 교통·건설·도시개발부

내용_

이 행정 기본협의의 틀에서 연방정부는 사용되지 않는 산업지역 철도부지 등을 재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재정을 제공할 수 있다. 이들 부지는 주택과 작업실 그리고 공익을 위한 또는 그와 관련된 시설의 건축에 사용되어야 한다.

출처_ 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Bau und Stadtentwicklung - Programm zur Städtebauförderung: http://www.staedtebaufoerderung.info/nn_1087344/StBauF/DE/UeberDieStBF/RechtlicheGrundlagen/RechtlicheGrundlage__node.html?__nnn=true

문서 번호 231

1997년-2000년 사이 신연방주를 위한 세금 감면 주요 내역

1999년 8월 13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부가 1997년에서 2000년 사이에 신연방주에 제공한 세금 혜택 목록이다.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 영업세에서 주로 세금 감면이 있었다. 총금액은 1997년에는 총 100억 9천 1백만 마르크였고, 2000년에는 25억 6천 8백만 마르크로 감소했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Drucksache 14/1500, Übersicht 9, S. 9

문서 번호 232

동독의 화학 삼각지대-모범적 기능을 가진 산업단지 사례인가?

1999년 12월

담당자 / 기관_ 통일 관련 특임청

내용_

- Bitterfeld(BUNA, Leuna)에 있는 산업단지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동독에서 큰 의미를 가진 곳이었다; 동독에서 생산되는 화학 생산품의 50%와 전체 공업 생산품의 10%가 이곳에서 생산되었다.
- 1990년 신탁관리청은 긴급 지급불능 상태로부터 이러한 산업단지를 구제해야 했고, 그 이후 환경오염 제거와 프로그램에 따른 사유화를 추진하였다.
- 동독의 화학 산업의 전환이 성공하려면, 연구는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

출처_ Wissenschaftszentrum Berlin, WZB-Mitteilungen 86, Dezember 1999, S. 13-16.

문서 번호 233

신연방주(州)의 재정충당 및 재정문제

2001년

담당자 / 기관_ 연방 건설, 공간, 지역개발부 위탁, 헬무트 자이츠가 연구

내용_

- 이 연구의 대상은 신연방주들의 재정충당과 재정문제이다. 신연방주들의 1인당 부채 규모는 매우 염려스러운 수준이며, 또한 특히 지역 차원에서는 대상 인원이 많다. 이것은 상당한 이자의 부담과 함께 실질적 투자 활성화의 약화를 야기했다. 2019년까지 연대협약 II를 통해 제공되는 자금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현 종업원 규모를 안정화시키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 2019년 이후에는 이런 지원금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많은 것들이 지금 이루어진 결정에 달려 있다.

출처_ Helmut Seitz, Finanzierung und Finanzprobleme der neuen Länder. Informationen zur Raumentwicklung, Heft 2/3,2001, S. 109-118.

문서 번호 234

거래세 수입의 분배 기준-최종안

2001년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사민당, 녹색당, 민사당 원내 교섭 단체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의회가 거래세의 배분 비율을 새롭게 조정한 규정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방의회는 조세수입의 배분과 관련하여 새로이 도입된 배분 기준에 관한 법에 따라 연방 차원에서 연대협약 II와 재정배분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새로운 규정을 신속히 도입하는 것이 연방정부와 주정부, 투자자 그리고 특히 신연방주의 주민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경제거점 기지로서의 독일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연방의회와 각 연방주와 연방정부의 대표들은 연대협약 II와 재정배분법의 새로운 규정들이 분단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독일의 동일한 세대가 균등한 삶의 조건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았다.

연방의회는 연대협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과 연방국가의 재정배분 체계를 새로이 규정하는 것을 찬성하였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14. Wahlperiode, Drucksache 14/6577

문서 번호 235

지방자치단체 개혁을 위한 세 번째 잠정 규정

2001년 10월 26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 주의회

내용_

- 현재까지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7천 명 이하의 주민 수를 가진 작은 규모의 기초자치단체는 행정력 강화를 위해 이웃의 기초자치단체와 연합기초자치단체를 구성해야 한다.
- 본 법은 이러한 연합기초자치단체의 과제를 규정하고, 조직 체계와 연합자치단체에서 활동할 인력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 2002년 8월 7일의 지방자치행정 강화에 관한 법은 유연성 향상과 행정력 강화라는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출처_ Drittes Vorschaltgesetz,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Sachsen-Anhalt, 12. Jahrgang, Nummer 47, ausgegeben am 1. November 2001. Gesetz zur Stärkung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Sachsen-Anhalt, Nummer 42, ausgegeben am 12. August 2002.

문서 번호 236

생활/윤리/종교 과목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2001년 12월 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헌법재판소, 브란덴부르크주, 개신교 교회, 가톨릭 교회, 연방의회 의원 279명

내용_

연방헌법재판소는 브란덴부르크의 종교 수업을 정규 시간표에 통합시키고 그와 함께 의무과목(Pflichtfach)으로서 생활/윤리/종교(LER) 수업 이외의 것으로 개설할 것을 제안했다. 최소한 12명의 인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면 모든 형태의 학교에서 종교 수업은 진행될 수 있다.

출처_ Evangelischer Pressedienst, epd-Dokumentation Nr. 52 (17. Dezember 2001)

문서 번호 237

10년간의 논쟁에 대한 연대기

2001년 12월 10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개신교 교회, 개신교 공보, 가톨릭 교회

내용_

다음은 정치, 교회, 학교의 긴장 관계에서 브란덴부르크식 모델에 관한 내용이다. 생활/윤리/종교 과목(LER)에 관한 논쟁에서 교회와 브란덴부르크주는 서로 대치 상황에 있다. 이는 논쟁에 관련된 모든 관련자들의 패배를 의미한다. 그러나 시험을 거친 이 브란덴부르크 모델의 적용 시도는 브란덴부르크주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종교 및 세계관 공동체의 과목으로 나타났다. 브란덴부르크의 이러한 교과목(LER)은 결국 학교개혁을 위한 지속적 자극을 주었으며 무엇보다도 독일과 유럽 문화 사이의 대화를 열었다.

출처_ Evangelischer Pressedienst, epd-Dokumentation Nr. 52 (17. Dezember 2001)

문서 번호 238

연방과 연방주 간의 재정균형배분에 관한 법(재정균형배분법-FAG)

2001년 12월 20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부, 연방재무부, 연방주

내용_

재정균형배분법(Finanzausgleichsgesetz)은 연방과 연방주 그리고 연방주 간의 세금 수입을 재분배하는 문제 그리고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특히 연방정부가 신연방주에 제공하는 지원금)에 대해 규정한다.

이 법을 통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연방과 연방주 간에 거래세의 분할 문제 그리고 각 주의 배분 문제가 정해졌다.

상업세는 연방주가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연방주 간의 재정균형배분을 위해 조사되는 세금 수입은 소득세와 법인세, 상업세, 재산세, 상속세, 자동차세 등이 해당된다.

기초단체의 세금 수입은 거래세와 소득세 중에서 기초단체분, 토지세와 상업세의 일부이다.

균형배분을 측정하는 기준은 각 연방주의 주민 수를 따른다.

베를린을 포함한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작센-안할트, 작센, 튜링겐 등의 신연방주는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 특히 열악한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과 미비한 지자체 재정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05년에서 2019년 사이에 연방정부로부터 약1,150억 유로를 지원받게 된다(2005년 105억 유로, 2019년 28억 유로까지).

나아가 이들 신연방주들은 연방정부로부터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원금을 받게 된다.

출처_ Bundesgesetzblatt I 2001, S. 3955, 3956

문서 번호 239

연방법무부의 동독 판사와 검사 인수

2001년

담당자 / 기관_ 연방법무부

내용_

- 판사와 검사 수의 부족으로 연방법무부 대표와 동독 협상 대표는 인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재직 판사의 판결 집행에 합의하였다.
- 검증 목적: 인력 쇄신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법제도 구축. 판사 선출 및 검사임명위원회의 투입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위원회의 결정은 각 주정부의 사법부를 통해 준비되었다. 신연방주지역에서는 지원자의 적합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통합하고 준비하는 예비검증지소가 설치되었다(판사법 §13).
- 결정 근거: 인사 명부, 슈타지 활동에 관한 '가우크-관청(Gauck-Behörde)'의 정보와 복권 및 파면 소송 서류, 잘츠기터 소재의 동독 사법 불법 행위 조가 자료보관소와 슈타우스베르크(Strausberg) 소재 군기록보관소, 룸멜스부르크(Rummelsburg) 소재의 수감자 인사 기록의 장부
- 지원자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한 상세 개인 청문회
- 이러한 검증의 출발점은 통일조약 부록 I 제III장 A부 제III절 8번 y), aa)와 z), cc)에 나타난 규정이었다.
- 새로운 법규정을 위해 지원자 전원을 포함
- 변호사 혹은 공증인으로 직업을 변경해 인수율이 상이
- 판사 혹은 검사의 임명 철회는 통일조약 부록I 제III장 A부 제III절 8번 h), cc)에 나타난 규정에 따라 가능했다.

출처_ Wichmann, Klaus und Thomas, Jürgen. 2001. Rechtspolitik für die Deutsche Einheit: Der Beitrag des Bundesministeriums der Justiz zu Rechtseinheit und Wiedergutmachung. Köln: Bundesanzeiger-Verlag. S. 68-74

문서 번호 240

1995-2001 경제 발전 결산/작센-안할트

2002년 3월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주 수상청 보고서

내용_

- 여기에서는 작센-안할트의 발전에 대한 내용이 몇 가지 중요한 분야를 통해 서술된다. 경제 성장, 인구 1인당 소득, 노동 생산성, 취업, 실업률 등이 그것이다.
- 이 보고서는 연방주 작센-안할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함께 일반적인 설명도 포함하고 있다. "과거 수년간 구동독에서의 경제 성장은 후퇴했다. 1997년 이래로 1인당 경제 생산력은 계속 지체되어 구서독인의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민간 가계, 기업 혹은 국가에서 지출되는 예산의 30%는 구서독으로부터 들어온 재정이전을 통해 충당되어야 한다. 실업률도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p.1).
- 성공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발전은 무엇보다 얼마나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고, 제조업 분야의 혁신력이 강화되는가에 달려 있다.

출처_ Staatskanzlei Sachsen-Anhalt. Magdeburg, 2002.

문서 번호 241

유럽연합의 확장에 대한 주의 준비를 위한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의 두 번째 보고서

2002년 6월 19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브란덴부르크주 경제·유럽연합업무부 외 관련된 다른 부서들

내용_

유럽연합 확장에 따른 주의 준비를 위한 주정부의 두 번째 보고서는 이에 필요한 조치들 뿐 아니라 재정적 소요분에 대한 요약, 추가적 소요에 대한 담당 그룹의 추가적 제안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에 대한 재정적 부분은 아직까지 보장되지 않았다. 추가적 재정소요에 대한 요구를 위한 그리고 고유 업무 분야에서 추가적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한 기본조건 형성을 위한 계획이 유럽연합뿐 아니라 연방정부, 독일철도(Deutschen Bahn AG)의 수준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조치들은 다음과 같은 분야들을 포괄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 도시개발, 공간계획, 환경 보호, 자연 보호, 경제, 중소기업의 지원과 관련된 여행업, 기술 이전, 농업, 소비자 보호, 노동시장 지원, 전문성 신장 지원, 직업교육과 연관된 언어, 지역 지식습득의 지원, 특히 폴란드와 연관된 경계를 넘어서는 노동시장 전략, 고등교육 기회의 국제화,

유럽연합 확대 협상에서 근로자의 자유이동권 관련, 경과규정에 대한 요구, 불법 고용의 근절, 정보, 만남, 교류,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 단위 파트너에 대한 고려 속에서의 협력, 학교 간 자매결연, 학생·청소년 만남, 체육 문화, 행정기관 간의 협력, 내적 안정, 법무, 화재 및 자연재해보호소 부서의 협력 개선.

출처_ Landtag Brandenburg, 3. Wahlperiode, Drucksache 3/4505

문서 번호 242

지방자체단체의 자치행정 강화를 위한 규정

2002년 8월 7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 주의회

내용_

- 현재까지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7천 명 이하의 주민 수를 가진 작은 규모의 기초자치단체는 행정력 강화를 위해 이웃의 기초자치단체와 연합기초자치단체를 구성해야 한다.
- 본 법은 이러한 연합기초자치단체의 과제를 규정하고, 조직 체계와 연합자치단체에서 활동할 인력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 2002년 8월 7일의 지방자치행정 강화에 관한 법은 유연성 향상과 행정력 강화라는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출처_ Drittes Vorschaltgesetz,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Sachsen-Anhalt, 12. Jahrgang, Nummer 47, ausgegeben am 1. November 2001.
Gesetz zur Stärkung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Sachsen-Anhalt, Nummer 42, ausgegeben am 12. August 2002.

문서 번호 243

베를린시와 브란덴부르크주 공동방송국의 설립에 관한 국가조약법-브란덴부르크 주의회 1차 심의

2002년 9월 4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베를린 시정부

내용_

이 문서는 통일된 후 12년이 지나서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두 지역의 방송사를 통합하기로 한 것에 대한 논의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정부가 베를린의 SFB방송과 브란덴부르크의 ORB를 통합하여 베를린-브란덴부르크방송 RBB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문제가 브란덴부르크 주의회에서 논의되었다. 주총리실 실장인 슈페어 차관은 10년 동안 단독으로 방송하던 두 방송을 통합하려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지역에 두 개의 방송사가 있을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였다. 두 방송사를 통합하여 양측의 장점을 살리고 무엇보다 전국방송망인 ARD 내에서 더 좋은 입지를 확보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통합을 위한 조약의 초안은 일찍 작성하여 청문회를 통해 검증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에 대해 민사당의 비스키 의원은 통합으로 인해 직원들의 권리가 제한되는 일은 없어야만 한다고 경고하였다. 사민당의 클라인 의원은 통합조약이 동독지역 방송사로서 경제성을 강화하고 의미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타협안이라고 보았다. 기민당의 숍스 의원은 원칙적으로 통합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브란덴부르크의 입장에서 방송사의 사장단이 브란덴부르크에 사무실을 갖게 되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몇 가지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출처_ Landtag Brandenburg. 3. Wahlperiode. Plenarprotokoll 3/61

문서 번호 244

연대협약-재건을 위한 적절한 지원 수단의 활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3년

담당자 / 기관_ 요아힘 라그니츠의 논문, 할레 경제연구소

내용_

- 두 차례의 연대협약을 통해 신연방주들에게 낙후된 인프라 체제를 건설하고 2019년까지 현지 기초자치단체를 설립하기 위한 '구동독 재건(Aufbau Ost)' 프로그램 재원이 제공된다. 그러나 항상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재정지출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재정난을 겪는 많은 연방주와 기초자치단체가 이러한 지원금을 부분적으로 예산 부족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기 때문이다.
- 각 주들은 지원금의 사용과 관련하여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은 '통일 관련 특별 장애'에 대한 서로 상이한 해석과도 관련이 있다. 2005년부터 처음으로 연대협약 연장에 관한 법이 통과되면서 통일 관련 특별 문제에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었다. 2002년 5개 연방주가 사용한 특별 필요에 따른 추가 연방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하나의 표에 제시

되었다(S.476).

출처_ Joachim Ragnitz, Solidarpakt: Aufbaugerechte Verwendung der Mittel noch nicht gewährleistet. Wirtschaft im Wandel 16/2003, S. 473-478.

문서 번호 245

브란덴부르크 주정부가 주의회에 제출한 1994~1999년의 유럽연합 지원회기 기간에 실시한 주의 프로그램 '브란덴부르크의 전문성 신장 및 노동(Qualifizierung und Arbeit für Brandenburg)'에 대한 보고서

2003년 1월 8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브란덴부르크주 노동·사회·건강·가족부

내용_

제시된 보고서는 해당 보고 기간의 브란덴부르크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3장에는 이와 연관하여 요구에 따라 상이하게 이루어진 지원의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설명 내용은 1996년 이후 이뤄지고 있는 주의 프로그램 '브란덴부르크의 전문성 신장 및 노동(Qualifizierung und Arbeit für Brandenburg)'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주 프로그램은 실업자의 직업 전문성 신장, 직업의 수용 등에 대한 내용과 그 외의 지원에 대한 것을 주된 중점 내용으로 한다. 이것을 넘어서 유럽연합의 다양한 공동체 주도 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해 추구하였던 내용의 주된 결과에 대해 보고한다. 1994~1995년의 지원 결과는 당해 연도의 LAPRO-Struktur(전문성 신장, 창업, 대상집단 지원, 보조재정 지원)에서 서술되지 않고 1996년 이후의 LAPRO 실행내용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출처_ Landtag Brandenburg, 3. Wahlperiode, Drucksache 3/5293

문서 번호 246

독일 토지관리공사의 자연 보호 구역 양도

2003년 5월 2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토지관리공사

내용_

이 문서는 자연 보호 구역의 토지 소유권에 관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재산보완법(Vermögensrechtsergänzungsgesetz)을 통해 2000년 9월에 신연방주에서 2000년 2월 1일까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거나 일시적으로 확인된 자연 보호 구역, 국립공원 그리고 생물 서식지 지역에 대해 총 100,000헥타르의 면적까지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2. 그에 따라 제1분기에 총 50,000헥타르까지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나머지 50,000헥타르는 신연방주에서 자연 보호 목적을 위해 시장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다(제2분기). 과거에 인민 소유였던 농업 및 임업 면적의 민영화작업을 위탁받은 토지관리공사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해당 주에서 지정한 자연보호단체 또는 자연보호재단에 직접 양도할 수도 있다.
3. 토지관리공사에 의한 브란덴부르크주 그리고 자연보호재단 및 자연보호단체에 대한 양도 현황: 토지관리공사가 브란덴부르크주에 자연 보호 면적을 양도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과 오랜 시간이 들었다. 그 이유는 첫째 모든 관계자들이 본 법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연방재무부의 요청으로 2002년 5월부터 면적의 양도에 대한 자금이 유예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브뤼셀 유럽연합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불공정한 보조에 해당된다.
브란덴부르크주에는 지금까지 총 4,719헥타르의 자연 보호 구역에 대한 무상 양도 공증계약서가 체결되었다(2003년 5월 26일 기준). 그중에서 브란덴부르크주는 약 2,979헥타르를 양도하였고 나머지 약 1,740헥타르는 재단에서 양도하였다.

출처_ Verlinkter Beitrag de Internet-BRAFONA, Ausgabe 5, Mai/Juni 2003, Rubrik „Forstliche Betriebswirtschaft/Marketing“, Seite 13.

문서 번호 247

‘동부급여’는 합헌-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

2003년 7월 17일

담당자 / 기관_ 연방헌법재판소

내용_

연방헌법재판소는 신연방주의 공공직 종사자에 대해 특별한 급여(소위 말하는 동부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그 판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동일한 기관 또는 동등한 관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정이지만, 객관적인 이유로 합리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차등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다. 분단된 독일의 통일과 같은 역사적인 예외 상황에서 가입지역의 일반적인 경제적,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차등급여는 충분히 합리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출처_ Bundesverfassungsgericht.
Pressemitteilung Nr. 52/2003 vom 17. Juli 2003

문서 번호 248

제2차 발전 보고서: 구동독지역 경제 발전에 관한 경제연구소 보고
2003년 11월

담당자 / 기관_ 독일경제연구소, 키일대학교 부속 세계경제연구소, 노동시장 및 직업연구소, 경제문제연구소, 유럽 경제연구센터

내용_
2.2. 동서독 간의 1인당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비교 연구
본 보고서에서는 동독의 인구발전 상황에 관한 분석이 실려 있다. 공공 예산 분야에 있어서의 전개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구발전 상황에 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는 인구발전 상황이 단순히 지역적 경제 성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단순 요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 지자체 간의 재정 균형을 조율하기 위한 재정 수요에 있어서나, 각 주정부 재정 조정 제도에 근거를 둔 재정 지원금 수입 및 연방에 의한 재정의 수직적 재분배 문제 등은 모두 거주 주민 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아울러 지출 측면에 있어서도 인구발전 상황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서독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주민의 수가 약 130만 명 정도 더 늘어나게 되어 총 6,300만 명의 인구를 확보하게 되었다. 반면 동독지역에서는 1,420만 명 수준을 유지하던 주민 수가 1,370만 명 수준으로 오히려 줄어들게 되었다. 이로 인해 동독의 총 수입 및 지출 증가율은 부분적으로 주민 일인당 수입 및 지출 증가율과 비교해 볼 때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
매년 58억 유로에 달하는 금액, 이를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주민 1인당 약 415유로의 금액이 특별 수요를 위한 보충양여금의 명목으로 연방정부로부터 동독 전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2002년도부터는 동독 구축을 위한 투자지원법에 의거하여 약 23억 유로에 달하는 재정 지원금이 해당 목적을 위한 지출 자금으로 편성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신중한 지출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동서독 각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재정 적자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와는 정반대로 2000년도에 이르기까지 재정 적자는 명백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동서독 간의 격차 또한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증가 추세에 놓여 있다. 이미 1998년도만 해도 주민 1인당 채무액이 서독지역의 경우 4,043유로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동독지역에서는 주민 1인당 채무액이 4,525유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독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도 1999년 서독 기준 주민 1인당 채무액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출처_ Forschungsauftrag des Bundesministeriums der Finanzen

문서 번호 249

행정공동체의 지속발전 및 기초단체의 행정력 강화를 위한 법

2003년 11월 13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 주의회

내용_

- 본 법은 행정공동체의 설립에 대한 규정을 한층 더 발전시킨 것이다(자료 26 참고).
- 입법적인 조치들이 계속되는 이유는 농촌지역 인구의 유출이다. 공동위원회는 이제 하나의 기초자치단체가 구성되기 위해 최소 8천 명의 인구를 갖도록 하였다.
- 이 새로운 법안은 공동의 행정관청의 지도자에 대한 전문적인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으며 지방 차원의 관할 책임성에 대한 새로운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출처_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Sachsen-Anhalt, 14. Jahrgang, Nummer 41, S. 318-321, ausgegeben am 19. November 2003, Magdeburg.

문서 번호 250

동독지역 경제의 혁신적 능력 분야, 생산 네트워크, 중점전문 분야(BMVBW 연구)

2004년

담당자 / 기관_ 할레 경제연구소, 연방 교통, 건설, 주택부

내용_

구동독의 지역개발을 위한 새로운 방향에 대한 토론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 경제적 발전 핵심(ökonomische Entwicklungskernen)
- 클러스터(지역의 대표적 전문 분야 기업의 공간적인 집중)
- 일반 입지결정 요소 강화

출처_ Anlage des IWH zur gemeinsamen Presseerklärung mit dem BMVBW am 2. November 2004.

문서 번호 251

브란덴부르크주 도시개발·주택·교통부 1999-2004년 보고서

2004년 5월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도시개발·주택·교통부

내용_

1998년에서 2002년 사이 사용된 주택 소유지의 비율은 37%에서 40%로 증가했다. '도시 II(URBAN II)' 프로그램, '도시지역의 미래(Zukunft im Stadt-teil(ZiS))' 그리고 '사회적 도시(Soziale Stadt)' 프로젝트는 지방 차원에서 관할기관을 아우르는 공동작업과 현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광범위한 협력에 근간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것을 통해 마찰로 인한 손실(Reibungsverluste)은 줄어들었고 시너지 효과가 가능할 수 있었다. 2002년에는 라우지츠-슈프레발트 목적단체인 ZÖLS(Zweckverband ÖPNV Lausitz-Spreewald) 역시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교통 체제(VBB)에 통합될 수 있었다. 지난 입법회기 동안 우커마크(Uckermark)지역과 라우지츠(Lausitz)지역을 연결하는 265km의 거리(Oder-Lausitz-Straße)를 개발하는 사업이 시작되었다.

출처_ Ministerium für Stadtentwicklung, Wohnen und Verkehr des Landes Brandenburg (Hrsg.). 2004

문서 번호 252

프랑크푸르트-오더의 반도체 공장 투자계획의 준비 및 실현에서 주정부의 책임 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 3/3의 결정 권고 및 보고

2004년 8월 18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조사위원회 3/3 하인츠 비에트체 의원, 브란덴부르크주 전 경제 장관 퓌어니스, 프랑크푸르트 오더 반도체물리학연구소

내용_

2001년 1월, 대규모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유명해진 경영회사(Betreiberfirma) Communicant가 설립된 후부터 주정부는 총 7회에 걸쳐 이 경영회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때때로 특별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의회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 회사에 대해 논의한 것은 회사의 발전 구상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 재정계획과 회사 체계의 부실 등이 발견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문제 영역에 대한 상황조사 보고 과정과 예산입법 및 추가예산 입법의 틀 속에서 예산 및 재정위원회와 경제위원회는 집중적으로 이 회사 사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정부의 참여를 통해 전체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과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점사항을 이루었다. 또한 이 프로젝트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수많은 소규모 질문(25회), 구두질문(24회), 긴급질문(4회)이 제기되었고 주정부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설명 요구가

있었다. 이러한 조사위원회의 설치가 요청된 직접적인 원인은 회사에 의해 슬그머니 추진되었던 기업의 해체였다. 회사는 연방과 주의 보증을 통해 전체 재정을 충당하려는 시도가 좌절되자 기업을 해체하였다.

출처_ Landtag Brandenburg, 3. Wahlperiode, Drucksache 3/ 7770

문서 번호 253

브란덴부르크 주개발회사 적자 해명에 관한 주의회 조사위원회 3/2의 결정 권고 및 보고서

2004년 8월 23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조사위원회 3/2 디터 헬름 의원, 도시건설·주택·교통을 위한 브란덴부르크 주개발회사(LEG)

내용_

987페이지 분량의 상기 보고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A장: 주의회 조사위원회의 설치, 과제, 배경, 절차, B장: 조사된 사건의 상황, C장: 환경관리법(UAG) 28조 3항에 의거한 다른 의견들.
A장은 조사 절차의 순서에 대해 설명한다. B장은 조사위원회 3/2의 조사 결과를 다시 제시한다. 조사위원회는 자료에서 발췌한 내용과 증거인들이 언급한 내용에서 필요한 부분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다루었다. 2001년 9월 20일 브란덴부르크 주의회의 조사위원회 설치 결정이 있은 후 조사위원회 2/3는 주개발회사(LEG)의 발전과 LEG-기업집단의 발전을 위해 일반적인 주제 이외에 16개의 부분으로 구성된 89개의 개별 질문을 작성하였다. 질문들은 거의 대부분 경제평가연구소의 평가 기준인 '예산원칙법(HGrG) 53조에 따라 사업 및 경제 상태의 절적성 평가를 위한 질문목록(Fragenkatalog zur Prüfung der Ordnungsgemäßigkeit der Geschäftsführung und der wirtschaftlichen Verhältnisse nach § 53 HGrG)'에서 발췌한 것이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첫 단계에서 광범위한 조사자료를 주정부와 LEG-그룹으로부터 입수하여 평가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 LEG-그룹, LEG-감독위원회, 주정부의 40여 명의 증인에 대한 집중적인 심문이 이루어졌다.
발견된 상황에 대한 정치적 평가와 발견된 결과의 신뢰성은 위원회 내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위원회의 다수가 동의하는 상황평가 결과와 결과 신뢰성에 대한 전체 입장은 제시되지 못했다. 조사위원회 2/3의 활동은 1998~1999년 LEG의 평가와 연관되어 검찰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보고서의 A장과 B장의 내용에는 평가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다. 보고서의 C장은 소수자 의견을 수록하고 있다.

출처_ Land Brandenburg, 3. Wahlperiode, Drucksache 3/7777

문서 번호 254

기초자치단체를 행정공동체로 분류하기 위한 2차 규정

2004년 9월 8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주 내무부

내용_

- 2~5번째 규정에서 기초자치단체가 행정공동체로 분류되었다.
- 광역 단위 지역 신규정을 위한 법이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광역 단위 지역의 새로운 재구획화, 이전의 광역 단위 단체가 하나의 큰 단위 단체로 통합되는 것이다

출처_ Jeweils abgedruckt im Gesetz- und Verordnungsblatt von Sachsen-Anhalt.

문서 번호 255

죽음의 경계선에서 생명의 띠로: 철의 장막이 그린벨트로 바뀌다

2004년 9월 9일

담당자 / 기관_ 세계자연보전연맹, 연방 자연보호청

내용_

1. 브뤼셀, 벨기에/본, 독일 그리고 Fertö-Hanság 국립공원, 헝가리 2004.09.09: '유럽 그린벨트' 이니셔티브는 과거 철의 장막의 '폐허'에서 유일무이한 환경 지대를 만들겠다는 목표하에 모인 유럽 자연보호가들의 회의에서 2004년 9월 9일에 발족되었다. 회의 참가자들은 그린벨트가 유럽에서 자연 보호 및 지속적인 발전에 대한 상징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린벨트지역에 근접한 국가에서 온 22명의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 국경을 초월한 협력 작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했다.
2. 유럽 연합은 2004년 5월부터 10개의 새로운 회원 국가를 추가하였으며, 이 중 8개 국가는 그린벨트에 참여하였다. 이 국가들은 지금부터 자연 보호에 대한 유럽 연합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나추라 2000(Natura 2000)의 보호구역 프로그램의 구축이 포함된다. 그린벨트는 확장된 유럽 연합과 나머지 유럽 국가들 사이의 협력과 지속 발전을 장려할 것으로 기대된다.
3. 회의 참가자들은 유럽 그린벨트를 위한 실무 프로그램의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9월 회의 결과는 다음 연도에 달성할 구체적인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그린벨트 사무국(현재 세계자연보전연맹)은 관련 국가들과 이미 국경을 초월한 협력 작업에 동참하고 있는 기관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 결과 유럽 곳곳에서 집중적인 실천운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_ Pressemitteilung des Bundesamtes für Naturschutz, http://www.bfn.de/pm_44_20040.html, 23.11.2010

문서 번호 256

행정구역개편법

2005년 11월 11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주 내무부

내용_

- 2~5번째 규정에서 기초자치단체가 행정공동체로 분류되었다.
- 광역 단위 지역 신규정을 위한 법이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광역 단위 지역의 새로운 재구획화, 이전의 광역 단위 단체가 하나의 큰 단위 단체로 통합되는 것이다

출처_ Jeweils abgedruckt im Gesetz- und Verordnungsblatt von Sachsen-Anhalt.

문서 번호 257

'하르츠(작센-안할트주)' 국립공원에 관한 법

2005년 12월 20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 주의회

내용_

이 문서는 작센-안할트주가 하르츠 산악지역의 자연 보호를 위해 니더작센주와 공동으로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법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하르츠의 아름다운 자연을 통일된 자연보호정책으로 장기적으로 보호하고, 이웃 주민들, 관광객들 및 일반인들에게 하르츠산맥과의 조화 및 동질감을 확인시켜 주고 지역 차원의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하르츠(니더작센주) 국립공원'과 '국립공원(작센-안할트주)'을 합쳐서 '하르츠 국립공원'으로 개명하고, 같은 이름의 지방자치법에 따라 하나의 통합된 관리체제로 관리하기로 결정하였다.

2. 국립공원 관리의 임무는 '하르츠 국립공원관리단'에서 담당한다. 국립공원관리단은 국가조약에 따라 작센-안할트주와 니더작센주의 공동 관청으로 운영되며 베르니게로데(Wernigerode)에 본부를 둔다.

출처_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Sachsen-Anhalt. 16. Jahrgang. Ausgegeben in Magdeburg am 30. Dezember 2005. Nummer 68.

문서 번호 258

보건제도에 있어서 시스템 변경을 위한 도전 과제 및 경험적 지식

2007년 기준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일반 지역의료보험조합(AOK) 제1 위원장 베른트 그리거

내용_

브란덴부르크에서의 일반 지역의료보험조합(AOK) 구축과 발전 상황에 관한 고찰

- 초기에는 브란덴부르크 일반 지역의료보험조합(AOK)에서 서독의 다원적 의료보험 시스템을 동독으로 도입하는 문제에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 1991년 4월 브란덴부르크 일반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소속된 직원은 1,800여 명으로 이들은 41개의 사업사무소와 50개의 행정사무소에서 약 120만 명에 달하는 보험 가입자들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직원들이 동독 사회보험공단으로부터 편입되어 온 인력이었다.
- 서독 출신 직원들의 경우 '공단 구축 지원 담당'의 직책으로서 동독에서의 보험공단 운영을 지원하고, 자체 교육센터를 설치하였다.
- 아울러 일반 지역의료보험조합(AOK)에서는 전산 데이터 처리작업을 위해 포츠담에 이를 담당할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하지만 당시에는 전신 및 데이터 서비스 인프라 시설이 너무도 열악했으므로 해당 자료 업무는 초기 상당한 지장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 시스템 변환과정은 특히 구축 및 정착 단계에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
- 의료보험공단에서는 매년 '동독 구축 프로젝트'의 진료비용에 대한 투자 보조 지원금에 참여했다.
- 브란덴부르크는 연방주 차원에서 보건제도 시스템 변환과정에 있어 특별한 위치를 갖게 되었다(브란덴부르크 방침).
- 초기 제약업계에서는 통일조약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했다.
- 독일연방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2004년 보건제도 개혁안을 통해 원래 동독에서 운용되던 시스템 제도의 일부가 도입될 수 있었다.

출처_ Archiv der AOK Berlin

문서 번호 259

인구변동의 조건하에서 튜링겐주 농촌지역의 기초단체 게마인데-모니터링 체제의 최종 보고서

2007년 4월 30일

담당자 / 기관_ 튜링겐주 건설교통부(제2국: 도시건설, 주택건설, 공간질서와 지역계획)

내용_

2004년에 조사된 30개의 기초단체 게마인데 중에서 18개 지역에서는 일인당 주거공간이 튜링겐주의 평균 크기 38평방미터를 훨씬 넘었다. 일반적으로 주거공간은 도시에서보다 농촌지역에서 더 크다고 보아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튜링겐 전 지역에서 일인당 주거공간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인구감소와 동시에 전체적인 주택의 크기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1995년에서 2004년 사이에 거의 모든 게마인데에서 사용가능한 일인당 주거공간이 증가하였다. 건축허가 건수를 검토하면 대부분의 건축 활동이 1990년대에 진행된 것을 볼 수 있다. 2000년 이후에는 건축허가 건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 조사대상이었던 튜링겐의 게마인데에서는 빈 주택을 줄이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주택을 철거하는 정책이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출처_ Thüringer Ministerium für Bau, Landesentwicklung und Verkehr: http://www.thueringen.de/imperia/md/content/tmbv/monitoring_abschlussbericht.pdf

문서 번호 260

사통당 독재에 대한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의 구상

2007년 11월 8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브란덴부르크주 교육·청소년·체육부, 학술·연구·문화부, 법무부, 내무부, 포츠담 현대사연구소

내용_

2007년 3월 7일 결정을 통해 주의회는 주정부에게 '사통당 독재에 대한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주정부의 콘셉트'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된 첫 번째 내용으로 '모든 브란덴부르크주 학교에서 사통당 독재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의무적으로 전달할 것'이 요청되었다. 이는 민주주의와 독재의 차이를 구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치교육을 위한 조치'가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고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주정부는 '억압과 저항과 관련된 실제 장소'가 강조되고 기념 장소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주 의회는 '기존의 기념 장소를 네트워크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사통당 독재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사회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출처_ Landtag Brandenburg, 4. Wahlperiode, Drucksache 4/ 5325

문서 번호 261

2008 작센주(州) '구동독지역 재건(Aufbau Ost)' 프로그램 성과보고서

2008년

담당자 / 기관_ 작센주 재무부

내용_

- 작센의 발전 현황을 종합적으로 보여 주는 보고서. 40여 개의 표와 그림을 갖고 있다. 3개 부분에 연대기금II(Solidarpaket II), 즉 특별 재정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성과를 정리하였다.
- 보고서의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인구발달 추이와 경제적 조건
- 재정경제적 발전(주 단위와 기초자치단체 단위)
- 연방의 재정이전
- 인프라 체제 부족의 문제

- 2008년 작센은 연방지원금의 사용을 최적화하였다; 즉 인프라 체제에 대한 투자와 세수입이 늘어났고 부채를 감소시켰다. 그럼에도 불구, 예산안정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연방이 부담하는 지원 수준과 비교하여 볼 때 작센은 인프라 체제 부족을 메우기 위해 작센의 고유 재정을 투자하는 비율을 올릴 수 있다.

출처_ Fortschrittsbericht „Aufbau Ost“ des Freistaates Sachsen für das Jahr 2008, herausgeben vom Sächsischen Staatsministerium der Finanzen, Dresden.

문서 번호 262

작센-안할트주(州) '구동독지역 재건' 프로그램 성과보고서

2008년

담당자 / 기관_ 작센-안할트 주정부

내용_

- 작센-안할트의 발전 상황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특히 분단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의 개발 성과와 연방 재정의 사용에 대한 내용, 지방 재정의 균형에 대한 필

요성 부분이 논의의 주 대상이다.

-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특별히 어려웠던 초반 상황은 다음과 같다.

-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
- 화학, 기계조립, 광산업 등의 단일 체제의 붕괴
- 급속한 민영화의 부작용

- 이러한 문제에 더하여 제기된 새로운 혹은 더욱 악화된 이전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 높은 재정적 압박
- 높은 실업률
- 여전히 높은 개인 임금
- 인구상황의 부정적 변화 추이(인구 유출)

- 다른 지방과의 간격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센-안할트는 여러 영역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주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 연방재정의 유입이 없다면 작센-안할트는 현재와 같은 지출구조를 통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모든 신연방은 재정적 도움 없이는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한 높은 수준의 투자를 실행하기 힘들다.

출처_ Regierung des Landes Sachsen-Anhalt, Ministerium der Finanzen (Hrsg.), Magdeburg 2009; https://mf.sachsen-anhalt.de/fileadmin/Bibliothek/Politik_und_Verwaltung/MF/Dokumente/Fortschrittsbericht/FB_2008.pdf

문서 번호 263

부채 모니터링-재정 위기로부터 지속성으로의 이동

2008년

담당자 / 기관_ 베르텔스만 재단

내용_

독일의 연방주와 기초자치단체들의 2005년 채무상태 설명.

출처_ Bertelsmann-Stiftung (Hrsg.): Schuldenmonitor. Von der Haushaltsnotlage zur Nachhaltigkeit.

문서 번호 264

신연방주에 대한 경제지원

2008년

담당자 / 기관_ 요아힘 라그니츠

내용_

- 눈에 띄는 재건 성과와 상당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구동독에는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체제상의 결함이 아직도 많이 있다.
- 특히 지원할만한 가치가 있는 분야는 현재 형성되어 있는 부문별 클러스터에 맞는 미래지향형 잠재 분야이다. 지역의 주요 행위자들은 각각의 개발 단계에서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 그런 프로그램들은 장기적으로만 효력을 발휘하며 동서독 생활 수준의 평준화는 몇 세대에 걸친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 "....하나의 제한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단기적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다."(S.63).

출처_ Joachim Ragnitz, Wirtschaftsförderung in den neuen Ländern. Gesellschaft – Wirtschaft – Politik, Heft 1/2008, S. 53–64.

문서 번호 265

2009 공공재정 연간보고서: 작센, 작센-안할트 주(州) 보고서

2008년

담당자 / 기관_ 볼프강 푀어스터, 울프 마이어-릭스

내용_

- 두 연방주의 공공재정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이 담겨 있다.
- 작센은 경제적·재정적으로 약한 연방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방주들과 비교하면 훌륭한 재정 상태를 나타낸다.
- 작센-안할트는 '안정, 투자, 대비'라는 모토 아래 재정 정책을 세우고 2008년에 순 부채 없는 두 번째 해를 맞이했다. 그럼에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출처_ Wolfgang Förster, Länderbericht Sachsen 2008, S. 152–160.
Ulf Meyer-Rix, Länderbericht Sachsen-Anhalt 2008, S. 162–164. Beide Artikel in: Martin Junkernheinrich, Stefan Korioth, Thomas Lenk, Henrik Scheller, Matthias Woisin (Hrsg.): Jahrbuch für öffentliche Finanzen. Berlin: Berliner Wissenschaftsverlag

문서 번호 266

2008년도 작센주 동부 재건 성과 보고서

2008년 1월 1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주 재무부

내용_

연대협약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신연방주들은 연대협약의 재원의 사용 내역에 대해 매년 동부 재건 경과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연방정부와 연방주 간의 재정균형배분에 관한 법률 11조 4항에 따라 신연방주와 베를린 주정부는 매년 다음과 같은 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 인프라 시설 격차 극복의 경과
- 연방정부의 추가지원금과 특별기금의 사용 내역
- 주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의 재정상황과 실질적인 채무 현황

작센주의 주정부는 2008년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 2002년에는 낙후한 기존의 인프라 시설을 보수 개선의 수요에 따라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오염을 제거를 위해서 그리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균형을 위해 지원되는 연방정부의 추가지원금은 규정에 따라 전액 집행될 수 있었다.
- 지난 몇 년간 작센주에서는 서독의 연방주에서 훨씬 많은 금액이 인프라 시설에 투자되었다. 특히 인프라 시설이 열악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었다.(???)+P104

출처_ Sächsisches Staatsministerium der Finanzen; http://www.lsf.sachsen.de/download/fortschrittsbericht_aufbau_ost_2008.pdf

문서 번호 267

브란덴부르크의 정부 엘리트

2008년 3월 15일

담당자 / 기관_ 포츠담대학 경제사회학부 디르크 아르네 하이옌

내용_

실제로 항상 동독 출신이 정부의 회의 테이블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그렇기 때문에 식민지화라는 말은 언급될 수 없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각료회의에서 거의 절반의 장관이 서독에서 사회화과정을 거친 사람들이었다. 위에서 언급된, 1990년 신연방주의 정부에서 평균 1/3 수준이 구서독 출신이라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구서독 출신의 비율을 보인다. 브란덴부르크에서는 법무부, 경제부, 재정부가 서독인 장관으로 채워졌다. 환경, 농업 같은 기술 관련 부는 동독 출신에 의해 채워졌다. 수입된 행정 전문가와 관련하

여, 업무 효율성의 관점에서 서독 출신이 동독 출신보다 앞선다는 점이 언급될 수 있다.

출처_ Heyen, Dirk Arne: Regierungseliten in Brandenburg im Zeitverlauf –Zu der Frage der Ost-West-Herkunft und dem sozioprofessionellen Hintergrund der Kabinettsmitglieder (von 1990 bis heute). Universität Potsdam, Wirtschafts- und Sozialwissenschaftliche Fakultät, 2007/08

문서 번호 268

2009 연방주 순위: 작센주의 강점/약점의 특성(새로운 사회적 시장경제를 위한 이니셔티브(Initiative neue soziale Marktwirtschaft))

2009년

담당자 / 기관_ 이니셔티브 '새로운 사회시장경제', 쾰른 독일경제자문, 경제전문지 '경제주간'

내용_

- 역동성 순위(2005~2009년까지의 발전), 현 상황 순위(경제와 사회복지 수준의 절대적 수준)에 대한 서술을 통해 작센과 작센-안할트의 강점과 약점을 다른 연방주들과 비교하면서 서술한다.

작센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많은 영역에서 다른 연방주에 비하여 뒤져 있다.

- 연구 결과가 갖고 있는 장점은 연구 분야는 매우 좁지만 매우 중요한 분야에 대해 연방 재정지원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는 것이다.

출처_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Köln Consult GmbH (https://www.iwconsult.de/fileadmin/user_upload/downloads/public/pdfs/sachsen.pdf (Stand: 07.05.2018))

문서 번호 269

2009 연방주 순위: 작센-안할트주의 강점/약점의 특성(새로운 사회적 시장경제를 위한 이니셔티브(Initiative neue soziale Marktwirtschaft))

2009년

담당자 / 기관_ 이니셔티브 '새로운 사회시장경제', 쾰른 독일경제자문, 경제전문지 '경제주간'

내용_

- 역동성 순위(2005~2009년까지의 발전), 현 상황 순위(경제와 사회복지 수준의 절대적

수준)에 대한 서술을 통해 작센과 작센-안할트의 강점과 약점을 다른 연방주들과 비교하면서 서술한다.

작센-안할트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많은 영역에서 다른 연방주에 비하여 뒤져있다.

- 연구 결과가 갖고 있는 장점은 연구 분야는 매우 좁지만 매우 중요한 분야에 대해 연방 재정지원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는 것이다.

출처_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Köln Consult GmbH (https://www.iwconsult.de/fileadmin/user_upload/downloads/public/pdfs/sachsen-anhalt.pdf(Stand: 07.05.2018))

문서 번호 270

2009/2010 연방주의 입지 경쟁력: 수입-고용-안전

2009년-2010년

담당자 / 기관_ 베르텔스만 재단

내용_

- 광범위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본 연구는 작센, 작센-안할트주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텍스트 이외에 국민총소득, 경제성장, 고용, 실업, 사회적 안정 등에 관련된 그래프, 표 등을 통해 변화 상황을 설명하였다.

작센은 예산정책 덕분에 가장 안정적인 신연방주로 평가되었지만 전 독일 복지 수준에 비춰볼 때는 여전히 뒤처져 있다. 작센은 낮은 수준의 부채, 낮은 인건비 지출 비율, 높은 투자 지출 비율을 갖고 있지만 반면에 일부 영역은 시장경기에 매우 종속되어 있다.

"높은 수준의 실업과 관련하여, 여전히 낮은 생활 수준, 대규모 인구 유출이 작센주가 계속 갖고 있는 문제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미래의 기회도 여전히 있다." (p.262)

- 통일 이후 작센-안할트는 실업, 인구 유출, 노령화 문제를 갖고 있다. 정부의 재정 긴축 정책은 2007년 이후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성공적 성과는 대개 지역적으로 달랐고 체제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거의 느낄 수 없었다.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에 이어 작센-안할트는 두 번째로 낮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 에너지 산업 관련 작센-안할트는 가장 좋은 조건의 주이다. 공공 인프라 구축, 연구, 개발, 기업참여 활성화 부분에서 여전히 연방의 재정지원이 요구된다.

"3차 사회연대기금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연방의 일부 지역의 상황은 구연방의 체제 취약지역보다 훨씬 좋기 때문이다". (p.277)

출처_ Bertelsmann-Stiftung (Hrsg.): Die Bundesländer im Standortwettbewerb 2009/2010, Einkommen - Beschäftigung - Sicherheit; 2010; https://www.bertelsmann-stiftung.de/de/publikationen/publikation/did/die-bundeslaender-im-standortwettbewerb-20092010/

문서 번호 271

기초자치단체와 재정

2009년

담당자 / 기관_ 작센 주정부, 작센주 재무부

내용_

- 기초자치단체의 수입은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기초자치단체들은 각각의 주로부터 받는, 또 주 안에서 균등화 절차를 통해 들어오는 외부 배당금을 필요로 한다.
- 배당금은 연방주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서독에서는 2007년 기초자치단체들의 수입의 약 29%가 배당금이었는데 작센에서는 50%였다. 또 연방주 차원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자(arm und reich)'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지방 간 재정균등 시스템을 운영한다.
- 이 보고서는 이러한 두 종류의 배당금에 대해 작센의 예를 통해 자세히 기술한다. 98쪽부터는 중요한 법률 규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출처_ Staatsministerium der Finanzen, Freistaat Sachsen, Hrsg.: Die Gemeinden und ihre Finanzen 2009, Dresden 2009, 8. Auflage (insgesamt 105 Seiten).

문서 번호 272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이 마침내 … 좋은 결과로?-작센-안할트의 체제 및 기능 개혁

2009년

담당자 / 기관_ 베른트 크레겔의 논문집 수록 논문

내용_

- 작센-안할트에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형태와 과제에 대한 대규모 개혁이 있었다. 이 논문에는 그러한 개혁의 출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고, 각각의 개혁 단계가 서술되는 동시에 평가된다(표와 지도).
- 정부와 야당은 서로 다른 구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서로 상이한 모델을 선호했다. 의회의 논의에서 그리고 이후 입법과정에는 원래의 구상이 실현되지는 않았으며 계속되는 개혁과정의 새로운 단계마다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다(원래는 37개의 광역자치단체가 11개로 통합되었다).

출처_ Bernd Kregel, Was lange währt, wird endlich … gut? Struktur- und Funktionalreform in Sachsen-Anhalt. In: Sabine Mecking und Janbernd Oebbecke, Hrsg.,

Zwischen Effizienz und Legitimität. Kommunale Gebiets- und Funktionalreform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historischer und aktueller Perspektive. Paderborn, 2009, Ferdinand Schöningh Verlag, S. 22fff.

문서 번호 273

브란덴부르크 사회간접자본건설부가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총리실에 제출한 보고서

2009년 3월 20일

담당자 / 기관_ 사회간접자본·농업경제부, 브란덴부르크 주정부 총리실

내용_

2006년 주 개발계획(LEP FS)은 하나의 추가된 절차에 따른 결과이고 2006년 6월 16일 새롭게 발효되었다. 새롭게 작성된 계획은 2003년의 계획을 대체하였는데 이러한 계획은 2005년 2월 10일 프랑크푸르트-오더 고등행정법원에 의해 무효라고 선언되었던 것이다. 2006년 12월 18일에 법조문화가 이루어졌고, 2007년 5월 24일에는 개발 청사진에 대한 공동성명 서명(미래 개발계획 초안),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국제공항(GSK FU-BBI)을 위한 공동의 체제 콘셉트 작성, 대화의 계속적 진행을 위한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출처_ Ministerium für Infrastruktur des Landes Brandenburg

문서 번호 274

2009 브란덴부르크 주정부의 문화 개발 콘셉트에 대한 보고서

2009년 4월 30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학술·연구·문화부

내용_

초반에 갖고 있던 문화 개발 콘셉트의 모티브는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계획 수립의 안정성을 창조하고 계속 보장하는 것과 효과적인 자금 투입을 보장하는 것이다. 주정부는 이 과정을 계속 보장하는 것을 그들의 과제로 보았다. 지난 과거 몇 년간의 업무 내용이 2004년의 과제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일련의 핵심 주제들을 특징지었다. 특히 인구 이동을 다루기 위한 문화 정책적 활동 전략의 개발이 그러한 것이다.

새로운 주제들도 덧붙여졌다: 문화와 경제의 관계가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얻게 되었는데, 이는 정치가 생산 분야로서 문화의 경제적 의미를 점점 더 강하게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문화재의 디지털화는 정보사회에서 세계적 주제가 되었다. 문화교육(이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주정부의 특별 보고서가 다루게 될 것이다.)은 문화 및 교육 정책적 관심의 핵심을 이루는데, 이는 사회의 장래에서 문화가 갖고 있는 의미가 충분히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출처_ Landtag Brandenburg, 4. Wahlperiode, Drucksache 4/7524

문서 번호 275

인구 통계적 변화: 신연방주를 고려한 정책 제안

2009년 6월

담당자 / 기관_ 연방 교통·건설·도시개발부, 베를린 인구발전연구소

내용_

연방주와 연방 교통·건설과·도시개발부의 프로젝트 "지역이 미래를 만든다"의 인구 통계적 정책이 그 주제이다: 가능한 한 인구 통계상 변화의 충격을 완화하고 새로운, 동시에 계속 변화하는 여건에 적응하도록 하는 한편, 인구 통계적 추세의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주민에게 적절한 기본적인 생활 배려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 '대응'전략: 인구 통계적 변화는 국가 발전에 대한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다. 목적은 인구의 감소를 저지하고 그리고 고령화의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과거의 문제를 겨냥한 것이고, 현대적인 기본 생활보장을 가능하게 하는 미래 프로젝트를 위한 것은 아니다.
- '적응'의 전략: 적응 전략은 인구 통계상 발전의 결과인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인식한다. 목적은 공동체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그리고 주어진 여건하에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은 기본 생활보장을 충족시키는 사회급부를 점차적으로 줄이는 적응 전략에 기초한다. 현 적응 전략에서 기본 생활 배려와 관련된 사고방식은 일반적이지 않다.

신연방주에서 선택된 프로젝트를 보면, 많은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나, 이는 또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인구 통계적인 발전의 문제를 고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개선이 되고 있지는 않다. 현재의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는 전혀 충분하지 않다. 인구 통계적 발전의 성공은 새로운 출발점과 전면적인 정책을 전제로 한다. 목적은 양질의 성장과 고용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사회적 통계의 성공적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 배려를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 중심 사상: 최소한의 비용

으로 최대의 생활 배려를 보장한다.

- 전격적인 현대화의 미래 해결책을 통한 활성화와 역동화 프로젝트. 중심사상: 고유한 가치 체제와 고유한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흠결로부터 장점을 만들어 낸다.

부록: 25쪽짜리의 평가를 포함한 연방주의 현행 인구 통계적 프로젝트를 기술하는 표 1, 연방주 인구 통계 부서의 개선 제안의 표 2(조치).

출처_ Berlin-Instiut für Bevölkerung und Entwicklung (Hrsg.). Berlin, 2009. (https://www.berlin-institut.org/fileadmin/user_upload/Studien/Demografischer_Wandel.pdf (Stand: 17.04.2018))

문서 번호 276

브란덴부르크 과거청산담당관법(BbgAufarbBG)

2009년 7월 7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공산독재의 청산을 위한 브란덴부르크주 특임관

내용_

이 법은 공산독재의 청산을 위한 브란덴부르크주 특임관(LAkD)의 지위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특임관(LAkD)의 임무:

소련점령 시절과 구동독 시절에 박해 받은 사람들을 자문하고, 동독 슈타지 문서 열람 시 동독 슈타지 문서법 38조에 의거하여 자문하며, 공개 진상규명, 공공행정 자문 및 검증절차 지원, 브란덴부르크 추모지 재단 및 희생자 협회와 협력하도록 한다.

주특임관(LAkD)은 6년에 한 번 주의회에서 선출되며, 주의회 의장의 법적 감독을 받는다.

공직자들은 주특임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기록물, 문서보관서 및 기타 정보수집물의 열람을 허가할 의무가 있다.

출처_ Brandenburgisches Vorschriftensystem (BRAVORS)

문서 번호 277

일곱 번째 연방주 순위: 연방주 비교-누가 가장 최고로 경영했는가?

2009년 12월

담당자 / 기관_ 이니셔티브 '새로운 사회시장경제', 쾰른 독일경제자문, 경제전문지 '경제주간'

내용_

- 본 연구에서 다뤄진 내용은 자료 12, 13과 동일하지만, 본 연구는 100개의 경제 및 체제 관련 지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연방주의 경제적 역동성을 평가하는 매우 광범위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 2009년 작센-안할트는 강력한 역동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이 그 뒤를 따랐다. 상대적인 성장이 있었으나 여전히 더 많은 성과를 필요로 한다. 구동독주의 성공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p.6).
- 2008년의 재정 위기는 독일 연방에 각기 다른 크기의 영향을 미쳤는데 작센-안할트와 작센은 평균 수준의 영향을 미쳤다.

평균 이상의 경제 비율과 높은 수출 비용을 갖고 있는 주들이(예를 들어, 바이에른, 튜링겐, 바덴-뷔르템베르크) 큰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출처_ IW Consult GmbH Köln, http:77www.iwconsult.de; www.bundeslaenderranking.de

---

문서 번호 278

서독에서 동독으로의 이전 지출에 관한 개요와 이러한 이전 지출이 경제 발전과 각 주정부 재정 및 지역자치단체 재정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

2010년

담당자 / 기관_ 할레 경제연구소 토마스 렌크 및 마티나 쿤체, 신연방주와 구연방주, 지자체

내용_

이 문서는 할레 경제연구소가 독일통일 20주년이 되던 해에 '체제전환으로부터 유럽통합으로'라는 제목으로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독일통일 20년에 관한 경제학자들의 평가를 보여 준다. 신연방주인 작센-안할트주의 주요 도시인 할레에 위치하고 있는 경제연구소는 현재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문제연구소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통일이 이룩된 지 20년의 세월이 지났고, 서독에서 동독으로 막대한 규모의 이전 지출이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동독과 서독의 '생활 여건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서독에서는 심지어 동독으로의 이전 지출에 대한 저항이 생겨나고 있다. 통일된 독일의 재정 경제와 관련하여 각 부분별로 평가하기로 하자.

독일통일 기금, 제1차 및 제2차 연대협약

- 독일통일기금(1990-1994년) 이후 후속적으로 제1차 연대협약(1995-2004년) 및 제2차 연대협약(2005년부터 현재까지)이 마련되었다.
- 독일통일기금을 통해 신연방주 정부는 822억 유로에 달하는 지원금을 수령하게 되었

고, 그 가운데 40%의 자금이 구동독지역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데 지급되었다.

- 그 후 제1차 연대협약에 따라 945억 유로가 추가적으로 구동독지역으로 이전되었다. 이러한 자금은 환경폐기물 처리, 산업지구 조성 및 거주용 주택 건설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동독은 제2차 연대협약을 통해 1,560억 유로가량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 2005년부터 동독의 신연방주는 매년 이에 대한 발전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각 주정부 재정 조정 제도

- 1995년 초부터 구동독지역은 서독지역과의 재정 격차를 더 이상 좁히지 못하고 있다.
- 연방주 간의 균형 잡힌 재정을 위해 실행되는 균형재정배분제도에 따라 수평적으로 재분배되는 재원의 80%가량이 구동독지역에 배정되었다.
- 아울러 연방정부에 의해 수직적으로 재분배되는 특별 수요를 위한 보충 양여금(Sonderbedarfs-Ergänzungszuweisung)을 통해서도 신연방주의 재정력이 강화될 수 있었지만, 이러한 강화된 재정력이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신연방지역의 조세 여건이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 가운데 하나이다.

사회 복지 정책적 관점에서 야기된 이전 지출

- 사회보험공단 역시 구동독지역으로의 이전 지출에 기여하고 있다. 모든 신연방주를 비롯하여 서독지역의 브레멘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또한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지원받고 있는 상태이다.
- 사회보장금액의 정산은 거주지가 아닌 근무지에 따라 이루어진다.

전망

- 서독의 구연방주들로부터의 이전 지출이 없다면, 구동독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도 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 동서독 통합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통합에는 보통 10년에서 최대 80년의 세월이 소요될 것이다. 만약 구서독지역으로부터의 이전 지출이 중단된다면, 구동독지역의 주민 가운데 거의 절반가량이 거주지를 떠나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현재로도 17%가량의 동독 주민이 구동독지역을 떠나고 있다.
- 문제는 이전 지출을 통해서 구동독지역의 생산성을 높이고 공급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비재에 대한 수요만 강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소비재에 대한 수요는 구동독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 제2차 연대협약은 2019년을 기점으로 종료된다.
- 무엇보다 기술 혁신 분야와 수출 관련 제조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현명하다.

출처_ Lenk, Thomas und Kunze Martina. 2010.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 (Hrsg.). 20 Jahre Deutsche Einheit - Von der Transformation zur europäischen Integration. Tagungsband. Halle (Saale): IWH-Sonderheft. S. 401-416

문서 번호 279

신연방주의 주행정-연방정치교육원의 자료

2010년 1월 1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정치교육원, 만프레드 클루트

내용_

연방정치교육원은 신연방지역의 행정 체계 구축에 관한 전체적인 개괄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발간하였다. 이 자료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동독 행정 체계의 내부 구조
2. 1990년 동독 행정의 신질서
3. 동독에서 주 차원 행정 단위의 재도입
4. 통일된 1990년의 동독 주행정의 개편
5. 행정관청조직과 관련된 통일조약의 조항들

(도표 포함)

출처_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Manfred Kluth; http://www.bpb.de/geschichte/deutsche-einheit/lange-wege-der-deutschen-einheit/47200/verwaltung-der-laender?p=all (Stand: 19.07.2018)

문서 번호 280

제11차 의원법 개정법(동독 슈타지 관련 여부 검증)-브란덴부르크주

2010년 1월 21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주

내용_

이 법은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의원법 33조(의원 검증 규정)를 보충한다.

의원들은 슈타지 활동에 연루되었는지 그 여부를 검증 받아야 한다(특히 정직원 신분이었는지, 비공식 협력자였는지 여부를 포함).

검증을 위해 슈타지문서관리국 특임관(BStU)의 협조가 요청된다.

주의회에는 검증 대상인 해당 의원의 슈타지 협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독립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출처_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das Land Brandenburg, 21. Jahrgang, Nummer 3

문서 번호 281

‘브란덴부르크주에서의 사통당 독재 잔재의 극복 및 역사 청산과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앙케이트위원회 설치

2010년 3월 9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기민당, 자민당, 연합 90/녹색당 원내 교섭 단체

내용_

기민당(CDU)과 자민당(FDP) 그리고 연합90/녹색당(Bündnis 90/Grünen)의 원내 교섭 단체는 2010년 초 공동으로 ‘브란덴부르크주에서의 사통당 독재 잔재의 극복 및 역사 청산과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앙케이트위원회의 설치를 신청하였다. 위원회 설치를 위한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서술되었다: “브란덴부르크에서 사통당 독재가 종식되고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이 이뤄진 지 20년이 지난 지금, 그러한 과정이 다른 신연방주와 비교하여 볼 때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되지만 혹시 지체된 것이 있거나 잘못된 것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자료 15, 앙케이트위원회 5/1).” 이와 관련하여 사민당과 좌파당은 공동으로 이러한 역사청산 작업을 보충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앙케이트위원회는 또한 지금까지 진행된 브란덴부르크주 체제전환 과정의 경과와 지금까지 수행된 결과를 평가하는 업무를 해야 한다. 앙케이트위원회는 독재 이후 시대의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해야 하고 브란덴부르크주 민주주의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브란덴부르크 주의회는 양 교섭단체의 신청을 수용하였고 2010년 3월 24일 앙케이트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하였다.

출처_ Landtag Brandenburg, 5. Wahlperiode, Drucksache 5/554

문서 번호 282

1952년 동독의 주 폐지와 중앙집권적 통일국가의 형성-브란덴부르크의 사례

2010년 10월 15일

담당자 / 기관_ 하랄트 엥글러,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 역사 하우스

내용_

이 문서는 동독의 행정구역의 광역 단위로 활용되었던 베치르크(Bezirk)의 역사와 이러한 단위에 따라 브란덴부르크를 구성하던 3개 구에 대한 역사적 분석이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에는 주의 해체와 베치르크제도의 도입, 이를 통해 동독 역사에서 나타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내용(Negative-Thema)이 설명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에 수많은 흥미로운 동독의 역사와 사회의 발전도 읽을 수 있다
(새로운 엘리트층 형성/사회적 상승 가능성, 복지정책, 소비 증가 등등).

출처_ Weiß, Peter Ulrich. Vortrag im Haus der Brandenburgisch-Preußische Geschichte Potsdam am 15.10.2010

문서 번호 283

브란덴부르크에서의 평화 혁명과 민주화 과정-주 재건 20주년을 맞이하여 페터 울리히 바이스 강연

2010년 10월 15일

담당자 / 기관_ 페터 울리히 바이스, 포츠담 시간역사 연구센터,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 역사 하우스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주의 민주주의로의 여정이라는 학술회의에서 페터 울리히 바이스가 1989년 변혁 과정에 관해 발표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포츠담의 17개 도시구역 가운데 최소한 7개 구역에서 1989년 이전 이미 반구조 단체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주(州) 차원의 대규모 시위 움직임을 이끌어 낸 원동력이 되었던 하나의 상황(Szene)이 있었다. 반체제 그룹 인사들은 브란덴부르크에서 새로운 정치 사회적 세력을 이루고 있었다. 이들은 출신과 경력(Profile)이 중요하게 작용했던 1990년 3월 18일 인민의회(Volkskammer) 선거뿐만 아니라 5월 6일 첫 번째 자유지방선거(Kommunalwahlen)에서도 그리고 10월 14일 첫 번째 주의회선거(Landtagswahl)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치적 세력으로 떠올랐다. 이들은 자민당(FDP), 연합90(Bündnis 90)과 함께 주차원에서 연립정부(Koalitionsregierung)를 구성하였다. 또한 나머지 반대 세력의 지원에 힘입어 11월 1일, 만프레드 슈톨페(Manfred Stolpe)가 새로운 브란덴부르크 주의 총리로 선출되었다.

출처_ Engler, Harald. Vortrag im Haus der Brandenburgisch-Preußische Geschichte Potsdam am 15.10.2010

문서 번호 284

2020년도까지 신연방주의 예산의 변화

2011년 4월 11일

담당자 / 기관_ 슈투트가르트 대학교 아힘 힐데브란트

내용_

이 문서는 Wirtschaftsdienst에 실린 경제전문가 아힘 힐데브란트의 논문으로 연대협약 II가 종료될 2019년 이후의 신연방주가 부딪힐 과제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에 관해서 논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9년 연대협약 II가 종료된 후에 신연방주의 재정은 급격히 변화할 것이다. 연방정부가 분단의 후유증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연방주에 제공하던 추가재정이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축될 것이다. 연대협약을 통해 지원되던 재정 또한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신연방주는 공공재정이 지나치게 적자를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출을 감축해야만 할 것이다. 그것은 국제금융 위기로 인한 부담과 함께 주정부의 예산에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필수적인 예산 감축으로 인해 발생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신연방주의 경제가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한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1. 유럽 연합의 지원 종료(2007-2013). 2. 신연방주의 인구는 통일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고 2019년 이후에도 그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3. 2020년부터는 모든 연방주의 예산이 부채없이 균형 잡힌 예산으로 짜여져야만 한다. 4. 연대협약의 종료와 동시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연방주 간의 균형재정배분법 또한 종료된다. 개정될 내용에 관한 협상이 이미 진행 중이며 세수가 높은 연방주들이 벌써부터 부담할 이전재정의 규모를 줄여야만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신연방주들은 그동안 연대협약을 통해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신연방주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확보된 수입이 감소하는 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이들이 재정을 활용해 온 방식과 직결된다. 5개의 신연방주들은 재정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방주의 주민들에게 주정부의 예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입 감소로 인해 지출을 감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그에 따라서 주민들은 지출감축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만 한다.

지출감축이 가능한 영역으로는 다음과 같이 세 분야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1. 인구 감소에 맞추어서 교육 분야의 예산을 감축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2. 행정 인력의 감축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3. 공공지출을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 집중해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_ Wirtschaftsdienst (Zeitschrift für Wirtschaftspolitik), 2011, Heft 4, S. 244-248

문서 번호 285

사회통일민주당 평가를 위한 브란덴부르크 앙케이트위원회(EK 5/1)-인물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의견서(뤼디거/카텐후센)

2011년 6월 1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기셀라 뤼디거, 한스-크리스티안 카텐후젠

내용_

'역사 극복 및 사회통일민주당 독재 결과 청산 그리고 브란덴부르크주의 민주법치국가로의 이행을 위한' 앙케이트위원회(EK 5/1)의 위임을 받은 의견서.

주행정부에는 1990년 이후 중앙에서 규정한 동독 슈타지 평가 절차가 없었다. 평가는 관할 소관이었다. 예를 들어 교육, 청소년 및 스포츠부(MBJS)가 세부 규정을 마련한 반면, 총리청과 내무부에서는 어떤 발의도 없었다. 새롭게 입수할 수 있었던 동독 슈타지 문서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주행정부 안에서 평가 받은 인물들 가운데 6.6%가 혐의가 있었고, 이들 중 34.1%가 해고되었다. 의견서는 법적, 조직적인 새로운 규정이 마련될 수 있을 때 새롭고 체계적인 평가 기준을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사회통일민주당 간부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유지했는지 혹은 계속적인 고용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해서는 신빙성 있는 공식 통계가 없다. 주행정부에는 구연방주 공무원들이 고위직을 주로 차지하는 '엘리트 혼합'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주정부와 주의회 구성원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 동독 슈타지 협력과 관련된 해고를 의아하게 생각한다(다수의 개별 케이스 제시). 1990/1991년 첫 번째 판결에서 동독 슈타지 문서 해명은 아직 불완전했다(문서집 제시). 특히 '중앙관청 성명(HVA)' 부분의 많은 색인카드가 폐기되거나 조작되었다. 관재인들은 동독 슈타지 혐의가 있는 자들과 개별 면담을 하고, 많은 경우 문서집 내용에 반하는 의심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냈다. 의회 내 공식성명 혹은 담화는 없었다.

제1차 회기에 대한(1990-1994) 평가를 위해 '명예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의원 100명 가운데 14명의 동독 슈타지 협력 사실을 밝혀냈으나, 결산 보고서 상에서는 2명(주지사 만프레드 슈톨페건 포함)을 싣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현재 5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제2차 회기부터 제4차 회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활동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평가 담당자들은 제2차부터 제4차까지의 회기 동안 각각 12건, 8건 및 10건의 동독 슈타지 협력 혐의를 확인했다. 하지만 제5차 회기인 2009년부터는 정기적 검증 절차가 정식으로 도입되었다(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음).

모든 신연방주에서는 주의회 심사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결과는 부분적으로 익명화되었다. 제1차 회기 이후 평가 연기는 브란덴부르크주에서만 발생했다.

출처_ Parlamentsdokumentationssystem Brandenburg (https://www.parlamentsdokumentation.brandenburg.de/parladoku/w5/drs/ab_8500/8500_13.pdf (abgerufen: 26.07.2011))

문서 번호 286

작센주 문화재 보호 20년, 1990-2010-작센주 내무부 보고서

2011년 8월 15일

담당자 / 기관_ 작센주 내무부

내용_

이 문서는 작센주 내무부가 통일 20년을 기념하는 2010년에 문화재 보호에 관해 작성한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를 통해 작센주는 문화적 유산을 보호하는 것이 주정부의 정책에서 어떤 위상을 갖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20년간 문화재 보호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적인, 조직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 작센주의 문화재보호법은 독일 전체에서도 모범적인 케이스로 인정된다. 이 법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문화재 보호와 고적을 담당하는 기구가 새로 설립되었다. 작센주에는 105,394개의 문화재 보호 대상 건축물과 13,124개의 고고학적 보호지역이 있다. 이 중에 약 3분의 2가 현재 보수되었거나 적어도 안전보존 조치되었다. 문화재정보고서를 보면 작센 주정부가 2007년에 주민 1인당 22.69유로, 총 9천 6백 1십만 유로를 문화재 보호를 위해 지출하였다. 지난 20년간 작센주의 문화재를 위해 거의 10억 유로를 주정부가 지출하였고, 추가로 연방정부가 16억 5천만 유로를 지원했다. 유럽 연합도 2007-2010년 사이에 3천만 유로를 지원하였다.

출처_ http://www.bauen-wohnen.sachsen.de/download/Bauen_und_Wohnen/Kabinettsbericht_Text_15-8-2011%281%29.pdf; http://www.bauen-wohnen.sachsen.de/download/Bauen_und_Wohnen/Anlagen_Kabinettsbericht_20-06-2011.pdf, abgerufen am 07.06.2016

문서 번호 287

총회의 토론: 독일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11년 연례보고서; 신연방주 차관

2011년 12월 16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의회, 연방정부, 연방내무부, 신연방주 특임 차관 크리스토프 베르크너, 연방의회 의원 다수

내용_

연방의회는 독일통일 현황에 대한 연방정부의 2011년 연례보고서를 통한 연방정부의 보고와 좌파의 제안 '신연방주 차관직 신설'에 대한 내무상임위원회의 의결추천과 보고에 관해 논의하였다.

출처_ Deutscher Bundestag, Plenarprotokoll 17/150

문서 번호 288

2013년에서 2017년까지 갈탄 채굴지역 정화비용 규정에 관한 4차 보완 행정합의 (갈탄 채굴지역 정화 행정합의)

2012년 10월 9일

담당자 / 기관_ 연방재부무, 연방환경부, 신연방주 재무부, 신연방주 경제부

내용_

이 문서는 연방정부와 신연방주 간에 갈탄 채굴지역 정비를 위한 재정을 조달하는 문제에 관해 체결된 행정협약이다. 1995년 1일 10일에 '생태적 환경오염 지대의 재정에 관한 행정협약'이 처음 체결되었고, 이 협약의 틀에서 새로운 행정협약이 지속적으로 체결되어 왔다. 2013년에서 2017년까지의 재정문제를 다루는 4차 협약도 그 연속선상에 있다.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갈탄 채굴지역의 환경정비사업이 큰 성과가 있었지만, 이 지역의 수질관리와 토지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 등과 같은 정비사업의 장기적인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연방정부와 신연방주들은 2013년에서 2017년 사이에 정비사업을 위해 12억 2천 960만 유로, 라우지츠와 중부독일 광산 행정회사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7억 7천만 유로를 지출할 것이다. 다른 조치들, 특히 지하수 수위가 상승하는 것과 관련한 위험 요인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위해 4억 5천 960만 유로가 제공되며 연방과 신연방주가 50%씩 부담하게 된다. 2017년 이후에는 갈탄 채굴지역 정비사업이 연방정부로부터 독립된 주체기관으로 그 책임이 이전되는 것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출처_ Bundesanzeiger, BAnz AT 07.03.2013 B4

문서 번호 289

갈탄 채굴지역 정비에 관한 행정협약 체결 20년-연방-주사업소의 증인들의 인터뷰 및 보고서

2012년 11월

담당자 / 기관_ 갈탄 채굴지역 정화 연방-주-사업소, 연방환경부, 연방재무부, 신탁관리청, 신연방주 주정부

내용_

이 문서는 갈탄채굴지역의 정비사업의 20주년을 회고하는 자료이다. 갈탄 채굴지역 정비는 연방정부와 브란덴부르크, 작센, 작센-안할트, 튜링겐 등 4개 신연방주 주정부가 공동으로 진행한 사업이며, 연방-주-사업소를 통해 진행되었다. 이 보고서는 사업소가 작성 배포한 것으로 사업구조에 관해 주로 설명하고, 다양한 책임자들이 경험을 설명하는 인터뷰를 실

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갈탄 채굴지역 정비사업이 진행된 지역의 연면적은 10만 헥타르이다. 1989년까지 약 10만 헥타르의 면적에 39개의 채굴광산이 있었고, 그중 25개가 1995년까지 가동 중지되었다. 이 사업의 주요과제는 채광으로 인해 발생한 빈 공간을 물로 채우고, 안전정치를 하고, 탄광 산업시설을 철거하는 것이었다.
갈탄 채굴지역 정비사업으로 인해 구동독의 갈탄 생산지역에서는 급격한 구조조정이 있었다. 1990년에는 연방과 주 차원에 이 복잡한 과제를 담당할 제도적인 구조나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1992년에 환경오염 부담을 위한 연방-주-행정협약이 체결되고 연방환경부의 주도하에 이 사업을 위한 제도적인 구조가 구축되게 되었다. 1992년 11월에는 조정그룹이 구성되었고, 이 그룹은 1994년 10월에 조정 및 예산위원회로 전환되었다. 동시에 구동독의 광산회사가 라우지츠 중부독일 광산행정회사에 의해 인수되었고, 이 회사가 정비과제를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 사업의 초기에는 고용창출 프로그램을 통해 인력을 충원했고, 그를 통해 구동독 탄광지역의 실업률을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행정협약은 4년마다 연장되었다. 2017년까지 소요된 예산이 약 110억 유로였다. 예상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로 인해 비용이 더 추가될 수도 있다. 이 사업이 시작되던 1992년에 예상했던 총비용은 163억 유로였다.
정비가 완료된 지역은 재녹화되었고, 새로 만들어진 호수와 자연경관은 관광과 여가를 위한 보호지역으로 만들어졌다. 연방과 주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은 지역 경제구조의 개선을 위해 공적 투자와 민간 투자사업에 제공되었다.

출처_ Bund-Länder-Geschäftsstelle für die Braunkohlesanierung (Hrsg.). 20 Jahre Verwaltungsabkommen Braunkohlesanierung – Gesichter und Geschichten der Braunkohlesanierung. Berlin 2012

문서 번호 290

앙케이트위원회 최종보고서 5/1 브란덴부르크주에서 역사를 청산하고 사통당 독재의 결과를 극복하면서 민주적 법치국가로 이전하는 과제의 해결-'미디어와 의견의 다원성'(발췌)

2014년 3월 6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앙케이트위원회

내용_
이 문서는 앙케이트위원회가 브란덴부르크 주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중에 미디어에 관련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브란덴부르크 주의회는 2010년에 통일 이후 민주적 체제전환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앙케이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미디어와 의견의 다양성과 관련된 부분은 특히 언론이 다원적이며 편견 없는 자유로운 의사 형성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관해 주로 조사되었다. 이를 위해 인력과 제도의 전환과 동독에 관한 보도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함께 진행된 설문조사를 보면 이 지역의 주민들이 동독에 관한 언론 보도에 여전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문과 관련된 것으로는 1989/1990년 이후에는 신탁관리청의 매각정책, 구동독지역에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서독 신문사들의 전략, 새로운 신문의 창설 등이 다루어졌다. 새로운 신문이 많이 등장하여 신문의 봄이라 불리었던 1990/1991년의 신문 호황은 금방 사라졌다. 신탁청의 매각정책으로 인해 동독지역 신문 시장은 소수의 신문사에 의해 지배되게 되었고, 서독 신문사에 인수된 사통당의 지역신문이었던 신문사들이 새로 발간되는 신문, 잡지보다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공영방송은 통일 이후 전체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완전히 새로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신연방주가 함께 운영하는 공동의 방송사 대신 작센, 작센-안할트, 튜링겐주가 참가하는 중부독일방송(MDR)과 브란덴부르크주의 ORB가 설립되었고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는 북부독일방송(NDR)에 가입하였다.

브란덴부르크주의 3대 일간지와 공영방송은 동독을 주제로 비교적 많은 보도를 하였다. 이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변화와 연속성 사이에 관해 비교적 균형을 취하였다고 평가되었다.

출처_ Landtag Brandenburg. Schriften des Landtages Brandenburg Heft 5/2015. http://www.landtag.brandenburg.de/media_fast/5701/Schriftenreihe_5_2014_Internet.pdf (Stand 18.04.2016)

문서 번호 291

1989년 이후 브란덴부르크지역 농업의 체제전환 및 소유권전환 과정-앙케이트위원회 5/1 최종보고서 발췌

2014년 3월 14일

담당자 / 기관_ 브란덴부르크 주의회, 앙케이트위원회 5/1

내용_

이 문서는 브란덴부르크 주의회의 앙케이트위원회 5/1이 다양한 전문가에게 의뢰해 농업의 구조발전과 그와 관련된 소유권 변화에 관해 조사하도록 해서 작성한 최종 보고서이다.

최종 보고서에는 1989년 이후 이 지역의 농업 발전의 윤곽이 그려져 있다. 1945년에서 1949년 사이의 토지개혁으로 소유권이 박탈된 토지는 인민 소유로 되거나 새로운 정착인들에게

분배, 임차되거나 국영농장으로 운영되었다. 1952년의 집단화법을 통해 집단협동농장이 되었다.

통일 이후 토지개혁된 토지를 반환하는 것은 서독과 동독 정부에 의해 거부되었다. 그 이유는 소련의 압력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일반적으로 간주된다. 소유권을 박탈당한 다른 재산은 반환하거나 보상되게 되었다. 농업 분야에서는 2010년 현재 634,417개의 재산권 반환 신청서가 제출되었다. 그중 약 50%가 거부되었다. 위원회는 신정착자에게 분배된 토지의 소유권 박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약 10,000여 건의 토지개혁 대상인 토지를 부도덕하게 자기에게 이전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것은 당시 혼란한 상황 때문에 가능했지만, 이제는 가능하면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가능하면 신정착자의 상속자들을 찾아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800개의 집단협동농장을 새로운 형식으로 전환하면서 불명확한 소유권 관계, 농장회원 간의 이해갈등 및 어려운 구채무로 인해 자주 문제가 발생했다. 약 250개의 집단협동농장은 협동조합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일부는 전환과정에서 집단협동농장의 전 관리자들과 관청의 감독관들이 의심스러운 술수를 썼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동독의 당 간부로 당시의 전문지식을 독점하고 있었다.

1990년 이후 대규모 농업기업이 농업구조를 지배하고 있다. 농경지의 50%가 1,000헥타르 이상의 농지를 보유한 대규모 농업사업체를 통해 경작된다. 그것은 결국 농촌지역에 농민이 살지 않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동시에 국제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한 것도 사실이다.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투자자가 토지를 매입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친환경적인 농가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해야만 한다.

출처_ Landtag Brandenburg. Schriften des Landtages Brandenburg Heft 5/2015. http://www.landtag.brandenburg.de/media_fast/5701/Schriftenreihe_5_2014_Internet.pdf (Stand 18.4.2016)